

발 간 등 록 번 호

11-1075000-000043-0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

I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송선태
부위원장 안종철
상임위원 이종협
위원 김희송
(가나다순) 민병로
서애련
오승용
이동욱
차기환

■ 편찬실무

최용주(조사과 과장)
임남수(조사과 조사관)
양재은(조사과 조사관)
황윤경(조사과 조사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 ■

초판 1쇄 발행 2024년 6월 24일

발행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주 소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7층, 8층

전 화 02)724-9141

제 작 선인

등 록 제5-77호(1998.11.4)

주 소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48길 1, 1층

전 화 02)718-6252/6257

팩 스 02)718-6253

E-mail sunin72@chol.com

비매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

I

이 종합보고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근거하여 2019년 12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26일까지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조사활동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발간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019년 12월 27일에 설립되어 2023년 12월 26일에 모든 조사 활동을 종료하였습니다. 이 종합보고서는 5·18진상규명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조사 활동 내용 전체를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국민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위원회는 5·18진상규명법 제3조의 진상규명 범위에 따라 17건의 직권조사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안)을 의결했으며, 직권조사 사건 중 13건의 보고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4건의 보고서는 원안과 다르게 “진상규명불능”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신청사건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214건의 조사 신청서를 접수해서 조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종합보고서는 전원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17개 직권조사를 중심으로 위원회 조사 활동의 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된 13개의 개별 보고서는 조사 활동 결과를 보고서에 그대로 반영했으며, 전원위원회에서 원안이 부결된 4건의 보고서에 대해서는 조사 활동 내용과 부결 사유를 함께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종합보고서는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기초로 국가가 이행해야 할 11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조사 활동을 통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5월의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5·18민주화운동은 불법적 내란집단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맞선 “시민의 자연법적 저항이자 불복종 운동”이었습니다. 둘째, 당시 신군부 세력은 반란과 내란을 실행한 국가에 대한 범죄뿐만 아니라 군대와 공권력을 동원하여 무고한 시민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천부적인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인간에 대한 범죄”를 자행하였습니다. 셋째, 당시 국가폭력의 만행이 피해자에게 남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상처는 지금까지 제대로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은폐되고 왜곡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며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4년의 조사 활동과 그 결과를 돌아보면 위원회가 그 설립목적에 과연 얼마나 부합했는가에 대한 뼈아픈 자성이 앞섭니다. 위원회는 이 보고서가 5·18민주화운동의 소중한 정신을 기리고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국가적 각성에 기여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보고서가 중단될 수 없는 5월의 진실규명의 도정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보고서를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희생된 민주 영령 앞에 헌정합니다.

2024. 6. 24.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송선태 **송 선 태**

약어표

- 5·18민주화운동 → 5·18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5·18진상규명법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 5·18조사위
-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 5·18보상심의위원회
-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5·18보상법
- 5·18보상심의위원회 보상 심의 관련 자료 → 보상자료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 강제실종 방지협약
-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 국회광주특위 또는 광주특위
-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 공동조사단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5·18관련자
- 5·18민주화운동 관련 행방불명자 → 5·18행불자 또는 행불자
- 행불자인정자가족회 → 행불자가족회
- 수배자 명단, 전단, 지시, 하달 공문 등 → 수배자 명단
- 특수학적변동자 → 특변자
- 5·18민중혁명 희생자 위령탑 건립 및 기념사업 범국민운동 추진위원회 → 5·18위령탑 건립위원회
- 광주전남지역개발협의회 → 전개협
-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 국방부 5·18특조위 또는 국방부 특조위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작전에 투입된 군과 시위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상해 등에 관한 피해 → 군·경 피해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국과수
- 전남대학교 부속병원 → 전남대병원 또는 전대병원
- 광주재진입작전 → 상무총정작전 또는 광주재진입
- 보안사령부 → 보안사
- 수도경비사령부 → 수경사
- 육군본부 → 육본
- 육군특수전사령부 → 특전사
- 제○공수특전여단 → 제○공수여단 또는 제○공수
- 제○보병사단 → 제○사단
- 전투교육사령부 → 전교사
- 광주비행장, 송정리 비행장, K57 → 제1전투비행단 또는 광주비행장
- 육군범죄수사단 → 육군범수단
- 합동수사본부 수사5국 → 합수5국
- 국가안전기획부 → 안기부
-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 내란음모사건
- 전두환 회고록 1: 혼돈의 시대 → 전두환 회고록

목 차

발간사	5
약어표	7

I

제1장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배경·25

제1절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 배경과 연혁	27
1.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운동	27
가. 피해자 단체 결성	27
나. 5월운동의 확산	28
다. 국회 청문회	30
라. 광주문제 해결 5원칙 채택	31
마. 사법 정의 실현 운동과 책임자 처벌	32
2. 5·18진상규명법 제정	37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헬기 사격 흔적 확인	37
나.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출범과 조사	38
다. 5·18진상규명법의 제정과 주요 내용	39
3. 위원회의 출범	41
가. 국방부 5·18 진상규명위원회 설립준비단	41
나. 5·18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 공동조사단	41
다. 위원회 위원 추천	42
라. 위원회 출범	44

4. 5·18진상규명법 개정	45
가. 1차 개정	45
나. 2차 개정	47
제2절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업무와 권한	49
1. 진상규명의 범위	49
가. 5·18진상규명법 제3조 규정	49
나. 시간적·공간적 범위	50
다. 진상규명 사건 유형	51
2. 조사의 기본원칙	52
가. 피해자 중심 접근	53
나. 국제 기준에 부합한 접근	53
다. 증거 기반 접근	53
3. 조사 활동 절차	54
가. 직권사건	54
나. 신청사건	56
4. 위원회의 조사 권한	57
가. 진술조서	58
나. 출석요구서와 동행명령	58
다. 자료 제출 요구	59
라. 압수 및 수색영장 청구 의뢰	59
마. 청문회	60
바. 유해발굴 조사	60
사. 특별검사 임명 요청	61

5. 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조치	61
가. 고발 및 수사 요청	62
나.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62
다. 피해 및 명예회복 조치	62
라. 가해자를 위한 사면 조치 등	63
6. 기록조사와 진술조사 현황	63
가. 기록조사	63
나. 사건별 주요 수집 자료	66
다. 진술조사	73
7. 사건 처리 현황	80
가. 신청사건	80
나. 직권사건	82
제3절 5·18민주화운동의 배경과 전개 과정	87
1. 12·12군사반란에서 5·17내란까지	87
가. 유신의 종말과 민주화의 열기	87
나. 12·12군사반란	89
다. 민주화의 봄	94
라. 신군부의 집권 음모	98
마. 서울역 회군	103
바.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104
사. 5·18민주화운동 직전 광주 상황	107
2. 5·18민주화운동의 전개 과정	109
가. 5월 18일(일요일)	109
나. 5월 19일(월요일)	111
다. 5월 20일(화요일)	113

라. 5월 21일(수요일)	116
마. 5월 22일(목요일)	119
바. 5월 23일(금요일)	122
사. 5월 24일(토요일)	124
아. 5월 25일(일요일)	126
자. 5월 26일(월요일)	127
차. 5월 27일(화요일)	129

제2장 계엄군의 진압 작전과 발포 · 133

제1절 계엄군의 발포와 책임	135
1. 조사 배경	135
2. 계엄군의 발포 경위	136
가. 발포 배경	136
1) 소요 진압 작전과 대침투작전	139
2) 강경 진압 지시	147
나. 진압작전 중 발포	150
1) 5월 19일 광주고등학교 근처의 최초 발포	150
2) 5월 20일 광주역 일원 발포	163
3) 5월 21일 전남도청 앞 발포	189
4) 5월 27일 광주재진입작전	247
3. 발포 책임	258
가. 신군부세력 등 수뇌부	258
1) 전두환의 역할	258
2) 내란중요임무 종사자의 작전 개입·관여	266
나. 현장지휘관 및 발포 실행 장병	271

4. 소결	272
제2절 군인과 경찰의 피해	276
1. 조사 배경	276
2. 일자별, 상황별 피해 실태	282
1) 5월 20일 차량 시위대에 의한 함평경찰서 소속 경찰 4명의 사망 사건	282
2) 5월 20일 광주역 일원 진압 작전 계엄군 피해와 정관철 중사의 사망	284
3) 5월 21일 도청 앞 집단발포 당시 권용운 일병의 사망 사건	285
4) 5월 21일 주남마을 철수작전의 계엄군 피해와 이관형 상병의 사망 사건	289
5) 5월 21일 전남대에서 광주교도소 이동 과정의 계엄군 피해	291
6) 5월 22일 국군광주통합병원 확보 작전의 계엄군 피해와 방위병 손광식의 사망 사건	292
7) 5월 24일 광주톨게이트 계엄군 간 오인교전 피해	293
8) 5월 24일 광주비행장 이동 과정의 계엄군 간 오인교전 피해	294
9) 5월 27일 광주재진입작전(전남도청)	297
10) 5월 29일 무등산 수색작전 간 계엄군 피해	299
3. 소결	300
제3절 계엄군의 헬기 사격	302
1. 조사 배경	302
가. 헬기사격 사건의 배경과 문제제기	302
나. 헬기사격 사건의 사회적 논란과 쟁점	306
1) 육군항공 지휘관 및 조종사들의 주장	306
2) 육군항공 관계자의 헬기사격 사건의 왜곡에 관한 쟁점	308
3) 『전두환 회고록』에서의 왜곡과 사회적 논란	315
2. 조사 결과	317
가. 5·18민주화운동 기간 항공작전 운용과 무장 출동	317
1) 소요진압작전 당시 육군항공 부대 편성 및 지휘체계	317

2) 육군항공대 출동 현황 및 무장 출동 여부	319
3) 단계별 항공작전 임무	322
나. 헬기 무장 상태와 사격 가능성	324
1) 일자별 육군 헬기 임무 현황과 비행시간기록 누락	324
2) 비행 임무 중 무장 상태와 사격 가능성	328
다. 헬기 사격 지시 및 명령	339
1) 문서에서 나타난 헬기사격 지시	339
2) 헬기사격에 관한 구두 지시 및 명령	341
라. 헬기 사격 입증 증거 및 혐의점	345
1) 헬기사격 입증 증거	345
2) 헬기사격 관련 혐의점	362
3. 소결	369

제4절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373

1. 조사 배경	373
2. 조사 결과	374
가. 8가지 조사 쟁점	374
1) 광주폭격설	374
2) 진압작전 계획 수립과 전투기 출격 대기	378
3) 제10전투비행단에서 전투기 출격대기	382
4) 충청작전과 전투기 출격대기	390
5) 제3훈련비행단에서 A-37 항공기 출격 대기	395
6) 공군참모총장의 비상대기 지시	401
7) 에어 스트라이크	404
8) 대공포탄 보급 의혹	405
나. 공군의 군사적 지원	407
1) 공수 지원	407

2) 항공사진 지원	409
3) 위력시위 비행 지원	410
4) 군수지원	411
3. 소결	411

제3장 민간인 희생과 피해 · 415

제1절 민간인 사망	417
1. 조사 배경	417
2. 조사 결과	418
가. 민간인 사망 규모와 사망 경위	418
1) 사망자 규모	418
2) 사망자별 사망 경위	419
나. 민간인 사망 실태	434
1) 개요	434
2) 사망 사건의 전개과정	443
3) 민간인 살해의 반인도성	473
다. 사인 오류 정정 및 사망장소 추가 확인	477
1) 사인 오류 정정	477
2) 사망 장소 추가 확인	483
3. 소결	485
제2절 민간인 상해	488
1. 조사 배경	488
2. 조사 결과	489

가. 상해 일반 현황	489
1) 기초자료	489
2) 연령대별 분포	492
3) 성별 장애 정도	494
4) 직업별 분포	495
5) 장소별 발생 분포	496
6) 날짜별 발생 현황	501
나. 주요 쟁점별 민간인 상해	504
1) 여성 및 노약자에 대한 반인륜적 폭행	504
2) 시위와 무관한 민간인 상해	505
3) 안면부와 머리 등 치명적 부위 피해와 복합상해자	506
4) 총상자 피해 사례	510
5) 도검류에 의한 상해	525
3. 소결	532
제3절 행방불명	536
1. 조사 배경	536
2. 조사 결과	537
가. 선행조사의 결과	537
나. 국립5·18민주묘지의 신원미상 희생자 3위 확인	539
다. 5·18행불자 '신동남'의 소재와 사망 확인	542
라. 5·18행불자 '김광복'의 소재 및 신원 확인	547
마. 5·18행불자 '김재영'의 소재 및 신원 확인	548
바. 5·18사망자 '양창근'의 오인 매장 경위 확인	549
사. 5·18행불자 242명의 전수조사	558
아. 5·18행불자 중 10세 이하의 어린이 조사	565
자. 5·18행불자 행방불명 현장지도 구축	569

차. 행방불명자 가족 채혈 및 유전자 검사	580
3. 소결	583
제4절 암매장	586
1. 조사 배경	586
2. 조사 결과	587
가. 선행조사의 결과	587
나. 계엄군 면담조사에 의한 암매장 지역 특징	599
다. 광주교도소 일원의 가(암)매장 제보현장 지표조사	607
라. 제31사단 해남대대 인근 유해발굴	616
마. 영암군 학산면 공설묘지 유해발굴	618
바. 화순 너릿재 터널 인근 지표조사	619
사. 제31사단 영내 및 유격장 지표조사	619
아. 민간인 시체 소각설 조사	623
자. 암매장 제보 현장 유해의 유전자 검사	628
3. 소결	636
가. 암매장 제보 현장의 유해발굴 및 수습 조사 결과	636
나. 유전자 검사 결과	638

II

제4장 외곽 봉쇄지역 집단학살·665

제1절 조사 배경	667
제2절 조사 결과	669
1. 광주-화순(주남마을)	669
가. 외곽 봉쇄 작전과 제7, 제11공수여단의 이동 준비	669
나. 5월 21일 계엄군 이동 간 피해	673
다. 5월 22일 외곽 봉쇄 작전의 시작과 시민군 및 민간인 피해	680
라. 5월 23일 마이크로버스 피격 등 민간인 피해	685
마. 5월 24일 주남마을을 떠나는 공수여단과 검시	713
2. 광주-나주(송암동)	717
가. 제20사단 61연대 2대대의 외곽 봉쇄 작전 시작과 민간인 피해	717
나. 제20사단 61연대 2대대의 외곽 봉쇄 작전 중 민간인 피해	727
다. 제20사단과 보병학교 교체 전후 민간인 피해	733
라. 계엄군 간 교전과 제11공수여단에 의한 민간인 피해	736
마. 해남 등 전남지역 피해	767
3. 광주-송정(국군광주통합병원)	776
가. 외곽 봉쇄 작전을 위한 부대 배치	776
나. 5월 22일 국군광주통합병원 사건	778
다. 송정리 비행장 등	790
4. 광주-장성(광주변전소)	793
가. 제20사단 61연대 3대대의 톨게이트 봉쇄	793
나. 제31사단 광주변전소 사건	793
다. 광주톨게이트 사건	795

5. 광주-담양(광주교도소)	797
가. 제31사단 사건	797
나. 제3공수여단 사건	798
다. 제20사단 62연대 사건	812
라. 담양 제31사단 사건	813
제3절 소결	815

제5장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 819

제1절 연행·구금·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821
1. 조사 배경	821
가. 조사 배경	821
나. 조사 범위	822
2. 조사 결과	823
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823
나. 광주·전남 지역 인권침해 사건	841
다. 전북 지역 인권침해 사건	861
라. 서울·경인 지역 인권침해 사건	879
마. 대전·충청 지역 인권침해 사건	893
바. 강원 지역 인권침해 사건	901
사. 대구·경북 지역 인권침해 사건	910
아. 부산·경남 지역 인권침해 사건	926
3. 소결	939

제2절 국가권력 등에 의한 피해자 탄압	947
1. 조사 배경	947
2. 조사 결과	949
가. 5·18희생자 유가족 및 피해자 단체 탄압사건	949
나. 5·18피해자 수배·학사징계·해직 사건	975
다. 5·18피해자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 사건	1021
3. 소결	1037
제3절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1039
1. 조사 배경	1039
2. 조사 결과	1041
가. 조사대상 사건별 피해 실상	1041
나. 5·18 성폭력 사건의 종합적인 피해 실상	1096
3. 소결	1103
가. 5·18 성폭력 사건 발생과 피해의 특수성	1103
나. 5·18 성폭력 사건 발생과 치유·회복의 책임 주체	1104

제6장 북한군 개입 주장과 5·18민주화운동 왜곡·1107

제1절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	1109
1. 조사 배경	1109
가. 개요	1109
나. 조사 범위	1113

2. 조사 결과	1116
가. 장비 및 전술 관련 주장 검증	1117
나. 5·18 당시 북한군의 남한 내 활동 관련 주장 검증	1138
다. 북한과 5·18 관련 주장 검증	1200
라. 간첩 이창용·손성모 사건	1212
마. 기타 주장 검증	1215
바. 5·18 북한군 침투 주장 관련 조사 TF 조사 결과	1225
3. 소결	1239

제2절 무기 탈취와 시민의 무장

1. 조사 배경	1245
2. 무기고 위치 사전 파악 및 동시 습격 여부	1247
가. 무기고 습격자 62명의 형사기록	1247
나. 시위대 참여 계기	1253
다. 기록으로 확인한 시위대의 차량 시위와 무기고 습격	1258
라. 아세아자동차공장 피탈 차량	1260
마. 무기고 습격 직후 광주공원으로 출발 여부	1263
바. 재판기록에서 확인한 시위대의 무기고 습격 과정	1265
3. 5·18 당시 전남 일원 무기고 습격과 피탈 시간	1267
가. 경찰의 무기 소개 및 경찰서 경비 상태	1267
나. 시위대의 무기고 습격 시간	1276
다. 기타 지역 무기고 습격	1293
4. 시위대의 무기 탈취 방식	1300
가. 기록으로 확인한 시위대의 무기 탈취 방식	1300
나. 전남도청 지하 8톤 분량 군용 TNT 설치 여부	1302
5. 소결	1306

제3절 5·18민주화운동의 은폐, 왜곡, 조작 사건	1313
1. 조사 배경	1313
2. 선행조사 검토	1314
가. 국회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1988-1989)	1314
나. 검찰수사(1995-97)와 대법원 판결(1997.4.17.)	1314
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2005-2007)	1315
라.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2017.9-2018.2)	1315
3. 규명과제	1316
4. 조사 활동	1316
가. 기록 조사	1316
나. 대인조사	1318
5. 소결	1321
6. 진상규명 불능 사유	1323

제7장 결론과 종합권고 · 1327

1. 새롭게 규명한 사실	1329
2. 과제	1332
가.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	1332
나. 5·18민주화운동의 은폐, 왜곡, 조작	1333
다. 희생자 암매장 의혹	1334
라. 군인과 경찰의 사망·상해	1335
3. 국가에 대한 권고	1335

별첨 직권사건 조사결과보고서 현황

순번	조 사 과 제 명	주문요청	위원회결정	의 결
1	(직나-1)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발포경위 및 책임 소재	진상규명	진상규명불능	표결 2 대 7 (진상규명→ 진상규명불능)
2	(직가-2)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 사건	진상규명	진상규명	전원일치
3	(직가의4-3)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진상규명	진상규명	전원일치
4	(직마-4)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의 확인	진상규명	진상규명	전원일치
5	(직가의2-5)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직가의2-5(1) 등 9건 : 진상규명	진상규명	표결 6 대 3
		직가의2-5(2) : 진상규명	진상규명	표결 5 대 4
		직가의2-5(3) : 진상규명불능	진상규명불능	전원일치
6	(직마-6) 5·18민주화운동 당시 탈북자의 북한특수군 광주일원 침투 주장 사건	진상규명	진상규명	전원일치
7	(직마-7)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 사건	진상규명	진상규명불능	표결 2 대 7 (진상규명→ 진상규명불능)
8	(직가-8) 5·18민주화운동 당시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상해 사건	진상규명	진상규명	전원일치
9	(직라-9)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 암매장과 시신의 유기 및 그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	진상규명불능	진상규명불능	전원일치
10	(직나-10)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헬기 사격 사건	진상규명	진상규명	표결 6 대 3

순번	조 사 과 제 명	주문요청	위원회결정	의 결
11	(직나-11) 5·18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 사건	진상규명불능	진상규명불능	합의
12	(직사-13)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작전에 참여한 군과 시위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상해 등에 관한 피해	일부진상규명	진상규명불능	표결 4 대 4 (일부진상규명 →진상규명불 능, 가부동수 부결)
13	(직바-14) 검거 간첩 이창용(본명: 홍종수)·손성모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성 여부 사건	진상규명	진상규명	전원일치
14	(직바-15)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특수군의 광주일원 침투주장 사건	진상규명	진상규명	전원일치
15	(직가의3-17)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연행, 구금, 조사과정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진상규명	진상규명	표결 7 대 2
16	(직가의5-20) 국가권력 등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탄압 사건	진상규명	진상규명	표결 6 대 3
17	(직다-21) 5·18민주화운동 이후 국방부 및 군 기관과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5·18민주화운동의 은폐, 왜곡, 조작 사건	진상규명	진상규명불능	표결 2 대 7 (진상규명→ 진상규명불능)



제1장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배경



제1절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 배경과 연혁

제1장

제2장

1.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운동

제3장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라 한다.)의 설립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희생자 유가족 등 피해자와 시민사회가 전개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운동의 산물이다. 5·18민주화운동이 종식된 이후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 구속 피해자들은 전두환 정권의 지속적인 탄압을 겪으면서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배상과 보상을 요구하는 다양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였다. 나중에 “5월운동”으로 명명된 이 활동은 1980년 대 중반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한 민주화 운동으로 연결되면서 1987년 6월항쟁의 승리를 이끈 원동력이 되었다.

제4장

가. 피해자 단체 결성

제5장

5·18민주화운동 직후부터 희생자 유족, 부상자, 구속자 등 피해자들은 즉각적으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 보상 요구에 나서기 시작했다. 1980년 5월 29일 1차로 129구의 희생자 시신이 망월동 시민묘지 제3묘역에 안장되었다. 합동장례를 치른 유족들은 5월 31일 첫 모임을 갖고 “5·18광주의거유족회”를 결성하였다. 1981년 5월 1주기 추모행사가 경찰 등의 저지로 무산되자 일부 유족들 일부가 약식으로 추모제를 지냈으며, 이 과정에 유족회 간부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2주기 때는 관제 민간단체인 “전남지역개발협의회”가 개입하여 시민들의 추모제 행사 참석을 막았다. 3주기 때는 정보기관과 경찰이 유족들을 연금하고 망월동 묘역으로 가는 도로를 차

제6장

제7장

단하는 등 행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였다. 당시에는 망월동에서 추모제를 지내는 일 자체가 전두환 정권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유족들은 연행, 가택연금, 사찰, 구속 등의 고초를 겪었다. 유족들의 활동은 1989년 국회 광주청문회 증언,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1982년에는 당시 부상 피해자 중심으로 부상자회가 결성되었다. 부상자들은 5·18민주화운동 종료 직후부터 모임을 결성하려고 했으나 당국의 저지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1982년 8월 1일 경찰의 단속을 피한 18명이 부상자들이 모여서 5·18부상자동지회를 발족시켰고 나중에 회원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유족회, 구속자회와 함께 연대 활동을 전개하였다.

구속자 가족들은 1980년 당시 군법회의 재판 개시 이전부터 활동하다가 군사 법정의 1차 공판이 있던 1980년 9월 20일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모인 가족들이 '광주사태구속자 가족회'를 결성하였다. 구속된 가족들의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상호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1982년 12월 구속자 전원이 석방된 후부터는 구속자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다가 1984년에 구속자협의회로 개편되었다. 구속자들은 고문후유증을 비롯해서 이른바 폭동의 누명을 쓰고 취업마저 방해를 받았고, 지속적인 감시와 탄압에 시달려야 했다. 구속자협의회는 이미 결성된 유족회와 부상자회와 함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배·보상 요구 관철 등을 위한 피해자 운동에 앞장섰다.

나. 5월운동의 확산

초기의 피해자 단체 중심의 진상규명 요구는 점점 전국화되기 시작했다. 1980년 5월 30일에 서강대 학생 김의기가 서울 종로5가의 기독교회관 6층에서 '광주항쟁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정부를 규탄하는 유서를 남긴 후 투신자살했다. 그해 6월 9일에는 노동자 김종태가 '광주시민항쟁의 넋을 위로하며'라는 유인물을 남기고 분신자살했다. 9월에 대학

이 개강하면서 전국의 여러 대학에서 5·18 관련 유인물을 뿌려지고 일부 대학에서는 교내 시위가 일어났다. 12월 9일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광주미국문화원에 방화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1981년 전두환 정권의 강력한 공안통치에도 불구하고 대학가는 ‘광주민주항쟁 1주기’ 추도와 ‘파쇼정권 타도’ 등을 내걸고 교내 시위를 벌였으며, 5월 27일에는 광주 출신인 서울대 경제학과 4학년 김태훈이 ‘전두환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투신했다. 1982년 3월에는 부산의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이 일어났으며, 그해 10월 5·18 당시 전남대 학생회장이었던 박관현이 광주교도소에서 단식투쟁 중 사망하자 전남대는 물론 경북대 등 전국 20여 개 대학에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전두환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했다.

1983년 대학가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전두환 정권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유화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1983년 5월 한 달 동안 전국 12개 대학에서 30회 이상의 5·18 관련 시위가 일어나 최소 65명이 구속되고, 13명이 강제 징집됐다. 2학기에는 저항이 더욱 격화되어 부산대, 강원대, 인천대 등 지방소재 대학까지 시위가 확산되었다. 1983년 12월 21일 정부는 학도호국단을 해제하였으며, 시국사건으로 제적된 학생들의 복교 조치와 구속자 석방, 반정부 인사의 복권 조치를 단행했다. 대학 캠퍼스에 상주하던 사복경찰이 철수했고 총학생회가 부활되었다.

1984년 5월에는 망월묘역의 경찰봉쇄가 사라졌으며, 이를 계기로 5·18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참배객 숫자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각지에서 대학생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망월동 제3묘역으로 몰려왔다. 망월동은 이때부터 한국 민주화의 상징적인 장소로 떠올랐다. 5·18희생자 추모집회가 전두환 정권에 대한 새로운 저항운동 양식으로 자리 잡아가기 시작했고, 5·18민주화운동의 유혈진압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도 커지기 시작했다.

1985년 5월 추모제에는 유가족과 대학생,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 재야인사 등 5백여 명이 참석하여 망월동 묘역에서 치러졌고, 추모 행사 후 도청까지 가두행진을 벌였으며, 전국에서 온 대학생 2500여 명이 참석하여 철야농성과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1987년에는 전두환 정권이 4·13 호헌조치 발표 등으로 정치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5월 추모 행사는 망월동 묘역에서 최대규모인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추모 열기는 그해 6월의 대규모 시민항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다. 국회 청문회

노태우 정권은 1988년 1월 16일 ‘민주화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른바 ‘광주사태’를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하고 희생자 및 피해자를 위한 몇 가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른바 ‘광주사태 치유방안’은 진상규명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었고 유족과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책이 대부분이었다. 노태우 정부는 1988년 11월 특별담화에서 ‘광주사태’를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명명하고 보상을 위한 피해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1차로 1,838명이 신고했고 1,473명이 피해 인정을 받았다.

1988년 4월에 실시된 12대 총선에서 3개 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1988년 6월 국회에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이하 광주특위라 한다.)가 설치되었다. 이와 동시에 제5공화국비리특별위원회도 구성되었다. 국회 광주특위의 주요 쟁점은 ① 당시 비극의 원인이 과잉진압인가 과격시위인가, ② 계엄군 집단발포의 명령권자와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가, ③ 미국은 책임이 있는가, ④ 5·18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있었다.

광주특위를 계기로 피해자와 유족들이 청문회에 출석하여 당시의 참상을 증언하자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광주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전두환 등 내란집단의 주요 인물들과 5·18 당시 현장에서 작전 활동을 벌였던 계엄군들은 자신들의 불법적 행위를

일관되게 부인하여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1989년 12월 활동을 마무리한 한 광주특위는 여러 정치적 상황 때문에 당초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마무리되었다.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 세력이 주도한 12·12군사반란과 5·18민주화운동의 관계, 1980년 초에 시위진압을 위한 충청훈련이 강화되었다는 사실, 5·17비상계엄의 전국확대와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집단의 내란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 정도만 확인하였다. 계엄군의 진압작전 전개 과정과 그 피해, 집단학살과 암매장 의혹, 그리고 5·18 당시 미국의 역할 규명에 대해서는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광주특위는 결국 공식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광주특위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묻는 최초의 국가적 조치였고, 향후 전개될 진상규명 활동의 밑그림을 제공하였으며, 무엇보다 5·18민주화운동의 참상이 TV 등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성과가 적지 않았다.

라. 광주문제 해결 5원칙 채택

국회의 광주특위가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1990년에 3당이 합당하면서 거대 여당이 형성되자 진상규명, 가해자에 대한 사법 정의의 실현, 명예회복 조치를 바라는 유족과 피해자를 비롯하여 시민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이러한 충격과 실망감은 사상 최대규모인 10만 명이 모인 1990년의 10주기 행사에서 그대로 표출되었다. 특히 거대 여당이 된 민자당이 8월에 별도 토론 없이 통과시킨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최우선적 과제를 회피하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진상규명이 우선되지 않은 정부의 보상 사업은 여러 문제를 초래했다. 5·18 당시의 피해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닥쳐 보상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와 보상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보상을 거부하는 또 다른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현행

보상법에 따른 금전적 지원의 기준은 국가폭력 피해자로서 그리고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제대로 된 형태의 배·보상으로 볼 수 없다는 비판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이러한 비판은 5·18민주화운동의 비극적 결과에 대한 총체적 진상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정치적 각성으로 연결되었다.

1993년 2월 유가족 등 피해자 단체, 시민사회, 학계가 중심이 되어 채택한 ‘광주문제 해결 5원칙’은 이른바 ‘광주문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책에 대한 강력한 비판에 터 잡아 작성되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배상과 보상, 그리고 정신계승(기념사업)으로 이루어진 5가지 원칙은 피해자 등 민간 부문이 중심이 되어 불행한 과거사 정리를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

이 원칙의 핵심은 진상규명과 사법 정의 실현을 배상과 보상에 앞선 과제로 두었다는 점이다. 진상규명 작업을 통해서 가해자의 책임 소재와 국가폭력의 피해 규모가 확인되고, 사건의 성격 규정이 있어야 배상과 보상의 범위와 정신 계승의 방향이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료하게 제시한 것이다.

마. 사법 정의 실현 운동과 책임자 처벌

1993년 5월 13일 김영삼 대통령은 ‘5월 담화’에서 “광주의 희생이 나라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오늘의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있는 민주정부이다.”라고 선언하고, 피해자 보상, 정신계승과 기념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에 대해서는 “역사에 맡기자”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에 1994년 5월 13일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322명은 전두환·노태우 등 5·18 관련 책임자 35명을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시민단체인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국민위원회’도 동 35명에 대해서 고발장을 제출했다. 1994년 5월 13일에서 1995년 4월 3일 사이에 전두환, 노태우 등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포함하여 피고소, 피고발인 58명에 대하여 총 70건의 고소, 고발장이 접수됐다. 피고발인은 당시 광주에 진압군으로 직접 투입되었던 대대장급 이상의 지휘관을 포함했다.

〈표 1-1-1〉 피고발인 명단

이름	당시 직책	이름	당시 직책
전두환	보안사령관	임수원	제3공수여단 11대대장
노태우	수경사령관	김완배	제3공수여단 12대대장
정호용	특전사령관	변길남	제3공수여단 13대대장
이희성	계엄사령관	박종규	제3공수여단 15대대장
진종채	제2군사령관	김길수	제3공수여단 16대대장
소준열	전교사사령관	이병우	제20사단 60연대 1대대장
박준병	제20사단장	윤재만	제20사단 60연대 2대대장
신우식	제7공수여단장	길영철	제20사단 60연대 3대대장
최 웅	제11공수여단장	차달숙	제20사단 60연대 4대대장
최세창	제3공수여단장	정영진	제20사단 61연대 1대대장
정수화	제20사단 60연대장	김형곤	제20사단 61연대 2대대장
김동진	제20사단 61연대장	박재철	제20사단 61연대 3대대장
이병년	제20사단 62연대장	강영욱	제20사단 61연대 4대대장
권승만	제7공수여단 33대대장	오성운	제20사단 62연대 1대대장
김일옥	제7공수여단 35대대장	이종규	제20사단 62연대 2대대장
안부웅	제11공수여단 61대대장	유효일	제20사단 62연대 3대대장
이제원	제11공수여단 62대대장	김인환	제20사단 62연대 4대대장
조창구	제11공수여단 63대대장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의 이러한 사법 정의 실현 요구는 1994-95년의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그러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서울지방검찰청과 군검찰은 1995년 7월 피해자 단체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했다. 시민에 대한 국가폭력과 그 피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에 머문 결과였다. 검찰의 이러한 결정은 유가족과 피해자뿐만 아니라 불행한 과거사 정리를 통해 민주주의의 심화와 사회발전을 바라던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김영삼 정부는 결국 1995년 12월 21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헌정질서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5·18민주화운동 당시 자행된 부당한 국가폭력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재개된 검찰의 수사와 재판은 당시에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가장 장기간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진행된 조사였다. 검찰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이 행사한 반인도적 만행은 12·12쿠데타에서 시작된 반란과 내란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관련자들을 내란죄, 반란죄, 내란목적 살인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전두환·노태우 등 16명의 피고인은 1심과 2심을 거쳐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 이 중 6명에 대해서는 5·18 사건과 관련하여 내란목적살인죄가 추가되었다.

그러나 1995~1997년 검찰 조사와 재판은 5·18민주화운동의 총체적 진상규명에는 다가가지 못했다. 우선 수많은 인명 피해를 가져온 발포 명령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또한, 진압 작전을 실제로 수행했던 영관급 장교 이하 계엄군에 대한 조사의 부족은 현장에서 자행된 반인권적, 반인도적 범죄 행위와 그 피해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한계는 검찰이 기소된 소수의 반란과 내란 주모자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범죄구성 요건이 충족되면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기도 했다. 당시 검찰의 수사와 재판은 반란과 내란 등 ‘국가에 대한 범죄’가 중심이 된 탓에 민간인 대한 반인도적 행위 등 ‘사람에 대한 범죄’는 제대로 따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1995~1997년 검찰 수사와 재판의 한계는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 뿐만 아니라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의 ‘진실을 알 권리’에 부응하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은폐된 진실과 의혹을 바로잡아서 사회적 화해를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제도적 토대를 갖춘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립 요구로 이어졌다.

〈표 1-1-2〉 12·12 및 5·18사건 피고인별 적용죄명 및 심급별 형량

이름	12·12 및 5·18 당시 직책	적용죄명	심급별 형량		
			1심	2심	3심
전두환	보안사령관, 합수본부장, 중정부장서리	가. 반란수괴 라. 불법진퇴 마.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바. 상관살해 사. 상관살해미수 아. 초병살해 자. 내란수괴 타. 내란목적살인 파. 특가법위반(뇌물)	사형, 추징금 2259억원	무기징역, 추징금 2205억원	무기징역, 추징금 2205억원
노태우	제9사단장/수경사령관	다. 반란중요임무종사 라. 불법진퇴 마.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바. 상관살해 사. 상관살해미수 아. 초병살해 카. 내란중요임무종사 파. 특가법위반(뇌물)	징역 22년 6월, 추징금 2838억원	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원	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원
황영시	제1군단장/육군참모차장, 계엄부사령관	다. 반란중요임무종사 카. 내란중요임무종사 타. 내란목적살인	징역 10년	징역 8년	징역 8년
정호용	특전사령관	다. 반란중요임무종사 카. 내란중요임무종사 타. 내란목적살인 하. 특가법위반(뇌물)방조	상동	징역 7년	징역 7년
허화평	보안사령관 비서실장	다. 반란중요임무종사 카. 내란중요임무종사	상동	징역 8년	징역 8년

이름	12·12 및 5·18 당시 직책	적용죄명	심급별 형량		
			1심	2심	3심
이학봉	보안사 대공처장, 합수부 수사1국장	다. 반란중요임무종사 카. 내란중요임무종사	상동	상동	상동
허삼수	보안사 인사처장	다. 반란중요임무종사 카. 내란중요임무종사	징역 8년	징역 6년	징역 6년
이희성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다. 반란중요임무종사 카. 내란중요임무종사 타. 내란목적살인	상동	징역 7년	징역 7년
유학성	국방부 군수차관보/ 제3군사령관	나. 반란모의참여 다. 반란중요임무종사 차. 내란모의참여	상동	징역 6년	공소기각
최세창	제3공수여단장	다. 반란중요임무종사	상동	징역 5년	징역 7년
주영복	국방부장관	다. 반란중요임무종사 카. 내란중요임무종사 타. 내란목적살인	징역 7년	징역 7년	상동
차규현	수도군단장/ 육군사관학교장	나. 반란모의참여 다. 반란중요임무종사 차. 내란모의참여	징역 7년	징역 3년 6월	징역 3년 6월
장세동	제30경비단장/ 특전사 작전처장	다. 반란중요임무종사	상동	상동	상동
신윤희	수경사 헌병부단장	다. 반란중요임무종사	징역 4년	상동	상동
박종규	제3공수여단 15대대장	다. 반란중요임무종사	상동	상동	상동
박준병	제20사단장	다. 반란중요임무종사	무죄	무죄	무죄

2. 5·18진상규명법 제정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헬기 사격 흔적 확인

2017년 전남도청 근처에 있는 전일빌딩 10층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의 흔적으로 보이는 탄흔이 발견되었다. 2017년 4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라 한다.)은 이 탄흔을 헬기 사격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과수는 4차에 걸친 집중 조사를 통해 “전일빌딩 실내 및 외벽에서 모두 193개의 ‘헬기총탄’ 흔적이 검출되었고, 헬기가 호버링(hovering: 공중정지) 상태에서 고도만 상하로 바꾸면서 사격한 상황에서 생겼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신군부 내란집단이 강력하게 부인한 헬기 사격의 증거가 국가기관에 의해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그리고 국과수의 판단이 사실이라면, 감정 결과는 당시 군부가 발포의 명분으로 내세운 자위권 행사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이를 계기로 헬기 무장을 지시하고 사격 명령을 내린 책임자 규명을 포함하여 당시에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는 더 거세졌다.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당시 각 정당 후보들은 한결같이 5·18정신 계승과 진상규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라는 공약을 제시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진실규명 및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등을 주요 공약으로 삼았다.

2017년 5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여 기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에 있으며 5·18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 헬기 사격 포함, 발포의 진상과 책임 소재 규명 △ 5·18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 왜

곡 방지 △전남도청 복원 △ 헌법 전문에 5·18 정신 수록 등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발포 명령 등 진상을 규명하겠다.”라고 천명하면서 5·18민주화운동의 실상에 대한 재조사 요구가 높아졌다. 2017년 7월 11일 국회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 5·18 당시 사망·상해·실종 등 인권침해 △ 발포책임자 및 헬기 사격 명령자 규명 △ 집단학살지·암매장지·유해발굴·행방불명자 규모 및 소재 △ 1988년 국회청문회를 대비한 5·11 연구위원회의 왜곡·조작 등을 다루며, 조사 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1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았다.

나.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출범과 조사

2017년 8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사령부가 전투기를 동원해서 광주를 폭격할 계획을 세웠다는 공군 조종사들의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제10전투비행단에서 조종사로 근무한 김○○는 전투기가 공대지 폭탄(MK-82)을 장착하고 출격 대기 상태에 있었는데 자신은 그것이 광주를 겨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제보했다. 당시 소위 계급으로 제3훈련비행단에서 조종 교육을 받던 김△△은 5·18민주화운동 기간 중 훈련기인 A-37B에 공대지 폭탄과 12.5mm 기관총이 장착된 장면을 목격했으며, 이러한 무장은 광주의 시위진압과 관련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은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민간인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대량살상 수단인 전투기를 동원하려 했다는 발상 자체가 충격적이어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었다. 이와 함께 ‘5·18 발포 명령 하달 적힌 군 문서 첫 발견’, ‘80년 5·18 출동 헬기 조종사’, ‘기관총 실탄 2천 발 신고 작전’ 등 관련 보도와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었다.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과 ‘헬기 사격 의혹’에 관한 제보와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23일 특별조사를 지시했다. 국방부는 곧바로 <5·18민주화운동

특별조사단>을 꾸렸고 2017년 9월 11일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이하 국방부특조위라 한다.)가 출범했다. 국방부 특조위는 헬기 사격, 전투기 출격 대기와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비문 포함) 및 존안 상태를 함께 조사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 조사에는 2017년 9월 11일부터 2018년 2월 10일까지 5개월 동안 군인 20명, 공무원 8명, 민간인 6명 포함 총 43명의 조사인력이 투입되었다.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를 마치고 2018년 2월 7일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헬기 사격에 관한 물리적 증거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은 존재하였다. △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광주지역에서 공격헬기 500MD 및 기동헬기 UH-1H로부터 헬기 사격이 실시되었다. △ AH-1 J(일명 코브라) 헬기에 의한 사격 가능성도 높다. △ 5·18 당시 존재했던 ‘광주 폭격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지 못했다. △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F-5에 MK-82가 장착된 사실, 제3훈련비행단에서 A-37에 MK-82가 장착되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광주를 폭격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 광주진압 작전계획이 공군에 의한 광주 폭격을 포함한 작전계획 검토 여부는 확정하지 못하였다 등이다.

국방부 특조위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2018년 2월 9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우리 군이 38년 전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역사에 큰 아픔을 남긴 것에 대해 국민과 광주시민에게 충심으로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최초의 국방부 장관 사과였다.

다. 5·18진상규명법의 제정과 주요 내용

2017년 7월에 발의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안」은 5개월이 지나서야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됐다. 법안 발의 이후 김동철 의원의 「5·18민주화운동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및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안, 최경환 의원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이개호 의원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등 4개 법안이 발의되었다. 2018년 2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 4건의 법안을 합친 단일 법안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2017년 연말부터 2018년 초까지 국회는 여야 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서 특별법안은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뒤 후속 절차를 밟지 못했다.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7년 12월 5일 연내에 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공청회를 통한 입법’을 주장하면서 여야 간 협의가 불발되어 2017년 위원회 연내 출범은 무산되었다. 2018년 2월 20일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하고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월 28일 본회의에서 찬성 158, 반대 15, 기권 29로 통과되어 5·18조사위출범이 가능해졌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위원회에 9명의 위원을 두도록 했고 각각 국회의장이 1명, 대통령 소속 정당의 교섭단체가 4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또 조사 기한은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 사망·상해·실종·암매장 등 군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 최초발포·헬기 사격·집단발포 경위와 책임자 규명 △ 행방불명·암매장 소재와 규모·유해수습 △ 군 자료 왜곡·조작 등 사건과 더불어 △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이 법정 조사과제로 포함됐다. 북한군 관련 과제는 당시 야당의 주장에 의해 추가됐다.

3. 위원회의 출범

가. 국방부 5·18 진상규명위원회 설립준비단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법 시행일을 2018년 9월 14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주무부서인 국방부는 2018년 3월 5일 「5·18 진상규명위원회 설치준비 TF」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하였다. 실무작업단은 조사에 필요한 규정과 세칙 마련, 기초 자료 수집, 업무 전산망 구축, 조사인력 충원, 관련 부처간 협력체제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나. 5·18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 공동조사단

특별법 제정에 즈음하여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의혹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당시 심각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이른바 미투(Me-Too) 운동을 계기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여러 증언이 나왔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엄군에게 심각한 수준의 성폭행을 당한 사례가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차○○씨는 505보안대에 끌려가 ‘하얀 속옷이 잉크색으로 변하도록 살이 터지고 피가 흘러 앉을 수도, 누울 수도 없었던’ 고문 행위를 고발했고, 전○○씨는 광주 소재 505보안대에서 ‘개머리판으로 이마를 맞고 손가락 볼펜 고문과 성희롱 발언 등을 당했던’ 인권유린 실태를 폭로했다. 그 당시 여고생이던 ○○○씨가 1980년 5월 19일 광주 근교 남평 집까지 걸어오다 군인 5명에게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기사도 있었다.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의혹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자 진상규명특별법 진상규명 범위에 ‘계엄군 성폭행’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018년 5월 18일 이낙연 총리는 “요즘 5·18의 숨겨진 진실들이 새로운 증거와 증언으로 잇따라 나오고 있어 9월부터 위원회가 가동되면 진실을 완전히 밝혀줄 것”이라고 발언했다. 문재인 대통

령은 「제38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우리가 더욱더 부끄러운 것은 광주가 겪은 상처의 깊이를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 알지 못하고, 어루만져 주지도 못했다는 사실”이라며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성범죄를 정부가 직접 밝혀내겠다”라고 약속하였다.

위원회 발족이 위원 추천을 둘러싼 이견으로 지체되는 가운데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하, 공동조사단이라 한다.)은 2018년 6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하고 성폭력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공동조사단은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등 3개 기관에서 12명이 참여해 10월 31일까지 활동했으며, 계엄군의 성폭행과 관련된 사건을 사전 조사했다. 조사권이 있는 인권위원회가 가해자 조사 및 성폭행 피해 확인 조사를 맡았고, 국방부는 관련 자료를 제공했고, 여성가족부는 피해 신고 접수, 피해자 심리상담, 의료지원 등 분업체계 속에서 공동조사단이 운영됐다. 공동조사단은 2018년 10월 30일에 조사를 마치고 성폭력 피해자가 최소 17명이라고 발표했다. 공동조사단에 신고가 접수된 뒤 상담 과정에서 파악된 사례가 8건, 5·18 당시 구술자료와 유공자 보상심의서류, 각종 문헌 등을 통해 파악된 사례가 9건으로 파악됐다. 성폭력 피해는 주로 공수부대의 축차 투입이 진행되던 1980년 5월 19일에서 21일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 위원회 위원 추천

5·18진상규명법은 발효되었으나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위원 추천을 미루면서 위원회 구성과 활동이 지연되었다. 규정상 국회의장과 여야가 각각 할당된 수의 위원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재가 후 임명하여 2018년 9월 14일까지 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안종철 한국현대사회연구소장(상임), 더불어민주당은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상임), 민병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비상임), 이윤정

오월민주여성회(비상임), 이성춘 송원대학교 교수(비상임)을 추천했고 바른미래당은 오승용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연구교수를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적절한 인물을 찾기 힘들다는 이유로 시한이 넘도록 후보를 추천하지 않음으로써 위원회 구성이 미루어졌다.

성폭력 공동조사단의 발표가 있었던 2018년 10월 30일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조속히 위원 후보를 추천할 것을 촉구했다. 2018년 11월 1일에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자유한국당을 향해 “위원 후보를 추천하기가 여의치 않다면 추천권을 포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를 추천할 생각이 없다면 위원 추천권을 포기하라”라고 촉구했다.

2019년 1월 14일에 이르러 자유한국당이 위원 후보를 추천했다.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변호사 등 3명이다. 자유한국당의 위원 추천은 다른 정당과 피해자 단체의 반발에 부딪혔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추천에 대해 “5·18 명령과 피해자를 모독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추천위원 철회와 추천권 반납 등 공당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논평을 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다른 야당들도 비판대열에 동참한 가운데 5·18민주유공자 3단체와 5·18기념재단 관계자와 유가족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의 추천을 반대했다.

2019년 2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법이 정한 위원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유를 들어 자유한국당 추천 인사 중 권태오, 이동욱 두 후보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재추천할 것을 요청했다. 특별법은 위원자격을 △ 판·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물리학·탄도학 등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국내외 인권 분야 민간단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권태오, 이동욱 두 후보가 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대통령의 임명거부를 ‘국회 무시’라며 반발하는 한편, 민주당 추천 위원 후보 중 일부도 자격요건에 하자를 지니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위원 2명을 재추천하라는 대통령의 요구도 거부했다.

위원회 구성이 지체됨에 따라서 위원의 자격요건을 여야 간 협상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특별법의 몇 가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 위원의 자격요건에 군경력 20년을 포함한 백승주(안)과 피해조사 신청기한을 ‘법 시행 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 이내’로 수정한 김병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백승주(안)은 2019년 4월 15일 발의돼 2019년 9월 24일 국방위를 통과하고, 2019년 10월 24일 법사위를 거쳐 2019년 10월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병기(안)은 2019년 5월 15일 제안, 2019년 8월 21일 국방위 전체 회의, 2019년 11월 14일 법사위를 각각 통과한 뒤 2019년 11월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라. 위원회 출범

백승주(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자유한국당은 2019년 11월 13일 이종협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새로 추천하고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사를 재추천했다. 이동욱 전 기자의 경우 청와대가 ‘법조인이나 교수, 역사 연구가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임명을 거부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이동욱 기자의 연구 활동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자격에 문제가 없다.’라며 다시 추천했다. 최초 추천 인물들에 대해 반대했던 피해자 단체들은 수용 의사를 표명했다.

2019년 12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안중철 전 한국현대사회연구소장, 이종협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서애련 변호사,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

문대학원 교수, 이성춘 송원대학 국방경찰학과 교수(2021.4. 의원면직. 이후 김희송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HK 연구교수가 임명됨), 차기환 변호사,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오승용 전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 등 9명을 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5·18진상규명법 시행일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였다.

4. 5·18진상규명법 개정

가. 1차 개정

2021년 1월 5일 1차 개정법률에 따라 위원회 조사의 시간적·공간적·내용적 범위가 확대되었다. 개정 이전 법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로 규정되어 있던 시간적 범위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로 개정했다.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980년 5월 18일부터 1980년 5월 27일까지 10일간 발생한 사건과 더불어 전후 과정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또한 ‘광주 일원’으로 한정된 공간적 범위를 ‘광주 관련 지역’으로 확대하여 전국 단위의 총체적 조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조사대상과 지역이 늘어나면서 조사 기간 및 조사인력도 확대됐다. 기본 조사기한 2년에 1차에 걸쳐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된 개정 전 법률에 비해 개정법률안은 1년 연장 가능한 횟수를 2회로 확대했다. 위원회의 정원도 50명에서 70명으로 20명이 늘었다.

또한, 개정 전 7개 항목으로 명시된 조사과제가 12개로 확대되었다. 이는 애초 복합적으로 규정된 조사범위가 세분되고, 군·경 피해조사 및 피해자 탄압 등의 조사과제가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자문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직권조사 대상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였다. 암매장된 유해의 DNA 검사 결과가 희생자로 확인될 경우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이미 수집된 자료 및 향후 조사과정에서 생산될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단을 운영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표 1-1-3〉 2021. 1. 5. 개정법안 주요 개정 내용

구분	현행	개정
1.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시간적·공간적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8민주화운동 당시 • 광주 일원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 광주 관련 지역에서
2. 진상규명 범위 확대 및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개 항목 • 조사범위 신규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제1호) - 작전 참여 군과 시위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상해 등에 관한 피해(제11호) 등
3. 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1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각각 1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4. 위원회 정원 증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명
5. 자문기구 설치근거 마련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자문을 위해 위원장이 위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위촉 • 자문기구 구성원(전문위원, 자문위원, 보조 인력 등)
6. 진상규명 직권조사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상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7. 진상규명 신청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구성 후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구성 후 2년
8. 진상규명을 위한 개인정보 관련 자료 요구·처리 근거 마련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 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 관련 자료 제출요구·처리
9. 희생자 유해의 조사·발굴과 유전자 검사 및 손실보상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매장된 희생자의 유해를 조사·발굴하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희생자의 신원 및 유가족 확인 • 희생자로 확인된 경우 국립묘지 봉안·안장 • 유해 조사·발굴 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10. 기록관리단 설치근거 마련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활동 종료 후 국회 동의 얻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5·18 기록물 이관 • 5·18 기록물 수집·보존 위해 기록관리단을 설치·운영

나. 2차 개정

2023년 12월 22일에 5·18진상규명법이 다시 개정되었다. 현행법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위원회 진상규명 활동 기간과 같이 2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활동 기간만큼 연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진상규명 활동 종료 후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에는 위원들의 임기가 보장이 안 되는 입법 미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현행법은 또한 위원회의 진상규명 여부 의결, 범죄혐의 관련 고발 또는 수사 요청 조치 등의 결정이나 처분 등을 한 경우 통지 대상자를 진상규명 신청인이나 당사자로 제한함으로써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을 빠뜨리는 한계가 있었다. 이와 함께 위원회의 종합보고서에 담길 대정부 권고사항의 실질적인 이행을 법적으로 촉구하고 의무화할 수 있는 조항 신설도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위원의 임기를 같이 맞추기 위하여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종합보고서의 작성·보고 종료 시까지로 규정하고, △ 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 진상규명 불능 결정, 범죄혐의 관련 고발 또는 수사 요청 조치 등 위원회가 결정이나 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사실을 신청사건 관련 조사대상자 참고인에게도 통지하도록 하고, △ 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하여 권고사항 소관 국가기관이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또는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표 1-1-4〉 2023. 12. 22. 개정법안 주요 개정 내용

구분	현행	개정
1.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u>활동기간만큼</u>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u>활동기간(제34조제2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작성·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만큼</u>
2. 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제4항에 따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은 해당 권고사항을 <u>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국가기관의 장은 종합보고서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권고사항의 <u>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u>
3. 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u>활동종료</u> 후 3개월간 존속한다.	<u>활동종료(제34조제2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작성·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u>

제2절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업무와 권한

1. 진상규명의 범위

가. 5·18진상규명법 제3조 규정

위원회의 조사 활동은 5·18진상규명법 제3조의 진상규명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다. 5·18진상규명법 제3조는 진상규명되어야 할 의혹과 사건의 범위를 11개 항으로 제시했다. 2018년 법 제정 당시는 7개 항으로 분류되었으나 2021년 1월 5일 법률 개정으로 진상규명 범위가 확대되고 조문이 정비되면서 4개 항이 추가되었다. 진상규명 범위의 확대는 위원회 출범 후 추가적 진상규명에 대한 내외부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다. 법률 개정으로 성폭력 사건, 정신적·신체적 후유증 발생, 5·18민주화운동 이후 피해자 탄압 사건, 진압 작전 과정에서 군과 경찰 등이 입은 피해 등이 진상규명 범위로 구체적으로 적시되거나 새롭게 추가되었다.¹ 법 제3조의 진상규명 범위는 아래와 같다.

- 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살해, 상해 후 사망, 상해, 성폭력 및 정신적·신체적 후유증 발생 등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 ②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연행, 구금, 조사과정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 ③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
- ④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헬기 사격 사건

1 성폭력 사건과 정신적 신체적 후유증 등 발생 등은 개정 전에는 명문화되지 않았으나 위원회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분류해서 법 개정 이전에 이미 직권조사 과제로 조사개시 결정했다. 성폭력 사건은 별도의 과제로, 정신적·신체적 후유증 발생은 민간인 상해 사건의 세부 과제로 편입되었다.

- ⑤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 ⑥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 ⑦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 암매장과 시신의 유기 및 그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
- ⑧ 5·18민주화운동 이후 국방부 및 군 기관과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5·18민주화운동의 은폐, 왜곡, 조작 사건
- ⑨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
- ⑩ 국가권력 등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탄압 사건
- ⑪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작전에 참여한 군과 시위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상해 등에 관한 피해
- ⑫ 기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위원회는 5·18진상규명법 제3조의 진상규명의 범위에 국한하지 않고, 총체적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혹 또는 사건은 제3조 제12호를 적용해서 적극적으로 조사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직권조사 과제 선정과 관련된 결정은 9인으로 구성된 전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나. 시간적·공간적 범위

위원회는 기존의 선행조사와는 달리 진상규명의 시간적·공간적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였다. 이러한 탄력성은 국회가 2021년 1월에 특별법을 개정하여 진상규명의 범위를 확대한 결과이기도 하다. 개정된 특별법은 우선 진상규명의 시간적 범위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로 규정하여 12·12쿠데타, 시국수습 방안 마련, 5·17비상계엄 확대 조치 등 신군부 내란집단이 자행한 일련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도 조사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1980년 5월 27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배되거나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진상규명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규정은 5월 18일에서 5월 27일 사이에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은 그 이전과 이후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인과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1997년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한 결과다.

또한, 조사대상 지역도 광주를 포함한 ‘관련’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여기서 관련 지역은 지리적 인접성뿐만 아니라 사건적으로 연결된 지역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부산, 서울, 강원도 등의 원격지에서 일어난 사건도 5·18민주화운동을 알리기 위한 시위를 하다가 관련자들이 연행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당시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는 5·18민주화운동을 김대중의 지시에 의한 내란으로 규정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 내란 혐의로 연행되고 구속되고 재판을 받았다. 이러한 사건도 위원회 진상규명 범위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조사보고서를 심의 의결하는 위원들 간에 5·18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진상규명의 범위를 두고 여러 이견이 노출되었다. 따라서 진상규명 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관련성의 범위를 두고 이견이 있는 위원들은 소수의견이나 추가의견을 보고서에 병기하였다.

다. 진상규명 사건 유형

위원회는 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직권조사 사건과 신청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각 조사과에 배정하고, 해당 조사과가 사건의 유사성과 연결성을 중심으로 조사 활동을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몇몇 신청사건은 유사한 유형의 직권조사 사건으로 병합되기도 하였다. 특별법 3조의 11개 진상규명 범위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사건들과 쟁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래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표 1-2-1〉 진상규명 과제 유형

사건 유형	세부 과제	5·18진상규명법 제3조
계엄군의 진압작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엄군의 작전 활동 - 최초 발포 경위 - 발포 책임 소재 - 군에 의한 헬기 사격 -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제3항 제4항 제12항
민간인 희생과 피해 (군인과 경찰의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인 사망 사건 - 민간인 상해 사건 -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 -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 행방불명과 암매장 의혹 - 시위진압에 동원된 군인과 경찰의 피해 	제1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11항
중대한 인권침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행, 구금,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 전국 단위 인권침해 사건 -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자 탄압 사건 - 성폭력 사건 	제1항 제2항 제10항
은폐, 왜곡, 조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8민주화운동의 은폐, 왜곡, 조작 사건 -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 	제8항 제9항

2. 조사의 기본원칙

위원회는 2020년 2월의 출범 선언문에서 피해자 중심 조사, 국민과 함께 하는 조사, 그리고 국제규범에 입각한 진상규명 작업 등의 규범적 조사 원칙과 현장의 계엄군 진술 중심의 상향식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천명했다.

나아가 위원회는 조사 활동 결과의 객관성과 보편성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다. 무엇보다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국제적 인권 규범과 기준에 따르는 조사 활동을 전개했다. 위원회는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한 세계의 여러 국가가 과거의 잘못된 유산을 정리하여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고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한 진실화해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위원회는 출범 당시에 유엔 등 국제기구가 권고한 인권침

해 사건 조사 활동 지침과 국제적·국내적으로 운영한 여러 조사위원회의 활동 사례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은 3가지 조사 원칙을 제시했다.

가. 피해자 중심 접근

5·18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희생과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은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서 출발하며, 진상규명 활동의 결과는 피해자 권리 보호와 실효성 있는 구제에 기여해야 한다.² 위원회는 피해자의 진술이 명백한 증거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반박되기 전까지는 그 진실성을 전제하고 피해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 물론 가해자 또는 가해 혐의를 받는 사람도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반박은 이성적이고 공개적이어야 한다.

나. 국제 기준에 부합한 접근

위원회 조사 활동은 유엔 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총체적 진실규명 원칙, 정부의 이중적 지위 감시 원칙, 피해자와 그 가족, 그들이 소속한 공동체 포괄의 원칙 등 국제 기준을 충족하도록 조사를 실시했다.

다. 증거 기반 접근

위원회 진상규명 활동의 결과에 대한 심의와 평가는 ‘합리적 의심’의 수준을 넘는 객관성·일관성·가치중립성이 유지되는 증거에 기초했다. 위원회가 확보한 진술, 증언, 기록

2 이 원칙은 2005년 12월 16일에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피해자 권리 장전”에 따른 것이다.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s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등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은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보편성의 기준과 전문성과 중립성이 인정된 기관의 검증을 준용하되, 증거능력의 수준을 둘러싸고 의견이 충돌할 때는 위원 간 ‘이성적 심의’와 ‘보편적 양심’에 따랐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위원회는 특정 진술이나 기록은 최소한 2건 이상의 교차 진술과 다른 자료에 의해서 확인되었을 때 증거로 인용했다.

3. 조사 활동 절차

위원회 조사 활동은 크게 직권조사 사건과 신청조사 사건으로 구분된다. 직권조사 사건은 특별법 제3조에서 정한 진상규명의 범위 내에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조사개시 결정한 사건을 말한다. 신청조사는 피해자 및 그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제3조의 진상규명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진상규명을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위원회는 21개의 직권조사 사건과 214건의 신청조사 사건을 처리했다. 사건 유형별 조사 활동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전원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었다.

가. 직권사건

위원회 사무처장은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소관 과장과 검토하고, 소관 과는 조사개시 결정 30일 이내에 사전조사를 실시해서 조사개시 여부에 대한 1차 의견을 사무처장에게 보고했다. 사무처장은 이 사전조사 결과 등을 기초로 직권조사 개시 의안을 작성해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상임위원회는 심의를 거쳐서 전원위원회에 상정하였다. 이 조사개시 의안은 조사개시 배경과 이유, 조사 과제, 조사 대상, 조사 방법, 조사 일정 등이 포함되었다.

전원위원회는 상정된 조사 의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제3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상규명의 범위 등에 비추어 적절한가를 심의하여 조사개시 여부를 의결했다. 사안에 따라서 전원위원회는 조사개시 의안에 기재된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의 수정을 요구하거나 수정 후 다시 상정하도록 조치하였다. 전원위원회에서 조사개시가 결정되면 사무처장은 소관 과장에게 세부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였고, 위원회 조사의 총괄계획을 담당한 조사1과는 해당 사건에 고유 번호를 부여하여 과제 카드를 생성하고 조사 활동 과정 등을 관리했다.

담당과는 사건별로 조사 책임자와 조사관을 배정하여 조사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조사 활동은 진술조사, 기록조사, 실지조사 등으로 구분되었다. 조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획득한 조사결과물(진술, 증언, 기록 등)은 조사관이 임의로 인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위원회의 조사 활동을 통제하는 규정에 의거해서 정식으로 등록하고 보고서에 인용했다. 위원회가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등을 조사할 때에는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규칙에서 정하는 양식의 진술조서를 징구했으며, 조사관이 획득한 자료 역시 조사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해서 위원회에 공식으로 등록하고 인용했다.

조사계획에 의해 조사 활동을 종료하면 담당 과장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였고, 사무처장은 조사결과보고서에 기초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보고서(안)을 작성하여 상임위원회를 거쳐 전원위원회에 상정했다. 진상규명조사보고서에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국가 또는 사건 관련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를 포함했다.

위원회는 전원위원회 상정 전에 해당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보고서의 형식적·내용적 완결성을 높이도록 조치하였다. 위원회는 3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했는데, 제1소위원회는 발포 경위와 은폐 왜곡 사건, 제2소위원회는 북한군 개입, 사망, 상해, 성폭력 사건, 제3소위원회는 집단학살, 암매장과 행방불명 등의 보고서를 검토했다. 소위원회는 심의 기구는 아니고, 보고서 내용에 대한 실무적 검토 기능을 담당했다.

소위원회 검토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원위에 상정된 진상규명조사보고서는 ‘진상규명’ 또는 ‘진상규명불능’으로 의결되었다. 해당 보고서가 여러 하위 과제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결정되는 경우에는 ‘일부진상규명’으로 채택되었으며, 수정을 전제로 한 의결도 있었다. ‘진상규명불능’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고서에 명시하고,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친 후에 수정된 보고서를 전원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완결되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의결된 보고서는 최종적으로 위원장의 최종 결재를 거쳐서 공식보고서로 인정되었으며, 의결된 보고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나. 신청사건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를 비롯한 그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제3조의 진상규명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진상규명 신청 기간은 위원회 출범 후 2년 이내로 제한했으며, 진상규명 신청인이 제출한 진상규명신청서는 조사1과가 접수해서 사건 유형을 분류한 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소관 조사과장에게 이첩했다. 신청인은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이 있기 전까지 진상규명 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여 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며, 신청 취하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소관 조사과장은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신청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소관 조사과장은 진상규명신청서 및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서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였고, 전원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각하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사개시 결정하고 해당 과에 필요한 조사를 권고했다. 전원위원회는 위원회에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했다.

담당과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진술서 제출요구·출석요구 등의 조

치 등을 통해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였다. 이 보고서는 전원위원회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진상규명조사 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하고, 진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진상규명 불능’의 사유를 기재하여 결정했다.

위원회는 각하결정, 조사개시 결정, 진상규명 결정, 진상규명불능 결정 등을 한 경우에 통지서 양식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신청인에게 결정통지를 할 때는 이의신청의 제기 및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했다.

신청인은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다. 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소관 조사과장에게 인계하고, 소관 조사과장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이의신청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했다. 사무처장은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또는 기각 여부를 전원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하고 전원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하는 과정을 거쳤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4. 위원회의 조사 권한

위원회는 수사권과 기소권 등 사법기관 고유의 권한 일부를 제외하고 진상규명에 필요한 여러 조사 권한을 부여받았다. 특별법 제27조(진상규명 조사방법)에 의해 위원회가 진상규명 활동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권한은 아래와 같다.

- ①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 ②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 ③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이하 ‘기관등’ 이라 한다)에 대

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 ④ 기관등에 대한 사실조회
- ⑤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 ⑥ 진상규명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및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하는 실지조사

가. 진술조서

위원회가 대인조사를 통해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진술조서를 받았다. 위원회가 대인조사의 증거능력 확보를 위해서 조서주의를 택한 이유는 조사대상자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조사관의 임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엄격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의한 진술조서의 징구가 어렵거나, 조사방식의 형식구비 요건 때문에 조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녹취록 등이 첨부된 진술요지서도 증거로 채택했다.

조사대상자의 진술 청취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에 의해 조사대상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고, 위원회 고유 서식에 의해서 확인을 받았다. 또한, 진술조사는 조사대상자에게 열람케 하는 등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조사대상자가 조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 때는 조서 하단에 “이의 없음”을 기재케 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서 조사기록 목록에 편철해서 영구 보전토록 조치하였다.

나. 출석요구서와 동행명령

위원회는 조사대상자와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도 발부했다. 실제로 당시 인권침해 사건에 책임이 있는 많은 사람이 위원회의 진술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

에 위원회는 487건의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였고, 5건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법적 강제보다는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진술을 유도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진술대상자의 자발성과 양심에서 우리나라의 진술이 신뢰성을 보장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 자료 제출 요구

위원회는 조사 활동에 필요한 자료나 증거를 보유한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서 그 자료나 증거 제시를 요구할 수 있었다. 2021년에는 관련 법이 개정되어 위원회가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기관에 주민등록 자료, 가족관계등록 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되었다. 위원회로부터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관계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라. 압수 및 수색영장 청구 의뢰

2021년 법 개정을 통해서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이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을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었다. 위원회 조사 활동 과정에서 1개 언론사와 2명의 참고인에 대해서 압수 및 수색영장 발부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나, 실제 발부된 사례는 없다.

마. 청문회

위원회는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감정,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청문회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위원회의 의결로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위원회의 청문회 제도는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한 출석 의무 조항과 위반시 벌칙 조항을 명시하여 위원회가 진상규명 활동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를 채택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청문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하지 아니한 증인
- ③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인
- ④ 청문회에 허위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 감정인
- ⑤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위원회 조사활동 과정에서 청문회 개최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논의되었고, 2022년 상반기에는 청문회 준비 기획단이 구성되어 실무 작업을 시작했다. 기획단에서 i)북한개입 설, ii)발포명령자, iii)행방불명자, iv)진압작전의 실상 등으로 청문회 주제를 압축하고 관련 증인, 참고인 선정 작업을 진행했으나, 전원위원회는 주제의 적절성 및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바. 유해발굴 조사

위원회는 다른 법에 우선해서 희생자의 유해발굴과 관련된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는 포

괄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 위원회 출범 당시 민간인 시신 암매장 등과 관련하여 많은 제보 등을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유해발굴 활동과 관련된 입법 조치가 미흡해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다. 2021년 1월에 위원회의 유해 발굴 조사 및 발굴 등과 관련된 조항(특별법 제27조의2)이 신설되면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유해 발굴 활동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희생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농작물·나무 등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이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조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유해를 조사 발굴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게 되었으며, 「장사 등에 의한 법률」에 따른 무연분묘에 희생자의 유해가 매장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해를 발굴 조사를 할 수 있었다.

사. 특별검사 임명 요청

위원회는 특별법 제55조에 의해서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검사의 임명 의결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었다. 특별검사 임명은 조사대상자가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는 위원회가 강제할 법적 수단이 제한되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이다. 조사 활동 기간에 위원회가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동의를 요청한 사례는 없다.

5. 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조치

위원회는 조사 활동의 결과와 권고사항을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함으로써 활동을 종료하지만, 국가기구로서 조사 활동의 결과를 토대로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도 있었다.

가. 고발 및 수사 요청

위원회는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조치는 진실규명이 정의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위원회의 설립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위원회는 2024년 6월 12일 주남마을과 송암동 민간인 학살에 책임을 물어 계엄군 9명에 대해서는 집단살해죄 등으로, 5월 27일 광주재진입작전에 관계된 3개 공수여단장과 제20사단 장교 등 6명에 대해서는 내란목적살인죄를 적용하여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이종협, 차기환, 이동욱 위원은 집단살해죄 고발건 의결에 항의하여 표결에 불참하였고, 내란목적살인죄 고발건 의결에는 표결에 참석하여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나.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치는 관련 공무원들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활동과 관련된 공공기록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조사방해 활동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

다. 피해 및 명예회복 조치

위원회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진실이 은폐되거나 왜곡됨으로써 유죄판결을 받거나 자격 등이 상실 정지된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었다.

라. 가해자를 위한 사면 조치 등

위원회는 진상규명 과정에서 가해자가 가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 인정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해서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고, 형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치는 위원회가 당시 신군부 주요 인사와 현장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진술을 끌어낼 때 효과적인 협상 수단이 되었다.

6. 기록조사와 진술조사 현황

가. 기록조사

위원회는 4년의 조사 활동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수집한 기록은 284만여 쪽에 4.5(TB, 테라바이트)의 분량이다. 이 중에서 일부는 2017~18년의 국방부 5·18민주화운동특별조사위원회에서 넘겨받았고, 나머지는 위원회 출범 후에 위원회가 신규로 확보한 것이다.

당시 청와대, 국방부, 계엄사령부(육군본부), 육군, 공군, 해군 등 각군 사령부, 광주에 파견된 공수특전여단, 제20사단, 제31사단, 전남북계엄분소를 맡았던 전투병과교육사령부, 보안사령부 및 산하 보안부대, 합동수사본부, 중앙정보부, 경찰, 검찰, 전남도청, 광주시청 등 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이 생산하고 보관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목록 중 위원회가 접근가능한 자료는 대부분 수집하고 조사에 활용했다.

또한, 과거 여러 차례에 걸친 진상규명 조사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와 관련 자료도 수집했다. 1988~89년 국회의 5·18광주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생산 및 수집 자료, 1994년 검찰 조사, 1995~1997년의 12·12사건 5·18사건 수사 및 재판기록, 2007년 국

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와 생산 및 수집 자료, 2017년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와 생산 및 수집 자료 등이 그것이다. 특히 위원회는 12·12사건 및 5·18사건 재판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에 걸쳐서 129명의 진술조서를 입수해서 당시 검찰 수사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관련 연구단체와 민간 부문이 생산하고 수집한 기록과 자료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한국현대사회연구소, 5·18기념재단,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등이 수집한 1,800건에 달하는 피해자 증언과 구술을 참조하였다. 1988년 국회 청문회의 증언 속기록도 당시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원자료가 되었다.

위원회는 1990년부터 7차에 걸쳐서 실시된 피해자 보상심의 자료를 광주시로부터 넘겨받아서 당시 민간인 희생 및 인권탄압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사망자, 부상자, 연행 및 구속 피해자 등 3,600명에 달하는 보상기록에 나타난 피해 상황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민간인 사망, 민간인 상해, 연행·구금 등의 인권침해 사건의 실상을 확인하는 원자료 활용했다.

위원회는 당시 미국과 일본 정부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산한 수천 건의 기밀문서를 확보하였다. 서울의 미국대사관과 본국의 국무부 사이에 오고 간 관련 전문 567건, 미국국가기록청(NARA) 보관 미공개 문서 235건, 안보 관련 기밀문서 수집 관련 비정부기구인 National Security Archives가 소장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밀문서 342건을 신규로 입수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외교부·국방부와 협력해서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에 관련 기밀문서 공개를 요청하였는데, 국무부와 지미 카터 도서관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서 총 413건의 기밀문서를 신규로 제공받았다. 2022년에는 위원회의 해외 자료수집단 일행이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지미 카터 도서관을 직접 방문해서 139건에 달하는 관련 문서를 신규로 확보하였다. 또한 일본 외무성이 보관하고 있는 관련 문서 99건도 확보하였다.

〈표 1-2-2〉 위원회가 확보한 자료

기관명		위원회 출범 이전 (출범준비단)	위원회 출범 이후	합 계
총계		1,575	16,354+2.086B	17,929+2.086TB
공공기관	국회	6	7,628	7,634
	검찰	214	231	445
	국정원	20	289	309
	KDA	6		6
	국방부		98	98
	광주광역시	9		9
	전남지방경찰청	2	9+0.01GB	11+0.01GB
	국가기록원	784	2,862+65.59GB	3,646+65.59GB
	통일부 등	1	2	3
	대통령기록관		145	145
	소계	1,042	11,264+65.6GB	12,306+65.6GB
육군	육군본부	7	5+1.02GB	12+1.02GB
	육군기록정보관리단	31	61	252
	군사경찰실	3	7	10
	육군2작사	3		3
육군	육군항작사	9		9
	육군교육사	5	7	12
	육군특전사	1	6	7
	20사단, 31사단	4		4
	소계	63	302+1.02GB	365+1.02GB
해군		19	4+0.2GB	23+0.2GB
공군		66	365	431
국방부직할		258	339	597

기관명	위원회 출범 이전 (출범준비단)	위원회 출범 이후	합 계
합동참모본부	21	9	30
의료기관	3		3
언론기관	9	2,042+19GB	2,051+19GB
교육기관	0	4	4
5·18관련단체	21	168+2TB	189+2TB
과거조사기관	50	1,270	1,320
기타	23	587	610

나. 사건별 주요 수집 자료

1) 계엄군의 진압작전

2020년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을 방문하여 원본 책자, 마이크로 필름(M/F) 등 자료들을 열람하고, ‘육군본부 작전예규’ 등 기밀자료 사본을 입수했다. 아울러 1994~1997년 검찰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축적된 진술조서 등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조사에서 신규 자료로 확보한 「충정부대 방문결과 및 부대동향(1979.3.~1979.10.)」은 1979년 말까지의 충정부대의 범위, 임무, 훈련 등에 대한 월별 점검 및 검열 사실 등을 확인했다.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이관자료 조사에서 「대간첩작전봉쇄대책위원회 규정」 등 6건, 「국가원수 통치 관계 사료 수집 정리계획」 등 10건을 발굴했으며, 보안사령관 겸 중앙정보부장서리 ‘업무일지’를 중심으로 관련 참모총장 ‘동정일지’, 대통령 ‘접견일지’, 특전사령관 ‘광주 행적일지’ 등의 신규 자료를 확보했다.

특수전사령부과 예하 부대인 제3·7·11공수특전여단에 대한 현장 방문 및 자료 조사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출동 당시 제3·7공수특전여단의 사진 및 슬라이드 필름 등의 신

규 자료를 다수 확보하였다. 1980년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광주 도심에서 계엄군과 공동으로 작전을 수행했던 전남도경찰국 산하 15개 경찰서 및 4개 기동중대 등 경찰 관련 자료들 중 「집단사태 발생 및 조치사항(전라남도경찰국)», 「상황 보고», 「무기피탈징계철」 등은 계엄군의 작전활동을 재구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제11공수여단 63대대의 출동병력 및 장비 목록, 진압작전 참가자 수기, 당시 사건과 관련한 505보안대의 내부자료, 광주 동구청 상황일지 등을 입수하여 5월 19일 광주교 앞 최초 발포,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광주역 일대 및 전남대 앞, 도청 앞 발포 상황에 활용하였다.

육군복무규정, 전투준비태세 업무규정, 정보부대 운영규정, 헌병근무규정, 병기탄약보급규정, 감찰규정, 징계규정, 야전예규(육군본부, 제20사단 및 제2군사령부) 등의 기밀 자료를 입수해서 발포 및 소요진압과 관련된 작전이 교범대로 전개되었는지를 확인했다.

또한 1994~1997년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기록의 원형에 해당하는 기록을 형사사법기록관을 통해 확보해서 진압작전과 발포와 관련된 군의 지휘체계와 책임 소재에 대한 당시 주요 피의자들의 진술과 사법적 판단의 근거를 검토했다.

2) 민간인 희생과 인권침해

- 검시 기록 : 민간인 사망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서 당시 지방검찰청이 작성한 시체 검안서를 원자료로 사용하였다. 당시 사망자의 직접 사인은 시신 검시를 통해 판단하였다. 검시는 5월 25일부터 계엄군 통제하에 있던 국군광주통합병원과 제31사단 의무대에서 시작하고³, 5월 27일부터는 광주지검 검사와 군검찰관, 합수단 수사관, 민간 의사, 군의관,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사체검안위원회가 검시를 진행

3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12·12, 5·17, 5·18사건 조사결과보고서』(2007.7.) 기무사 「광주사태의 전모」 광주청문회 대비자료 138쪽.

했다. 이 검시 절차를 토대로 2개 기관의 검시 기록이 작성되었다. 하나는 광주지검의 「광주사태 변사체 검시 보고」이며, 다른 하나는 군검찰의 「광주사태 검시참여 결과보고」이다. 광주지검의 「광주사태 변사체 검시 보고」는 1번 박현숙부터 165번 최열락까지 총 165명의 사망자별로 검시보고요약서, 시신 사진, 세대별 주민등록표, 시체검안서 순으로 편철되었으며, 일부는 병·의원 진료기록, 가족 관계자 진술 등을 추가했다. 군검찰 「광주사태 검시참여 결과보고」는 사망자 159명(방위병 손광식 포함, 경찰 사망자 4명 및 해남 사망자 2명 미포함)에 대한 변사체 인적사항, 시체발견·인도자, 사망 경위, 참여의견 등이 기재된 보고서 각 1장으로 구성되어있다.

- 광주시 5·18보상심위원회 심의 자료 : 위원회는 7차에 걸쳐 이루어진 5·18 피해자 보상심의 자료에서 166명의 사망자, 2,504명의 부상자, 113명의 상이후사망자, 2,600명에 달하는 연행구금자의 피해 실태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의 폭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과 피해 실태를 추정했다.

- 의료기록 : 부상 피해자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희생자의 진료기록부 등의 의료기록은 해당 법률이 정한 보존기한을 경과하여 대부분 폐기된 상태다. 상해자들은 당시 전남대의대병원, 광주적십자병원, 광주기독병원 등 주요 종합병원과 사건 발생 현장에서 가까운 개인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당시 진료기록이 온전히 보관되어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부 기록들이 보존되고 있어 조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5·18전자자료 총서』에 수록된 「부상자 실태조사표」⁴와 전남대의대병원의 「응급환자기록지」

4 당시 전남대의대병원과 조선대의대병원, 광주기독병원, 적십자병원 등 광주 시내 주요 병원을 비롯하여 개인병

등을 참고하였다. 나주에 소재한 국립정신병원도 당시 부상이나 충격 등에 의해 정신질환을 앓았던 환자 기록이 일부 남아 있었다. 또한 『5·18의료활동 I·II』, 『5·18 10일간의 야전병원』, 『5·18의 기억과 역사 10-간호사편』 등 당시 광주시 의료인들의 자료와 증언을 수록한 기술기록집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20년 후 광주민중항쟁 부상자 실상 및 대책」, 『치유되지 않은 5월』(2000년), 5·18기념재단에서 발간한 『5·18민주유공자생활실태 및 후유증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등과 개인 연구자들의 연구 논문 등도 당시 민간인 사망과 부상 실태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 민간단체 생산기록 : 5·18관련 단체를 비롯하여 연구·학술단체 등이 발간한 증언록 등을 참고하였다.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를 비롯하여,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에서 발간한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1990), 전남대 5·18연구소에서 발간한 『5·18민중항쟁 증언자료집 1~4권』, 5·18 희생자 유가족들의 증언을 채록한 『부서진 풍경 1:5·18 정신병동 이야기』(2000), 『부서진 풍경 2:끝나지 않은 5·18 이야기』(2009), 상이 후 사망자 149명에 대한 유가족과 생존 당시 당사자의 증언을 기록한 『꽃만 봐도 서럽고 그리운 날들 2~4권』(2007~2008) 등을 수집하여 조사 참고자료로 활용했다.

- 취재 기록, 영상 및 사진 자료 : 당시 취재 국내 취재진과 한스 힌츠페터, 페트릭 쇼벨, 타임지의 로빈 모이어 등 외국 기자의 5·18 당시 상황을 기록한 취재 수첩, 영상, 사진 등을 참조하였다. 특히 5월 21일 금남로 일대, 5월 27일 전남도청 구내 그리고 사망자가 안치된 각 병원과 상무관 등에 대한 각종 사진 자료들을 통하

.....
원에서 치료한 이력이 있는 상이자 599명에 대한 기록이 있다.

여 시신 수습 경위, 수습된 시신 검시 과정, 사망자 신원 확인 과정 등을 추적했다.

- 국가기록원 보유 자료 등 : 국군보안사령부가 생산한 강제징집 및 녹화공작 관련 개인별 존안 자료와 명부 등 마이크로필름(M/F),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확보한 자료 10건,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생산한 ‘광주사태추가신고자확인조사 결과 외 20건’,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생산한 ‘중요사범 수배자’ 등 200여 건, 대검찰청 등이 생산한 ‘공안사무관계 문서철’ 외 23건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3) 은폐·왜곡 및 조작 관련

5공화국 시절에 운영된 ‘80대책위원회’, ‘육군대책위원회’, ‘5·11위원회’ 등을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로 아래와 같은 기록을 참조하였다.

- 보안사 『제5공화국전사』(1982)
- 육군본부 <광주사태초안> <광주사태와 유언비어> 『계엄사』(1982)
- 안기부 <광주사태의 실상> (1985)
- 국방부 장관 <광주사태전모> 국회 보고(1985.6)
- 육군본부 <광주사태>(제125회임시국회 정책질의답변자료)
- 80위원회 전두환 관련 청와대 문건
<광주사태진상 해외홍보책자 발간계획보고>
- 육군본부 민심부 계엄과 <광주사태 자료정리보고> <현안문제 관련자료>
- 전군지휘관회의 발표자료(1988.7.6.) <광주사태 관련 대비방안, 육군의 기본시각>
- 국방부 511연구위원회 <511 관련자료-상설위원회 설치와 편제>
<광주사태 진상>

- 국방부 <광주사태>(국회답변자료)
- 민심부 계엄과 <증언대비계획 Ⅰ. Ⅱ. Ⅲ> <광주사태체험수기>

<광주사태 관련 문제점분석>

- 보안사 <광주사태 관련 업무보고> <광주사태 대비상의 문제점 검토> <당 사령부 기간중 활동사항>
- 511분석반 <5·18관련 왜곡보도 및 야당측 편파주장 반박자료 조언 결과보고> <광주사태 관련사항 종합분석보고>
- 보안사 3처 <511분석반 운영상황보고>

4) 북한개입설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북한개입설을 검토하기 위해서 주로 아래와 같은 기록들을 수집하고 분석했다.

① 1980년 당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국내 및 미국기관 관련 자료

먼저 우리 군(육·해·공군, 안보지원사, 정보사 등) 및 안보 관련 기관(국가정보원, 경찰청) 자료를 조사, 당시 북한군 침투 또는 대남 도발 등 특이동향 유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우리 군의 경계태세 변동 여부를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각 기관의 상황일지, 첩보, 정보보고서 및 통신 감청과 방탐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현재까지 공개된 미국측 관계기관[주한미군, 주한 미 대사관, 국무부, 중앙정보국(CIA), 국방정보국(DIA)] 작성 보고서 및 본국과 수·발신한 전문 내용을 검토하여 북한군 및 북한 내부의 특이동향 유무를 알아보았다. 또한 이창용(홍종수) 사건 등 당시 발생했던 주요 대공사건(간첩 검거 또는 간첩선 격침 등) 관련 기록물을 조사하여 북한군 침투설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② 북한군 교범, 김일성 저작집 등 북한 자료

국내 유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군 침투전술 교범, 북한군 장비편람 등을 참고하

여 탈북자들이 주장하는 5·18 당시 북한특수군의 광주 일원 침투로 및 침투수단 등의 전술적 타당성 여부를 1980년 당시 상황에 맞추어 분석, 확인하였다.

또한, 탈북자들이 주장하는 북한 내 5·18 기념시설, 기념사업 등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통일부 및 국내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노동신문, 조선중앙TV, 조선중앙통신과 김일성 저작집 등 북한 자료 원문을 확인하였다.

〈표 1-2-3〉 북한특수군 광주일원 침투 주장 사건 기록 목록

연번	구분	내용
1	군 관련 자료	「평시전투전술」(정보사령부, 2012) 「공비침투전술」(육군본부, 1980) 1980년 5월 전후 정세판단자료 정보사령부 대북첩보 합참 북한군 특이동향 정보 보안사·777사령부 신호정보 자료 등
2	정부 측 자료	1995년 서울중앙지검 수사자료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자료 2017년 국방부 특조위 자료 국가정보원 제공자료 경찰청 생산기록 등
3	해외 자료	• 미국문서(5·18기록관) - 팀 셔록 기자 발굴자료 및 주한 미 대사관 제공자료 - 미 국무부와 주한 미 대사관간 수발신 전문 - 국방정보국(DIA) 상황보고 문서 - 중앙정보국(CIA) 정세보고 문서 -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6~10) • 기타 일본 내각조사실 자료 등
4	북한군 침투 주장 탈북자 저서	자유북한군인연합, 「화려한 사기극의 실제 5·18」, 2009 이철산, 「광주 5·18탈북자 증언」, 2012 이주성, 「보랏빛 호수」, 2017 김평강, 「풍계리」, 2017
5	북한 자료	북한군 침투전술 교범, 북한군 장비편람 등 로동신문, 김일성 저작집,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등
6	기타	구술자료: 「5·18민중항쟁사료전집」(현대사사료연구소) 등

다. 진술조사

위원회의 진술조사는 크게 세 유형으로 실시되었다. 첫째는 희생자 유가족, 부상자, 연행, 구금자, 가혹행위 피해자 등 민간인으로부터 광범위한 진술조사를 실행했다. 둘째는 시위진압 현장에 파견된 계엄군을 대상으로 한 진술조사다. 위원회는 현장 계엄군의 진술과 증언을 중심으로 은폐된 진실을 찾는 상향식 조사방식을 택했다. 셋째는 당시 폭력적 진압 작전과 발포 행위를 기획, 지휘, 통제, 조인했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다.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는 현장 계엄군 중심의 상향식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교차검증하는 효과가 있었다.

1) 민간인 조사

위원회는 사망자와 행불자 유가족,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 등 1,158명의 민간인을 면담하여 진술조서, 진술요지서, 영상기록, 녹취록 등을 받았으며, 교차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서 면담 결과를 보고서에 인용하였다. 민간인 조사 결과는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민간인 사망, 집단학살, 상해, 연행·구금, 가혹행위 등 중대한 인권침해의 실상을 확인하는 1차 자료가 되었다.

위원회는 조사 활동 과정에서 유가족 118명, 직접 피해자 777명을 접촉하였고, 주요한 사건을 목격한 118명의 민간인부터 진술과 관련 증언을 확보하였다. 당시 시체 검시에 참여한 의사와 사건처리 등에 관여한 공무원, 법의학 전문가 등 조사 결과의 검증에 필요한 145명의 참고인으로부터 진술과 의견을 청취해서 보고서에 반영했다.

〈표 1-2-4〉 조사과제별 진술조사 현황

조사과제명	유가족	피해자	목격자	기타 (참고인 등)	계
민간인 사망사건	8		19	1	28
민간인 상해사건	4	91	6		101
피해자에 대한 탄압사건	14	74		11	99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11	27	31	27	96
행방불명자 및 압매장지의 규모와 소재,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관한 사항	81	4	12	15	112
연행, 구금, 조사과정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515			515
발포경위 및 책임소재		11	11	2	24
성폭력 사건		22		39	61
헬기 사격 사건			6	22	28
탈북자의 북한특수군 광주일원 침투 주장 사건		6	6	14	26
무기고 피습사건		27	27	14	68
계	118	777	118	145	1,158

2) 계엄군 조사

당시 광주 및 관련 지역 진압 작전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계엄군은 2만여 명에 달했다. 3개 공수여단은 10개 대대 2,405명, 제20사단은 9개 대대 4,946명, 전투병과교육사령부는 28개 대대 11,966명이 투입되었다.

〈표 1-2-5〉 계엄군 동원 현황

부대	대대	인원(장교/병사)	비고(장교/병사)
특전사	제3공수여단	1,477(265/1,212)	10개 대대(504/2,901)
	제7공수여단	872(92/780)	
	제11공수여단	1,056(147/909)	
제20사단	60연대	1,650(87/1,563)	9개 대대(279/4,667)
	61연대	1,620(85/1,535)	
	62연대	1,535(86/1,449)	
	사단 직할	141(21/120)	
전투병과 교육사령부	제31사단	1,422(55/1,367)	28개 대대(3,944/8,022)
	보병학교	2,787(1,923/864)	
	포병학교	2,865(1,165/1,700)	
	기갑학교	2,132(357/1,775)	
	화학학교	328(75/253)	
	직할대	2,432(369/2,063)	
계	47개 대대	20,317(4,727/15,590)	

위원회가 조사방식으로 채택한 아래로부터의 조사가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투입된 병력 중 최소 10%에 해당하는 2,000명 이상을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위원회는 지난 4년의 조사활동 기간 중 당시 신군부 주요 인물, 계엄사령부 지휘부, 현장 지휘관을 비롯하여 시위진압 현장에 직접 투입되었던 사병 약 2,800명을 접촉하였다. 접촉한 인물의 절반 이상이 당시 진압작전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제3·7·11공수여단 소속 계엄군이었다. 이 중 344명으로부터 진술조서, 진술서, 녹취록 등을 받아서 그 결과를 조사보고서에 인용하였고, 1,176명으로부터는 간접 증언과 정보를 수집해서 조사 활동에 참고하였다.

〈표 1-2-6〉 계엄군 조사 현황

소속		진술조사, 진술서/녹 취/녹화	면담/전화	거부	기타 ⁵	소계
핵심인물	조사대상자	59	2	2	0	63
	참고인	0	10		0	10
제7공수여단		33	68	72	0	173
제11공수여단		59	138	0	0	197
제3공수여단		70	229	199	318	816
제20사단	60연대	0	20	1	19	40
	61연대	12	3	1	0	16
	62연대	32	215	129	330	706
전교사	기갑학교	4	25	21	0	50
	교도대대	17	75	36	0	128
	수송대	2	2	2	0	6
	병참근무대	7	14	0	0	21
제31사단		7	193	51	64	315
11병참선 경비대대		10	130	25	76	241
제1항공여단		32	52	0	1	85
합 계		344	1,176	539	808	2,867

3) 진압 작전 및 발포 관련 핵심 인물 조사

위원회는 당시 내란집단과 진압 작전 및 발포와 관련하여 반드시 조사해야 할 인물을 선별해서 별도의 진술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위원회는 조사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1차 대상자로 전두환, 노태우, 이희성, 황영시, 정호용 등 5인 선정하였고, 2차 대상자로 광주 진압작전에 출동한 대대장급 이상 27명, 그리고 3차 대상자로 진압 작전 관련 문서 기안자, 작전장교 및 보안사령부 관련 군인을 25명을 선정하고 조사하

5 기타 인원은 조사관이 대상자의 집에 방문했으나 대상자가 집에 없거나, 거주 불명이거나 5·18 당시 부대에 잔류하고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고 대답한 경우이다.

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25명을 더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위원회가 접촉하고 진술조사를 실시한 주요 인물은 아래와 같다.

〈표 1-2-7〉 핵심인물 조사 현황

구분	이름	직책	조사 방법	일자
신군부 핵심인물	전두환	보안사령관	조사안내서한	2021.09.02.
			출석요구서	2021.09.17.
			방문조사통지서	2021.10.29.
	노태우	수경사 사령관	조사안내서한	2021.09.02.
			법률대리인 면담	2021.09.29.
	이희성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진술조서	2021.11.12.
	황영시	육군참모차장 겸 계엄부사령관	진술조서	2021.11.05.
정호용	특전사령관	1차 서면 진술서	2022.06.27.	
		2차 서면 진술서	2022.08.29.	
육군본부	이종구	육본 작전처장	1차 진술조서	2022.11.09.
			2차 진술조서	2023.04.21.
이상훈	육본 작전처장	진술서	진술서	2022.12.21.
전교사	임현표	교육훈련부장	진술조서	2022.05.06.
	장대순	상황장교	진술조서	2023.06.22.
제2군사령부	김준봉	작전처장	진술조서	2022.07.07.
			국과수 필적 감정 결과	2023.06.02.
	황원탁	부대훈련 과장	통화결과보고	2022.03.17.
	김익성	작전계획장교	진술서 회신	2022.06.07.
	박병찬	진중채의 전속부관	통화결과보고	2022.03.17.

구분	이름	직책	조사 방법	일자
특수전사령부	장세동	작전처장	진술조서	2023.02.03.
	류우식	작전처 작전장교	진술조서	2023.03.15.
	김영조	상황장교	진술조서	2023.03.23.
	인교환	작전장교	진술조서	2023.03.30.
	최건국	작전처 작전교육하사관	진술조서	2022.05.18.
	엄승용	작전처 서기병	진술조서	2022.02.14.
	백명일	작전처장 당번병	진술조서	2023.05.10.
	이상훈	작전교육 하사관	진술조서	2022.11.15.
	윤형렬	작전과 타자병	진술조서	2023.04.26.
제3공수 특전여단	최세창	여단장	진술조서	2022.08.03.
	이경재	여단장 전속부관	진술조서	2022.12.27.
	노상경	민심과장	진술서 회신	2022.07.22.
	임수원	11대대장	1차 진술조서	2022.10.27.
			2차 진술조서	2022.10.28.
	변길남	13대대장	진술조서	2022.10.18.
	김길수	16대대장	진술조서	2022.10.20.
제7공수 특전여단	신우식	여단장	진술조서	2022.08.11.
	김승춘	작전참모	진술조서	2022.08.03.
	박영일	31대대장	진술조서	2022.10.06.
	이종완	32대대장	진술조서	2022.10.11.
	김일옥	35대대장	진술조서	2023.03.13.
	양완식	작전장교	진술조서	2022.09.15.
	박용문	작전장교	진술조서	2022.11.22.

구분	이름	직책	조사 방법	일자
제11공수 특전여단	최웅	여단장	1차 진술조서	2022.11.10.
			2차 진술조서	2023.01.12.
	최익	여단장 전속부관	진술조서	2022.12.20.
	양대인	참모장	진술조서	2022.12.21.
	유상훈	작전참모	진술조서	2022.12.27.
	곽만수	정보참모	진술조서	2023.01.26.
	이상범	군수참모	1차 진술조서	2023.02.16.
			2차 진술조서	2023.02.17.
	안준영	보안반장	진술조서	2023.05.17.
	안부웅	61대대장	1차 진술조서	2022.11.17.
2차 진술조서			2023.12.04.	
보병제20사단	신동훈	정보참모	진술조서	2023.02.21.
	함덕선	작전참모	진술조서	2023.02.21.
	노충현	참모장	진술서	2023.03.15.
	이승식	군수참모	진술조서	2023.04.04.
	정수화	60연대장	진술조서	2023.03.24.
	김동진	61연대장	진술조서	2023.02.08.
	윤재만	60연대 2대대장	진술조서	2023.03.15.
	길영철	60연대 3대대장	진술조서	2023.03.16.
	정영진	61연대 1대대장	진술조서	2022.12.20.
	김형근	61연대 2대대장	진술조서	2022.12.16.
	이종규	62연대 2대대장	진술조서	2023.02.21.
	유효일	62연대 3대대장	진술조서	2023.02.22.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구분	이름	직책	조사 방법	일자
국군보안사령부	허화평	비서실장	진술조서	2023.07.10.
	손삼수	수행부관	진술조서	2023.01.05.
	신경철	수행부관	진술조서	2023.01.04.
	김동화	수행부관	진술조서	2023.01.12.
	허삼수	인사처장	진술조서	2022.04.28.
국군보안사령부	권정달	정보처장	1차 진술조서	2022.12.14.
			2차 진술조서	2023.01.30.
	윤영기	1차 군사정보과장	진술조서	2023.03.29.
	나동식	1차 2과 대기조	진술조서	2022.03.10.
검찰	참고인 김상희	주임검사	진술청취결과보고서	2022.03.07.
	참고인 송찬엽	검사	진술청취결과보고서	2022.02.23.
	참고인 임수빈	검사	진술청취결과보고서	2023.05.24.

7. 사건 처리 현황

위원회는 조사 활동 기간 중 214건의 신청사건과 21건의 직권사건을 처리했다.

가. 신청사건

위원회는 214건(2건은 사건번호 2개 부여)의 신청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다. 접수 건수는 각각 2020년 60건, 2021년 153건, 2022년 3건이다. 접수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진실화해위원회가 2021년에 자체 접수한 신청사건 3건을 2022년 초에 우리 위원회로 이관함에 따라 2022년 집계에 포함되었다.

이 중 91건이 ‘진상규명’되었고, 24건은 ‘진상규명불능’ 결정되었다. 위원회가 각하한

사건은 41건이며, 신청인이 취하한 사건은 47건이었다. 이의신청 후 기각된 사건은 9건, 신청요건의 불비로 반려된 사건은 각각 2건이다.

〈표 1-2-8〉 신청사건 처리현황

구분 2020	접수년도					합계	
	2021	2022	2023	소계			
진상규명	2020	-	-	-	-	-	91
	2021	-	-	-	-	-	
	2022	-	-	-	-	-	
	2023	14	77	-	-	91	
진상규명불능	2020	-	-	-	-	-	24
	2021	-	-	-	-	-	
	2022	-	-	-	-	-	
	2023	12	12	-	-	24	
기각	2020	4	-	-	-	4	9
	2021	2	-	-	-	2	
	2022	-	3	-	-	3	
	2023	-	-	-	-	-	
각하	2020	6	-	-	-	6	41
	2021	4	7	-	-	11	
	2022	1	11	2	-	14	
	2023	5	5	-	-	10	
취하	2020	3	-	-	-	3	47
	2021	2	6	-	-	8	
	2022	-	27	1	-	28	
	2023	5	3	-	-	8	

구분 2020	접수년도					합계	
	2021	2022	2023	소계			
반려	2020	-	-	-	-	-	2
	2021	-	2	-	-	2	
	2022	-	-	-	-	-	
	2023	-	-	-	-	-	
총계		58	153	3	-		214

나. 직권사건

1) 조사개시 결정

위원회는 특별법 제3조에서 규정한 진상규명의 범위를 21개의 직권조사 사건으로 세분해서 조사했다.

위원회는 2020년 5월 11일에 제10차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7개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의결했다. 계엄군의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를 밝히는 과제가 맨 처음 상정되어 조사개시 결정되었다. 이로 인해 민간인 사망 사건, 집단학살 사건, 행불자 규모 및 소재, 성폭력 사건, 북한특수군 침투 주장 사건, 그리고 민간인의 무장 계기가 된 전남 일원 무기고피습 사건에 대한 조사가 차례대로 상정되어 조사개시 결정되었다.

2020년 7월 이후 그해 연말까지 추가로 5개의 직권조사 사건이 전원위원회에서 조사개시 결정되었다. 2020년 7월 20일 제15차 전원위원회에서 민간인 상해 사건이, 9월 28일 18차 전원위원회에서 암매장지 소재 및 유해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이, 10월 26일 20차 전원위원회에서 헬기 사격과 관련된 의혹과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사건이, 12월 28일 24차 전원위원회에서 송암동 및 효천역 인근 지역 민간인 학살사건이, 5월 11일에 조사개시 결정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직권조사 사건으로 조사개시 결정되었다.

2021년에는 9개의 직권조사 과제가 전원위원회에 상정되어 조사개시 결정되었다. 2021년 1월 법이 개정되어 진상규명 범위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조사 수요가 발생하였다. 법에서 진상규명 범위로 정한 북한개입설을 세분화하여 독립된 사건으로 다루면서 과제 수가 늘어났다.

2021년 5월 31일에는 5·18민주화운동 당시에 진압 작전에 투입되었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군과 경찰에 대한 조사가 직권조사 사건으로 채택되었다. 이 사건은 특별법 개정으로 신규로 조사 범위에 포함된 것이다. 2021년 8월 23일 제41차 전원위원회에서는 북한개입설과 관련된 5개의 사건과 연행, 구금,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전국단위 인권침해 사건이 조사개시 결정되었다.

2021년 9월 27일 43차 전원위원회에서는 5·18민주화운동 이후 피해자에 대한 탄압 사건 조사가 조사개시 결정되었다. 이 사건 역시 2021년 1월의 법 개정에 따라서 조사 범위에 포함된 것이다. 2021년 11월 22일 47차 전원위원회에서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은폐·왜곡·조작 사건이 마지막으로 조사개시 결정되었다.

계엄군 발포 사건은 원래 조사1과, 성폭력 사건은 조사3과가 담당했으나, 2021년 1월 조사관이 증원되고 조직이 개편되면서 이 두 사건은 신설된 조사4과로 이관되었다. 2021년 1월 법 개정으로 새롭게 진상규명 대상이 된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탄압 사건 조사는 당초에 조사4과로 배정되었으나, 2022년 1월 업무 조정으로 조사1과로 이관되었다.

최종적으로 조사1과는 민간인 사망 사건, 민간인 상해 사건, 피해자 탄압 사건, 그리고 공군전투기 출격 대기 사건을 담당했다. 조사2과는 집단학살 사건, 암매장과 행방불명 사건, 군경피해 사건을 담당했다. 조사3과는 전국단위 연행구금 사건, 북한개입 의혹과 관련된 7개 사건, 은폐·왜곡·조작 사건을 담당했다. 조사4과는 발포 사건, 헬기 사격 사건, 성폭력 사건을 담당했다.

2) 심의·의결

조사과정에서 계엄군에 의한 송암동과 효천역 인근 지역 민간인 학살사건(직가-12)은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직가-12)으로, 광주교도소 습격 사건(직바-16), 20사단 차량 피탈 및 아시아자동차 차량 피탈 사건(직바-18), 청주시 휴암동 유골 및 연고대생 600명 위장 침투 사건(직바-19) 등 3개 사건은 5·18 당시 북한특수군의 광주 일원 침투주장 사건(직바-15)으로 병합되었다. 따라서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17개 과제에 대해서 조사 활동을 종료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진상규명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위원회 조사 활동 일정에 따라서 모든 직권사건 조사에 대한 심의와 의결은 2023. 12. 26.로 마감되었다. 17개 직권조사 과제 중 11개는 원안대로 진상규명 결정되었다. 6개 과제는 진상규명불능으로 의결되었다. 전원합의가 아닌 표결로 진상규명 결정된 4개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첨부되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헬기 사건(직나-10),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직가의2-5),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연행, 구금, 조사 과정에서 발행한 인권침해 사건(직가의3-7), 국가권력 등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탄압 사건(직가의5-20)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이 첨부되었다. 전원합의에 의해 원안대로 의결된 사건에 대해서도 일부 의견을 달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의 추가의견(별개의견)이 첨부되었다.

진상규명 불능으로 처리된 6개 사건 중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사건(직나-11)과 암매장 사건(직라-9)은 의결서 주문과 같이 진상규명 불능으로 원안 의결되었다. 반면 발포 사건(직나-1), 무기고 습격 사건(직바-7), 군경피해 사건(직사-13), 은폐 왜곡 사건(직다-21)은 의결서 주문이 진상규명으로 상정되었으나 의결 결과 진상규명불능으로 결정되었다. 의결 주문이 진상규명불능으로 결정된 보고서에는 위원들이 작성한 진상규명불능 사유가 첨부되었다.

〈표 1-2-9〉 직권조사별 심의 의결 현황

조 사 과 제 명	주문요청	위원회 결정	의 결
(직나-1)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	진상규명	진상규명 불능	표결 2 대 7 (진상규명→진상규명불능)
(직가-2)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 사건	진상규명	진상규명	전원일치
(직가의4-3)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진상규명	진상규명	전원일치
(직마-4)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의 확인	진상규명	진상규명	전원일치
(직가의2-5)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직가의2-5(1) 등 9건: 진상규명	진상규명	표결 6 대 3
	직가의2-5(2) : 진상규명	진상규명	표결 5 대 4
	직가의2-5(3) : 진상규명불능	진상규명 불능	전원일치
(직바-6) 5·18민주화운동 당시 탈북자의 북한특수군 광주일원 침투 주장 사건	진상규명	진상규명	전원일치
(직바-7)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 사건	진상규명	진상규명 불능	표결 2 대 7 (진상규명→진상규명 불능)
(직가-8) 5·18민주화운동 당시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상해 사건	진상규명	진상규명	전원일치
(직라-9)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 암매장과 시신의 유기 및 그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	진상규명불능	진상규명 불능	전원일치
(직나-10)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헬기 사격 사건	진상규명	진상규명	표결 6 대 3
(직나-11) 5·18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 사건	진상규명불능	진상규명 불능	합의
(직사-13)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작전에 참여한 군과 시위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상해 등에 관한 피해	일부진상규명	진상규명 불능	표결 4 대 4 (일부진상규명→진상규명불능, 가부동수부결)
(직바-14) 검거 간첩 이창용(본명: 홍중수·손성모)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성 여부	진상규명	진상규명	전원일치

조 사 과 제 명	주문요청	위원회 결정	의 결
(직바-15) 5·18당시 북한특수군의 광주일원 침투 주장 사건	진상규명	진상규명	전원일치
(직가의3-17)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연행, 구금, 조사과정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진상규명	진상규명	표결 7 대 2
(직가의5-20) 국가권력 등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탄압 사건	진상규명	진상규명	표결 6 대 3
(직다-21) 5·18민주화운동 이후 국방부 및 군 기관과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5·18민주화운동의 은폐, 왜곡, 조작 사건	진상규명	진상규명 불능	표결 2 대 7 (진상규명→진상규명 불능)

제3절 5·18민주화운동의 배경과 전개 과정

1. 12·12군사반란에서 5·17내란까지

가. 유신의 종말과 민주화의 열기

박정희 대통령은 종신집권을 위해 1972년 10월 17일 이른바 ‘10월 유신’을 선포하고⁶ 같은 해 12월 27일 유신헌법을 공포함으로써 제4공화국이 시작되었다. 유신헌법을 통해 권력을 남용하던 박정희는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40분경 궁정동 안가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격으로 사망하였다.

박정희의 사망을 확인한 정부는 10월 27일 새벽 2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최규하 국무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추대하고 같은 날 오전 4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계엄사령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선포했다.

정승화 계엄사령관은 10월 27일 계엄법 제11조 및 제12조, 총무계획1200(계엄)⁷ 시행계획을 근거로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합동수사기구 설치계획」⁸을 승인

6 1971. 4. 27. 실시된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3선에 성공하지만, 야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아지면서 정권 유지에 불안을 느낀 박정희 정권은 동년 12월 6일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 뒤 박정희 정권은 장기집권의 제도화를 위해 남북의 평화적 통일과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론분열과 국력의 낭비를 막고 국가의 단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1972. 10. 17.에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10·17 비상조치’를 실시했다. 이른바 ‘10월 유신’이다.

7 육군본부 「계엄업무」의 ‘치안업무’에는 합동수사본부(기구) 구성의 근거로 1981. 개정(계엄)법과 ‘총무계획 1200’을 제시하고 있다. 보안사령부의 주요 업무를 연혁으로 기록한 「역사일지」에는 1979. 11. 합동수사본부에 대한 편성개념, 운영지침 등이 기록되어 있다. 합동수사본부는 계엄사령관으로 받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성되었다고 ‘구성 근거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부산지역 계엄사령부에서 편성되기 시작한 합동수사단이 10·26 계엄사령부 직제에 합동수사기구가 공식적으로 구성되는 근거는 1981. 12. 개정된 「계엄사령부 직제」이다. 이 직제에 의해 합동수사본부 설치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되었고 본부장은 국군 보안사령부 사령관이 맡도록 규정되었다. 『부마민주항쟁진상조사보고서』(2022), 425쪽 각주 44 재인용.

8 합동수사기구 설치계획(계엄사령관 결재 1979.10.27.)

했다. 계엄공고 5호를 통해 합동수사본부는 계엄법 제16조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합동수사기구 설치계획」은 합동수사본부가 보안사, 헌병대, 경찰, 중앙정보부, 검찰, 군검찰 등 정보수사기관을 조정·감독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다. 이 ‘설치계획’안에는 수사1국과 정보국, 기획실을 보안사령부가 장악하고, 모든 사건은 사전에 조정통제국의 조정을 받도록 명시하였다. 합동수사본부와 전두환은 ‘10·26’ 수사를 비롯한 계엄정국의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였다.

국무위원들보다 먼저 박정희 사망 사실을 확인한 전두환은 10월 26일 23시부터 24시 사이에 육군본부 보안부대장 사무실에서 박준광⁹ 보안사 법무관에게 ‘합동수사본부 설치안’을 작성하여¹⁰ 계엄사령관의 결재를 받으라는 지시를 하였다. 박준광이 작성한 「합동수사기구 설치계획」안은 10월 27일 새벽 전두환이 정승화의 결재를 받았고, 같은 날 오전 10시10분 ‘계엄공고 5호’를 통해 공포되었다.¹¹ 아울러 전두환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김재규 체포지시를 받은 시각보다 앞서 10월 26일 21시경¹² 보안사 한용원 정보1과장에게 5·16 당시의 국난극복 사례를 종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¹³

합동수사본부는 사건 발생 이틀만인 10월 28일 ‘10·26’ 수사 중간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두환은 이 자리에서 김재규가 자신에 대한 인책 우려와 차지철과의 의견충돌로 박정희와 차지철을 살해했다고 발표하였다. 전두환 자신은 정승화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김재규를 구속 수사하도록 지시받아¹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9 박준광 JTBC인터뷰(2020.5.28.) news.jtbc.co.kr/article.aspx?news_id=nb11952710

10 10·26사건이 일어나자 박준광은 이미 연구해 놓았던 ‘합동수사본부 설치 조직안과 보안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을 겸하도록 만들어 놓은 연구안’을 10월 27일 새벽 2시 이전 전두환에게 보고했다.

11 계엄사(육군본부. 1982.3.15.), 404쪽.

12 서울지방검찰청, 「한용원 진술조서」(서울지검 임성덕 검사, 1996.02.05.), 「12·12 및 5·18관련 수사기록」.

13 서울지방검찰청, 「한용원 진술조서」(서울지검 임성덕 검사, 1996.02.05.), 「12·12 및 5·18관련 수사기록」.

14 전두환은 1996. 5. 20. 재판에서 정승화 총장의 사건 관여 혐의는 있었지만 ‘중간발표가 계엄사령관의 사전검열을 받고 발표하는 것이어서 발표문에 정 총장의 관여 여부를 밝힐 수 없었다’는 요지로 발언했다. 한편 우국일 보안사 참모장은 1996. 7. 1. 법정 진술에서 “합수부 수사회의에서 ‘10·26사건은 김재규 단독범행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증언했다.

유신의 종말로 18년 동안 억눌려왔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급격히 분출되었다. 정치권에서는 유신철폐와 긴급조치 9호 해제 및 정치범 석방 등을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집단 사퇴서를 반려하고 11월 9일 국회 등원을 결정하였다.¹⁵

1979년 11월 10일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유신헌법에 따라 10대 대통령을 선출하고 새 대통령이 조속한 시일 내에 헌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의 특별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야권 및 재야인사들은 즉각적인 거국내각 구성 및 대통령 직접선거를 요구하며 반발하였다.

전두환은 '10·26' 직후부터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두고 있었다. 11월 6일 「박대통령시해사건 전모」 발표에서 합동수사본부는 김재규가 정승화를 사건에 끌어들이는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군부 등이 개입된 사실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합동수사본부는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정승화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¹⁶

나. 12·12군사반란

최규하 대통령이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날(1979. 12. 6.), 전두환은 이학봉 합동수사본부 수사국장에게 정승화 연행 실행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하였다.¹⁷ 이학봉은 경비 병력이 적은 총장공관에서 연행하는 안을 마련해 전두환에게 보고하였다.¹⁸ 12월 7일 전두환과 노태우 제9사단장은 보안사령부에서 연행 일자를 12월 12일로 결정하는¹⁹ 등 정승화 총장 연행과 관련한 논의를 마쳤다. 아울러 전두환은 유학성 국방부 군수차관보,

15 야당인 신민당 의원 66명과 통일당 의원 3명은 김영삼 총재 제명에 항의하며 10월 13일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동아일보』 1979. 10. 13.

16 전두환. 2017. 『전두환 회고록』 자작나무숲, 90~92쪽.

17 전두환. 2017. 『전두환 회고록』 자작나무숲, 172쪽.

18 전두환. 2017. 『전두환 회고록』 자작나무숲, 172쪽.

19 12·12군사반란 모의과정은 「12·12 및 5·18사건 1심 판결문」 12~20쪽을 참조함.

황영시 제1군단장, 차규현 수도군단장, 최세창 제3공수여단장, 백운택 71훈련단장, 박희도 제1공수여단장, 장기오 제5공수여단장, 김진영 제33경비단장 등 하나회 회원 또는 후견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쿠데타 모의를 전달했다.

1979년 12월 12일 19시까지 경북궁 구내 제30경비단장실로 하나회 회원 중심의 수도권 지역 주요 부대 지휘관들이 집결하였다. 전두환은 18시 허화평, 권정달, 정도영 등에게 각급 부대 지휘관의 전화를 도청하도록 지시했고, 보안사 상황실에 본부를 차렸다. 총장 연행에 대응하여 병력출동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전두환은 18시30분 조홍 수경사 헌병단장에게 장태완 수경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 김진기 헌병감을 연희동 소재 한 정식집으로 유인하도록 했다.

그리고 합수부 소속의 허삼수, 우경윤 대령에게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강제연행을 지시했다. 허삼수는 합수부 수사관 7명과 제33헌병대 소속 60여 명의 무장병력을 지휘하여 18시50분 한남동 총장공관에 도착한 뒤 19시10분 경비병력을 제압하고 총격전 끝에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여 19시30분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강제연행하였다.

전두환은 18시20분 이학봉을 대동하고 삼청동 총리공관(임시 대통령 관저)으로 대통령을 찾아갔다.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승화 연행을 재가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최규하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논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²⁰ 전두환은 20시20분 정동호, 고명승에게 지시하여 20시40분 대통령 특별경호대를 무장해제시키고 총리공관을 장악하도록 하였다. 전두환은 유학성, 황영시, 차규현, 백운택, 박희도 등을 대동하고 21시30분 재차 총리공관을 찾아가 최규하에게 재가를 요청하였으나 다시 거절당하였다.

이에 전두환, 노태우, 황영시 등은 제30경비단에 모인 각급 부대 지휘관들에게 국방부

20 최규하 대통령은 전두환의 재가 요청에 대해 국방부 장관의 의견 없이 재가할 수 없다며 거절하였다. 서울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95고합1228 등, 「12·12 및 5·18사건 1심 판결문(1996.08.26)」, 12쪽.

와 육본 점령, 국방부 장관 연행, 수경사령관 체포, 특전사령관 체포 및 경복궁 출동, 중앙청 병력출동, 고려대학교 병력출동 등을 지시하였다. 이 지시에 따라 박희도의 제1공수여단 병력은 12월 13일 01시35분 총격전 끝에 육본과 국방부를 점령하여 02시40분 김종환 합참의장 등 군 장성 8명을 무장해제시키고 03시50분 노재현 국방부 장관을 찾아가 보안사로 연행하였다.

노태우 제9사단장의 지시를 받은 구창회는 03시30분 중앙청에 진주하였다. 이상규 제2기갑여단장의 지시를 받은 김호영은 03시25분 제2기갑여단 제16전차대대 전차 35대와 병력 180명을 인솔하고 중앙청에 진출하였다. 박희모 보병 제30사단장의 지시를 받은 송응섭은 06시20분 제90연대 병력 1,100여 명을 고려대학교 운동장에 집결시켰다.

한편, 연희동 식당에서 전두환을 기다리고 있던 장태완 수경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 김진기 육군본부 헌병감 등은 전두환이 자신들을 유인하기 위해 거짓으로 초청했다는 것과 육군참모총장이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들은 곧바로 자신들이 지휘하는 부대로 복귀하여 총장구출작전을 시도하였다. 즉, 육군 정식지휘계통에서 정승화 총장의 원상복귀를 요구하면서 전두환 등을 반란군으로 규정하고 진압할 움직임을 보였다.

보안사 소속 감청반은 각 부대의 통신망을 도청하여 진압부대의 대처 상황과 병력 배치 등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수경사령관 장태완이 전두환 등을 반란군으로 규정하고, 휘하부대에 진압을 지시하는 등의 대처 상황을 감청반이 감청하고, 이를 경복궁에 모여 있던 반란군 지휘관들에게 보고했다. 수도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수경사령관이 진압작전에 나서면 반란군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경복궁 제30경비단장실 모인 반란군 지휘관(유학성, 황영시)과 수경사령관 장태완 사이에 오간 통화의 녹취록을 보면, 장태완 수경사령관은 “죽기를 결심했다”며 신군부의 회유를 단호하게 뿌리쳤다.

그리고 곧바로 수경사령관은 휘하부대에 ‘반란군’ 진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신군부

가 동원한 병력이 이미 수경사의 방어선을 넘어 사령부를 포위하고 있어서 진압 명령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최세창이 이끈 제3공수여단 2개 대대가 12월 13일 03시 경북궁에 진출하여 사령부를 포위하였다. 조홍 수경사 헌병단장의 지시를 받은 수경사 헌병부단장 신윤희는 헌병 55명을 지휘하여 필동 소재 수경사 사령부를 포위하고 03시40분 장태완 수경사령관을 체포하였다. 결국 신군부에서 보낸 병력들이 무력으로 수경사령관을 연행하면서 수경사의 상황은 마무리되었다.

장태완 수경사령관의 요청을 받은 정병주 특전사령관은 부대로 돌아가 육군참모총장 구출,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방어하라는 명령을 각 공수여단에 내렸다. 그러나 직속부하 박희도 제1공수특전여단장, 최세창 제3공수특전여단장, 장기오 제5공수특전여단장이 반란을 일으킨 신군부와 공모하고 있었으므로 진압 병력 동원에 실패하였다. 특전사 중에서 최정예라고 하는 제1·3·5공수여단이 이미 반란에 가담했으므로 정병주의 대응책도 난감했다. 정병주 사령관은 제9공수여단장 윤희기 준장에게 반란군의 근거지인 제30경비단과 보안사를 공격하라고 지시했다. 윤희기 제9공수여단장은 갑종 출신이라 신군부와 연줄이 없었다. 이 또한 보안사 감청반에 의해 감청되어 신군부 지휘부에 보고되었다. 전두환은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자신들의 반란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직감하고 제3공수여단장 최세창에게 정병주 체포를 지시했다.

최세창은 예하부대 15특전대대장 박종규 중령에게 정병주 특전사령관 체포를 지시했다. 박종규 대대장은 부대원을 이끌고 특전사령관 체포에 나섰다. 체포조가 사령관 사무실로 들이닥쳤다.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인 김오랑 소령은 신군부의 회유를 거부하고 반란군에 맞섰다. 김오랑 소령은 반란군과 교전 중 전사하고 정병주 특전사령관은 팔에 총상을 입은 채 반란군에게 체포당했다.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명령을 받은 제9공수여단 윤희기 준장은 사령관이 피격당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보안사와 경북궁 제30경비단을 공격하기 위해 서울로 진격하였다. 이

를 감청한 반란군은 윤희기에게 “서울 한복판에서 아군인 국군끼리 전쟁을 벌이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우리도 더 이상의 무력동원은 안 할 것을 약속할 테니 진압군 측에서도 9공수를 원대복귀시켜라”는 내용의 상호 신사협정을 제안했다. 반란군이 상호 부대 철수로 유혈사태는 피하자는 기만적인 제안을 윤희기가 수용하면서 진압군의 서울진격은 막을 내렸다.

특전사령관, 수경사령관 등이 반란군에게 체포되고 신군부가 육군본부와 국방부 등을 장악하면서 국방부에 숨어있던 노재현 국방부 장관도 발각되었다. 국방부에서 총리공관으로 이동하던 노재현 장관은 보안사령부 앞을 지나다 하차하여 보안사령관실에서 전두환이 결재를 요구하는 문서에 결재하였다. 이를 들고 전두환과 함께 다시 총리공관으로 이동하여 04시 정승화 연행에 대한 최규하의 최종 결재를 받음으로써 12·12군사반란이 일단락되었다.

12·12군사반란에 성공한 전두환 등 신군부는 다음날인 1979년 12월 13일 아침 육군참모총장에 이희성을 임명하는 등 육군본부 및 군 지휘부의 주요 보직을 군사반란에 적극 가담한 인물들로 교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군권을 장악했다.²¹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에게는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현장 부근에 있었으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김재규와 묵시적으로 내란을 공모하였으며 김재규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것 등의 혐의가 씌워졌다. 참모총장을 구출하려던 제3군사령관 이건영과 특전사령관 정병주도 같은 혐의로 처리되었다.²² 아래의 표는 12월 13일부터 단행된 핵심 보직 인사이다.

21 전두환 등 신군부는 12·12 군사반란이 성공하자마자 다음날인 1979. 12. 13. 아침 곧바로 육군참모총장 이희성, 참모차장 황영시, 작전참모부장 김재명 등 육군본부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고, 3군사령관 유학성, 수도경비사령관 노태우, 공수특전사령관 정호용 등 병력 동원에 관련된 핵심적인 지휘관들을 교체 임명했다. 『동아일보』 1979. 12. 13. ; 『동아일보』 1979. 12. 15. ; 『동아일보』 1979. 12. 18.

22 장태완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회장일 때 만든 책이 『12·12, 5·18실록』이며, 12·12군사반란을 막지 못한 그의 회한이 담겨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12·12, 5·18실록』(1997.).

〈표 1-3-1〉 1979. 12. 13. 이후 육군 핵심 보직 인사

12.12. 직위	계급	이름	12.13. 이후 직위
중앙정보부장 서리	중장	이희성	육군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대장	유병현	합참의장
군수차관보	중장	유학성	3군사령관
제1군단장	중장	황영시	육군참모차장
수도군단장	중장	차규현	육사 교장
제9사단장	소장	노태우	수도경비사령관
제50사단장	소장	정호영	특전사령관
제71훈련단장	준장	백운택	9사단장
수경사 헌병단장	준장	조홍	육군본부 헌병감

다. 민주화의 봄

서울대는 1980년 1월 5일 긴급조치 9호 및 4호 위반으로 구속된 학생들을 신학기에 일괄 복학시킬 방침을 천명하였고 각 대학은 1월 하순 대학별로 조치를 취했다. 국회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가 1980년 1월 16일부터 29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개 도시에서 개헌공청회를 열었다. 정부도 같은 달 중순부터 검토작업에 돌입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개헌을 둘러싼 정치적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1980년 3월 들어 개강과 동시에 학원가는 복학생들과 복직 교수들이 캠퍼스로 복귀하며 활기를 띠었다.²³ 아직 정치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야권 및 재야 정치인들의 회동이 잦아지고 정부와 국회 간에는 개헌 주도권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등 정치 활동이 활발해졌다.²⁴ 3월 12일 글라이스틴 주한미대사는 국무부에 보고한 ‘한국의 안

23 「반가운 그 얼굴 다시」, 『경향신문』 1980. 3. 3. “이번 학기에 복학을 통보받은 학생은 서울대 293명, 고려대 87명, 연세대 56명, 전남대 39명, 한신대 29명, 경북대 28명, 경희대 25명, 서강대 27명, 동국대 18명, 건국대 16명, 이화여대 14명 등 760여 명이며 복직 교수는 19명 선이다”.

24 3. 14. 최규하 대통령은 헌법개정심의위원회 개최식에서 ‘국가권력이 과도하게 대통령에게 집중된’ 정치체도를

정과 정치상황 전개에 대한 추가평가'에서 최규하 정부가 '질서 있는 민주화(Orderly Democratization)'를 추진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하였다. 그는 또 “군부는 통제받지 않은 권력을 향유하고 있으며 특히 전두환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가장 우려스러운 현상”이라며 “그가 중앙정보부로 자신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다음 선거체계에 손을 대려 한다면 커다란 소요사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보고하였다.²⁵

글라이스틴의 우려는 점점 현실이 되어 갔다. 신군부, 특히 전두환은 개헌 논의와 선거 등과 관련하여 학원, 종교계, 노동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고, 정치인들은 집권에만 집착하여 국가 안위를 위협하며, '복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남침투를 자행할 것으로 보았다.²⁶ 또 정치 일정을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과의 공방으로 정국 불안이 조성되고 학원가와 노동계에 영향을 미쳐 사회가 혼란해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3월 중순경 보안사는 이상재에게 K-공작계획을 작성, 실행토록 하였다.²⁷ K-공작계획은 보안사에 언론대책반을 구성한 뒤 언론사 간부급 인사 94명을 대상으로 1980년 3월 24일부터 1980년 7월 공작완료 시까지 3단계로 구분하여 성향을 분석하고 회유공작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재가 기안하고 권정달이 전두환으로부터 결재를 받았다.²⁸ 4월 1일 국방부는 3월 23일 한강하구를 통해 침투하다 사살된 3인조 무장공비 사건을 계

지적하였고(5·18관련 사건 수사결과 발표(1995.07.18.)) 신민당은 3. 15. 민주화촉진대회를 열어 정부헌법개정심의기구 폐지 및 신현확내각 사퇴를 요구하였으며, 김택수 국회개헌특위위원장은 3. 17. 정부와 국회 간 의견조정 기구를 설치하자는 제안을 했다. 『경향신문』 1980. 3. 17.

25 미국 비밀해제문서 T0206_02-한국의 안정과 정치상황 전개에 대한 추가평가.

26 국군보안사령부, 『호랑이일지』(1980), 단위부대장 훈시문(1980.03.27.).

27 서울지방검찰청, 『이상재 진술조서(2회)』(1996.01.09.), 「12·12 및 5·18관련 수사기록」

28 실무적으로는 이상재가 권정달 정보처장 밑에서 K-공작을 실행하였다. 하지만 실상은 보안사 인사처장 허삼수와 조선일보 출신 허문도가 K-공작을 기획했고, 보안사 내에서 대공 업무의 일인자로 알려진 이상재를 발탁해 언론 공작을 수행토록 한 것이다. 서울지방검찰청, 『이상재 진술조서(2회)』(1996.01.09.), 「12·12 및 5·18관련 수사기록」

기로 대간첩 대책회의를 열어 범국민적 대간첩 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등 북한의 동향을 국면전환의 주요 변수로 삼았다.²⁹ 이와 더불어 계엄사령부는 2월 말부터 각 계엄분소에 학원 실태를 분석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리고,³⁰ 3월 학원가 개강 시기를 맞이하여 정보활동을 더욱 강화하며³¹ 주로 학원,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의 움직임에 지속적으로 점검하였다.

3월 학원가는 총학생회 부활과 학원 자율화 투쟁에 집중하였다. 3월 6일 고려대학교는 학도호국단을 불신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연세대학교는 학원민주화추진위원회를 열어 총학생회 부활과 학원 민주화를 요구하였다. 3월 7일 외국어대, 전남대, 제주대에서 학원 자율화 공청회가 개최되었고 3월 10일 원광대는 무능교수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3월 17일 성균관대에서는 군 위탁 교육생 백지화 및 민주회복 총매진 내용의 유인물이 배포되었으며 경희대는 총학생회 회장단 직선을 요구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었다. 경북대 치의대에서는 무능교수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고, 아주공대와 계명대 역시 학원 자율화, 어용교수 배제 등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3월 19일 건국대는 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고, 조선대 복학생 대표 20여 명이 학도호국단 폐지 및 학원 자율화를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전남대는 학원 자율화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3월 20일에 공주사대는 학도호국단 폐지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고 3월 27일 충신대, 성균관대 등 3월 내내 전국의 각 대학은 민주화 열기로 가득하였다. 이러한 학내 민주화 요구는 4월에도 계속되었다.

29 안보소위원회 참고자료. 계엄사령부. 계엄사령부는 격주로 안보소위원회를 열어 국내정세, 국제정세와 더불어 북한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었다.

30 육군본부 상황일지. 1980.2.26. 1:00 학원 실태 분석 특별보고(지시) “3월 초순을 전후하여 각 대학이 개학됨에 따라 제적된 학생들의 복교 분위기에 편승하여 일부 학생들의 현 정치정세 및 시국과 관련한 학원소요 등의 활동이 우려되는 바 각 계엄분소장은 각 기관(보안, 경찰) 정보를 망라하여 시국과 관련한 관내학원 동향을 수집 80.3.10.까지 대외비로 분류 서면보고할 것(중요사항 수시보고)”.

31 국군보안사령부, 「수사 결과를 중심으로 본 광주사태의 진상」.

민주화의 열기와 함께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커졌다. 4월 2일 전국 37개 탄광업체 노동조합 지부 대표 106명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상경투쟁을 벌였다. 4월 7일에 시작된 청계피복노조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노조 측은 이에 반발하여 15일까지 농성을 벌였다. 4월 21일부터 4월 24일까지 강원도 정선읍 사북탄광 광부 3천 5백여 명이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당국과 충돌, 경찰관 1명이 사망하는 이른바 ‘사북사태’(사북노동항쟁)가 발생하였다.

정치권은 주요 인사들의 사면·복권과 함께 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정치공간이 확대되면서 활기를 띠었다. 3월 6일 김영삼과 김대중은 회동을 갖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범야권 협력과 대통령 후보지명 관련 과열경쟁 억제에 합의하였다. 두 김씨는 향후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시점이었다. 3월 12일 김영삼은 대통령 후보 문제보다 개헌과 정치일정에 적극 대처할 것을 당내에 주문하고, 김대중도 본인의 정치활동보다 헌법개정 등 민주제도의 기반 조성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3월 14일 정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개회식에서 최규하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 축소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며 이른바 ‘이원집정부제’ 논란을 촉발시켰다.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10·26사태 이후 폐쇄된 국회를 재개원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신민당은 3월 17일 개헌 논의, 정부 요인들의 유신 옹호 발언 진상규명, 물가, 과도기 강력사건 대응, 남북총리회담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공화당과 유정희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4월 들어 정치권은 범야권 통합 움직임을 보였다. 김대중과 김영삼이 동시에 범야권의 대통령 후보 단일화를 강조하였고 통일당과 윤보선도 후보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4월 4일 두 번째 양자회담을 갖고 야당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에서 표 대결을 하지 않고 상호공존하기로 합의했다. 4월 5일 정부는 개헌 세부 일정을 6월까지 마련하겠다는 일정을 밝혔다. 4월 14일에 이르러 국회 개헌특위

가 여야 간 쟁점을 해소하고 대통령중심제를 기반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하며 정치 일정이 진전되었다.

4월 14일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 서리로 임명되면서 보안사령관을 겸임하게 되었다. 이즈음 학원가의 시위가 점차 가열되자 정치권은 대책 마련을 위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특히 김대중은 임시국회를 열고 ‘계엄령 해제’를 촉구하고 나서 정치환경의 변화를 주장했다. 정부는 4월 18일 제4차 헌법심의회에서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를 혼합한 절충형 정부형태를 제시하고 개헌 일정을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야당 및 재야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정부와 국회 간 대립이 격화된 가운데 김대중은 4. 25.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라. 신군부의 집권 음모

12·12군사반란 이후 신군부는 정권을 장악하려는 준비를 하나씩 진행했다. 무엇보다 신군부의 집권에 가장 큰 반대세력이 될 수 있는 대학가의 움직임에 대비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 2월 5일 15:30부터 16:24까지 청와대에서는 ‘학원소요사태 대비 군 보고’가 이루어졌다. 이 보고에는 주영복 국방부 장관, 이희성 계엄사령관, 전두환 보안사령관, 노태우 수도경비사령관, 최광수 청와대비서실장 등이 참석하였다.³² 학원소요에 대비하는 보고이므로 당연히 들어가야 할 내무부 장관과 문교부 장관은 제외되었다. 아직 겨울 방학인 까닭에 대학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으나 정부와 군, 신군부는 이미 신학기의 ‘학원 소요’에 대비하고 있었다.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취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앙정보부는 「학원대책방향」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³³ 중앙정보부의 「학원대책방향」은 학원 소요가 학내문제

32 청와대비서실, 『최규하 대통령 면접기록부』(1980. 1. ~ 2.).

33 노영기, 2020, 『그들의 5·18-정치군인들은 어떻게 움직였나』, 푸른역사, 79~80쪽.

를 떠나 현실 정치문제를 쟁점 삼아 대정부 전복을 목표로 한 2단계 투쟁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시기별로 부서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1단계(5.7.~5.10.)는 문교부 장관의 경고 담화 발표 및 학생들의 교외진출 저지, 2단계(5.11.~13.)는 주동자 색출 및 범법자 처벌, 3단계(5.14.~5.16.)는 대학 휴교 및 주동자 등 일제 검속 및 계엄사령관 담화 발표, 제4단계(5.17. 이후)는 비상대책을 강구하여 적시에 조치한다는 요지이다.

1980년 4월 30일 계엄사령부는 육군본부에서 전군 지휘관 회의를 열고 시국에 대한 강력대처를 결의했다.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훈시를 통해 학원시위와 노사분규 및 이와 연계된 정치인의 행위를 불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힘의 행사가 불가피할지도 모를 시기에 대비해서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경고했다.³⁴ 이와 관련, 전군 지휘관 회의를 취재한 군 출입기자들은 이날 회의가 전두환과의 교감³⁵이 있었는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군의 경고에 대해 “한마디로 무서운 느낌이 든다”고 표현했다.³⁶

서울대 총학생회와 학생 1,300명은 5월 1일 ‘현 시국과 민주화 투쟁의 천명대회’를 열고 ‘계엄령 철폐’, ‘병영집체훈련 반대’ 및 ‘신현환, 전두환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교내시위를 벌였다. 성균관대생 400여 명도 이날 ‘구체제 물러가라’며 시위를 벌였고, 충남대생 1,300여 명도 ‘유신잔당 퇴진’, ‘계엄해제’를 외치며 대전역으로 진출하여 시위를 이어갔다. 서울지역 10개 대학, 지방 10개 대학에서 시위와 농성이 이어졌다. 5월 들어

34 계엄사 전군 지휘관 회의 보도계획, 1980. 4. 30. 계엄사령관 훈시요지 “다. 당면한 문제와 계엄군의 행동방향으로서...둘째,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노사분규와 집단활동은 용납되지 않으며 군은 사태 진전을 주시하면서 힘의 행사가 불가피할지도 모를 시기에 대비해서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일부 정치인이 학원사태 또는 사회단체와 연계를 맺어 교묘한 방법으로 정치 행각을 일삼은 것을 용납할 수 없다.”.

35 전두환 중앙정보부장 서리는 4. 29.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개인적으로 계엄 조기해제를 바라지만 자신의 권한 밖”이라며 “조사 결과 여권 주도 신당설도 낭설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경향신문』 1980. 4. 30.

36 계엄사 전군 지휘관 회의 보도계획, 1980. 4. 30. 군 출입기자 반응. “1. 계엄지휘관 회의는 중정부장 발표와 일련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2. 단호히 조치하겠다는 것은 어떠한 조치를 말하는가. 3. 현재 계속되고 있는 학원사태와 노사문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4. 이번 회의의 일정을 앞당긴 것은 서울대 병영집체훈련 때문이 아닌가. 5. 이번 발표내용은 한마디로 무서운 느낌이 든다.”.

각 대학에서는 학원 민주화를 넘어 계엄 해제와 전두환, 신현확 퇴진 등 정치적 요구가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5월 2일 서울대 총학생회는 5월 2일부터 5월 13일까지를 민주화 투쟁기간으로 정하고 교내시위와 철야농성에 돌입하였다. 전국 학원가의 투쟁 방향이 계엄 해제 및 신군부의 정치개입 반대와 정부 주도 개헌 중단 등의 정치적 문제에 집중되었다.³⁷ 이후 서울과 지방의 각 대학에서 연일 시위와 농성이 이어진 가운데 5월 7일 연세대 교수들은 ‘민주화를 위한 교수선언문’을 발표하고 비상계엄 조속 철폐를 주장했다. 또 외국어대 교수들도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 벽보를 작성하고 비상계엄 해제 및 민주화의 조속 실천을 주장하는 등³⁸ 군부의 2선 후퇴 요구가 점점 더 확산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 같은 요구에 응답하였다. 5월 6일 최규하 대통령은 월례 국무회의에서 개헌에 정부 구상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신민당은 학생소요와 관련, 9개 대학과 문무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조사보고서에서는 학생들의 시위 원인을 “계엄을 이유 없이 장기화시키고, 과도정부가 개헌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계엄령을 즉각 해제하고 국회가 마련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대중도 5월 9일 경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를 향해 계엄해제를 요구하고 신민·공화 양당에는 즉각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계엄해제에 관한 입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5월 10일 최규하 대통령은 5월 17일까지의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 순방 길에 올랐다. 신민당과 공화당은 12일 여야 총무회담을 열고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의 회기로 제104회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할

37 5·18관련 사건 수사결과 발표(1995.07.18.) 25쪽, “5.1. 서울대 총학생회는 철야회의 끝에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의 정치개입이 민주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이유로 입영훈련 거부투쟁을 철회하는 대신, 계엄령 즉각 해제, 유신잔당 퇴진, 전두환·신현확 사퇴, 정부 주도 개헌 중단과 노동 3권 보장 등 정치문제를 내걸고 본격적인 정치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

38 보안사 상황보고 1980. 5. 7.

경우 정부는 조건 없이 이를 해제해야 하므로³⁹ 임시국회 소집은 신군부와 정치권 및 시민사회 간에 민간한 사안이었다.

4월 14일 중앙정보부장 서리로 임명된 전두환은 4월 21일 중앙정보부 부서장 회의를 소집하여 언론과 종교 분야 관련 정보활동 및 비협조적인 인물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주문했다. 4월 29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보안사와 중앙정보부장 겸임에 따른 권력집중 의혹은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학원가에서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는 주장이 확대되었고 미국도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 카터 대통령은 5월 1일 백악관에서 오히라 일본 수상을 만난 자리에서 “10·26사태 이후 한국 군부의 안정이 한반도 안정의 요체임을 확인”했다. 5월 9일에는 글라이스틴 주한미대사가 전두환을 만나 학생시위에 군부대를 사용하려는 계획에 우려를 표시했지만, 불가피할 경우 한국 군부의 군부대 사용계획을 양해하였다. 전두환은 글라이스틴에게 군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⁴⁰

계엄 해제 요구가 거세지고 점차 군부의 영향력이 배제되는 환경으로 변화되자 전두환 신군부는 ‘시국수습방안’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였다. 시국수습방안은 “실질적으로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⁴¹, 국회해산, 비상기구의 설치, 정치활동의 금지 등의 방안을 가지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시민들의 저항을 조기에 진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계엄사령관이

39 「계엄법」(법률 제69호 1949.11.24.) 제12조(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국회의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40 1980. 5. 대한민국 광주에서 일어난 제반 사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성명서 “미국 관리들은 학생시위를 다루는데 있어 경찰을 지원하기 위해 군부대를 이용하려는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보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5. 8. 글라이스틴 대사는 미국 측의 이러한 우려를 한국 정부 관리들에게 강조하라는 미국 정부의 지시를 받았다. 5. 9. 글라이스틴 대사가 전두환 장군을 만났을 때, 전 장군은 소수가 ‘소수의’ 과격파 학생, 교수 및 야심적인 정치인들의 탓이라고 그들을 비난했다. 전 장군은 그러나 정세가 위급한 상황은 아니며, 군사력은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41 「계엄법」(법률 제69호, 1949.11.24.) 제9조(계엄실시에 관한 지휘감독)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서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단,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대통령과의 직보체계를 갖게 함과 아울러 광범위한 행정사무·사법사무를 담당케하고 계엄해제 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며”, 한편으로 “대통령을 보좌하여 행정부의 업무와 계엄업무를 조정·통제한다는 미명 하에 비상기구로 행정부의 권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준비하여 놓고, 이와 같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시위를 조기에 강경하게 진압하고자 계엄군을 증파 투입하고 조기 시위진압 명분”⁴²으로 삼았다.

1980년 5월 4일경 권정달은 서울 궁정동 소재 안가에서 노태우, 유학성, 황영시, 이학봉, 차규현, 허화평, 허삼수, 정호용 등이 모인 자리에서 시국수습방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동의를 구하고 이를 5월 12일 전두환에게 보고했다.⁴³ 5월 4일 서울대 총학생회는 5월 13일까지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강력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전두환은 학생시위 배후 조종자 조치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보안사에 하달했다. 권정달 보안사 정보처장은 정보처 내 정세분석반⁴⁴을 지휘하며 시국수습방안이라는 정국 장악 시스템을 설계했다.⁴⁵ 국회해산으로 민주헌법 개정 및 민간정권 수립의 기회를 원천차단하고 비상계엄 전국확대로 계엄의 강도를 높여 학생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저항을 진압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비상기구 수립으로 유명무실한 대통령과 정부를 대체함으로써 정치권, 시민사회, 정부 등 정국의 주요 부문을 온전히 군이 통제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12·12군사반란으로 군의 핵심을 장악한 신군부는 이미 K-공

42 서울지방법원 제30부 형사부 판결, 「12·12 및 5·18관련 판결문(1심)」, 38쪽. 동 사건의 대법원 판결(대1997. 4. 17. 96도3376), 41쪽 이하 참조.

43 서울지방법원 제30부 형사부 판결, 「12·12 및 5·18관련 판결문(1심)」.

44 서울지방법원 제30부 형사부(12·12 및 5·18관련) 증인신문, 「권정달 제2회 진술(1995.05.23)」,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관계기관의 실무자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는 기구로 정보·수사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구성원은 안기부 현홍주 정보국장, 법무부 문상의 검찰국장, 치안본부 유희수 제3부장, 문교부 최열곤 대학교육국장, 문공부 황선필 공보국장, 경제기획원 김재익 경제기획국장 등이었습니다”.

45 권정달은 1995. 3. 14. 검찰 진술에서 ‘비상계엄 전국확대’, ‘비상기구 설치’, ‘정치활동에 대한 규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서울지방법원 제30부 형사부(12·12 및 5·18관련) 증인신문.

작계획⁴⁶을 시행하며 언론계에 대한 공작을 추진하고 저항적인 종교계에 대해서도 중앙정보부가 ‘특별조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신군부의 시국수습방안은 점점 가시화되어 갔다.

마. 서울역 회군

5월 12일 여야 정치권은 5월 20일 임시국회를 열기로 하고 대학가는 과격한 시위를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나타나기도 했다. 13일 0시를 기해 주요 관공서와 언론사에 군대가 배치되고, 국방부가 대간첩 작전태세 강화지시를 하달한 가운데⁴⁷ 13일 오후부터 다시 학생들이 가두시위를 벌였다.

5월 13일부터 활성화된 대학가의 가두시위가 14일과 15일까지 이어지며 절정을 이루었다. 13일 밤부터 광화문에서 대학생 가두시위가 벌어진 데 이어 각 대학교에서 철야농성이 이어졌고 14일 낮에도 서울 시내 곳곳에서 수많은 대학생이 “전두환 물러가라”, “비상계엄 해제하라”, “이원집정부제 구상을 즉시 철회하라”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날 서울 시내 21개 대학 및 지방의 11개 대학 10만여 명이 거리로 나왔다. 5월 15일에도 서울과 지방의 9개 대학 학생 10만여 명이 거리시위를 이어갔다.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정부와 정당들은 14일 각각 대책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정치 일정 단축 등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5월 15일 서울역에는 10만여 명의 대학생들이 집결했다. 광화문 일대에는 계엄군의 탱크가 진주해 있었다. 학생들에게 군인들을 실은 트럭과 장갑차가 서울 곳곳에 집결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대가 곧 들어올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오후 6시경 시위대가 빼앗은 버스 한 대가 전경 저지선을 덮쳐 전경대원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

46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민주화운동』(2021), 60~61쪽.

47 국방부 대간전 제49호 (국방부명령서).

였고, 저녁 8시경 신현확 국무총리가 ‘연말까지 개헌안 확정, 내년 상반기까지 양대 선거 실시’라는 민주화 일정을 발표하며 해산을 종용하였다. 시위 현장에서 각 대학 총학생회장 연석회의가 열렸다.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과 충돌할 경우 대규모의 유혈사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8시 30분경 가두시위를 해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른바 ‘서울역 회군’이다.

5월 16일 오전 김대중과 김영삼은 비상계엄 즉시 해제, 정치 일정 연내 완결 등 6개 항의 시국수습대책을 공동발표하였다. 국민연합은 민주선언촉진대회를 열고 비상계엄 즉각 해제, 신현확 내각 총사퇴, 연내 정권 이양 등을 촉구하고 19일까지 정부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22일 정오 대규모 민주화촉진국민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천명했다. 5월 17일 민관식 국회의장 대리가 황낙주 국회의원 등 186명의 요구를 받아들여 5월 20일 10시 제104회 임시국회 소집을 공고하면서 계엄해제 및 정치 일정 단축 등 주요 현안을 풀어낼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바.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신군부는 1980년 초반부터 비상계엄 전국확대에 대비하였다. 3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 수도권경비사령부에서는 충정훈련을 시연한 뒤 1차 충정회의가 열렸다. 노태우 수경사령관, 정호영 특전사령관과 제1공수여단, 제3공수여단, 제5공수여단, 제9공수여단장, 제20사단, 제30사단, 제26사단장 및 각 부대의 작전참모, 치안본부장과 서울시 경찰국장 등이 참가하였다. 이 회의는 수도권 소요사태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다중의 집단이 사회 법질서를 파괴할 목적으로 폭도가 될 경우, 군과 경찰이 공세적으로 진압하여 시위대를 와해시키고 재집결을 분쇄하며 주모자를 체포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태에 대비하여 신군부는 군 투입을 준비하고 있었다.

5월로 접어들면서 학생들의 민주화 요구 시위는 더욱 거세지고, 정치권에서는 임시국

회 소집으로 정국 타개책을 모색하였다. 신군부는 국회가 열리고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경우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강경대처를 준비했다. 신군부가 가장 먼저 꺼낸 카드는 북한 남침설 유포였다.⁴⁸ 아울러 민주화운동을 사회 혼란으로 규정하였다.

신군부는 그들이 작성한 ‘시국수습방안’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5월 16일 전두환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17일 열기로 하고 주영복 국방부 장관에게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즈음 미국은 신군부가 김대중을 체포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징후를 포착했다.⁴⁹ 일정을 하루 앞당겨 귀국한 최규하는 당일(16일) 23:00 주영복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북괴 남침설’을 다룬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다음날 열릴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전두환은 뒤이어 열린 청와대 심야회의에 참석하여 최규하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요구했다.

5월 17일 21:42~21:50까지 8분간 수경사 병력의 삼엄한 경비 속에서 신현확 국무총리와 17명의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2회 임시국무회의가 열렸다. 임시국무회의는 ‘현재 북괴의 동태와 전국적으로 확대된 소요사태 등을 감안’하여 ‘비상계엄선포지역을 1980. 5. 17. 24:00 기하여 전국 일원으로 변경’하는 비상계엄선포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5월 18일 새벽 1시,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계엄포고령 제10호」를 발령했다. 계엄포고 원안은 보안사에서 입안하여 계엄사령부로 전달되었다. 주요 내용은 ①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② 언론·출판·보도 및 사전검열, ③ 대학 휴교 조치 ④ 직장이탈 및 파업행위 일체 불허, ⑤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 금지, ⑥ 옥내외 집회·시위 및 전·현직 국가원수 비방 금지 등이다. 아울러 김종필 등 권력형 부정축재자와 김대중 등 소요배후 조종자 26명을

48 『동아일보』 1980. 5. 14.

49 미국 비밀해제문서. 미 국무부, “○○○는 적어도 다음 주에는 김대중이 체포될 것이라고 함...군 지휘부 역시 이 가능성(김대중이 체포되면 학생들 사이에 심각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알고 있으리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음. 만약 군 지휘부가 학생들의 반응을 자극하고 싶다면, 김대중을 체포하는 것이 좋은 전술이 될 것임”.

연행하였다.

최규하 대통령은 5월 18일 특별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는 특별성명에서 “국내적으로는 계속되는 사회 혼란을 이용한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적화책동이 날로 격증되고 우리 사회 교란을 목적으로 무장간첩의 지속적인 침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학원의 소요사태 등을 고무, 찬양, 선동함으로써 남침의 결정적 시기 조성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면서 학원의 민주화 요구 시위가 마치 북한과 관련된 것처럼 규정하였다. 이는 당시 신군부의 주장과 궤를 함께 하고 있다.

1980년 5월 17일 비상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전국확대가 의결되기 전인 20:00에 제2군사령부(사령관 진종채)는 전북 익산군 금마에 주둔하고 있는 제7공수여단(여단장 신우식)에게 다음날인 5월 18일 02:00까지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를 점령하고 04:01까지 소요 주모자를 전원체포할 것을 지시했다.⁵⁰

이에 앞서 17:30 제2군사령부는 각 관구 G-3 및 해병대사령부와 제7공수여단에 부대 이동 및 작전준비를 지시하고⁵¹ 19:15 충청작전 지시 80-2호를 통해 5월 18일 00:01부로 불순분자를 체포하고 5월 18일 04:00 이전에 학교를 점령하라는 지시를 재차 하달했다. 제7공수여단 병력은 국무회의가 끝날 즈음 22:00 33대대(대대장 권승만) 45/321명과 35대대(대대장 김일옥) 37/283명이 22:00 광주로 출동하였다. 5월 18일 02:30까지 33대대 366명이 전남대학교와 광주교육대학교, 35대대 320명이 조선대학교와 전남대의대를 각각 점령했다. 제31사단은 KBS광주방송에 2/40명, 광주MBC에 1/20명, CBS에 1/10명, VOC전일방송에 1/10명, 동신전문대 3/29명, 대건신학대 3/29명, 서강전문대 3/32명, 성인경상전문대 2/47명, 기독교간호전문대 3/35명, 송원전문대 2/47명, 호남신학대 3/42명, 서원보건전문대 3/35명 등 광주 시내 방송국, 전문대학과 그 외 보안 목

50 서울지검 5·18관련 수사 결과, 1996. 1. 23. (서울지방법원 제30형사부 판결, 12·12 및 5·18관련 판결문(1심))

51 5·17조치 이후 군 이동 상황은 육군본부, 『육군사』(1980.), 787쪽 재인용.

표에 14/1,132명의 병력을 배치했다. 전남대 앞에는 경찰 724명이 투입되었다.⁵²

사. 5·18민주화운동 직전 광주 상황

1980년 초에 들어서면서 광주·전남지역도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민주회복과 학내 민주화를 염원하는 시위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학생 운동은 전남대학교를 중심으로 확산했으며, 조선대학교 등 사립학교에서는 사학재단 비리 척결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전남대학교 학생들은 1980년 초에 총학생회 부활을 위한 준비조직으로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4월에 총학생회 구성을 위한 선거를 시행하여, 전남대 법학과 3학년 박관현이 총학생회장에 당선되었다. 전남대학교 총학생회는 어용교수 퇴진과 병영집체훈련 거부 등 학생들이 가장 시급하게 여기고 있는 학교 내 현안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5월 초를 분기점으로 학내문제에서 계엄령 해제와 민주화 일정 제시 등 정치문제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신군부의 정권찬탈 음모 소식이 전달되면서 위기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전남대학교 총학생회는 5월 6일에 비상학생총회를 개최하여 5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을 ‘민족민주화성회’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5월 8일 전남대학교 교정에서 열린 제1차 ‘민족민주화성회’에서는 전남대 총학생회와 조선대 민주투쟁위원회 공동명의로 제1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문은 5월 14일까지 ‘비상계엄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대학에 휴교령을 내린다면 온몸으로 거부할 것이며, 양심 있는 교수들의 적극적 동참을 호소하였다.

5월 14일 ‘민족민주화성회’ 마지막 날, 5월 13일 서울지역 대학생들이 광화문과 서울역 광장으로 진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전남대와 조선대도 적극적인 가두진출을 시도하

52 광주 상황은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12·12, 5·17, 5·18사건 조사결과보고서』(2007.), 60~61쪽.

였다. 그날(14일) 오후 2시 총학생회의 지휘 아래 전투경찰대의 저지를 뚫고 교문을 돌파한 전남대생 7천여 명은 오후 3시에 도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강행하였다. 학생들은 도청 분수대 광장에서 민족민주화성회를 진행했다. 대회를 마친 학생들은 학교로 귀교하여 철야농성을 이어갔다.

광주지역 대학생들의 가두시위는 다음날인 15일에도 계속되었다. 오전에 전남대에서 '제3차 민족민주화성회'를 마친 1만여 명의 전남대 학생들과 조선대·광주교대생 1만여 명, 전남대 교수, 청년, 시민 등 수만 명의 인파가 도청 광장에 집결했다. 전날과 달리 경찰의 별다른 저지가 없었다. 도청 앞에 모인 각 대학 학생들은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비상계엄 즉각 해제하라', '노동 3권 보장하라', '정치일정 단축하라' 등을 요구하였다. 대회가 끝나고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갈 때에는 대형태극기를 펴들고 행진했으며, 그 뒤로 50여 명의 교수가 함께 행진했다.

5월 16일 서울에서는 대학생들이 5월 15일 서울역에서 회군하면서 시위는 중지되었다. 반면 광주의 거의 모든 대학의 학생들과 일반시민 등 5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후 3시부터 도청 앞 광장에서 시국성토대회를 열었다. 성토대회에서 학생들은 대학별 학생 대표가 연합하여 작성한 '제2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저녁 8시부터 2개 조로 나누어 야간 햇불 시가행진을 벌였다. 경찰은 햇불시위 과정에서 혹시나 발생할 사고를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시위대를 보호하며 협조하였다. 말 그대로 평화로운 햇불시위였다. 저녁 10시쯤 그간 세 차례에 걸친 민족민주화성회를 마무리하였다.

당시 안병하 전남도경 국장은 박관현 전남대 총학생회장이 찾아와 평화시위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자 흔쾌히 받아들여 경찰과 학생 사이에 아무런 충돌도 발생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됐으니 정부 측의 답변을 기다린다는 의미로 17일과 18일은 쉬기로 했다. 만약 정부가 계엄해제와 향후 정치일정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을 경우 19일부터 다시 성토대회를 벌이기로 하고 휴식에 들어갔다.

한편 서울역 회군으로 민주화 열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전남대 총학생회는 정부의 휴교령 조치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다. 유신체제에서 학생운동(시위)이 격화될 때마다 탄압의 방법으로 휴교령을 발동했던 전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총학생회는 5월 16일 민족민주화성회를 마치면서 휴교령이나 휴업령이 내린다면 일차적으로는 오전 10시 전남대학교 교문 앞에서 집결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12시 정오에 도청 광장에 집결하여 시위를 벌이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확대와 함께 5월 18일 휴교령이 내려졌다.

2. 5·18민주화운동의 전개 과정⁵³

가. 5월 18일(일요일)

5월 18일 이른 아침,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휴교령 소식을 들은 전남대학생들이 전남대학교 정문으로 몰려오면서 시위가 시작되었다. 학교로 들어가던 학생들이 제7공수여단 33대대 공수대원들에게 저지를 당했고,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계엄 해제’ 등의 구호가 등장하며 시위 대열이 조직되기 시작했다. 오전 10시쯤 시위학생이 200여 명으로 늘어나자 계엄군이 갑자기 진압을 강행했고 학생들이 진압봉에 맞아 부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했다. 격분한 학생들은 전남대학교 정문 근처에서 투석전을 벌이다가 10시 30분쯤 광주역을 거쳐 금남로로 진출했다.

광주역에 집결한 학생들은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김대중이 체포됐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외버스공용터미널을 거쳐 시내로 진출해 11:00 금남로 가톨릭센터에 도착했다. 가톨릭센터 앞에 집결한 학생 300여 명은 연좌농성을 벌였다. 경찰과 학생간 충돌

53 이 절은 위원회 직권조사 과제인 민간인 사망사건 보고서, 민간인 상해사건 보고서, 발표 경위 보고서, 집단학살 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한 것이다. 특별한 표기가 없는 한 서술과 기록의 출처는 위원회의 해당 보고서다.

돌이 발생한 가운데 11:55 도경찰국장 안병하는 ‘연행과정에서 학생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라’는 진압방침을 하달했다. 시위대열은 12:30 시외버스공용터미널로 몰려가 대합실의 승객들에게 광주의 상황을 널리 알려줄 것을 호소했다.

유동삼거리와 광주공원 등에 흩어져있던 학생 3,100명은 14:40 금남로와 충장로 일대로 집결하여 경찰과 투석전을 벌였다. 제7공수여단 33대대는 14:42에, 35대대는 15:00에 제31사단으로부터 도청앞 시위대 진압 명령을 수령했다. 15:35 전남대를 출발한 33대대는 15:40경 유동삼거리를 거쳐 북동 180번지 횡단보도 앞에서 시위대와 대치했다. 곧이어 35대대는 도청에서 유동삼거리 쪽으로, 33대대는 유동삼거리에서 도청 쪽으로 압축하며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계엄군은 처음부터 무자비한 진압을 펼쳤다. 대학생이나 청년으로 보이면 남녀를 불문하고 진압봉과 군홧발, 개머리판으로 구타하고 대검으로 찌르며 굴복시킨 뒤에 차에 실어 연행했다. 골목으로 피하면 가정집까지 추적해 검거하였다. 계엄군은 버스를 세워 젊은 승객들을 끌어내 무차별 구타했다. 청년들이 있을만한 다방, 당구장 등 인근 건물을 뒤져 닥치는 대로 두들겨 패고 끌어냈다. 팬티만 남긴 채 청년들의 옷을 벗겨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는 등 살벌한 진압방식을 펼쳐 공포감을 조성했다. 제7공수여단 33대대는 16:30 103명을 체포하여 제31사단 헌병대에 인계했다. 같은 시각 제11공수여단 61대대 1개 지역대가 선발대로 성남비행장에서 비행기 편으로 광주로 출발했다.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동명동, 산수동 일대 시위대 2,000명은 16:40경 동명파출소, 지산파출소를 파괴하고 산수동으로 향했다. 시위대는 농장다리를 지나던 경찰 차량을 발견하고 차출된 경찰들을 인질로 잡았다. 이들은 도청 쪽으로 다시 걸어가다 17:00 공수부대가 나타나자 붙잡은 경찰들을 풀어주고 도망쳤다. 공수부대는 산수동, 풍향동 일대 주택을 샅샅이 수색하였다. 18:00 전남북 계엄사무소는 광주 시내 통금시간을 1시간 앞당겨 21:00~04:00로 조정 발표했다. 이날 하루 동안 연행자는 대학생 114명, 전문대생 35명,

고교생 6명, 재수생 66명, 일반시민 184명 등 405명이었다.

나. 5월 19일(월요일)

5월 19일 00:50 제11공수여단 병력(장교 162, 사병 1,038명)이 광주역에 도착했다. 이들은 장갑차를 앞세우고 차량편으로 시내를 거쳐 02:20 조선대에 도착했다. 04:30~06:00까지 61대대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62대대 계림동, 63대대 광주역 등에는 제11공수여단 병력이 배치되고, 제7공수여단 33대대는 전남대로, 35대대는 조선대로 각각 복귀했다. 한편 특전사령관 정호용은 06:30 제3공수여단장 최세창에게 제3공수여단 광주 출동 준비를 지시했다.

5월 18일 강경진압을 목격했던 시민들이 09:00부터 시내로 모여들었다.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09:30분 전투병과교육사령관 윤홍정은 계엄사령부에 특전사 1개 여단 추가 증원을 요청하였다. 10:00 금남로와 시내 일원에 3천여 명의 시민이 모여들었다. 대부분 상가는 철시했고 관공서와 학교는 정상적인 근무나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위대들이 금남로로 몰려오자 공수부대는 금남로 양쪽 끝에서 압축하는 작전을 펼쳤다. 가톨릭센터 앞에 2천 명, 충장로 일대에 2천 명의 시위대가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했고 계엄군의 진압은 더욱 거칠어졌다. 공수부대원들은 돌맹이가 날아와도 피하지 않고 군중을 향해 돌진하였다. 시위대는 인근 주택가나 건물로 숨어 들어갔다. 계엄군은 아무 문이나 열고 들어가 젊은 사람이면 무조건 진압봉으로 두들겨 패 거리로 끌고 나와 옷을 벗겨놓았다.

최초의 사망자 김경철은 11:00경 시위를 구경하다가 제11공수여단 소속 계엄군에게 붙잡혀 진압봉으로 뒷머리를 구타당했다. 이후 뇌출혈 상태로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방치되었다가 광주적십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12:00 금남로 인근 무등고시학원에서 수강을 하던 학생들이 폭력적 진압에 야유를 보내자 공수부대원들이 학

원 건물에 난입하여 50여 명의 수강생을 사정없이 구타했다. 동구청 앞에서 계엄군들이 젊은 시민들을 끌고 와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때리고 짓밟아 시민들의 머리가 터지는 등 무자비한 폭행이 자행됐다. 조흥은행 앞에서 여학생의 옷을 벗겨 연행하는가 하면 한미제과 사거리에서는 붙잡아온 청년 10여 명에게 물을 끼얹어가며 구타하였다. 13:10까지 401명의 시민이 체포되었다.

13:30 공수부대 병력이 식사를 위해 조선대로 철수하고 경찰 병력이 가톨릭센터 앞을 차단하였다. 시민 4~5천 명이 경찰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고 기름통에 불을 붙여 경찰 쪽으로 굴러 보냈다. 계엄군들이 다시 투입되자 시민들은 불붙은 승용차를 계엄군 쪽으로 밀어붙였다. 시위는 학생들보다는 시민들이 주도했다. 시민들이 도로를 가득 메운 가운데 공수부대는 시내 도로의 요소를 점령하는 바둑판식 작전을 펼쳤다. 계엄군들은 작전 지역내 민가나 상가를 샅샅이 수색하여 청년들을 잡아갔다. 시위대열 앞 시민들은 도로변의 대형화분, 교통 철책, 정류장 입간판 따위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계엄군과 대치했다. 대열 중간이나 뒤에서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보도블록 등을 깨서 전면으로 공급했다.

15:14 도청 쪽에서 가톨릭센터 쪽으로 장갑차 1대를 앞세운 계엄군 수백 명이 시위대열로 돌진했다. 계엄군은 걸리는 대로 패고 밟으며 군중을 흩어놓았다. 계엄군의 폭행에 실신해 도로 한복판에 죽은 듯이 쓰러져 있는 청년도 있었다. 도망치지 못한 사람들은 계엄군에게 붙잡혀 구타를 당했으며 대검에 찢리기도 했다.

16:00 계림오거리에서 제11공수여단 63대대 소속 장갑차 1대가 시위대를 해산시키다가 고장으로 멈춰 섰다. 시위대 중 일부가 페인트통, 짚단 등을 이용해 장갑차에 불을 붙이려 하는 등 위협했다. 장갑차에 타고 있던 계엄군 장교가 해치를 열고 나와 M16으로 한 차례 위협사격을 한 뒤 아스팔트 도로 바닥을 향해 연발로 사격했다. 이 사격으로 시위대 한 명이 총격 부상을 입었다.

16:30 시외버스공용터미널에서 제11공수여단 61대대 병력과 1천 명의 군중이 대치했

다. 청년들이 대치선 50미터 앞까지 다가가 일제히 돌을 던졌다. 계엄군의 장갑차가 돌진하여 바리케이드를 부수고 시민들을 갈라놓았다. 군용트럭 10대로 계엄군 병력이 증원되고 시위군중도 3천 명으로 늘어나 치고 빠지는 공방이 계속되었다. 수많은 타박상·자상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계엄군들은 부상자들을 수송하는 택시 기사들에게도 폭행을 행사했다.

이날 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양동, 유동, 임동, 시외버스공용터미널, 광주역 등 지역에서 밤늦도록 산발적인 시위가 전개됐다. 5월 20일 아침 서2동 전남양조장 공터에서 민간인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전날 밤에 계엄군의 총격으로 죽은 것으로 밝혀졌다.

계엄사령부는 18:00 제2군사령부에 제3공수여단 5개 대대 추가 투입을 지시하고 전투병과교육사령부에 통보했다. 21:00 전남도교육위원회는 각급 학교의 휴교 조치를 발표했다.

다. 5월 20일(화요일)

5월 20일 01:02 제3공수여단 병력(장교 255명, 사병 1,137명)이 청량리역에서 광주로 출발했다. 04:00 제31사단은 방송국과 학교 및 외곽지역에 병력을 배치했다. 06:00 제11공수여단이 광주 동부지역에 재배치되었다.

07:04 제3공수여단이 광주역에 도착하여 전남대로 이동하였다. 08:00 제7공수여단과 제11공수여단 각 대대가 도청, 상업은행, 광주은행, 한일은행, 계림파출소에 재배치되었다. 제3공수는 10:30 11대대 황금동, 13대대 시외버스공용터미널, 15대대 양동사거리, 12대대 광주시청, 16대대 전남대 등 임무 배치되었다.

10:00 전날처럼 금남로에서 공수부대원들이 연행한 시민들의 옷을 벗기고 가혹행위를 하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목격됐다. 11:00 계엄군의 시내 배치가 완료되고 시민들의 숫자는 점점 더 많아졌다. 진압봉을 든 계엄군들은 무표정하게 시민들을 감시하였다. 긴장된

분위기가 소규모 시위로 발전하며 폭발했다. 11:30 금남로에서 시위대와 공수부대 간 몇 차례 밀고 밀리는 공방전이 벌어졌고 폭행과 연행이 이어졌다.

13:20 상업은행과 충장로, 도청 앞에 각각 200여 명, 계림동 지역에 2천여 명의 시민들이 운집했다. 공수부대가 장갑차를 앞세우고 진압하자 시위대는 광주로 쪽으로 밀려가며 대형화분과 가드레일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격렬하게 대치했다. 도로변의 시민들은 계엄군에게 야유하고 계엄군은 확성기로 경고하며 대응했다. 15:00를 지나며 금남로에 모이는 군중 수는 점점 늘어났다. 청년들 뿐 아니라 수많은 시민이 금남로로 쏟아져 나왔다. 군경은 최루탄을 쏘아 몰려드는 군중을 해산시켰지만 금방 다시 몰려왔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군중들은 수만 명으로 불어났다. 청년 학생들의 주도로 금남로-중앙로 교차로와 지하상가 공사장 부근에서 연좌 농성이 시작됐다. 시위양상은 이제껏 수세에서 시민들의 공세로 돌아섰고 금남로 여기저기서 수천 명 단위의 충돌이 벌어졌다. 17:50 충장로 입구에서 5천 명의 시위대가 도청을 방어하는 계엄군에게 돌진하였다. 하지만 역부족으로 많은 희생자를 내며 물러났다.

18:00 무등경기장에 택시 100대와 6대의 버스, 트럭이 집결해 도청을 향해 3열로 차량 시위를 시작했다. 차량 행렬은 임동길-유동삼거리 경로와 광주역-시외버스공용터미널 경로로 나뉘어 이동한 뒤 금남로에서 합류했다. 트럭과 버스 위에는 청년들이 대형 태극기를 흔들고, 차량 행렬 뒤로는 2천 명의 시민이 뒤따랐다. 도청으로 가는 길에 택시들이 합류하며 행렬은 200여 대로 불어났다. 18:30 차량 행렬이 일제히 전조등을 밝힌 채 금남로에 진입하자 시민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시민들과 차량행렬이 다가오자 도청을 방어하던 61대대, 62대대는 급히 도로 옆 화분대를 도로 중앙으로 옮겨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19:00 선두의 버스 8대, 택시 50여 대, 10톤 화물트럭 1대가 동구청 앞까지 진출했다. 19:24 군경은 차량 행렬에 엄청난 양의 페퍼포그를 쏘아댔다. 선두에 있던 버스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서자 계엄군들이 달려들어 닥치는대로 유리창을 깨부수고 운전수

와 시민들을 난타하면서 일대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19:50 시위대는 제봉로와 충장로 등 금남로 인근 도로로 이동했다. 시위대는 제봉로에 있는 MBC 건물로 몰려가서 저녁 8시 뉴스 시간에 현 상황을 정확히 보도할 것을 요구했다. 보도가 되지 않자 20:30경 방송국에 화염병을 던졌다. 노동청 앞 시위대는 차량에 불을 붙여 경찰 쪽으로 밀어붙였다. 21:00 광주고속 버스 1대가 도청을 향해 진행하다 상무관 앞에서 갑자기 통제력을 잃고 경찰 방어선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경찰 4명이 사망했다. 조선대 앞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가 차량을 앞세우며 계엄군과 대치했다. 23:00 최용 제11공수여단장은 각 대대(61, 62, 63, 35대대)를 도청으로 집결시켰다.

양동사거리 일대를 지키던 제3공수여단 15대대는 18:00 지시에 따라 광주역으로 이동하였다. 16대대는 전남대와 신안사거리를 방어하고, 12대대는 19:00경 시청에서 광주역으로 이동했다. 13대대는 20:00 시외버스공용터미널에서 광주시청으로 밀려났으며 11대대는 시내에서 시민들에게 포위되어 고립되었다. 제11공수여단과 제7공수여단 병력은 도청 앞으로 집결하고 제3공수여단은 광주역 일대에 집결했다. 광주역으로 향하는 방사형 도로에서는 차량을 이용한 시위대의 공격이 수십 차례 이어졌다. 21:50 제3공수여단장 최세창은 각 대대에 M-16 실탄을 배부하고 장착토록 지시하였다. 22:00 광주역을 향해 돌진하던 차량에 공수대원 3명이 중상을 입자 12대대장과 15대대장이 시위대 차량 바퀴에 권총을 발사하였다. 22:10경 광주역 근처에서 계엄군을 향해 돌진하는 시위대 차량에 치여 계엄군 한 명이 사망했다. 제3공수여단 본부대는 각 대대에 보급할 실탄을 차량에 싣고 광주역 뒤쪽 길을 거쳐 이동하다 이를 저지하려는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았다. 23:20 제2군사령부가 발포금지과 실탄 통제 지침을 하달하였으나 제3공수여단이 전남대로 퇴각하기 전까지 발포가 이어졌다. 이날 저녁 광주역 인근 시위 현장에서 7명의 민간인이 계엄군의 공격으로 사망했다.

라. 5월 21일(수요일)

금남로에 고립됐던 제3공수여단 11대대가 21일 02:00 광주역에 도착했다. 02:10 제3공수여단 11대대, 12대대, 13대대, 15대대 병력은 03:00까지 전남대학교로 완전 복귀하였다. 도청 앞 광장, 노동청 앞, 도심빌딩, 조선대 앞 등에서 대규모 군중들과 계엄군의 대치가 새벽까지 이어졌다. 세무서가 불길에 휩싸였다.

02:40~08:50 제20사단 병력이 송정리역에 도착했다. 06:50 제20사단 병력이 광주 교대에 주둔하기 위해 시내 방향으로 전진하다 공단 입구에서 400여 명의 시위대에 막혀 상무대로 향했다. 08:45 제20사단 지휘부 차량 14대가 광주에 도착했다. 이들은 공단 입구 사거리에서 300명의 시위대와 만났다. 시위대는 화염병 공격으로 차량을 모두 빼앗았다. 일부는 빼앗은 차량을 타고 시내로 향했으며 일부는 더 많은 차량을 확보하자며 군수차량생산 공장인 아시아자동차로 향했다. 이날 하루 동안 시위대는 56대의 군용트럭을 포함, 총 414대의 차량을 시위에 동원했다.

04:00 제3공수여단이 물리간 광주역 일대를 시위대가 장악했다. 잔해 속에서 시신 2구가 발견됐다. 시위대는 시신을 태극기로 덮은 다음 리어카에 싣고 금남로 광주은행 앞까지 행진을 벌였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시위대의 방송차량과 시신을 실은 리어카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10:00 전남대 정문에 4만 명, 후문에 1만 명의 군중이 모였다. 정문 쪽 앞줄에 섰던 시위대 수백 명이 갑자기 정문을 돌파하여 전남대 안으로 밀고 들어갔다. 식사 배식 중 공격을 받은 제3공수여단은 잠깐 흩어지더니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계엄군은 시위대를 몰아붙여 600미터 떨어진 신안굴다리까지 총을 쏘며 추격했다. 시위대와 계엄군은 이 구간에서 여러 차례 공방을 벌였다. 13:30경 중흥2동 전대 정문 앞 평화시장 입구에서 남편의 귀가를 기다리던 임신부가 계엄군이 발사한 총탄에 머리를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다. 고등학생 이성귀는 이날 계엄군의 총에 머리를 맞고 사망해 전남대 이학부 뒷산에 암매

장되었다.

10:00 금남로에 5만 군중이 모였다. 시민들은 10:05 가톨릭센터 앞에서 계엄군 장갑차 1대를 빼앗아 계엄군 저지선으로 돌진시켰다. 계엄군은 최루탄을 쏘며 관광호텔 앞까지 후퇴했다. 이 지점에서 계엄군 측은 앞쪽에 제11공수여단 61대대와 62대대를 배치하고 상무관 앞에는 63대대, 수협 앞에는 7공수여단 35대대를 배치했다. 시위대는 동구청 앞, 노동청 앞, 충장로 1가 입구 앞에서 각각 계엄군을 포위하듯 진을 치고 있었다.

시위군중이 급속도로 불어나기 시작했다. 시위대와 계엄군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시위대 대표는 제11공수여단 대대장에게 계엄군 철수, 연행자 즉각 석방, 폭력사용 금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계엄군과의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시위대는 장영태 도지사 면담을 요구했다. 시민대표를 만난 장영태 전남도지사는 12:00까지 계엄사령관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5분 뒤 시민들 앞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5분 뒤 도지사는 10:45 헬기를 타고 시민들 머리 위에서 12시까지 계엄군을 철수시키고 연행자는 모두 석방할테니 시민들은 해산해달라는 선무방송을 하였다. 방송을 들은 공수부대 대대장은 조선대에 있던 공수여단 참모장에게 12시 철수 여부를 물었으나 돌아온 답변은 ‘도청사수’였다.

정오가 다가오면서 시위대 차량이 도청 쪽으로 천천히 전진했다. 계엄군은 조금씩 후퇴를 거듭하여 분수대 바로 앞 지점까지 밀렸다. 13:00 장갑차에 장착된 캘리버 50 기관 총구가 시위대를 향하자 시위대 쪽에서 화염병 하나가 날아와 장갑차를 맞췄다. 계엄군은 영겁결에 최루탄을 난사하며 무질서하게 뒤로 흩어졌고 이 와중에 계엄군 한 명이 장갑차에 치어 사망했다. 시위대 장갑차 1대가 계엄군 진영을 돌파하여 분수대 오른쪽으로 돌아나가고 버스 2대가 뒤따라 도청 분수대를 향해 돌진하는 순간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이루어졌다. 일제사격은 1분이 넘게 계속되었다. 금남로는 총탄에 쓰러진 시민들만 도로 위에 남겨둔 채 순식간에 텅 비었다. 10여 분 후 청년 한 명이 태극기를 들고 구호를 외치

며 도로 한복판으로 뛰어나왔다. 요란한 총소리가 나고 청년이 쓰러졌다. 사격이 잠시 멈춘 사이 시민들이 도로 위에 쓰러진 부상자들과 시신들을 조심스레 도로 밖으로 끌어내려 하였다. 그때마다 전일빌딩, 관광호텔, 수협 등 주요 건물 옥상에 배치된 계엄군의 조준사격이 시작되었다. 금남로 안쪽 도로나 안쪽 도로의 건물, 노동청 인근 주택가에서도 총에 맞은 희생자가 늘어났다. 도청 앞 집단 발포로 41명의 민간인이 총격 등으로 사망했고, 광주 도심 상공에서는 500MD 헬기가 사격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시민들은 광주 인근 시군으로 무기를 찾아 나섰다. 시위대들은 화순경찰서, 나주 산포지서, 영암 신북지서, 광산 대촌지서, 강진 성전지서, 해남 계곡지서, 광산 비아지서 등 시군지역과 일신방직, 전남방직, 화천기공사, 연초제초창, 호남전기 등 광주 외곽 지역의 무기고에서 소총과 경기관총 및 실탄, 수류탄 등을 확보했다. 각지에서 무기를 실은 차량이 광주공원 등으로 집결했고, 15:30 무렵, 무장한 시위대들은 도청 부근으로 모여들어 계엄군과 대치하며 교전했다.

16:00 전투병과교육사령부 사령관 윤희정은 도청에 있는 공수여단의 퇴각과 광주 외곽도로 완전봉쇄를 지시했다. 도청 앞 공수여단 병력은 조선대로 철수했다. 철수하는 과정에서 무장시위대의 공격을 우려해 인근 건물에 사격하면서 빠져나갔다. 별도로 퇴각 명령을 받지 못한 경찰병력은 개별적으로 도청을 빠져나갔다.

16:30 전남대에 주둔해있던 제3공수여단도 광주교도소로 철수하였다. 제3공수여단 병력은 퇴각 과정에서 시민 수십 명을 2대의 차량에 나눠 싣고 광주교도소로 연행했다. 이때 밀폐된 차량에 최루탄을 넣어 2명이 질식사했다. 교도소 도착 후에도 연행한 민간인을 대검으로 머리를 가격하여 사망케 했다.

조선대로 후퇴한 제11공수여단과 제7공수여단은 재집결지인 주남마을로 이동했다. 차량으로 이동하던 제11공수여단 병력은 남광주역을 지나 송의실고 방향으로 전진하던 중 시민군의 공격을 받아 차량 3대가 전복되었다. 이 교전으로 제7공수여단 사병 한 명이 사

망하였다. 이에 놀란 계엄군은 학동과 지원동 일대에서 길 양쪽 주택가에 기관총과 M16 소총을 난사했다. 이 총격으로 두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계엄사령부의 외곽봉쇄 명령에 따라 제3공수여단은 광주-담양, 제11공수여단 및 제7공수여단은 광주-화순, 제20사단 61연대 2대대는 광주-나주, 20사단 61연대 3대대는 광주-장성, 제20사단 62연대는 광주-광산, 제31사단 1개 중대는 오치고개 일대 등 광주로 통하는 모든 외곽 지역을 봉쇄했다. 19:20 차를 타고 교도소 옆 고속도로를 지나던 두 명의 민간인이 계엄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22:00 시위대 버스를 운전하던 민간인이 교도소 인근 지역을 지나다가 계엄군의 총격에 사망하였다. 나주 지역으로 연결된 효천역 앞에 제20사단 61연대 2대대가 배치되어 있었고 당시 시위대는 나주, 영암, 목포 등지에서 무기를 확보한 뒤 광주로 진출하였다. 22:11 이 지점에서 나주 쪽에서 광주로 진입하던 시위대가 계엄군에 공격당한 후 교전이 발생하였다.

마. 5월 22일(목요일)

외곽지역을 봉쇄하던 계엄군은 시위대나 민간인을 향해 총격을 계속하였다. 5월 22일 00:15 효천역 인근에 제20사단 61연대 1대대 1중대와 연대 수색중대 병력이 증원되었다. 이들은 01:00 전날 밤과 반대 방향인 광주 쪽에서 버스 5~6대에 탑승하고 온 시위대와 교전하였다. 21일밤~22일 새벽 사이에 네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였다. 비슷한 시간 00:40~03:00 교도소 인근을 지나던 고속버스와 관광버스가 제3공수여단의 총격으로 민간인 한 명이 사망하였다.

05:00 조선대 뒷산을 넘어가던 민간인 일행이 계엄군과 맞닥뜨려 도망가다 총격을 받은 뒤 한 명이 실종되었다. 부영산 일대에서 시민군과 함께 외곽 경비를 하던 무장시위대 한 명이 주남마을로 이동하던 공수부대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광주에서 나주 쪽으로 이동하던 민간인 차량이 총격을 받아서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총상을 입었다. 시위와

무관한 차량이었다.

06:00 제11공수여단 61대대는 소태동에서 부영산까지, 62대대는 부영산에서 주남마을 입구 월남정미소까지 산기슭, 63대대는 수박등 능선에 배치되었다. 제7공수여단 도착 후 35대대 11지역대는 너릿재 터널을 통제하였다. 한편 07:00 제20사단 60연대 병력 1,602명이 항공기편으로 광주비행장에 도착했다.

22일 아침 시민들은 계엄군이 없는 시내로 쏟아져 나왔다. 청년들은 ‘계엄철폐’, ‘전두환 처단’ 플래카드를 걸친 차량을 타고 노래와 구호를 외치며 시내를 질주했다. 시장 상인들은 차량을 불러 주먹밥과 김밥을 건네주었다. 시민군은 광주공원을 중심으로 조직과 병력, 장비를 정비했다. 광주공원에 있던 무장시위대들은 도청에 본부를 설치하고 본관 1층 출입구 옆 서무과를 상황실로 사용했다. 상황실에 자원봉사자들이 배치되어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외곽 지역의 상황을 점검하면서 사망자 명단과 계엄군 동향 등을 시민들에게 보고했다. 여대생과 여고생들은 취사실, 상황실, 수습위원실, 방송실 등에서 지원 활동을 벌였다. 조사반이 자발적으로 구성되어 거동이 수상한 사람들을 조사하기도 했다.

광주로 통하는 모든 관문을 장악한 계엄군은 22일 오전에도 계속해서 민간인과 시위대에 총을 쏘았다. 09:00 남선연탄 공장 앞길에 매복해있던 61연대 2대대 5, 6중대는 광주에서 남평 쪽으로 진행하는 포니승용차에 총을 쏘아 민간인 한 명이 사망했다. 같은 시간 2.5톤 트럭을 타고 광주교도소 앞 국도를 지나던 민간인 세 명이 제3공수여단 11대대 1지역대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오전, 무장시위대 기동순찰대는 차량을 타고 11:50까지 도청으로 모이자는 방송을 하며 광주 시내를 돌아다녔다. 계엄당국은 10:30 헬기를 이용해 ‘폭도들에게 알린다’는 제목의 선무전단을 살포했다. 11:00 지역의 원로 인사들이 남동성당에 모여 수습대책을 논의했다. 11:20경에는 적십자병원 헌혈차와 시민군 차가 시민헌혈을 호소하였고 수많은

시민들이 그 차를 타고 병원에 몰려가 헌혈에 나섰다. 시위대 차량은 병원을 돌아다니며 안치된 시신을 파악하고 급히 마련한 관에 입관하여 도청으로 옮겼다.

도청 옥상 국기 게양대에 조기가 게양되었다. 광주의 여성활동가로 구성된 송백회 회원들은 검은 리본 3천 개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12:00 도청 분수대에서 수만 명의 시민이 모인 가운데 시민성토타회가 열렸다. 한편 12:30 도청에 나와있는 정 시채 부지사의 주도로 최한영을 위원장으로 하는 5·18수습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수습위원들은 오전 내내 토론을 거쳐 발포책임자 처벌, 연행자 석방 등 7개 항목의 요구사항을 결정했다. 13:30 수습위원 중 협상대표 8명이 상무대를 찾아가 계엄군 측 김기석 전투병과교육사령부 부사령관과 협상하였으나 연행자 선별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거절되었다.

오후, 전남대 명노근, 송기숙 교수가 도청 앞 광장에서 대학생들을 불러 모아 15명으로 구성된 임시학생수습위원회를 구성했다. 학생수습위원회는 청소, 질서유지, 대민업무 등을 담당했다.

외곽지역에서 계엄군의 발포로 인한 피해가 계속됐다. 14:00 재수생 김병연이 걸어서 본가인 담양으로 가던 길에 동일실업고등학교 건너편 보리밭에 매복해있던 제3공수여단이 쏜 총에 가슴을 맞아 사망했다.

15:00 제20사단 62연대장은 2대대장에게 17:00까지 국군광주통합병원 진입로를 확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2대대장은 즉각 7중대 1소대 병력을 관측조로 남화맨션 건물로 보내면서 작전을 시작했다. 한성아파트 쪽은 5중대가 담당했다. 6중대는 탱크 3대를 앞세우고 도로를 따라 상무대에서 시내 쪽으로 전진하고, 5중대와 7중대는 도로 근처 민가와 언덕이 있는 뒷길을 따라 전진했다. 병력이 대치선을 넘어가자 총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시위대들이 계속 사격을 하고 6중대에서 부상자가 발생하자 계엄군 측의 응사가 시작되었다. 작전 중 시위와 상관없는 민간인들의 피해가 컸다. 17:00~19:30 이 일대에서

7명의 민간인과 1명의 방위병이 계엄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18:30 화순 관문 너릿재터널에서 제7공수여단 35대대 11지역대는 화순 방면에서 오던 2.5톤 트럭 1대에 총격을 가하여 정지시킨 후 그 트럭으로 터널 입구를 봉쇄하였고 운전자는 행방불명되었다. 이후 화순 방면으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졌다.

21:00 정부는 박충훈 국무총리서리를 위원장으로 내무, 법무, 국방 등 관계 장관 및 이희성 계엄사령관, 전두환 중앙정보부장 등이 참여한 광주사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1:30 박충훈은 방송을 통해 “광주는 치안 부재 상태이며 불순분자가 군인들에게 발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정부의 명령 때문에 시민들에게 발포하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바. 5월 23일(금요일)

5월 23일 03:00 차량 2대에 나누어 타고 해남 우슬재를 넘어가던 시위대 16명이 04:56 경비중이던 제31사단 93연대 2대대 40명의 병력과 교전을 벌였다. 이때 시위대 한 명이 가슴 관통 총상으로 사망하였다. 또 광주 외곽지역에서도 밤새도록 간헐적인 총격이 이어졌다. 자위권 발동으로 발포와 관련된 제한이 사라진 시점인 터라 총격이 무분별하게 일어났다.

09:00 이희성 계엄사령관과 참모들은 이날 새벽 진중채 제2군사령관이 건의한 소요진압작전계획(외곽봉쇄작전부대의 광주재진입작전계획)을 논의하고 최소한의 희생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지시하였다. 한편 작전 개시는 5월 25일 02:00 이후 명에 따르되 작전계획과 작전개시 시간은 소준열 전교사령관에게 부여하도록 결정하였다.

제11공수여단 62대대 5지역대 6중대 18지대 공수대원들은 이날 아침 인근 채석장 다이너마이트 회수를 위해 수색을 실시했고, 4지역대 대원들은 인근 도로 옆, 채석장 건너

편 보리밭, 논두렁 사이 등에 매복하였다. 베이지색 바탕의 마이크로버스 1대가 도청을 출발, 09:30 계엄군 바리케이드가 설치된 소태마을 앞 삼거리에서 멈췄다. 마을 주민의 경고를 무시하고 화순 쪽으로 향하던 마이크로버스는 100미터쯤 더 진행한 지점에서 10여 분에 걸쳐 매복 부대의 집중사격을 받았다. 이 충격으로 차에 타고 있던 11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한 차례 집중사격이 끝난 뒤 계엄군은 마이크로버스를 수색하는 도중에 일부 생존 부상자에 대해 확인사살을 자행했다.

23일 시내 시장 주변 길가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상인들이 솥을 걸어놓고 밥을 지었다. 외곽지역 경계 근무를 한 시민군들이 오면 어디서나 밥을 먹을 수 있었다. 상무관 강당에 수많은 시신들이 안치되었고 분향하려는 시민들과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10:00 도청앞 광장에 시민 5만명이 집결하였다. 10:00 5·18수습대책위원회는 전날 선임된 수습위원들 중 몇 명이 사퇴하자 도지사실에 모여 조직을 개편했다. 그리고 학생수습위원회와 합동으로 '확대수습위원회'를 구성했다. 확대수습위원회는 계엄당국에 제시할 8개 요구 조건을 새로 결의하고 오후 3시에 도청 앞에서 제1차 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10:00 50여 명이 탑승한 광주고속버스 2대가 진도를 다녀오다 해남군 마산면 상등리 남부산업 앞 도로에서 제31사단 93연대 2대대 병력 10명의 총격을 받았다. 이 충격으로 민간인 한 명이 다발성 총상으로 사망했다. 지원동 마이크로버스 피격장소에서 생존한 두 명의 부상자는 계엄군에 의해서 즉결처분 형태로 사살되었고, 암매장되었다.

12:40 수습위원회 대표 5명이 전투병과교육사령부를 방문해 두 번째 협상에 나섰다. 계엄당국은 무조건 무기반납을 요구하고 예비검속자 석방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연행자 중 34명을 석방하였다. 15:00 도청 앞 광장에 15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모여서 제1차 시민궐기대회가 시작됐다.

마이크로버스 피격 이후에도 월남동, 소태동 1번 버스 종점, 무등중학교 인근, 용산마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을 등에서 계엄군의 사격에 의한 민간인 피해는 계속되었다. 15:00 지원동 마이크로버스 총격 현장에서 의료봉사하던 구급차 운전원이 계엄군에게 사살당했다. 또 인근 마을 주민이 매복 중이던 계엄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노대마을 산길을 통해 고향으로 가려던 민간인 한 명은 매복하여 봉쇄작전을 벌이던 계엄군의 조준사격으로 사망했다. 광주변전소 확보지시에 따라 이동 중이던 제31사단 11경비대대 4중대 병력에 의해 최소 3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16:00 전투병과교육사령부의 지시로 광주-나주 관문을 지키던 제20사단 61연대 2대대가 상무대를 향해 떠나고 그 자리에 전투병과교육사령부 보병학교 교도대대가 주둔했다.

궤기대회가 끝나고 시민들이 흩어질 무렵 헬리콥터가 시내 전역에 ‘소요는 고정간첩, 불순분자, 깡패의 소행이고, 총기와 탄약과 폭발물을 탈취한 폭도들의 행패는 계속 가열되고 있으므로 계엄 당국은 곧 소탕하겠다’라는 내용의 전단을 살포했다. 저녁이 되자 무장한 시위대들이 시내 요소와 외곽지역을 방어했다. 도청을 제외한 시내 전역에 소등이 실시되어 온 시가지가 깜깜했고 변두리에서 가끔 총성이 들렸다.

사. 5월 24일(토요일)

24일 01:30 외곽봉쇄중이던 3개 공수여단은 상무충정작전 준비를 위해 광주 비행장으로 철수하고 그 자리를 제20사단 병력이 대체했다. 09:10 제7공수여단은 UH-1H 헬기 8대에 나누어 타고 광주비행장으로 이동했다. 08:30 전투병과교육사령부를 출발한 제20사단 61연대 차량제대는 송암동 삼거리를 거쳐 주남마을에 10:30 도착했다.

이날 오전 제31사단 96연대 3대대 소속 병력 31명(장교 3명, 사병 29명)은 광주톨게이트를 경유하는 경로를 따라 원 주둔지인 영광으로 향했다. 당시 기갑학교 병력 120명이 호남고속도로 광주인터체인지 부근과 인근 도로를 차단하고 있었다. 09:55 기갑학교 병력은 고속도로를 질주해 다가오는 96연대 차량을 시위대로 오인하고 사격을 가했다. 이 사고로

31사단 96연대 3대대 소속 병사 3명이 사망했다. 또 오인사격으로 인해 민간인의 피해도 발생했다.

13:00 제11·7공수여단 차량 제대는 장갑차를 선두에 세우고 63대대-61대대-62대대-35대대(11지역대 4중대) 순으로 56대의 차량에 나누어 타고 광주비행장을 향해 출발했다. 13:50 선두가 효덕초등학교 삼거리에 다다랐을 때 장갑차와 63대대 차량 제대 병력은 광주 쪽에서 나주 쪽으로 진행하던 시민군을 발견하고 이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 뒤따라오던 병력은 앞쪽에서부터 총성이 들리자 방향을 가리지 않고 주변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했다. 이때 방광범, 전재수가 계엄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일제사격이 진행되는 가운데 선두 장갑차와 차량제대는 효덕초등학교 삼거리에서 좌회전하여 보병학교 화기중대가 방어하고 있는 지점으로 향했다. 전면에 차단선을 발견한 장갑차는 이를 시위대의 시설물로 판단하고 돌파하기로 결정했다. 반대편에서 도로를 차단하고 있던 보병학교 화기중대는 앞쪽에서 총소리가 들리고 장갑차가 보이는 순간 90mm 무반동총을 발사했다. 이 교전으로 9명의 병사가 사망하였다.

교전이 중단된 뒤 제11공수여단은 송암동 인근 지역을 수색해 젊은 청년들을 끌어냈다. 제11공수여단 62대대, 63대대는 수색을 통해 시민군 6명, 마을 주민 30여 명을 연행하였다. 김종철은 수색 과정에서 체포되어 62대대 6지역대 병사로 추정되는 대원에게 희생된 것으로 보인다. 일성 마을에 거주하던 주민 3명은 한꺼번에 끌려나간 뒤 묘법사 앞 철길과 도랑에서 구타당한 뒤 총살당했다. 근처 도로를 지나던 민간인은 오인사격 이후 흥분한 계엄군들의 총격으로 부상을 입고 국군광주통합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이날 밤 사망하였다.

상무대에서 머물고 있던 특전사령부 사령관 정호용은 송암동 오인 교전 급보를 받고 헬기 편으로 현장을 방문했다. 제3공수여단은 교도소 방어를 제20사단 62연대에 인계하고 14:15 교도소를 출발하여 16:30 광주비행장에 도착했다. 전열을 정비한 제11공수여단

은 16:40분에, 제7공수여단은 17:15에 광주비행장에 도착했다.

아. 5월 25일(일요일)

04:00 계엄사령관 이희성은 김재명 작전참모부장에게 광주 재진입작전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육군본부의 작전지침인 상무총정작전안이 작성되었다.

계엄군이 철수한 지 4일째인 25일 시장과 상점들은 다시 문을 열었다. 사재기는 일어나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처음에는 피가 모자라 곤란을 겪었지만 시민들의 헌혈이 몰려들어 오히려 피가 남아돌았다. 전기, 수도, 전화도 정상 공급, 가동되었다. 광주시내 42개 은행의 현금 보유액은 약 1,500억 원이었고 도청 회계과 사무실 금고에는 급여용 현금이 있었으나 누구도 손을 대지 않았다. 시민들로 구성된 기동순찰대가 범죄 단속을 담당했다. 도청 수습위원회나 YWCA에 모인 청년·학생들에게 성금이 계속 들어왔다. 시내 각 동네에서는 도청 안 시민군과 지도부 300여 명과 지역방위대 400여 명에게 자발적으로 밥을 지어 나르고 반찬거리를 보냈다.

10:00 새로운 지도부를 준비하던 청년들은 광주지역 재야 활동가들과 협의를 거쳐서 이제까지의 수습 위주의 활동을 청산하고 이른바 항쟁지도부를 조직해서 끝까지 항쟁하기로 결정했다. 11:00 학생·청년 수습대책위원들은 무기반납을 거부하기로 하고 김대중 석방, 계엄 해제, 정치일정 단축 등 3개 항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전투병과교육사령부는 이를 두고 도청 강경파 학생이 주도권을 장악했다고 평가하고 광주시는 학생들이 재무장하여 도청을 경비하고 잔여 인원은 집결했다고 기록했다.

12:15 주영복, 이희성, 황영시, 전두환, 노태우는 육군회관에서 회의를 하고 상무총정작전안을 검토했다. 이들은 상무총정작전을 5월 27일 00:01이후 전투병과교육사령부 사령관의 책임하에 실시하도록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14:30 주영복과 이희성은 최규하에게 현지 직접 선무활동을 건의하였다.

14:30 황영시와 김재명은 항공편으로 광주로 가서 소준열에게 상무총정작전명령을 직접 전달했다.

15:00 비가 오는 가운데 5만 명의 시민이 도청 앞 광장에서 제3차 쫓기대회가 열었다. 시민들은 각 동별로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모였다.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가 낭독되었다.

17:30 최규하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주영복 등과 함께 광주를 방문했다. 소준열은 도청이 강경파에 장악되어 진압 작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했다. 이후 최규하는 광주 시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녹음한 후 21:10 상경하였다.

22:00 기존의 학생수습위원회를 대체할 ‘민주투쟁위원회’라는 항쟁지도부가 만들어졌다. 민주투쟁위원회는 위원장 김종배, 내무담당 부위원장 허규정, 외무담당 부위원장 정상용, 대변인 윤상원, 상황실장 박남선, 기획실장 김영철, 기획위원 이양현, 기획위원 윤강욱, 홍보부장 박효선, 민원실장 정해직, 조사부장 김준봉, 보급부장 구성주로 구성되었다. 민주투쟁위원회는 무기를 재분배하여 각 동별로 자위대를 편성할 계획을 세웠다. 또 5월 28일 ‘도민장’으로 합동장례식을 치르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 정상 운행, 공무원 및 경찰 비무장 근무, 상가 및 시장 문 열기, 동별 피해상황 파악, 시청 비축미 공급, 전일방송 등 지역언론 정상 가동, 유류사용 통제, 시외전화 개통, 치안 유지 및 순찰대 재편, 기동타격대 운용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 정상화 방안을 검토하고 26일 외신기자 회견을 갖고 투쟁의지를 천명하기로 했다.

자. 5월 26일(월요일)

26일 04:00 외곽지역 봉쇄작전을 수행하던 병력이 탱크를 앞세우고 시내 쪽을 향해 전진했다. 국군광주통합병원 앞 병력은 공단입구 사거리까지, 백운동 쪽은 대동고 앞까지, 운암동 쪽은 무등경기장 앞까지 밀고 들어왔다. 04:30 이 소식을 들은 기동순찰대는

군용 지프를 타고 농성동으로 출동했다. 도청에서 밤새워 회의하던 수습위원들도 긴급사태를 논의했다. 김성용 신부가 탱크 앞에 가서 죽자며 죽음의 행진을 이끌었다. 이성학, 홍남순, 이기홍, 조비오, 이영생, 김천배, 윤영규, 장사남, 위인백 등 수습위원들이 앞장서고 외신기자들도 함께 행진했다. 금남로-돌고개-농촌진흥청 앞까지 4Km 구간을 약 1시간 걸어 05:00 계엄군의 전차를 마주하고 섰다. 탱크와 행렬이 맞서는 동안 김기석 전투병과교육사령부 부사령관이 나타나 전차와 군인들을 후퇴시켰다.

07:00 11명의 수습위원들이 김기석과 함께 전투병과교육사령부를 방문하여 협상을 벌였다. 김기석은 다시 오늘 중 무기를 회수하고 시내 질서를 회복하라며 24:00까지 수습하지 않으면 군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최후통첩을 하였다.

10:30 전투병과교육사령부 사령관실에서 소준열, 박준병, 정웅, 최세창, 신우식, 최웅과 전투병과교육사령부 예하 보병학교, 포병학교, 기갑학교, 화학학교 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압작전 지휘관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제3공수여단 11대대 1지역대 특공조(장교 11명, 사병 66명)은 전남도청 진압, 제11공수여단 61대대 특공조(장교 4명, 사병 33명)는 전일빌딩, 관광호텔, YWCA 진압, 제7공수여단 33대대 특공조(장교 20명 사병 181명)는 광주공원 진압, 제20사단 61연대는 주남마을→학동→전남대병원→전남도청·금남로·광주공원 진입, 제20사단 62연대는 광주교도소→계림동→광주시내·광주시청 진입, 제31사단 96연대는 전남대학교 근처 점령, 제31사단 나머지 부대는 전남지역 장악 등 작전계획이 전달됐다. 작전시간은 보안상 추후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항쟁지도부는 당초 오후로 예정됐던 쫓겨나기대회를 오전에 열기로 했다. 홍보팀은 시내 곳곳에 대자보를 붙이고 가두방송을 통해 11:00 쫓겨나기대회를 알렸다. 11:00 도청 광장에 3만 명이 모였다. 언론인들에게는 정확한 보도를 요구하고 군인들에게는 휴전선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또 과도정부 퇴진, 계엄 해제, 전두환 처단, 민주인사 석방 및 구국과도정부 수립, 왜곡보도 금지, 민주정부 수립, 최후까지 투쟁 등 7개 항의 「80만

민주시민의 결의를 채택하였다. 14:00 항쟁지도부는 기동타격대를 조직하였다.

15:00 도청 앞 광장에서 이날 두 번째 쫓기대회(제5차 민주수호 범시민쫓기대회)가 열렸다. 쫓기대회에서 항쟁지도부는 ‘오늘 밤 계엄군이 공격해올 가능성이 크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16:00 소준열은 광주비행장을 방문하여 제3·7·11공수여단장에게 5월 27일 00:01에 작전을 개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특공대원들에게는 개인당 140발의 M16 실탄이 지급되고 중대별로 수류탄 3발, 가스탄 2발, 방독면 2개씩이 지급됐다. 이들은 얼룩무늬 공수부대 복장 대신 일반 보병 전투복으로 갈아입었다. 철모에는 표식용 하얀 띠를 둘렀다.

17:00 도청 본관 2층 대변인실에서 외신기자회견이 열렸다. 헨리 스큷 스톡스 뉴욕타임즈 동경지국장, 심재훈 서울특과원, 테리 앤더슨 AP 통신 기자, 힌츠페터 NDR 방송 기자, 브래들리 마틴 볼티모어 썬 기자 등이 참석했다. 대변인 윤상원은 외신기자들에게 ‘민주투쟁위원회’의 입장과 계엄분소와의 협상결과, 피해상황을 브리핑하며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대사와 연결해달라는 것과 국제적십자사에 구호를 요청해 달라고 부탁했다.

18:00 제11공수여단 특공대 병력 장교 4명, 사병 33명이 UH-1H 5대로 광주비행장을 출발하여 18:15 주남마을에 도착했다. 23:00 제3공수여단 특공조 11대대 1지역대 장교 13명과 사병 66명이 광주비행장을 출발했다. 23:15 제11공수여단 특공조가 임무 지점으로 출발했다.

차. 5월 27일(화요일)

27일 01:00 제7공수여단 33대대 특공조 장교 20명, 사병 181명이 2.5톤 8대에 나누어 타고 시내로 출동했다. 01:20 이들은 국군광주통합병원에서 하차 후 골목길을 이용하여 전진했다. 01:30 제3공수여단 특공조, 01:50 제11공수여단 특공조가 조선대 뒷산에 도착하였다.

02:50 국군광주통합병원에서부터 지역대별로 골목길을 이용해 약 3Km를 진입한 제7공수여단 특공조는 월산동 무진중학교 부근에서 이 부근을 경계하던 시민군과 마주쳐 교전이 발생했다. 이 교전으로 시민군 한 명이 머리와 가슴 등에 다발성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03:10 제7공수여단 특공조와 시민군은 무진중학교 인근 골목에서 다시 한번 교전을 벌였다. 두 번째 교전에서 계엄군 장교 한 명이 두부관통상으로 사망했다.

03:00 제3공수여단 특공조는 조선대 뒷산을 출발하여 조선대 종합운동장을 가로질러 조선대 앞 도내기시장을 통과하고 전남기계공고 부근을 지나 04:00 노동청과 공격목표인 도청 후문까지 도달했다. 04:00 제7공수여단 특공조는 목표지점인 광주공원을 점령했다.

04:10 제3공수여단 3중대-2중대-1중대-특공중대-4중대-11중대 순으로 도청 후문을 넘어 진입하였다. 계엄군은 도청 내 각 건물의 1층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각 방의 시민군을 제압했다. 계엄군은 대항하는 시민군을 사살하거나 숨어있는 시민군의 항복을 받아내 도청을 장악했다. 남쪽 별관을 진압한 2중대는 재빨리 옥상으로 올라가 위층부터 아래층 쪽으로 차례대로 건물을 장악했다. 계엄군은 시민군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지점에 무차별 사격을 가하고 투항하라고 소리쳤다. 총을 버리고 항복한 시민군들을 향해 계엄군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군화발로 구타한 뒤 허리띠로 결박해 본관 앞마당으로 끌고가 땅에 고개를 처박게 하였다. 도청 상공에서는 헬기가 날면서 항복을 종용했다.

이날 재진입작전 과정에서 민간인 25명이 계엄군의 총격 등으로 사망했다. 도청 구내 및 인근 지역에서 19명, 그 외 지역에서 6명이 사망했다. 최소 19명은 무장을 하고 계엄군에 저항했던 시민군이었으며, 나머지 5명은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이었다. 마지막 희생자는 14살의 여중생이었다.

1980년 5월 18일에서 5월 27일의 5·18민주화운동 기간 중 2만여 명이 넘는 계엄군이 진압작전에 동원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 166명이 사망하였고, 73명은 아직 실종 상태이며, 부상후유증으로 100명 이상이 나중에 사망하였고, 2,6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500명 이상이 체포, 연행, 구금되었고, 400명 이상이 재판에 회부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군인은 27명이 사망하였고, 27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2장

계엄군의 진압작전과 발포



제1절 계엄군의 발포와 책임

1. 조사 배경

계엄군의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과거 여러 차례 국가 차원의 조사가 있었으나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988~1989년 국회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계엄군의 총격에 의한 민간인 희생의 실상을 확인했으나 주요 증인의 진술 거부로 이와 관련된 지휘체계와 책임소재를 밝히지 못했으며 최종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하고 종료했다. 1995~1997년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1심 재판부는 5월 21일 19:30 자위권보유 천명을 실질적인 발포 명령으로 보아 전두환, 주영복, 이희성 3명에 대해서 발포명령자로서 내란목적살인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5월 27일 광주재진입작전에 대해서만 전두환, 황영시, 주영복, 이희성, 정호용 5명에 대해서 발포명령자로서 내란목적살인죄를 인정하여 처벌했다.¹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5월 27일 이전에 발생한 5월 20일 광주역 발포, 5월 21일 13:00경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등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내란목적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아 결국 이 부분에 대한 발포명령자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해 역사적 과제로 남겨놓았다.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외곽도로 봉쇄 및 외곽선 차단 작전 지역에서 계엄군의 발포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역시 발포명령자 규명에는 이르지 못했다.

5·18조사위는 계엄군의 발포와 관련된 선행조사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자 2020년 5월 11일 제10차 전원위원회

1 서울지법 선고 95고합1228 등 「판결」(1996.08.26.); 서울고법 선고 96노1892 「판결」(1996.12.16.), 대법원 선고 96도3376 「판결」(1997.04.17.).

에서 「5·18진상규명법」 제3조 제3호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발포 행위 및 책임소재” <직나-1>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이 조사를 통해서 위원회는 5월 19일 최초 발포, 5월 20일 광주역 일원 발포, 5월 21일 전남도청 앞 발포, 5월 21일 오후부터 26일까지 외곽도로 봉쇄 및 외곽선 차단 작전지역과 전남지역에서의 발포, 그리고 5월 27일 광주재진입작전 발포 등으로 이어지는 각 상황에서 발포가 발생한 경위와 발포 행위에 관련된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뒤 2023년 12월 26일 제116차 전원위원회에서 ‘진상규명’으로 상정된 위 <직나-1> 조사보고서는 2(진상규명) 대 7(진상규명불능)로 ‘진상규명불능’ 결정되었다.²

2. 계엄군의 발포 경위

가. 발포 배경

12.12 군사반란에 성공한 전두환 등 신군부는 다음날인 1979년 12월 13일 아침 육군본부 및 지휘관의 주요 보직을 군사반란에 적극 참여한 인물들로 교체함으로써 ‘하나회’ 중심으로 군권을 장악했다.³ 육군본부의 핵심 요직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은 1980년 2월부터 정치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신군부는 학생시위를 ‘소요사태’로 규정하였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군사작전에 착수했다.⁴

2 위원 3인(이종현, 이동욱, 차기환)의 진상규명 불능사유와 위원4인(민병로, 김희승, 오승용, 서애련)의 불능사유에 대해서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 <직나-1> 「직권조사보고서」, 257~266쪽 참조.

3 전두환 등 신군부는 12.12 군사반란이 성공하자마자 다음 날인 1979년 12월 13일 아침 곧바로 육군참모총장 이희성, 참모차장 황영시, 작전참모부장 김재명 등 육군본부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고, 3군사령관 유학성, 수도경비사령관 노태우, 특전사령관 정호용 등 병력 동원에 관련된 핵심적인 지휘관들을 교체 임명했다.

4 [서울지방법원 1996.8.26. 95고합1228 등] 서울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은 10·26사건으로 선포되어 있는 지역비상계엄조치 계엄법상의 목적과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해제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을 장악하기 위해 국회를 해산하는 동시에 입법, 행정, 사법을 통제하는 비상기구를 설치, 운영할 계획을 마련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수단으로 군을 배경으로 비상계엄을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하고 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비상계엄상태를 계속 유지하여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하고 필요 시 언제든지

① 2월 초 육군본부가 작성한 「소요사태 대비계획」⁵은 ‘지역별 진압계획 수립’, ‘진압에 필요한 교육훈련 강화’, ‘장병 정신자세 확립 및 근무태세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수도권권의 수도권경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는 물론 대전권에 있는 제7공수여단 등도 별도의 소요 진압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② ‘충정작전’⁶ 요원 교육과 각 부대의 소요 진압훈련을 실시하였다. 육군본부는 1980년 2월 18일자 공문⁷을 통해 돌발적인 소요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 정연하게 조치할 수 있게 1/4분기 이전에 폭동진압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라고 특전사령관, 수도권경비사령관, 1·2·3군사령관 등에게 지시했다.⁸ 이 지시에 따라 충정 계획에 포함된 부대와 후방지역 주요 도시 주둔부대는 폭동진압 총론, 무기 휴대 자세, 진압대형 및 기술적인 운용, 폭동 진압 장비 사용요령 등을 중점 교육훈련 분야로 선정하여 2월 말 이전에 부대별로 충정훈련을 완료했다.⁹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에 따라 광주에 제일 처음 투입됐던 제7공수여단도 이때 충정훈련을 실시했다. 『7공수여단 부대사』에 따르면 2월 27일 ‘지역대별 폭동진압 교관이 모여 진압훈련

병기를 휴대한 계엄군을 동원할 수 있다는 위협적인 상황을 조성하면서”라고 판시했다.

- 5 전두환이 1995년 6월 2일 서울지검에 제출한 「소요사태 대비계획」, 「소요진압준비태세 점검계획」 및 「소요사태 진압준비태세 점검 결과」 참조.
- 6 ‘충정작전’이란 박정희와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 각종 시위와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군이 주도적으로 실시한 공세적 시위진압 작전이다. 원래 사회질서 유지는 경찰의 몫이지만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은 ‘공수특전부대’와 ‘20사단’을 육군본부 중앙예비대로 편성하여, 위수령·계엄령 등 비상사태 선포 시에 후방지역의 시위 진압작전에 군을 투입했다. 군사적으로는 「육군 야전예규 부록 “C” 별지 “3”(폭동진압)을 근거로 한 소요사태에 대비하는 작전이다.
- 7 공문은 육본 『야전예규(1976.6.20.)』 부록 별지#30에 의거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 8 육군본부, 폭동진압교육 훈련 지시(작상전 제0-57호), 80.02.18. 발산: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이런 지시는 ‘3월 대학들의 개강 이전에 대대적인 시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이희성 서울지검 피의자신문조서(1995.12.12.)), 『5·18사건 수사기록』.
- 9 육군본부, ‘헌병작전’ 교범(1979년), 제10장 ‘폭동진압’ 참조.

교리를 통일'했다. 제7공수여단은 2월 말까지 진압훈련 교리의 통일, 백지훈련¹⁰ 등 폭동진압훈련을 마친 뒤 3월 4일 각 대대별로 연병장에서 여단장(신우식)이 참석한 가운데 '폭동진압 경연대회 및 장비 시범을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7공수 여단 부대사』에 '충정작전용 준비 장비'를 점검하는 신우식 여단장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¹¹

1980년 3월 6일 수도경비사령부 주관으로 수경사에서 충정훈련 결과를 점검하기 위해 '제1차 충정회의'가 열렸다.¹² 참석대상은 특전사령관, 1·3·5·9공수특전여단장, 20·30·26사단장 및 해당 부대 작전참모였으며, 회의 내용은 '수도권 소요사태 대비책'이었다. 이 회의에서는 1979년 부마사태 시의 시위진압사례를 교훈 삼아 "과감히 타격하라, 끝까지 추적하라, 바둑판식 분할 점령하라"라는 등 적극적인 시위진압방식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시위진압교리가 채택됐다.¹³ 한편 육군본부는 4월 중에 「소요진압 공지협동작전계획」¹⁴을 세워 이전과 달리 시위진압 작전에 헬기를 투입하도록 작전지침을 발전시켰다. 공중과 지상에서 협동작전을 전개함으로써 '조기에 소요 균중을 무력화하고, 진압 작전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공수여단은 물론 제31사단 등 폭동진압작전에 직접 투입할 부대들에게도 헬기

10 5·18조사위, 7공수여단 본부 전령 「정〇〇 녹취록」(2022.02.17.) 참조: "우리는 그때 시위진압을 '폭동진압훈련'이라고 불렀으며, (중략) 그해 2월경 지도를 주고 광주 시내의 지형지물을 암기하도록 하는 '백지훈련'을 실시했다"고 진술했다.

11 5·18조사위가 확보한 『7공수여단 부대사』(1980년) 「별지 #2」의 '충정작전 보완'이라는 항목에는 '충정장비 준비(80.03)를 위해 필요한 진압봉과 방석모, 메가폰, 방송 장비, 가스탄 발사기 등의 구체적인 수량이 적혀 있고, 신우식 여단장이 직접 장비를 점검하는 사진이 게재돼 있다. 또한 여단장 보고 이후에도 충정훈련은 5월까지 지속됐음을 부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3월 14일과 15일에는 2차례에 걸쳐 부대 훈련을 실시하였다.

12 육군본부, 「회의 소집 (지시)」(작성전 제0-69호, 80.02.28.).

13 5·18조사위가 기무사로부터 제출받은 『부마 지역 학생소요사태 교훈』(보안사가 1979년 부마항쟁 직후 작성) 문건에 따르면 "초동단계에 신속한 진압을 위해 과감하고 무자비할 정도로 타격하여 데모 대원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여 군대만 보면 겁이 나서 데모 의지를 상실토록 위력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기재돼 있다.

14 육군본부(1980.04.19.), 「시위진압 공중 지원 방안 연구」(보안사, 383-1980-99, 12~17). 『소요진압 공지협동작전 계획』

(500MD, UH-1H)를 1~2대씩 배속 운용토록 조치하였다. 제7공수여단의 경우 5월 14일에 '500엠디 합동 훈련'을 했다는 사실이 부대사에 기재돼 있다. 배속된 헬기에 공수대원이 직접 탑승하여 공중에서 가스를 살포하는 공지협동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다.

- ③ 육군본부는 1980년 5월 6일부터 5월 9일까지 3일간 '소요진압준비태세'를 종합 점검했다. 충청훈련을 실전에 적용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였다. 육군본부 작전교육참모부가 작성한 「소요진압준비태세 점검계획」(1980.04)에 따르면 수도방위지역과 2군 지역 모든 부대를 대상으로 '장차 소요사태 악화 시에 대비'한다는 목적이었다. 점검반장은 항공감을 포함해 7명의 실무책임급 장교들로 편성했다.¹⁵ 「소요사태 진압준비상태 점검결과」(1980.05.07) 제2군사령관은 점검관을 통해 육군본부에 '특전 7공수를 광주, 전주 및 대전지역에 투입 사용할 수 있도록 작전 지시 하달 요망'이라는 특별건의를 했다.¹⁶

1) 소요 진압 작전과 대침투작전

5·18조사위는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이 5·17 내란을 성공시키기 위해 '소요 진압 작전'과 '대침투작전'을 실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¹⁷ 소요 진압 작전은 육군본부가 주도하고, 민간인의 시위진압을 목적으로 하는데, '충정작전'이라고 불리었다. 반면 대침투작전은 국

15 5·18조사위는 이때 항공감을 점검반장으로 임명한 것은 처음 실시하는 헬기와 지상군의 '공지협동작전' 준비태세를 최종 확인하기 위한 의도라고 판단했다.

16 이때 제2군사령관은 특별건의를 통해 '7공수의 광주 투입'뿐 아니라 '해병사단을 의령 부산 및 대구지역에 투입' 사용할 수 있도록 작전지시로 하달해줄 것도 요청했다.

17 육군본부는 2군의 작전지역인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1군, 3군 등 모든 육군의 작전지역에서 동시에 '대침투작전'을 수행하였다. 김재명(육군 작전참모부장)은 "당시 북괴 도발에 대비한 훈련, 대간첩작전에 따른 계획과 함께 민간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폭동에 대비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재명 진술조서(1995.4.6).

방부가 주도하고, 후방에 침투한 무장공비 등을 섬멸하기 위한 작전이었다.¹⁸ 대침투작전은 비정규전으로 ‘적’을 전제로 진행하였다. 대침투작전은 출동할 때 병사들에게 실탄 기본휴대량을 지급했다. 소요 진압 작전은 민간의 시위진압이 목표이기 때문에 실탄 사용은 허용되지 않았다. 신군부는 5·17 내란 직전 혼란을 틈타 해안선으로 북한 무장공비 침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대침투작전을 소요 진압 작전에 이용했다. 초기에는 해안 지역과 국가 중요시설에 대해서만 대침투경계태세를 내렸다. 하지만 광주에서 5월 18~19일 양일간 계엄군의 강경진압에 분노한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 5월 20일 밤 광주역 계엄군 발포 등으로 사태가 급변하자 5월 21일 아침 8시경 육군본부는 전교사지역에 ‘진도개 하나’¹⁹를 발령함으로써 ‘내륙지역 대침투작전’으로 전환하여 광주는 물론 수도권 전역에 걸쳐 ‘봉쇄 차단 작전’을 실시하였다.²⁰ 대침투작전을 이용하여 시위대를 ‘적’으로 간주함으로써 발포의 조건을 갖췄고,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소요 진압 작전’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실탄 지급을 정당화시켰다.

가) 소요 진압 작전

전두환 신군부세력은 12·12 군사반란 직후 군권을 장악했고, 1980년 2월 예상되는 신학기 대학생들의 민주화요구 시위를 소요 사태로 규정하고 군을 동원하여 진압한다는 목표 아래 ‘소요 진압훈련’ 계획을 세워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켰다. 이때 훈련은 보안사령부가 1979년 10월 부마항쟁 진압 직후 작성한 「부마 지역 학생 소요 사태 교훈」을 참고하여

18 ‘대침투작전’(Counter Infiltration Operation)은 대통령 훈령 제28호 「대비정규전태세강화지침」(80.01.01)을 근거로 한 작전. 지상·해상·해안·공중 또는 제3국을 통해서 침투하거나 침투한 적을 포착·격멸·소탕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반 작전 활동. 땅굴이나 내륙 하천의 수중을 이용한 침투에 대한 포착·격멸도 포함하며, 세부적으로는 대지상·대해상·대해안·대공중 침투작전과 내륙지역 대침투작전으로 구분한다(국방일보 2008.12.23.).

19 ‘진도개 하나’는 통상 대침투작전에서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로 적의 침투가 확인되어 국지적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령하고, 군·경·관·민이 통합 작전을 수행한다.

20 전교사, 「전투상보(총정작전결과)」, 1980.06.13.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군 자료집』 1권, 308쪽.

‘초동단계에 신속한 진압을 위해 과감하고 무자비할 정도로 타격하여 데모대원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여 군대만 보면 겁이 나서 데모의 의지를 상실토록 위력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방침에 따랐다.²¹ 훈련 내용은 저격수 측정대회, 백지 훈련, 공지협동작전 등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했다. 그리고 1980년 5월초에 이르자 진압 준비상태를 최종 점검함으로써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위한 사전 준비를 모두 완료했던 것이다.²²

나) 대침투작전

중앙정보부는 1980년 5월 10일 일본으로부터 ‘북한 남침 관련 첩보’를 입수하였다고 발표했다. 중앙정보부가 북한남침설을 조작한 것이다.²³ 그러나 전두환 중앙정보부장 서리는 보안사 참모들에게 즉각 이 첩보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²⁴ 보안사령부로부터 남침설 첩보를 접수한 육군본부는 5월 10일 ‘대침투작전 태세 강화’를 지시했다.²⁵

21 이 자료는 1979년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부마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1,35공수여단과 해병 7연대를 투입하여 진압한 경험을 바탕으로 차후 사태를 대비할 목적으로 보안사가 제작했다. 부마항쟁 때 초기 강경진압에 실패하여 어려움을 겪었다는 인식 아래 군부 내 기본방침이 변경되었다. 초동단계부터 공수부대를 투입하여 ‘과감히 타격하라, 끝까지 추적 검거하라, 분할식으로 점령하라’는 폭동진압의 신교리가 만들어졌다.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김재명은 “부마사태 이후 군부 내에서 시위진압 방법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폭동진압방침이 강화”되었다고 진술했다(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재명 진술조서」(1996.01.07.).

22 7공수여단 부대사(1980).

23 일본 내각조사실 담당과장은 훗날 한국 MBC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1980년 5월 당시 일본 내각조사실의 한반도 담당 반장은 그런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내각조사실 한국과장 역시 그러한 정보를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한국 측에서 남침 정보를 먼저 물어왔고, 한국 측에서는 대담 내용을 날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5월 17일 한국의 발표를 보고 “계엄령을 폐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 사전 준비를 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https://www.youtube.com/watch?v=AHb3VKmPWxU&t=20s>).

24 미국 정부는 1989년 6월 19일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성명서’를 대한민국 국회에 제출했다. 이 성명서에 의하면 “위킴 장군은 전씨가 국내 정세에 대해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강조하는 것이 청와대의 주인이 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 같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존 위킴(1999), 『회고록』 부록, 300~301쪽.

25 육군본부(1980.05.10.), 「작상전 제0-192호」, 작전상황실 상황일지.

전두환은 동시에 신현확 국무총리에게도 그 첩보를 전했다. 국무총리는 5월 12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자리에서 중앙정보부 현홍주 국장이 첩보 내용을 장관들에게 직접 보고하였다.²⁶ 다음날인 5월 13일 국방부는 대간첩대책본부에 ‘대간첩작전’지시²⁷를 내렸다.

다음날인 5월 14일 육군본부는 ‘소요진압대책본부(본부장 김재명 육군본부 작전교육참모부장)’를 설치하고 소요사태 진압부대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 국방부의 ‘대간첩작전²⁸’과 육군본부의 ‘소요 진압 작전²⁹’이 동시에 전개되었다. 대간첩작전은 개인별 실탄 60발이 기본휴대량이다. 대간첩작전은 위협 수준의 강도에 따라 ‘진도개’의 발령 단계를 높여가는데, ‘진도개 하나’가 발령되면 대대에서 통합 보관하던 실탄을 개인별로 지급하고 개인화기에 장전한다.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의 출동 장비는 대간첩작전에 준하는 장비와 함께 실탄, 수류탄, 크레모아 등 살상 무기였다 시위진압에 필요한 진압봉, 방석망, 최루탄 등을 추가한 상태였다. “당시 공수부대는 전국적인 대침투작전의 기동 타격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부대가 이동하면 5분 대기용 실탄을 대대 단위로 적재해서 가지고 다녔으며 수류탄도 마찬가지로”였고, “실탄은 대대 단위로 통합하여 수송”했다.³⁰ 제11공수여단은 서울에서 광주로 이동하기 직전인 5월 18일 08:00~14:00경 공수여단 본부가 위치한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오음리에서 서울 동국대학교로 출동 대기 중

26 제39회 임시국무회의회의록(1980년 5월 12일), ‘최근의 북괴 정세 보고(보고자: 중앙정보부 기정국장, 시간: 37분), 참석자: 국무총리 신현확 등 12명.

27 국방부(1980.05.13), 「대간첩 제49호」, 「국내 소요사태와 관련 북괴의 적극적인 대남활동 및 비정규전 위협이 예상됨에 따라 (중략) 지시」. 5.14.~5.20.(7일간). 조치사항은 ‘조기경보 체제 확립, 지상 해상 공중 경계 강화, 중요 시설 경비보강, 즉각 출동태세 확립’ 등이다. 국방부는 5월 20일 대침투작전 태세 강화 기간을 연장했다(작성전 1512호, 제33사단 『80 부대사』, 별지 #2-10 「광주지역 소요사태 상황일지」.

28 국방부는 대간첩작전과 대침투작전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았지만, 5·18민주화운동 기간 중 작전에 참가한 일선 부대 문서에는 대부분 ‘대침투작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29 ‘소요진압작전’은 국가비상사태 또는 불순세력에 의한 치안의 혼란, 민심 동요 등으로 행정 및 사법 기관이 그 기능을 상실하여 군대를 투입해서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이 지원하는 작전이다.

30 국방부검찰부, 「고성준 진술조서」(1994.12.19.).

인 1,140명에게 실탄 67,200발(1,680발×40박스)을 수송하였다.³¹ 병사 개인당 평균 59발씩 분배할 수 있는 이 실탄은 대간첩작전 때 기본휴대량인데, 5월 18일 오후 제11공수여단이 광주로 이동할 때 함께 가지고 갔다.

다) 봉쇄선 차단 작전

계엄군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의 시위가 다른 지역, 특히 수도권과 서울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단계별로 3중의 봉쇄선을 구축하였다. 제1단계는 5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수도권 차단에 집중했다. 2단계는 5월 20일 밤 광주에서 시위가 격화되자 ‘대침투작전 태세 강화’ 조치를 연장하였다. 광주를 포위 고립시킨 상태에서 대침투작전 차원의 진압작전을 펼치기 위한 조치였다. 이 조치에 따라 5월 21일 08:00 전교사 지역에 ‘진도개 하나’가 발령됐고, 13:00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에 뒤이은 광주 외곽 봉쇄, 전남·북 도계 차단 등이 본격화됐다. 3단계는 5월 22일부터 광주 무장 시위대의 서울 확산을 우려해 6월 7일까지 취한 ‘대침투작전 태세 강화’ 조치였다. 이때 수도권 진입이 예상되는 고속도로상에 다중의 초소(‘왕거미’ 초소)를 설치하여 3중으로 ‘적 침투 봉쇄 및 차단 작전’을 본격화한 것이다. 단계별 봉쇄선 차단 작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단계(5월 17일~5월 20일, 수도권 대공 초소 설치)³²

5월 17일 20:00경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직전 육군본부는 수도권의 제33사단에 ‘대공 초소 운용, 해안 경계근무’를 지시했다. 5월 18일 17:25경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데

31 특전사, 작전일지, 제11공수여단 인솔 장교 중위 김OO은 탄약 40박스와 방석망 300개를 동국대로 수송: “문: 전투상보에 명시되어 있는 출동 장비를 보면, 탄약은 M16 1,139정에 개인당 60발씩이므로 총 68,340발이 됩니다. 그렇다면 위 수송한 40박스 외에 1,140발을 더 소지하여 출동하였던 것인데, 1,140발의 탄약은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였는가요? 답: 아마 1,140발은 경계용 실탄으로 운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5·18조사위, 『유OO 진술 조서』(2022.12.27.).

32 5·18조사위가 입수한 제33사단, 『부대사』 2집(1981), 별지 #2-10 ‘광주지역 소요사태 상황일지’(443-335-352).

프콘-4 (DEFCON-4) 변경사항이 접수되자 ‘대침투 감시대책’을 한층 강화했다. 5월 20일 19:15경 북괴침보사항 접수에 따라 ‘대침투작전 태세 강화 기간 연장’지시가 내려졌고 ‘대공감시 및 사격 태세를 유지하라’는 조치가 취해졌다. 수도권 내부는 공수부대가 ‘소요 진압 작전’을 펼쳤지만, 외곽은 제33사단 등 정규 부대 중심으로 대침투작전 태세가 강화됐다.

5·18조사위는 5월 20일 21:00 전남도청 부근에서 진압작전 중이던 제11공수여단에 ‘진도개 돌’이 발령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³³ 또한 같은 시각 광주지역에 위치한 공군부대, 포병학교, 기갑학교에서도 ‘진도개 돌’, ‘비상발령’ 등의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들을 확인했다.³⁴ 위원회는 이와 같은 경계 강화 조치가 그 시각 전남도청 부근과 광주역 등 광주 시내에서 야간 시위가 격화되자 군부대의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내린 것으로 판단했지만 명확하게 전교사 지역 전체에 ‘진도개 돌’의 발령이었는지는 더이상 확인할 수 없었다. 이날 밤 제3공수여단 작전지역인 광주역에서는 실탄 분배와 발포가 있었고, 전남도청 일대에서는 제11공수여단 일부 병력에게 실탄이 분배됐다.

(2) 제2단계(5월 21일, 전남·북 도계 차단)

5월 21일 오전 04:30~05:45 계엄사령부에서는 이희성 계엄사령관, 황영시 참모차장, 김재명 작전참모부장, 나동원 참모장, 조홍 헌병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20일 밤 제3공수여단의 광주역 발포에 따른 자위권 발동 등 3가

33 5·18조사위, 11공수여단장 「최종 진술조서」(2023.01.12.); 5·18조사위, 11공수여단 작전참모 「유상훈 진술조서」(2022.12.27.). 5·18조사위는 이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검토하기 위해 같은 시각 광주역에서 작전 중이던 3공수여단 지휘관들에게도 5월 20일 21:00 진도개 ‘돌’ 발령 여부를 확인했으나 명확한 진술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34 5·18조사위는 공군부대에서 입수한 ‘광주 현황’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문서에 5.20. 21:00 ‘진도개 돌’ 발령(광주), 지휘관 참모 비상 소집, CP 구성, 진도개 ‘돌’ 준한 기지 경비 강화 등이 기재돼 있는 점을 확인했다. 『육군 포병학교 부대사』(1980년)에도 ‘80.05.20. 21:00 영외거주자 소집, 5분대기조 및 잠정전투중대 출동 대기’라고 기재돼 있다. 『기갑학교 부대사』에는 “80.05.20. 21:00 비상 발령(발령관 학교장), 경계 강화(진도개 ‘셋’에 의거 증강)”이 기재돼 있다.

지 사향을 결정했다. 첫째, 계엄군을 광주 시내로부터 외곽으로 전환 재배치, 둘째, 1개 연대를 추가 투입하고 폭도 소탕은 23일 이후 의명(依命) 실시, 셋째, 자위권 발동 등이다.³⁵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21일 광주지역에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광주사태는 상당수의 타 지역 불순 인물 및 고정간첩들이 사태를 극한적인 상태로 유도하기 위하여 광주에 잠입, 터무니없는 악성 유언비어 유포와 공공시설 파괴·방화, 장비 및 재산의 약탈행위 등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지역감정을 자극, 선동하고 난동행위를 선도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언급했다.³⁶

21일 오전 8시 전남·북계엄분소는 제31·35사단 지역에 대침투작전 단계에서 가장 강도가 높은 ‘진도개 하나’를 발령했다.³⁷ 이때를 계기로 광주 시내에서 시위진압 중이던 일부 공수부대원들에게 실탄이 지급됐고, 동시에 외곽 봉쇄 작전이 시작됐다. 12:30경 전주에 주둔하던 제35사단은 장성과 정읍 사이 도계에 위치한 사남터널 차단을 위해 75/283명이 출동하여 13:25경까지 배치를 완료했다. 12:50경에는 제35사단 직할대 2/102명이 정읍활주로(T-8)에 APC 장갑차 3대와 함께 배치됐다.³⁸ 13:00경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전남·북 도계 차단 작전’이 진행된 것이다. 제35사단 도계의 주요 도로 및 소로를 차단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하기 위해 군 32/186명,³⁹ 경찰 128명, 예비군 248명, 방위병 25명을 봉쇄선에 배치했다. 21:00경에는 순창-담양 간 도계 도로에 3/22명이 개인당 실탄 156발, M-60 1정과 실탄 1,000발을 휴대한 채 차단 작

35 서울지방검찰청, 『5·18 관련 수사결과』(1995.7.18.), 『5·18사건 수사기록』 1권.

36 담화문에서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고정간첩’이 상황 악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대침투작전의 일환으로 취해진 ‘진도개 하나’ 발령을 정당화하고 있다.(『5.18민주화운동총서』 2권, 29쪽)

37 전남·북 일대에 발령된 ‘진도개 하나’는 5월 20일 밤 제3공수여단의 광주역 집단발포 여파 때문이었는데, 계엄 당국은 이때부터 광주지역의 시위대를 잠정적인 ‘적’으로 간주했다. 전교사 지역에 ‘진도개 하나’가 발동된 사실은 전교사, 『전투상보 (총정작전결과)』(1980.06.13.),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군사료집』 1권, 2023, 308쪽 참조.

38 전교사, 『작전일지』, 5. 21. 12:30, 12:50 상황.

39 전투병과교육사령부, 『광주사태 시 전교사 작전일지』(1980), 5. 21. 21:00 상황.

전에 들어갔다.⁴⁰ 제35사단 도계 차단 작전 중 5월 21일 하루 동안 민간인 17,792명, 차량 6,910대를 검문 검색하였다.⁴¹

5월 21일 16:00경 계엄사령부는 수도권에 ‘진도개 돌’을 발령하였다.⁴² 수도권의 2차 봉쇄선도 추가 병력을 배치하는 등 경계를 더욱 강화했다. 제33사단은 영외거주자를 소집하여 초소를 증가 배치하였고, 16:30경 연합사로부터 ‘데프콘-4(DEFCON-4)’ 변경지시가 접수되어 ‘긴급조치요원 상황 근무’를 더욱 강화했다.⁴³

(3) 제3단계(5월 22일~6월 7일, ‘왕거미 초소’ 설치)

광주에서 무장한 시위대가 서울 등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해 육군본부는 1979년 12월 작성한 ‘위기관리대책’ 매뉴얼에 따라 수도권에 이르는 고속도로상에 다중으로 ‘왕거미 초소’ 25개소와 축선 8개를 설치하여 ‘적(무장시위대)’ 침투를 차단하는 작전을 펼쳤다.⁴⁴ A, B급 초소로 구분하여 초소당 보초는 8발씩 실탄을 휴대했고, 106mm 무반동총 2문씩을 배치했다. 폭도와 마주치면 「계엄훈령 제11호」(자위권 발동)에 의거 처리토록 지시했다.⁴⁵ 이 기간에 전남·북 도계의 차단선도 더욱 촘촘하게 보완했다. 5월 22일 기갑학교 11전차 대대 전차 11대와 4/36명의 병력이 제35사단 배속,⁴⁶ 같은 날 20:10경 제35사단 23번 도로봉쇄,⁴⁷ 5월 23일 09:00경 전교사 전차 1개 중대, 탱크 10대 제35사단에 추가 배속, 5월 24일 담양-순창 간 고개, 곡성-남원 간 고개, 장성-정읍 간

40 전투병과교육사령부, 『광주사태 시 전교사 작전일지』(1980), 5. 21. 21:00 상황.

41 제35사단, 『1980 부대사』, 476쪽.

42 수도권단 「작상전 제1529호」.

43 제33사단(1981), 『부대사』 2집, 별지 #2-10 「광주지역 소요사태 상황일지」(443-335-352), 작상 1531호.

44 육군본부 교육참모부, 102-34 「육군 위기관리 대책」(1979.12.25.).

45 제33사단(1981), 『부대사』 2집, 별지 #2-10 「광주지역 소요사태 상황일지」(443-335-352).

46 201-11, 국군기무사령부, 「광주사태 관계철」, 『광주소요사태(22-26보)』.

47 전투병과교육사령부, 『광주사태 시 전교사 작전일지』(1980), 5.22. 20:10 상황.

도계, 영광-고창 간 고개, 태인 등 17개소에 전차 10대, M60 2개, 군경 21/307명을 배치하여 검문검색을 강화했다.⁴⁸ 광주에서의 ‘소요 진압 작전’은 5월 27일 새벽 사실상 종료됐지만, 수도권 방어를 위한 ‘대침투작전 대기 태세’는 6월 7일 14:20경 왕거미 초소가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지속됐다.⁴⁹

2) 강경 진압 지시

계엄군의 강경 진압은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직후 광주에서 시위가 격화된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신군부 수뇌부의 강경 진압 방침과 지시는 다음과 같다.

- ① 수도권경비사령관 노태우는 1980년 3월 6일 ‘제1차 총정 회의’에서 “개강 후 부분적인 저항운동이 예상되며 군의 투입을 요하는 사태 발생 시 강경한 응징 조치가 요망된다”라고 말했다.⁵⁰ 이때부터 1978년도 본 교리가 폭동진압훈련에 적용되면서 훈련 강도가 높아졌다.
- ② 계엄부사령관인 육군참모차장 황영시는 5월 18일 전남대학교 학생시위를 강력하게 진압하도록 지시했다.⁵¹

계엄부사령관 지시 사항

80. 5. 18. 계엄부사령관은 전남대학교 소요에 단호한 계엄사의 조치를 보여주기 위하여 보안사 계통에서 전교사령관에게 지휘 조인 강력하게 다루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음.

〈그림 2-1-1〉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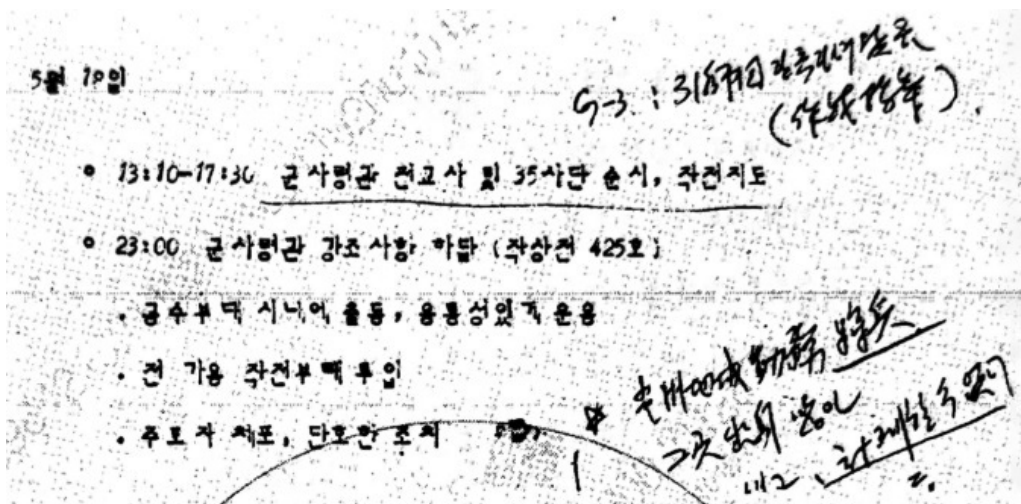
48 201-08, 국군기무사령부, 「광주사태 상황철, 상황보고」(1980.05.23.), 『광주소요사태(23-14호)』.

49 제33사단(1981), 『부대사』 2집, 별지 #2-10 「광주지역 소요사태 상황일지」(443-335-352).

50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07, 『12·12, 5·17, 5·18사건 조사결과보고서』, 64쪽 재인용.

51 국군보안사령부, 「광주사태 일일속보철」(1980.05.19.).

제2군사령관의 강조사항이 5월 18일 23:00경 각 공수부대에 하달되었다. 이 지시는 “공수부대 시내 출동, 융통성 있게 운용”하며 “전 가용 작전부대 투입”하여 “주모자를 체포”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었다(〈그림 2-1-2〉).⁵² 제2군사령부는 5월 19일 23:40경 「충정작전 지침(작성전 426호)」을 하달했다(〈그림 2-1-3〉). 이 지침의 내용은 “도시 게릴라식 소요 및 난동 형태에 대비”, “소규모로 편성한 다수 진압부대 융통성 있게 운용”, “전 작전 가용 병력 최대 운용”, “바둑판식 분할점령”, “대대 단위 기동 타격대 보유, 조기에 분할 타격 체포”, “군중 10인 이상 집결 방지”, “다수 편의대 운용”, “과감한 타격”, “통금시간 대폭 연장”, “총기 피탈 방지(엄중 문책)”, “주민에게 선무 홍보활동 강화 (전단, 방송)” 등이었다.⁵³ 이처럼 5·18민주화운동 초기부터 계엄군 상층부에서는 시위대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현장 부대에 하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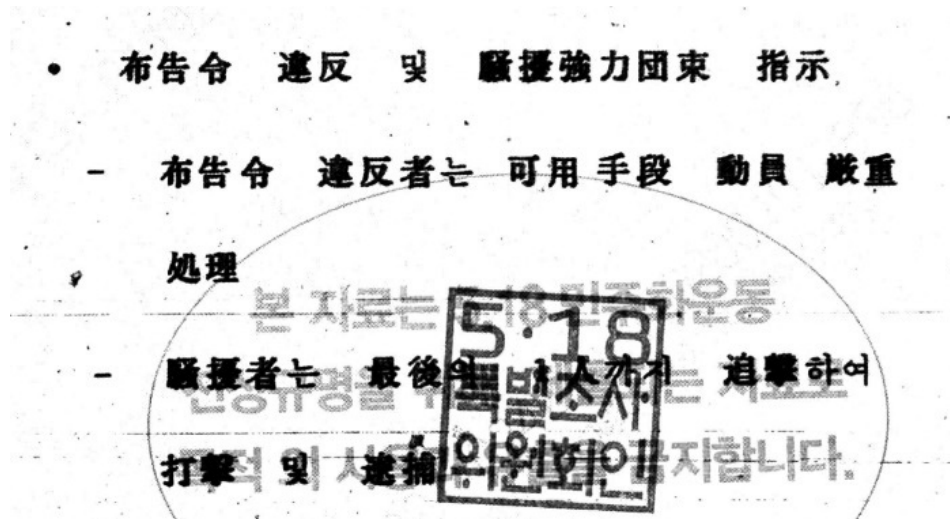


〈그림 2-1-2〉 제2군사령부, 「광주권 충정작전 간 군 지시 및 조치 사항」

52 「작성전 제425호」(1980.05.18. 23:00)〈제2군사령부,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 국군보안사령부, 『383-1980-95』, 143쪽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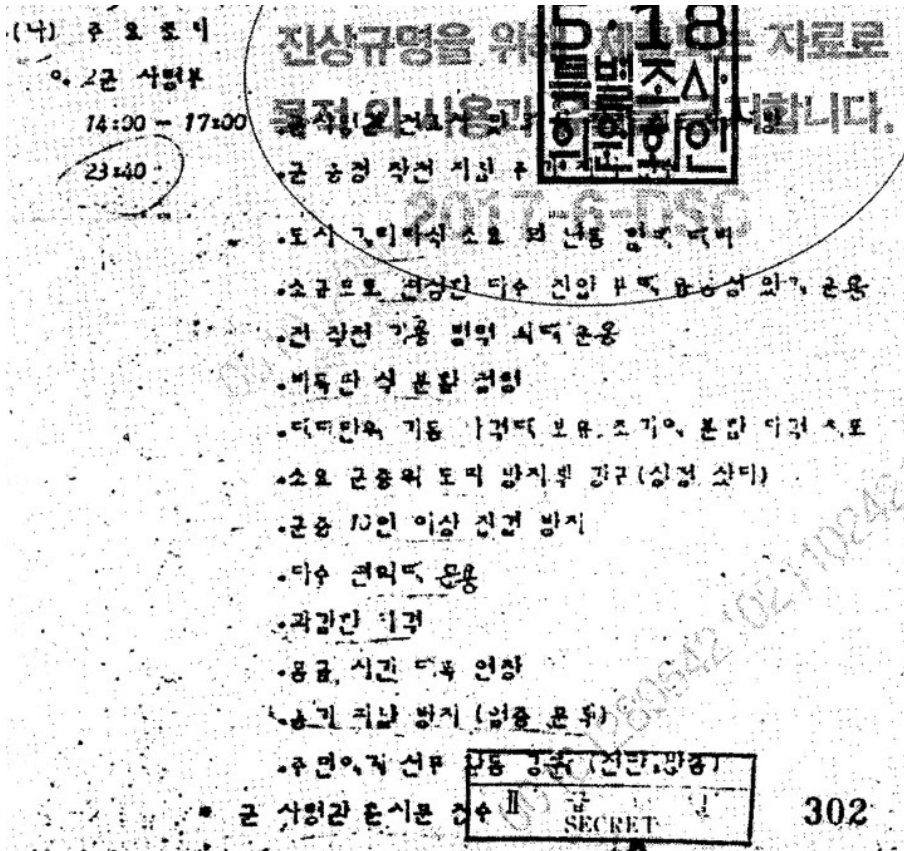
53 전교사, 「전투상보 (충정작전결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군 자료집』 1권, 261쪽.

그리고 당시 보안사에서 작성한 <그림 2-1-4> 5월 19일 「총정 업무 일일 주요 사항」 중 “포고령 위반 및 소요 강력 단속 지시” 내용에는 “포고령 위반자는 가용 수단 동원 엄중 처리”하고 “소요자는 최후의 1인까지 추격하여 타격 및 강포”하라는 지시사항이 기록되어 있다.⁵⁴



<그림 2-1-3> 보안사 「총정 업무 일일 주요 사항」 중 포고령 위반 및 소요 강력 단속 지시

54 국군보안사령부, 「총정업무 일일 주요사항(5.19.)」,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군 자료집」 5권, 21쪽.



〈그림 2-1-4〉 전교사 『전투상보 (충정작전 결과)』 중 5월 19일 제2군사령부 주요 조치 내용

나. 진압작전 중 발포⁵⁵

1) 5월 19일 광주고등학교 근처의 최초 발포

1980년 5월 19일 광주고등학교 근처 계엄군의 발포가 5·18민주화운동 기간 중 발생한 최초 발포로 알려져 있다.⁵⁶ 5·18조사위는 당시 시위대가 아직 무장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55 계엄군이 5월 21일 오후 외곽으로 철수하는 과정 및 그 이후 외곽봉쇄작전 중에 발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3장 계엄군의 외곽봉쇄작전과 집단학살 부분에서 기술할 것이므로 제2장에서는 제외하였다.

56 5·18조사위는 계엄군의 5월 19일 총상으로 인한 최초의 사망자를 김안부로 판단하였다. 김안부는 5월 19일 22:00경 광주공원 일대에서 진압작전을 하던 계엄군(11공수여단 61대대 3지역대로 추정)의 총격으로 '우전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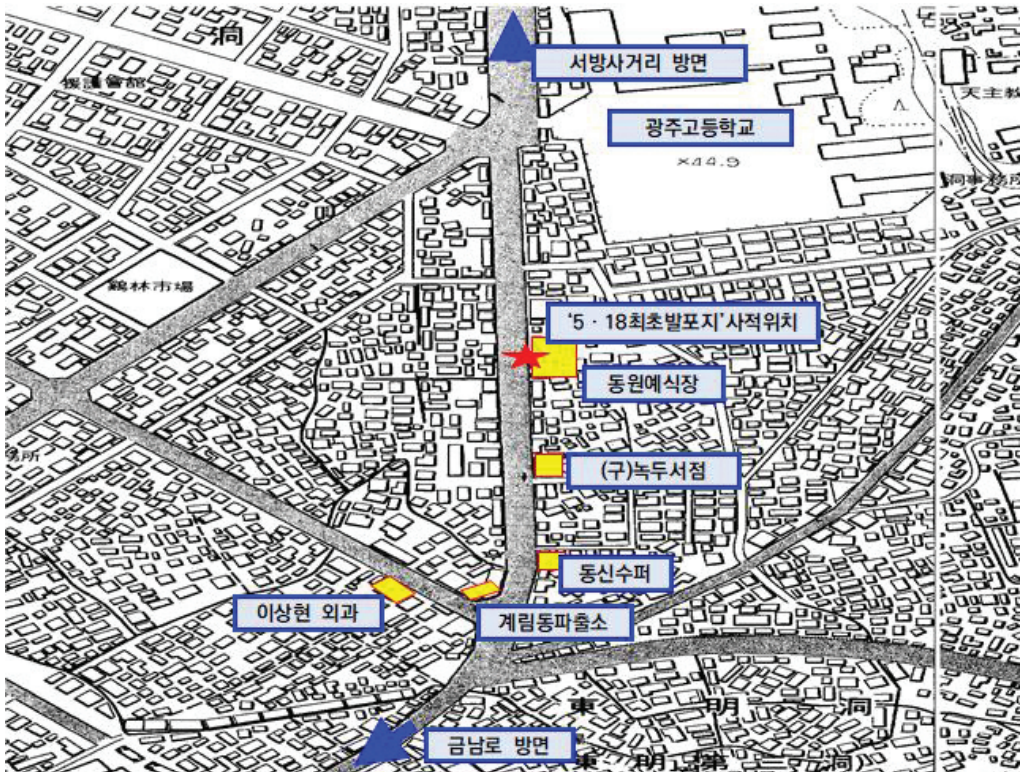
작전에 투입된 계엄군에게도 공식적으로 실탄을 지급하도록 하는 지시가 없었으며, 상부로부터 발포 승인 또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포가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의 상황에 대해 당시 계엄군의 주장은 고장으로 멈춰 선 장갑차를 불태우려는 시민들의 행동에 장갑차에 탑승하고 있던 제11공수여단 63대대 작전장교 차정환⁵⁷ 대위가 위협을 느껴 사격을 하던 중 유탄에 의해 고등학생 김〇〇이 총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5·18조사위는 계엄군의 최초 발포로 알려진 차정환의 발포가 위협 사격인지 아니면 조준 사격인지를 살펴보고 당시 장갑차의 출동 경위, 발포에 사용된 실탄의 출처, 발포절차의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

맹관총상'으로 사망했다. 따라서 5월 19일 16:50경 광주고등학교 근처 최초 발포에 이어 당일 야간에도 광주공원 일대에서 진압작전 중인 부대가 발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사건(직가-2) 진상규명 조사보고서』 37~38쪽 참조.

57 차정환 대위는 1980년 5월 24일 송암동에서 발생한 계엄군 간 오인 교전 당시 사망하였다.



〈그림 2-1-5〉 광주고등학교 근처 발포 현장

〈표 2-1-1〉 5월 19일 광주고등학교 근처 발포 상황

순서	상 황 개 요
1	• 5월 19일 오전 기갑학교 9전차대대 소속 CM6614 장갑차 1대가 제11공수여단 63대대에 배속, 정보과 및 작전과 인원들이 탑승하여 위력 시위와 시위진압 임무 수행
2	• CM6614 장갑차는 15:30 이후 미상 시점에 계림파출소 인근 시위대 해산을 위해 단독으로 이동 중 동원예식장 건너편에 있는 인도를 충격하여 기동 불능 상태에 빠짐
3	• 시위대가 페인트통, 짚단 등을 이용하여 장갑차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고, 김○○은 돌을 이용하여 장갑차의 관측 창 파손을 시도함
4	• 16:50경 위협을 느낀 차정환 대위가 장갑차 해치를 열고 M16 소총으로 공중에 최초 위협사격을 실시. 이때의 사격은 반자동 (단발) 사격이었음
5	• 위협사격으로 시위대가 흩어지자, 장갑차 탑승 인원들이 내려 불을 켜고, 차정환 대위는 시위대를 향해 다시 사격을 실시함. 이때의 사격은 자동 (연발) 사격이었고, 김○○이 대퇴부 등에 총상을 입고 쓰러짐.

순서	상 황 개 요
6	• 위 3~5번 사이 미상 시점에 정보장교 김진규 대위와 정보과 선임하사 오○○ 중사가 본대에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함
7	• 공중보건의 정○○ 등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김○○을 계림오거리 인근 이상현 외과로 옮김. 이상현 외과에서 정○○이 김○○에게 응급 치료 후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후송함
8	• 이후 김진규 대위가 지원 병력을 이끌고 와 장갑차에 탑승했던 공수부대원들은 지원 병력과 함께 철수하였고, 고장 난 장갑차는 9전차대대 구난 차량이 와서 회수함

가) 위협 사격과 조준사격

① 광주고등학교 근처 발포에 대한 조사는 1989년 1월 16일 개최된 국회 〈5·18특위〉 제1차 현장검증소위원회⁵⁸에 출석한 피해자 김○○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다음은 당시 김○○의 증언 내용이다.⁵⁹

“장갑차가 동원예식장 길 건너편인가에 있었는데 청년들이 짚단에 불을 붙여서 장갑차 위에 던져 버렸어요. 그 상태에서 저는 동원예식장 인도에 있었는데 장갑차 뚜껑이 조금 열리더니 총구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을 향해서 쏘았거든요. 그래도 겁이 나서 피하려고 하니깐 옆에 계셨던 어르신네 한 분이 공포니까 도망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 와중에서도 뒤를 돌아보니까 ‘아스팔트’에 불꽃이 팍팍 튀는 것이 보였어요. 거기에서부터 장갑차에서 군인이 직접 총을 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 총을 맞았는데 바로 여기 복부를 맞았습니다.”

② 서울지방검찰청과 국방부 검찰부가 작성한 『5·18 관련 사건 수사 결과』에서는 1980년 5월 19일 광주고등학교 근처 발포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5.19. 17:00경 공수부대원의 사체가 있다는 허위 제보를 받고 사직공원을 수색하고 복귀하

58 국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공식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종료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사 내용은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중 있었던 현장검증소위원회의 회의록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59 국회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현장검증소위원회 회의록』(1989.01.16.), 13~15쪽.

던 11공수여단 63대대 일부 병력이 광주고등학교 부근 동원예식장 길 건너편에 이르렀을 때 시위대의 강력한 포위 공격과 최루탄 연기로 인해 공수부대 장갑차가 방향 감각을 잃고 보도 턱을 들이박고 정지하자, 시위대 수명이 불붙은 짐단을 장갑차 뚜껑을 열고 장갑차 속으로 던져 넣으려 하였고, 이에 장갑차에 타고 있던 장교가 장갑차 문을 열고 M16 소총으로 위협 사격하였는데, 그 와중에 김○○(19세, 조대부고 3년)이 대퇴부 등에 총상을 입었음.”⁶⁰

5·18조사위는 장갑차 탑승자들을 면담조사한 결과 이 장갑차가 ‘사직공원’을 수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장갑차가 광주고등학교 부근에 이르기 전 ‘공수부대원의 사체가 있다는 허위 제보를 받고 사직공원을 수색’했다고 결론 지었지만 5·18조사위 면담조사에 응했던 탑승자들은 모두 이 사실을 부인했다. 특히 탑승자 중 제11공수여단 63대대 작전병 일병 임○○는 “사직공원 일대를 수색한 사실이 없었다. 시민회관과 광주MBC 사이를 오가다가 무전으로 계림동 쪽 시위대를 진압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수사에서는 장갑차 탑승자들을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직접 탑승하지 않은 63대대장 조창구 중령⁶¹, 61대대장 안부웅 중령⁶², 고장난 장갑차를 구난하기 위해 출동했다는 63대대 8지역대장 성기준 소령 등만 조사했다. 만약 탑승자들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1995년 검찰 수사 당시 조창구, 안부웅 등은 장갑차의 동선(사직공원 수색)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된다.⁶³

60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1995.07.18), 「5·18 관련 사건 수사 결과」, 『5·18사건 수사기록』 1권, 72쪽.

61 “광주 사직공원에 공수부대원의 사체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참모장이 저에게 사전 통보를 아니하고 저희 대대의 차정환 대위에게 장갑차를 가지고 가서 확인해보라고 하여 차 대위가 나갔는데 (후략)”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조창구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1995.06.23)).

62 문: 피의자(안부웅)는 무슨 임무를 받고 광주공원에 장갑차를 출동시킨 것인가.
 답: 여단본부 참모장으로부터 무전기로 광주공원에 사상자가 발생했으니 출동하여 확인한 후 보고하라고 하여, 차 대위에게 임무를 준 것입니다.”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안부웅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1995.12.31).

63 이들의 검찰 진술은 고장 난 장갑차에서 발생한 최초 발표가 ‘사직공원 부근에서 발생한 공수부대 사체 수색에 이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당시 계엄군이 처한 상황이 그 정도로 위급했기 때문에 뒤이은 장갑차에서의 발포행위가 정당한 행위였던 것처럼 주장하기 위한 의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5월 19일 사직공원 부근에서 공수대원들이 시위대를 뒤쫓다 대열에서 낙오되어 시위대들이 던진 돌을 맞았는데 곧바로 적십자병원 직원에게 구출돼 통합병원으로 보내졌다. 경찰기록(전남도경, 「집단사태발생 및 조치상황」)에는 ‘5.19. 15:55 양림동 적십자병원 앞에서 계엄군 1명이 구타당하고 있으며 총기를 피탈 당한 것 같음(*31사단 상황실 이증위)’이

제11공수여단 63대대 정보장교였던 김진규는 자신이 당시 그 장갑차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교도대에서 지원받은 장갑차를 지역대에 배치하려고 하였으나 운용 경험이 없다고 하여 대대본부 작전·정보장교 및 계원들이 탑승하여 운용했다고 한다. 그리고 5월 19일 지역대 병력과 함께 출동을 하였다가 자신들이 앞장서서 나갔는데 최루탄 때문에 방독면을 쓰고 운전병이 운전을 하다가 시야가 가려 제대로 보지 못해서인지 회전 중 인도턱을 들이받아 장갑차 앞의 철판이 떨어지고 움직이지 않게 되었고, 무전도 되지 않아 자신과 정보 선임하사가 본대에 연락을 하러 나왔다고 하였다. 이후 병력들과 함께 다시 현장에 갔더니 장갑차를 에워싸고 있던 시민들이 흩어졌으며, 장갑차에서 나온 차정환 대위가“(시위대가) 짚 같은 것에 불을 붙여 장갑차 밑으로 집어 넣는 등 상황이 험악하여, 가지고 있던 실탄을 장전하고 해치 문을 열고 나와 위협사격을 한방 정도 하면 시위대가 흩어졌다가, 조금 지나면 다시 모이는 상황이 반복되었다”라고 한다.⁶⁴

③ 당시의 군 자료에서는 광주교 부근에서 발생한 최초 발포 사실을 기재한 문서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505보안부대에서 작성한 아래 〈그림 2-1-6〉「광주소요 배후 첩보」에 기재된 사항이 유일하다.⁶⁵ 이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5. 19. 고교생 1명(인적 사항 미상)이 우측 대퇴부에 총상을 입고 전남의대 병원에 입원 수술을 받았으며 (중략) 군에서는 데모 진압병력에게 실탄을 미지급코 있고, 경계 병력만 1인당 10발씩 불출, 장교가 통합 보관코 있을 뿐 아니라, 5. 19. 발포 사실 전무 하였음을 감안할 때 고교생은 특정 데모 세력에 의해 무성 권총으로 사격, 계엄군이 발포한 것으로 선동키

.....
라고 기재돼 있다. 「광주사태 시 전교사 작전일지」(『5.18민주화운동 군 자료집』 2권, 163쪽)에는 16:00 양림다리 옆에서 계엄군 2명 데모군중에 의해 구타당함(통합병원 입원 중)(16:20 31사 이중위)으로 기재돼 있다.

64 서울지방검찰청, 「김진규 진술조서」(1995.06.12), 『5·18사건 수사기록』 22권, 30180~30194쪽.

65 국군기무사령부(1980), 「광주사태 일일속보철」, 고유번호 광주 383-1980-089 (MF 릴 번호 618757-1.1), 11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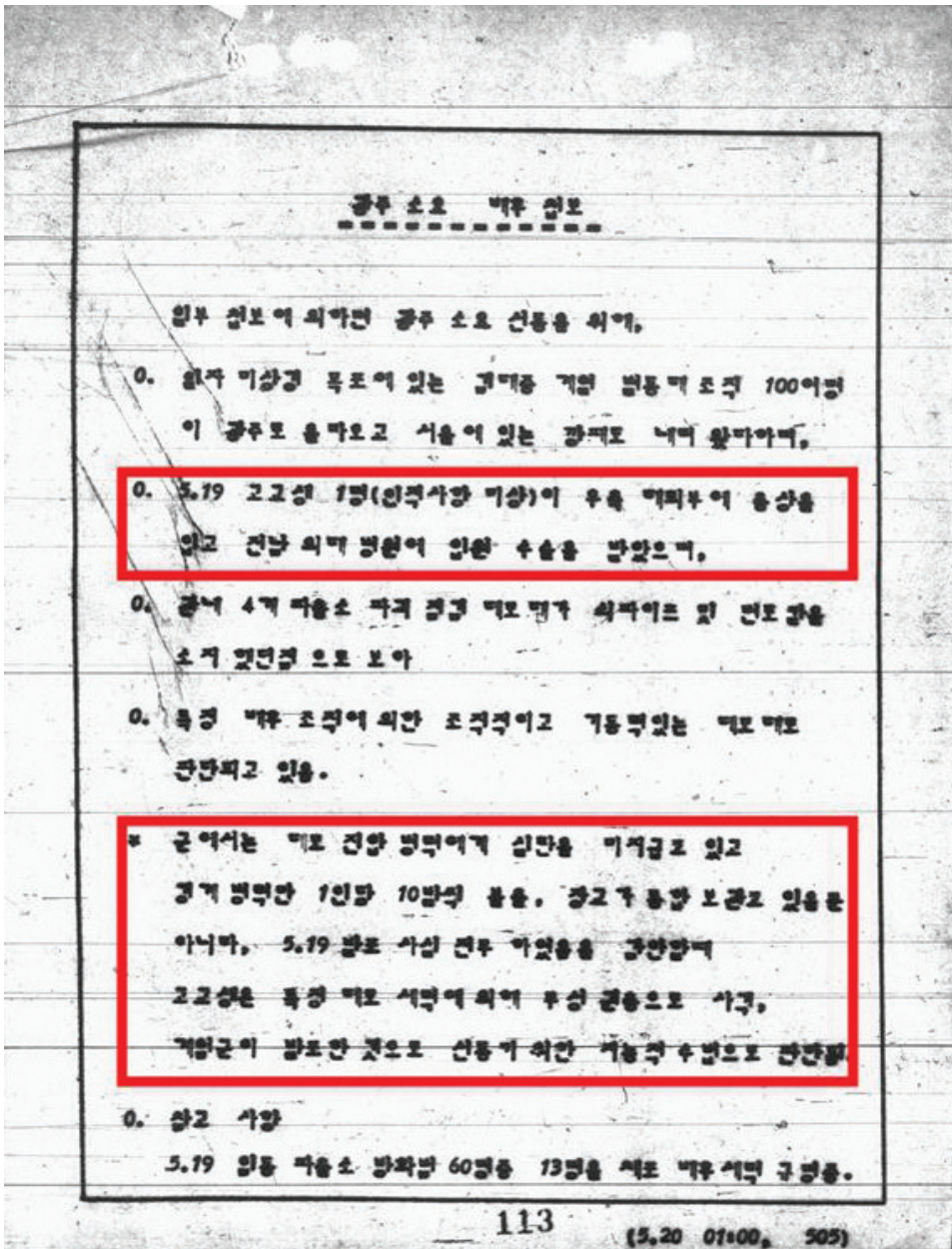
위한 지능적 수법으로 판단함.⁶⁶

5월 19일 광주고등학교 근처 상황과 관련된 기록 및 진술은 차정환 대위의 발포 형태를 “공포 사격”, “공포탄 사격”, “위협 사격”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위원회는 발포 상황에 대한 진술과 기록, 피해자 김○○의 부상 부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차정환 대위의 발포 형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차정환 대위가 장갑차 해치를 열고 총구를 하늘로 향하여 수차례 반자동으로 위협사격을 실시하였다는 것은 당시 출동한 계엄군과 발포 현장에 있었던 시민들의 진술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후 차정환 대위가 장갑차 위로 몸을 내밀고 실시한 자동사격 역시 김○○, 위○○, 정○○, 양○○의 진술로 확인된다. 양○○은 군인이 해치 위로 올라와 사람들을 보고 조준하듯이 사격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탄두가 유탄(도비탄)인지 직격탄인지는 5월 19일 발포의 진상규명을 위해 중요한 사안이다. 차정환 대위가 시위대에 둘러싸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위협사격을 한 것인지, 아니면 차정환 대위가 살상을 목적으로 김○○을 조준하여 사격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은 위원회 조사에서 “따라라라락” 소리와 함께 아스팔트에 불꽃이 튀면서 자신이 피격당했다고 하였다.

66 5·18조사위는 5. 19. 장갑차에서 발포한 직후 차정환 대위를 유일하게 직접 조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505보안부대 관련자를 찾고자 하였으나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505보안부대 관련자는 발포 직후 차정환을 소환 조사했기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데모 세력에 의해 무성 권총으로 사격, 계엄군이 발포한 것으로 선동기 위한 지능적 수법”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서에 기재한 이유는 밝히지 못했다. 이 부분은 향후 더 밝혀져야 할 과제다.



<그림 2-1-6> 「광주 소요 배후 첩보」 (5월 20일)

이에 5·18조사위는 현재도 총알 파편이 남아 있는 김○○의 CT 사진을 토대로 김○○의 부상이 도비탄이 아니라 직격탄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당시 계엄군의 M16 소총은 5.56mm M193 보통탄이 사용되었다.⁶⁷ M16 소총에서 발사된 M193 보통탄의 탄두는 80m 이내에서 인체를 타격할 경우 중간 부분이 절단되면서 탄두 앞부분은 납작한 삼각형 모양이 되고 탄두 뒷부분은 수많은 파편으로 쪼개진다.⁶⁸

김○○의 전남의대 부속병원 병력 1호 용지에는 “하복부 우측에 관통상과 우측 손목 관절 부위에 총상을 받고 (중략) 하복부 우측에 사입구와 둔부에 사출구가 보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⁶⁹ 또한, 아래 CT 사진에서는 김○○의 몸에 아직도 남아 있는 파편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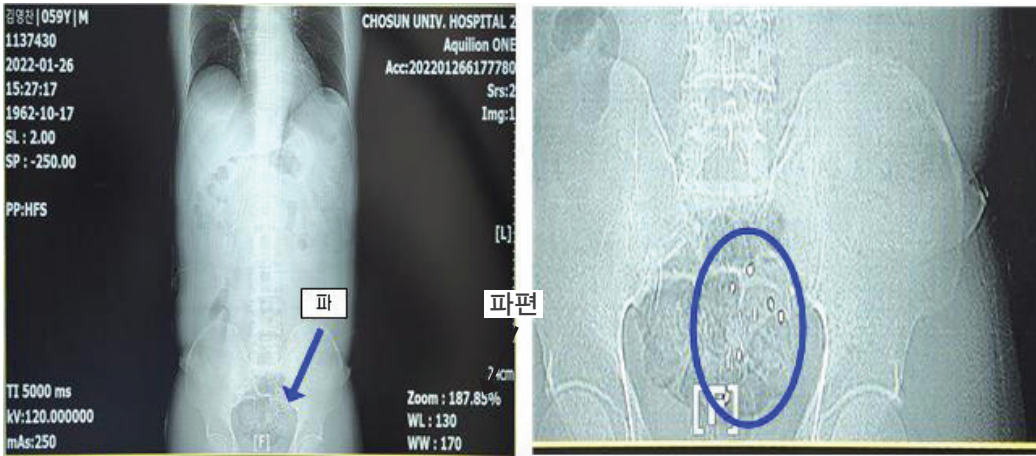
〈그림 2-1-7〉 CT 사진을 보면 M193 탄두가 고속으로 인체를 타격했을 때와 유사한 파편 현상이 관찰된다. 당시 계엄군과 시민군이 사용한 다른 총기에서는 이러한 파편 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M16 소총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⁷⁰

67 육군본부 야전교범 023-009(1978), 「M16A1 소총」

68 Martin L. Fackler, 1987, “Missile-Caused Wounds”, Letterman Army Institute of Research; Martin L. Fackler, 1989, “Wounding patterns of military rifle bullets”, Int Def Rev, Vol.22, pp.59~64.

69 5·18조사위, 김○○(2022.08.09.), 진술조서.

70 Vincent J.M. DiMaio, 2016, “Gunshot wounds”, p.166; Martin L. Fackler, 1987, “Missile-Caused Wounds”, Letterman Army Institute of Research.



〈그림 2-1-7〉 김○○ CT 사진 (좌: 2022년 1월 26일, 우: 파편 부위 확대)

이와 관련하여 5·18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 검시 결과 분석 및 검증을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 세미나」에 참석한 국방부 조사본부 이상한 법의학과장에게 자문한 결과 “도탄으로 김○○과 같은 총상이 발생한 경우를 본 적이 없다”라면서 “직격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⁷¹

김○○의 부상이 직격탄에 의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쟁점은 차정환이 의도적으로 김○○을 조준하여 사격했는지, 아니면 위협 사격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김○○을 타격했는지 여부이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5·18조사위는 당시 차정환의 사격 방법에 주목했다. 김○○, 위○○, 정○○, 양○○은 “김○○이 쓰러졌을 때의 사격은 이전의 위협사격(단발로 탕, 탕, 탕)과는 달리 소리가 ‘드르륵 드르륵’으로 묘사되는 연발사격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이는 사수가 의도적으로 소총의 조정간을 ‘자동’으로 전환하여 사격했다는 뜻이다. M16 소총의 경우 자동 연발사격 시 빠른 발사 속도와 반동으로 인해 총구 양등 현상이 발생하여 정확한 조준 유지가 어렵다.⁷² 특히 김

71 5·18조사위, 「5.18 관련 사망자 사망 원인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결과 보고」(2023. 10. 5.).

72 M16 소총의 발사속도는 분당 700~900발이다. 육군본부 야전교범 023-009(1978), 「M16A1 소총」 참조; 위 교범

○○은 피격 직전 “따다따다딱”소리와 함께 아스팔트에 불꽃이 튀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도로에 대고 자동사격을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총구 앙등 현상으로 정확한 조준 유지가 되지 않았고, 도로 표면보다 높이 날아온 실탄에 김○○이 직격탄에 의해 피격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발포에 사용된 실탄의 출처

차정환이 발포에 사용한 실탄의 출처에 대해서 당시 제11공수여단 또는 63대대의 실탄 관리에 대한 지침 등 관련 기록을 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차정환과 함께 장갑차에 탑승하여 작전 수행했던 인원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실탄 관련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63대대 정보장교 김진규는 검찰 조사에서 “차정환이 사격에 사용한 실탄은 그가 작전 장교로 5분 대기용 실탄을 관리하는 입장이라 임의로 한 탄창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했다.⁷³ 김진규는 5·18조사위 조사에서 “차정환이 대대 실탄 관리를 하는 주무장교로서 임의로 장갑차에 싣고 다닌 것 같다”라고 하였다.⁷⁴ 작전병 임○○ 역시 5·18조사위 조사에서 “차정환 대위가 대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5분대기조 실탄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차정환 대위는 탄창에 삽탄된 상태에서 철로 된 탄약박스 1개에 들어 있는 것을 장갑차에 가지고 탑승하였으며, 차정환이 그 실탄을 빼서 작전 선임하사인 김○○ 상사의 총으로 발포했다”라고 진술하였다.⁷⁵ 당시 장갑차를 운전했던 기갑학교 9전차대대 운전병 임△△은 “중대에서 장갑차를 끌고 출동할 때에는 실탄이 없었고, 조선대학

은 “자동사격 간에 정확한 조준선 정렬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자동사격 간에는 총구의 동요가 심하며 조준선 정렬이 흐트러지게 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73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 진술조서」(1995.06.12), 「5·18 사건 수사기록」 22권, 30180~30194쪽.

74 5·18조사위, 「김○○ 진술조서(제1회)」(2022.09.22).

75 5·18조사위, 「임○○ 진술조서」(2022.11.16).

교에서 공수부대원들이 장갑차에 탈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실탄을 탄창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했다.⁷⁶ 이상의 진술을 종합해서 볼 때 당시 실탄은 장갑차에 보관 중이던 5분대기조 실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 발포 절차 준수 여부

5·18조사위는 이어 차정환 대위의 발포 행위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승인된 것인지를 조사하였다. 1980년 5월 19일은 자위권 발동시기가 내리기 이전으로 이때 광주지역에 적용된 발포 관련 작전명령이나 지시를 직접 기록한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⁷⁷ 현재 확인 가능한 가장 오래된 충청작전 계획은 1981년 제2군사령부에서 작성한 「충청작전 지침서」이므로 이를 1980년 5월 19일 발포 상황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원회는 당시에 적용된 발포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군에서 생산한 문헌을 조사하여 유사한 내용들을 검토하였다. 1978년 발행된 육군본부 『야전예규』에는 “(폭동진압 시) 발포는 여하한 경우에도 참모총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⁷⁸ 1980년 4월 사북사태 당시 하달된 제1군 「작전명령 제80-2호」는 “총포의 사용은 여하한 긴박한 상황 하에서도 군사령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지역사령관 명에 의거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⁷⁹ 위 『야전예규』는 1980년 당시 유효한 것이고, 위 작전명령이 하달된 것은 5·18민주화운동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이었다. 그러므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들에게도 동일한 발포 승인 절차

76 5·18조사위, 『임△△ 진술조서』(2023.08.31), CM6614 장갑차에 함께 탑승했던 인원 중 오○○과 김○○는 실탄 출처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았으며, 차정환과 권○○은 1980년 5월 24일 계엄군 간 오인 교전으로 사망하였다.

77 『제2군사령부 부대사』(1979년)에는 1979년 11월 3일 제2군사령부 충청작전 지침서가 하달되었다는 내용이 존재하고, 1980년 5월 23일 육군본부 「작전상황일지」에는 충청 계획을 근거로 제33사단 1개 대대를 광주로 이동시키려다가 취소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제2군 충청작전 지침서 및 충청 계획 본문을 확인할 수 없었다.

78 육군본부(1978), 『야전예규』, 부록 C, 별지#3 「폭동진압」.

79 제1군사령부, 「작전명령 제80-2호(80.4.22)」, “부대배속 (지시)”. 이 작전명령에는 소요 진압 준비를 위하여 제11공수여단 1개 대대(여단장 포함)를 이동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가 적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육군본부 『야전예규』는 발포의 승인 요건을 “여하한 경우에라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군 「작전명령 제80-2호」는 이를 “여하한 긴박한 상황 하에서도”라고 그보다 더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5월 19일 광주고등학교 근처 발포는 적어도 제2군사령관 이상의 사전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절차 등과 관련된 어떠한 군 기록이나 진술을 확보할 수 없었다.

5월 19일 발포의 또 다른 문제는 5분대기와의 상관이 없는 63대대 작전장교 차정환이 지휘관의 지시 없이 5분 대기용으로 보관 중이던 실탄을 임의로 불출해서 소지하고 있다. 505보안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차정환 대위를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작성된 상황일지 및 보고자료 등에서 5월 19일 발포와 관련하여 차정환 대위를 조사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어 관련자 진술과 수기를 통하여 조사 여부를 확인하였다.

제11공수여단 인사참모였던 권오길은 “이날 저녁 63대대 작전장교가 보안부대에 출두했다”라고 하였고,⁸⁰ 63대대장 조창구는 1995년 검찰 조사에서 “그러한 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보안대에서 간단한 확인을 한 사실이 있으며 여단장도 문제가 있으나 징계 문제는 보류하자고 하였다”고 진술했다.⁸¹ 작전병 임○○도 “차정환 대위가 어디론가 가서 조사를 받은 후 ‘잘 마무리되었다’라고 말한 기억이 있으며 당시 광주고 앞에서의 발포 상황 전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고 말한 것 같다”라고 진술했다.⁸² 그러나 차정환 대위가 5월 24일 계엄군 간 오인 교전으로 사망함으로써 더 이상의 조사 및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80 합동참모본부(1988), 「증언대비계획 (1), (2-1), (2-2)」(국가기록원 CA0517554), 199쪽.

81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조창구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1995.06.23), 『5·18사건 수사기록』 17권, 26455쪽.

82 5·18조사위, 「임○○ 진술조서」(2022.11.16.).

라) 소결

1980년 5월 19일 광주고등학교 근처 발포 상황에 대한 5·18조사위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5월 19일 차정환 대위는 최초에는 M16 소총으로 하늘을 향해 위협 사격을 하였다. 이에 놀란 시위대가 계림파출소 방향으로 50m 정도 도망친 상황에서 차정환이 장갑차 밑에 놓여진 불이 붙은 지푸라기를 치우려고 장갑차에서 내린 병사를 엄호하기 위해 다시 아스팔트를 향해 위협 사격을 하였다. 이때 차정환은 M16 소총을 자동 연속발사로 바꾼 후 발포하였다.⁸³ M16 소총을 자동 연속발사로 전환하고 발사할 경우 반동에 의해 통제가 잘되지 않은 현상을 보이는데, 결국 직격탄으로 김○○의 하복부에서 좌측 대퇴부 뒤쪽으로 관통상을 입힌 것이다.⁸⁴ 그런데 시위대가 도망치는 상황에서 M16 소총을 수동 단발 발사로 하늘을 향해 위협 사격을 하면 엄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 연속 발사로 전환하여 발포함으로써 김○○을 직격탄에 따른 부상을 입힌 것이다. 또한 당시 차정환 대위의 발포는 『야전예규』 등에서 규정된 폭동진압작전 간 발포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5분 대기용 실탄을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사격한 것이다.

2) 5월 20일 광주역 일원 발포

가) 제3공수여단 출동 현황

당시 특전사령부와 제3공수여단의 전투상보⁸⁵에 따르면 제3공수여단은 육본 「작전명령 제20-80호」(1980.05.19.)에 의거, 5월 20일 광주로 이동하여 제2군사령관 작전통제하에 광주지역 소요사태를 진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특전사령부 작전처에서 작성한 상

⁸³ 5·18조사위, 「양○○ 진술조서」(2022.08.04.), 3~4쪽; 5·18조사위, 「임○○ 진술조서」(2022.11.16.), 16쪽.

⁸⁴ 5·18조사위, 「김○○ 진술조서」(2022.08.03.), 8쪽.

⁸⁵ 특수전사령부, 「광주지역 소요사태 진압작전 (총괄)」, 서울지방검찰청, 『5·18사건 수사기록』 39권, 46172쪽; 제3특전여단, 『광주소요사태 진압작전 (전투상보)」, 서울지방검찰청, 『5·18사건 수사기록』 39권, 46180쪽.

황일지에는 제3공수여단 병력 265/1212명이 두 차례(1차 131/589명, 2차 134/623명)에 걸쳐 청량리역에서 광주역으로 이동하였다. 1차는 01:00경에 청량리를 출발하여 5월 20일 07:05경에, 2차는 01:10경에 청량리를 출발하여 같은 날 07:45경에 광주에 도착하였다.⁸⁶

〈표 2-1-2〉 제3공수여단 출동 병력 현황

계	11대대	12대대	13대대	15대대	16대대	직할대
255/1137	40/198	47/192	45/205	45/206	44/220	34/116

출전: 제3공수여단, 「광주소요사태 진압작전(전투상보)」, 13쪽.

〈표 2-1-3〉 공수여단 부대이동 경과

구분	부대출발	청량리 도착	청량리 출발	광주역 도착	비고
1차	5.19. 23:00	5.19. 23:40	5.20. 01:00	5.20. 07:00	객차 : 18량 화물 : 3량
2차			5.20. 01:10		

출전: 제3공수여단, 「광주소요사태 진압작전(전투상보)」, 14쪽.

제3공수여단이 출동할 당시 휴대한 탄약은 개인별 M16탄 60발 등 세부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이는 경계용 탄약 휴대 규모를 벗어나며, 대침투작전에 준하는 규모의 탄약을 휴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2-1-4〉 제3공수여단 출동 시 휴대 탄약 현황

구분	M16탄약	M60기관총	M203	가스탄	화염방사기	E-8발사기
수량	개인 60발	정당 2천발	104발	2,880발	9	6

출전: 제3공수여단, 「광주소요사태 진압작전(전투상보)」, 14쪽.

86 국군기무사령부(1980), 「충정병력 출동 및 광주사태 상황일지」, 고유번호 광주 383-1980-096 (MF 릴 번호 61866-1.2), 24쪽; 국군기무사령부(1980), 「광주사태 시 전교사 작전일지」, 고유번호 광주 383-1980-094 (MF 릴 번호 61875-1.2), 158쪽.

나) 제3공수여단 대대별 배치 및 이동 현황

제3공수여단은 오전에 우천 관계로 시위가 소강상태였으므로 전남대에서 숙영지를 편성하고(교실, 강당, 운동장 이용), 오전에 제3공수여단장의 훈시가 있었으며, 아침과 점심은 전투식량으로 한 다음 12:40까지 아래와 같이 배치하였다.⁸⁷

〈표 2-1-5〉 제3공수여단 최초 배치 현황 (5.20)

구분	11대대	12대대	13대대	15대대	16대대
지역	광주대교 (황금동)	광주시청 (기동타격)	공용터미널 (시내배치)	양동사거리 (시내배치)	광주역(일부), 전남대 잔류 (예비대)

출전: 제3공수여단, 「광주소요사태 진압작전(전투상보)」, 15쪽.

1995년 검찰수사 결과에 따르면, 제3공수여단 책임 지역의 시위는 17:00경부터 증가했다. 구 시청 부근과 한국은행 광주지점 부근에 각각 3백여 명, 금남로에 1만여 명이 모여들었다. 11대대는 17:45경 금남로 지역에서 시위대의 투석 등에 대응하여 최루가스를 살포하여 해산시켰고, 금남로 골목에서 2천여 명의 시위대와 대치하였다.

18:00경 최세창 제3공수여단장은 양동사거리 부근에 배치돼 있던 15대대를 급히 광주역 쪽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했다. 18:30경부터 택시 200여 대가 공설운동장에서 광주역과 공용터미널 쪽 두 갈래로 나뉘어 도청 방향으로 이동을 시작했다. 15대대는 가스탄과 진압봉에 의한 타격작전으로 광주역 일대를 차단했다. 도청으로 향하던 시위대는 광주역에서 갑자기 대열이 끊기자 15대대와 대치하면서 공방전을 벌였다. 18:30경 신안동 굴다리 부근에서 계엄군 식사 차량이 급격히 불어난 시위대에 에워싸여 고립되었다. 그러자 전남대학교에 위치한 제3공수여단본부에 남아 있었던 16대대 병력 일부가 식사 차량

87 국군기무사령부(1980), 「광주사태 시 전교사 작전일지」, 고유번호 광주 383-1980-094 (MF 릴 번호 61875-1,2), 168~169쪽; 국군기무사령부(1980), 「총정병력 출동 및 광주사태 상황일지」, 고유번호 광주 383-1980-096 (MF 릴 번호 61866-1,2), 28쪽.

을 구출하기 위해 출동하였다.⁸⁸ 21:00경 MBC를 경계하던 31사단 병력이 시위대를 뚫고 비상 탈출했고,⁸⁹ 21:30경부터 MBC 건물에서는 불길이 치솟았다.⁹⁰ 광주역 인근에 위치한 KBS 광주총국도 MBC와 마찬가지로 왜곡 보도에 분노한 시위대의 공격 대상이 됐다. 21:30경 시위대 2천여 명이 MBC에서 2km 정도 떨어진 광주역 부근 KBS 광주총국을 향해 구호를 외치며 걸어갔다. 22:00경 숫자가 불어난 시위대가 KBS 진입을 시도하자 이곳을 방호하던 제31사단 병력(사단 수색중대 2/40, 96연대 2대대 2/40명)이 긴급구호 요청을 보냈고, 제3공수여단 일부 병력이 KBS 건물의 경계를 강화했다.⁹¹

22:00경 최세창 제3공수여단장은 시내에서 작전 중이던 예하 모든 대대장들에게 광주역으로 집결하라고 지시하였다.⁹² 제3공수여단을 전부 광주역으로 집결시킨 이유는 5월 20일 밤 광주에 증파된 제20사단 병력의 도착 예정지인 광주역을 지키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5월 21일 00:26경 제20사단 병력 광주역 도착을 송정리역으로 변경 도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전교사 「작전일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⁹³

88 국방부 검찰부, 「김종헌 진술조서」(1995.05.15.), 「윤수웅 진술조서」(1995.02.17.), 「안○○ 진술조서」(1995.05.23.),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장○○ 진술조서」(1995.06.02.), 『5·18사건 수사기록』

89 「전교사 작전일지」, 178쪽.

90 동구청 상황일지, 『5.18민주화운동 자료 총서』 제20권, 16, 26, 32쪽.

91 「광주시위사태 진압작전(제3특전여단)」, 55쪽.

92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 『5·18 관련 사건 수사 결과』(1995.07.18.), 『5·18사건 수사기록』 1권, 13~232쪽.

93 12·15대대는 20사단이 광주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고려하여 15:00까지는 광주역에 위치하였다가 최초 배치지역으로 이동했다. 3공수여단, 『광주소요사태 진압작전(전투상보)』; 전투병과교육사령부, 『광주사태 시 전교사 작전일지』, 고유번호 광주383-1980-94, 182쪽.

〈표 2-1-6〉 제3공수여단 광주역 작전상황

- 일 시: 5. 20. 15:00~5. 21. 02:00
- 투 입: 제3공수여단(5개 대대)
- 작전 경과⁹⁴
12:30 최초 부대배치 완료

11대대	12대대	13대대	15대대	16대대
금남로	광주시청	공용터미널	양동교	광주역/전남대

13:00 11대대 배치지역은 소규모의 시위로 대치 상태, 유언비어 설득
 15:00 11대대 진압봉 수령⁹⁵
 19:00 야간부터 시위대는 쇠파이프, 각목, 곡괭이 등 소지 시위 격화
 20:00 11대대 금남로 신타은행 공터에서 10만여 명의 시위대에 포위 고립
 13대대 공용터미널에서 시위대 차량 공격 받고 대치상태 유지
 12대대 광주역 KBS 방호병력(31사단 병력) 긴급구조 위해 이동, 시위대 저지
 15대대 KBS 급파, 구출. 협공으로 시위대 제압 후 12대대 광주역 합류
 12대대 광주역 이동 직후 1만여 명 군중이 광주시청 공격
 13대대 이동 시청 점령, 2차례 시위 공격
 21:13 금남로 7만여 명 운집, MBC 방화, 광주역 쪽으로 시위대 햇불 들고 진행
 21:30 KBS, MBC 방송중단
 21:35 공용 및 고속터미널 쪽 시위대 2만여 명, 광주역 방향으로 이동
 21:45 노동청 부근에서 경찰 4명 사망(시위차량 압사, 함평경찰서 소속)
 21:50 제3공수여단장 지시, 실탄 분배 장착(보안사 일일속보철)
 22:30 제3공수여단장 지시, 2개 팀 광주역 뒤로 실탄 전달 중 M60 기관총 위협 사격
 22:30 한 시간 정도 시위대와 대치하면서 20여 회 사격
 23:20 광주시청 옥상, 시위대에게 M60 기관총 예광탄 사격(31사단 상황일지)
 23:20 발포금지, 실탄 통제 지시(2군 작전지침 추가, 작전전 444호)
 23:30 16대대장 운전병 정관철 중사 시위대 트럭에 치어 사망(전남합동수사단 수사 결과)
 02:00 제3공수여단 광주역에서 전남대로 철수

출전: 특전사, 충청병력 출동 및 광주사태 상황일지; 제3공수여단, 광주소요사태진압작전(전투상보).

다) 제3공수여단 시위진압

① 5월 20일 오전 광주에 도착한 때부터 21일 오후 광주교도소로 이동할 때까지 3공수

94 5·18조사위 조사 결과, 제3공수여단, 『광주소요사태 진압작전(전투상보)』, 『작전상황일지』, 제3공수여단장 최세창 준장, 11대대장 임수원 중령 진술 등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95 서울에서 공수된 진압봉을 5. 20. 15:00경 송정리비행장에서 접수하여 제3공수여단에 710개를 교부하였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12·12, 5·17, 5·18사건 조사결과보고서(2007), 73쪽. 다만 제3공수여단 전투상보에는 730개로 기록되어 있다. 제3공수여단, 『광주소요사태 진압작전(전투상보)』, 50쪽.

여단 본부 주둔지는 전남대학교였다. 시내에서 작전 중 연행해 온 시위대는 전남대 이학부 건물에 구금되었다.⁹⁶

② 11대대는 12:30경 금남로에 지역대별로 배치됐다. 1지역대는 광주대교(광주천 현대극장 부근)⁹⁷, 2지역대는 금남로 한일은행 사거리⁹⁸, 3지역대는 51번 사거리, 4지역대는 16번 큰 도로 사거리를 담당하였다.⁹⁹ 20:00경부터 금남로 신탁은행 공터에서 급격히 불어난 시위대에 에워싸인 상태가 지속됐고, 23:00~24:00경 광주역으로 이동 다른 부대와 합류, 01:00경 광주역에서 철수하여 전남대에 도착했다.¹⁰⁰

③ 12대대 8지역대는 12:30경 전남대학교에서 광주시청으로 이동할 때 트럭을 이용했다.¹⁰¹ 12대대가 시청에 주둔하고 있을 때 시위대가 시청에 진입하지 않았고, 광주역으로 이동할 때까지는 별다른 충돌이 없었다.¹⁰² 12대대는 18:00경 광주시청에서 광주역으로 이동 배치됐다.¹⁰³ 5지역대는 광주역 앞 5개의 방사선 형태 도로 중 중앙고속터미널 방향 도로를 차단했고,¹⁰⁴ 6지역대는 공용버스터미널 방향, 7지역대는 시청 방향,¹⁰⁵ 8지역대는

96 서울지방검찰청 『장○○ 진술조서』(1995.06.02.); 국방부 검찰부, 『박○○ 진술조서』(1995.05.21.); 5·18조사위, 『김길수 진술조서』(2022.10.20.).

97 서울지방검찰청 『편○○ 진술조서』(1994.12.15.); 서울지방검찰청 『육○○ 진술조서』(1995.1.23.).

98 서울지방검찰청 『류○○ 진술조서』(1995.05.11.).

99 전투병과교육사령부, 『광주시태 시 전교사 작전일지』, 국군기무사령부, 고유번호 광주383-1980-94.

100 5·18조사위, 『임수원 진술조서』(2022.10.27.); 서울지방검찰청 『류○○ 진술조서』(1995.05.11.); 서울지방검찰청 『김○○ 진술조서』(1995.1.26.); 서울지방검찰청 『육○○ 진술조서』(1995.01.23.).

101 서울지방검찰청, 『김△△ 진술조서』(1995.05.17.), 『박○○ 진술조서』(1995.06.14.).

102 국방부검찰부, 『이○○ 진술조서』(1995.06.28.).

103 서울지방검찰청, 『김완배 진술조서』(1995.6.16.).

104 5·18조사위, 『김△△ 진술조서』(2022.9.20.).

105 서울지방검찰청, 『김□□ 진술조서』(1995.5.18.).

유동삼거리 방향¹⁰⁶에 배치됐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시위 상황이 변하였고, 다른 대대가 광주역으로 집결함에 따라 배치지역은 약간씩 변경되었다.

④ 13대대는 12:30경부터 20:00경까지 시외버스공용터미널 일대에 배치되어 5개 방향의 도로를 차단했다.¹⁰⁷ 시위대와 대치 중 13대대는 부상 당한 시위대 15명 정도를 체포하여 호송 차량에 실어 제3공수여단 본부인 전남대로 보냈다.¹⁰⁸ 제3공수여단장의 지시에 따라 13대대는 23:00경 광주시청으로 이동하였다. 24:00경 13대대가 광주역에 도착했을 때는 시위가 소강상태였고, 전남대학교로 철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¹⁰⁹

⑤ 15대대가 최초 양동 일대에 배치되었을 때 시위대가 모여 있기는 했으나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광주역으로 가장 먼저 이동한 부대는 15대대였다. 15:00경 15대대는 양동에서 광주역으로 이동하여 배치됐는데, 이때는 광주역 주위에 시위대가 눈에 띄지 않았다. 15대대가 광주역 앞 도로 전체를 차단하다가, 18:00경 12대대가 도착하자 15대대와 12대대는 도로를 양분해서 차단하였다. 11대대와 13대대는 24:00경에야 광주역에 도착하여 마지막에 합류했다.¹¹⁰ 따라서 광주역 앞 발포는 22:00~23:00 사이에 12대대와 15대대가 방어하는 동안 발생했다.

⑥ 16대대는 낮 동안 예비대대로 여단본부가 위치한 전남대학교에 남아 대학 주위를 경계했다. 저녁 식사 후 20:00경 신안사거리(전남대학교 정문에서 800m 떨어진 굴다리

106 5·18조사위, 「오○○ 진술조서」(2023.9.13.), 서울지방검찰청, 「주○○ 진술조서」(1995.4.28.)

107 국방부검찰부 「김○○ 진술조서」(1995.04.14.)

108 서울지방검찰청 「정○○ 진술조서」(1995.06.22.)

109 5·18조사위, 「변길남 진술조서」(2022.10.18.)

110 서울지방검찰청 「박종규 피의자신문조서」(1994.12.14.), (1995.06.20.), 「최○○ 진술조서」(1995.05.12.), 「김○○ 진술조서」(1995.05.09.), 「강○○ 진술조서」(1995.04.12.), 국방부검찰부, 「조○○ 진술조서」(1995.05.09.)

부근)로 출동하여 공설운동장 쪽에서 광주역 방향으로 접근하려는 시위대를 차단하였다. 이때 대대장은 가스탄 발사를 지시함과 동시에 20m 앞으로 질주하여 시위대를 해산시키라고 명령하였다. 진압 이후 시위군중들이 물러났다.¹¹¹ 당시 방송차의 마이크를 이용하여 시위대에게 “5분 내로 해산하지 않으면 발포하겠다. 그리고 전부 체포하겠다.”라고 방송을 하였다.¹¹² 이후 계엄군은 시위대가 두고 간 차량으로 고속도로 쪽 도로를 봉쇄하였다.¹¹³

라) 5월 20일 광주역 일원 발포 상황

1995년 검찰은 광주역 일대 발포 상황의 구체적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지 않았으나, 다수 계엄군의 진술을 통해 발포가 실제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2:00경 돌진하는 시위대의 트럭에 하사관 3명이 깔려 중상을 입자, 일부 대대장은 권총을 차량 바퀴 등에 쏘아 돌진 차량을 정지시키고 운전자 등 시위대를 체포하였음”, “여단 정보참모가 먼저 신안동 굴다리에 있던 16대대에 경계용 실탄 1백여 발을 전달하고 이어 여단 작전참모와 함께 광주역 뒤쪽 도로와 광주시청 앞 사거리를 지나 광주역으로 진출하면서 수백 명의 시위대의 저지에 부딪혀 경고 방송에도 불구하고 시위대가 해산하지 아니하자 차량에 거치한 M60 기관총을 위협 발사하고 권총과 M16으로 공포 사격을 하고”, “3공수여단 소속 대대들이 광주역에 합류한 후에도 전남대학교 쪽과 KBS방송국 쪽에서 시위대가 여러 차례 차량 돌진 공격을 감행하였고, 3공수여단은 장교들의 권총, M16소총 발포와 E-8 발사기 발포로 차량을 저지하고 시위대를 해산시킨 다음, 5월 21일 02:00경 KBS방송국에

111 국방부검찰부 「김길수 피의자신문조서」(1995.01.26.), 서울지방검찰청 「서○○ 진술조서」(1995.05.10.),

112 국방부검찰부 「김길수 피의자신문조서」(1995.01.26.); 5·18조사위, 「김길수 진술조서」(2022.10.20.). 위원회 진술 당시 방송은 정훈장교 혹은 부여단장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일 저녁 신안사거리 인근에서 총상을 입었다는 2명의 진술이 있지만, M16에 의한 총상인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5·18조사위, 「오○○ 진술조서」(2022.12.21.), 5·18조사위, 「김○○ 진술조서」(2023.02.21.).

113 국방부 검찰부, 「김길수 피의자신문조서」(1995.01.26.), 「최○○ 진술조서」(1994.12.22.), 서울지방검찰청 「서○○ 진술조서」(1995.05.10.).

배치되었던 31사단 경계 병력 장교 4명, 사병 35명과 함께 전남대학교로 철수하였음.”¹¹⁴

당시 군 상황일지에는 발포와 관련하여 부분적·간접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발포 시간, 장소, 부대 등 구체적인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중요한 사항임에도 상황일지에 기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전교사 상황실장과 작전장교는 “중요한 내용은 높은 사람들끼리 따로 보고하기 때문에 상황일지에 남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¹¹⁵ 5·18조사위는 광주역 일대에서 20일 밤 총격으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였음에도 제3공수여단도 발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전혀 기록에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¹¹⁶ 제3공수여단 「작전상황일지」, 「전투상보」, 「작전명령지시」 등 필수 작성 군 문서들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

5·18조사위는 민간인 피해에 대한 조사 결과 20일 밤 광주역 발포 당시 희생된 민간인 사망자 7명의 사망 경위를 아래 <표 2-1-7>과 같이 새롭게 밝혔다.

<표 2-1-7> 5월 20일 광주역 사망자(7명) 사망 경위

번호	이름	나이 (만)	선행사인 발생		주요 사인 (부위)	이송병원 (실제사망일)	1995년 검찰 수사보고 대비 5.18조사위 사망경위 정정 결과
			일자	장소			
1	김만두	44	5.20. 밤	광주역 인근	총상 (등)	안정남외과 기독교병원 (5.23.)	총기 (칼빈 → M16)
2	김재수	25	5.20. 밤	광주역 인근	총상 (가슴)	안정남외과 전남대병원 (5.22.)	사망 장소 (불상 → 광주역)

¹¹⁴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 「5·18 관련 사건 수사 결과」(1995.7.18.), 『5·18사건 수사기록』 1권, 87~89쪽.

¹¹⁵ 5·18조사위, 「장〇〇 진술조서」(2023.06.22.), 5·18조사위, 「유〇〇 진술조서」(2023.07.20.).

¹¹⁶ 본 보고서 제5장 “민간인 희생과 피해” 부분에 수록된 <표 3-1-3> ‘사망(선행사인) 날짜·장소별 사망자 분포’에 따르면 5월 20일 광주역 일대 사망자는 7명인데 그 중 1명을 제외하고 6명의 사인이 총상이다. 또한 전남대병원 응급환자 기록지에는 5월 21일 01:10~05:45 사이에 총상 입원자(도착 시 사망 2명 포함)가 6명으로 기재돼 있다. 이와 같은 피해 기록을 통해 5월 20일 야간과 5월 21일 새벽 사이에 계엄군에 의한 발포가 다수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번호	이름	나이 (만)	선행사인 발생		주요 사인 (부위)	이송병원 (실제사망일)	1995년 검찰 수사보고 대비 5.18조사위 사망경위 정정 결과
			일자	장소			
3	김재화	25	5.20. 밤	광주역 광장	총상 (가슴)	노광철의원	총기 (칼빈 → M16)
4	박세근	35	5.20. 밤	광주역 인근	총상 (엉덩이)		사망장소 (불상 → 광주역)
5	신동남	29	5.20. 밤	광주역 인근	총상 (복부)	적십자병원 (5.22.)	신원 확인 (신원 불상 44 → 신동남) 총기 (칼빈 → M16) 사망 장소 (불상 → 광주역)
6	이복일	27	5.20. 밤	광주역 인근	다발성 총상 (두부)	전남대병원	사망 장소 (병원 → 광주역)
7	허봉	23	5.20. 밤	광주역 앞	둔력에 의한 손상 (두부)		사인 (자상 → 둔력에 의한 손상) 사망 장소 (도청 → 광주역)

1995년 검찰수사에서는 5월 20일 밤 광주역 일대 시위진압 과정에서 사망한 민간인을 김만두, 김재수, 김재화, 이복일 등 4명이라고 기재하였으나, 5·18조사위는 위 표와 같이 박세근, 신동남, 허봉 등 3명을 추가로 밝혀 7명임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허봉 1명만 자상이 아니라 둔력¹¹⁷에 의한 머리 손상이 원인이고, 나머지 6명은 모두 총격을 입어 사망했다. 또한 검찰은 김만두, 김재화, 신동남 등 3명의 총상이 칼빈소총의 총탄에 의한 것이라고 1980년 당시 작성한 광주지검의 검시조서에 기재된 대로 판단했으나 5·18조사위는 이들 3명 모두 당시 제3공수여단이 휴대했던 M16 소총의 총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¹¹⁸ 몸에서 총탄을 맞은 곳은 박세근 한 명만 엉덩이이고, 다른 5명은 모두 머리, 등, 가슴, 복부 등 신체의 윗부분이라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냈다. 5·18조사위는 전남대병원 응급환자 기록지를 입수하여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한 시각을 확인한 결과 5월

117 검시조서에 표기된 '둔력'의 의미는 '진압봉, 총의 개머리판, 대검의 다른 면 등에 의한 외부의 충격'을 뜻한다. 5·18조사위, 「법의학 자문단 의견서」

118 5·18조사위는 전문가들로 <법의학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망자들 사인을 모두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그 결과 수정된 내용을 통해 야간에 발생한 광주역 일대 사격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밝혀낼 수 있었다.

20일 10:10~5월 21일 05:40 사이 총상자가 6명(사망 후 도착 2명 포함)이다. 이들 중 생존자를 면담조사했는데 광주역 부근에서 총상을 입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¹¹⁹

5·18조사위는 광주역에 배치됐던 장교와 병사들의 면담진술을 통해 당시 광주역 일대 발포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첫째, 제3공수여단은 광주역과 광주시청에서 M60 기관총을 발사하였다. 제3공수여단 정보보좌관 대위 최명용은 “탄약 추진 중 차량에 장착된 기관총을 자동으로 사격했다”고 진술했다.¹²⁰ 또한 제3공수여단 11대대 하사 홍○○은 “광주역 부근 건물 옥상에 기관총을 설치하여 돌진하는 시위대 차량에 사격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12대대 중사 김○○은 “광주역 분수대 우측 건물 옥상에서 기관총에 광탄으로 위협사격을 했다”고 진술했다.¹²¹ 13대대 하사 임○○은 “빌딩에 기관총을 설치하여 공중으로 위협사격을 하였다”고 진술했다. 13대대 하사 곽○○은 “광주역 방향에서 기관총과 소총 연발 소리가 많이 들렸다”고 진술했다. 12대대 하사 김△△은 시청에 배치돼 있을 때 “MBC 방송국이 불타는 모습을 목격했는데 그때 M16과 기관총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했다.¹²² 13대대 송○○은 자신의 수기¹²³에서 “(5월 20일 13대대가 시청에서 작전 중 22:00경 추정) 몇 분이 지났을까 폭도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다.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는 등 아수라장이었다. 이에 우리도 가스탄을 막 쏘아댔다. 방독면을 썼지만 답답하고 행동의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방독면도 벗어버리고 폭도들과 같이 가스를 마시면서 밀고 당기는 순간이었다. 그때 여단으로부터 발포 명령이 내려졌다. 곧 시청 옥상에 M60 기관총이 설치됐다. 그리고 폭도들에게 확성기를 통해 대대장이 경고했다.

119 5·18조사위, 「정○○ 진술조서」(2023.4.12). 진술인은 MBC방송국이 불타는 장면을 목격한 후 “KBS도 편파방송을 한다”면서 이를 규탄하기 위해 시위대열과 함께 KBS로 향하던 중 23:00경 광주역 분수대 앞에 이르렀을 때 대열의 선두에서 150미터 정도 떨어진 전방에서 계엄군이 자신을 향해 쏜 총에 맞아 왼쪽 가슴 부위를 관통당하는 총상을 입었고, 곧바로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진술했다.

120 5·18조사위, 「최명용 진술조서」(2023.10.17).

121 5·18조사위, 「김○○ 진술조서」(2023.10.12).

122 5·18조사위, 「김○○ 진술조서」(2023.10.24).

123 5·18조사위, 「송○○ 수기」(2022.08.23).

물러가지 않으면 발포한다는 경고였다. 하지만 폭도들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더욱더 격렬해지기만 했다. 이윽고 옥상의 기관총에서 불을 뿜기 시작했다. 위협사격이었다. 폭도들의 발 앞에다가 쏘아댔다”라고 기록했다.

둘째, 권총과 M16 소총으로 시위대를 향해 사격하였다. 11대대 대위 천말수는 “시위대 차량의 바퀴를 조준사격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버스 바퀴를 사격했다”, 11대대 중위 양○○은 “폭도들의 차량 바퀴를 사격하도록 하였으나, 계속 밀려와 어쩔 수 없이 운전수를 향해 자위권 발동으로 사격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했다. 11대대 하사 정○○은 “대대장이 시위대는 하반신, 차량은 바퀴를 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하였으며, 15대대 하사 박○○은 “야간에 버스가 돌진해 오자, 대대장이 차량 바퀴를 향해 권총을 발사했다”라고 진술했다.

셋째, 제3공수여단의 작전상황과 민간인 사망, 전남대병원 응급환자기록, 피격으로 인한 부상자의 증언, 계엄군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제3공수여단은 5월 20일 밤 광주역 일대에서 공식적인 자위권 발동이 하달되기 전부터 시위대를 향해 사격을 하였고, 사망자나 부상자의 피격 부위에서 보여지듯 ‘신체의 하복부를 지향 사격하라’는 자위권 행사 지침을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진술인들은 대부분 자신은 직접 사격을 하지는 않았으면서 목격한 사실 만을 진술하였고, 이들은 대부분 상관으로부터 ‘조준사격’에 대한 지시가 있었으며, 권총과 M16으로 시위대를 향해 여러 명의 계엄군이 사격했다고 진술했다.

넷째, 제3공수여단 정보참모 윤수웅은 5·18조사위원회와의 면담조사에서 광주역에 있던 11대대에 실탄을 지원해 준 과정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¹²⁴ 5월 20일 21:30경 여단장이 찾는다고 하여 가봤더니 2.5톤 트럭에 실려 있는 경계용 실탄을 가리키며 금남로에서 작전 중인 11대대에 갖다주라는 지시를 하였고, 윤수웅은 본부대대 병력 7, 8명과 함께

124 5·18조사위, 「윤수웅 진술조서」(2023.08.22).

출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윤수웅은 전교사에서 1년 넘게 근무한 적이 있어 비교적 광주 지리를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전남대에서 출발할 때는 신안사거리를 지나 광주 천변 도로를 이용하여 현대극장 앞을 지나 금남로로 가는 것이 시위대와 부딪칠 가능성이 더 적다고 판단하여 그 길로 이동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신안사거리에 이르자 시위대와 15대대가 밀고 밀리는 공방전을 벌이고 있었다. 본부대 병력 7~8명만으로는 시위대를 뚫고 광주 천변 방향으로 이동하기 어려울 것 같아 현장에 있던 15대대장과 부여단장에게 병력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 그 사이 16대대원들에게 트럭에 실려 있던 경계용 실탄 박스가 피탈되고 있었고, 그 옆에 16대대장이 서 있어 16대대장과 고함을 주고받는 다툼 끝에 16대대장을 진정시키고 실탄 박스를 회수한 후 다시 출발하려 할 때 작전참모 김종현 소령이 1/4톤 차량 1대와 M60 기관총이 거치된 2.5톤 차량 1대를 끌고와 여단 전 병력이 광주역으로 집결하고 있으니 금남로가 아닌 광주역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김종현과 함께 광주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윤수웅 정보참모는 처음 계획을 바꾸어 왔던 길을 되짚어 전남대사거리에서 광주시청 사거리로 향하는 광주역 뒷길을 이용하여 광주역으로 향했다. 김종현 작전참모가 탄 차량이 선두에 섰고, 그 다음에 M60 기관총이 거치된 트럭이 뒤따랐다. 광주시청 사거리를 돌아 광주역 방향으로 진입하려는데 작전참모가 인솔하던 차량들에서 광주역과 광주시청 사이를 지날 때 권총 사격 소리가 들렸고, M16 소총의 위협 사격이 이어졌다. “그곳에 시위대는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장병들 힘내라고 사격을 하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만하라고 제지를 했다.”

위협사격이었다고는 하지만 제3공수여단이 광주역에서 발포를 시작한 현장 상황을 처음 확인해주는 진술이며, 현장에 있었던 계엄군 병사들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다. 윤수웅은 위협사격을 제지하고 광주역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시청사거리와 광주역 중간쯤에서 40여 명의 시위대와 마주쳤고, 시위대는 도로 위에 기름을 부어 불을 붙여놓고 그 뒤에

드러누워 있었다. 차량에 설치된 스피커로 해산을 종용하였으나 시위대가 해산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트럭에 거치된 M60 기관총으로 공중을 향해 위협사격을 했다. 기관총 위협사격에도 시위대가 움직이지 않자 다시 E-8발사통을 발포하였고, 지지대로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E-8발사통을 발사하여 무질서하게 날았고, 그 와중에 시위대도 해산하고 윤수웅 자신과 함께 이동하던 병력 모두가 최루탄 가스를 뒤집어쓰게 되었다.

윤수웅의 진술을 종합하면, 5월 20일 21:30 전남대에서 여단장의 지시를 받고 11대에 실탄을 배분하러 출발하였고, 신안사거리에서 실탄을 16대대에게 피탈당했다가 다시 회수하여 광주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김종현 작전참모가 인솔하는 차량에서 두 차례의 발포가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처음 권총과 M16 소총 발포는 위협사격이라고는 하지만 시위대가 없는 상황에서 공중에 대고 사격을 함으로써 이것이 신호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지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광주역의 제3공수여단 병력에게 실탄 지급이 여단장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은 정관철 중사의 차량에 의한 사망사고보다 앞선 시각(21:30)이었고, 또한 보안사 「일일속보철」에 기재된 실탄 지급 시각(21:50)보다 앞선 시각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광주역에서 시위대가 없는 상황에서도 권총과 M16 소총 위협사격이 있었다는 진술은 여단본부에서 실탄을 탄박스로 실어 전달하기 전에 중대장급 이상의 현장지휘관들이 소지하고 있던 권총 실탄으로 이미 발포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발포 행위는 단순히 현장의 위급한 상황을 수습하려는 자위적 수단이 아니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이러한 윤수웅의 진술은 1995년 2월 17일 국방부 검찰부에서 한 진술 내용과도 대부분 일치하였다.¹²⁵

125 국방부검찰부, 「윤수웅 진술조서」(1995.02.17.).

마) 쟁점

(1) 실탄 분배

제3공수여단 대대장과 지역대장, 참모들에게는 출동 시 탄창 2개분, 14발의 권총 실탄이 지급되었다.¹²⁶ 그러나 장병들의 M16 실탄 분배 시점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린다. M16 실탄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는 진술이 다수 있어 당시 전체 장병에게 실탄이 일관되게 분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현장에서의 실탄 분배와는 별개로 특전사는 부대 이동 시 경계용 실탄을 항상 휴대하며 삽탄된 상태의 탄창을 탄통에 넣어 대대장의 1/4t 차량에 싣고 다닌다는 진술은 공통적이다.¹²⁷ 장병들에게 실탄이 분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각 대대장들은 출동 시에 대대 분량의 경계용 실탄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탄 지급과 관련된 군 기록은 <그림 2-1-9>와 같이 505보안부대에서 보안사령부로 5월 20일 22:27경 보고한 「일일속보첩」에서 “21:50 3여단은 각 대대에 엠16 실탄 배부 및 장착 지시 하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공수여단 전 병력에게 일괄적으로 실탄이 지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5월 20일 제3공수여단 병력 중 일부는 출동 당시부터 실탄을 보유하고 있었고 일부는 광주역과 광주시청에서 실탄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¹²⁸ 특히 광주역에 배치된 부대에게는 ‘21:50’경 실탄 배부 지시가 있었고, 그 후 광주역 방향으로 돌진하는 시위대의 차량과 시위대를 향해 제3공수여단 12·15대대의 사격이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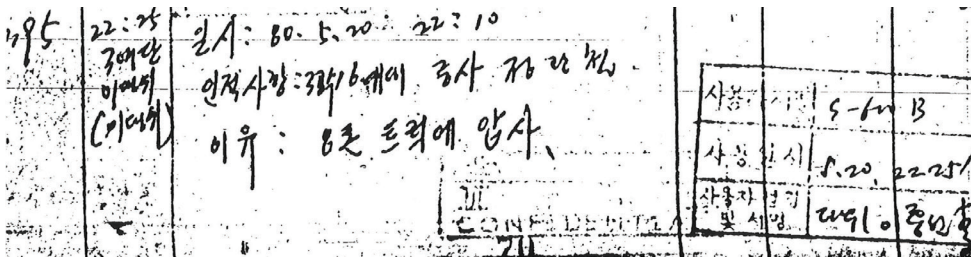
5·18조사위는제3공수여단의 이동과 배치 시각 등 광주역 일대에서 진행된 작전상황 전

126 서울지방검찰청 「최세창 피의자신문조서」(1994.12.24.), 「류〇구 진술조서」(1995.05.11.), 「박종규 피의자신문조서」(1995.12.14.), 국방부 검찰부 「박〇〇 진술조서」(1995.05.24.), 5·18조사위, 「변길남 진술조서」(2022.10.18.).

127 5·18조사위는 통상적으로 특전사는 ‘대침투작전’ 상황에서 투입되기 때문에 ‘부대 이동 시 경계용 실탄을 항상 휴대했다’는 장병들의 공통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28 대침투작전에서 병사 개인마다 실탄 분배가 허용되는 ‘진도개 하나’가 전교사 지역에 발령된 시각은 5월 21일 08:00인데, 3공수여단 병력에게는 이보다 앞선 시각에 이미 실탄이 분배된 것이다. 최세창 3공수여단장이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의 명령을 받고 실탄을 분배한 것인지는 여전히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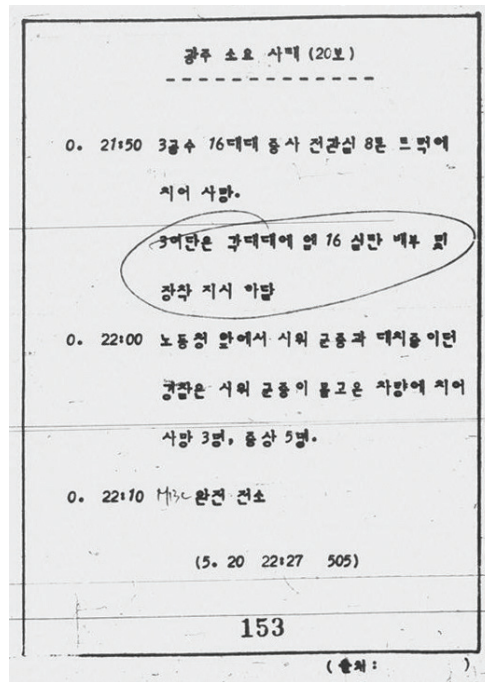
반에 비추어 볼 때 실탄 분배와 관련, 정관철 중사 사망 시각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1980년 작성된 군 문서마다 기재 사항들이 각기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따라서 1995년 검찰은 정관철 중사의 군 문서에 기재된 사망 시각에 대한 명확한 조사 없이 피의자들의 진술을 인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단에서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이 있다.¹²⁹ 정관철 중사의 사망 시각에 대해 1980년 작성한 「특전사 상황일지」는 ‘22:10’, 「보안사 일일속보철」은 ‘21:50’ 등으로 다음 〈그림 2-1-8〉, 〈그림 2-1-9〉¹³⁰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그림 2-1-8〉 특전사 상황일지

129 「5·18관련 사건 수사 결과」(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 1995.7.18.)에는 '22:00경 갑자기 시위대의 11톤 트럭 1대가 광주역 쪽에서 돌진하여 오다가 방향을 틀면서 전복되어 공수부대 하사관 1명이 트럭에 깔려 사망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30 「광주사태 일일 속보철」, 국군기무사령부, 고유번호 광주 383-1980-89, 릴NO 61875.



〈그림 2-1-9〉 보안사령부 일일속보철

보안사령부 『일일속보철』 「광주 소요 사태 (20보)」에는 ‘21:50 3공수 16대대 중사 전관철(정관철의 오기로 추정) 8톤 트럭에 치어 사망. 3여단은 각 대대에 엠16 실탄 배부 및 장착 지시 하달’이라고 기재되어, 정관철 중사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곧바로 실탄이 배부된 것처럼 돼 있다. 그러나 사망사고 직후 전남합동수사단이 수사한 결과에는 이 사건의 발생 시각이 ‘23:50경’이라고 기재돼 있다.

5·18조사위가 새롭게 수집한 자료는 당시 사고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를 수사하여 작성한 1980년 전남합동수사단의 「사건송치서」¹³¹, 군검찰의 「공소장」¹³², 그리고 전교사

131 전남합동수사단, 「사건송치서 (제53호)」(1980.07.30.).

132 전투병과교육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 「공소장(80검 제9-113호)」(1980.8.18.).

계엄보통군법회의의 「판결문」¹³³ 등이다. 아래 〈그림 2-1-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관철 중사 사고 직후 현장에서 체포된 8톤 트럭 운전기사 피의자 이○○과 당시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피의자를 체포한 16대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전남합동수사단은 정관철 사망사고 발생 시각을 23:50경으로 보고했다.¹³⁴

이후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의 검찰부는 「공소장」에서 사고 발생 시각을 22:30경, 「판결문」에서는 사고 발생 시각을 20:00~23:30으로 기재했다. 최초 수사 결과와 다르게 군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는 1시간 이상 사건 발생 시각이 앞당겨졌고, 재판 과정에서는 군 문서에 기재된 ‘실탄 분배 지시’ 시각인 ‘21:50’보다 1시간 50분이나 이른 20:00까지 더 앞으로 당겨졌다. 그런데 당시 정관철 중사 소속 16대대장 김길수 중령이 1985년도에 작성하여 육군본부에 제출한 「광주사태 시 출동상황」이라는 수기에서는 정 중사의 사망사건 발생한 시각을 ‘23:00경’이라고 기재했고, 2022년 5·18조사위 면담조사에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¹³⁵ 또한 1980년 5월 20일 21:50경 실탄 분배를 직접 지시했던 최세창 제3공수여단장은 5·18조사위와의 면담조사(2022.08.03.)에서 “정관철 중사가 사망한 사실을 안 것은 실탄 배분 지시를 하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난 후”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실탄 배분과 발포는 정관철 중사의 사망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¹³⁶ 16대대장의 운전병이었던 정관철 중사는 사고 현장에서 사망했다. 16대대원들은 정관철을 사망하게 한 운전사와 그 외 시위 관련자들을 현장에서 체포하여 여단 본

133 전투병과교육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 1980년 9월 17일 「판결문(80계엄보군형공 제49호)」; 육군 계엄고등군법회의, 1980년 10월 30일 판결문(80고군형항 제419호); 대법원, 1981년 판결문(81도425호).

134 당시 16대대장 김길수 중령은 위원회 조사에서 “정관철 중사가 시위대가 몰던 트럭에 압사당한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11시~11시 30분경이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5·18조사위, 「김길수 진술조서」(2022.10.20.). “당시 정관철은 대대장(김길수)의 운전병이었다.” 5·18조사위, 16대대 화기하사관 「조○○ 진술조서」(2022.12.19.).

135 국방부검찰부 「김길수 피의자신문조서」(1995.01.26.); 서울지방검찰청 「서○○ 진술조서」(1995.05.10.); 5·18조사위, 「권○○ 진술조서」(2022.01.25.); 5·18조사위, 「강○○ 진술조서」(2022.03.30.).

136 5·18조사위, 「최세창 진술조서」(2022.08.03.). 5·18조사위원회는 최세창 3여단장 면담조사 시에 새로 수집된 군 문서를 제시하면서 최세창 여단장의 실탄 분배 지시는 정관철 중사의 사망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확인했다.

부인 전남대학교로 보냈다.¹³⁷ 전남합동수사단은 운전사 및 운전사를 체포한 군인들을 다음날부터 집중 조사했다. 트럭을 운전했던 이○○은 전남합동수사단에서 사고 시각을 ‘밤 11시에서 12시 사이’라고 진술했다.¹³⁸

가. 1980.5.20. 20:00경 전남 도청 광장에 온전관 2,000명의 시위 군중이 광주역 방면으로 이동하자 피의자는 광주 시외버스 공용 버미널 앞 로상에서 동 군중에게 차전 가담하여 개입을 해제하며, 계엄군 불려가라등 구호를 외치며 광주신역 로카리에 도착 동입 23:30경까지 소요에 가담하여 광주시의 현존을 격려함과 동시에 포고령을 위반하고

나. 동일 23:30경 광주 신역에 30세 가량의 정명 불상자가 운전하여 온 삼성화물 소속 전남 8아 3234호 8톤 화물 트럭에 아무나 한사람 타박는 말을 듣고 조수석에 승차 전남대학교 방면으로 약 500미터 가량 각속 접주차가 피의자는 부연히 운전으로 각속 운행 하며 사람을 치어 죽게할수 있음을 알리고도 운전석으로 박혀타고 계속 전남 대학교 방면으로 약 800미터의 각속으로 운전하며 광주시 용봉동 소재 철교 골목이 있는 네거리에서 계엄군이 배치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동입 250경 급회 무죄전하는 순간 동 지역 인도 에 계엄군이 배치되어 있음을 발견 하고도 제동 장치금 사용치않고 인도를 침범하여 등장소에 배치 근무중이던 3공구 이단 16대대 중사 정관철을 등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 현장에서 살해하고, 약 100미터 가량 상가안 석재 공장 창고안으로 도망함으로써 살인한 사실이 있고

〈그림 2-1-10〉 전남합동수사단 사건송치서 제53호 (7월 30일)

5·18조사위는 위에서 언급한 전남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23:50경), 전교사 검찰부(22:30경)와 계엄군법회의 판결(20:00~23:30경)과 정관철 중사 소속 제3공수여단장 진술(23:00~23:30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관철 중사 사망 시각은 16대대장이 진술한 ‘23:00경’으로 판단하였다.

137 국방부검찰부 「김길수 피의자신문조서」(1995.01.26); 서울지방검찰청 「서○○ 진술조서」(1995.05.10).

138 전남합수단, 「제4회 이○○ 피의자신문조서」(1980.07.11).

(2) 발포 명령

5월 20일 광주역 일원의 상황과 관련하여 발포 명령이 내려졌다는 내용은 당시 현장지휘관 및 장병들의 진술, 수기, 제한된 군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제3공수여단 16대대장 김길수는 검찰 조사에서 “(16대대에서 실탄을 수령할 당시) 무전기를 통해서 작전참모로부터 위급상황이 있으면 발포해도 좋다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대장에게 실탄을 분배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¹³⁹ “우리가 실탄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작전참모가 여단장이 위에 보고를 했으니 기다리라는 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 이후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으니 지급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작전참모가 위와 같은 내용을 무전기를 통해서 거듭 전파한 것으로 기억하며,¹⁴⁰ 13대대장 변길남도 이러한 내용을 전파받았을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¹⁴¹ 제3공수여단장 최세창은 검찰 조사에서 “실탄 지급 결정은 혼자 결정한 것이며, 실탄을 지급하면서 정보참모에게 될 수 있으면 실탄 사용을 신중히 하고 위협용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위협용 이외의 사용을 할 때는 대대장이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¹⁴² 위원회 추가 조사에서 최세창은 “실탄을 사용할 때는 사전에 보고하고, 위협용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공포탄은 가져가지 않았고, 실탄을 배분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실탄을 위협용으로만 쓰라는 의미이고, 살상을 전제로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최세창은 당시 발포에 대해서는 “내가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자위적

139 국방부검찰부 「김길수 진술조서」(1995.01.26.). 5·18조사위원회는 군 검찰의 기소와 재판에서 정관철 사망 시각이 앞당겨진 것은 정관철 중사의 사망이 마치 실탄 분배 지시(21:50)의 원인이었다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의도였는지 의문이 들어 관련자 진술을 통해 사망사고와 실탄 분배는 인과관계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140 5·18조사위, 「김길수 진술조서」(2022.10.20.). 그리고 제3공수여단 작전보좌관 성덕진은 발포 명령이 누구에 의해 내려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조사관의 질문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단장이 혼자 책임질 수 없었을 것이고, 전교사나 제31사단 같은 향토 사단과 같은 보병부대가 지역과 관련이 있으므로 그러한 명령을 내리기가 힘들었을 것이고, 특전사령관 또한 작전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사령관이 그런 명령을 감히 내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5·18조사위, 「성덕진 진술조서」(2023.9.21.).

141 5·18조사위, 「변길남 진술조서」(2022.10.18.).

142 서울지방검찰청 「최세창 피의자신문조서 (2회)」(1995.04.29.).

행위로 보았습니다. 위협사격을 하라고 하였고, 발포하라고 명령한 것은 아닙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책임을 물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¹⁴³ 그리고 제3공수여단 11대대장 임수원은 실탄 분배가 이루어졌을 때 발포 허가도 함께 위임된 것으로 생각하면서 “실탄 지급은 상황이 급박해서 사용해야 한다면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이다”라고 위원회 조사에서 밝혔다.¹⁴⁴ 15대대장 박종규 역시 “여단 본부에서 실탄을 전달하였다면 이는 위급한 상황 등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발포를 하여도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¹⁴⁵

한편 5·18조사위는 5월 20일 23:00경 도청과 금남로 일대에서 진압작전을 수행하던 11공수여단 61대대에서도 ‘발포 건의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제11공수여단 61대대장 안부웅 중령과 작전장교 최○○ 대위가 도청으로부터 500미터 정도 떨어진 금남로 3가 부근에서 “대대장 직차에 있는 실탄으로 발포하겠다”는 건의를 여단장과 여단 작전참모에게 하였다는 것이다. 제3공수여단 11대대 7중대장 박○○은 당시 금남로에서 작전 중 자신의 부대에서 낙오되었는데 마침 그 부근에서 작전 중인 제11공수여단 61대대 작전장교 최○○(3사관학교 동기)를 만나 도움을 요청하던 중 이런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했다.¹⁴⁶ 5·18조사위는 최○○에게 그날 밤 부대에서 낙오한 박○○을 만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했다.¹⁴⁷

둘째, 당시 제3공수여단 12대대 본부 작전병이었던 김○○의 수기¹⁴⁸에 의하면, “이 무렵(22:00~22:20경) 무전기에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초급 지휘관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다’, ‘옆 대대와 접촉이 안 되고 있다’, ‘공포탄을 달라’, ‘최

143 5·18조사위, 「최세창 진술조서」(2022.07.29.).

144 5·18조사위, 「임수원 진술조서」(2022.10.28.).

145 서울지방검찰청 「박종규 피의자신문조서」(1995.06.20.).

146 5·18조사위, 「박○○ 진술조서」(2023.09.06.).

147 5·18조사위, 「최○○ 진술조서」(2023.07.13.).

148 김○○, 「3공수여단 12대대 작전병 출신의 실명수기 - 내가 겪은 광주사태」, 『월간조선』 1996년 4월 1일.

소한 차량을 저지할 수 있는 실탄을 달라’, ‘이미 최루탄도 떨어진 상황이며 진압봉으로 대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약 20여 분이 지난 후 (22:20~22:40경) 공포탄 또는 실탄을 사용해도 좋다는 여단 본부의 명령이 하달되었다. 단 유의할 점 몇 가지 사항이 전달되었다. ① 실탄은 중대장급 이상에게만 30발씩 지급할 것, ② 돌진해 오는 차량의 저지용으로만 사용할 것, ③ 인명을 향하여 절대로 쏘지 말 것, ④ 공포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시에는 엄중 처단한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13대대 송○○의 수기¹⁴⁹에는 5월 20일 13대대가 시청에서 작전 중 22:00경 “여단으로부터 발포 명령이 내려졌다. 곧 시청 옥상에 M60 기관총이 설치됐다. (중략) 이윽고 옥상의 기관총에서 불을 뿜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셋째, 5·18조사위는 광주역에서 제3공수여단의 실탄 분배 및 발포가 있고 난 직후 상급부대인 제2군사령부가 “발포금지, 실탄 통제”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림 2-1-11〉 제2군사령부의 「광주권 충청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¹⁵⁰에는 작상전 제 444호에 따라 5월 20일 23:20경 “발포 금지, 실탄 통제”라는 작전지침을 추가하였다.

149 5·18조사위, 「송○○ 수기」(2022.08.23).

150 「광주권 충청작전 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1980), 국군기무사령부, 고유번호 광주 383-1980-095 (MF 릴 번호 61868-1.3), 149쪽.

23:20 작전지침 추가 (작상전 444호)

발포 금지, 실탄 통제

북전사 부대 일부 20사여 인계 (고대) 검토

북전사 부대 대대단위로 본산 점령 (용봉성)

선부 금작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총알에
총알, 실탄, 탄약
북전사 부대, 북전사 부대
북전사 부대, 陸士故長(車)
총알, 탄약, 실탄, 탄약
총알, 탄약, 실탄, 탄약

23:32 소요 확산 금지 (작상전 제 445호)

광주시 외부로 나가는 교통로 봉쇄
국방부 과거 사진상규명위원회
운영규정 제 4조, 14조에 의거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로 동 규정
제 19조에 의거 관리되어야 함

5월 21일

군사령관 순시 및 작전지도, 육본회의 참석 (소방기획 건의)

광주 - 육본 - 국방부 - 광주 - 대구

15:35 사태 수습을 위한 참모총장 지시 (작상전 455호)

- 전국역 확산 방지
- 선부 활동으로 시민과 불순 식민 본미
- 지휘체계 일원화 군사기 전장
- 고도소 끝까지 방어
- 광주시 외부로 나가는 도로당 차단
- 광주시의 지역역 자제 촉구 선부 활동

16:00 진도역 "돌" 발명

000179

4 149

<그림 2-1-11> 제2군사령부의 「광주권 총정작전 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 149쪽.

위 작전지침이 제3공수여단의 광주역 일대 실탄 분배와 발포 사실을 제2군사령부에서 인지하고 내린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당시 제3공수여단의 작전은 상급부대인 제2군사령부의 이러한 작전지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발포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제

로 “발포금지, 실탄 통제”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조사관의 질문에 당시 현장의 공수여단 장병들 대부분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¹⁵¹

넷째, 5·18조사위는 5월 20일 밤 광주역 발포를 전후한 시각, 국방부장관실에서 전두환 합수본부장을 포함한 신군부 실세들과 계엄사령관, 국방부장관 등이 모여 ‘자위권 발동’을 본격적으로 검토했다고 판단했다.¹⁵² 〈그림 2-1-11〉 제2군사령부의 「광주권 총정작전 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의 “5월 20일 23:20 작전지침 추가(작상전 제444호)” 부분의 오른쪽에 수기로 적혀 있는 메모¹⁵³가 위와 같이 판단한 근거이다. 메모 원문에 적혀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관실에 장관, 총장, 군사령관, 합수본부장, 수경사령관, 특전사령관, 육사교장(차)
전 각하: 초병에 대해 난동 시에 군인복무규율에 의거 자위권 발동 강조

메모를 통해 5월 20일 23:00를 전후한 시각 국방부장관실에서 신군부 주요 실세들이 모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참석자는 (주영복 국방부)장관, (이희성 육군참모)총장, (진종채 2군)사령관, (전두환) 합수본부장, (노태우) 수경사령관, (정호용) 특전사령관, (차규현) 육사교장 등 7명이다. 12·12 군사반란을 주도했거나 직간접으로 참여했던 신군부 주요 인물들이 광주역 집단발포가 발생한 시각 국방부장관실에서 ‘자위권 발동’을 거론한 것으로 추정된다. 메모를 통해 ‘전(두환) 각하’가 ‘자위권 발동 강조’했다는 점도 짐작할 수 있다. 5·18조사위는 20일 밤 광주역 발포와 21일 13:00 도청 앞 집단발포에 이

151 5·18조사위는 제2군사령부 「작상전 제444호」 원본을 찾을 수 없었다. 이 문서가 누구의 지시로, 어디로 하달되었는지 구체적인 경위는 확인할 수 없었다.

152 중앙정보부장 서리 겸 합수본부장이자 보안사령관인 전두환은 5월 20일 23:20경 국방부장관실 회의에 참석하였고(2군사령부, 「광주권 총정작전 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 5월 21일 16:35 국방부장관실 회의에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다(『제5공화국전사』, 1981, 1653~1654쪽). 전두환이 국방부장관실 회의에 참석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희성 계엄사령관도 위원회와의 조사에서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다. 5·18조사위, 「이희성 진술조서」(2021.11.12).

153 2군사령부, 「광주권 총정작전 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 문건 중 5월 20일자 ‘23:20 작전지침 추가(작상전 444호)’ 부분의 오른쪽에 2군사령부 관계자가 수기로 국방부장관실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해 기재하였다.

르기까지 이후 긴박한 상황 전개를 고려할 때 이 시각 신군부 실세들의 회동은 ‘발포 명령’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았다. 20일 밤 21:45경 광주MBC방송국이 불타고, 뒤이어 시위대열은 KBS방송국을 향해 광주역 쪽으로 이동했으며, 21:50경 최세창 제3공수여단장은 실탄 분배를 지시하였다. 「작상전 444호」에는 발포금지와 더불어 이 시각 ‘특전사부대 임무 20사에 인계 (교대) 검토’가 기재돼 있다. 이어 23:32 「작상전 445호」는 소요 확산 저지를 위해 “광주시 외부로 나가는 교통로 봉쇄”를 지시했다. 24:00경 윤희정 전교사령관은 이희성 계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시간을 끌면 피차간에 유혈 충돌이 일어날 것 같다며 보병부대를 투입하고 공수부대는 시 외곽으로 철수할 것을 건의하여 승인을 받았고, 그 시각 진중재 2군사령관도 공수부대의 시 외곽 철수를 건의했다.¹⁵⁴ 이에 앞서 22:40경 20사단 선발대인 61연대 병력 1,494명(82/1412)이 용산역에서 기차로 광주를 향해 출발했고, 뒤이어 사단사령부, 62연대가 5월 21일 02:40까지 광주로 향했다.¹⁵⁵

5월 21일 04:30 육군본부에서 이희성 계엄사령관 주재로 계엄사 긴급 일반참모회의가 열렸다. 이 새벽 회의 참석자는 계엄사령관 이희성, 육군참모차장 황영시, 작전참모부장 김재명, 계엄사 참모장 나동원, 헌병감 조홍 등이다.¹⁵⁶ 이 회의에서 20일 국방부 심야 회의 당시 거론된 광주 진압 관련 방침들이 주요 작전 방침으로 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95년 검찰은 이날 새벽 열린 계엄사 대책회의에서 “계엄군을 광주 시내로부터 외곽으로 전환 재배치하고, 1개 연대를 추가 투입하며, 폭도 소탕 작전은 5월 23일 이후에 의명 실시하고, 자위권을 발동하기로 결정하였고”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같은 계엄사 대책회의 결정 사항이 신군부 실세들의 국방부 회동에서 거론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근거는 2군사령부의 「광주권 충청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에 기재된 대로 발포금지와 계엄군 교체를 내용으로 하는 「작상전 444호」(23:20)와 ‘외곽봉쇄작전’을 내용으로

154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 『5·18 관련 사건 수사결과』(1995), 『5·18사건 수사기록』 1권.

155 육군본부, 「작전조치 사항」(1980. 5. 20. 15:00~5. 21. 06:00)

156 『육군참모총장 이희성 근무일지』, 1980. 5. 21.

하는 「작상전 445호」(23:32)에 이미 반영된 사항들이기 때문이다. 새벽에 열린 계엄사 대책회의 이후 진압작전 지휘부는 숨가쁘게 움직였다. 08:00부로 전교사령관은 ‘진도개 하나’를 발령했다.¹⁵⁷ 육군본부 헌병감 조홍(08:00), 작전참모부장 김재명(09:00)은 각기 다른 헬기를 타고 전교사로 향했다가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이후 오후에 귀경했다.¹⁵⁸ 계엄사령관 이희성은 특전사령관 정호용과 함께 09:20부터 10:30까지 최규하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 ‘광주사태 현황’을 보고했다는 기록을 최규하 대통령 일지에서 확인했다.¹⁵⁹ 제2군사령관 진중채는 김준봉 작전참모와 함께 5월 21일 10:00경 광주에서 육군본부로 출발했다. 이날 제2군사령관의 동선은 ‘광주-육본-국방부-광주-대구’ 등 여러 군데를 이동했다.¹⁶⁰

5·18조사위는 이 메모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메모 작성자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하였다. 조사 결과 국과수에 의뢰한 필적 감정 등을 통해 제2군사령부 작전참모 김준봉의 필적이라고 판단했다.¹⁶¹ 김준봉은 5·18 기간 중 진중채 제2군사령관을 수행하였고, 사령관 참석 회의에 배석하였다. 제2군사령부의 「광주권 충정작전 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

157 형식적으로는 윤희정 전교사 사령관이 전교사 지역에 발령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5월 22일 소준열로 전교사 사령관을 교체할 만큼 공수부대의 진압작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윤희정 전교사령관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진도개 하나’를 발령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5월 21일 오후 소준열은 이미 전교사에 내려와 있었다.

158 육군본부, 「작전조치 사항」(1980. 5. 20. 15:00~5. 21. 06:00) ‘항공기 지원’ 부분에 기재된 사항에는 ‘UH-1, 10:30~11:50, 행선지 광주, 헌병감 외 5명’이라고 기재돼 있다.

159 「최규하 대통령 일지」, 대통령 기록관.

160 2군사령부, 「광주권 충정작전 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 149쪽, ‘5. 21. 군사령관 순시 및 작전 지도, 육본회의 참석, 소탕계획 건의’.

161 2군사령관 진중채를 5·18 기간 중 수행한 2군사령부 작전참모는 김준봉 준장이다. 진중채는 사망하여 조사가 불가능하였으나 그가 남긴 필체와 메모의 필체를 비교한 결과 진중채 사령관의 글씨는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김준봉의 경우 위원회 면담 조사에서 메모가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이 문서에는 동일한 필체가 여러 군데 적혀 있다. 5·18조사위는 이 문건에 기재된 필적과 김준봉의 사필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 감정을 의뢰하였다(조사4과-545호, 2023.5.1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23년 6월 2일 “감정 필적과 대조용 필적 간 유사점이 10여 가지 있다. 다만, 제공된 감정 필적과 대조용 필적이 사본이고, 오랜 시일이 지난 점에서 명확히 동일한 사람의 필적이라고 감정할 수는 없다”고 회신을 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2023-M-8329.

문서의 여러 군데에서 동일한 수기 필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바) 소결

제3공수여단은 5월 20일 오전부터 광주 시내에서 진압 작전을 전개하였고 이때 일부 중대장급 지휘관 또는 대대장들은 경계용 실탄을 휴대하고 있었다. 같은 날 저녁 무렵 광주역 일대에서 차량 시위가 격화됨에 따라 현장의 작전 병력은 무전을 통해 여단 본부에 지원 요청하였고,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장교 일부가 20:30경 소지하고 있던 실탄으로 이미 발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일선 대대의 지원요청을 받은 여단 본부는 정보참모와 작전참모를 비롯한 실탄지원조를 편성하여 현장 병력에게 실탄을 전달하였고, 그때 ‘위급하면 썩라’라는 지침을 동시에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당시 현장 지휘관과 장병들은 실탄 지급을 발포 명령이라고 인식하였으며, 광주역 일대에서 본격적으로 발포가 이뤄진 시각은 22:30~23:30 사이로 추정되고, 이 시각에 국방부장관실 회동에 참석한 전두환이 ‘자위권 발동’을 강조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3) 5월 21일 전남도청 앞 발포

가) 전남도청 일원의 상황

5월 20일 밤에 있었던 차량 시위의 여파로 5월 21일 아침 전남도청에서 가톨릭센터로 이어지는 금남로와 전남도청에서 노동청까지 이어지는 도로는 불타거나 버려진 차량들로 혼잡하였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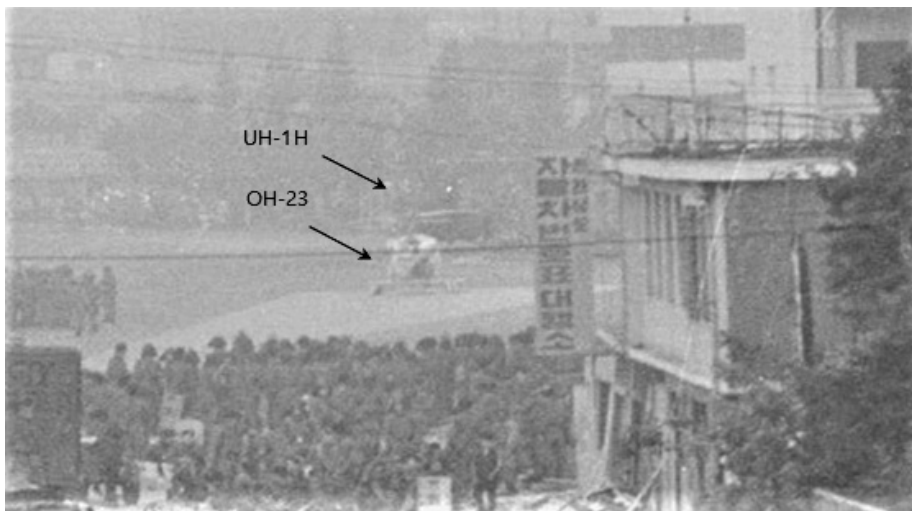
제7장



〈그림 2-1-12〉 5월 21일 아침 노동청에서 본 전남도청 광장

이에 앞서 5월 21일 새벽 04:30 계엄사령부는 이희성 사령관 주재로 긴급 참모회의를 열어 지난 밤 광주역 제3공수여단 작전지역에서 발생한 발포 사태와 관련 ‘자위권 발동’ 등 후속 조치를 논의했고, 06:25 500MD 헬기 5대를 전교사에 추가 배치했다. 한편 02:40부터 08:50 사이에 20사단 61, 62연대를 태운 병력 수송 열차가 차례로 광주 송정역에 도착했다. 08:00 제20사단 61연대(82/1,413명)는 도착과 동시에 광주교육대학 배치 지시를 받고 도로를 이동 중 광주 외곽 농성동 사거리 부근에서 시위대의 저지에 막혀 전교사로 돌아갔다. 08:10경에는 고속도로에서 광주로 진입하던 제20사단 지휘부 차량 14대가 광주 광천공단 입구에서 시위대에게 피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림 2-1-13〉의 사진은 〈그림 2-1-12〉의 사진에서 검정색 원 부분을 확대한 것이다.



〈그림 2-1-13〉 육군 헬기 UH-1H와 경찰 헬기 OH-23

[05:00~06:00] 전남도청 광장 군·경 헬기 이·착륙

차량 시위가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날이 밝자 도청 광장에는 군·경 헬리콥터가 오가면서 가스탄 등 보급품을 수송했다. 전남도경 「집단사태의 발생 및 조치상황」¹⁶²에는 당시의 상황이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05:12 경찰 헬기로 도청 광장에 GAS탄 신고 출발했다 함(장비계장 인수 후 배부)

05:27 경찰 헬기에 가스탄 신고 도청 광장에 착륙

05:45 헬기 2차 가스탄 공수 (M25탄 250발, M7 208발)

05:45경 나경택 기자가 촬영한 위 사진 〈그림 2-1-12〉와 〈그림 2-1-13〉에는 불탄 차량과 경찰 저지선 너머 도청 앞 광장에 경찰 헬기와 군의 UH-1H 헬기가 착륙해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림 2-1-14〉에는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경찰 병력 뒤에 군용 UH-1H가 보인다.

162 전남도경찰국, 「집단사태 발생 및 조치상황」(1980), (국가기록원 CA0290213), 20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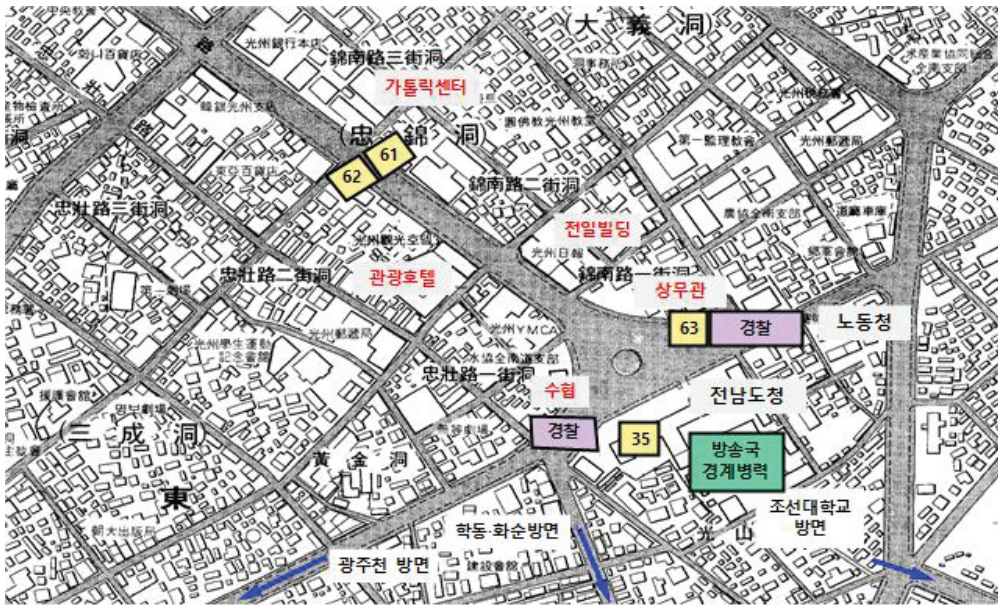
〈그림 2-1-14〉 5월 21일 아침 총장로 입구 방면에서 본 전남도청 광장
(신아일보 이창성 기자 제공 사진)

21일 오전 도청 부근 계엄군 배치 상황은 다음과 같다. 금남로 방면 가톨릭센터 부근에는 제11공수여단 61, 62대대가, 노동청 방면과 학동·화순으로 향하는 도청 울타리 쪽에는 경찰이 배치되어 있었다.¹⁶³ 전남도청 건너편 상무관 주변에는 63대대가, 전남도청 구 내에는 제7공수여단 35대대 및 전날 밤 광주MBC와 CBS, 그리고 전일방송에서 철수한 제31사단 경계 병력 40여 명이 집결해 있었다.¹⁶⁴ 한편 같은 시각 시위대는 광주역 앞에

¹⁶³ 제11공수여단 61, 62대대는 전날 야간 시위가 끝난 다음 아스팔트 위에서 노숙하거나 길에 놓여있는 차 안에서 교대로 휴식을 취하였다. 5·18조사위, 제11공수여단 61대대 「참고인 오OO 진술조서 (2회)」(2023.02.03); 국방부 검찰부, 「성OO 진술조서」(1995.04.10.), 『5·18사건 수사기록』 24권, 31496~31525쪽 참조.

¹⁶⁴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일옥 피의자신문조서」(1995.01.18.), 『5·18사건 수사기록』 15권, 24716~24741쪽.;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한OO 진술조서」(1996.05.26.), 『5·18사건 수사기록』 21권, 29615~29624쪽.; 국방부 검찰부, 「김OO 진술조서」(1995.05.04.), 『5·18사건 수사기록』 24권, 31720~31739쪽.; 5·18조사위, 「최OO 진술조서」(2023.07.13.).

서 발견된 시신 2구를 트럭 또는 리어카에 싣고 시내를 통과하여 금남로로 이동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교사 정보일지에는 “05:45 경 삼립빵 트럭 2.5t에 데모 군중 시체를 싣고 시내를 돌아다닌다는 첩보”가 기록되어 있다.¹⁶⁵ 한국일보 조성호 기자는 이날 취재 수첩에 “새벽, 시위군중 가열, 시체 2구 리어카에 싣고 농성”이라고 썼다.¹⁶⁶



〈그림 2-1-15〉 5월 21일 새벽 전남도청 계엄군과 경찰 배치 상황

[06:00~08:00] 금남로 대치선에 리어카 시신 등장

금남로에서 계엄군과 시위대가 최초로 대치한 지점은 가톨릭센터 앞이었다.

06:00~7:00경 전날 밤 차량 시위에 사용된 택시 등으로 지지선을 구축한 계엄군 앞에 리어카에 실린 시신 2구를 앞세운 시위대가 등장했다. 제11공수여단 62대대 6중대장 박

165 「광주사태 시 전교사 정보일지」(1980), 국군기무사령부, 고유번호 광주 383-1980-093 (MF 릴 번호 61876-1.1), 235쪽.

166 조성호. 1980. 「취재수첩」, 『오월 취재수첩』, 5·18민주화운동기록관·문화재청, 2021, 258쪽.

인수는 검찰 조사에서 “이날 아침 금남로 도로상에 중앙선을 중심으로 가톨릭센터 쪽 도로에 61대대가, 그 반대편인 관광호텔 쪽 도로에 62대대가 (중략) 맨 앞에는 리어카에 태극기를 덮은 시체를 싣고 왔고 어느 여자가 마이크를 이용하여 ‘계엄군이 여기에 있는 사람을 죽였다’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했다.¹⁶⁷ 이 시간대 가톨릭센터 앞 대치 상황을 한국일보 조성호 기자는 자신의 취재수첩에 “06:20 신역 앞에서 시신 2구를 실은 리어카를 트럭 3대가 매달고 양림교 - 공원앞 - 금남로2가에 도착, 앞세워 태극기 덮고 연좌농성 (가톨릭센터 앞)”이라고 썼다.¹⁶⁸



〈그림 2-1-16〉 계엄군 저지선 앞 시신이 실린 리어카 모습

¹⁶⁷ 국방부 검찰부, 「박인수 진술조사(1995.06.09.)」, 『5·18사건 수사기록』 24권, 31940~31958쪽.

¹⁶⁸ 조성호(1980), 앞의 글, 258~259쪽.



〈그림 2-1-17〉 5월 21일 오전 가톨릭센터 앞 대치선

[08:00~10:00] 진도개 '하나' 발령 및 시위대 도지사 면담

5월 21일 08:00경 윤희정 전교사령관은 전교사 지역¹⁶⁹에 '진도개 하나'를 발령했다. 그리고 같은 날 12:45경 「작지 80-4호」 '광주 도시권 북쪽 3개 지역을 봉쇄할 것', 17:30경에는 「작지 80-5호」 '광주 도시 간 외곽도로를 완전히 봉쇄할 것'을 지시했다. 이 명령에

169 '진도개 하나' 발령 지역에 관해 관련 기록마다 상이하다. 전교사 지역으로 기재된 문헌은 전투병과교육사령부, 「전투상보 (충정작전결과)」(1980.6.13.),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군 자료집』 1권, 308쪽; 「광주사태 일일속보철」(1980), 국군기무사령부, 고유번호 광주 383-1980-089 (MF 릴 번호 618757-1.1), 193쪽; 「20사단 광주권 충정작전 분석」(1980), 국군기무사령부, 고유번호 광주 383-1980-095 (MF 릴 번호 61868-1.3), 66쪽이다. 이에 비해 광주 또는 전남지역으로 기재된 문헌은 전투병과교육사령부, 「작전상황일지(5.14.~27.)」, 572쪽(광주 전역), 전투병과교육사령부, 「광주사태 시 전교사 작전일지」, 189쪽(광주지역); 「충정병력 출동 및 광주사태 상황일지」(1980), 국군기무사령부, 고유번호 광주 383-1980-096 (MF 릴 번호 61866-1.2), 50쪽(전남지역); 전남경찰국(1980), 「집단사태 발생 및 조치상황」, (국가기록원 CA0290213), 231쪽(전남지역)이다. 전교사 「전투상보」가 전교사 예하 「상황일지」를 취합하여 1980년 6월 13일 사후에 작성된 문건으로 더욱 정확성이 높다는 점과 전북 지역에 소재하는 제35사단에서도 '진도개 하나' 발령 후 11:50경 전남과 전북의 경계 지점인 사남터널에 병력을 배치한 점에 비추어 전교사 전 지역에 발령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 계엄군은 광주 외곽 봉쇄 작전을 전개하였다.¹⁷⁰



〈그림 2-1-18〉 리어카 시신을 두고 계엄군과 대치 중인 시위대

금남로에는 아침부터 시위대가 점차 증가하여 5만여 명에 이르렀고, 시신 2구를 실은 리어카를 사이에 둔 채 계엄군과 대치하였다. 계엄군은 여전히 저지선을 유지하였지만 서로 충돌하지는 않았다. 09:00경 지난 밤 차량 방송을 통해 시위대를 이끌었던 전옥주(본명: 전춘심) 등 3명(여자 1, 남자 2명)이 시위대의 대표임을 자처하며 계엄군 총책임자와 대화를 갖고 싶다고 요구했다. 제11공수여단 61·62·63 및 제7공수여단 35대대 등 4명의 대대장들이 상의한 후 61대대장이 이에 응함으로써 대화가 시작됐다. 군중의 요구 사항은 ① 계엄군(공수부대) 즉각 철수, ② 체포된 자 즉각 석방, ③ 폭력사용 금지 등이

170 전투병과교육사령부, 「전투상보 (총정작전결과)」(1980.6.13), 20~21쪽.

었다. 61대대장 안부웅은 전교사에 있던 최웅 11여단장과 무전으로 직접 교신 후 이에 대한 지침을 받고 “전방 지휘관으로서 명령에 살고 죽는 우리는 도청을 사수하라는 명령을 수령한 이상 일체 철수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러자 시위대 대표들은 도지사와 경찰국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¹⁷¹ 61대대장 안부웅은 다시 제11공수여단장과 교신하여 지침을 받은 후 35대대장 김일옥에게 이들을 도청으로 안내하게 하였다.¹⁷² 이런 과정을 거쳐 도지사와 경찰국장의 면담이 전남도청 수산국장실에서 이루어졌다. 시위대 대표는 장형태 도지사에게 ① 계엄군 투입, 무차별 구타에 대한 공개 사과, ② 연행 학생 및 시민 석방, ③ 금일 12:00까지 공수단 완전 철수를 요구하였고¹⁷³ 장형태 도지사는 이를 “최대한 수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¹⁷⁴

171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 『전춘심 증언 (증언번호 4014)』, 1990. 『광주 오월민중항쟁 사료 전집』, 전옥주(개명 전: 전춘심)는 당시 도지사와의 면담에 대해 “계엄군 중령에게 사령관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 중령이 도청으로 들어가자고 하였다. (중략) 도지사가 12시까지의 책임지고 계엄사령관을 만나게 해줄 테니 전옥주 씨가 먼저 나가서 시민들을 제지시켜 주십시오”라고 했다”라고 한다.

172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안부웅 피의자신문조서 (4회)』(1995). 제11공수여단이 〈육군대책위원회〉에 제출한 문서(1988.03.)

173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1995), 『5·18 관련 사건 수사 결과』(1995.07.18.), 『5·18사건 수사기록』 1권, 97~98쪽.

174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장형태 진술조서 (3회)』(1995.12.26.), 『5·18사건 수사기록』 97권, 104255쪽.

[10:00~11:00] 금남로에 시위대 장갑차 등장 및 계엄군 실탄 지급



〈그림 2-1-19〉 돌진하는 시위대 장갑차와 후퇴하는 계엄군

10:00경부터 전남도청 건너편 상무관 부근에서 63대대 일부 계엄군에게 실탄이 지급되었다.¹⁷⁵ 실탄을 지급받은 부대는 궤도형 장갑차 2대와 함께 금남로에서 대치 중인 61대대 및 62대대 후방에 배치되었다. 해당 시각 및 장소에서 실탄 지급이 있었다는 내용을 기록한 군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탄 지급 사실 자체는 위원회 면담조사 결과 여러 진술 및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전남도청 3층 복도 창문에서 금남로 상황을 지켜보던 동아일보 김영택 기자는 취재 수첩에 “10:15경 실탄 지급 3개 소대 앞으로 돌진”, “10:25경 공수(탄약 지급)부대와 대학생

175 제1공수여단 61대대 본부중대 작전병 진OO은 조선대에 통합 보관하던 실탄을 전남도청으로 옮겼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조선대학교 천막 밖에서 안부웅 대대장님이 군수와, 작전과, 정보과 등 참모들을 모아 놓고 ‘실탄을 분배하라’는 말을 천막 옆을 지나가면서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조선대학교 안에는 병력이 없었고, 모두 전남도청 앞에 있었기 때문에 군수과에서 통합보관하고 있던 실탄을 전남도청 앞으로 옮겼을 것입니다.” 5·18조사위, 「진OO 진술조서」(2023.09.08.)

관광호텔 앞에서 50m 거리에 대치”라고 당시 상황을 기록했다.¹⁷⁶ 김영택 기자와 전남도청에 함께 있었던 장형태 도지사는 “10:10경 전남도청 앞 병력에 대한 실탄 분배에 대하여 김영택 기자와 나누었던 대화가 분명히 기억난다”라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하였다.¹⁷⁷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계엄군들도 이 시각 상무관 앞에서 실탄이 지급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제11공수여단 63대대 8지역대 소속 화기병 최○○는 “10:30~11:00경 상무관 앞에 있던 APC 뒷문을 열고 자신이 직접 실탄 박스를 해체, 탄포 형태의 M16 실탄을 병력들에게 배분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¹⁷⁸ 63대대 8지역대 화기하사 이○○는 “10:00~10:30경 상무관에서 탄창 1개 10발 정도 실탄을 받은 후 전진 배치된 쪽으로 이동했다”라고 진술하였다.¹⁷⁹ 또한, 61대대 정보장교 장두혁은 1995년 검찰 조사 시 제출한 진술서에 “10:30경 상무관에 있던 63대대 병력이 61, 62대대 후미에 2열 횡대로 전개됨”이라고 썼다.¹⁸⁰

한편 신아일보 이창성 기자의 취재 사진 중에는 장갑차를 포함한 공수부대 병력이 전남도청 앞에서 금남로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그림 2-1-20>의 사진에서 장갑차 위에 장착된 캘리버 50 기관총¹⁸¹에 탄통이 부착된 것과 일부 공수부대 병력이 실탄 휴대용 탄포를 두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금남로에 배치된 장갑차 529호 조종수 김○○(기갑학교 장갑중대 상병)은 위원회와의 면담조사 결과 5월 20일 밤 MBC방송국 앞에서 캘리버50 기관총 한 발을 발사한 것은 출동할 때 부대에서 가져온 것 같고, 21일 오후 도청 앞 발포는 캘리버50 기관총의 실탄을 공수부대로부터 받아서 사격했다고

176 김영택. 1980. 「취재수첩」,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자료총서 02 『오월 취재수첩』, 5·18민주화운동기록관·문화재청, 2021, 58~61쪽.

177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장형태 진술조서」(1995.3.27.), 『5·18사건 수사기록』 18권, 27427쪽.

178 5·18조사위, 조사과-688(2022.8.5.), 「참고인 진술 청취 결과 보고」.

179 5·18조사위, 「이○○ 녹취록」(2022.02.08.).

180 국방부검찰부, 「장○○ 진술서」(1995.4.26.), 『5·18사건 수사기록』 24권, 31685쪽.

181 정식 명칭은 “12.7mm 기관총 M2”이나, 이 보고서에서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널리 쓰인 표현인 ‘캘리버 50’을 사용하였다.

진술했다.¹⁸²

1995년 검찰은 ‘11:00경 63대대장은 대대장 지프에 보관하고 있던 대대 경계용 실탄을 중대장들에게 1인당 10발씩 지급’했다고 밝혔다.¹⁸³ 5·18조사위는 검찰수사 결과와 다르게 집단발포 전에 이미 외부로부터 헬기를 이용하여 실탄이 공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5·18조사위는 11공수여단 61대대 3지역대 8중대 23지대장 중위 천〇〇의 면담조사를 통해 ‘대규모 발포 이전’에 “UH-1H가 분수대 오른쪽 옆에 공중에 약간 떠 있는 상태로 실탄을 가지고 와 분배하였습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¹⁸⁴ 천〇〇 중위의 진술이 다른 목격자의 추가 진술이나 기록 등에 의해 사실로 확인된다면 ‘집단발포 이전 실탄의 헬기 공급’이 의미하는 바는 상부로부터 발포를 미리 준비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 2-1-20〉 5월 21일 오전 상무관 쪽에서 금남로로 이동하는 계엄군 병력 및 장갑차

¹⁸² 5·18조사위, 「김〇〇 진술조서」(2022.08.31). “권총, 칼리버 50을 가지고 시위진압에 투입되었으나, 실탄을 받고 출동하였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1980년 5월 20일 MBC가 불탄 날 이〇〇 중사의 명령으로 칼리버 50 1발을 발사하였기 때문에 부대에서 출동할 때 실탄을 받은 것도 같으며, 이후 1980년 5월 21일 13시경 박쥐 마크의 공수부대로부터 칼리버 50 실탄을 받았습니다.”

¹⁸³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 「5·18 관련 사건 수사 결과」(1995.07.18.), 『5·18사건 수사기록』 1권.

¹⁸⁴ 5·18조사위, 「천〇〇 진술조서」(2022.12.15.).

[10:30~11:00경] 도지사, 헬기에서 선무방송

장형태 도지사는 10:30~11:00경 경찰 헬기에 탑승, 금남로 상공에서 시민들에게 질서 유지를 호소하는 선무방송을 실시하였다.¹⁸⁵ 김영택 기자는 “나는 도지사입니다. 여러분의 요구를 모두 관철시키겠습니다. 10:40경 군은 모두 철수했으니 해산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지부동”이라고 당시 취재 수첩에 적었다. 조성호 기자는 “11:00 시장, 지사가 경찰 헬기 타고 ‘시민 여러분 광주를 살립니다. 여러분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공정대도 물러가기로 돼 있습니다’”라고 기록하였다.¹⁸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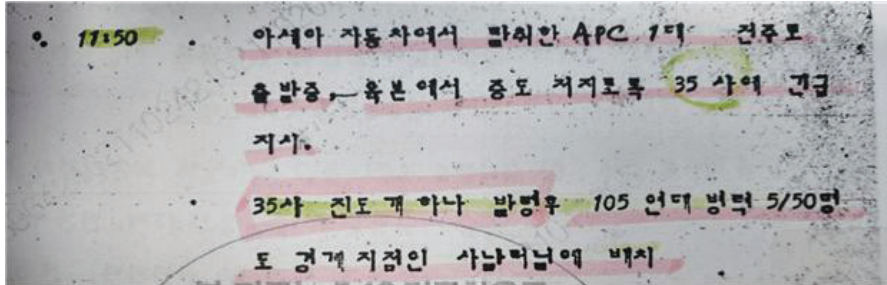


〈그림 2-1-21〉 5월 21일 10:55 현재 금남로 대치 상황, 분수대 앞 시계탑의 시각
(출전: 김영택, 1980, 『취재수첩(하늘색)』, 『10일간의 취재수첩』, 사계절(1988) 중에서)

185 전남경찰국, 1980, 『집단지체 발생 및 조치상황』, 국가기록원 CA0290213, 232쪽.

186 김영택, 1980, 『취재수첩(하늘색)』, 『10일간의 취재수첩』, 사계절, 1988, 33쪽; 조성호(1980), 앞의 글, 264쪽.

[11:50] 제35사단, 전남북 경계지점 사남터널 차단



〈그림 2-1-22〉 「광주소요사태 진행 상황」 5월 21일 부분

〈그림 2-1-22〉의 「광주소요사태 진행 상황」 기록에 의하면, 5월 21일 08:00경 전교 사령관은 전교사 지역인 광주 및 전남·북 지역에도 ‘진도개 하나’를 동시에 발령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전북에 위치한 제35사단에서도 11:50경 전남과 전북의 경계 지점인 사남터널에 병력을 추가 배치하였다. 또한 제35사단은 12:30경 사남터널 경계 병력을 7/70명으로 증원 조치하였고, 12:40경에는 제35사단 예비병력 20/100명을 호남고속도로 정읍 비상활주로에 출동시켰으며, 500MD 헬기를 공중 초계 비행하도록 조치하였다.¹⁸⁷

187 보안사령부, 「광주소요사태 진행 상황」(1980), 240~242쪽.

[12:00~13:00] 발포 직전 상황



〈그림 2-1-23〉 발포 직전 상황(출전: 보안사령부, 「광주소요사태 진행 상황」, 5·18조사위, 핵심자료 『종합분석』 11권, 109-101, 2020.)

도청 앞 계엄군과 시위대 간 대치 상황은 12:00가 되자 긴장이 높아졌다.¹⁸⁸ 제11공수여단 61대대장 안부웅은 “12시에 철수한다는 도지사의 방송을 듣고 양대인 참모장과 교신하여 확인해보라고 하였으며, 여단에서는 알아보겠다고 했지만, 그 후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다”면서 “도지사가 헬기에서 계엄군이 12:00에 철수한다고 방송을 한 관계로 12시가 넘어 상황이 험악해졌다”라고 진술하였다.¹⁸⁹ 제11공수여단 62대대 4지역대장 최〇〇은 “약속한 12시가 지나자 군중들이 왜 안 물러나느냐고 항의했다”라고 진술하였다.¹⁹⁰ 김영택 기자는 당시 상황을 “12시 50분 데모군중이 공수단과 부딪쳐 진출하려 하자 자제하라고 군중들 스스로 제지”라고 기록하였다.

¹⁸⁸ 12:00 이전까지는 시민들이 계엄군에게 사과, 빵 등 먹을 것을 박스에 담아 가져다 주는 등 양측 사이에 긴장되지 않은 분위기였음을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¹⁸⁹ 서울지방검찰청, 「안부웅 피의자신문조서 (3회)」(1995.07.04.), 『5·18사건 수사기록』 17권, 26631쪽.

¹⁹⁰ 서울지방검찰청, 「최〇〇 진술조서」(1995.05.31.), 『5·18사건 수사기록』 21권, 29808쪽.

[13:00 전후] 발포



〈그림 2-1-24〉 광주 금남로 5. 21. 시간별 주요 상황 재구성

5월 21일 전남도청 앞 발포 상황에 대한 군 기록은 〈그림 2-1-25〉 「전교사 작전일지」에만 '13:30' 도청 앞에서 폭도의 권총으로 11공수 병력 1명 사망, 1명 부상하였으며, 계엄군 공포탄 발사로 진압'이라고 기재돼 있다. 하지만 이 전교사 작전일지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최초 발포 시각이 이미 널리 확인된 13:00경이 아니라 '13:30'로 기재돼 있는 데다 계엄군의 사망 사실만 있고, 집단발포가 지속되는 동안 발생한 시위대의 사망 사실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전교사와 특전사 작전상황일지, 전투상보 등도 마찬가지로 13:00경 도청 앞 집단발포는 기재돼 있지 않다. 따라서 5·18조

사위는 도청 앞 집단발포와 관련된 가장 기초적인 기록이 누락된 군 자료들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른 군 자료들도 5월 21일 13:00 도청 앞 집단발포가 기재된 군 문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기밀을 유지한 채 상부에 보고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일속보철」 등 보안사가 작성한 상황 문서들조차 발포 관련 사항을 기재할 때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¹⁹¹

일시	장소	내용	비고
13:08	도청 앞	11:08 함평에서 온 트럭 3대여 상하차량이 한 번 있고 버스 2대여 상하차량이 공성 기병 20대가 상하차로 이동.	
13:26	도청 앞	13:26 CAR 상하차 2대 (상차량 아세아 자동차 8톤 1대, 하차량 대금)	함평군 (함평군청)
13:30	도청 앞	13:30. 취청이 분파 오름.	함평군 (함평군청)
13:44	도청 앞	13:44. 아세아 자동차 2대 무도한 상하차량으로 가지고 이동 있음.	함평군 (함평군청)
13:50	도청 앞	13:50 함평도청에서 무도한 상하차량으로 11:08부터 1:00 상하차량 있었으며 개포탄 발사 전함.	함평군 (함평군청)
14:00	도청 앞	14:00 13:50 사살터널 500 M.D. 1대 연료포함	
14:10	도청 앞	14:10 화석 (CA 008-265) - (CA 상하차량)	
14:05	도청 앞	14:05 함평군 기병을 사살터널로 이동함	함평군 (함평군청)

〈그림 2-1-25〉 「전교사 작전일지」에 기록된 “공포탄 발사” 상황

191 당시 작성된 군 작전문서, 전남합수단의 수사기록 등에서는 5월 20일 야간에 발생한 광주역 발포는 물론이고, 5월 21일 13:00경 전남도청 앞에서 수십만 명의 광주시민과 기자들이 목격한 발포 사실조차 전혀 찾아볼 수 없다. 5·18 종료 직후 군 자료를 다시 정리하는 과정에서 모든 흔적을 지웠을 가능성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기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5·18조사위는 도청 앞 집단발포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발포’가 기재되어 있는 경찰, 검찰, 행정기관의 상황일지나 기자들의 취재수첩을 검토하였다. 특히 발포 사실을 직접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발포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망 사실 판단과 부상자를 치료한 의료기록은 당시 상황을 기록한 어떤 문서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총상 환자 진료기록은 발포 사실을 직접 입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발포시각과 발포의 성격까지도 추론할 수 있는 증거라고 보았다. 위원회는 시위진압작전에 참가한 병사들의 발포와 관련된 부분을 면담조사한 결과 진술 내용이 사실인지 아니면 허위인지 진위 여부를 가릴 때도 앞에 언급한 기록들에 비추어 판단했다.

이런 관점에서 위원회는 전남대학교 병원이 당시 작성한 ‘응급환자기록지’는 총상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한 시각과 상태가 상세하게 기록돼 있기 때문에 발포상황을 재구성하는데 정확한 발포시각을 추정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료라고 판단했다. 광주기독병원, 적십자병원, 조선대병원, 국군광주통합병원, 그리고 광주시내의 개인병원 진료기록부도 발포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¹⁹² 보안사 존안자료인 「집단사태 발생 및 조치상황」, 광주시 「상황일지」, 동구청 「상황일지」, 신문사 기자가 작성한 기사 등에는 13:00경 계엄군의 사격 사실과 시민이 쓰러지는 모습 등이 기재돼 있어서 사망, 부상자 등의 피해 사실과 일치하기 때문에 유의미한 자료라고 판단했다.

192 광주광역시의사회, 2018, 『5·18의료활동 I, II: 자료 기록 및 증언, 2018』.



〈그림 2-1-26〉 5월 21일 13:00~13:20경 도청 인근에서 시민이 피격되는 장면
 동양방송(TBC) 김창훈 카메라 기자 제공 사진(김창훈, JTBC 2011.12.02)

조성호 기자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취재 수첩에 기록하였다. 황종건 기자는 5월 21일 13:00경 도청 옥상에서,¹⁹³ 이창성 기자와 나경택 기자는 5월 21일 13:00경 도청 옆 대도호텔에 있으면서 충장로 1가 입구 도심빌딩 앞에서 구경하던 시민 한 명이 총탄에 피격돼 쓰러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나경택 기자는 〈그림 2-1-26〉의 사진들과 같이 시민이 총탄에 맞아 쓰러지고 옆에 있던 시민들이 옮기는 장면을 연속 촬영하고, 같이 있던 동양방송 카메라 기자가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계엄당국의 검열로 당시에는 보도되지 못했지만, 그때 작성한 동아일보 기사는 발포

.....
 193 황종건(동아일보 사진부)은 5. 21. 13:00경 집단발포가 시작될 때 도청 옥상에서 금남로 모습을 촬영한 후 본사에 필름을 보냈으나 나중에 확인해보니 발포장면을 찍은 필름이 사라졌다고 증언했다.(KBS 시사직격 119회, 2022.05.20.).

당시 상황을 ‘오후 1시’이고, 계엄군이 ‘M16 소총으로 데모대 전열을 향해 일제히 사격을 시작했다’라고 보도 검열에서 삭제된 기사의 초고에 기록돼 있다.¹⁹⁴ 광주지방검찰청은 ‘13:00경 폭도 차량이 경찰을 향해 돌진, 역과하여 대응 발포하였음(사상자 다수 추정)’이라고 기재했다.

1995년 검찰 수사 결과는 13:00 집단발포 직전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¹⁹⁵

“12:00경 공수부대는 장갑차 2대와 함께 도로에 횡대로 포진하여 시위대의 도청 진출을 저지하고, 시위대는 장갑차, 트럭, 버스, 택시 등 백여 대의 차량을 전면에 내세우고 공수부대의 저지선을 압박하여, 서로 10미터 정도까지 접근, 긴장된 분위기가 지속되던 중, 13:00경 공수부대가 철수하지 않는 데 항의하며 시위대가 화염병을 투척하여 계엄군 장갑차에 불이 붙는 순간 시위대의 장갑차 1대가 갑자기 공수부대 쪽으로 돌진하자, 공수부대의 저지선이 무너지면서 공수부대원들은 장갑차를 피해 좌우로 갈라져 부근 전남도청, 상무관, 수협 도지부 건물 등으로 산개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공수부대원 2명이 장갑차에 깔려 1명이 사망하였고, 장갑차의 갑작스러운 돌진에 놀란 계엄군 장갑차 소대장이 장갑차에 거치된 기관총 방아쇠를 건드려 공중 발포가 되고, 도청 직원들이 선무활동의 일환으로 스피커를 통해 애국가를 방송¹⁹⁶하며 해산을 호소하는 가운데, 계속하여 시위대의 버스와 트럭이 도청 쪽으로 돌진해 오자 뒤쪽에 있던 일부 공수부대 장교들이 돌진하는 차량을 향해 발포를 하여 버스 1대는 운전자가 사망하면서 도청 좌측 건물과 충돌하여 정지하고, 장갑차와 다른 차들은 도청 앞 분수대를 돌아 나갔음.”

194 ‘대치하고 있던 계엄군에게 발포 명령이 내려진 것은 21일 오후 1시. 도청 건물에 설치된 확성기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것이 신호가 됐다. 데모대와 대치하고 있던 계엄군은 애국가 소리를 듣자 일제히 들고 있던 곤봉을 버리고 메고 있던 엠16으로 데모대 전열을 향해 일제히 사격을 시작했다. 하늘을 찢는 총성이 울려 퍼지자 군과 불과 70-80미터 떨어져 대치하고 있던 데모군중의 전열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기 시작했다.’ (동아일보 속보, 부분 삭제 기사, 1980.5.21, 작성).

195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 『5·18 관련 사건 수사 결과』(1995.07.18.), 『5·18사건 수사기록』 1권.

196 전라남도 새마을계장 문영식은 “시끌벅적하니까 (범택군) 내무국장이 서무과 서무계에 가서 애국가 연주를 틀었다”고 증언했다(2022.07.01. 옛도청복원추진단 심층 구술 2022-24). 5·18조사위는 도청 스피커로 울려 퍼진 애국가는 도청 앞 총격이 시작된 후였고, 과열된 분위기를 가라 앉히기 위한 조치였지 발포 신호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수사 결과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견된다. 첫째, 계엄군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발포 직전 상황을 치밀하게 조사하지 않았다. 13:00경 발포 직전 상황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생략된 채 애매하게 상황을 기술함으로써 발포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렵게 했다. 둘째, 피해자들의 조사나 현장검증을 생략한 채 계엄군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당시 상황을 기술하다 보니 수사 이후 추가적인 왜곡과 조작이 발생할 소지를 남겼다. 예를 들면, ‘장갑차의 갑작스러운 돌진에 놀란 계엄군 장갑차 소대장이 장갑차에 거치된 기관총 방아쇠를 건드려 공중 발포’가 됐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 5·18조사위 조사 결과 계엄군 장갑차에 탑승하여 기관총을 발사한 장갑차 소대장은 “공수부대 대대장의 발포 지시에 따라 사격을 했다”고 진술했다.¹⁹⁷ 실수에 의한 발포가 아니라 발포 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버스 운전사를 향해 조준사격을 한 사람은 장교가 아닌 63대대 화기병 이○○ 중사로 자신이 조준사격을 했다고 시인하는 진술에 의해 확인되었다.¹⁹⁸ 또한 권용운 일병의 사망원인과 관련한 부분도 ‘미처 피하지 못한 공수부대원 2명이 장갑차에 깔려 1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은 적시하고 있으나 누구의 장갑차에 깔렸는지를 명확히 규명하지 않았다.¹⁹⁹ 중앙정보부장 서리 겸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당시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에 대해 1996년 5월 6일 열린 공판에서 “전남도청을 지키는 계엄군과 시위 군중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졌다 하는 것은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라며 집단발포와 자신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다.²⁰⁰

5·18조사위는 도청 앞 발포 당시 현장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그 장소에서 진압작전

197 5·18조사위, 「최○○ 진술조서」(2022.9.6.)

198 5·18조사위, 「이○○ 진술조서」(2023.08.12.)

199 5·18조사위는 도청 앞에서 장갑차에 의한 군인 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국군광주통합병원 날짜별 군인 입원자 명단(『5.18 의료 활동 II』, 광주광역시의회, 2008, 26쪽) 가운데 5월 21일에 기재된 11공수여단 2명(중사 박○○, 일병 김○○)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그중 박○○의 소재는 확인할 수 없었고, 일병 김○○은 장갑차와 무관하게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00 서울지방법원, 「전두환 공판조서」(1996.5.6.)

을 수행했던 공수부대 병사와 장교들을 면담조사했다. 조사 결과 진술 내용이 5·18조사위가 중요하다고 위에서 언급한 자료의 기록들과 일치하거나 사망 또는 부상자들의 피해 사실²⁰¹과 일치하는 진술들을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였고, 그런 진술과 자료를 기반으로 상황을 재구성했다.

515호 장갑차 곁에 있었던 61대대 3지역대장 천○○ 중위는 시위대가 총을 갖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5·18조사위 조사관이 천○○ 중위에게 “당시 시위대가 총을 가지고 있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총은 없었습니다. 몽둥이 이런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했다.²⁰² 5·18조사위는 5월 21일 12:30경 도청 앞 시위대들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확대하여 분석한 결과 아래 <그림 2-1-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위대는 몽둥이와 쇠파이프를 들고 있는 것은 확인했으나, 카빈 소총 등을 들고 있는 모습은 확인하지 못했다.

5월 21일 13:00 직전 계엄군은 YMCA와 전일빌딩 사이에 두고 맨 앞에 2대의 장갑차가 배치돼 있었고, 그 뒤편 도청 쪽으로 공수부대가 도열했다. 도청에서 금남로를 바라보았을 때 금남로 도로 오른편 전일빌딩 쪽은 제11공수여단 61대대, 왼편 YMCA 쪽은 62대대, 그리고 90m 정도 뒤편에 자리한 분수대 부근에는 63대대 일부, 충장로 1가 쪽 도청 담벽으로는 제7공수여단 35대대, 노동청 방향에는 63대대 일부, 경찰은 도청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다. 이 시각 시위대는 도청을 중심으로 사방을 15만여 명이 에워싸고 있었다. 금남로 YMCA와 전일빌딩 사이에 위치한 61대대와 62대대는 시위대와 불과 5~10m 이내의 가까운 거리였다. 13:00가 가까워지자 지금까지 충돌을 자제하던 분위기가 술렁

²⁰¹ 5·18조사위, 본 보고서 제5장 ‘민간인 희생’ 부분 중 5월 21일, 도청 앞 사망자, 부상자 부분 참조. 도청 일대 총상 사망자는 41명인데, 이 가운데 최승희는 전남대병원 응급기록지에 병원 도착 시각이 ‘13:15’으로 기재돼 있다. 5·18조사위는 도청 부근에서 전남대병원까지 이동에 소요되는 최소 시간 10~15분 정도를 고려하면 최승희를 사망케 한 최초 발포는 13:00경이라고 기재한 기록과 여기에 부합하는 진술이 진실이라고 판단했다.

²⁰² 5·18조사위, 「천○○ 진술조사서」(2022.12.15.). 천○○ 중위는 61대대 3지역대 지대장으로 전일빌딩 쪽 61대대 병력의 맨 앞줄에 서 있었다. 또한 안부웅 61대대장도 시위대에는 총기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5·18조사위, 「안부웅 진술조사서」(2022.11.17.) 참조.

거렸다.



5. 2. 도청 앞 집단발포 이전에 촬영된 사진이다.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대부분 각색이거나 쇠파이프 등으로 확인되며, 종기를 휴대한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계엄군의 집단발포 이전에 시위대가 먼저 발포했다는 주장과 의혹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1-27〉 5월 21일 13:00경 도청 앞 발포 직전 시위대 모습(신아일보 이창성 기자 제공 사진)

뒤쪽에 있던 시위대 장갑차가 맨 앞줄로 나왔다. 긴장 수위가 높아지면서 계엄군 쪽 장갑차도 61대대장의 지시에 따라 장갑차에 시동을 걸고 병사들은 방독면을 착용했다.²⁰³ 시위대 속에서 계엄군을 향해 “광주에서 떠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한 남자가 YMCA 앞쪽에 있던 계엄군의 529호 장갑차를 향해 화염병을 던졌다. 이때 9전차대대 장갑차중대 소속으로 당시 금남로 62대대 쪽에 배치된 529호 장갑차의 기관총을 잡고 있었던 김○○은 위원회 조사에서 “13시 전후로 제가 캘리버 50 총구를 시민들에게 쏠 것처

203 계엄사, 『안부응 체험수기』(1985.5.31.), 1991.

럼 하자, 시민들이 저를 보고 ‘저놈 죽여라’라고 소리침과 동시에 정면에 있던 머리 긴 남자가 화염병을 장갑차로 던졌고 장갑차 위에 불이 붙었으며 (중략) 저는 불을 끄다가 후진하던 장갑차의 진동으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라고 진술했다.²⁰⁴ 장갑차중대 소대장으로 당시 금남로 61대대 쪽에 배치된 515호 장갑차의 기관총을 잡고 있었던 최○○은 “어느 순간 시위대에서 장갑차를 향해 화염병을 던졌고, 선임하사 장갑차에 불이 났으나 위험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 상병이 그 불을 끈 것으로 기억합니다. 화염병이 깨지면서 불이 붙자, 5미터 정도 뒤로 후진하였습니다”라고 진술했다.²⁰⁵ 아래 <그림 2-1-28>의 사진은 김○○ 상병과 최○○ 중위의 탑승 모습이다.

204 김○○의 장갑차는 도청에서 금남로를 바라보았을 때 좌측에 있었다. 참고인 김○○(2022.8.31), 진술조서 참조. 김○○의 장갑차는 원래 2소대 선임하사 차량인 522호였으나, 저수지 조종훈련 간 침수되어 출동 당시에는 529호로 변경되었다.

205 최○○의 장갑차는 원래 2소대 1호차인 521호였으나 당시 교육 때문에 분해되어 있어 출동 시에는 1소대 5호차인 515호에 탑승하였다. 참고인 최○○(2022.9.6), 진술조서 참조.



〈그림 2-1-28〉 5월 21일 금남로에 배치된 장갑차
 위 장갑차의 기관총 사수가 김○○ 상병이고, 아래 장갑차의 사수는 최○○ 중위이다.

장갑차 인근에 있던 공수부대원들도 당시의 상황을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다. 다음 〈표 2-1-8〉는 현장에 있던 공수부대원들의 장갑차에 대한 화염병 투척 관련 진술을 종합한 것이다.

〈표 2-1-8〉 시위대의 화염병 투척과 계엄군 장갑차 후진에 대한 진술

진술인	진술 내용
11공수여단 61대대 중위 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옆 양쪽에 APC가 있었는데, 시민군이 화염병을 APC를 향해 던졌고 (중략) 돌을 던지면서 밀고 오니까 우리 병력들이 뒤로 밀리기 시작하면서 APC도 뒤로 밀렸고 그 과정에서 우리 사병 2명이 치이게 되었습니다. • 「백○○ 진술조서」(2022.12.3.)
11공수여단 62대대 하사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염병을 장갑차에 던졌어요 시위대가. 그러니까 장갑차에 불이 딱 터졌어. 그러니까 장갑차가 멈칫하고 후퇴를 한거야. • 「김○○ 녹취록」(2022.9.13.)
11공수여단 62대대 하사 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일빌딩 부근까지 밀려난 후 잠시 소강상태에 있다가 시위대가 계엄군 장갑차에 화염병을 투척하고, 탈취한 APC와 차량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2차로 밀려났는데 (후략) • 「최○○ 진술요지서」(2022.9.26.)
11공수여단 63대대 중사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엄군 장갑차들을 포함한 대열이 천천히 후진하고 있었는데 시위대쪽에서 화염병이 날아와 장갑차가 후진하는 속도가 빨라졌고 (후략) • 「이○○ 진술조서」(2023.8.12.)
11공수여단 63대대 하사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쪽에 있던 시위대가 버스 및 장갑차 등과 함께 일시에 계엄군 쪽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동시에 계엄군 장갑차에 화염병을 던졌고 (후략) • 「김○○ 진술요지서」(2023.2.14.)
11공수여단 62대대 대위 김영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중 어떤 사람이 우리측의 장갑차를 향하여 화염병을 투척하였습니다. 그러자 불이 붙을 것을 두려워한 장갑차가 빨리 뒤로 후퇴하였는데 (후략) • 국방부 검찰부 「김영익 진술조서」(1995.5.4.)
11공수여단 63대대 7지역대장 안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력들이 철수를 하지 않는다며 흥분한 시위대가 화염병 투척을 하여 62대대쪽에 있던 장갑차에 불이 붙었고 이때 장갑차가 후진을 하는 순간 (후략) • 서울지검 「안보영 진술조서」(1995.6.4.)
11공수여단 62대대 4지역대장 최규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위대가 화염병 투척을 하여 62대대쪽에 있던 장갑차에 불이 붙자 장갑차가 후진을 하였으며 (후략) • 서울지검 「최규진 진술조서」(1995.5.31.)

장갑차 탑승자들과 주변에 있던 공수부대원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시위대가 당시 금남로에 배치되었던 계엄군 장갑차 2대 중 김○○ 상병이 탑승했던 529호차에 화염병을 투척하였고, 그로 인해 장갑차가 후퇴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²⁰⁶

계엄군 장갑차가 후진하자 시위대 쪽에서 시위대의 바퀴형 장갑차 및 차량이 계엄군 저지선을 향해 전진했고, 이에 대열이 와해되면서 계엄군은 무질서하게 분수대, 전남도청, 수협 도지부 건물 및 상무관 방면으로 철수하였다. 계엄군 장갑차 후진 과정에서 권용운 일병이 사망하고 다른 1~2명이 부상당하였는데, 이 순간 계엄군 측의 발포가 있었다. 다음 <표 2-1-9>는 현장에 있던 공수부대원들의 진술 중 이날 전남도청 앞에서 있었던 최초 발포 관련 내용을 종합한 것이다.

<표 2-1-9>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최초 발포 상황에 대한 진술

진술인	진술 내용
11공수여단 61대대장 중령 안부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갑차와 5톤 트럭이 경적을 울리면서 짹 서 있고 우리쪽으로 밀어서 그때 우리가 뒤로 밀렸습니다. 시위대에 등을 보이며 분수대까지 도망을 가서 대열이 무너지고 3개 대대가 분수대에서 한데 섞였고 그때 어디선가 총성이 났습니다. 어느 대대가 사격을 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용운이 사망한 것은 장갑차를 배속받은 대대장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계엄군의 장갑차에 압사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부웅 진술조서」(2022.11.17.)
11공수여단 61대대 중위 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APC도 뒤로 밀렸고 그 과정에서 우리 사병 2명이 치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장교들은 경비용 실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뒤로 밀리고 우리 병력들이 다치게 되니까 발포가 된 것 같습니다. 「백○○ 진술조서」(2022.12.3.)
11공수여단 61대대 하사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위대 장갑차가 돌진하였다가 분수대를 돌아 다시 금남로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쪽에서 총소리를 들었습니다. 「고○○ 진술조서」(2023.1.7.)
11공수여단 61대대 하사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버스가 먼저 들어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차량번호가 없는 새차로 기억합니다. (버스가 돌진할 때) 누가 쏜 지는 모르겠고 발포가 있었습니다. 여러명이 쏘았습니다. 「정○○ 진술조서」(2022.12.16.)

206 당시 계엄군 장갑차가 얼마나 급하게 후진하였는지는 “분수대 턱을 넘어왔다”(최△△ 진술조서) 및 “급하게 후진하면서 분수대에 뒷바퀴가 빠졌다”(한○○ 녹취록) 등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다.

진술인	진술 내용
11공수여단 61대대 중위 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00경 5분에서 10분 사이에 집중적으로 사격이 이루어졌고, 이후에 버스가 돌진하여 버스기사가 조준사격에 의해 사망하고, 최초 사격 이후 10분에서 20분 후에 화분대 뒤에서 조준사격을 한 후 약 1시간 정도 소강상태였습니다. • 「오○○ 진술조서(2회)」(2023.2.3.)
11공수여단 61대대 폭파병 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장갑차가) 후진하다가 63대대 병력을 치었습니다. (시위대 차량이) 부릉부릉해서 밀고 들어오니까 (중략) 일단은 다 후퇴를 했는데 총 한발이 땅! 소리가 난 다음에 전부 사격한 거예요. • 「손○○ 녹취록」(2022.7.15.)
11공수여단 61대대 대위 최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가 먼저, 그 다음에 군용트럭이 왔던 것 같습니다. 버스는 상무관 옆에 박혔고, 트럭은 돌진하였다가 유턴하여 금남로로 돌아갔습니다. (중략) 버스 앞 유리창에 구멍이 집중적으로 나 있는 것을 보았고, 당시에는 엄청나게 많이 쏘았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 「최이조 진술조서」(2023.7.13.)
11공수여단 62대대 하사 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엄군이 1차로 전일빌딩 부근까지 밀려난 후에 잠시 소강상태에 있다가 시위대가 계엄군 장갑차에 화염병을 투척하고, 탈취한 APC와 차량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2차로 밀려났는데 뒤로 밀려나는 계엄군 장갑차에 63대대 권용운 일병이 압사당하여 사망해 있는 것을 목격했다. • 계엄군은 분수대 주변 전봇대, 우체통 등에 은폐한 상태에서 일제히 위협 사격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 • 시위대 장갑차가 밀고 들어오면서 계엄군 한명을 치는 것은 직접 목격하였는데 그 계엄군은 죽지 않았던 것 같고,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서 핏덩어리 상태로 사망해 있는 권용운 일병은 나중에 목격하였는데 당시 도로 바닥이 피가 흥건해서 피비린내가 진동했음. • 「최○○ 진술요지서」(2023.3.30.)
11공수여단 62대대 하사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두가 무너졌고 (최루탄을) 있는 대로 다 터뜨렸고 후퇴하는 과정에서 계엄군 장갑차가 후진하는데 주변에서 “아, 사람 있다. 서라!”며 소리지르는 것을 들었음. • 「김○○ 녹취록」(2022.9.13.)
11공수여단 63대대 대위 김진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위대 장갑차가 치고 들어오면서 우리 대대 9지역대인이 병사를 치고 나갔고 분수대 앞에서 오른쪽으로 돌아나갔습니다. 그 병사 이름이 권용운으로 알고 있고, 현장에서 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버스가 다시 밀고 들어왔고 그때 저격수가 총을 드르륵 쏜 것입니다. (중략) 시위대가 총소리를 듣고서는 싹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 총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 「김진규 진술조서」(2022.9.22.)

진술인	진술 내용
11공수여단 63대대 작전병 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00경 버스와 트럭이 동시에 밀고 들어왔고, 계엄군 장갑차가 후진하면서 권용운 일병이 사망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 버스와 트럭이 돌진하고, 계엄군 장갑차가 후진하면서 권용운 일병이 사망하는 순간과 거의 동시에 발포가 있었는데, 버스 1대는 분수대 쪽으로 돌진하였고 그 버스를 향해 집중적인 발포를 하였습니다. • 「임○○ 진술조서」(2022.11.16.)
11공수여단 63대대 중사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가 목격한 최초 발포는 계엄군 장갑차가 권 일병을 압사하고 가는데 그쪽으로 우리 대원들 몇 명이 사격을 한 것입니다. 당시 계엄군들은 분수대 앞에서 사격을 하고 있었고 (후략) • 금남로가 열려 순간적으로 소강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버스가 들어오길래 제가 버스 운전석을 향해 사격을 한 것입니다. 당시 병력 중 일부는 하늘을 향해 공포를 쏘기도 했지만 일부는 조준사격을 하였습니다. • 「이○○ 진술조서」(2023.8.12.)
11공수여단 63대대 하사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위대가 버스 및 장갑차 등과 함께 일시에 계엄군 쪽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동시에 계엄군 장갑차에 화염병을 던졌고 (후략) • 권 일병이 APC에 깔려 죽은 것을 안 부대원 누군가가 시위대뿐만 아니라 시위대의 버스 및 장갑차가 모두 한꺼번에 밀고 들어오는 것에 위협을 느끼고 먼저 사격을 하자 주변에 있던 동료들도 연달아 사격을 하게 되었으며, 사격을 하자 시위대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계엄군들도 모두 흩어져 은폐 및 엄폐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달려오는 시위대 버스를 향해서 누군가가 조준사격을 하여 버스 기사가 죽고, 버스 기사가 죽어 통제가 되지 않던 버스가 건물을 들이받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 「김○○ 진술요지서」(2023.2.14.)
11공수여단 63대대 통신병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위대 차량이 돌진해오면서 (중략) 계엄군 장갑차가 퇴각하면서 권용운 몸통 중앙을 압사하고 지나가니까 (중략) 기계화학교에서 배속된 장갑차 2대가 분수대 앞쪽에 있었는데 시위대 방향으로 LMG 50(캘리버 50)으로 단발로 위협사격을 했습니다. • 「이○○ 진술요지서」(2022.10.20.)
11공수여단 63대대 중사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엄군 장갑차 2대가 분수대 쪽으로 후진을 하였고(중략) 후진하는 장갑차에 계엄군 2명이 깔려 죽었는데 대원들이 그것을 보고 이성을 잃었습니다. 아군 장갑차라는 것을 알았는데도 그랬습니다. • 저는 이미 실탄 20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버스가 들어오고 장갑차에 두명이 깔려 죽자마자 바로 응사를 하였습니다. • 「정○○ 진술조서」(2023.8.18.)
11공수여단 62대대장 중령 이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 1대가 전속력으로 질주하여 도청 분수대 한 바퀴를 돌아 서석동 쪽으로 빠져나간다. 정신을 가다듬고 주위를 돌아보니 병력들은 마치 옛전에서 횡대 무릎짜 자세로 적을 공격하는 듯, 한 자세로 일제히 분수대 앞에 포진하여 응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이제원 체험수기(1981. 4. 작성 추정)」

대인조사 과정에서 당시 현장에 있던 인원들은 각자 위치에 따라 목격할 수 있었던 내용이 다르고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대인조사를 통해 확보한 계엄군들의 진술을 과거 검찰수사 내용과 시민들의 진술 및 구술기록을 통해 교차 검증하였다. 다음 <표 2-1-10>은 1995년 검찰수사 당시 계엄군들의 진술 내용이다.

<표 2-1-10>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최초 발포 상황에 대한 계엄군 진술

진술인	진술 내용
11공수여단 63대대 8지역대장 성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느 순간 갑자기 장갑차가 앞으로 튀어나와 전병력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일시에 뒤쪽으로 뛰면서 피하였는데, 맨 앞줄에 있던 병력은 피하였으나 그보다 두어 줄 뒤쪽에 있던 사병 몇 명이 장갑차에 반혀 쓰러졌습니다. • 가까이 가보니 63대대 9지역대 병력 1명이 얼굴이 납작해진채 죽어 있었고 부상자도 있었습니다. • 그때 달려온 장갑차는 금방 빠져 나가지 못하고 분수대를 빙빙 돌았으며, 이에 대해 저희 병력들이 사격을 하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고 장갑차는 그대로 돌아서 도청 옆쪽으로 나갔습니다. • 국방부 검찰부 「성기준 진술조서」(1995.4.10.)
11공수여단 63대대 7지역대장 안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력들이 철수를 하지 않는다며 흥분한 시위대가 화염병 투척을 하여 62대대쪽에 있던 장갑차에 불이 붙었고 이때 장갑차가 후진을 하는 순간 어디선가 총성이 한방이 울렸는데 (후략) • 서울지검 「안보영 진술조서」(1995.6.4.)
11공수여단 62대대 대위 김영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시위대의 장갑차가 달려들면서 화염병을 던질 때 저희측의 장갑차에서 캐리버50기관총을 연발이 아닌 단발로 1발을 공포로 발사하였습니다. • 불이 붙을 것을 두려워한 장갑차가 빨리 뒤로 후퇴하였는데 그때 장갑차 뒤에서 휴식을 취하던 병사 2명이 우리측 장갑차에 깔렸습니다. • 장갑차가 들어온 다음 저희 병력들은 정신없이 뒤로 돌아 도청 쪽으로 뛰어갔으며, 시위대가 저희들의 뒤를 따라 달려드는데 그때 총소리가 나더니 저희 머리위로 총알이 날아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 다시 금남로쪽을 보았었는데 관광호텔 부근의 도로에 총을 맞아서인지 쓰러져 있는 사람이 10여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변 골목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골목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 국방부 검찰부 「김영익 진술조서」(1995.5.4.)

진술인	진술 내용
11공수여단 61대대 1지역대장 정태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화염병투척을 하며 갑자기 장갑차가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전병력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일시에 뒤쪽으로 뛰면서 피하였는데 (후략) • 나중에 장갑차에 깔린 대원을 보았는데 62대대 병력 1명이 얼굴이 납작해진 채 죽어있었고 부상자도 있었습니다. • 장갑차의 돌진을 피하기 위해서 뛰다가 넘어져 있는데 옆을 보니 버스가 달려오다가 충을 맞아 펑크가 나면서 분수대에 가서 부딪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1공수여단 63대대 본부중대장 오문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3대대 후미에 본부중대원들과 같이 있는데 전방 쪽에서부터 병사들이 우르루 몰려와서 영문도 모르고 따라서 도청 안으로 담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그때쯤 총성이 났습니다. • 총성이 한두발은 아닙니다만 총성이 나는 시간이 5분 정도 지속이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 서울지검 「오문태 진술조서」(1995. 5. 29.)
11공수여단 62대대 4지역대장 최규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병이 장갑차에 죽은 것을 목격하고 다시 분수대 뒤쪽으로 집결을 하기 위해 가고 있는데 분수대 뒤에 먼저 와 있던 군인쪽에서 시위대를 향하여 사격을 하는 소리가 여러번 들렸으며 • 하사관 1명이 사격자세를 취하고 실탄을 장전하고 있어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냐고 소리치자 장갑차에 깔려 죽어있는 병사를 가리키며 ‘지역대장님 눈에는 저 시체가 보이지 않느냐’고 대들어 제가 실탄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 서울지검 「최규진 진술조서」(1995. 5. 31.)
11공수여단 62대대 본부중대장 이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위대가 화염병 투척을 하여 62대대쪽에 있던 장갑차에 불이 붙자 장갑차가 후진을 하였으며 병력들도 도청 분수대 쪽으로 후퇴를 하였습니다. 그 직후 트럭인지 버스인지 차가 먼저 들어오고 장갑차가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 제가 목격한 첫 사격은 장갑차가 빠져나간 후 시위대의 앞쪽에 있던 몇 명이 도청 쪽으로 접근을 하자 35대대 병력이 있는 쪽에서 단발로 사격을 하였는데 (후략) • 서울지검 「이인권 진술조서」(1995. 5. 26.)
31사단 96연대 1대대 CBS 경계소대장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위대쪽에서 갑자기 버스가 달려 나오자 앞에 있던 병력들은 좌우로 갈라지며 피하였고, 도청 정문 앞에 있던 병력 중 일부가 버스에 대하여 사격을 하였습니다(중략). 처음에 사격한 것은 도청 앞에 있던 병력이었습니다. • 버스가 들어온 다음 약간의 간격을 두고 장갑차도 분수대 쪽으로 달려와서는 분수대를 돌아나갔습니다. • 버스 등 차량이 달려오자 대형을 갖추었던 공수부대원들이 길 양쪽으로 갈라져 이를 피하였으며, 총소리가 나자 시위대들이 뒤로 밀려나갔는데 (중략)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다시 모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 국방부 검찰부 「이○○ 진술조서」(1995. 5. 11.)

지금까지 나열한 계엄군의 진술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위대의 화염병 투척으로 62대대 쪽에 위치해 있던 기갑학교 9전차대대 소속 529호 장갑차가 후진하였고, 이어 시위대 쪽에서 차량이 전진하자 계엄군은 대열이 와해되어 무질서하게 후퇴하였다는 사실이다. 계엄군 장갑차의 후진 과정에서 권용운 일병이 장갑차에 압사당하고 또 다른 병력 1~2명이 나뒹구는 모습을 목격한 계엄군 중 실탄을 가지고 있던 인원들과 계엄군 장갑차에서 시위대의 장갑차 및 버스 등 차량과 사람을 향해 발포를 했다는 것이다. 다음은 이때의 발포와 관련한 계엄군들의 진술이다. 다음 <표 2-1-11>은 1980년 5월 21일 13:00경 전남도청 앞 발포와 관련한 시민들 및 전투경찰의 증언이다.

<표 2-1-11>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최초 발포 상황에 대한 시민 진술

진술인	진술 내용
영일식품 직원 조○○ (시위대 장갑차 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바로 앞이었습니다. 불과 약 7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였습니다. 계엄군 장갑차가 4~5미터 후진을 했고, 장갑차 궤도에 군인이 깔렸는데 장갑차의 궤도가 북부 쪽을 지나갔으며, 지나가는 순간 상반신이 반사적으로 일으켜졌습니다. • 버스와 트럭이 돌진을 시작해서 상무관으로 해서 노동청 방향으로 나갔고, 저도 그쪽을 따라 갈려고 하다가 도청 안에서 군인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 분수대를 돌아 전남대의대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 계엄군들은 제가 분수대 쪽으로 돌 때 분수대 앞쪽에서 앉아있던 자세인지는 모르겠으나 앞쪽에 있는 군인들이 일렬로 한꺼번에 앉는 순간 총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 「조○○ 진술조서」(2023.7.19.)
전남대 학생과장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시경 장갑차와 버스가 지나간 뒤에 총성이 울림과 동시에 3~4명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 내가 있을 때도 시민 몇 사람이 장갑차를 타고 도청 쪽으로 갔다. 그들은 대형 태극기를 들고 있었다. 그러나 곧 총에 맞아 그중 한사람이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것을 보고는 (후략) •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 「서○○ 증언 (증언번호 1002)」, 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진술인	진술 내용
제약회사 직원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갑차 한 대가 금남로 5가 쪽에서 도청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공수부대들은 장갑차가 관광호텔 앞에 이르자 집중사격을 퍼부었다. 순간 천지가 흔들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장갑차 안의 학생이 고꾸라진 것을 보고 도망을 갔다. • 그 많은 사람들이 물결 가르듯 흩어졌다. 계속해서 총소리가 들렸다. •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 「서○○ 증언 (증언번호 1023)」, 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대학생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호텔 조금 위쪽에 있었는데 그곳에 있던 시민들이 “도청으로 밀고 가자”고 소리치면서 한발짝씩 앞으로 나아가자 계엄군이 공포탄을 쏘기 시작했다. • 총소리에 일시 흩어졌던 시민들은 잠시 후 다시 몰려들었고 그중 7~8명이 군용 트럭에 타고 도청을 향해 서서히 나아가자 계엄군들은 조준사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 「유○○ 증언 (증언번호 1035)」, 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YWCA 실험 근무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시 20분경 시위대 차량에 탄 사람들이 군 저지선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다. 분수대를 우로 돌아서 계엄군을 향해 전진하자 군인들은 노동청 쪽으로 밀렸고 시민들은 “와”하는 함성을 질렀다. • 불과 30여초도 되지 않아 ‘타당탕탕’ 총소리와 함께 처절한 비명소리로 도청 광장은 아비규환의 생지옥이 되었다. 그 많은 사람들은 모조리 골목 골목으로 숨어 들어갔고 미처 도망가지 못한 10여 명이 조준사격을 받아 쓰러지고 있었다. •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 「김○○ 증언 (증언번호 1039)」, 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전투경찰 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중들 뒤쪽에서 더 밀고 들어가자고 했는지 차량들이 다시 앞으로 돌진해 움과 동시에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중략) 그와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총성이 울렸다. • 공포를 쏘고 난 다음 장갑차 한 대가 노동청을 향해 서 있었는데 (중략) 장갑차 안에서 탄창이 꼽혀진 띠를 공수들에게 던져주고 또 탄박스를 내려주는 것을 훤히 볼 수 있었다. •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 「곽○○ 증언 (증언번호 3103)」, 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이날 계엄군의 최초 발포는 13:00경 집중 사격이 있던 후 약 30분 정도에 걸쳐 산발적으로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의 집중 사격은 “연속 총성(계엄군 공포난사)”,²⁰⁷

207 전남경찰국(1980), 「집단사태 발생 및 조치 상황」 (국가기록원 CA0290213), 237쪽.

“일제사격(공포)”,²⁰⁸ “수천 발도 더 될 것 같은 총성”²⁰⁹ 등으로 표현된다. 이는 61대대 작전장교 최△△의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은 “13시경 집중 사격이 1분에서 2분 정도 있었고 나중에는 간헐적으로 조준 사격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²¹⁰ 화염병 투척에 이은 계엄군 장갑차 후진과 시위대 차량 돌진, 권용운 일병 압사 및 계엄군 저지선 붕괴 등의 상황에서 당시 발포의 순서를 정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당사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령 대대장”의 지시로 최○○ 중위가 515호 장갑차에서 칼리버 50 기관총을 하늘로 발포하였고, 이어 공수부대원들이 APC를 향해 사격한 다음²¹¹ 돌진해 들어온 시위대 버스를 향하여 집중 사격을 하였다.²¹² 그러자 총소리에 놀란 시위대가 대피하여 금남로는 순간 인적이 없이 텅 빈 상태가 되었고, 잠시 후 시위대 중 일부가 금남로를 향해 뛰어 나오자 이들에 대한 조준 사격이 있었다. 금남로에 쓰러진 시위대를 주변에서 끌어내고 또 다른 시위대가 등장하자 이들에 대해 재차 사격을 가했다.²¹³

계엄군 장교들은 총성이 들리자 뛰어다니며 사격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인 사격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계엄군 부사관 및 병사들의 진술과 발포 상황에 대한 경찰과 기자들의 기록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사격은 최초 발포 이후 약 30분간 간헐적으로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계엄군들도 일정 시간 동안 별다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발포하였다고 진술했다. 63대대 ○지역대 정보 하사관 정○○은 위원회 조사에서 “최초 30분 동안은 상부에서 어떠한 지침도 없이 그냥

208 김영택(1980), 『취재수첩(하늘색)』, 34쪽.

209 전남대학교병원(2017), 『5·18 10일간의 야전병원』, 58쪽.

210 5·18조사위, 「참고인 최△△ 진술조서」(2023.7.13.).

211 계엄군 APC인지, 또는 시위대 APC인지에 대한 진술이 혼재하므로 확정하지 않는다.

212 안부웅·정○○·오○○·최○○·김○○·임○○ 등 진술조서 참조.

213 김영택 취재수첩, 오○○·임○○·정○○ 진술조서 및 이○○ 녹취록 참조. 이때 계엄군들의 사격 자세는 최초 서서싸가 많았고 이후에는 무릎싸와 앉아싸가 많았다고 한다.

사격을 했습니다. (중략) 뒤에서 누군가가 집합하라고 하기 전까지는 사격 중지 통제가 없었고 보이는 대로 사살하였습니다”라고 진술했고,²¹⁴ 63대대 작전병 임○○는 “첫 발포가 있는 후 약 30분 정도 발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사격 개시를 했는지, 하여튼 사격 중지는 거의 처음에는 통제가 안 됐어요”라고 진술했다.²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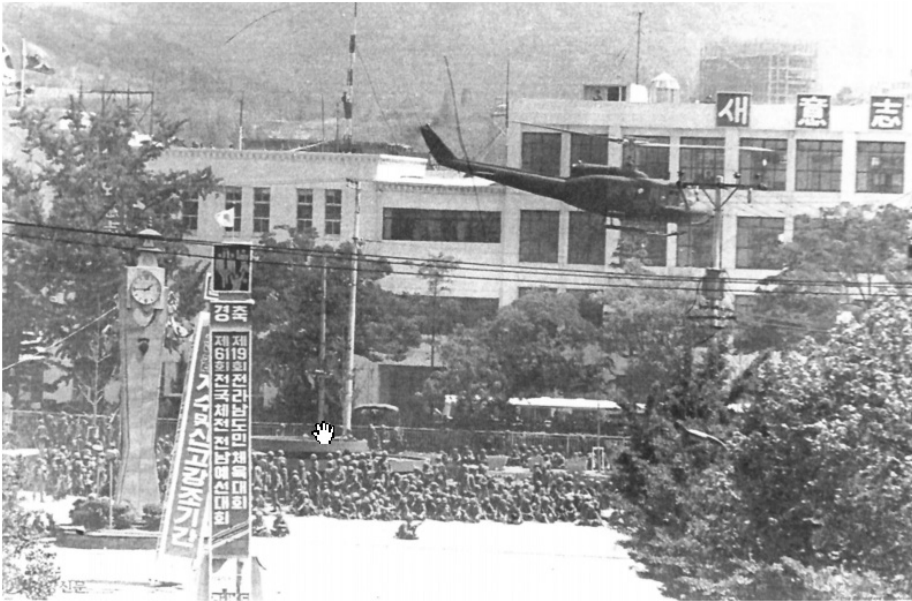
〈표 2-1-10〉에서 기술한 계엄군 진술에서 볼 수 있듯이, 최초 발포는 12:54~13:32 이어지며 잠시 소강상태를 맞았다가 이후 14:16에 재개된다. 이와 관련, 61대대 ○○지대장 오○○은 “최초 사격 이후 10분에서 20분 후에 화분대 뒤에서 간헐적으로 조준사격을 한 이후 약 1시간 정도 소강상태였습니다”라고 진술했다.²¹⁶

최초 발포가 시작된 지 약 30분이 경과하자 금남로에는 잠시 정적이 감돌았다. 이때 분수대 주위에는 제11공수여단 병력이 사주 경계하는 경계병만 배치한 채 휴식을 취했다. 도청 앞 시계탑의 시곗바늘이 정확히 13:45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상공에는 UH-1H가 낮게 떠 있었다. 만약 이 시각 무장한 시위대가 주위에 있었다면 이런 모습으로 군인들이 분수대 주위에 모여 앉아 휴식을 취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5·18조사위는 〈그림 2-1-29〉의 사진에서 아무리 빨라도 13:45분 이전까지는 시위대가 무장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확인했다.

214 5·18조사위, 「정○○ 진술조서」(2023.8.18).

215 5·18조사위, 「임○○ 진술요지서」(2023.1.6).

216 5·18조사위, 「참고인 오○○ 진술조서(2회)」(2023.2.3).



〈그림 2-1-29〉 도청 앞 분수대 주위에서 휴식을 취하는 병사들 모습 (당시 시각 13:45)

최초 발포 이후 도청 앞 계엄군들에게 추가로 실탄이 지급됐다. 이때 일부 실탄은 전교사에서 헬기로 분수대까지 수송됐다. 61대대 ○지역대 폭파하사관 김○○은 “장갑차의 캘리버 50 사격이 있고 난 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중략) 이후 시위진압 배치 후 처음으로 실탄 10발씩을 지급받았다”라고 진술했다.²¹⁷ 61대대 2지역대 지대장이었던 오○○은“(권용운 사망 후) 상무관 옆 트럭에서 실탄을 분배하는 것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장교들 이외의 병력들도 사격을 했기 때문에 실탄을 분배하였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했다.²¹⁸ 63대대 8지역대 화기하사관 이○○은“사격을 중지하고 보니 트럭 한 대가 분수대 좌측 후면에 와서 실탄 귀짝을 뜯어서 나눠주고 부대원들이 줄서서 받고 있었다”라고 진술했다.²¹⁹

217 5·18조사위, 「김○○ 진술요지서」(2022.12.14).

218 5·18조사위, 「오○○ 진술조서 (2회)」(2023.02.03).

219 5·18조사위, 「이○○ 진술조서」(2023.08.12).

제31사단 방송국 경계 병력이 보유하고 있던 경계용 실탄 역시 이때 공수부대로부터 분배된 것으로 보인다. 제31사단 96연대 소속으로 MBC 경계 소대장이었던 한○○은 검찰 조사에서 “발포가 있고 난 다음 철수하기 직전 제7공수여단 35대대 군수장교 남○○ 대위로부터 실탄을 넘겨 달라는 요청을 받고 상부의 승인 없이 실탄 3통 약 200발을 넘겨주었다”라고 진술했다.²²⁰ CBS방송국 경계 소대장이었던 이○○은 “도청 분수대 앞으로 버스가 달려왔다가 나가며 일부 병력이 발포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중략) 공수부대 대대장이 다시 실탄을 달라고 하였으며 그 후 공수부대의 하사관으로 보이는 병사가 와서는 실탄을 지키고 있던 저희 병사로 하여금 탄통을 열게 한 다음 실탄을 집어 갔다”라고 진술했다.²²¹

13:45분 이후 실탄이 추가로 지급되면서 전남도청 앞의 계엄군은 주변의 높은 건물에 저격수를 포함한 일부 병력을 보냈으며 전남도청 앞 광장에 차량 및 화분대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였다. 5·18조사위 조사 결과, 저격수 등 병력을 배치한 장소는 전남도청 옥상, 상무관 옥상, 수협 옥상, 수협 인근 병원 옥상, 그리고 전일빌딩 옥상 등이다. 병사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각 대대별 책임 구역 인근의 건물에 병력을 올려보낸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도청 옥상에 올라가서 시위대를 향해 저격했던 남○○(상병, 7공수여단 35대대 11지역대 5중대 3지대 화기병)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도청으로 피신한 뒤 1시간 정도 지난 뒤 저격병을 불러 모았고 실탄을 나눠주며 옥상으로 올라가도록 하였습니다. (중략) 10명 정도가 올라갔는데, 금남로를 보니 11여단 대원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전방에서 대열을 서고 막고 있어야 할 여단 장병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중략) 시민들이 탑승한 버스들이 순차적으로 도청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버스 위에 올라서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옥상에 올라간 저격병들은 100미터 정도의 거리에서

220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한○○ 진술조서』(1995.5.26), 『5·18사건 수사기록』 21권, 29621~29622쪽.

221 국방부 검찰부, 『이○○ 진술조서』(1995.5.11), 『5·18사건 수사기록』 24권, 31795~31796쪽.

는 90 퍼센트 이상의 명중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중략) 그곳에서 제가 목격한 저격에 의해 쓰러진 사람들만 해도 2~3명 정도입니다. (중략) 태극기를 흔들었던 사람 역시 '탕' 하는 총소리와 함께 쓰러지는 것을 보았고, 운전자를 향해서도 쏘았을 것이구요. 운전석을 향해서 쏘니까 버스가 정차하고 그 뒤로 또 다른 버스가 오고 그랬습니다. (중략) 그 저격조가 활동한 시간이 1~2시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²²²

〈그림 2-1-30〉의 사진은 5월 21일 14:00~15:00경 장갑차 위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도청으로 향하던 시위대 김준동(17세, 목공)이 금남로 3가 가톨릭센터 맞은편에서 도청 근처 계엄군 저격수가 쏜 총에 맞아 쓰러진 모습이다. 5·18조사위는 적십자병원 영안실에 안치된 김준동 시신의 복장과 신발, 양말 등을 대조하는 사진 분석을 통해 김준동의 신분을 확인했다.



〈그림 2-1-30〉 장갑차 위에 탑승한 김준동이 계엄군 총격에 의해 사망한 장면

222 5·18조사위, 「남○○ 진술조서」(2023.08.09.).

14:16경 이후 금남로와 노동청 등 전남도청 주변으로 접근하는 시위대나 차량에 대해 간헐적인 조준사격 또는 위협 사격의 형태로 계엄군이 광주 시내에서 철수할 때까지 발포가 이어졌다. 이러한 사실은 동아일보 김영택 기자의 취재 수첩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16 공수대 도청 옥상 수협 전일빌딩 옥상에 배치, 지나가는 사람에 무조건 발사”, “14:35 간헐적인 공포 또는 직사 발사”, “14:55 공수단 2명이 도청 남관(별관) 옥상으로 올라갔다. 학동, 충장로 입구 쪽에 발포할 듯. 수협 옥상에도 4명 올라가 있음”²²³

15:00 이후 무장한 시위대가 충장로 등에서 도청을 향해 한 두 명씩 접근하는 모습이 눈에 띄기 시작하면서 13:30 이후 한동안 멈췄던 계엄군의 사격이 다시 시작됐다. 이때부터 사격은 도청과 가까운 금남로 1~3가 부근이 아닌, 주로 충장로 방향의 골목이나, 구 시청 일대, 금남로 4~5가 등 도청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겨냥하여 계엄군의 조준사격이 집중됐다. 총을 든 무장 시위대는 건물에 몸을 감췄기 때문에 그다지 희생이 크지 않았지만 이런 정황을 모른 일반 시민들의 경우 주위 상황을 살피려 건물에서 고개를 내밀다가 총격을 당한 피해 사례가 늘었다.

5·18조사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5월 21일 발생한 총상자는 모두 175명이다.²²⁴ 이는 전남도청과 전남대 부근뿐만 아니라 송암동과 광주교도소 등 외곽봉쇄 차단 지역까지 포함해 21일 발생한 총상자 숫자다. 전남대병원 「진료기록부」는 환자들의 응급실 도착 시각이 정확하게 기록돼 있다. 이 자료를 통해 13:00 이후부터 총상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²²⁵ 5·18조사위가 입수하여 분석한 전남대학교병원 「응급환자기록지」에는 도청 앞 집단발포 시 총상환자 발생 현황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²²⁶

223 김영택(1980), 앞의 글, 70~71쪽.

224 5·18조사위, 직가-8 「민간인 상해 조사결과보고서」, 5월 21일 총상자 사례 조사 결과.

225 전남대병원, 1996 「진료기록부」 『5·18 의료 활동』, 136쪽.

226 216명의 전남대병원 진료기록부를 참조(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5·18사건 수사기록』 제31권(1996).

■ 피격 시각이 추정된 총상(55건)의 시간대별 분포

날 짜	5월 19일	5월 21일 (33건)										5월 22일	5월 23일	5월 25일
		새벽 0시	새벽 1시	낮 12시	오후 1시	오후 2시	오후 3시	오후 4시	오후 5시	오후 6시	오후 8시			
총 55건	1	1	3	1	9	7	3	3	1	2	3	10	10	1

〈그림 2-1-31〉 전남대학교병원 진료기록부 분석

5·18조사위는 1980년 5월 18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전남대병원에 입원한 환자 총 216명의 개인별 「입퇴원기록지」 618쪽을 분석했다. 이 중 5·18 관련 총상환자는 사망자를 포함해 모두 89명이었다. 5월 21일 13:00 도청 앞 집단발포 이후 전남대병원 입원 총상자는 36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전남대병원에 도착한 총상자 가운데 10명이 사망했는데 병원 도착 이전에 사망한 사람은 4명이고, 도착 이후 사망자가 6명이다. 집단발포가 시작된 최초 1시간 30분 사이에 20명(입원자의 55%)의 총상자가 응급실에 도착하여 이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총상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했다. 그런데 14:30~15:00까지는 환자가 끊겼다가 15:00 이후 다시 이어지고 있다. 금남로를 향해 저격병의 사격이 지속되자 시위대가 금남로 쪽으로 더이상 접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13시부터 14시 30분까지 이 시각 총상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주로 도청과 가까운 수협, 노동청, 전일빌딩, 금남로1가 등에 집중된다. 그런데 15:00 이후부터 발생한 총상 피해는 도청에서 상당히 떨어진 구시청사거리, 충장로(무등극장, 무등맨션), 전대병원 사거리, 금남로5가 등 주위 골목이나 멀리 떨어진 금남로5가 지역 등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5·18조사위는 피해 발생이 15:00 이후 도청 주변 지역으로 확산된 것은 나주, 화순 등에서 반입된 총기로 무장한 시위대가 충장로, 금남로 일대에 출현한 시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5월 21일 총상자들의 총상 부위는 33명(91.6%)이 복부, 두부 안면부, 팔 등 신체의 상부에 집

.....
38006~38618쪽.

중됐고, 대퇴부, 둔부, 하복부 등은 3명에 불과하다. 이는 집단발포 당시 군의 사격이 폭동진압 교범이나 예규를 위반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전남대병원 도착 시각 기준 도청 앞 첫 총상환자는 13:00로 기재된 김종학이다.²²⁷ 13:15에는 최승희(5월 22일 03:50 사망)가 도착했다. 뒤이어 3번째로 도착한 문연주(1953년생, 남, 회사원)는 노동청 부근에서 도청 쪽을 향해 구경하다 갑자기 총성이 울리자 뒤로 피하는 순간 총탄에 맞아 쓰러졌다.²²⁸ 전남대병원에는 13:55까지 5~15분 간격으로 7명의 총상자가 응급실에 도착했다. 13:00시부터 30여 분간 사격 통제가 없는 상태에서 지속된 총상 피해자들이다. 물론 이때 전남대병원이 아닌 적십자병원이나 기독교병원으로 옮겨진 환자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남대병원을 제외한 다른 병원의 기록에는 총상환자의 응급실 도착 시각이 기록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당시 시각과 상황을 더이상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전남대병원 「응급환자기록지」에 기재된 환자들은 피격을 당하여 발생한 상처 부위가 대부분 신체의 상체였다. 이는 당시 군의 사격이 치명적인 살상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격을 해야 할 경우 하복부를 지향 사격하라는 사격 지침도 무시한 채 진행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227 5·18조사위, 「김○○ 진술 녹취록」(2022.1.26.) 참조. 김○○은 13:00 직전 광성여객 버스 조수석에 탑승한 채 금남로 5가에서부터 도청 방향으로 접근하다 분수대 부근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총성이 울리면서 팔에 총상을 입어 피를 흘린 채 버스에서 뛰어내렸다고 한다.

228 5·18조사위, 「문○○ 진술 녹취록」(2022.2.17.).

전남대병원 총상 응급환자기록지 (1980.5.21입원현황)							
번호	이름	성별	나이	입원날짜 (입원기록)	도착시각 (응급기록)	부상장소	부상
1	김종학		22	0521 1300	0521 1300	수협	총상(우측팔)
2	최승희		21	0521 1800	0521 1315		총상(간장파열)(사망 5.22 03:50)
3	문연주		23	0521 1330	0521 1330	노동청	총상(좌흉부관통,혈흉기흉)
4	박명환		19	0521 2120	0521 1340	도청앞	총상(우요골,개방성골절)
5	김복진		25	0521 1340	0521 1340	가톨릭센터	총상(복부관통,대장파열)
6	진정태		27	0521 1350	0521 1350	대의동(옥상)	총상(좌흉부관통)(사망,DOA)
7	민청진		20	0522 1813	0521 1355	도청앞	총상(두부관통, 좌뇌맹관)
8	조준복		19	0527 1800	0521 1400	도청앞	총상(우흉부관통)
9	하영우		22	0522 1200	0521 1400	노동청	총상(우상박골)
10	박찬욱1		26	0522 0230	0521 1400	전일빌딩	총상(좌대퇴부,허벅지)
11	최은홍		17	0521 1800	0521 1400		총상(복부,다발성,좌전박부요골)
12	강대일		31	0521 1400	0521 1400	도청앞	총상(복부,비장파열,좌기혈흉)
13	신원미상	남		0521 1400	0521 1400		총상(사망,DOA)
14	김광석		26	0521 1410	0521 1410	금남로1가	총상(혈기흉)(도착후사망5.21 16:55)
15	박종기		16	0523 1400	0521 1415	도청앞	총상(복부관통)
16	김중열		57	0521 2000	0521 1415		총상(안면관통,좌하악골골절)
17	이춘기		28	0523 0440	0521 1420	도청앞	총상(좌흉부관통)
18	김광우		29	0522 2200	0521 1425		총상(우척골간부골절,우전박관통상)
19	신명식		30	0521 1730	0521 1425	금남로2가	총상(흉부관통,우혈기흉)
20	장하일		38	0521 1430	0521 1430	도청앞	총상(복부관통)(도착후사망5.23)
21	황인식		17	0609 1710	0521 1500	구시청	총상(좌상박및결갑부)
22	신원미상	남		0521 1500	0521 1500		총상(사망,DOA)
23	윤행근		23	0521 1530	0521 1530		총상(좌상복부)(사망5.21 18:00)
24	박상철		13	0521 1600	0521 1600		총상(복부관통)
25	이순진		20	0521 1930	0521 1600	금남로5가	총상(복부관통상)
26	변학연		19	0522 2215	0521 1604		총상(개방성 우팔척골,요골골절)
27	김광호		21	0522 2330	0521 1645	무등맨션	총상(복부관통,소장 방광 파열)
28	윤성호		28	0522 0500	0521 1700	무등극장	총상(뇌경막하출혈)(도착후사망5.28)
29	오세봉		20	0527 1735	0521 1705	전대병원사거리	총상(흉부관통상,총탄파편제거)
30	나홍수		33	0521 1715	0521 1715		총상(흉부관통)(사망,DOA)
31	임채명	여	9	0521 2100	0521 1755	서석동(옥상)	총상(우팔주관절분쇄골절)
32	정순석		46	0521 1830	0521 1805		총상(대퇴부관통상)
33	윤석준		16	0521 2000	0521 1940	충장로1가	총상(둔부관통)
34	장영섭		40	0523 1400	0521 20??	도청앞	총상(우옆구리)
35	이동근		31	0522 0140	0521 20??	가톨릭센터	총상(방광,회장,직장파열)
36	박성용		27	0521 2230	0521 20??	전남대정문	총상(하복부관통)

〈그림 2-1-32〉 전남대병원 총상 응급환자기록지(1980. 5. 21. 입원 현황)

[10:00~15:00] 제3공수여단의 전남대 인근 발포 및 철수

10:00경부터 전남대 앞에도 금남로와 마찬가지로 시위대가 몰렸고, 제3공수여단은 13

대대 중대장들에게 실탄을 지급했다. 5·18조사위는 13대대 소속 병사와 장교들을 면담 조사한 결과, 11:00경 시위대 차량이 전남대 정문을 돌파했는데, 이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발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때 진압작전에 투입된 13대대에서 시위대를 향해 사격을 했고, 최소 1명 이상의 총상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남대 정문 앞에서 발생하였으며, 여기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전남대 이학부 뒤편 야산에 암매장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5·18조사위는 암매장된 시신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조사²²⁹를 한 결과 사망자가 ‘이성귀(남, 16세, 광주상고 2년)’이고, 피격 장소는 전남대 정문 부근, 사망 시각은 5월 21일 11:00~11:30경이었다. 위원회는 제3공수여단 13대대가 비무장 시위대를 정조준하여 사격한 시각이 이날 08:00 전교사 지역에 내려진 ‘진도개 하나’ 발령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비록 시위대가 장갑차 등을 앞세워 주둔지인 전남대로 진입하려고 시도했을지라도 상부의 명령 없이 사격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 「사체검안서」에 따르면 이성귀의 사망 원인은 전두부에 사입구, 후두부에 사출구가 존재하는 ‘두개골 관통 총상’에 따른 뇌실질 손상이다.²³⁰ 당시 진압작전에 참가한 병사 이○○의 진술에 따르면 저격수의 조준사격에 의한 피격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1995년 검찰수사 결과는 전남대 앞 상황을 “전남대에는 5월 21일 이른 시각부터 시위대가 트럭, 버스, 소방차 장갑차 등을 몰고 와 10:00경 정문에는 4만여 명, 후문에는 1만여 명의 시위대가 3공수여단 병력과 대치하여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으며 (중략) 13대대 중대장 이상 장교들에게 위급한 상황에서 지휘체통의 명령에 따라서만 사용하라는 지시와 함께 각 경계용 실탄 탄창(30발) 3개씩이 지급되었음”이라고 기재하였다.²³¹

229 5·18조사위는 광주지방검찰청 검시조서, 시체검안서와 검안의사의 증언, 검시에 참여한 군 검찰이 개인적으로 기록한 「육군수첩」 메모, 미공개자료 조선일보 취재일지 등 관련 자료 조사와 더불어 암매장지역을 발견한 전남대 학생과장의 증언, 이성귀 부친의 진술, 진압작전을 펼쳤던 제3공수여단 13대대 장교와 병사 등을 면담조사했다.

230 광주지방검찰청,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번사기록: 63번 이성귀(1980.5).

231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 「5·18 관련 사건 수사 결과」(1995.7.18.), 「5·18사건 수사기록」 1권, 95쪽

13대대 ○○지역대 ○중대 통신하사관 이○○은 5·18조사위 면담조사에서 “전남대 정문 오른쪽 수위실 부근에 ○중대가 배치된 상태에서 시위대를 밀어내기 직전 시작된 사격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돌격 앞으로 하기 전 어디에선가 총을 쏘서 (시위대의) 맨 앞에서 선동하는 사람 한두 명이 죽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뒤에서 저격수가 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했다.²³² 또 다른 목격자 13대대 ○○지역대 ○중대장 김○○에 따르면, “전남대 우측 울타리를 시위대가 넘어와서 그 사람을 향해 대대장이 권총을 쏘았다. 총에 사람이 맞은 것을 처음 봤는데 1m 정도 붕 떠서 날아갔고, 시신을 끌고 오는 것을 봤습니다. (중략) 대대장인지 누군가가 공중에 대고 권총을 쏘는 것을 봤습니다”라고 진술했다.²³³ 5·18조사위는 이때 사망한 시위대원이 이성귀(광주상고 2학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²³⁴ 시위대의 전열에서 총탄에 맞아 쓰러진 시신은 곧바로 전남대 이학부로 옮겨졌으나 그날 오후 제3공수여단이 전남대에서 교도소로 이동하기 전 이학부 뒤편 야산에 매장하였다고 한다.



1980년 5월 22일 도청 안-이창성 촬영



광주의 시위시신을 받고 광명역 시위 광장까지의 길



조선일보 제공

〈그림 2-1-33〉 시민들이 5월 22일 이성귀의 시신을 수습하여 도청으로 옮기는 장면

²³² 5·18조사위, 「이○○ 진술조서」(2022.09.20.).

²³³ 5·18조사위, 「김○○ 진술조서」(2023.01.10.).

²³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은 당시 군의관으로서 검안을 하였는데, 자신의 수첩에 ‘이성귀’라고 기재하였다.

시위대가 멀리 물러갔고 일시적으로 소강상태가 유지되다 12:00경에 다시 충돌했다. 1995년 검찰 수사결과는 “12:00경 시위대의 전격적인 차량 돌진 공격으로 전남대 정문이 3백미터 가량 시위대에 의해 돌파당하자, 제3공수여단은 기동 예비 1개 대대로 시위대의 전열을 공격하고, 2개 대대는 정문 지역을 확보한 후 시위대를 밀어붙여 광주역 부근 신안동 굴다리까지 1킬로미터 정도 퇴각시키는 등 14:00경 3공수여단이 광주교도소로 철수할 때까지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는데, 시위대가 장갑차, 트럭 등 차량을 돌진시키자 일부 공수부대 장교들이 차량을 향해 총격을 가하였고, (중략) 이날 전남대 앞 시위 진압과정에서 주부 최미애(23세, 임신 8개월)와 성명불상자 2명(운전자와 학생으로 추정)²³⁵이 총상으로 사망하고, 최○○(남, 18세, 대동고 1년, 대퇴부 및 무릎관절 파편상), 양○○(남, 19세, 우측대퇴부 및 하지 총상), 신○○(남, 15세, 좌측대퇴부 관통상) 등이 총상으로 부상을 입었으며, 공수부대에 연행된 안두환(남, 46세), 장방환(남, 57세)은 5월 28일 광주교도소에서 타박상 등에 의한 원인으로 사망한 시체로 발견되었음”이라고 기재하였다.²³⁶

또한 검찰수사 결과에 따르면 5월 21일 14:00 제3공수여단에게 전남대에서 철수하여 광주외곽 차단을 위해 광주교도소로 이동하라는 명령이 하달됐고, 16:30경부터 15대대를 선두로 전남대를 출발, 17:20경 광주교도소에 도착하였다. 이때 연행한 시위대를 트럭으로 이송했는데, 천막을 씌운 밀폐된 군용트럭 안에다 최루탄을 터뜨리고, 진압봉으로 가격하고, 군홧발로 짓밟아, 그 과정에서 수명의 연행자가 사망했다.

[16:00~17:00] 전남도청에서 계엄군 철수

16:00경 전남도청에 있던 계엄군은 조선대학교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장갑차 및

²³⁵ 5·18조사위는 이들 중 학생 1명은 이성귀로 추정하나, 나머지 운전자 1명의 신분을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했다.

²³⁶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 『5·18 관련 사건 수사 결과』(1995.7.18.), 『5·18사건 수사기록』 1권, 96~97쪽

도보로 철수하였다. 조선대학교로 철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계엄군 병력은 주변 골목 및 건물 등에 시위대가 나오지 못하도록 발포하였다.²³⁷

[17:00 이후] 조선대학교에서 계엄군 철수

조선대학교로 철수한 계엄군은 저녁 식사를 하고 군장을 챙겨 차량 제대와 도보 제대로 구분하여 화순 방향 주남마을로 철수를 시작했다.²³⁸ 조선대학교 뒷산을 넘어서 이동하는 도보 제대는 제11공수여단 참모장 양대인이 인솔하였고, 장갑차를 앞세우고 도로를 통해 이동하던 차량 제대는 제7공수여단 33대대 7지역대를 엄호 병력으로 하여 33대대 7지역대장 및 제11공수여단 본부대장이 인솔하였다. 출발하기 전 계엄군들에게 실탄이 추가 지급되었다.²³⁹ 한편 차량 제대는 화순 방면으로 철수 도중 전남대학교 병원 등 주변 건물을 향해 사격하면서 이동하였고, 시민군과 교전 중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시민군 위○○은 “(학동시장 입구에서) 두 조로 나눠 사진관 건물과 옆 건물로 들어갔다. 오후 7시경에 도청 쪽에서 장갑차가 켈리버 50 기관총을 쏘면서 다가왔다. 나는 사격 명령을 내리고 총을 쏘기 시작했다. 장갑차가 후퇴했다가 다시 전진해 우리의 사격을 받으면서 화순 쪽으로 달아나버렸다”라고 진술하였고,²⁴⁰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김○○은 “학동쪽에서 우리가 타고 있는 차 안에 경기관총(LMG)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차 안에서 누군가가 계엄군이 조선대학교 뒷산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해서 그 산에 대고 LMG 1500발

237 5·18조사위, 『정○○ 진술조서』(2022.12.16.); 5·18조사위, 『김○○ 진술요지서』(2023.02.14.); 5·18조사위, 『남○○ 진술조서』(2022.09.20.); 5·18조사위, 『이○○ 진술조서』(2023.08.12.).

238 철수 시각과 관련, 제7공수여단 33대대장 권승만은 19:30 차량 제대와 도보 제대가 동시에 출발했다고 진술한 반면 제11공수여단 참모장 양대인은 18:00경이라고 진술하였다. 국방부 검찰부, 『권승만 피의자신문조서』(1995.2.16.), 『5·18사건 수사기록』 23권, 30508쪽.

239 5·18조사위, 『고○○ 진술조서』(2023.01.07.); 5·18조사위, 『오○○ 진술조서 (2회)』(2023.02.03.)

240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 1990. 『위○○ 증언 (증언번호 1038)』,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공포탄을 쏘았다. 물론 위협 사격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²⁴¹ 5.18조사위는 제7공수여단 33대대 7지역대의 차량 제대가 지원동 버스 종점 부근을 통과하던 중 적십자 마크가 표시된 헌혈 차량을 향해 쏜 총탄에 의해 그 차에 탑승한 박금희(여, 춘태여고 3학년)와 남자 한 명(신원미상)이 사망했다.²⁴²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차량 제대는 주변 건물에 위협 사격을 가하고 시민군과 교전하면서 철수하였으며, 도보 제대는 야간에 목적지를 찾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군의 사격 및 상호 간 오인사격으로 이동 중에 분산되어 거의 24시간이 지난 5월 22일 19:25경 집결지인 주남마을과 제2수원지에 모든 부대원이 집결할 수 있었다.²⁴³

나) 쟁점

(1) 시위대의 선제 사격 여부

5월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시위대로부터 먼저 총격을 당한 계엄군이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발포했다는 주장은 5·18민주화운동 당시부터 계속 제기되었다.²⁴⁴ 그러나 실제 계엄군 발포 이전 시위대 측에서 선제 총격을 가하는 중대 상황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지휘계통으로 보고하여 각종 일지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당시 작성된 일지 등 기록에서는 이날 15:00 이전 시위대의 총격에 대한 신뢰할 만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었다.²⁴⁵ 특히 15:00 이후 시위대에 의한 총격이 여러 일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비

²⁴¹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 1990, 『김○○ 증언 (증언번호 2031)』,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²⁴² 5·18조사위, 『나○○ 녹취록』(2022.11.15). 박금희와 옆 좌석에 나란히 앉아있던 나○○은 박금희가 총탄에 맞아 사망하던 순간을 목격했고, 자신도 총상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²⁴³ 특전사, 『총정 병력 출동 및 광주사태 상황일지』(1980), 국군기무사령부, 고유번호 광주 383-1980-096 (MF 릴 번호 61866-1.2), 18쪽.

²⁴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예상 질의 답변 자료』, 국가기록원 DA1344032, 44~46쪽.

²⁴⁵ 15:00 이전 시위대의 총격에 대한 기록은 “13:30 도청 앞 중사 1명 전사 폭도가 발사한 총기로 인해(11공수)”(전

교해 보았을 때 계엄군이 그 이전의 시위대 총격 상황을 기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5·18조사위는 각종 군의 일지에 시위대의 총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고, 당시 총상으로 인하여 계엄군이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15:00 이전에는 실제 시위대의 총격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2) ‘진도개 하나’ 발령 및 실탄 분배

5·18조사위는 5월 21일 08:00 전교사 지역에 ‘진도개 하나’가 발령됐다고 판단했다. 『제3군 야전예규』에 따르면 진도개 ‘하나’는 무장공비 침투 시 발령하는 ‘대침투작전의 최종 단계’에서 취하는 조치다. 『제3군 야전예규』에 따르면 ‘진도개 하나’와 같이 중요한 사항은 발령 후 필히 발령 사유(경계태세 급수, 발령지역, 발령 시간 등)를 즉각 지휘계통으로 군사령관에게 보고하고 인접 부대에 통보하여야 하며, 경계 태세를 접수한 책임 지역 부대장은 이를 작전통제 부대를 포함한 전 예하 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공수여단 참모장 양대인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전망으로 제31사단에서 ‘진도개 하나’ 발령을 전파받았으며 예하 대대장들에게는 무전을 통해 전파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²⁴⁶ 또한 제11공수여단 작전참모 유상훈은 ‘진도개 하나’ 발령에 따라 “주둔지 경계 강화를 하고, 비문 탈취 방지를 위해 한군데 모아놓은 조치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²⁴⁷ 제11공수여단 63대대 작전병 임○○는 “진도개 발령된 것을 알고 있었으며, 당시 시위진압이

교사 정보처 일지), “13:30 도청 앞에서 폭도의 권총으로 11공수 병력 1명 사망, 1명 부상하였으며 계엄군 공포탄 발사로 진압”(전교사 작전일지) 및 “13:36 도청 경계 중 폭도들이 쏜 총에 맞아 청사에서 추락, 방어하던 APC에 깔려 현장에서 즉사(63대대)”(충정병력 출동 및 광주사태 상황일지) 등이 있으나 이는 신뢰성이 의심되는 기록이다. 현장에 있던 계엄군들은 당시 발생한 권총운 등 사상자는 총격이 아니라 장갑차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발표 이전에 시위대로부터 총격을 당했다는 일부 계엄군들이 증언하는 상황 또한 일지의 기록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²⁴⁶ 5·18조사위, 「양대인 진술조서」(2022.12.21.).

²⁴⁷ 5·18조사위, 「유○○ 진술조서」(2022.12.27.).

아니라 전쟁이냐라는 말을 했던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했다.²⁴⁸ 따라서 ‘진도개 하나’ 발령과 관련된 진술을 종합하면 당시 진도개 발령사항은 전 병력이 아닌 지휘관과 일부 작전계통 인원들에게 전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은 군이라는 지휘명령 계통의 특성상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2. 탄약수량 분출

단위 : 발

화기	M16	권총	30 LMG	50 MG
발수	개인당 90	개인당 15	화기당 250	화기당 100

- 5.21.08:35 - 탄약 수송 차량 출발
- 5.21.10:12 - " " 복귀
- 5.21.11:00 - 본 배양로

〈그림 2-1-34〉 진도개 ‘하나’ 발령에 따른 탄약 수령 분출 (기갑학교 부대사)

『기갑학교 부대사』에는 5월 21일 ‘진도개 하나’ 발령에 따라 탄약 수령 및 분출 기록이 존재한다. 이는 ‘진도개 하나’의 발령이 전교사 예하 부대에 정상적으로 전파되었으며, 그에 따라 실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다.²⁴⁹

전남도청 앞에 있던 제11공수여단 61대대 ○○지대장 천○○은 당시 “‘진도개 하나’가 발령된 것 같으며, 그때 실탄을 받았다. 지대당 15발 1탄창을 받아서 지대장인 자신이 가

²⁴⁸ 5·18조사위, 『임○○ 진술조사』(2022.11.16.). 그러나 양대인은 진도개 발령 시점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임○○은 진도개 ‘하나’인지 ‘둘’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²⁴⁹ 기갑학교, 1980. 『부대사』, 273쪽. 또한 전교사 예하 제31사단은 광주교도소를 경비하던 96연대에 5월 21일 11:46경 실탄을 추가로 공수하여 배분한 사실이 확인된다(서울지방검찰청, 1995. 『5·18 관련 수사기록』, 『5·18사건 수사기록』 1권, 91쪽; 31사단, 전투상보, 교도소방어작전, 1221쪽).

지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²⁵⁰ 제11공수여단 61대대 ○지역대 ○중대 ○○지대장 오○○은 “진도개 하나가 발령되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중략) 21일 아침 상무관에서 식사 후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에 분수대 인근 도로변에서 군수장교 또는 지역대장이 장교들에게 탄창에 삽탄된 실탄인지 클립 형태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위기 상황에 대처하라며 10발씩 분배하였습니다. 저는 2발만 소총에 삽탄하였고, 제가 판단하여 어제 진술한 바와 같이 나머지 8발을 선임하사관 4명에게 각 2발씩 분배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²⁵¹ 또한 당시 전남대학교에 주둔하고 있었던 제3공수여단 병력도 아침 식사를 전후하여 실탄이 분배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제3공수여단 11대대 ○지역대 ○중대장 육○○은 “저는 아직 아침도 못 먹고 있었을 때 인데 정문 앞이 소란스러워서 (중략) 저는 중대장들과 함께 연병장 위 언덕에서 정문 방향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어느 중대장이 무기고가 탈취당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으며, 저보다 선임인 대대 군수장교인지 지역대 정작장교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장교가 와서 저희 중대장들에게만 실탄을 10발 정도씩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탄을 주는 의미가 뭐냐, 필요할 때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냐고 묻자 자기도 모른다고 실탄만 주고 그냥 간 일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²⁵² 제3공수여단 13대대 ○○지역대장 김○○은 “5월 21일 아침에 식사 시간을 전후하여 실탄을 받았습니다. 그 실탄은 대대에서 보관하던 경계용 실탄이었는데, 저희 지역대 병력이 대대에서 받아왔으며 (저는 전령을 통하여 받았는데) 실탄은 지역대에서 중대장 등 전 병력에 지급되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하였다.²⁵³ 제3공수여단 13대대 ○○지역대 군수장교 정○○은 “09:00경 다시 비상이 걸려 운동장에 집결하였으며 (중략) 그때 중대장급 이상에게 2탄창(30발)씩 실탄이 지급되었습

250 5·18조사위, 「천○○ 진술조서」(2022.12.15.).

251 5·18조사위, 「오○○ 진술조서」(2023.02.03.).

252 국방부 검찰부 「육○○ 진술조서」(1995.1.23.).

253 국방부 검찰부 「김○○ 진술조서」(1995.4.14.).

니다”라고 진술하였다.²⁵⁴ 또한 제3공수여단 12대대 작전병인 김○○은 자신의 수기에서 “(5월 21일 오전) 바로 그때 시민군 측에서 총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어서 시민군도 무장했다는 전통과 함께 전 대대원에게 실탄 10발씩 지급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부대 내에 남아 있던 탄약 상자들이 본격적으로 해체되기 시작했다. (중략) 이때 처음 일반 대대원들에게까지 실탄이 지급되었으며 이는 곧 상대편을 향한 사격도 가능하다는 명령과 다름없었다”라고 기록하였다.²⁵⁵

제11공수여단과 제3공수여단이 정확히 어떠한 이유로 각각 실탄을 분배하였는지는 확정하기 어렵지만, 4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제11공수여단, 제3공수여단, 전교사 기갑학교가 비슷한 시간대에 실탄을 배분한 점은 진도개 ‘하나’와 같은 상급 부대의 지시에 따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11:50경 전라북도에 위치한 제35사단에서도 진도개 ‘하나’에 의거하여 병력을 추가하고 헬기를 출동한 조치가 있었다.

5·18조사위는 5월 21일 13:00경 전남도청 앞에 있던 계엄군의 발포가 일부 병력이 5월 20일 밤에 이미 배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실탄을 사용하여 사격한 것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²⁵⁶ 특히 위원회 조사 결과 5월 20일부터 일부 병력과 장갑차의 캘리버 50 기관총 실탄이 지급되었으며,²⁵⁷ 실탄 분배는 일관되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대대별, 지역대별, 중대별로 차이가 있고 계급 및 직책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었다는 사실 또한 확인되었다.

전남도청 앞 발포는 ‘진도개 하나’ 발령으로 실탄이 분배됨에 따라 일선 현장지휘관과 장병들에게는 발포 명령으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진도개 ‘하나’가 발령되면 ‘실

254 서울지방검찰청 「정○○ 진술조서」(1995.6.22.).

255 김○○, 「3공수여단 12대대 작전병 출신의 실명 수기/내가 겪은 광주사태」, 『월간조선』 1996. 4. 1.

256 검찰수사 결과 제11공수여단 61, 62대대는 1980년 5월 20일 24:00경 중대장들에게 실탄 15발 정도가 든 탄창 1개씩을 분배하였고 63대대는 5월 21일 11:00경 대대장 짐차에 보관하고 있던 실탄을 중대장들에게 1인당 10발씩 지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 검찰부, 「5·18 관련 사건 수사 결과」 『5·18사건 수사 기록』 1권(1995.7.18.), 85, 98쪽.

257 9전차대대 장갑차 조종수 김○○은 “5월 20일 MBC가 불탄 날 캘리버 50 기관총 1발을 발사했기 때문에 부대에서 출동할 때 실탄을 받은 것도 같다”라고 진술했다. 5·18조사위, 「김○○ 진술조서」(2022.8.31.).

탄 분배(1인당 60발), 선조치 후보고'가 가능한 상황으로 바뀌어 언제든지 발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기 때문이다. 5·18조사위 면담조사에서도 상당수 계엄군은 당시의 상황에서 실탄 분배는 곧 발포 명령으로 인식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제11공수여단 작전처 작전계획장교 박○○은 “병력에게 실탄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발포를 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고,²⁵⁸ 같은 부대 작전처 교육장교 이○○ 역시 “(실탄 지급은) 묵시적으로 자신에게 위협이 왔을 때에는 발포를 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진술했다.²⁵⁹ 63대대 정보장교 김○○은 “실탄 분배의 최종 명령은 대대장이 한 것이며 분배가 이루어졌을 때 발포 허가도 함께 위임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실탄 분배를 했다는 것은 묵시적으로 발포를 허가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진술했다.²⁶⁰ 같은 대대 화기하사 이○○은 “실탄을 주고받았다는 것은 묵시적으로 발포하라, 발포하겠다는 뜻이 오간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진술하였다.²⁶¹ 63대대 본부중대장 오○○은 “지휘관이 실탄 분배를 하였다면 발포 권한을 함께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했다.²⁶² 제7공수여단 35대대 3지대장 류○○ 역시 “(대대장이) 병사들이 위협할 때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장교들에게 실탄을 지급했다”라고 진술하였다.²⁶³

(3) 발포 명령 및 발포 절차 준수 여부

5·18조사위는 발포 현장에 있었던 계엄군들의 면담조사 결과 부대 단위로 하달된 일관된 수준의 발포 명령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최초 발포’는 61대대 지역에 배치된 계

258 5·18조사위, 「박○○ 진술조서」(2023.05.26.).

259 5·18조사위, 「이○○ 진술조서」(2023.05.31.).

260 5·18조사위, 「김○○ 진술조서」(2022.09.22.).

261 5·18조사위, 「이○○ 진술조서」(2023.08.12.).

262 5·18조사위, 「오○○ 진술조서」(2022.09.28.).

263 5·18조사위, 「류○○ 진술조서」(2023.10.26.).

엄군 장갑차 515호에서 발사한 켈리버50 기관총의 위협 사격으로 판단했다. 최초 발포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61대대 지역의 공수부대 대대장이 515호 장갑차의 켈리버 50 기관총 사수에게 사격을 지시함으로써 시작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최초 발포 직후 분수대 주위에 배치된 63대대 지역에서 다가오는 시위대 버스의 운전수와 장갑차를 향해 조준사격이 이어졌고, 이후 총격이 30분 정도 통제 없이 지속됐다는 사실도 다수의 계엄군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

63대대 8지역대 정보하사관 정○○은 “최초 30분 동안은 상부에서 어떠한 지침도 없이 그냥 사격을 했습니다. (중략) 뒤에서 누군가가 집합하라고 하기 전까지는 사격 중지 통제가 없었고 보이는 대로 사살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²⁶⁴ 63대대 작전병 임○○은 “첫 발포가 있는 후 약 30분 정도 발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사격 개시를 했는지, 하여튼 사격 중지는 거의 처음에는 통제가 안 됐어요”라고 진술했다.²⁶⁵ 민간인에 대한 집단 발포 및 살상이라는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현장 지휘관들이 사격 중지 명령을 하지 않았거나 사격 중지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이행되지 않았다면 이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것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당시 균형법은 명령 불복에 대한 처벌을 (계엄지역의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²⁶⁶ 그러나 5·18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 기간 또는 그 이후에 이러한 사격 통제 없는 무차별적인 발포를 한 계엄군을 조사하였거나 이를 처벌한 사례 등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5·18조사위는 이어 5월 21일 13:00경 전남도청 앞 발포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승인된 발포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5월 21일 13:00경은 자위권 발동지시가 하달되기 이전으로 이때 광주지역에 적용된 발포 관련 작전명령이나 지시를 직접 기록한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당시 적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총정작전 계획은 계획일 뿐 실행 내용이

²⁶⁴ 5·18조사위, 「정○○ 진술조서」(2023.08.18.).

²⁶⁵ 5·18조사위, 「임○○ 진술조서」(2023.01.06.).

²⁶⁶ 균형법(1947.5.5.) 제8장(항명의 죄).

기재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충청작전 계획은 1981년 2군사령부에서 작성한 「충청작전 지침서」이므로 이를 1980년 5월 19일 발포 상황에 적용할 수는 없었다. 이에 위원회는 당시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보다 상위의 발포 관련 규정을 추적한 결과 1978년 제정된 『육군본부 야전예규』에서 “(폭동진압 시) 발포는 여하한 경우에도 참모총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²⁶⁷ 해당 『야전예규』는 1980년 당시 유효한 것이므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들은 이에 따른 발포 승인 절차를 따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육군본부 야전예규』는 발포의 승인 요건을 “여하한 경우에도 참모총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5월 21일 전남도청 앞 발포를 위해서는 참모총장의 사전 승인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되나, 어떠한 자료나 진술에서도 그러한 절차가 지켜졌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5·18조사위는 발포 명령과 관련하여 캘리버 50 최초 발포자로 추정되는 515호 장갑차의 최○○(기갑학교 9전차대대 장갑차 소대장)이 진술한 ‘공수부대 대대장’의 발포 명령에 주목했다. 최○○은 “(자신의 장갑차 뒤에 서 있던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은 키가 작았던 대대장이) ‘하늘을 향해 위협사격을 하라’고 명령하여 장전한 후 3~4번 정도 하늘을 향해 점사하였습니다. 이후 시위대 장갑차가 사격하며 돌진해 오자 대대장이 저에게 캘리버 50으로 저지하라고 하여 시위대 장갑차 바퀴를 향하여 캘리버 50을 발사하였습니다”²⁶⁸라는 진술을 한 바 있었다. 5·18조사위는 수차례 그에게 발포 지시를 한 ‘(공수부대) 대대장’의 실체를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반복함으로써 더 이상 밝히지 못했다. 5·18조사위는 캘리버 50 기관총 사격 소리를 들은 현장의 병력들은 이미 실탄을 장착한 상황에서 발포를 해도 좋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²⁶⁷ 육군본부, 1978. 『야전예규』, 부록 C, 별지#3 「폭동진압」.

²⁶⁸ 5·18조사위, 「최○○ 진술조서」(2022.9.6.).

5·18조사위는 발포 명령의 실체를 종합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향후 다음과 같은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첫째, 장갑차 캘리버 50 기관총 사격을 지시한 공수부대 대대장이 누구였는지, 둘째, 당시 전교사에 머물고 있었던 최웅 제11공수여단장과 도청 앞에 위치해 현장 상황을 지휘한 안부웅 61대대장 사이에 통신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셋째, 전남도청 앞 발포를 전후한 긴박한 시각에 최웅 제11공수여단장은 전교사에서 머물면서 회의에 참석했다고 진술했는데, 이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참석자, 안건 등)은 무엇인지, 넷째, 발포 전후한 시각 참모총장으로부터 최웅 제11공수여단장에 이르기까지 발포 명령에 대한 지휘책임이 있는 인물들의 행적과 발포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4) 자위권에 의한 발포 여부

5·18조사위는 5월 21일 도청 앞 발포가 정당하고 적절한 자위권 행사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다음은 1980년 5월 22일 「계엄훈령」 제11호로 하달된 자위권 발동(지시)의 내용이다.²⁶⁹

1. 자위권의 정의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 급박 부당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부득이 실력을 행사하여 발휘하는 권리

2. 자위권 발동 대상

무기, 폭발물, 화염병, 흉기(쇠 파이프, 각목 등)를 소지하고 건물이나 무기를 탈취, 점거, 파괴, 방화하고자 하는 자.

3. 자위권의 발동 시기

.....
²⁶⁹ 「계엄훈령 제11호」 자위권 발동(지시), 1980. 국군기무사령부, 고유번호 광주 383-1980-103 (MF 릴 번호 61871-1.2), 479~480쪽. 지시 일자가 5월 22일이므로 5월 21일 발포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자위권 발동 방법을 참고하기 위해 인용한 것이다.

가. 군부대(예비군 포함) 경찰관서 공공 기관 및 국가 보안목표(방위 산업체 및 민수용 폭약 저장고 포함) 등을 보호함에 있어 폭도들이 무기 또는 위험물을 사용 침투해오므로써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진압 방법이 없을 경우.

나. 국민 또는 출동 병력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함에 있어 그 정황이 급박할 경우

4. 자위권 발동 방법

가. 경고를 발하고 3회 이상의 정지를 명할 것.

나. 가능한 위협 발사를 하여 해산시킬 것.

다. 정황이 급박하더라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신체 부위를 사격할 것(하퇴부).

라. 선량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유의할 것.

5. 자위권을 발동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계엄사무(분소)장을 통하여 그 경위 및 결과를 보고할 것.

6.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태만하거나 기피하는 재(무기, 탄약, 중요 장비 피탈 등)는 계엄군 재에 회부 엄중 문책할 것.

7. 참고사항

자위권 발동은 80. 5. 22. 12:00부 시행. 끝.

5·18조사위는 5월 21일 13:00경 계엄군에게 급박한 상황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앞서 ‘나’ 쟁점 - (1) 시위대의 선제 사격 여부’에서 알아본 것처럼 이때까지는 시위대가 계엄군에게 총격을 가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자위권 발동 시기에 규정된 “무기 또는 위험물”은 시위대가 소지한 화염병, 각목, 쇠 파이프 등과 장갑차를 포함한 차량이었다. 또한 ‘가)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일대의 상황 전개 - [13:00 이후] 발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당시 시위대의 화염병 투척으로 62대대 방향에 있던 기갑학교 9전차대대 소속 529호 장갑차가 후진하였고, 이어 시위대 쪽에서 차량이 전진하자 계엄군은 대열이 무너지면서 무질서하게 후퇴하였다. 계엄군 장갑차 후진 과정에서 권용운 일병이 장갑차에 압사당하고 또 다른 계엄군 1~2명이 부상을 당하였다.²⁷⁰

270 권용운 일병이 후진하던 계엄군 측 궤도형 장갑차에 의해 압사당한 사실은 당시 목격자 진술과 군 기록(특전사 상황일지)을 토대로 사법부 판결에서도 인정되었다. 광주고등법원 2022.9.14. 선고 2018나24881호, 2018나

그러나 계엄군의 최초 발포 이후 전남도청 앞 금남로는 순식간에 소강상태가 되었고, 따라서 더 이상 “급박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위대에 대한 조준사격이 지속되었다는 것은 자위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살상행위라고 판단된다.

또한 계엄군은 태극기를 들고 금남로로 뛰어나오는 시위대를 향해 반복적으로 총격을 가했는데, 이미 차량과 콘크리트 화분대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구축하고 엄폐한 상태에 있던 계엄군들에게 태극기를 들고 뛰어나오는 시위대가 “급박 부당한” 위해를 가하였다거나 “무기 또는 위험물을 사용하여 침투”해 왔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엄군이 시위대에게 경고를 발하고 3회 이상 정지를 명했는지, 위협 발사를 통한 시위대 해산을 도모하는 등 자위권 발동 방법을 준수했다는 진술이나 기록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전남도청 인근에서 총격으로 인한 사망자의 사인 부위별 분포를 보더라도 당시 계엄군이 자위권 발동 방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표 2-1-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망자 대부분이 하퇴부가 아닌 상반신 총격으로 사망하였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기간 중 발생한 총상 부상자의 67%가 상반신 총상이었다는 것도 당시 계엄군의 발포가 자위권을 넘어서는 무차별적인 살상행위였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표 2-1-12>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총상 사망자 부위별 분포

단위: 명

단발 (32)					다발	계
머리	목	가슴	복부	등		
10	2	12	1	7	4	36

자위권 발동 방법의 ‘라’항은 “선량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유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음에서 알 수 있다. 전남도청 인근 무등맨션 거주자였던 김선호(45세, 남)는 5월 21일 16:30경 집 밖 사정을 살피기 위해 건

.....

24898호(병합) 「판결」

물 옥상으로 올라가다가 계엄군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고, 이성자(14세, 여)는 동구청 이면 도로에서 계엄군의 총격에 사망했다. 그리고 황호정(62세, 남)은 전남도청 인근 자택 건물 도심빌딩 5층에서 밖을 내다보는 아이를 떼어내려고 창가에 접근했다가 계엄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²⁷¹

다) 소결

5·18조사위는 5월 21일 오전 전남대 정문 앞 발포는 자위권이 공식적으로 발령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육군 예규』를 위반한 무단 발포임을 확인했다. 이때 피격당해 사망한 이성귀는 전남대 이학부 뒤 야산에 암매장되었다. 특히 임신부 최미애는 전혀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시민인데 직격탄에 의해 머리를 맞고 즉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5월 21일 08:00경 전교사령관이 광주와 전남·북지역을 대상으로 진도개 ‘하나’를 발동한 일 역시 사실로 확인되었다. ‘진도개 하나’ 발동 시각과 비슷한 시각에 일부 병력에게 실탄이 분배된 사항도 확인된다. ‘진도개 하나’ 발령은 실탄 분배(1인당 60발), 선조치 후보고가 가능한 상황으로 발포와 직결되어 있다. 5월 21일 08:00 ‘진도개 하나’가 발령되고 이에 따라 도청 앞에서 작전 중인 병사들에게 실탄이 분배되었으므로 현장지휘관과 병사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발포 명령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도청 앞 발포로 이어지는 조건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볼 수 있다. 5월 21일 오후 도청 앞 발포는 대대장의 명령에 의해 장갑차에 탑승한 계엄군이 켈리버 50 기관총을 하늘을 향해 최초로 발포했다. 이후 시위대를 향하여 무차별적인 집단발포가 사격 통제 없이 30여 분 동안 지속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도청 앞 현장에서 36명에 달하는 총격에 의한 민간인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5·18조사위는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와

²⁷¹ 이날 10:00~15:00 사이에 전남대학교 앞에서도 계엄군의 총격으로 임신부 최미애 · 고등학생 이성귀 등 시민 2명 이상(검찰수사 결과는 3명)이 사망하였다. 5·18조사위, 직가-2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 사건 진상규명 조사보고서」(2023.12.), 115쪽(최미애) 및 158쪽(이성귀) 참조.

전남대 부근 발포에 대하여 발포 명령의 실체를 충분히 밝히지 못했다.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4) 5월 27일 광주재진입작전

가) 개요

5월 21일 17:00경 계엄군은 광주 외곽으로 철수했다가 5월 27일 새벽에 광주 시내로 재진입했다. 당시 군 기록과 관련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계엄사령부는 5월 22일부터 최소 3회에 걸쳐서 「광주재진입작전」(군 작전명: 상무충정작전, 이하 「광주재진입작전」)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²⁷² 광주재진입작전 과정에서 계엄군의 발포는 시민군이 장악하고 있던 전남도청, 전일빌딩, YWCA 등을 무력으로 탈환하기 위해 「충정작전 명령 제4호」에 따라 5월 27일 00:01경을 기해 실시되었다. 당시 계엄군의 광주재진입작전 과정에서 시민군 사망 25명²⁷³, 상해 228명²⁷⁴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나) 광주재진입작전 계획

5월 22일 15:00경 제2군사령부 작전참모가 육군참모총장에게 계획 보고한 후 제2군사령부는 5월 23일 02:00경 육군참모총장에게 충정작전 계획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육군참모총장은 “한·미 간 협의사항: 24일까지 진압작전 대기, 무력으로 평정은 지역감정 해소 곤란, 민간인을 인질로 했을 시 대처 곤란” 등을 이유로 충정작전을 연기하도록 지시

272 당시 계엄사령관 이희성은 4차에 걸친 검찰 진술에서, 1980년 5월 23일 08:50경 계엄사령관실에서 진중채 2군사령관 등이 배석한 자리에서 전남도청 진압작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5월 25일 04:00경 육군본부 김재명 작전참모부장에게 광주재진입작전 계획 수립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273 5·18조사위,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 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참조.

274 5·18조사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상해 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참고.

하였다.²⁷⁵ 주영복 국방부장관도 5월 25일 02:00까지 진압작전을 연기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제2군사령부는 5월 25일 12:05경 「작상전 517호(충정작전 유효 지시)」를 통해 전교사령관 지휘 아래 5월 27일 00:01경 이후 상무충정작전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²⁷⁶

광주재진입작전과 관련하여 5월 23일 「계엄회의록」²⁷⁷과 5월 당시 계엄사령부 작전처장으로 근무하였던 이종구의 진술²⁷⁸을 보면, 광주재진입작전 계획은 여러 안이 논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간에 제20사단, 제3공수여단, 제7공수여단, 제11공수여단이 엄청난 희생이 예상되는 정면 공격 방법으로 광주 시내를 밀고 들어가는 계획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면 공격 방법은 엄청난 희생이 예상되어 야간 특공작전으로 변경되어 5월 27일 00:01경에 실시되었다. 「광주재진입작전」은 크게 여섯 축으로 전개되었으며, 공수여단 특공조들은 당시 광주시민들의 공수부대에 대한 반발을 고려하여 보병과 동일한 전투복을 입고 단독군장으로 작전에 투입되었다.

- ① 제3공수여단 11대대 1지역대 및 대대본부 특공중대, 3지역대 11중대로 편성된 특공조가 전남도청으로(대대장 임수원 중령, 1지역대장 편종식 대위 외 11/66명),²⁷⁹
- ② 제11공수여단 61대대로 편성된 특공조가 전일빌딩, 관광호텔, YWCA로(장교 4명, 사병 33명, 특공대장 최영준 대위, 각 지역대에서 1개 지대를 차출),²⁸⁰
- ③ 제7공수여단 33대대 8지역대, 9지역대 장교 20명, 하사관 및 사병 181명으로 편성

²⁷⁵ 제2군사령부, 「광주권 충정작전 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 보안사령부, 『383-1980-95』, 152쪽.

²⁷⁶ 제2군사령부, 「광주권 충정작전 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 보안사령부, 『383-1980-95』, 157쪽, 주요 내용은 “이성을 되찾아 가는 경향, 광주시민은 생필품 고갈, 생활에 고통, 공산주의자와 폭도 양민이 분리됨으로써 작전을 실시할 여건 조성, 전교사령관 책임 하에 5월 27일 00:01 이후에 실시, 양민 및 계엄군 희생 최소로 감소, 작전 수행상 조치 및 착의 사항(5월 23일 16:00) 적용, 고도의 보안을 요망” 등이었다.

²⁷⁷ 1980년 5월 23일자 「계엄회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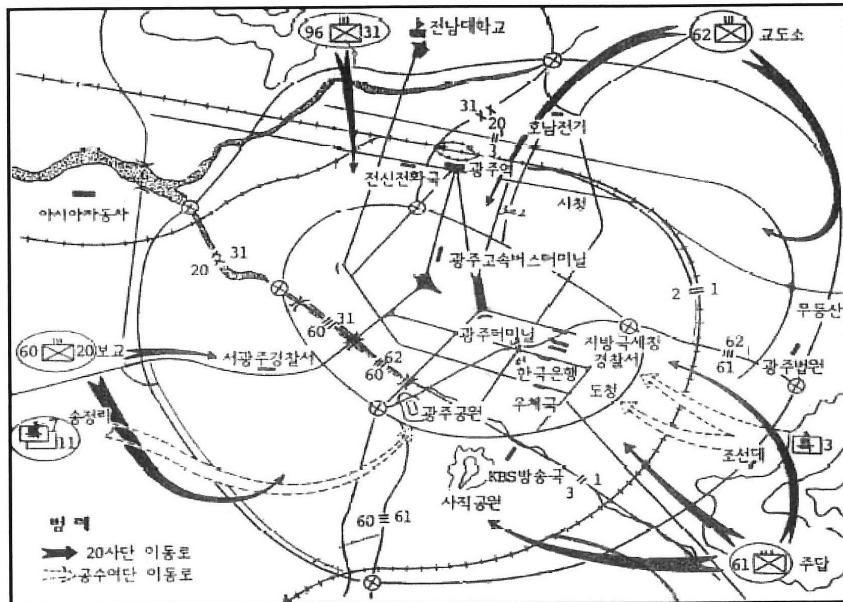
²⁷⁸ 5·18조사위, 「이종구 진술조서」(2022.11.9.).

²⁷⁹ 「제3공수여단 전투상보」, 육군본부 고등검찰부, 「임수원 피의자신문조서(제1회)」(1995.02.22.), 28쪽.

²⁸⁰ 「제11공수여단 전투상보」, 국방부 검찰부, 「안부웅 피의자신문조서」(1995.2.13.), 60쪽; 「안부웅 피의자신문조서(제2회)」(1995.05.17.), 37~38쪽.

된 특공조(특공대장 9지역대장 정진식 소령)가 광주공원으로(4중대는 실내체육관, 7중대는 시민회관, 8중대는 도서관과 양로회관, 9중대는 박물관과 미술관, 5중대, 6중대는 예비대),²⁸¹

- ④ 제20사단은 전교사로부터 전차 18대, APC 장갑차 9대, 500MD 헬기 1대, UH-1H 헬기 3대, 코브라헬기 2대, 차량 40대를 배속받아 61연대 1대대는 주남마을에서 학동, 전남대학교 병원을 거쳐 전남도청과 금남로, 광주공원으로, 62연대 2대대는 광주교도소에서 계림동을 거쳐 광주 시내로, 62연대 3대대는 광주시청으로,²⁸²
- ⑤ 제31사단은 전교사로부터 전차 6대, APC 장갑차 3대, 500MD 헬기 1대, UH-1H 헬기 1대를 배속받아 96연대는 전남대학교 근처를,
- ⑥ 나머지 부대는 광주지역을 제외한 전남지역을 각각 장악하였다.
- 당시 광주재진입작전에 투입된 병력의 이동 경로를 정리하면 아래 <그림 2-1-35>와 같다.



<그림 2-1-35> 5월 27일 계엄군 상무총장작전

281 「제7공수여단 전투상보」, 국방부 검찰부, 「권승만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1995.2.16.), 46쪽.

282 「제20사단 전투상보」.

대법원은 전두환 외 15명에 대한 반란수괴 등 형사 사건 판결에서 “광주재진입작전(이른바 ‘상무총정작전’)을 실시하여 전남도청 등을 다시 장악하려면 무장한 시위대를 제압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는 시위대와의 교전이 불가피하여 필연적으로 사상자가 생기게 되므로, 피고인 전두환 및 위 피고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재진입작전의 실시를 강행하기로 하고 이를 명령한 데에는 그와 같은 살상행위를 지시 내지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광주재진입작전」 명령은 시위대의 무장 상태 그리고 그 작전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시위대에 대한 사격을 전제하지 아니하고는 수행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그 실시 명령에는 그 작전의 범위 내에서는 사람을 살해하여도 좋다는 발포 명령이 들어 있었음이 분명하다.”²⁸³ 즉, 대법원은 「광주재진입작전」은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실시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그 작전 실시와 관련하여 인명을 살해해도 좋다는 발포 명령이 포함되었다고 판단하였다.²⁸⁴

다) 발포 상황

(1) 제3공수여단 작전 전개 및 발포 상황

제3공수여단의 전남도청 탈환 작전 전개를 재구성하기 위해 각종 자료 및 제3공수여단 전투상보와 작전에 참여하였던 계엄군의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당시 작전 전개 및 발포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 2-1-13>과 같다.

283 대법원 96도3376호 반란수괴 등 판결문 중 제3장 이른바 5·18 내란 등 사건 부분 1.항 라. (1) 참조.

284 전두환 중앙정보부장 서리 겸 합수본부장, 보안사령관은 5월 25일 12:15~14:30 육군회관에서 열린 오찬을 겸한 회의에서 주영복 국방부장관, 황영시 육군참모차장, 노태우 수경사령관 등 핵심 세력들과 함께 ‘상무총정작전’ 육본지침을 검토하고 작전개시일을 5월 27일 00:01 이후 전교사령관의 책임하에 실시하기로 최종결정을 하였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1997. 『12·12, 5·18실록』, 300쪽.

〈표 2-1-13〉 제3공수여단 작전 전개 및 발포 상황

시 각	작 전 전 개
5.26. 15:00	■ 특공조 광주재진입작전 임무 및 장비 수령 및 광주 시내 지도로 도상 연구
17:00	■ 특공조 식사
18:30	■ 헬기로 광주-화순 간 도로 중 제20사단 61연대 3대대 지역으로 이동
21:30	■ 기획실장 이도원 대령이 추가 첩보 및 도청 건물 요도 작전팀에 제공
22:30	■ 특수화학탄 10발을 작전팀에 정보참모가 공수
23:00	■ 제20사단 61연대 3대대 지역을 출발
5.27. 01:40	■ 조선대학교 뒷산 도착, 인원 및 장비 점검과 휴식
03:00	■ 조선대학교 뒷산 출발하여 목표 지역으로 이동
04:00	■ 전남도청 도착
04:10	■ 전남도청 후문 월담(2.5m)하여 전남도청으로 진입 및 교전(3중대, 2중대, 1중대, 특공대, 4중대, 11중대 순으로 투입) ■ 최초 3중대 1층에서 교전, 각 방의 시민군을 제압, 층별로 시민군을 집결시킴. ■ 편중식 특공대장이 전남도청 후문으로 병력 투입한 후, 병력 2명을 데리고 정문으로 이동하던 중 안○○ 중사 다리 관통상 무전 보고 받았고, 이후 배○○ 하사 정문 현관 오른쪽 기둥에서 경부 관통상 부상.
05:30	■ 체포한 시위대 집결 개시
05:31	■ 제20사단 61연대와 접촉
05:30	■ 상무관 및 버스 하부에 있던 시민군에 의한 산발적인 사격
06:10	■ 전남도청 현관 앞에서 체포한 시민군 점검
06:15	■ 환자 수송용 차량 요청
07:00	■ 환자 수송용 차량 후송 중 보병으로부터 2-3분 사격받아 앰블런스 운전병 사망
07:05	제20사단 61연대에 전남도청 인계(외곽 경계, 각종 노획 무기, 탄약 등)
07:30	상무대로 철수(전교사에 체포한 시민군 200여 명 인계)

출처: 「제3공수여단 전투상보」; 국방부 검찰부, 「편중식 진술조서」(1994.12.15.).

제3공수여단장 최세창은 5월 26일 10:30경 전교사 회의에 참석한 후, 점심시간 이후에 각 대대장을 집합시켜 제3공수여단에서 전남도청 평정작전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렸다. 어느 대대가 작전을 수행할 것인지 논의한 후, 최세창 여단장은 11대대를 작전투입부

대로 지목하였다.²⁸⁵ 제3공수여단 11대대장 임수원은 1지역대장 편종식 대위가 미혼인 점을 감안하여 15:00경 1지역대에 전남도청 탈환 작전을 수행할 것을 명령하였다. 대대장의 명령을 받은 특공조 대장 편종식 대위는 1지역대원을 데리고 송정리 비행장(K57) 격납고로 이동하였고, 광주 시내 지도를 받아 어떤 이동경로로 진입할지 도상연구를 하였다. 그런데, 도상훈련을 하다보니 1지역대만으로는 임무 수행 병력이 부족하여 대대본부 특공중대와 3지역대 11중대를 증원하여 17:00경까지 1중대는 3층, 2중대는 2층, 3중대는 1층, 4중대는 후문, 대대본부 특공 중대는 도청 민원실, 3지역대 11중대는 정문을 맡으라는 임무를 부여하고, 임무에 필요한 장비를 수령하였다. 편종식 대위를 포함한 제3공수여단 특공조는 5월 26일 17:00경 식사를 하고, 송정리 비행장(K57)에서 18:30경 헬기를 이용하여 광주-화순 간 도로 옆에 있는 제20사단 61연대 지역으로 2번에 걸쳐 이동하였다. 특공조는 그곳에서 휴식을 취한 뒤, 21:30경 공수여단 본부로부터 도청 건물 요도를 수령하고, 22:30경 섬광수류탄 10발을 추가 수령 후 전남도청 1층, 2층, 3층 및 민원실에 진입하는 중대에 분배하였다. 특공조는 23:00경 이동하여 5월 27일 01:40경 임무 지원지점(MSS)인 조선대학교 뒷산에 도착한 후, 03:00경 조선대학교 뒷산을 출발하여 04:10경 전남도청에 진입하였다.

(2) 제11공수여단 작전 전개 및 발포 상황

제11공수여단 61대대의 관광호텔 및 전일빌딩, 여자기독교청년회(YWCA) 탈환 작전 활동을 재구성하기 위해 각종 자료 및 제11공수여단 전투상보와 작전에 참여하였던 계엄군의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당시 작전 전개를 정리하면 아래 <표 2-1-14>와 같다.

285 국방부 검찰부, 「임수원 피의자 신문조서」(1995.2.22.).

〈표 2-1-14〉 제11공수여단 작전 전개 및 발포 상황

시 각	작 전 전 개
5.26. 18:00	■작전 병력 이동 (UH-1H 5대)
18:15	■주남마을 도착
23:15	■침투 개시
5.27. 01:50	■임무 지원지점 도착
03:30	■목표 지역 이동
04:10	■전일빌딩 및 관광호텔 점령
05:10	■도청지역 병력 증원 지시
05:15	■YWCA 건물 앞에서 30여 명의 시민군과 교전
05:30	■부상자 2명 발생
06:20	■YWCA 건물 완전 장악
06:40	■보병(제20사단)과 연결, 작전 지역 인계
07:15	■병력 철수

출처: 특전사령부 전투상보; 국방부 검찰부, 「권승만 진술조서」(1995.2.16.).

제11공수여단장 최웅은 5월 26일 10:30경 전교사 회의에 참석한 후, 점심시간 이후에 직접 61대대 2지역대 4중대장 최영준 대위를 불러 “우리 여단이 1개 중대 규모의 특공조를 편성하여 전일빌딩과 총장로 관광호텔을 점령하라는 작전명령을 전교사에서 받았다. 4중대가 특공조로 선정되었으니 들어갈 준비를 하라”라고 명령하였다.²⁸⁶ 여단장의 명령을 받은 특공조 대장 최영준 대위(61대대 2지역대 4중대장)는 61대대에서 차출한 중대 병력 4/33명의 장비를 갖추어 준비한 후, 송정리 비행장(K57)에서 18:00경 헬기를 타고 제20사단 61연대가 있던 주남마을로 이동하였다. 특공조는 23:00경 이동을 하여 5월 27일 01:50경 조선대학교 뒷산(MSS 임무지원지점)에 도착한 후, 03:30경 조선대학교 뒷산을 출발하여 04:00경 전일빌딩, 관광호텔에 도착해서 진입하였다. 61대대 특공중대 중

²⁸⁶ 국방부 검찰부, 「최영준 진술조서」(1994.12.16.).

대장 백〇〇가 전일빌딩 작전팀장, 61대대 2지역대 6중대 16지대장 점 중대장 오〇〇이 관광호텔 작전팀장, 61대대 3지역대 8중대 23지대장 천〇〇은 예비대(YMCA) 팀장으로 각각 배치되었고, 천〇〇 팀은 최영준의 명령에 따라 YWCA 진압을 하였다.

(3) 제7공수여단 작전 전개 및 발포 상황

제7공수여단 33대대의 광주공원 탈환 작전 전개를 재구성하기 위해 각종 자료 및 특전사령부 전투상보와 작전에 참여하였던 계엄군의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당시 작전 전개를 정리하면 아래 <표 2-1-13>과 같다.

<표 2-1-15> 제7공수여단 작전 전개 및 발포 상황

시 각	작 전 전 개
5.26. 15:00	■ 광주공원 진압 명령
16:00	■ 광주공원 2개 지역대 투입 명령(33대대장 - 8, 9지역대 투입 명령)
5.27. 01:00	■ 송정리 비행장에서 차량을 타고 출발하여 국군광주통합병원 앞에서 하차 (특공조 20/181, 본부 38/224 출동)
01:20	■ 국군광주통합병원 앞에서 월산동 주택가를 가로질러 광주공원 방향으로 9지역대, 8지역대 순으로 이동
02:50	■ 월산동을 지나가던 중 9지역대가 100미터 앞서가고, 8지역대가 따르던 중 8지역대 유도병이 음주 중이던 시민군 10~15명 발견, 전봇대에 은폐 후 수하, 10분간 교전 발생
03:10	■ 9지역대 침병지대 시민군으로부터 총격받음.
04:00	■ 광주공원 도달
05:00	■ 광주공원 확보
06:00	■ 제20사단 61연대에게 광주공원 인계 후 차량으로 송정리 비행장으로 철수
07:05	■ 송정리 비행장 도착

출처: 특전사령부 전투상보; 국방부 검찰부, 「권승만 진술조서」(1995.2.16.).

제7공수여단장 신우식은 5월 26일 10:30경 전교사 회의에 참석한 후, 15:00경 33대

대장 권승만에게 “시위자들이 광주공원을 제2본부로 사용하고 있으니, 이를 점령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여단장의 명령을 받은 33대대장 권승만은 지역대장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여 8지역대와 9지역대 병력을 작전에 투입하기로 하였다. 특공조 대장은 9지역대장 정진식 소령이었으며, 광주공원의 여러 건물을 중대별로 나누어 점령하기로 하였다. 4중대는 실내체육관, 7중대는 시민회관, 8중대는 도서관과 양로회관, 9중대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각각 점령하고, 5중대, 6중대는 예비로 운영하였다.²⁸⁷ 특공조는 5월 27일 01:00경 송정리 비행장(K57)에서 차량을 타고 광주국군통합병원으로 이동하였다. 9지역대가 먼저 출발하고 그 뒤를 8지역대가 따라가다가 각각 월산동 수박등과 월산동 주택 골목길을 이용하여 광주공원 방향으로 이동 후 04:00경 광주공원에 도착하였다.

(4) 제20사단 작전 전개 및 발포 상황

제20사단의 계림초등학교 등 탈환 작전 전개를 재구성하기 위해 각종 자료 및 제20사단 중정작전상보와 작전에 참여하였던 계엄군의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당시 작전 전개를 정리하면 아래 <표 2-1-16>과 같다.

<표 2-1-16> 제20사단 작전 전개 및 발포 상황

시 각	작 전 전 개
5.27. 02:00~03:30	■ 각 연대 주둔지에서 PL 1선으로 출발 (60연대 상무대 방향에서 진입, 61연대 주남마을 방향에서 진입, 62연대 광주교도소 방향에서 진입)
05:21~05:32	■ 61연대 전남도청 점령 완료
05:25	■ 광주시청 점령 완료(62연대 3대대)
05:30	■ 60연대 책임 지역 확보
05:42	■ 61연대 1대대 광주공원 점령 완료
05:53	■ 62연대 2대대 시민군 15명과 대치 및 교전(계림국교)

²⁸⁷ 국방부검찰부(1995.2.16), 권승만 진술조서

시 각	작 전 전 개
06:00	■ 위력 수색 및 시위 비행 복귀(AH1J : 2, 500MD : 3)
06:01	■ 전차 13대, APC 5대 전남도청 도착 완료 및 전개
06:02	■ 61연대 전일빌딩, 관광호텔 점령
06:14	■ 61연대, 62연대 책임지역 확보
06:20	■ 전일빌딩, YWCA 완전 점령

출처: 제20사단 전투상보; 「작전요도」, 육군기록정보관리단 고유번호 214-9, 606~607쪽.

제20사단은 광주 시내 지도 위에 축선을 그리고 그 축선상에 있는 목표지점을 연대 및 대대별로 점령한 후 그 일대를 수색하여 불순분자를 색출하고 평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제20사단 병력은 전교사로부터 전차 18대, APC 9대, 500MD 1대, UH-1H 3대, 코브라 2대, 차량 40대를 각각 배속받아 5월 27일 02:00경 연대별로 주둔지를 출발하였는데, 60연대는 상무대에서 서부경찰서, 광주공원 등을, 61연대는 주남마을을 출발하여 조선태학교, 전남과학관, 전남교육청, 광주경찰서(현재 광주동부경찰서), 관광호텔, 전남도청 등을, 62연대는 서방, 광주시청, 계림동 등을 거쳐 광주 시내까지 진출하여 제3공수여단(전남도청), 제7공수여단(광주공원), 제11공수여단(전일빌딩, 관광호텔, YWCA)이 「광주재진입작전」으로 확보한 각 주요 지점을 인계받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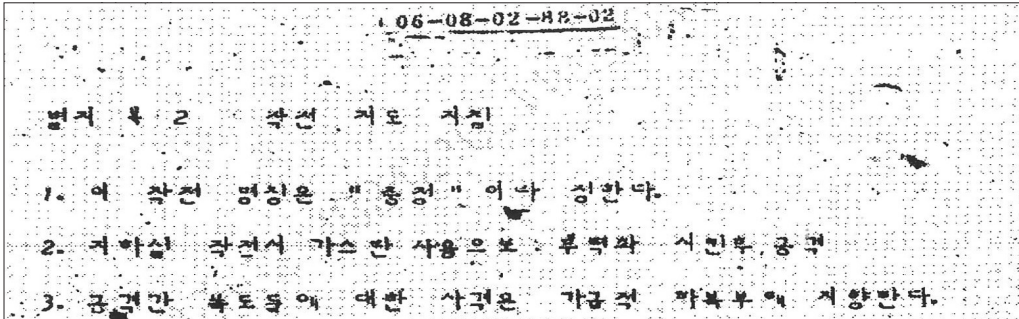
(5) 제31사단 작전 전개 및 발포 상황

제31사단은 전교사로부터 전차 6대, APC 3대, 500MD 1대, UH-1H 1대를 각 배속받았다. 그리고 96연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대는 광주지역을 제외한 전남지역을 각각 장악하였고, 96연대는 「광주재진입작전」 당시 전남대학교, 전남방직, 일신방직 근처를 장악하였다.

라) 사격 통제

제20사단 「충정전투상보」 작전 지도 지침²⁸⁸을 보면, 〈그림 2-1-36〉와 같이 「광주재진입작전」 중 가급적 하복부를 사격하게 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이 있었다.

〈그림 2-1-36〉의 작전 지도 지침대로 광주재진입작전 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하퇴부 사격’ 또는 ‘투항 권고’를 한 후, 최소한의 무력으로 진압 작전을 하였거나 당시 작전에 참여하였던 계엄군에 대한 사격 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면, 민간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광주재진입작전 당일인 5월 27일에 사망 25명, 부상자 228명의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당시 작전에 투입되었던 병력에게 ‘사격 통제’는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²⁸⁹ 결국, 작전에 투입된 계엄군이 필요 이상의 발포를 함으로써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림 2-1-36〉 제20사단 충정전투상보 별지 2 작전 지도 지침

²⁸⁸ 제20사단 「충정전투상보」 별지 2 작전 지도 지침.

²⁸⁹ 전남도청 탈환작전에 참여하였던 제3공수여단 11대대 ○지역대 ○중대장 김○○는 “지휘관 통제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도청에 있는 시민들을 살상하지 않고도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M16이 연발로 나오는 소리는 압도적입니다. 건물조차 울림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탄약이 발사된 후 나온 단내가 공기 중에 가득 퍼집니다. 당시 상황에서 지휘관이 구두로라도 사격 통제를 해야 합니다. 그 안의 시민들을 공포스럽게 한 후, 선무활동을 하였다면 모든 인원을 생포할 수도 있었을테니까요. 실내였으므로, 다 포위되었으니, 손들고 나오라고만 했어도 되었을 겁니다”, “생포하라는 구두 명령이 있다면 그런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였을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 5·18조사위, 「김○○ 진술요지서」(2023.10.5).

마) 소결

5월 23일 육군참모총장실에서 개최된 계엄회의 중 육군참모차장 황영시가 “몇 (만)명의 희생이 생겨도 좋은가”라고 질문하자, 제2군사령부 작전처장 김준봉은 “만 명(이후 2~300명으로 수정됨)은 생길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김준봉은 위원회 조사에서 “5월 24일 전달한 제2군 계획은 전교사 소준열 사령관이 작성한 것이 맞다. (희생은) 2~300명 정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때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운영관리처장 박춘식 준장은 “시민은 적이 아니다. 시민은 공포증에 걸려있다. 극소수 분자가 조종중이다. 자중지란을 일으킬 것이다. 군은 사용치 말고 심리전을 최대한 이용하자”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어서 박춘식은 “본인을 광주로 보내주시요. 최후통첩과 설득 협상하겠습니다. 사망하건 인질이 되건 시민의 희생을 극소화시켜야 훗날 대의명분이 설 것이며 전투력을 약화함이 없이 수습될 것입니다”라고 발언했다.²⁹⁰

그러나 계엄사령부는 박춘식의 제의를 거절하고, 최종적으로 새벽 시간을 이용해 광주를 기습하는 작전계획안을 채택하였다. 계엄사령부는 평화적 해결 대신 무력을 사용한 「광주재진입작전」을 선택하여 당일 작전으로 인하여 민간인 사망 25명, 부상자 228명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3. 발포 책임

가. 신군부세력 등 수뇌부

1) 전두환의 역할

전두환이 당시 진압작전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비롯하여 발포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은 아래와 같은 증거로 확인된다.

.....
²⁹⁰ 육군본부, 1980년 5월 23일자 「계엄회의록」, 829~831쪽 참조.

- ① 1996년 서울지방법원은 “합수부에서 계엄 포고령의 문안뿐만 아니라 포고문, 담화문, 발표문, 전단 등 일체에 대하여 문안을 작성하여 계엄사에 보내왔다”고 적시하였다. 더욱이 이희성은 계엄사령관 명의로 합수부에서 작성한 문안을 그대로 시행만 하였으며, 광주에서의 시위 발생 초기에도 보안사에서 광주지역에 병력을 증원하여 속히 시위를 진압하여 달라는 요청이 여러 번 있었으며, 이희성은 그에 따라 공수여단 등의 병력을 축차적으로 증파한 사실을 판결문에 적시하였다. 그리고 윤희정 전교사 사령관이 광주지역의 시위진압을 강력히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전두환이 이희성 계엄사령관에게 전교사 사령관의 교체를 요구하여 이에 따라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윤희정 전교사 사령관을 소준열로 교체한 바 있다. 재판부는 “5월 21일 16:35경 국방부 장관실에서 열린 회의에 정도영 보안사 보안처장이 참석하여 이미 작성된 자위권 보유 천명 담화문 문안을 건네주면서 담화문 발표를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 언론을 동원하여 생중계하도록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중략) “정도영 보안처장을 국방부 회의에 참석케 하여 군 수뇌부로 하여금 자위권 발동을 결정하게 한 사람”을 재판부는 ‘피고인 전두환’이라고 판시했다.²⁹¹ 5·18조사위 조사결과 전두환 중앙정보부장 서리 겸 합동수사본부장, 보안사령관은 5월 20일 심야와 5월 21일 오후 국방부장관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자위권 발동을 결정하였고,²⁹² 5월 25일 육군회관 오찬회의에서 상무총정작전 최종 결정까지 관련한 사실이 확인되었다.²⁹³

291 서울지방법원 1996.8.26. 선고 95고합1228 등 판결 중 판시 제2범죄사실 내란목적살인의 점에 관한 관여 유무 참조. 이후 2심(서울고법 1996.12.16. 선고 96노1892 판결)과 3심(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6 판결)에서도 1심 판시 사실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292 2군사령부, 「광주권 총정작전 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 149쪽, 『제5공화국전사』, 1981, 1653~1654쪽, 5·18조사위, 『이희성 진술조서』(2021.11.12).

293 대한민국재향군인회, 1997. 『12·12, 5·18실록』, 300쪽.

② 제2군사령부 작성 「광주권 충청작전 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 문건에는 5월 20일과 21일 국방부 장관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전두환 합수본부장이 “자위권 발동 강조” 발언을 한 사실²⁹⁴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5월 23일 진중채 제2군사령관이 광주에 내려가 전교사에서 받아 온 충청작전계획 중 24:00~03:00 작전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전두환이 “Good Idea”라고 말했다는 사실 역시 확인할 수 있다.²⁹⁵ 이 문건에 나오는 “자위권 발동 강조”, “Good Idea”라는 말을 수기로 가필한 주체는 진중채 제2군사령관과 함께 배석했던 제2군사령부 김준봉 작전처장일 가능성이 높다.²⁹⁶ 김준봉은 5월 21일 위 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 회의에 참석한 정도영 보안사 보안처장은 이와 반대되는 진술을 하였다. 정도영은 1996년 2월 24일 서울지방검찰청 조사에서 “구체적인 경위는 모르지만 그날 제가 목격한 바에 의하면, 회의 참석자 중 진중채 제2군사령관과 김준봉 장군만이 전투복을 입었는데, 회의 시작 전에 김준봉 장군에게 전투복을 입었기 때문에 이상해서 무슨 일이나고 물어보니 광주 현지를 보고 오는 길인데 계엄사령관과 국방장관에게 보고를 한 결과 급히 작전회의를 소집케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긴급히 소집된 회의였기 때문에 정식으로 보고가 된 것은 아닌데 그 당시 장관 접견실에서 소파에 합참의장, 각 군 총장들이 앉고 저와 김준봉 장군은 뒤쪽 철제의자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진중채 제2군사령

294 제2군사령부, 「광주권 충청작전 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 149쪽; 『제5공화국 전사(前史)』, 1981, 1653~1654쪽. “진중채 제2군사령관과 김준봉 작전참모가 5월 21일 오후 헬기편으로 광주에서 육본으로 올라와 이희성 계엄사령관에게 자위권 발동을 건의하였고, 이들 3명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장관실에 갔을 때, 이곳에는 유병현 합참의장, 전두환 보안사령관 겸 합수본부장, 노태우 수경사령관, 차규현 육사교장, 정호용 특전사령관이 함께 있었다. 이 회의에서 계엄군의 자위권 행사 문제는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295 제2군사령부, 「광주권 충청작전 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 153쪽.

296 5·18조사위는 이 문건에 기재된 필적과 김준봉의 시필(試筆)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에 필적 감정을 의뢰하였다(조사4과-545호, 2023.5.1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23년 6월 2일 “감정 필적과 대조용 필적 간 유사점이 10여 가지 있다. 다만, 제공된 감정 필적과 대조용 필적이 사본이고, 오랜 시일이 지난 점에서 명확히 동일한 사람의 필적이라고 감정할 수는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왔다.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2023-M-8329].

관이 구두 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했다.²⁹⁷ 또한 2017년 국방부 조사위원회에서 김준봉은 “5월 23일 육본 계엄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며 참석한 사실을 부인하였으나,²⁹⁸ 5·18조사위 조사에서 조사관이 당일 계엄회의록을 제시하고, 제2군 작전처장이 참석하여 발언한 내용을 제시하자, “5월 23일 회의에 참석한 기억이 난다. 제2군 작전계획서에 따르면 200~300명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했다.²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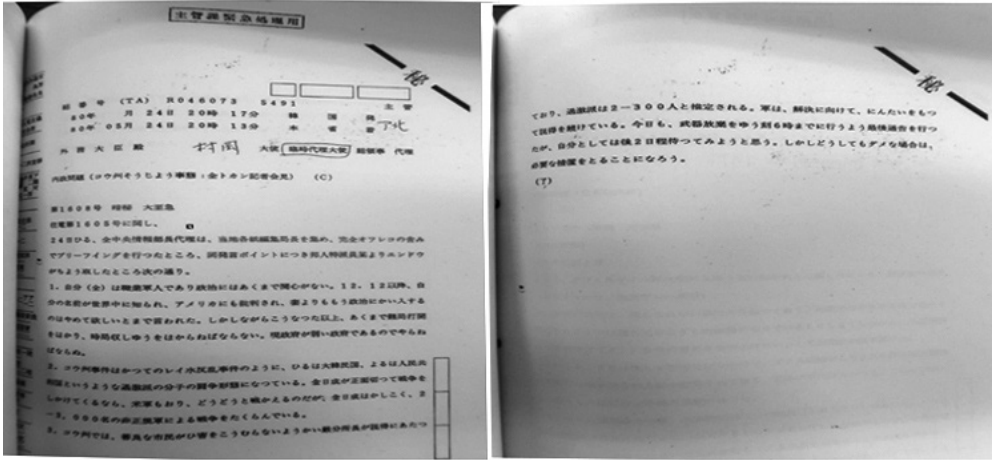
- ③ 전두환은 5월 24일 12:00경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16개 언론사 편집국장 초청 간담회³⁰⁰에서 “군은 해결을 위해 인내를 가지고 설득을 계속하고 있다. 오늘도 무기 반납을 저녁 6시까지 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나로서는 이틀 정도 더 기다리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이 무산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전두환이 5월 24일 신라호텔에서 언론사 편집국장들을 대상으로 가진 간담회에서 발언했던 내용을 주한 일본 대사가 1980년 5월 24일 20:17경 일본 외무대신에게 보낸 ‘내정 문제(광주소요사태: 전두환 기자회견)’ 문건은 <그림 2-1-37>과 같다.

297 서울지방검찰청, 「정도영 진술조서」(1996.02.24.), 19쪽.

298 국방부 5·18특별조사518진상조사위, 2017. 『조사기록철(전투기팀-11-9)』, 전화 인터뷰 녹취록, 9쪽.

299 5·18조사위, 「김준봉 진술조서」(2022.07.07.), 21쪽.

300 국가기록원 104-93, 과거사위 제8호 사건 신군부의 언론 통제 3, 19~100쪽.



〈그림 2-1-37〉 일본 외무성 문서 「내정 문제 (광주소요사태: 전두환 기자회견)」

④ 전두환은 광주에 소재하는 505보안부대로부터 「광주사태 일일속보철」에 기재된 대로 수시로 보고를 받았고, 보안사령부 소속 참모들을 광주로 내려보냈다. 보안사 기획조정처장 최예섭 준장을 5월 19일 광주에 내려보내 전교사에서 작전상황을 파악하여 직접 보고하도록 조치하였다.³⁰¹ 그리고 제1군단 보안부대장 홍성률 대령을 5월 20일 광주로 내려보내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였으며, 보안사 대공처 공작과장 최경조 대령을 5월 22일 광주로 내려보내 연행한 시위대에 대한 조사를 실행하도록 지시하였다.³⁰²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광주 시위 진압상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임무 범위에 속한다 할 수 있으나,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작전에 개입·관여하거나 전교사 사령관 교체 요구³⁰³ 등 인사 문제에 개입하는 행위, 언론사 편집국장들을 대상으로 진압 작전의 소요 시간 및 개시 일자 등을 거론하는 것은 권한 범위를

301 서울지방검찰청, 전교사 부사령관 「김기석 진술조서」(1995.12.28), 19~20쪽.

302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5·18사건 조사결과보고서』(2007.7.24), 112~113쪽.

303 소준열은 “당시 황영시 참모차장이 저에게 하는 말이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윤희정 장군은 광주사태를 너무 미온적으로 진압하므로 적합하지 않으니 바꾸어 달라’고 하였다면서 자기가 저를 동기생이고 하여 전교사 사령관으로 천거하였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했다. 서울지방검찰청, 「소준열 진술조서」(1996.1.9), 4쪽.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 ⑤ 5월 23일 전두환이 정호용 사령관을 통해 소준열 전교사 사령관에게 “소 선배, 공수부대의 사기를 고려해주고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사태를 조기에 수습해 주시오”라는 내용이 적힌 메모를 전달하였다. 소준열은 “정호용 특전사령관이 서울에 갔다 오더니 전두환 보안사령관 명의로 된 메모를 본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메모를 보니까 ‘소 선배님 공수부대의 사기를 죽이지 마십시오’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서명(Sign)을 해두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³⁰⁴ “제가 그 당시 본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사인이 독특하여 기억하고 있으며, 분명히 그와 같은 메모지를 정호용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중략) 그날 오후에 정사령관이 에어택시를 타고 왔었기 때문에 임헌표 전교사 교육훈련부장을 광주비행장으로 보냈던 것이며, 그날 사령관실에서 위 전두환 보안사령관 친필 메모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전두환 메모가 본인에게 전달된 사실을 인정하였다.³⁰⁵ 대법원도 “피고인 정호용은 광주재진입작전에 대한 논의가 육본 차원에서 한창 진행될 무렵인 5월 23일 오후 피고인 전두환으로부터 ‘공수부대의 사기를 고려해주고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사태를 조기에 수습해 달라’는 취지의 친필 메모지를 교부 받아 이를 광주 현지로 가서 소준열 전교사령관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³⁰⁶

- ⑥ 윤영기 보안사령부 본부대장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작전부대 하나회 회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해서 보안사 담당 실무자들이 골탕을 먹는 경우가 많아 불만과 고충이 있었다. 담당 실무자들도 모르는 정보가 보고되는 사례가

304 서울지방검찰청, 「소준열 진술조서」(1994.12.13.), 11쪽.

305 서울지방검찰청, 「정호용 진술조서(1996.1.12.)」, 소준열 대질신문, 29쪽.

306 서울고등법원 1996.12.16. 선고 96노1892 판결; 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6 판결.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실무자들이 편찬을 많이 먹었기 때문이죠”라고 진술했다.³⁰⁷ 그리고 이용린 보안사 정보처 정보과장은 “진압작전의 지휘는 계엄사령관, 특전사령관, 전교사 사령관, 제20사단장이 했겠지요. 그러나 총체적인 책임은 전두환 사령관의 책임이지요. 12·12 이후로 전두환 사령관의 지시나 허락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실권자니까요. 전두환 대통령은 성격상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현장의 책임자는 특전사령관이고, 모든 문제의 책임자는 전두환 대통령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했다.³⁰⁸ 김근수 중앙정보부 안전조사국장은 “요즘 시끄러운 발포 명령의 문제는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아니라 실권자가 내린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했다.³⁰⁹ 또한 박경석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차장은 “발포명령은 문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사실상 전두환의 지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한다. 발포는 보안사 계통에서 지시가 간 것이다. (중략) 5·18의 총책임자는 만인이 아는 것처럼 전두환이다”고 진술했다.³¹⁰

- ⑦ 5·18조사위가 수집한 미국 도널드 그레그 안보보좌회의 위원이 1980년 5월 8일 브레진스키 안보보좌관에게 보고한 보고서에 의하면 “전두환은 1980년 5월 7일 경찰력으로 대응하기 힘들어 2~3개 공수부대를 수도권에 재배치하였다(Chon has already moved two or three elite Army units close to Seoul, in anticipation of the Korean police’s inability to cope.)”라고 기술하고 있다.³¹¹ 그리고 브레

307 5·18조사위, 「윤영기 진술조서」(2023.3.29.), 3~4쪽. 실제로 광주에 출동한 최웅 제11공수여단장, 최세창 제3공수여단장, 박준병 제20사단장, 정호용 특전사령관, 장세동 특전사 작전처장 등 주요 장교들은 하나회 소속이었다.

308 5·18조사위, 「이용린 진술요지서」(2023.10.11.), 10쪽.

309 5·18조사위, 「김근수 진술서」(2022.09.01.), 6쪽.

310 5·18조사위, 「박경석 진술서」(2022.07.07.), 21쪽.

311 National Security Council, Memorandum for Brzezinski, 1980.5.8.

진스키 안보보좌관이 1980년 5월 19일 카터 대통령에게 보고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대통령과 그 내각은 5월 17일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결정된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아무런 토의 없이 분위기에 편승해 승인했다. 5월 17일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는 전두환이 소집했다[The Korean president and his cabinet endorsed the decision for imposition of martial law (made by a group of 40 senior generals convened by Chon Doo Hwan on May 27³¹²), apparently with little debate and considerable enthusiasm.]”고 기술하고 있다.³¹³ 그리고 도널드 그레그 안보보좌회의 위원이 1980년 5월 26일 브레진스키 안보보좌관에게 보고한 보고서에 의하면, “군사적 또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전두환은 한국의 군사 통치자로서의 입지를 거의 굳힌 것으로 보인다. 전두환은 기자들을 만나서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미리 몇 가지 암시를 주었다. 이 다음에 취하게 되는 주요 행보로 전두환이 수장으로 앉으려고 하는 혁명평의회를 결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 시점은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다(On the military political front, General Chon seems more and more clearly bent upon setting himself up as the military ruler of Korea. He has met with the press, giving some forewarning of steps he plans to take. The next major move appears to be the establishment of a Revolutionary Council, with Chon as its head. Timing for this is not yet certain.)”³¹⁴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미국 정부가 1989년 6월 19일 대한민국 국회에 제출한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성명서」에서는 “위کم 장군은 전씨가 국내 정세에 대해 비관적으로 평가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본인이) 청와대의 주인이 되기

312 사실관계와 문맥에 비추어 보면 'May 27'는 'May 17'의 잘못된 표기이다.

313 White House, Memorandum for the President (Daily Report), 1980.

314 National Security Council, Memorandum for Brzezinski, 1980.5.26.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 같다”라고 기재되어 있다.³¹⁵

2) 내란중요임무 종사자의 작전 개입·관여

국방부장관 주영복과 계엄사령관 이희성은 공식적인 지휘체계에서 발포에 대한 책임자이다. 그러나 공식적인 지휘체계에 있지 않은 보안사령관 전두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내란 세력 중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계엄사 부사령관 황영시, 특전사령관 정호용은 작전에 개입·관여하여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1980년 5·18 당시 공식적인 군 지휘체계에 개입·관여한 신군부 내란세력의 위치를 정리하면 <그림 2-1-38>과 같다.

첫째, 황영시는 5·18 기간 중 전차와 헬기를 동원하여 조기에 진압하라고 김기석 전교사 부사령관에게 지시하였고, 광주재진입작전에도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김기석 전교사 부사령관은 “재진입작전인 상무충정작전은 형식적으로는 전교사 사령부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황영시 육군참모차장의 총지휘하에 정호용 특전사령관 등 신군부 세력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준열 장군은 신군부 측에 의하여 전교사 사령관으로 임명되어 내려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군부 측에서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중략) 황영시 참모차장은 당시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던 이희성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을 제치고 거의 독단적으로 예하 부대를 직접 지휘하였습니다. 예컨대 5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황영시 장군은 저의 사무실로 4회 정도 전화를 걸어 ‘미온적인 충정작전으로 광주사태를 수습하려 하지 말

³¹⁵ 존 위컴(1999), 회고록 부록, 300~301쪽. 또한 광주고등법원은 “중앙정보부 2차장 김영선은 1980.5.10.경 ‘북괴는 최근 한국 내 사태를 결정적 시기로 판단 1980.5.15.~1980.5.20. 남침을 결정했다’는 취지의 첩보를 일본 내 각조사실로부터 입수하였는데, 육군본부 정보참모부에서는 대북특이동향에 대해 검토를 한 뒤 위와 같은 첩보는 북한의 일반적 남침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첩보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판시했다 [광주고법 2022.9.14.선고 2018나24881호, 2018나24898호(병합)].

라. 수습대책위원들과의 대화를 통하여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되니 전차와 무장헬리콥터를 동원하여 강경 일변도의 총정작전을 하라'고 질책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차는 기갑학교에 있는 것을 동원하여 투입하고, 무장헬리콥터는 신군부 측에서 공급한 UH-1H 10대, 500MD 5대, UH-1J 2대 등을 투입하여 진압작전을 신속하게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그 지시는 곧 전차의 발포 및 무장헬리콥터에서의 기총소사를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³¹⁶

또한 소준열 전교사 사령관은 "황영시 장군이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저를 전교사 사령관으로 전격 임명토록 하였던 점,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친필 메모지를 전달받은 직후인 5월 23일 15:00경 황영시 장군이 저의 사무실로 전화하여 '사령관으로 부임을 잘하였습니까'라고 축하 인사를 한 다음 전두환의 친필 메모지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취지로 '희생이 좀 따르더라도 광주사태를 조기에 수습하여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던 점, 그 뒤 5월 25일 10:00경 저의 사무실로 김재명 작전참모부장과 함께 찾아와 광주재진입작전을 위한 '상무총정작전 계획서'를 전해주면서 '5월 27일 00:00 이후에 작전을 실시토록 하십시오'라고 말을 하면서 전두환의 친필 메모지에 기재된 취지와 같이 다시 '희생이 좀 따르더라도 광주사태를 조기에 수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당시 황영시 참모차장이 육군 내에서 사실상 참모총장을 능가하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작전 수립 및 집행 등을 사실상 좌지우지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황영시 참모차장이 광주사태를 진압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316 육군본부에서는 실제 5월 22일 08:30 전교사에 「Hel기 작전계획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하달하였다. 이 문서에서는 21일 외곽 지역으로 병력이 철수한 이후 광주에 대한 최종 진압을 위한 총정작전 시 헬기에 무장을 한 채 시위대를 사격 제압하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이 지침에는 구체적으로 "시위사격은 20mm 발칸으로, 실사격은 7.62mm가 적합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육본, 「Hel기 작전계획 실시하라」, 5. 22. 08:30 전교사(CAC) 접수 문서 참조 및 서울지방검찰청, 김기석(1995.12.28.), 진술조서, 15~18쪽; 김기석은 "육군본부 작전교육참모부장 김재명 소장도 5월 23일 15:00경 전교사를 방문해서 소준열 전교사 사령관, 김기석 전교사 부사령관, 김순현 전교사 전투발전부장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왜 전차와 무장헬리콥터를 동원하여 빨리 광주사태를 진압하지 않고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느냐'고 질책을 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했다.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했다.³¹⁷

그리고 황영시는 1980년 5월 21일 16:00경 이구호 기갑학교장에게 전화를 걸어 “나, 참모차장인데 광주사태의 폭도들을 진압하고 도청을 점령하는데 전차를 동원하여야겠 다. 4·19 때와 같이 폭도들에게 전차를 빼앗길 우려가 있으므로 전차 주위에 철조망을 치고 화염병 기습에 대비하기 위해 해치(전차 문)를 닫아서 1개 대대(32대)를 동원하시 오”라고 지시를 했다.³¹⁸ 정석환 중앙정보부 전남지부장 직무대리는 “최규하 대통령이 5월 22일 22:00경 전화를 해서 ‘지금 발포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라고 물어 ‘사실입니다’라고 답한 사실이 있다. (중략) 그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전화 말씀 취지로 보아 계엄 사로부터 어떤 상황 보고도 받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 지휘계 통도 아닌 정보부의 지부장에게 직접 전화하여 물어본다는 것은 계엄사에서 아무런 보고 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군 지휘부에서 광주의 정확한 상황을 보고 드렸다면 구태여 저에게 그런 전화를 할 리가 없다고 봅니다. (중략) 광주에 투입된 공수 여단 병력들이 잔혹한 방법으로 시위대를 진압하고 나아가 시위군중에게 발포까지 한 사 실 등에 대하여는 정식지휘계통으로는 보고되지 아니하고, 황영시 육군참모차장, 정호용 특전사령관 등 신군부세력에게만 별도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했다.³¹⁹ 또한, 김병두 5·18 당시 701(육군본부) 보안부대장은 “황영시가 진압작전 총지휘자다. 허삼수, 허화평을 통해 지시 내린 사람은 전두환이다. 황영시는 전두환이 대통령 될 줄 이미 알았다”라고 진술했다.³²⁰

대법원 역시 “광주재진입작전 계획은 1980년 5월 21일부터 육군본부에서 여러 번 논 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피고인 이희성이 같은 달 25일 오전에 김재명 작전참모부장에

317 서울지방검찰청, 「소준열 진술조서」(1996.01.09.), 19~20쪽.

318 서울지방검찰청, 「이구호, 진술조서」(1995.12.26.), 6쪽.

319 서울지방검찰청, 「정석환 진술조서」(1995.12.27.), 10~11쪽.

320 5·18조사위, 「김병두 진술서」(2023.4.17.), 4쪽.

게 지시하여 육본 작전지침으로 이를 완성하여 같은 날 12:15경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피고인 전두환, 황영시, 이희성, 주영복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달 27일 00:01경 이후 이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 황영시는 같은 달 25일 오후 김재명 작전참모부장과 함께 광주에 내려가 전교사 사령관 소준열에게 이를 직접 전달하는 한편, 위와 같이 광주 재진입작전이 논의되던 중 5월 23일 12:30경 김기석 전교사 부사령관에게 무장 헬기 및 전차를 동원하여 시위대를 조속히 진압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하였다.³²¹

둘째, 정호용은 5월 27일 광주재진입작전에 필요한 가발, 수류탄과 항공사진 등의 장비를 준비하여 예하 부대원을 격려하는 등 광주재진입작전의 성공을 위하여 측면에서 지원하였다. 또한, 정호용은 육본 작전지침에 따라 전교사령관 소준열이 공수여단별로 특공조를 편성하여 전남도청 등 목표 지점을 점령하여 제20사단에 인계하기로 결정하는 등 구체적인 작전계획과 작전 준비를 하였다.³²² 그리고 6월 20일 대통령 최규하로부터 충청작전에 참가하여 빛나는 무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다.³²³ 전교사 사령관 소준열은 “정호용 특전사령관은 위와 같이 당시 군부의 실세인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친필 메모지를 가져와 강압적인 진압작전 지시를 하였으며, 5월 24일 15:00경 전교사 사령관 사무실에서 재진입작전에 대하여 상의를 하던 중 시위가 제일 극심한 도청, 사직공원, 전일빌딩에 어떤 부대를 투입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도청에는 제3공수여단을, 사직

321 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6 판결.

322 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6 판결. 518조사위, 제7특전여단장 「신우식 진술조서」(2022.08.12.), 28쪽.

323 국가기록원 제51회 국무회의 회의록(1980.6.17.) 의안번호 제447호 기록을 보면, 정호용에 대하여 “충정작전(1980.5.18.~5.29.)에 참가하여 사태진압에 공헌하였으므로 서훈(추서)하고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18 진상조사위는 2023.5.2. 육군기록정보관리단에 기록물 열람 및 사본 요청을 하였다.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의 2023.7.14. 화신(조사4과-512, 556)의 불임 자료인 훈장증에 따르면, “귀하는 충정작전에 참가하여 빛나는 무공을 세웠으므로 대한민국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훈장을 수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공원에는 제7공수여단을, 전일빌딩에는 제11공수여단을 각 투입하여 작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등 광주진압작전에 직접 관여하여 중요한 작전상의 문제에 대한 저의 결정에 깊숙이 관여하였으며, 결과적으로 5월 27일 재진입작전을 하게 된 것도 황영시 참모차장은 물론, 정호용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 것입니다. (중략) 그 당시 전교사에서는 정호용 특전사령관을 위한 전용 방을 전교사 2층 소재 전교사 감찰참모 주영환 대령 방에 마련하여 주었고(당시 방 입구에는 2성 성판까지 부착하였음), 그 옆방인 전교사 기밀실에는 특전사 전용의 상황실이 설치되어 특전사 전용 무전기와 상황판이 구비되어 있었으며, 전교사 건물 옥상에는 특전사 전용 무전기 안테나가 가설되어 있었고, 지하상황실에는 특전사 소속 성명 불상 소령이 연락장교로 파견되어 광주사태 기간 중에 상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정호용은 수시로 전교사 사령관인 저와 접촉하면서 작전통제권자인 저의 작전통제권 행사에 수시로 간섭하였고, 5월 23일 이후에는 공수여단의 집결지인 광주비행장에서 공수여단장 등과 수시로 접촉하며 제7, 11, 3공수여단에 대한 작전 지휘를 직접 하였습니다. (중략) 광주사태 진압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전두환, 황영시, 정호용 등 신군부의 핵심 장성들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했다.³²⁴

대법원 역시“피고인 정호용은 광주에 투입된 공수여단의 모체부대장으로서 공수여단에 대한 행정, 군수지원 등의 지원을 하는 한편, 소준열 전투교육사령부 사령관에게 공수여단의 특성이나 부대훈련상황을 알려 주거나 재진입작전에 필요한 가발, 수류탄과 항공사진 등의 장비를 준비하여 예하 부대원을 격려하는 등 광주재진입작전의 성공을 위하여 측면에서 지원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하였다.³²⁵

324 5·18조사위, 「박용문 진술조서」(2022.11.21.), 6~8쪽., 서울지방검찰청, 「소준열 진술조서」(1996.1.9.), 22~24쪽.

325 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6 판결.

나. 현장지휘관 및 발포 실행 장병

1994년 정동년 광주민주운동연합 상임의장 등 322명이 전두환·노태우 등 당시 진압에 참가했던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35명을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³²⁶ 그러나 서울지방검찰청은 1995년 7월 18일 “피의자들이 정권 창출 과정에서 취한 5·18 진압 등 일련의 행위는 헌법질서를 바꾸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이유로 피고소인과 피고발인 58명 전부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후 1995년 11월 30일 설립된 특별수사본부는 5·18과 관련하여 전두환, 노태우, 유학성, 황영시, 차규현,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주영복, 이희성, 정호용 총 11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현장 지휘관은 전부 불기소처분하였다.³²⁷

검찰은 각 단계에서 발포 현장 책임자들의 법적 책임은 거론하지 않았는데 이는 군대의 특성상 상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할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발포에 직접 가담한 현장 지휘관에게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더라도 살인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이다. 광주 현장에 투입된 군인들이 저지른 살상행위를 볼 때 시위진압의 차원, 시민들의 저항에 대한 방어 차원을 넘어서 자행된 수많은 범죄 사례³²⁸ 등에 대하여는 현장 지휘관과 실행 장병에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현장지휘관과 실행 장병에게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내란목적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면, 살인

326 서울지방검찰청 95형제144116호 『5·18사건 수사기록』 중 김상근 외 293명에 의해 1994. 5. 13 일자로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죄’로 고발된 고발장 참조.

327 대구고등군법회의는 1951. 12. 16. 거창양민학살사건(1951.2.9.~11. 발생) 관련 경남지구 계엄사령관 김종원 대령에게 국회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년, 제11사단 9연대장 오익경 대령에게 살인죄로 무기징역, 3대대장 한동석 소령에게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328 그 예로는 시위 초기 단계에서 구경하는 시민들을 무차별 난타한다든지, 건물 내에까지 들어가 구타하고 연행하여 끌고 간다든지, 여성에 대한 난폭한 성폭력이든지, 주택가·상가·학원 등에 난입하여 잔학행위를 한다든지, 여관에 있는 부부를 끌고 간다든지 하는 잔혹한 살상, 구타, 체포행위를 들 수 있다. 한인섭, 2002, 『국가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 및 피해 회복 - 5·18 민주화운동의 법적 해결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43권 제2호, 209쪽.

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현장 지휘관은 실탄을 통제하고, 발포하는 경우 육군 야전예규에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 자위권 차원에 그치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자위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발포가 계속되는 경우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하며 발포에 대한 보고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현장 지휘관도 발포에 대한 책임이 있다.

4. 소결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진행되었던 검찰수사와 법원의 재판은 12·12군사반란과 5·18 내란행위로 기소된 16명을 군사반란죄와 내란죄 등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한 것이다. 공소시효라는 법률적 제약과 전직 대통령 2명을 포함한 정부 요직을 차지했던 신군부 권력의 핵심부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에서 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할 때 이들을 짧은 기간 내에 수사하고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갖는 의미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살해죄, 상해죄 등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를 수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법조로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심층적·포괄적 수사를 하지 못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법원도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아 총체적·실체적 진상을 규명하지 못했다. 따라서 5·18에 대한 진상규명은 여전히 ‘미완의 5·18’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현재진행형으로서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5·18조사위는 발포의 배경, 날짜별·장소별 구분에 따른 발포 경위를 정리하였고, 발포 책임자와 관련해서 내란 행위를 주도한 신군부 세력, 현장 지휘관 및 실행 장병 등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첫째, 5월 19일 오후 광주고등학교 인근 지역에서 일어난 발포와 관련해서 차정환 대위는 시위대가 장갑차 주위로 몰려들어 장갑차 밑에 불이 붙은 지푸라기를 던져 놓자 최

초에는 시위대를 해산시켜 흩어지게 만들 목적으로 M16 소총으로 하늘을 향해 위협사격을 하였다. 총소리에 놀란 시위대가 계림파출소 방향으로 50m 정도 도망친 상황에서 장갑차 밑에 불이 붙은 지푸라기를 치우려고 장갑차에서 내린 계엄군을 엄호하기 위해 다시 아스팔트를 향해 위협사격을 하였다. 이때 차정환은 M16 소총의 조종간을 자동발사로 바꾼 후 발포하였다.³²⁹ 이 과정에서 김○○은 하복부에서 좌측 대퇴부 뒤쪽으로 관통상을 입었다.³³⁰ 김○○의 부상 부위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 법의학과장 이상한은 직격탄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은 하복부 이외에 우측 손목에도 관통상을 입었다. 시위대가 도망치는 상황에서 M16 소총의 조종간을 수동 단발로 놓고 하늘을 향해 사격을 하면 엄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발사로 전환하여 사격하여 김○○에게 직격탄에 의한 부상을 입힌 행위는 위협사격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둘째, 5월 20일 밤 광주역 일원에서 실탄을 분배하기 위해 출동한 계엄군들이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서 아스팔트 바닥을 지향해서 발포할 경우 사격 과정에서 유탄이 발생하여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같은 날 저녁 광주역 인근에서 김재화 등 5명이 사망하고, 최○○ 등 23명이 총상을 입은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와 같은 계엄군의 발포행위는 자위권 차원을 벗어난 것이다. 5월 20일 밤 김길수 제3공수여단 16대대장의 진술³³¹에 의하면, 제3공수여단장 최세창은 윗선과 통화를 한 후, “위급상황에는 발포하라”는 명령을 이 당시에 내렸다. 즉, 이날 밤 실탄 배분과 발포 명령은 최세창이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윗선의 명령을 받아 행하였다고 판단된다.

셋째, 5월 21일 오전 전남대 앞에서 시위대와 임신부를 향한 발포와 같은 날 오후 전남도청 앞 발포에서 현장에 있던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계엄군이 하늘을 향해 발포하고, 이

³²⁹ 5·18조사위, 「양○○ 진술조서」(2022.08.04.), 3~4쪽; 5·18조사위, 「임○○ 진술조서」(2022.11.16.), 16쪽.

³³⁰ 5·18조사위, 「김○○ 진술조서」(2022.08.03.), 8쪽.

³³¹ 5·18조사위, 「김길수 진술조서」(2022.7.29.), 8~14쪽.

후 시위대를 향하여 행해진 집단 발포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당시 임신부를 비롯한 시위대를 향한 발포와 사격 통제 없이 30여 분 동안 집단 발포를 한 것은 자위권을 벗어난 것이다. 군인의 시위대를 향한 발포가 상부로부터의 발포명령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³³²

넷째, 5월 21일 밤부터 5월 26일까지 외곽도로봉쇄 및 외곽선 차단작전 간 발생한 발포와 관련해서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 검찰부가 1995년 발표한 5·18관련 사건 수사결과는 “(5월 21일 13:00경 도청 앞 발포가 있는) 그 이후 계속된 발포 중에는, 비록 시위대가 무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에 나와 단순히 구호를 외치거나, 차량으로 도로를 지나가거나, 총상자들을 구호 또는 호송하려 하거나, 심지어는 시위 현장 부근에서 구경하기 위해 나타난 경우로서 구체적으로 총기 발사나 차량 돌진 등 군에 대하여 직접적 위협을 가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까지 발포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당시 실탄 및 사격 통제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³³³ 그리고 외곽도로봉쇄 및 외곽선 차단작전 중 발생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는 상관의 명령과는 무관한 행위라 할지라도 그 실행 장병에 대한 범죄 성립에는 의문이 없다 할 것이다.

다섯째, 5월 27일 광주재진입작전에서 전남도청 등을 다시 장악하려면 무장하고 있는 시위대를 제압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저항하는 시위대와의 교전은 불가피한 상황이 초래되므로 필연적으로 사상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광주재진입작전의 실시를 강행하기로 하고 명령을 한 행위는 살상행위를 지시하거나 용인하려는 의사를 분명하게 내비친 것이다. 광주재진입작전 명령은 시위대의 무장상태를 고려해서 수립

332 5·18조사위, 『정OO 진술조사』(2023.8.18.), 5쪽. 정OO 중사(11여단 63대대 정보하사관)은 “최초 30분 동안은 상부에서 어떠한 지침도 없이 그냥 사격을 했습니다. 총알을 받아마자 앞으로 나가서 보이는 대로 쏜 것입니다. (중략) 뒤에서 누군가가 집합하라고 하기 전까지는 사격 중지 통제가 없었고 보이는 대로 사살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33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 검찰부(1995.7.18.), 『5·18관련 사건 수사결과』, 201쪽. 이 수사 결과는 1995. 11. 30. 새롭게 출범한 '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주임검사 김상희) 이전에 수사를 했던 수사팀(주임검사 장윤석)의 결과이다.

한 작전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시위대에 대한 사격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작전을 실시하라는 명령에는 작전의 범위 내에서는 시민을 살해하여도 좋다는 발포 명령까지 함께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³³⁴

여섯째, 5·18민주화운동 기간 중 발생한 계엄군의 발포는 주권자인 시민의 정당한 민주주의의 수호라는 주권 행위에 반한 내란 행위라는 범죄의 일환으로 발생하였다. 내란수괴 전두환이 계엄군 진압작전의 중심에 있었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인 황영시 계엄사 부사령관, 정호용 특전사령관 등이 진압작전에 실질적으로 관여·개입한 사실이 사법부의 판결에서 인정되었다. 또한, 발포에 관여한 현장 지휘관과 실행 장병들은 계엄훈령 및 예규 등 규범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의처형 등 반인도적인 범죄까지 자행하였다.

.....
334 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6 판결.

제2절 군인과 경찰의 피해

1. 조사 배경

2021. 5. 1. 개정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18진상규명법) 제3조(진상규명 조사범위)의 제11호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작전에 투입된 군과 시위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상해 등에 관한 피해”(이하 군·경 피해)가 법정조사과제로 추가되었다. 위원회는 2021년 5월 31일 이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과제로서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군과 경찰이 생산한 기록과 국가보훈처가 관리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경피해자들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대상을 확인하는 한편, 언론사의 홍보를 통해 신청사건도 접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방부 기록정보단, 국가보훈처 등의 기관방문을 포함하여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생한 계엄군의 오인교전 사건 현장 등의 실지조사, 군 기록 등의 기록조사, 관련 피해자들의 대인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많은 군·경 피해자들이 ‘부당한 명령에 의해 광주에 투입’되어 경험한 작전과 목격된 상황 등으로 오랜 세월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상태에 대한 조사연구용역 등을 포함하여 조사 결과보고서를 2023년 12월 26일 전원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어 ‘진상규명불능’으로 결정되었다.³³⁵

따라서 본 종합보고서에는 5·18당시 군·경 피해는 조사된 날짜별, 주요 사건별 피해 현황을 기록으로 공식 확인된 내용을 중심으로 표로 정리하여 기재하고, 5월 20일 노동청 앞 경찰 4명의 버스에 의한 압사 사망 사건, 5월 20일 신안사거리 정관철 중사의 차

³³⁵ 부결사유 및 이에 따른 추가 의견은 직권조사 사건(직사-13)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작전에 참여한 군과 시위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상해 등에 관한 피해’ 진상규명조사보고서 참조.

량에 의한 사망 사건, 5월 21일 권용운 일병의 장갑차 압사 사망 사건, 5월 21일 조선대에서 주남마을로 철수하는 과정에서 총격을 받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관형 상병의 사망 사건, 그리고 광주외곽봉쇄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계엄군 간 오인교전에 의한 계엄군 사망 사건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였다.

〈표 2-2-1〉 5·18민주화운동 관련 최초 군·경 피해 조사 대상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군			경찰		
		소계	사망	상해	소계	사망	상해
계	308	151	23	128	157	4	153
과거 기록·문헌 사건	291	140	23	117	151	4	147
우리 위원회 발굴 사건	5	5	0	5	0	0	0
군·경 신청사건	12	6	0	6	6	0	6

-12건

〈표 2-2-2〉 5·18민주화운동 관련 최종 군·경 피해조사 대상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군			경찰		
		소계	사망	상해	소계	사망	상해
계	296	144	22	122	152	4	148
과거 기록·문헌 사건	288	137	22	115	151	4	147
우리 위원회 발굴 사건	5	5	0	5	0	0	0
군·경 신청사건 중 「진상규명」 결정 사건	3	2	0	2	1	0	1

위 <표 2-2-1>의 ‘과거 기록·문헌 사건’의 군 사망자 23명³³⁶ 중 1명³³⁷은 군내 안전사고 사망자이기 때문에 5·18 관련 군·경 피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표 2-2-2>의 최종 군 사망자는 22명으로 조정하였다.

<표 2-2-1>의 ‘과거 기록·문헌 사건’에서 군 상해자 117명 중 2명은 ‘군·경 신청사건 중 「진상규명」 결정된 사건으로, 중복(2건)을 제외하여 115건으로 조정하였다. <표 2-2-1>의 ‘군·경 신청사건’ 12건 중 ‘타과 이첩’ 및 ‘각하’와 ‘진상규명불능’ 결정 등 9건을 제외하였으므로, <표 2-2-2>의 ‘군·경 신청사건 중 「진상규명」 결정 사건’을 3건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표 2-2-2>의 ‘군·경 신청사건 중 「진상규명」 결정 사건’의 경찰 상해 사건 1건은 위 표 ‘과거 기록·문헌 사건’에서 제시한 147명에 포함되지 않는 상해자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5·18 관련 최종 조사대상자로 판단한 군·경 피해자는 위 <표 2-2-2>와 같다.

한편 위원회는 5·18 기간 중 군·경 피해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하여 각종 기록·문헌 자료 및 병상일지 등 피해자의 개인 기록³³⁸을 조사하여 5·18 기간 중 군·경 사망자 및 상해자 현황을 파악하였다. 결과는 아래의 <표 2-2-3, 4, 5, 6>과 같다.

336 군기록 등의 자료와 5·18민주화운동 진압작전이 종료된 후 계엄사에서 발표한 군·경 사망자는 경찰 4명, 계엄군 23명 등 27명이었다. 계엄군 23명은 아래의 1명 외에 14명이 시위 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계엄군 간 오인교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337 1980년 5월 28일 소대장의 권총 오발사고로 사망한 9전차대대 일병 권성환.

338 국군보안사령부(1980), 「광주사태일일속보철」; 국군보안사령부, 「광주시위사태진행상황」; 육군본부, 「육군본부 상황일지」; 전교사(1980. 5. 10.~6. 2), 「광주사태시 전교사 작전일지」; 전교사 작전처(1980. 5. 14.~27), 「전교사 작전 상황일지」; 「광주소요사태진압작전(전투상보, 제3특전여단)」, 『5·18사건 수사기록, 117-039』; 「광주소요사태 진압작전(제7특전여단 전투상보)」, 『5·18사건 수사기록, 117-039』; 계엄사령부(1980), 「광주사태 관련 참고철 통계자료」; 광주경찰서(1980), 「광주경찰서 상황처리기록부」; 육군본부(1985), 『국회특위부록(1)』; 서울지방검찰청(1995. 7. 18.), 『5·18사건 수사기록』; 전남지방경찰청(2005. 9.), 『안병하 前 전남 경찰국장 진상조사 보고』; 전남지방경찰청(2017. 10.), 『5·18민주화운동 과정 전남경찰의 역할』 등 기록·문헌 자료와 국가보훈부 및 육군기록정보단에서 확보한 전사확인서, 매화장보고서, 병상일지, 전공상확인서 등 개인 피해 기록.

〈표 2-2-3〉 5·18 당시 부대별, 일자별 군·경 사망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5. 20.	5. 21.	5. 22.	5. 23.	5. 24.	5. 27.
계		26	5	3	1	1	14	2
군	소계	22	1	3	1	1	14	2
	제3공수특전여단	1	1	·	·	·	·	·
	제7공수특전여단	3	·	1	·	·	1	1
	제11공수특전여단	11	·	2	·	·	9	·
	전교사	2	·	·	1	·	1	·
군	제20보병사단	2	·	·	·	1	·	1
	제31보병사단	3	·	·	·	·	3	·
경찰	소계	4	4	·	·	·	·	·
	함평서	4	4	·	·	·	·	·

- 제7공수특전여단 이관형은 5. 21. 실종, 5. 26. 사망한 채 발견되어 5. 21. 사망으로 기록함.
- 사망자 계급별 현황은 군 사망자 장교 3명, 부사관 6명, 병 14명이고, 경찰 사망자 경장 1명, 순경 3명 임.
- 제7공수특전여단 김경용은 보안사 광주소요사태 관련철(광주 소요 사태 26-3보) 5. 26. 국군광주통합병원에서 사망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대화장보고서 등에 5. 24. 송암동에서 사망으로 기록되어 5. 24. 사망으로 기록함.

〈표 2-2-4〉 5·18 당시 부대별, 일자별 군 상해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5. 19.	5. 20.	5. 21.	5. 22.	5. 23.	5. 24.	5. 26.	5. 27.	5. 29.	미상
계	115	3	9	21	4	2	56	1	13	3	3
제3공수특전여단	10	·	1	5	·	·	·	·	3	·	1
제7공수특전여단	12	·	1	2	·	·	1	1	5	2	·
제11공수특전여단	67	3	7	11	2	2	38	·	3	·	1
전교사	9	·	·	1	·	·	6	·	1	·	1
제20보병사단	5	·	·	2	2	·	·	·	1	·	·
제31보병사단	10	·	·	·	·	·	10	·	·	·	·

구분	계	5. 19.	5. 20.	5. 21.	5. 22.	5. 23.	5. 24.	5. 26.	5. 27.	5. 29.	미상
제61항공단	1	·	·	·	·	·	·	·	·	1	·
제1118야공단	1	·	·	·	·	·	1	·	·	·	·

- 5·18 관련 상해자 115명 중 5·18 기간(5. 18.~5. 27.)이 아닌 5. 29. 잔당 소탕을 위해 무등산에 헬기로 병력을 투입하다가 헬기 추락사고로 상해를 입은 인원 3명(제7공수특전여단 ○○대대 대위 박○○, 제7공수특전여단 ○○대대 일병 신○○, 제61항공단 203항공대 일병 김○○)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상해 일자가 명확하지 않은 인원 3명(제3공수특전여단 ○○대대 대위 오○○, 제11공수특전여단 중위 임○○, 전교사 이병 이○○)이 포함되어 있음.
- 5·18 기간(5. 18.~5. 27.) 중 시위진압 과정 또는 계엄군 간 오인사격에 의한 상해가 아닌 인원이 3명 포함되어 있음. 5. 21. 매복 준비 중 텐트 줄에 걸려 넘어져 손을 다친 상해자(20사 61연대 상병 김○○)와 5. 26. 숙영지인 광주 1전비 내무반에서 권총 오발사고로 골반에 관통상을 입은 상해자(7공수 ○○대대 일병 백○○), 5. 27. 후두부염좌로 입원한 인원(11공수 ○○대대 일병 손○○)임.
- 군 상해자 계급별 현황은 장교 17명, 하사관 48명, 병사 50명임.

〈표 2-2-5〉 5·18 당시 일자별 경찰 상해자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5. 18.	5. 19.	5. 20.	5. 21.	5. 22.	미상
계	16	3	2	6	1	1	3
곡성서	1	·	·	·	·	1	·
함평서	2	·	·	2	·	·	·
영광서	2	·	·	2	·	·	·
전남경찰청 118전경대	1	·	·	·	1	·	·
담양서	3	3	·	·	·	·	·
기동1중대	2	·	·	2	·	·	·
산수동파출소	1	·	·	·	·	·	1
서울청 청량리 경찰서 112타격대	1	·	1	·	·	·	·
화순서	1	·	1	·	·	·	·
광주서	1	·	·	·	·	·	1
소속 미상	1	·	·	·	·	·	1 (문○○)

- 소속 또는 성명 확인된 인원

〈표 2-2-6〉 5·18 관련 문헌별 경찰 상해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5. 17. 이전	5. 18.	5. 19.	5. 20.	5. 21.
광주사태 관련 참고철 통계자료 (계엄사령부, 1980.)	78		34	6	15	23
5·18민주화운동 과정 전남경찰의 역할 (전남지방경찰청, 2017. 10.)	75	66			9	
광주경찰서 상황처리기록부 (광주경찰서, 1980.)	8		3		5	
안병하 前 전남경찰국장 진상조사 보고 (전남지방경찰청, 2005. 9.)	147	66	32	6	21	22

•소속 / 성명 미확인된 인원

위원회는 직권사건 이외에 신청·제보 사건을 발굴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³³⁹ 특히 5·18 관련 군 피해자들의 다수를 차지하는 당시 공수부대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특전동지회’를 방문하여 군·경 피해 조사에 대한 배경과 취지, 공감대를 형성하여 상호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진상규명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홍보활동을 통한 신청·제보사건은 총 41건(‘관련 없음’으로 확인된 8건을 제외)이었다. ‘민간인 피해’ 16건은 조사1과에서 접수하였으며, 군 피해 사건 9건과 경찰 피해 사건 8건은 신청사건으로 접수하였고, ‘특전동지회’에서 접수받은 5건은 직권사건에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5·18 관련 군·경 피해에 대한 신청사건은 12건 중 ‘조사개시 후 조사3과 이첩’ 1건, ‘조사개시 전 각하’ 4건, ‘조사개시 후 각하’ 1건, ‘진상규명 불능’ 3건, ‘진상규명’ 결정 사건 3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진상규명’ 결정 사건 3건은 군 상해 사건 2건(직권사건 병합), 경찰 상해 사건 1건이다.

339 2021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보도·공중파 방송 등을 통하여 군·경 피해 신고 관련 공익자막을 송출하였으며,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는 군·경찰 피해 제보 관련 공익캠페인 영상을 송출하여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2. 일자별, 상황별 피해 실태

일자별·상황별 피해 조사 결과는 시간적·대상적·내용적 범위를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군·경 피해자 중 사망, 해외 이민, 신원조회 불가, 조사 미착수 등의 사유로 조사하지 못한 피해자 123명을 제외한 173명에 대해 조사 결과이다.

〈표 2-2-7〉 5·18 관련 군·경 피해 조사 현황

(단위: 건)

구 분	계	군			경 찰			
		소계	사망	상해	소계	사망	상해	
계	계획	296	144	22	122	152	4	148
	실시(%)	173(58)	140(0.3)	22	118	33(22)	4	29
	미실시(%)	123(42)	4(99.7)	0	4	119(78)	0	119
과거 기록·문헌	계획	288	137	22	115	151	4	147
	실시	165	133	22	111	32	4	28
	미실시	123	4	0	4	119	0	119
우리 위원회 발굴 사건	계획	5	5	0	5	0	0	0
	실시	5	5	0	5	0	0	0
	미실시	0	0	0	0	0	0	0
군·경 신청사건 '진상규명'결정 사건	계획	3	2	0	2	1	0	1
	실시	3	2	0	2	1	0	1
	미실시	0	0	0	0	0	0	0

1) 5월 20일 차량 시위대에 의한 함평경찰서 소속 경찰 4명의 사망 사건

5. 20. 무등경기장을 출발하여 전남도청 앞까지 진출한 차량 시위 과정에서 배○○가 운전한 대형트럭이 노동청 사거리에 대치하고 있던 경찰저지선을 향해 돌진하면서 현장

에 있던 경찰 4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경장 정충길³⁴⁰, 순경 강정웅³⁴¹, 순경 박기웅³⁴², 순경 이세홍³⁴³은 1980. 5. 20. 20:30~21:30경 노동청 앞에서 시위대를 태운 고속버스가 돌진할 때 버스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고, 구급차를 이용하여 전남대 의대를 거쳐 조선대학교부속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사망하였으며, 이들 시신은 상무관에 안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340 작전 관련 기록 문헌은 보안사(1980), 『광주사태일일속보철(383-1980-89)』,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기무사 보관자료-12)』, 146, 152, 173쪽; 전교사 작전처 상황실, 『상황일지(80. 5. 14.~80. 5. 27.)』, 『5·18사건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117-39권, 46374쪽; 전남경찰국, 집단사태 발생 및 조치사항 184~187쪽;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1980. 12. 29. 선고, 『피고인 배○○ 항소 기각 판결』; 경찰청(2005), 『5·18 관련 경찰관 피해(순직, 공상), 훈/포장, 징계 현황』,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조사위원회(국가기록원, 104-107)』, 204~207쪽; 전남지방경찰청, 『안병하 前 전남경찰국장 진상조사 보고』, 16쪽; 전남지방경찰청, 『5·18민주화운동 과정 전남 경찰의 역할』, 78쪽. 개인 피해 관련 기록은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 검찰부(1995. 7. 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번사기록(014 정충길), 광주지방검찰청』, 『5·18 관련 사건 수사기록』, 117-84권, 095701~095708쪽. 유가족 및 기타 참고인 등의 진술은 5·18조사위, 『정○○ 진술요지서』(2023. 3. 24.), 3~4쪽; 5·18조사위, 『배○○ 진술요지서』(2022. 6. 22.) 3, 4, 5~8쪽; 5·18조사위, 『윤○○ 진술요지서』(2022. 3. 24.), 2~3쪽; 5·18조사위, 『송○○, 김○○ 진술요지서』(2023. 1. 4.), 2~3쪽 참조.

341 작전 관련 기록·문헌은 각주 64), 개인 피해 관련 기록은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 검찰부(1995. 7. 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번사기록(021강정웅)』, 광주지방검찰청, 『5·18관련 사건 수사기록』, 117-84권, 095758~095763쪽. 유가족 및 기타 참고인 등의 진술은 5·18조사위, 『강○○ 진술요지서』(2022. 5. 3.), 2, 3, 5쪽; 5·18조사위, 『김○○ 진술요지서』(2022. 5. 3.), 2쪽; 5·18조사위, 『배○○ 진술요지서』(2022. 6. 22.), 3, 4, 5~8쪽; 5·18조사위, 『윤○○ 진술요지서』(2022. 3. 24.), 2~3쪽; 5·18조사위, 『송○○, 김○○ 진술요지』(2023. 1. 4.), 2~3쪽. 참조.

342 작전 관련 기록·문헌은 각주 64), 개인 피해 관련 기록은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 검찰부(1995. 7. 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번사기록(022박기웅)』, 광주지방검찰청, 『5·18 관련 사건 수사기록』, 117-84권, 095764~095769쪽. 유가족 및 기타 참고인 등의 진술은 5·18조사위, 『박○○ 진술요지서』(2022. 3. 22.), 2쪽; 5·18조사위, 『배○○ 진술요지서』(2022. 6. 22.), 3, 4, 5~8쪽; 5·18조사위, 『윤○○ 진술요지서』(2022. 3. 24.), 2~3쪽; 송○○, 김○○(2023. 1. 4), 진술요지 2~3쪽. 참조.

343 작전 관련 기록·문헌은 각주 64) 개인 피해 관련 기록은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 검찰부(1995. 7. 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번사기록(020이세홍)』, 광주지방검찰청, 『5·18 관련 사건 수사기록』, 117-84권, 095752~095757쪽. 유가족 및 기타 참고인 등의 진술은 5·18조사위, 『이○○ 진술요지서』(2022. 3. 30.), 2, 3~4쪽; 5·18조사위, 『배○○ 진술요지서』(2022. 6. 22.), 3, 4, 5~8쪽; 5·18조사위, 『윤○○ 진술요지서』(2022. 3. 24.), 2~3쪽; 5·18조사위, 『송○○, 김○○ 진술요지』(2023. 1. 4), 2~3쪽. 참조.

〈표 2-2-8〉 5. 20 광주역 일원의 군·경 사망자 및 상해자 현황

구분	계	사망	중상	경상
군인	6	1	4	1
경찰	-	-	-	-

또한 이 과정에서 순경 김○○³⁴⁴ 등은 돌진하는 버스와 충돌하여 요부좌상, 두 대퇴부 좌상, 좌측수관절염좌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5월 20일 광주역 일원 진압 작전 계엄군 피해와 정관철 중사의 사망

〈표 2-2-9〉 군·경 사망자 및 상해자 인적 사항

구분	소속	계급	성명	병명	사망 / 상해	입원	퇴원
사망	제3공수특전여단 16대대	중사	정관철	차량 압사	80. 5. 20.	.	.
부상	제3공수특전여단 ○○대대	중사	호○○	우측 팔 골절 등	80. 5. 20.	80. 5. 21.	80. 11. 30.
	제3공수특전여단 ○○대대	중사	장○○	우측 다리 골절 등	80. 5. 20.	80. 5. 21.	81. 3. 31.
	제3공수특전여단 ○○대대	중사	이○○	타박상, 열창 등	80. 5. 20.	80. 5. 21.	80. 6. 5.
	제3공수특전여단 ○○대대	하사	조○○	우측 하지 총상	80. 5. 20.	80. 5. 21.	80. 8. 26.
	제3공수특전여단 ○○대대	하사	김○○	우측 다리 골절 등	80. 5. 20.	80. 5. 21.	80. 7. 13.

344 작전 관련 기록·문헌은 각주 64) 개인 피해 관련 기록은 조사과-2397(2021. 11. 14.), 「5·18민주화운동 관련 군·경 피해 2차 문헌조사결과 보고」 [경찰 사망자 및 부상자 관련 문헌자료, 김○○], 조사2과-351(2022. 3. 4.), 「1980년 부상 경찰관 인적사항 관련 요청 자료 회신(전남경찰청)」, 5·18조사위, 「배○○ 진술요지서」(2022. 6. 22.), 3. 4. 5~8쪽; 5·18조사위, 「윤○○ 진술요지서」(2022. 3. 24.), 2~3쪽; 5·18조사위, 「송○○, 김○○ 진술요지」(2023. 1. 4.), 2~3쪽, 참조

위 정관철 중사의 사망은 작전 관련 기록·문헌, 개인 피해 관련 기록, 목격자 등 참고인 진술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특히 사건의 시각과 관련하여 21:30경에서 24:00경까지 다양하며, 그 중에는 “밤이 깊어 시위 상태가 소강상태인 시각”이라는 진술도 있다. 이 모든 기록과 진술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사망자 정관철은 1980. 5. 20. 23:00경 시위대가 운전하던 트럭이 광주역에서 신안사거리 방향으로 질주해오다가 신안사거리에서 전남대학교 방면으로 방향 전환을 하려던 트럭에 충격 당해 두개골 골절 및 복부가 분리될 정도의 상해를 입고 사망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위 부상자들 중 호○○, 장○○, 이○○는 5. 20. 야간에 차량시위가 가장 극렬했던 광주고속터미널 앞 도로에서 시위를 진압하다가 차량 등에 충격을 당하여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상 시각은 02:30경으로 추정된다. 또한 조○○, 김○○은 5. 20. 24:00경 광주역 앞에서 부상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조○○의 부상은 국군광주통합병원 병상일지 군의관 경과기록에는 ‘5. 20. 우측 슬관절 부위 총상으로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국군광주통합병원 간호기록에는 ‘5. 20. 24:00경 광주역전에서 권총에 의해 상해(5. 21. 03:30 입실)’라고 되어 있으며, 국군수도통합병원 간호기록에는 ‘5. 21. 01:00경 광주역전 앞에서 우측하지 관통상을 입고 국군광주통합병원을 경유, 5. 29. 항공기에 의해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입실’이라고 되어 있다. 조○○의 부상 원인이 권총에 의한 관통상이라면 이 시각 시위대는 총기류로 무장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현장 지휘관의 권총 발포에 의한 부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와 그 가족, 또는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등의 참고인 조사가 불가능하여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

3) 5월 21일 도청 앞 집단발포 당시 권용운 일병의 사망 사건

도청 앞 진압작전으로 계엄군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상해 피해를 입었으며, 군·경 사

망자 및 상해자 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피해자 인적사항은 보고서 별책에 수록되어 있다.

〈표 2-2-10〉 군경 사망자 및 상해자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사망	중상	경상
군인	9	1	3	5
경찰	-	-	-	-

• 제11공수특전여단 전투상보 등 작전 관련 기록·문헌에는 금남로 도청 작전 간 계엄군 1명이 압사하고, 8명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작전 관련 기록·문헌, 개인 피해 관련 기록, 목격자 등 참고인 진술 등에 따르면, 63세대 일병 권용운은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방어를 위해 도청 앞 금남로 전면에 배치되어 수만 명의 시위대들과 대치하고 있던 중 동일 13:00경 갑자기 시위대 장갑차 1대가 공수부대 쪽으로 돌진하자 공수부대원들이 장갑차를 피해 좌우로 갈라져 산개하는 과정에 도청 앞 YMCA와 수협 사이에서 장갑차에 충격 당하여 사망한 후 국군광주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신체검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에 대해 위원회는 권용운 일병의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과 경위가 계엄군의 장갑차에 의한 것인지, 시위대의 장갑차에 의한 사망인지, 또는 장갑차에 의한 권용운 일병의 사망이 이 사건을 전후하여 발생한 계엄군 집단발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 조사결과에 대해 2023년 12월 26일 전원위원회에서 김희송, 민병로, 서애련, 오승용 위원은 첫째, ① 제3소위원회의 수정 요구와 전원위원회의 수정 및 보완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② 조사 과제의 진상규명 목적이 군·경의 피해 규모, 피해 원인, 개별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여 그 피해 사실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적절한 추가 조치를 권고하는 데 있는데, 개별 피해 사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

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③ 조사보고서의 서술이 동일한 내용으로 현장 상황에 대해 장황하게 인용하고, 과거 1995년 검찰 진술의 인용이 과도하게 반복되는 등 위원회의 조사 과정 및 결과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보았다. ④ 5월 21일 도청 앞 집단발포 당시 계엄군 장갑차에 의한 계엄군 권용운 일병의 사망 사건 등과 같이 쟁점과 의혹이 제기되어 온 일부 계엄군 사망 사건에 대해 위원회의 다른 조사보고서 내용과 배치되는 조사 결과를 적시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특정 언론사의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이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사보고서가 이대로 전원위원회에서 '진상규명'으로 의결될 경우 위원회의 조사 결과 전체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향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의 소재로 활용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였다.

둘째, 위원회는 대법원의 판결(1997. 4. 17)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계엄군이 내란의 의도가 없이 간접정범의 수단으로 이용된 사실을 고려하였다. 위원회는 계엄군이 시위대 진압 작전 중 입은 사망, 상해로 인한 피해와 그에 따른 트라우마를 조사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의 피해구제 등 제반 조치와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한 「5·18진상규명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조사보고서는 이러한 입법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조사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위원들은 지적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계엄군 피해조사가 오히려 5·18민주화운동의 또 다른 왜곡이나 과거 1988년 국회 청문회 당시 대부분의 계엄군 측 증인들이 주장했던 양시양비론을 더욱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동될 여지를 내포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셋째, 이 조사 과제는 시위 진압에 투입된 경찰과 계엄군의 피해를 조사하고, 그 피해의 사실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고, 진압 작전 과정에서 피해를 본 군·경에 대해서도 국가가 마땅히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려는 데 있다. 그러나 이

조사보고서는 계엄군이나 경찰의 개인적 피해 상황에 대해 군 기록, 또는 1995년 검찰에서 진술한 현장 지휘관들의 진술 내용을 중점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더욱이 조사보고서 전체 내용 중에서 상당한 분량이 시위대의 규모, 시위대의 시위 양상을 장황하고 반복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 체계는 결과적으로 군경의 불법적인 투입 배경은 물론 군경 피해의 원인과 실태를 명료하게 드러낼 수 없는 문제를 낳고 있다. 따라서 4명의 위원은 그동안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을 왜곡하고 있고, 위원회가 그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어떠한 조사와 확인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고서에서는 신군부의 입장과 유사하게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노출되고 있다고 보았으며, 그러한 이유로 진상규명 결정에 반대하였다. 이와는 다르게 이종협, 이동욱, 차기환 위원은 권용운 일병의 사망에 대해 시위대의 장갑차인지, 계엄군의 장갑차인지 양립된 다수의 진술과 상반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어느 장갑차에 의한 사망인지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맞다는 사유로 이 보고서 의결에 찬성하였다.

한편, 『전두환 회고록』 관련 출판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병합사건에서 광주고등법원³⁴⁵은 시위대의 화염병에 의해 후진하던 계엄군의 장갑차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시하였다.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민군의 장갑차에 치여 계엄군 병사가 사망하였다고 한 부분(허위, 다만 회고록 집필 당시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액 산정에서는 제외)에 대해 제1심에서는 허위성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으나, 이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허위라고 판단하였다. ① 사건의 개요: 구 도청 건물을 등지고 공수부대원들이 도열하여 있고, 그 앞에 기갑학교 소속 무한궤도형 장갑차가 서 있었다. 시민 저항세력은 전일 빌딩과 YMCA 건물 사이에서 위 장갑차를 마주 보고 시위를 하고 있었다. 시위군중이 공수부대 선두에 배치된 계엄군 장갑차에 화염병을 투척하였고, 계엄군 장갑차가 급히 후진 기

345 광주고등법원, 2022.09.14. 선고, 2018나24881, 2018나24898병합 판결.

등을 했다. 이어 시위군중의 일원이 운전한 바퀴가 달린 도시형 장갑차가 계엄군이 포진한 방향으로 달려 나왔다. 위 두 가지 사건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와중에 계엄군의 저지선이 붕괴되어 병사들이 도청 분수대 뒤와 도로 양옆으로 피신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공수부대 권용운 일병이 사망했다. ② 위 권 일병과 같은 대대 소속의 사병이었던 이○○은 1999년 이후 항소심에서 증언하기까지 일관되게 같은 병사 입장에서 권 일병의 장갑차 사망 사건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이○○의 진술은 꽤나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쉽게 묘사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심지어 장교 출신을 포함하여) 다른 공수부대원 중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사람이 있어 믿을 만하다. ③ 반면, 이와 상반되게 진술하는 일부 공수부대 장교 등의 진술은 목격 위치가 이○○보다 불리하고, 진술 내용이 상호 일부 모순되며, 허위 진술을 통해 형사처벌을 피할 이익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의 진술보다 정황상 믿기 어렵다. ④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도 장갑차에 의한 병사 사망 사건이 있었다는 점만 언급하고 시민군의 장갑차에 의한 사고로 단정한 사실이 없다.”

4) 5월 21일 주남마을 철수작전의 계엄군 피해와 이관형 상병의 사망 사건

도청 및 조선대 철수작전 시 계엄군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상해 피해를 입었다. 군·경 사망자 및 상해자 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피해자 인적 사항은 종합보고서 별책에 수록되어 있다.

<표 2-2-11> 군·경 사망자 및 상해자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사망	중상	경상
군인	10	3	7	-
경찰	-	-	-	-

5월 21일 7공수여단과 11공수여단 병력은 도청 앞 집단발포 이후 숙영지였던 조선대로 철수했다가 군장 등을 챙겨 다시 조선대에서 주남마을로 이동하였다. 7공수여단의 일부는 차량제대로 조선대에서 학동과 지원동을 경유하여 주남마을로 이동하였고, 7공수여단

일부 병력과 11공수여단 병력은 조선대 뒷산을 넘어 주남마을로 도보로 이동하였다. 차량제대로 이동하던 7공수여단 병력은 선두 차량에 거치된 기관총으로 도로 양쪽을 향해 사격하면서 이동하였고, 학동을 지날 무렵부터 무장한 시위대와 교전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장갑차 다음에 위치한 차량제대의 선두에 위치해있던 트럭 운전병 이관형 상병은 총격을 받아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관형 상병의 사망 경위와 시신 수습 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이 있다. 사망 경위와 관련하여 사직공원 아래 불로동다리 밑에서 시위대가 돌로 쳐 죽였다는 의혹, 시위대가 이관형 상병의 시신을 트럭에 매달고 시내 일원을 질주하여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의혹이 있다. 이와 관련 당시 적십자병원의 의료봉사대 박○○이 목격하였다는 진술³⁴⁶, 5월 22일 지원동 원지교 부근 우체국 담벼락을 들이받고 멈춰 서 있는 계엄군 차량 2 1/2톤 1대와 운전병으로 보이는 군인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김○○의 진술, 원지교 부근에서 군용 트럭이 방치되어 있던 모습을 목격했다는 윤○○의 진술, 적십자병원에서 사촌 형의 시신을 확인하러 갔다가 계엄군 시신이 영안실에 함께 있는 것을 보았고, 자신이 그 시신을 밖으로 끌어내 “공수부대가 왜 죽은 시민들과 함께 눕혀 있느냐. 저런 놈은 차에 매달고 시내를 돌며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라고 고함을 지르자 주변의 시민들이 모두 말렸고, 다시 안치실로 옮겼다는 진술³⁴⁷, “5월 22일 16시경 적십자병원 앞 느티나무 밑에 공수부대 시신이 있었고, 시민들이 공수부대 시신을 발로 밟고 차고 있어서 ‘하지 말라’고 제지하였고, 불로동 다리에서 시민들에게 맞아서 죽었다”는 당시 시신들을 전남도청 후정으로 옮기는 일을 했던 김○○의 진술, 불로동다리에서 시위대에 둘러싸여 돌멩이 등으로 맞아서 다리 밑으로 떨어진 공수부대원을 적십자병원으로 데려와 치료한 후 통합병원

346 5·18조사위, 「박○○ 진술요지서」(2023.01.07.), 2~8쪽. “5월 22일 11시경 사망자 후송을 위해 광주공원으로 갔다가 군용지프에 탑승한 4~5명의 시위대가 공수부대 시신을 차량 뒤쪽에 매달고 사직공원에서 광주공원으로 끌고 오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러면 안 된다. 하지 마라’고 제지한 후에 차량에 묶여 있던 시신을 풀어서 지프 차량에 싣고 시위대에게 적십자병원에 안치하도록 말하였으며 당일 병원에서 공수부대 시신을 확인하였다.”

347 5·18조사위, 「이○○ 진술녹취록」(2021. 6. 9.), 11~12쪽

으로 인계해주었다는 적십자병원 직원 2명(엑스레이 촬영기사 남○○, 구급차 운전기사 김○○)의 진술, “5월 26일 시민군이 국군광주통합병원에 두고 간 계엄군 시신은 영안실에 도착했을 때 나무관 위에 태극기가 덮여 있었고, 관 안에 있던 시신은 목에 자상이 있었고, 옆구리 쪽이 많이 훼손된 상태였으며, 목과 옆구리에 구더기가 많아 소독한 후 염을 하였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한 당시 국군광주통합병원 일반보급과장 우○○의 진술, 그리고 당시 이○○, 나○○ 기자 등이 촬영한 적십자병원 영안실과 임시 안치실로 사용했던 적십자병원 직원 휴게실의 시신 사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관형 상병의 사망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3가지 내용으로 요약된다. 첫째, 이관형 상병은 5. 21. 조선대에서 주남마을로 철수할 당시 차량을 운전하였고, 시위대와 교전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시신을 차에 매달고 시내 일원을 돌아다녔다는 의혹은 적십자병원 앞마당으로 시신을 끌어내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로 밟고 울분을 토로했던 내용이 와전된 것으로 추정된다.³⁴⁸ 셋째, 불로동 다리에서 시민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는 내용은 적십자병원 직원들이 데려와 치료를 한 후 통합병원에 인계해 준 계엄군의 부상 사실과 섞여 있는 내용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관형 상병은 주남마을 철수 과정에서 시위대의 총격을 받아 사망하였고, 그 시신이 적십자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상무관에 안치되었다가 5월 26일 국군통합병원으로 시민군에 의해 이송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5) 5월 21일 전남대에서 광주교도소 이동 과정의 계엄군 피해

광주교도소 작전 간 계엄군 1명이 상해 피해를 입었으며, 군·경 사망자 및 상해자 현황과 인적 사항은 아래의 <표 2-2-12>, <표 2-2-13>과 같다.

³⁴⁸ 지프차에 매달고 광주공원에서 사직공원으로 오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박○○의 진술 외에 만약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목격되었고, 이 정도의 내용은 군 기록에서 비중 있게 기록했을 것이나 전투상보 등의 군 기록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1982년에 생산된 『광주사태의 실상』이라는 자료 등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표 2-2-12〉 군·경 사망자 및 상해자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사망	중상	경상
군인	1	-	-	1
경찰	-	-	-	-

〈표 2-2-13〉 군·경 사망자 및 상해자 인적 사항

구분	소속	계급	성명	병명	사망 / 상해	입원	퇴원
부상	제3공수여단 ○○대대	하사	강○○	좌측 상박부 총상	80. 5. 21.	80. 5. 24.	80. 6. 1.

6) 5월 22일 국군광주통합병원 확보 작전의 계엄군 피해와 방위병 손광식의 사망 사건 국군광주통합병원 확보 작전 간 계엄군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상해 피해를 입었다. 군·경 사망자 및 상해자 현황은 아래 〈표 2-2-14〉와 같으며, 피해자 인적 사항은 보고서 별책에 수록되어 있다.

〈표 2-2-14〉 군·경 사망자 및 상해자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사망	중상	경상
군인	8	2	6	-
경찰	-	-	-	-

• 「20사단 전투상보」 등 군 관련 자료에는 국군광주통합병원 확보 작전 간 전교사 방위병 1명과 계엄군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망자 2명과 상해자 2명의 신원은 확인되었으나,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찾지 못함.

〈표 2-2-15〉 군·경 사망자 및 상해자 인적 사항

구분	소속	계급	성명	병명	사망 / 상해	입원	퇴원
사망	전교사 경비중대	이병	손광식 ³⁴⁹	흉부 관통상 (사망)	80. 5. 22.	-	-
	제20사단 62연대 2대대	상병	변광열	흉부 관통상 (사망)	80. 5. 22.	-	-
부상	제20사단 62연대 2대대	상병	하○○	좌측 등 총상 등	80. 5. 22.	80. 5. 22.	80. 8. 16.
	제20사단 62연대 2대대	일병	김○○	좌측 대퇴부 관통상	80. 5. 22.	80. 5. 22.	80. 12. 31.
	제20사단 61연대 1대대	병장	김○○	두부 파편상	80. 5. 22.	80. 5. 22.	80. 9. 30.
	제20사단 61연대 1대대	상병	김○○	왼손 타박상	80. 5. 21.	80. 5. 22.	80. 6. 5.

7) 5월 24일 광주톨게이트 계엄군 간 오인교전 피해

5월 24일 오전 광주톨게이트 봉쇄작전 시 기갑학교 오인사격으로 제31보병사단 96연대 3대대 계엄군 3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상해를 입었다. 군·경 사망자 및 상해자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피해자 인적 사항은 보고서 별책에 수록되어 있다.

〈표 2-2-16〉 군·경 사망자 및 상해자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사망	중상	경상
군인	13	3	10	-
경찰	-	-	-	-

349 손광식 이병은 당시 방위병이었으며, 「매화장보고서」, 「사망확인조서」, 「사망진단서」에는 '5. 22. 19:30경 출근 도중 광주시 서구 화정동 소재 수미다실 앞 노상을 지날 시 광주 소요사태의 과격분자가 발사한 총탄에 흉부 관통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임.'이라고 모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사망은 국군광주통합병원 확보 작전 과정에서 20사단 병력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동안 사망자 손광식은 민간인 사망자로 분류되기도 하였으나 위원회는 현재 손광식의 유해가 국립현충원에 매장되어 있는 점, 국가보훈처의 〈전공사상심의회〉의 기록에 '전사'로 기록되어 있다가 2022년 10월 국방부에서 재심의하여 전사에서 순직으로 처리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계엄군 사망자로 분류하였다.

〈표 2-2-17〉 군·경 사망자 및 상해자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사망	증상	경상
군인	61	10	36	15
경찰	-	-	-	-

8) 5월 24일 광주비행장 이동 과정의 계엄군 간 오인교전 피해

〈표 2-2-18〉 군·경 사망자 및 상해자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사망	증상	경상
군인	61	10	36	15
경찰	-	-	-	-

〈표 2-2-19〉 군·경 사망자 및 상해자 인적 사항

구분	소속	계급	성명	병명	사망 / 상해	입원	퇴원
사망	제11공수특전여단 63대대	대위	차정환	대퇴부 파열, 총상	80. 5. 24.	-	-
	제11공수특전여단 63대대	중사	박억순	뇌출혈, 심정지	80. 5. 24.	-	-
	제11공수특전여단 63대대	하사	이영권	대량출혈 쇼크사	80. 5. 24.	-	-
	제11공수특전여단 63대대	하사	김용석	대량출혈 쇼크사	80. 5. 25.	-	-
	제11공수특전여단 63대대	하사	최갑규	패혈증	80. 5. 24.	-	-
	제11공수특전여단 63대대	상병	권석원	대량출혈 쇼크사	80. 5. 24.	-	-
	제11공수특전여단 63대대	일병	김인태	뇌출혈, 심정지	80. 5. 24.	-	-
	제11공수특전여단 63대대	일병	김지호	대량출혈 쇼크사	80. 5. 24.	-	-
	제7공수특전여단 본부대	상병	김경용	흉부, 두부관통	80. 5. 24.	-	-
	전교사 수송대	하사	이병택	심혈성 쇼크사	80. 5. 24.	-	-

구분	소속	계급	성명	병명	사망 / 상해	입원	퇴원
부상	제7공수특전여단	일병	서○○	좌하박부 총상	80. 5. 24.	80. 5. 24.	80. 7. 21.
	제11공수특전여단 61대대	하사	조○○	상해	80. 5. 24.	80. 5. 24.	80. 5. 28.
	제11공수특전여단 61대대	일병	이○○	우족염좌, 우안파편상	80. 5. 27.	80. 5. 27.	80. 6. 1.
	제11공수특전여단 61대대	일병	손○○	후두부염좌	80. 5. 24.	80. 5. 27	80. 6. 7.
	제11공수특전여단 62대대	상병	경○○	우경골 골절	80. 5. 24.	80. 5. 24.	82. 5. 31.
	제11공수특전여단 62대대	일병	안○○	전흉부 파편창	80. 5. 24.	80. 5. 24.	80. 7. 29.
	제11공수특전여단 62대대	일병	김○○	대퇴부 압박상	80. 5. 24.	80. 5. 24.	80. 6. 25.
	제11공수특전여단 63대대	중령	조○○	좌수, 우하박 관통상	80. 5. 24.	80. 5. 24.	81. 10. 31.
	제11공수특전여단 63대대	대위	김○○	우슬관절 관통상	80. 5. 24.	80. 5. 24.	-
	제11공수특전여단 63대대	대위	김○○	좌경부, 견갑부 관통상	80. 5. 24.	80. 5. 24.	80. 11. 30.
	제11공수특전여단 63대대	대위	김○○	좌족부 관통상	80. 5. 24.	80. 5. 24.	81. 2. 28.
	제11공수특전여단 63대대	중위	정○○	좌대퇴부 총상	80. 5. 24.	80. 5. 24.	80. 6. 7.
	제11공수특전여단 63대대	소위	박○○	좌상박 및 흉벽 파편창	80. 5. 24.	80. 5. 24.	80. 6. 7.
	제11공수특전여단 63대대	상사	김○○	우측발목 관통상	80. 5. 24.	80. 5. 24.	81. 11. 30.
	제11공수특전여단 63대대	상사	이○○	우흉부 타박상	80. 5. 24.	80. 5. 24.	80. 5. 28.
	제11공수특전여단 63대대	중사	이○○	우흉부 상해	80. 5. 24.	80. 5. 24.	80. 6. 5.
	제11공수특전여단 63대대	중사	최○○	우견갑부 파편창	80. 5. 24.	80. 5. 24.	80. 6. 5.
	제11공수특전여단 63대대	중사	최○○	우측경부파편창	80. 5. 24.	80. 5. 24.	81. 5. 31.
	제11공수특전여단 63대대	중사	이○○	우측견갑부	80. 5. 24.	80. 5. 24.	80. 8. 31.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구분	소속	계급	성명	병명	사망 / 상해	입원	퇴원
부상	제11공수특전여단 63대대	중사	이○○	좌 족관절 절단창	80. 5. 24.	80. 5. 24.	81. 1. 31.
	제11공수특전여단 63대대	중사	조○○	우수 관통상	80. 5. 24.	80. 5. 24.	81. 10. 31.
	제11공수특전여단 63대대	중사	송○○	우대퇴부 맹관총창	80. 5. 24.	80. 5. 24.	80. 7. 1.
	제11공수특전여단 63대대	중사	박○○	우대퇴부 총상	80. 5. 27.	80. 5. 24.	80. 8. 26.
	제11공수특전여단 63대대	중사	김○○	우경부 파편창	80. 5. 24.	80. 5. 24.	80. 8. 26.
	제11공수특전여단 63대대	하사	이○○	개방성 골절	80. 5. 24.	80. 5. 24.	81. 2. 24.
	제11공수특전여단 63대대	하사	김○○	좌수 파편창	80. 5. 24.	80. 5. 24.	80. 9. 16.
	제11공수특전여단 63대대	하사	정○○	우하지 흉부파편창	80. 5. 24.	80. 5. 24.	80. 6. 22.
	제11공수특전여단 63대대	하사	박○○	파편상	80. 5. 24.	80. 5. 24.	80. 7. 4.
	제11공수특전여단 63대대	하사	김○○	둔부 파편상	80. 5. 24.	80. 5. 24.	80. 6. 7.
	제11공수특전여단 63대대	하사	박○○	안면 파편상	80. 5. 24.	80. 5. 24.	80. 6. 7.
	제11공수특전여단 63대대	하사	김용배	좌수 파편상, 이명	80. 5. 24.	-	-
	제11공수특전여단 63대대	병장	김○○	좌하지 찰과상	80. 5. 24.	80. 5. 24.	80. 5. 28.
	제11공수특전여단 63대대	병장	이○○	왼옆구리 파편상	80. 5. 24.	80. 5. 24.	80. 6. 8.
	제11공수특전여단 63대대	상병	김○○	우대퇴부 관통상	80. 5. 24.	80. 5. 24.	80. 8. 23.
	제11공수특전여단 63대대	일병	이○○	좌대퇴부 파편창	80. 5. 24.	80. 5. 24.	80. 8. 16.
	제11공수특전여단 63대대	일병	최○○	대퇴부 관통상	80. 5. 24.	80. 5. 24.	80. 12. 31.
	제11공수특전여단 63대대	일병	이○○	우중골 관통상	80. 5. 24.	80. 5. 24.	80. 11. 30.

구분	소속	계급	성명	병명	사망 / 상해	입원	퇴원
부상	제11공수특전여단 63대대	일병	김○○	우경부 파편창	80. 5. 24.	80. 5. 24.	80. 5. 28.
	제11공수특전여단 63대대	이병	이○○	좌수 파편상	80. 5. 24.	80. 5. 24.	80. 6. 5.
	제11공수특전여단	일병	정○○	좌수 총상	80. 5. 25.	80. 5. 24.	80. 6. 25.
	제11공수특전여단	일병	김○○	좌수 파편창	80. 5. 25.	80. 5. 24.	80. 6. 25.
	보병학교	병장	정○○	안면 파편상	80. 5. 24.	80. 5. 24.	80. 6. 29.
	보병학교	상병	박○○	좌어깨 파편상	80. 5. 24.	80. 5. 24.	80. 6. 24.
	보병학교	이병	이○○	왼발가락	80. 5. 24.	80. 5. 25.	80. 8. 30.
	포병학교	상병	한○○	좌견갑부 관통상	80. 5. 24.	80. 6. 2.	80. 7. 11.
	포병학교	일병	임○○	좌상하지 파편창	80. 5. 24.	80. 5. 24.	80. 8. 24.
	포병학교	이병	윤○○	좌무릎 파편상	80. 5. 24.	80. 5. 24.	80. 10. 17.
	화학학교	상병	박○○	다발성 파편상	80. 5. 24.	80. 5. 24.	80. 8. 26.
	기갑학교	상병	김○○	양대퇴부 파편창	80. 5. 24.	80. 5. 24.	80. 6. 7.
	제11공수특전여단 63대대	중위	임○○	좌하박부 관통상	80. 5. 24.	80. 5. 24.	81. 12. 31.
	1118야공단	중위	김○○	우수 엄지, 중지 절단	80. 5. 24.	80. 5. 24.	81. 2. 28.

9) 5월 27일 광주재진입작전(전남도청)

○ 전남도청

5월 27일 계엄군의 광주재진입작전에서는 계엄군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 피해를 입었다. 계엄군 사망자 및 상해자 현황은 아래 <표 2-2-20>와 같으며, 피해자 인적 사

항은 보고서 별책에 수록되어 있다.

〈표 2-2-20〉 군·경 사망자 및 상해자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사망	중상	경상
군인	6	1	5	-
경찰	-	-	-	-

〈표 2-2-21〉 군·경 사망자 및 상해자 인적 사항

구분	소속	계급	성명	병명	사망 / 상해	입원	퇴원
사망	제20사단 62연대 7중대	상병	이종규	두부 관통상(사망)	80. 5. 27.	-	-
부상	제20사단 61연대	상병	이○○	좌측 주관절 총상	80. 5. 27.	80. 5. 27.	81. 1. 31.
부상	제3공수특전여단 11대대	상사	안○○	우측 다리 총상	80. 5. 27.	80. 5. 27.	81. 8. 31.
	제3공수특전여단 11대대	하사	배○○	경부 관통상	80. 5. 27.	80. 5. 27.	-
	제11공수특전여단 61대대	하사	이○○	흉부 총상	80. 5. 27.	80. 5. 27.	80. 6. 27.
	제11공수특전여단 61대대	하사	장○○	등 총상	80. 5. 27.	80. 5. 27.	80. 8. 31.

○ 광주공원

5월 27일 광주재진입작전 과정에서 광주공원을 담당했던 7공수여단 33대대 1명이 사망하고, 제7공수여단 33대대 6명과 화학학교 1명 등 8명이 상해를 입었다. 군·경 사망자 및 상해자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피해자 인적 사항은 보고서 별책에 수록되어 있다.

〈표 2-2-22〉 군·경 사망자 및 상해자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사망	중상	경상
군인	8	1	5	2
경찰	-	-	-	-

〈표 2-2-23〉 군·경 사망자 및 상해자 인적 사항

구분	소속	계급	성명	병명	사망 / 상해	입원	퇴원
사망	제7공수특전여단 33대대	소위	최연안	두부 관통상(사망)	80. 5. 27.	-	-
상해	제7공수특전여단 33대대	소령	정○○	파편상	80. 5. 27.	80. 5. 27.	80. 6. 5.
	제7공수특전여단 33대대	대위	윤○○	좌하퇴부 관통상	80. 5. 27.	80. 5. 27.	80. 6. 5.
상해	제7공수특전여단 33대대	대위	전○○	우대퇴부 관통상	80. 5. 27.	80. 5. 27.	81. 3. 31.
	제7공수특전여단 33대대	중사	이○○	좌하지 파편상	80. 5. 27.	80. 5. 27.	80. 6. 27.
	제7공수특전여단 33대대	일병	안○○	우수 관통상 등	80. 5. 27.	80. 5. 27.	80. 9. 19.
	전교사 화학학교	상병	강○○	두부 관통상	80. 5. 27.	80. 5. 27.	81. 2. 7.
	제7공수특전여단 33대대	일병	백○○	골반 관통상 (직장손상)	80. 5. 26.	80. 5. 27.	80. 9. 6.

10) 5월 29일 무등산 수색작전 간 계엄군 피해

증심사·무등산 일대 수색작전 시 헬기 추락사고로 계엄군 3명이 상해 피해를 입었으며, 군·경 사망자 및 상해자 현황은 아래 〈표 2-2-24〉와 같으며, 인적 사항은 보고서 별책에 수록되어 있다.

〈표 2-2-24〉 군·경 사망자 및 상해자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사망	중상	경상
군인	3	·	1	2
경찰	-	-	-	-

〈표 2-2-25〉 군·경 사망자 및 상해자 인적 사항

구분	소속	계급	성명	병명	사망 / 상해	입원	퇴원
부상	제7공수특전여단 35대대	대위	박○○	우경골 절단	80. 5. 29.	80. 5. 29.	81. 2. 28.
	제7공수특전여단 35대대	일병	신○○	좌하퇴자창	80. 5. 29.	80. 5. 29.	80. 6. 7.
	제61항공단 203 항공대	일병	김○○	좌3수지 절단	80. 5. 29.	80. 5. 29.	80. 6. 9.

3. 소결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위진압에 투입된 경찰과 진압작전에 동원된 계엄군의 피해에 대한 공식적이고 종합적인 조사는 위원회가 처음이다. 2021년 5월 1일 개정된 「5·18진상규명법」 제3조 제11호에 따라 2021년 5월 31일 제35차 〈전원위원회〉에서 직권사건 조사과제로 의결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5·18민주화운동 당시 경찰과 군도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군의 경우 전체 사망자 22명 중 절반이 넘는 14명이 시위대의 폭력이나 총격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 계엄군 간의 오인교전과 계엄군의 과실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경찰의 경우 시위진압 과정에서 시위대의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찰이 4명이었는데 유가족은 경찰의 사망에 따른 적절한 국가의 보상 조치는 물론이거니와 국가와 사회로부터 위로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44년을 고통 속에 시달려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피해조사를 위해 면담조사에 응한 계엄군 중 일반 병사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부상 후 적절한 국가의 조치가 매우 미흡하다는 입장이었으며, 그 후유증으로 오랜 세월 고통받고 있는 처지를 호소하기도 하였다. 물론 이들 대부분은 자신이 광주에 투입되었다는 사실, 발포 현장에서 명령과 적절한 통제 및 지시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군인들도 피해를 입게 되었고, 광주시민들도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입장을 지

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특히 일반 병사들의 경우 자신이 입은 피해는 물론, 자신이 계엄군으로 광주에 투입되었다는 사실조차 가족에게도 제대로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안고 살아왔으며, 그 트라우마로 여전히 고통스럽다는 입장을 호소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이들 계엄군이 작전 현장의 경험과 목격한 사실 때문에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는 현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심각성을 측정하는 조사를 병행하였다.

비록 44년이 경과한 지금 위원회의 출범과 「5·18진상규명법」의 개정으로 조사를 시작하였지만 경찰과 군의 피해에 대해서도 종합적이고 정확한 피해실태를 조사하여 국가 차원의 적절한 조치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부당한 명령’에 동원되었고, 당시의 사회적 환경에서 그 명령을 주체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일면 필요하고, 이 과정을 통해 「5·18진상규명법」의 목적인 ‘사회통합’을 실효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종합보고서에 포함될 대정부 권고 내용에 제시하고자 한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3절 계엄군의 헬기 사격

1. 조사 배경

가. 헬기사격 사건의 배경과 문제제기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에 대한 최초의 문제제기는 1989년 2월 3일 광주MBC가 방영한 <어머니의 노래>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고) 조비오 신부가 증언한 헬기사격 목격담이었다.³⁵⁰ 이에 대해 1980년 5월 당시 광주에 출동한 육군항공의 지휘관과 조종사들은 1989년 2월 11일 조비오 신부에게 ‘무장헬기 사격설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으며, 같은 날 제1항공여단장 송진원 외 8명이 서명한 「헬기 사격설에 관한 해명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이들은 광주에 출동한 조종사, 무장사 17명의 자필진술서를 통해서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반박하였다. 그리고 MBC와 조비오 신부에게 거짓 증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1989년 2월 24일 검찰에 103항공대장 이○○를 대표 수임자로 지정한 집단고소장을 제출하였다.³⁵¹ 그러나 MBC의 다큐멘터리와 조비오 신부의 증언은 이후 당시 미국 남침례교 선교사인 아놀드 피터

350 조비오 신부, 『사제의 증언』, 빛고을출판사, 1994, 108쪽. 17명의 참가 항공부대 관계자들의 자필 진술서는 「참가 조종사 진술서 17매」(1989.02.10.),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5·18사건 수사기록』 21권, 29389~29411쪽 참조.

351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이○○ 진술서」(1989.06.05.), 『5·18사건 수사기록』 21권, 29273~29284쪽. 제1항공여단장 송진원을 비롯한 6인의 육군항공 관계자들은 103항공대장 이○○를 대표 수임자로 지정하고 1989년 2월 24일 서울지검에 집단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사건번호 서울중앙지검 1989형제16672-1). 이들은 고소장과 함께 「무장헬기 사격설에 대한 진실규명 요구서」(1989.02.11.), 「헬기사격설에 관한 해명」(1989.02.11.), 참가 조종사와 무장사 17인의 진술서 등 10개의 자료를 같이 제출하였다(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5·18사건 수사기록』 21권, 29285~29288, 29384~29411쪽; 조비오, 『사제의 증언』, 빛고을출판사, 1994, 33쪽). 이 사건은 1991년 10월 30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다. 2017형제21184호 사자명예훼손, 「수사보고(조비오 신부(조철현) 불기소 결정 내역 확인)」(2017.10.26.), 『증거기록』 4권, 2531~2532쪽.

슨(Arnold Peterson) 목사의 증언과 이○○, 김○○, 이△△ 등의 추가 목격 증언으로 인해 헬기사격에 관한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

조비오 신부는 1989년 2월 22일 제13대 국회에 설치된 <5·18광주민중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회광주특위)>에 출석하여 헬기사격을 목격한 사실에 대해 증언하였으며, 본인의 저서 『사제의 증언(1994)』, 1995년 검찰 조사에서 동일한 내용을 일관되게 증언하였다.³⁵² 피터슨 목사는 양림동 선교사 사택에서 부인, 김○○와 함께 5월 21일 오후 5시를 전후로 광주천을 향해 사격을 하고 있는 헬기를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³⁵³ 이와 더불어 이△△, 신○, 정○○, 최○○ 등 다수의 목격자가 5월 21일 헬기사격에 대해 증언하였다. 그러나 여러 목격자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헬기사격 여부를 규명하지 못하고 헬기사격을 포함해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관한 공식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헬기사격에 관한 진실규명은 진전되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에 의한 기총소사 여부에 대해 최초로 국가 차원의 판단과 평가가 내려진 것은 1995년 검찰의 수사 결과이다. 검찰은 헬기사격을 증언하는 목격자들의 진술 모두를 증명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헬기 기총소사를 판단하지 않은 데서 나아가 부인하였다. 무엇보다 검찰의 수사는 1989년 당시 조종사들이 제기한 집단고소장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했으며, 참고인 조사 역시 육군항공의 주요 지휘관 중심으로만 이뤄져서 심층적인 검토와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³⁵⁴

352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조철현 진술조서」(1995.05.19.), 『5·18사건 수사기록』 21권, 29361~29379쪽.

353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아놀드 피터슨(Arnold Peterson) 진술조서」(1995.05.11.), 『5·18사건 수사기록』 21권, 29118~29156쪽; Arnold Peterson, 5·18 The Kwangju Incident, 정동섭 옮김, 『5·18 광주사태』, 풀빛, 1995, 107~109쪽; 김○○,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에 관한 증언서』(1995.06.01.),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5·18사건 수사기록』 22권, 30294쪽;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 진술조서」(1995.06.11.), 『5·18사건 수사기록』 22권, 30173~30179쪽; 광주지방검찰청 2017형제21184호 사자명예훼손, 「김○○ 진술조서」(2017.09.21.), 『증거기록』 4권, 1980~1908쪽;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1685, 「김○○ 녹취서(요지)」(2019.05.13.), 『공판기록』 2권, 602~635쪽.

354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 검찰부, 『5·18 관련 사건 수사 결과』 (4) 헬기 기총소사 여부, 『5·18사건 수사기록』 1권, 207~210쪽, 1995. 7. 18.

헬기사격 사건이 다시 논란의 쟁점 대상이 된 것은 2016년 광주 금남로에 위치한 전일빌딩의 전면적인 재보수 과정에서 확인된 10층의 탄흔이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전일빌딩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일보와 전일방송이 자리한 곳이며, 5월 27일 ‘광주재진입작전’ 당시 계엄군이 점령한 주요 건물이기도 했다. 앞의 조비오 신부를 비롯한 목격자들이 제기한 헬기사격 일자인 21일 외에 최종진압작전이 실행되었던 27일이 새롭게 헬기사격 실행 일자로 대두되었다는 점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 사건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논쟁을 다시금 촉발시켰다.

광주광역시의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은 2016년 하반기에 총 세 차례에 걸쳐 ‘법안전감정’을 실시했으며, 2017년 1월 12일 최종적으로 법안전감정서를 제출하였다.³⁵⁵ 국과수는 전일빌딩 외벽에서 흔적 35개를 확인했으며, 전일빌딩 10층에 위치한 전일방송 내부의 기둥, 천장 텍스타일, 바닥 등지에서 최소 150개의 탄흔을 식별하였다. 국과수는 탄흔이 형성된 탄도 또한 수평에 가까운 상향 탄도에서부터 하향 탄도에 의한 탄흔이 혼재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국과수는 탄흔을 통해서 사격 화기의 종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으나 탄도 분석을 통해서 당시 전일빌딩 이외의 높은 건물이 없던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헬기사격에 의해 탄흔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로 다시금 헬기사격 가능성이 거론되었다. 2017년 4월 전두환이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사격을 부정하고 목격자인 조비오 신부, 피터슨 목사에게 대해 악의적인 비난을 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헬기사격에 관한 논쟁이 더욱 증폭되었다.³⁵⁶ 조비오 신부에 대한 전두환의 주장에 조비오 신부의 유족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

³⁵⁵ 2016년 8월 24일 광주광역시가 전일빌딩 탄흔에 대해 국과수에 의뢰를 하였다. 이에 따라 국과수는 2016년 9월 22일 1차 조사,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차 조사,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3차 조사를 실시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일빌딩 총탄 흔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감정서』, 광주광역시, 2017 참조.

³⁵⁶ 전두환, 제4장 「5·18 신화의 자리를 차지한 역사」, 『전두환 회고록 1: 혼돈의 시대, 1979-1980(이하 전두환 회고록)』, 2017, 478~484쪽 참조.

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2017년 4월 전두환을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³⁵⁷ 이에 따라 전두환을 피의자로 하여 열린 사자명예훼손재판에서 광주지방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5월 21일 무장한 500MD 헬기의 광주천에 대한 사격과 5월 27일 UH-1H 헬기에 의한 전일빌딩을 향한 사격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³⁵⁸

이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제37주년 기념식(2017. 5. 18)’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헬기 사격을 포함한 5·18민주화운동의 미해결 문제들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약속하였다. 이후 2017년 8월 23일 국방부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설치되어 헬기사격 여부와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5개월간의 조사 활동을 통해 특조위는 당시 군에서 생산한 광범위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활동을 벌였다. 특조위는 일부 조종사들의 증언에서 광주에 출동한 항공대 헬기의 무장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전일빌딩 탄흔에 대한 국과수의 조사 결과와 일부 조종사들에 대한 대인조사를 통해 헬기사격의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5개월이라는 짧은 조사 활동으로 인해 사격에 관한 명시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못했으며, 광주에 출동한 육군항공부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18진상규명법)」에 근거해서 2019년 12월 27일 설치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는 「5·18진상규명법」 제3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헬기 사격 사건(직나-10)”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2020년 10월 26일 제20차 전원위원회에서 검찰을 비롯한 여러 국가기관의 선행조사가 노정한 한계를 극복하고, 헬기사격에 관한 명시적인 실체를 밝히기 위한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이후 4년여간의 조사를 진행하

³⁵⁷ 고소인 조OO, 피고소인 전두환, 「고소장」(2017.04.27.), 광주지방검찰청, 『증거기록』 1권, 1~19쪽; 고소인 조OO, 피고소인 전두환, 사건번호 2017 형제21184호 「고소보충서」(2017.06.), 광주지방검찰청, 『증거기록』 1권, 173~192쪽.

³⁵⁸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고단1685 사자명예훼손, 「판결문」(2020.11.30.), 『공판기록』 17권 참조.

였으며, 그간의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마침내 2023년 12월 16일 제110차 전원위원회에서 5대 3으로 ‘진상규명’ 결정되었다.³⁵⁹

나. 헬기사격 사건의 사회적 논란과 쟁점

조비오 신부의 헬기사격 목격 증언은 호남동성당에 있는 자신의 위치에서 500미터도 되지 않는 ① 광주천 불로동다리 인근 상공에서 ‘드드득’ 소리를 내며 지축을 울리는 기관총 소리가 세 번 나면서 ② 1미터 가량의 불이 나갔으며, ③ 불빛은 길게 뻗어나갔고, ④ 헬기의 밑바닥 부분이 아니라 옆구리 부분에서 나갔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광주에 출동한 육군항공 지휘관과 조종사들의 반박은 집단고소장에 첨부된 103항공대장이○○의 진술서와 「헬기 사격설에 관한 해명」에 나와 있다.

1) 육군항공 지휘관 및 조종사들의 주장

육군항공의 지휘관들과 조종사들이 조비오 신부의 헬기사격에 관한 목격 증언을 반박하며 내세운 주장은 다음과 같다. 먼저 ㉠ 1미터의 불꽃과 ‘드드득 드드득’ 소리를 내며 지축을 뒤흔드는 기총소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무장 헬기는 AH-1J 헬기뿐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헬기는 대전차화기인 토우미사일과 경장갑 차량 및 지역 표적 제압 용인 2.75인치 로켓과 경장갑 차량 및 병커 등을 파괴하는 20mm 발칸포를 장착할 수 있는데, 이 무기들의 피탄 흔적과 탄피를 볼 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20mm 발칸포는 주간사격에서는 불꽃을 볼 수 없다고 이들은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 500MD 헬기 중 M5 가스살포기 장착 헬기는 무장할 수가 없으며, 7.62mm M134 미니건을 장착한 500MD는 제31사단장 지휘기로 운용되어 사격할 수가 없었다며

359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헬기사격 사건” 진상규명 결정에 대한 위원 3인(이종현, 이동욱, 차기환)의 소수의견은 <직나-10> 「직권조사보고서」, 158~164쪽 참조.

조비오 신부의 주장을 부정하였다. 그리고 ㉔ 조비오 신부, 아놀드 피터슨 목사 등 헬기사격 목격자가 증언한 기총소사 장면과 사격 소리는 헬기의 충돌방지등과 로터 소리를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㉕ 조비오 신부가 세 차례 기관총 소리를 냈다고 증언한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500MD에 장착된 M134 미니건은 분당 2,000발~4,000발씩 초고속으로 발사되어 사격 시 많은 인원을 상대로 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헬기사격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게다가 ㉖ 헬기사격으로 인한 탄흔이나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피탄 흔적이나 파편 등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헬기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㉗ UH-1H는 무장헬기가 아니라 병력 및 보급품 등을 수송하는 기동헬기로서 출동 당시부터 M60 기관총을 장착하지 않고 출동하였으며, 평소 비행훈련을 할 때에도 헬기에 탑승한 승무원들의 사격훈련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㉘ 1미터 정도의 불꽃을 쬐는 무기는 2.75인치 로켓포가 있는데, 발사되었다면 큰 소리와 함께 탄착 지점에 큰 웅덩이가 생겨 명확한 증거가 남기 때문에 헬기사격을 은폐할 수 없다고 하였다. 게다가 ㉙ 당시 광주에서 진압작전에 참가한 조종사, 정비사 및 기타 인원으로부터 헬기사격에 관한 내용이 발설된 바가 없는 점으로 볼 때 헬기사격은 없었다며 사격 사실에 관해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집단고소장에 첨부된 헬기사격을 부인하고 있는 17명의 조종사와 무장사의 「자필 진술서」를 근거로 삼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㉚ 전교사의 「광주소요사태 분석 교훈집」에서 기술된 ‘유류 및 탄약의 높은 소모율’ 표현이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이 표현은 육군 항공운용교범에서 인용된 일반적인 교리상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제출한 집단고소장과 같이 첨부된 해명서와 자필 진술서의 주장과 논리는 1995년 검찰 수사 당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육군항공의 지휘관들과 조종사들에게서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으며, 전두환이 2017년에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³⁶⁰

2) 육군항공 관계자의 헬기사격 사건의 왜곡에 관한 쟁점

① 쟁점 1: 출동 헬기 기종의 잘못된 예시

이들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헬기사격의 성능이나 효과를 왜곡하거나 과장하고 있어서 사실관계를 은폐 또는 왜곡하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조비오 신부를 비롯해서 목격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헬기사격 기총소사의 소리와 사격 장면에 대해 육군항공 조종사들은 그러한 소리가 가능한 기종은 5월 22일에 하남에 있는 103항공대 기지에서 출동한 AH-1J 코브라 헬기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조비오 신부와 다른 목격자들이 목격한 헬기는 경공격형 헬기인 500MD 헬기와 기동헬기인 UH-1H 헬기이다. 조비오 신부가 1995년 검찰에 자필로 제출한 헬기사격 당시 상황도에서 묘사된 헬기 또한 500MD이다.³⁶¹ 그러나 육군항공 관계자들이 설명하고 있는 헬기의 위력과 효과는 AH-1J 코브라 헬기에 맞추어서 설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격자들의 진술에서 등장하는 500MD와 UH-1H 헬기에 부합하는 반박은 아니다. 더군다나 AH-1J 코브라 헬기는 22일에 광주에 출동하고, 21일에는 500MD와 UH-1H 헬기가 광주에 있었기 때문에 AH-1J를 이용해 목격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은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는다.

360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송진원 진술조서」(1995.06.01.), 『5·18사건 수사기록』 22권, 29872쪽;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이○○ 진술조서」(1995.05.15.), 『5·18사건 수사기록』 21권, 29264~29270쪽;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구○○ 진술조서」(1995.05.24.), 『5·18사건 수사기록』 24권, 31865~31867쪽;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1685 사자명예훼손, 「송진원 증인신문조서」(2019.11.11.), 『공판기록』 3권, 1448~1478쪽;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방영제 진술조서」(1995.05.17.), 『5·18사건 수사기록』 21권, 29343~29347쪽.

361 제1항공여단장 송진원은 사자명예훼손 사건 1심 재판에서 “조비오 신부가 당시 사격한 헬기를 코브라 헬기로 지목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1685 사자명예훼손, 「송진원 증인신문 녹취서」(2019.11.11.), 『공판기록』 3권, 1452쪽.

② 쟁점 2: 500MD 헬기의 무장 여부와 무장 임무 수행

조종사들이 주장하는 ① 출동 헬기의 무장 상태 여부에 관한 문제는 광주에 출동한 500MD 헬기의 무장 여부와 무장 상태에서의 비행 임무 수행 여부에 관한 쟁점이다.³⁶²

조종사들은 500MD 헬기가 가스살포기를 장착한 헬기와 31사단장 지휘기로 운용되어 사격할 수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조종사들이 주장하는 31사단장 지휘기로 운용된 500MD 헬기는 505항공대에서 506항공대로 작전 배속되어 5월 15일 광주에 출동한 헬기 1대뿐이며, 이 헬기는 처음부터 무장하지 않은 채 지휘용으로 광주에 출동하였다.³⁶³ 다시 말해, 31사단장 지휘용 헬기 외에는 모두 가스살포기만 장착한 비무장 상태의 헬기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5월 21일 15:57경 대구 달성 506항공대에서 500MD 2대가 7.62mm 탄약 2,000발씩 무장하여 31사단 사령부에 도착하였다.³⁶⁴ 그리고 5월 21일 오전 9시경 전교사에서 계엄사령부로 무장헬기 지원을 긴급 건의하였으며, 15시 55분경 506항공대 ○○파견중대에서 M5 가스살포기를 장착한 헬기를 무장시켜서 광주로 출동한 바 있다.³⁶⁵ 12시 40분경 500MD 1대가 무장한 채 광주 상공을 정찰 비행하기도 하였다.³⁶⁶ 5월 22일 출동한 501항공대 소속 500MD 헬기 또한 4대가 7.62mm 2,000발 무장을 하고 광주에 내려왔다. 가스살포기를 장착하고 광주 현지에서 임무를 수행한 항공기는 502항공대 소속 500MD 헬기와 최초 광주에 들어온 506항공대 소속 500MD 헬기 1대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육군항공 지휘관과 조종사들의 주장은 항공대별로 다른 임무 수행을 한

362 작전문서에 기록된 5월 21일 광주에 출동한 500MD 헬기 운항기록은 위원회 직권사건 「직나-10,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헬기사격 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중 '작전문서에 기재된 5.21. 500MD 운항기록'을 참조하라.

363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505항공대 조종사 이○○ 조사 결과 요약 및 진술녹취서』(2017.09.25), 『조사기록철(헬기팀-24-1)』, 113~128쪽.

364 제1항공여단, 『제1항공여단 상황일지』(1980), 276쪽.

365 "15:55 무장항공기 2대가 31사단 사령부로 가고 31사에 도착하면 전주에서 지원된 2대가 전주로 복귀. 무장해서 지원될 것임(4대)", 전투병과교육사령부, 『광주사태 시 전교사 작전일지/정보일지』 16:25 접수. 전투병과교육사령부, 『광주사태 시 전교사 작전일지』(1980), 207쪽; 제1항공여단, 『제1항공여단 상황일지』(1980), 276쪽; 『광주소요사태 진행 상황』, 기무사 제공 자료 119-24, 248쪽.

366 『광주소요사태 진행 상황』, 기무사 제공 자료 119-24, 242쪽.

사실을 구분하지 않은 채 사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고 있다.³⁶⁷

③ 쟁점 3: 사격 시 불꽃과 기관총 소리

다음으로 조종사들이 주장하는 목격자들의 증언에 관한 쟁점은 기총소사 불빛과 총성에 관한 설명이다. 이들은 목격자들이 목격한 사격 시 나타나는 불꽃에 의한 화염과 기관총 소리를 헬기의 아래에 달린 충돌방지등과 로터 소리와 혼동하였다고 왜곡하고 있다. 하지만 조비오 신부와 피터슨 목사는 일관되게 헬기의 옆쪽에서 사격이 있었으며, 불꽃에 의한 화염을 보았다고 하였다. 육군항공 관계자들은 1미터 정도의 불꽃을 뽑는 무기는 2.75인치 로켓포밖에 없으며, 2.75인치 특성상 큰 소리와 함께 탄착 지점에 탄흔이 크게 나야 하므로 사격한 사실을 감출 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목격자들이 증언하는 1미터 정도 나가는 불꽃과 육군항공 관계자들이 이야기하는 충돌방지등의 불빛은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인터넷에 나와 있는 여러 헬기 사격 영상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충돌방지등의 불빛은 1미터 가량의 띠를 형성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5엽으로 구성된 헬기의 프로펠러의 소리는 공기와 마찰을 일으켜 부드럽게 나며, 날카롭게 들리는 기관총 소리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④ 쟁점 4: 7.62mm 기관총 사격의 성능 및 효과 과장 또는 왜곡

조비오 신부가 세 차례 기관총 소리를 냈다고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 조종사들은 500MD에 장착된 기관총은 분당 2,000발에서 4,000발까지 초고속으로 발사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조종사들의 주장은 사격 시 나타나는 최대성능만 강조하는 것이지 일

.....
 367 (고) 조비오 사자명예훼손재판에서 재판부는 당시 상황일지 등 여러 문서에서 500MD 헬기를 '가스살포기'와 '무장항공기 또는 무장헬기'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다는 점을 판결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광주지방법원 2018 고단1685 사자명예훼손, 『판결문』(2020.11.30.), 『공판기록』 17권, 56쪽).

반적인 사격훈련 시 한 번에 7~10발 정도 사격할 수 있는 점사 사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총열이 사격할 때 과열되어 기능 고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끓어쓰기’와 같은 점사 사격이 가능한 전기적 장치인 솔레노이드(solenoid) 기능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엄청난 민간인 피해가 헬기사격으로 인해 예상될 수 있으므로 위협사격의 수준에서 여러 차례 공포감을 주기 위해 ‘끓어쓰기’ 형식으로 사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사격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한번 비행 시 2,000발을 탑재하고 비행 임무를 수행하면서 사격 시 탑재한 탄약을 방아쇠를 한번 당길 때 모두 소모한다는 것이 작전 수행에 있어서 바람직한 헬기 운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세 차례 기관총 소리를 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의 주장대로라면 대략 30여 발 가량의 사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⑤ 쟁점 5: 헬기사격 시 피해 사항 여부

다음으로 육군항공의 지휘관들이나 조종사들이 헬기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근거이자 쟁점 중의 하나는 피해 사항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격의 목적을 건물이나 도로, 수목, 시위군중 등 직접적인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표적 타격에 맞추어서 설명하고 있지 시위군중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 위협하거나 해산시키려는 목적 하에서 실행되는 위협사격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 목격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사격 장소인 광주천이나 사직공원, 광주공원 역시 1980년 5월 이후 준설공사나 보수공사 등으로 인해 당시의 원형은 현재 찾아볼 수 없는 상태이며, 게다가 광주천의 경우 수차례 장마 등으로 인한 기후 환경적 요인에 의해 지형 변화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인해 사격에 의한 피해 사항이 온존할 수 없기 때문에 사격의 흔적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다.

⑥ 쟁점 6: UH-1H 헬기의 무장 출동 여부

UH-1H 기동헬기는 단순한 병력 및 화물 수송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투지역에 전투병력 및 물자를 공수하는 다목적 헬기라는 의미에서 기동헬기로 불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병력 및 물자를 보호하기 위해 좌우 양쪽에 M60D 기관총을 자체 방어 화력으로 운용한다. 병력 및 보급품 등을 운반하는 수송용 헬기라는 조종사들의 주장은 위원회에서 조사한 당시 출동 조종사, 승무원들의 진술에서 기관총을 장착하고 무장하고 내려갔다는 증언이 있었다는 점에서 맞지 않는 주장이다. 또한 평상시 비행훈련을 할 때 연 1회 이상 사격 훈련을 했다는 당시 정비사, 승무원들의 진술로 볼 때도 평상시 승무원 사격 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조종사의 주장은 UH-1H 헬기에서 사격이 있었을 가능성을 처음부터 차단하고자 하려는 의도에서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³⁶⁸

또한 당시 제31항공단장 방영제는 1995년 5월 17일 검찰수사에서 “UH-1H 헬기에서 소총 사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병력이 안전벨트를 풀고 출입문을 연 후 (창문은 있으나 개폐가 불가능함) 소총을 쏘는 방법밖에 없는데 (중략) 상당히 어려운 일이므로 통상 그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UH-1H 헬기 뒤쪽에 달린 미닫이 형태의 출입문을 개폐하고 안전벨트를 장착한 채 사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위원회는 실험사격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⑦ 쟁점 7: 출동한 육군항공 관계자의 헬기사격 사건에 관한 증언 부재

당시 진압작전에 참가한 육군항공 관계자들 중 헬기사격에 관해 증언한 사람이 한 사

368 제1항공여단에서 간행한 『부대역사일지』에서 1979년부터 여러 차례의 사격 훈련과 야간 공중기동훈련이 실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1항공여단, 『부대역사일지』(1980). 당시 항공부대에서 근무한 참고인 일부도 사격 훈련과 야간 공중기동훈련에 대해서 위원회와의 면담조사에서 진술했다. 5·18조사위, 조사 4과-1602(2022.12.24.), 『202항공대 정비검사하사관 오○○ 면담조사 결과 보고』(2022.08.19.); 5·18조사위, 『203항공대 승무원 『이○○ 진술조서』(2022.11.16.); 5·18조사위, 202항공대 정비하사관 『김○○ 진술요지서』(2022.11.29.) 참조.

람도 없기 때문에 헬기사격은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1995년 검찰수사에서는 광주에 무장을 하지 않고 내려왔다고 일부 지휘관과 조종사들은 진술하였다. 항공대 본 기지에서 광주로 출동할 때 일부 조종사는 탄약을 적재하고, 내려왔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한결같이 헬기사격은 없었으며,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장전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무장을 한 채 광주로 출동하였으며, 비행 임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사격이 가능한 상태의 장전 상태는 아니라는 주장인 것이다. 결국 쟁점은 광주로 항공기들이 전개될 때 사격이 가능한 장전 상태였는지, 그리고 광주 현지에서 비행 임무를 수행할 때 삼탄까지 이루어진 장전 상태, 다시 말해, 언제든지 사격 가능한 상태로 시위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회의 대인조사와 문헌조사에서 사격을 암시하는 일부 조종사의 증언이 있었으며, 부대 복귀 후 항공작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보안교육 또한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³⁶⁹

⑧ 쟁점 8: 전교사「광주소요사태 분석(교훈집)」의 ‘유류 및 탄약의 높은 소모율’ 해석³⁷⁰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서 인용되고 있는 전투병과교육사령부의 「광주소요사태 분석(교훈집)」에서 적시하고 있는 ‘유류 및 탄약의 높은 소모율’에 대해 육군항공 지휘관 및 조종사들은 육군항공 운용 교범에서 인용된 일반적인 교리상의 문제를 적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사 교훈집은 전교사령관 소준열이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실제 폭동 과정에서 국가적 손실과 (우리의) 각성을 통하여 얻어진 교훈을 종합 발간”한 것이다.³⁷¹ 즉, 광주항쟁의 소요진압 과정의 문제점으로 드러난 사항을 적시하고,

369 5·18조사위, 203항공대 조종사 「교〇〇 진술조서」(2023.08.01.); 203항공대 승무원장 「이△△ 진술요지서」(2023.08.28.). 일부 조종사와 승무원에게서는 부대 복귀 직후 서로가 광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꺼려했으며, 보안부대로부터 광주와 관련된 보안 교육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70 전투병과교육사령부, 『광주소요사태분석(교훈집)』(1980.09.), 121쪽.

371 전투병과교육사령부, 『광주소요사태분석(교훈집)』(1980.09.), 4~5쪽.

도출된 문제점으로부터 얻게 되는 교훈을 기록한 것이다.

1995년 검찰수사의 결론 또한 조종사들의 주장을 그대로 원용하여 육군항공 운용 교범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하지만 위 주장 또한 당시 군의 작전문서를 보면 5월 21일 사남터널에서 500MD 헬기 1대가 연료 고갈로 불시착한 사실, 20사단 『충정작전상보』의 보급문서에 5.23 ‘20mm 발칸 탄약 1,500발 항공대 보급’으로 기재된 점³⁷² 등으로 볼 때 실제 현장에서 사격, 비행작전임무 수행과 관련해서 헬기 운용 시 드러난 문제점을 기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육군본부 항공감실에서 발간한 『80항공병과사』에는 「광주지역 출동 항공 지휘관의 애로사항 보고 내용」이라는 별지 형태의 보고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³⁷³ 여기에는 광주에서 잦은 항공기의 비행 임무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와 있다. 또한 일부 조종사는 비행 임무가 너무 많았고, 심지어는 새벽에도 임무 지시가 떨어져서 한밤중에도 비행 임무를 수행해야 해서 피곤한 상태였다고 증언하였다.³⁷⁴

『80항공병과사』에 기재된 내용이나 일부 조종사의 증언으로 볼 때 광주 현지에서 ‘유류의 높은 소모’라는 문제 상황을 충분히 겪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 『교훈집』에서 적시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교훈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그렇다면 ‘탄약의 높은 소모율’ 역시 광주 현지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이를 교훈으로 삼고자 기술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72 제20보병사단, 『광주사태 충정작전상보(1980.5.21. - 5.29)』, 868쪽.

373 육군본부 항공감실, 『80항공병과사』(1982), 27쪽.

374 5·18조사위, 203항공대 조종사 「노○○ 진술조서」(2023.06.15.).

3) 『전두환 회고록』에서의 왜곡과 사회적 논란

2017년 4월에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출간한 『회고록』은 조비오 신부, 아놀드 피터슨 목사가 출판물, 언론, 국회 등에서 증언한 헬기사격에 관한 내용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두환의 회고록 출간과 그 책에 담긴 조비오 신부와 피터슨 목사에 대한 비난은 헬기사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결과적으로 전일빌딩의 탄흔 발견과 함께 헬기사격 사건의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두환은 조비오 신부와 피터슨 목사가 헬기사격에 관해 증언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계엄군의 진압활동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려는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폄훼하였다. 피터슨 목사는 5월 21일 두 차례의 헬기사격을 제기하였다. 광주기독병원에서 “오후 3시 15분쯤 광주 영공에 몇 대의 전투 헬리콥터가 나타났으며, 거리에 있는 군중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 (중략) 헬리콥터들은 계속해서 도시 영공을 날아다니면서 오후 내내 총을 쏜 것”이라는 내용과 집으로 돌아와 5시 전후로 목격한 전투헬기 사격 내용 두 차례이다.³⁷⁵

전두환 측은 피터슨 목사가 목격한 두 번의 헬기사격 사건 중 첫 번째 오후 3시 15분경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언급하면서 총소리가 높은 곳에서 나서 헬기사격이라고 생각은 하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5·18민주화운동 당시 제31항공단장이었던 방영제의 검찰 진술을 근거로 피터슨 목사가 제시한 사진에 나와 있는 500MD 헬기의 기종이 당시 한국군에 없는 기종이라고 주장하였다.³⁷⁶ 그러면서 피터슨 목사를 지칭하며 “목사가 아니라 가면을 쓴 사탄”이라며 비난하였다.³⁷⁷

조비오 신부의 주장 또한 고의적으로 계엄군의 진압 활동을 왜곡하려는 악의적인 주장

³⁷⁵ Anold Peterson, 5·18 The Kwangju Incident, 정동섭 옮김, 『5·18 광주사태』, 풀빛, 1995, 107~109쪽;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아놀드 피터슨(Anold Peterson) 진술조서」(1995.05.11.), 『5·18사건 수사기록』 21권, 29118~29139쪽; 국가안전기획부, 『5·18 피고소인 측 피터슨 목사 검찰 증언 관련 반향』, 광주지방검찰청, 『증거기록』 11권, 6369~6371쪽.

³⁷⁶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방영제 진술조서」(1995.05.17.), 『5·18사건 수사기록』 21권, 29342~29347쪽.

³⁷⁷ 전두환, 제4장 『5·18 신화의 자리를 차지한 역사』, 『전두환 회고록 1: 혼돈의 시대, 1979-1980』, 2017, 480~484쪽.

일 뿐이라고 비난하면서, 헬리콥터의 기체 성능이나 특성을 잘 몰라서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치부했다. 그러면서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2019년 11월 사자명예훼손 사건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피터슨 목사의 사진을 확대해서 동체에 태극기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전두환 측과 조종사들의 주장이 허위임을 밝혀냈다.³⁷⁸

전두환 측은 사자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한 「변론서」에서도 목격자들이 이야기하는 헬기사격설은 사실이 아니며, 이미 1995년 검찰수사 당시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이 났다고 주장하였다.³⁷⁹ 즉, 헬기사격설은 사실이 아닌 대중의 논쟁적 사안이며, 이에 관한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을 침묵시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반해 고소인 (고) 조비오 신부 측은 5월 21일 조비오 신부가 목격한 헬기 기총소사 사실은 실제로 발생한 사건이며, 전일빌딩 탄흔에 대한 국과수의 감정 결과, 헬기사격과 관련된 군 문서, 군 지휘관 및 민간인 목격자의 진술 등으로 볼 때 헬기사격은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피고소인인 전두환은 회고록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서술함으로써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했다.³⁸⁰ 전두환 측은 목격자들의 주장을 비판하기 위해 일부 주장만 취사선택하였으며, 1989년부터 지속적으로 되풀이되어온 조종사들의 주장을 그대로 가져와서 실증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사실관계를 왜곡시켜 주장하고 있다.

사자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민·형사심은 조비오 신부가 4회에 걸쳐 1980년 5월 21일

378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1685 사자명예훼손, 「구○○ 증인신문조서」(2019.11.11.), 『공판기록』 3권, 1475쪽.

379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1685 사자명예훼손, 피고인 전두환 「최초 변론서」(2019.03.11.), 『공판기록』 1권, 223~238쪽;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1685 사자명예훼손, 피고인 전두환 「공판조서」(2019.03.11.), 『공판기록』 1권, 254~255쪽 변호인 변론 참조.

380 고소인 조○○, 「고소장」, 광주지방법검찰청 2017형제21184호 사자명예훼손, 『증거기록』 1권, 3~21쪽 참조.

광주천 불로동다리 상공에서 사격하는 헬기를 보았다는 일관된 내용을 유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황 또한 여러 목격자 증언이나 군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았다. 2017년 전두환의 회고록 출간은 2007년 헬기사격에 관한 논쟁에 대해 사법부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수면 아래에 잠겨 있는 쟁점을 끌어올리는 기제가 되었다. 더군다나 2017년 발견된 전일빌딩 10층의 탄흔에 대한 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헬기사격에 의해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적 배경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헬기사격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요구가 뒤따랐다.

2. 조사 결과

가. 5·18민주화운동 기간 항공작전 운용과 무장 출동

1) 소요진압작전 당시 육군항공 부대 편성 및 지휘체계

1980년 당시 육군항공부대는 육군본부 항공감이 항공부대에 대한 조정 통제를 담당하는 가운데 육군본부 직할부대로 제1항공여단이 있고, 제1항공여단 산하에 제31항공단과 제61항공단 두 개의 항공단이 편성되어 있었다. 제31항공단은 AH-1J 코브라 헬기를 운용하는 103항공대와 500MD 헬기를 운용하는 501·502·503·504·505·506항공대가 편성되어 있었다. 이 중 광주에 출동한 항공대는 103항공대, 501항공대, 502항공대, 505항공대, 506항공대이다. 505항공대는 5월 14일 500MD 5대가 제3군사령부에서 제2군사령부로 작전통제 전환 지시를 받았다. 505항공대 헬기들은 제2군사령부에 배속된 506항공대에 작전통제를 받아 광주, 대구, 부산, 대전, 창원 등의 관구/사단 사령부에 506항공대 소속 5대와 함께 배치되어 정찰 및 지휘통제 임무를 맡았다. 제61항공단은 UH-1H를 운용하는 202항공대, 203항공대가 편성되어 있었다.³⁸¹

381 5·18조사위, 「직나-10,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헬기사격 사건」 조사결과보고서 <그림 4> 참조.

제1항공여단은 육군본부 예하 직할부대로서 육군총장의 지시를 받아 여단장 송진원에 의해 예속 부대에 대한 지휘권 행사가 이루어졌다. 이중 502항공대는 수도권경비사령부에 배속되어 있었으며, 503항공대와 505항공대는 3군에, 504항공대는 1군, 506항공대는 2군에 작전배속되어 있었다. 각 군에 배속된 항공대의 작전 지휘 권한은 피배속부대에 있었다. 지휘통제 관계에 있어서 서로 다른 지시체계와 명령체계를 갖고 있는 7개 항공대는 처음에 모두 전투병과교육사령부에 작전통제되어 작전 지휘를 받았고, 그중 506항공대의 경우는 처음에는 31사단에 의한 작전통제, 5월 21일 이후에는 전교사에 의한 작전통제로 전환되어 작전을 수행하였다.

수경사에 배속된 502항공대와 제3군사령부에 배속된 505항공대는 5월 17일 이전에 육군본부에서 「소요진압 공지협동작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지협동작전 소요 헬기로 육군항공의 헬기를 주요 소요진압부대에 배속하여 운용하는 계획이 성안되었다.³⁸² 제1항공여단 책임 아래 중앙기동예비대로서 공지협동작전용 항공조 5개팀을 편성하여 제1항공여단에 대기시키도록 했다. 즉 3군에 배속되어 있는 505항공대의 헬기 5대와 수경사에 배속되어 있는 502항공대의 지휘체계를 육군본부 직할부대인 제1항공여단으로 변경시킴으로써 ‘중앙기동예비대’로서 계엄사령부에서 즉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3군에 배속되어 있는 505항공대 500MD 헬기 5대가 제1항공여단으로 작전 전환되었으며, 5월 14일 2군 배속의 506항공대를 지원하도록 해서 소요사태 진압작전에 투입되었다.

광주에 출동한 육군 항공부대를 통합 지휘하기 위한 임시 지휘부는 전교사 사열대 옆에 위치시켰으며, 제61항공단장 손승열이 통합지휘하였고, 203항공대장 백○○, 103항공

382 육군본부 작전교육참모부, 「소요진압 공지협동작전 계획」, 『소요사태 대비계획』(1980.05.),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5·18사건 수사기록』 34권, 41178~41180쪽; 육군본부 작전교육참모부, 「소요진압 공중지원방안 연구」(1980.04.19.); 육군본부 항공감실, 『80항공병과사』(1982), 23~24쪽.

대장 이○○, 506항공대장 김○○이 같이 위치하였다.³⁸³ 또한 AH-1J, 500MD 헬기에 대한 작전 지휘는 103항공대장이, 기동헬기인 UH-1H 헬기에 대한 작전 지휘는 203항공대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비행임무에 대한 통제는 P-77 무전기 FM 고정주파수와 지상부대에서 배부한 통신망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³⁸⁴

2) 육군항공대 출동 현황 및 무장 출동 여부

5월 14일 제2군사령부로 작전통제 전환 지시를 받은 505항공대 500MD 헬기 5대를 증원받은 506항공대는 자체 보유 500MD 헬기 5대와 함께 5월 15일 광주, 대구, 부산, 대전, 창원 등의 관구사령부 및 사단사령부에 각 2대씩 배치해서 정찰 및 지휘통제 임무를 수행하게 하였다.³⁸⁵ 5월 15일 광주에는 비무장 상태인 500MD 2대가 31사단의 작전 통제를 받아 임무를 수행하였다. 같은 날 506항공대의 전주과견중대에서 비무장 상태의 500MD 2대가 추가로 증원되어 광주비행장에 도착하였다. 506항공대 조종사 이○○의 진술에 따르면, 이때 들어온 500MD 2대는 M5 가스살포기를 장착하여 소요진압작전에 활용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³⁸⁶ 5월 20일에는 전교사의 요청에 따라 M5 가스살포기를 장착한 500MD 헬기 지원 요청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5월 21일 502항공대 소속

383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 진술조서」(1995.05.24), 『5·18사건 수사기록』 21권, 29495쪽.

384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김○○ 녹취서」(2017.12.29), 『조사기록철(헬기팀-24-23)』, 7758~7762쪽;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 진술조서」, 『5·18사건 수사기록』 21권, 29503쪽;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최○○ 녹취서」(2017.12.26), 『조사기록철(헬기팀-24-21)』, 7420쪽. 501항공대 조종사 조○○은 사자명예훼손 사건 1심 재판에서 항공이 지상지휘부를 하지 않고 항공을 통제하는 지상지휘부가 따로 있었다고 진술했다.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1685 사자명예훼손, 「조○○ 증인신문조서」, 『공판기록』 4권, 1692쪽.

385 육군본부 항공감실, 『80항공병과사』(1982), 23~24쪽; 505항공대 역사일지, 49쪽, “500MD(지휘용) 5대와 조종사 10명, 정비 3명 지원(작상전 1439호, 1980.05.14, 500MD 지원 지시)”; 육군본부 작전교육참모부, 「소요진압 공지협동작전 계획」, 『소요사태 대비계획』(1980.05.),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5·18사건 수사기록』 34권, 41178~41180쪽; 육군본부 작전교육참모부, 작상전 제0-205호 “2군에 500MD 지원 지시”(1980.05.14).

386 5·18조사위, 506항공대 조종사 「이○○ 진술조서」(2023.08.26). 육군본부 항공감실에서 펴낸 『80항공병과사』에는 5월 14일 소요진압 작전계획에 따라 16:30부로 2군으로 증원된 505항공대 500MD 5대에 가스살포기를 실려서 지원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육군본부 항공감실, 『80항공병과사』(1982), 23~24쪽.

500MD 헬기 4대가 가스살포기를 장착하고 광주비행장에 도착하였다.

5월 21일 이전에 출동한 헬기는 모두 비무장 상태였으며, 지휘 및 정찰, 선무방송, 가스살포 등의 비행 임무에 투입되었다. 하지만 5월 21일 11시 이후에는 506항공대 소속 500MD 4대가 7.62mm 2,000발씩 무장하여 광주에 투입되었다. 그리고 광주에 미리 들어와 있던 비무장 상태인 506항공대 500MD 2대가 전주파견중대로 복귀하여 15시 55분경 무장을 한 채 다시 광주에 투입되었다. 그리고 일부 UH-1H 헬기도 M60D 기관총과 실탄을 적재하여 광주로 출동하였다. 5월 22일 오후에는 20mm 발칸 500발씩 무장한 103항공대 소속 AH-1J 코브라 헬기 2대와 7.62mm 2,000발씩 무장한 501항공대 소속 500MD 4대가 광주로 추가 투입된 사실이 작전문서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비무장에서 무장으로, 그리고 경무장 헬기에서 중무장 헬기로 축차적으로 투입한 것은 5월 20일 광주역 앞 발포를 기점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제1항공여단장 송진원은 1995년 검찰 조사 당시 육군본부의 작전참모부장으로부터 “광주 상황이 심각하다”는 말을 들었으며, 무장헬기 지원 준비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20mm 발칸포와 실탄 500발을 적재한 코브라 헬기 2대와 7.62mm 기관총과 탄약 2,000발을 적재한 무장헬기 500MD 4대를 차출하여 103항공대장 이○○의 인솔 하에 내려보냈다고 진술했다.³⁸⁷

공수부대의 과격한 시위진압에 따라 시위대가 사망하고, 3공수여단의 광주역 발포 등 시위 양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5월 21일 새벽 4시 30분경 계엄사 대책회의를 열어 오전 8시부터 전교사 지역에 ‘진도개 하나’를 발령하는 등 매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중무장 헬기들이 추가로 증파되었다. 무장헬기 출동의 위급성과 헬기사격을 전제하였다는 점은 전교사 「전투상보」와 전교사 정보처 작전일지에도 ‘무장헬기 긴급 견의’라는 표현으로 나타나

387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송진원 진술조서」(1995.06.01.), 『5·18사건 수사기록』 22권, 29865쪽;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이○○ 진술조서」(1995.05.15.), 『5·18사건 수사기록』 21권, 29255쪽.

있다.³⁸⁸

기동헬기인 UH-1H의 경우,³⁸⁹ 『제1항공여단 상황일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육군본부 작전교육참모부에서 마련된 「소요사태 대비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작전대기시켰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03항공대장 백○○은 사자명예훼손 1심재판에서 UH-1H 5대는 완전무장을 하고 대기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5월 21일 13시 10분에 광주비행장에 도착한 UH-1H 10대 중 최소 5대는 완전무장 상태로 출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202항공대에서 출동한 조종사와 승무원의 진술은 무장 상태로 UH-1H가 출동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³⁹⁰

다음 <표 2-3-1>은 육군항공대의 일자별 출동 과정과 각 항공대별 주요 임무를 정리한 것이다.

<표 2-3-1> 육군항공대 일자별 출동 과정과 주요 임무

출동일시	항공대	기종/대수	주요 임무 및 지시 내용
5.15.	505항공대 (부천) (중령 신○○)	500MD 5대 (비무장 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본에서 2군사령부 배속 지시 의거 506항공대 증원 • 광주, 전주, 대전, 부산, 창원 각 사단에 1대씩 배치 • 사단장 지휘통제 및 정찰 임무 수행
5.19. 10:50	202항공대 (성남) (중령 이○○)	UH-1H 4대 (일부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군 연행자 교도소 수송, 사망자/환자후송, 부식 추진, 선무방송, 전단 공수
5.21. 06:20	502항공대 (초일리) (중령 신○○)	500M 4-6대 (M5살포기장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대, 시위 현장, 화순 너릿재 일대 가스살포 • 5.22일 1대 잔류, 3대 복귀

388 전투병과교육사령부, 『전투상보』(1980), 20쪽. 전교사 전투상보에는 5월 21일 19:20 4대의 무장헬기 지원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전투병과교육사령부, 『광주사태 시 전교사 정보일지』(1980), 253쪽. 전교사 정보일지에는 같은 날 15:55 무장헬기 4대 지원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89 UH-1H 헬기 출동 경위에 대한 지휘관, 조종사, 승무원의 진술에 대해서는 위원회 직권사건 직나-10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헬기사격 사건」 조사결과보고서 <표 8>을 참조하라.

390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임○○ 진술청취서(2017.9.27.)』, 『조사기록철(헬기팀-24-1)』, 303~327쪽; 5·18조사위, 202항공대 승무원 「이○○ 진술요지서」(2023.03.14).

출동일시	항공대	기종/대수	주요 임무 및 지시 내용
5.21. 10:00	506항공대 (대구) (중령 김○○)	500M 4-7대 (7.62mm 2,000발 무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2대는 31사 작전통제, 차후 전교사 작전통제 운 용 • 도청 옥상 대공화기 진지제압 지시, 광주천 무력시위 지시 받음 • 5.21 광주공원 정찰 지시 • 해남대대/우슬재 시민군 제압 출동 • 정찰/환자 후송, 부식 공수
5.21. 11:55	203항공대 (성남) (중령 백○○)	UH-1H 8-10대 (M60D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사 도청 분수대/특전사 주남마을 병력 공수 • 5.27.06:00 이전 광주 시내 위력 시위 비행 • 사망자/환자 후송, 탄약/부식 공수, 정찰비행,
5.22. 13:00	103항공대 (초일리) (중령 이○○)	AH-1J 2대 (20mm 500발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의대 옥상 LMG 제압사격 지시 • 조선대 절토지 위협 사격/광주천 변 위협 사격 지시 • 11공수 공격시민군 무차별 사격 지시 • 5.27. 06:00 이전 광주 상공 위력 시위 비행
5.22. 14:55	501항공대 (초일리) (중령 김○○)	500MD 4대 (7.62mm 2,000발 무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공원에 위협 사격 지시 무선 감청 • 5.27.06:00 이전 광주 상공 위력 시위 비행

3) 단계별 항공작전 임무

군의 작전문서와 육군항공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506항공대의 500MD가 광주에 투입된 5월 14일부터 7공수여단의 이른바 '잔도소탕작전'으로 UH-1H가 무등산에 투입된 5월 29일까지의 항공작전을 다섯 단계별로 재구성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소요 상황을 정찰하고 감시하는 목적 아래 항공작전이 전개된 시기이다. 이 시기는 육본의 중앙기동예비대로서 편성된 제1항공여단 예하의 항공기들을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로 작전 배속 해제 및 변경하고, 해당 지역에 배치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일자별로는 5월 14일부터 소요 초창기인 5월 18일까지가 해당된다.

두 번째 단계는 비무장한 헬기에서 시위상황을 해산하기 위한 전단을 살포하고, 선무방송을 실시하고, 시위 과정에서 부상당한 환자를 호송하는 임무가 수행된 단계이다. 5월 19일부터 최초 집단발포가 있었던 5월 20일까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단계

에서는 비무장한 500MD 3대와 UH-1H 2대가 동원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5월 20일 광주역 앞 발포 이후 한층 격해진 시위 양상에 대한 진압 목적으로 계엄사에서는 5월 21일 아침 6시 30분경 502항공대 500MD 5대에 M5 가스살포기를 장착하여 광주에 출동시켰으며, 전교사의 무장헬기 긴급 요청에 따라 506항공대에서 7.62mm 2,000발씩 무장한 500MD 4대와 ○○파견중대에서 무장 전환시킨 500MD 2대를 광주에 재배치해서 공포를 조성하고 위력시위를 실시한 21일 상황이다. 헬기사격의 목격자가 등장한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 무자비한 시위진압과 사상자 발생으로 인해 시위 양상이 점차 강해짐에 따라 이 시기 항공작전은 경무장 헬기를 운용하며 시위상황에 대응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네 번째 단계는 계엄군이 광주 도심에서 철수하고 나서 외곽차단작전으로 전환한 5월 22일부터 최종진압작전이 완료된 5월 27일까지 시위대에 대한 무력시위뿐만 아니라 외곽으로 시위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광주 시내에서 인근 지역으로 나가는 시위대를 추적, 차단하는 작전이 전개된 시기이다. 다수의 사상자를 초래한 5월 21일 도청 앞 집단 발포 상황에 따라 계엄사령부는 5월 22일 14시 15분경 AH-1J 코브라 헬기 2대를 20mm 발칸포를 장착하고, 500발씩 탑재해서 광주로 파견하였다. 그리고 UH-1H도 무장을 하였다. 시위 양상에 따라 점진적으로 비무장헬기 - 경무장헬기 - 중무장헬기를 축차적으로 투입시킨 것은 시위군중을 향한 헬기사격을 전제하였다는 점을 정황적으로 뒷받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5월 27일 최종진압작전이 완료된 뒤 계엄군의 광주 및 외곽 봉쇄 지역에서의 철수를 지원하고, 전남북 도계 차단 병력을 중요 지점으로 재배치하는 지원 임무를 수행했던 단계이다. 더불어 5월 29일 시위대가 무등산으로 들어갔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된 ‘잔도소탕작전’을 위한 무등산 일대 수색 작전에 투입된 7공수여단 병력을 공수하는 임무 또한 이 시기에 수행되었다. 대부분의 항공기들은 원대 복귀하였으나 이 단계에

서는 UH-1H 5대, 500MD 6대, 정찰 임무를 수행한 고정익 O-1기 2대가 임무를 수행했다.

계엄당국이 광주에 헬기를 투입한 목적을 문헌조사, 대인조사 등을 토대로 단계별로 재구성하면 <표 2-3-2>와 같다.

<표 2-3-2> 5·18민주화운동 당시 단계별 헬기 투입 목적

단계별 투입목적	누적 출동 대수/임무 내용	사격 지시
소요상황정찰/ 감시 (5.14 ~ 5.18)	• 무장, 지휘통제, 공중정찰 (500MD 2대)	
시위상황 해산 (5.19 ~ 5.20)	• 비무장, 전단 살포, 방송, 환자후송 (500MD 3대, UH-1H 2대)	
공포조성 위력시위 (5.21)	• 경무장(7.62mm), 가스살포(M5), 정찰, 위력 시위 (500MD 11대(무장6, 가스4), UH-1H 12대(무장8, 비무장4))	정웅 황영시 김재명
시민군추적 무력시위 (5.22 ~ 5.27)	• 중무장(20mm), 무력 시위 (500MD 11대(무장10), UH-1H 12대(무장8, 비무장4), AH-1J 2대(무장2))	이상훈 김순현 최웅
잔도소탕 및 후속 지원단계 (5.28~5.29)	잔도소탕작전 인원 공수(7공수여단 병력, K-57-무등산) ³⁹¹ , 정찰 및 통신장비 수송(강진-해남-목포) (500MD 6대, UH-1H 5대, O-1 2대)	

나. 헬기 무장 상태와 사격 가능성

1) 일자별 육군 헬기 임무 현황과 비행시간기록 누락

계엄군의 진압 작전상황에 따라 육군헬기의 임무 내용과 비행 중 사격 가능 상태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위원회는 『제1항공여단 상황일지』, 『80항공병과사』, 육군본부 항공감실에서 퍼낸 『광주지역 작전 현황』, 육군본부 작전교육참모부에서 작성한 「소요사태 대비

391 2군사령부, 「작전조치사항」(5.29. 06:00 - 5.29. 12:00).

계획], 육군본부 작전상황실 일지 및 명령철, 전투병과교육사령부 「상황일지」, 「작전일지」 및 「정보일지」, 특전사 전투상보 등에서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일자별로 육군헬기의 출동과 임무 수행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1995년 검찰수사 당시 육군항공의 지휘관 및 조종사들의 진술과 2017년 국방부 특조위 조사 당시의 육군항공 관계자들에 대한 대인조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 그리고 위원회의 육군항공 관계자들에 대한 대인조사 자료들을 검토하여 일자별로 육군 헬기 임무 현황을 재구성하였다.³⁹²

그 과정에서 군에서 생산한 문서에서 나타난 비행 임무 횟수와 조종사들이 진술하고 있는 비행 임무 횟수가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제1항공여단이나 육군본부 항공감실에서 생산한 상황일지, 『80항공병과사』, 『광주지역 작전 현황』 등의 문서에서 항공작전의 내용이 소략되어 있거나 누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선 비행기록과 관련해서 2018년 국방부 특조위에서 진술한 506항공대장 김○○은 항쟁 기간 중 UH-1H와 500MD가 매일 100여 쏘티(sortie) 임무를 지원하였다고 하였는데,³⁹³ 군에서 생산한 각 문서들을 종합해보면 대략 306쏘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여러 운항기록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일부 조종사의 경우 위원회와의 면담조사 때 수시로 비행 임무가 하달되었으며, 한밤중에도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러한 진술로 보았을 때 상당수의 운항기록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³⁹⁴ 이는 육군본부 항공감실에서 작성한 『80항공병과사』 중 「광주지역 출동 항공 지휘관의 애로사항 보고 내용」이라는 별지 형태의 보고 내용에서도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다.

392 구체적인 일자별 육군항공의 출동과 임무 수행 현황은 5·18조사위, 「직나-10,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헬기사격 사건」 조사결과보고서 〈표 11〉을 참조.

393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김동근 진술청취서」(2018.01.03), 『조사기록철(헬기팀-24-23)』, 775쪽.

394 5·18조사위, 203항공대 조종사 「노○○ 진술조서」(2023.06.15).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1995년 검찰수사 당시 제출된 2명의 조종사의 「개인비행시간 기록부」이다. 이들 조종사는 각각 103항공대의 AH-1J 코브라 헬기 조종사와 506항공대의 500MD 헬기 조종사이다. 검찰에 제출된 「개인비행시간기록부」에는 일자별로 비행시간, 비행 횟수, 비행 임무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³⁹⁵ 이들의 개인비행시간기록부를 여러 군 기록과 대조한 결과 개인비행시간기록부에 기재된 운항기록 일부가 작전문서의 기록에는 누락되어 있다. AH-1J 코브라 헬기 조종사의 경우, 5월 23일 주간의 비행 임무 기록이 작전문서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5월 27일의 경우에는 기록부에 비해 작전문서에는 AH-1J 헬기의 비행횟수가 1회 누락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500MD 조종사의 경우, 5월 23일 비행시간 기록과 5월 25일 비행시간 기록이 작전문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5월 25일의 경우 군 기록에는 항공작전 자체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반면 500MD 조종사의 비행시간기록부에는 비행기록이 기재되어 있다. 광주재진입작전이 전개된 5월 27일의 경우에도 비행시간기록부에 기재된 비행임무 횟수와 시간이 작전문서에는 적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 볼 때 중요한 진압작전에서 비행기록이 누락된 이유와 그 의도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헬기사격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³⁹⁶

〈표 2-3-3〉 1995년 검찰 조사에 제출한 103항공대 조종사 구○○ 「개인비행시간기록부」

비행 일자	임무 기호	비행시간 (정조종사)	착륙 횟수	주간비행
5.22	C	1.5	1	1.5
5.23	C	1.8	2	1.8
5.24	C	5.2	3	5.2

395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구○○ 개인비행시간기록부」, 『5·18사건 수사기록』 24권, 31870쪽;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서○○ 개인비행시간기록부」, 『5·18사건 수사기록』 24권, 31901~31903쪽.

396 20사단 상황일지에서 나타난 5월 27일 당시 작전상황은 다음과 같다.
 “03:30 총정작전 개시, 04:45 지휘용 무장헬기 전원 도착 요청(20사단→항공대), 04:55 30여단 무장헬기 지원요청/전교사 접수, 05:17 500MD 3대 도청 선회 요청, 05:35 500MD 3대, AH-1J 2대 이륙, 06:00 위력기동 완료(500MD 3대, AH-1J 2대), 06:01 타겟 지역 정찰 출발(환자 후송, 사직공원, UH-1H 3대)”

비행 일자	임무 기호	비행시간 (정조종사)	착륙 횟수	주간비행
5.25				
5.26				
5.27	C	2.7	3	2.7
5.28	C	1.5	1	

〈표 2-3-4〉 1995년 검찰 조사에 제출한 506항공대 조종사 서○○ 「개인비행시간기록부」

비행 일자	임무 기호	비행시간 (정조종사)	착륙 횟수	주간비행
5.21	C	2.5	4	2.5
5.22	C	1.5	2	1.5
5.23	C	2.2	2	2.2
5.24	C	3.2	3	3.2
5.25	C	3.2	2	3.2
5.26	C	0.6	1	0.6

* 임무 기호 중 C는 전투를 의미하는 Combat의 약자이며, T는 Training의 약자이다.

조종사의 「개인비행시간기록부」와 관련해서 502항공대의 조종사가 주목되는 진술을 지난 국방부 특조위에서 한 바 있다.³⁹⁷ 이 진술에 따르면, 1989년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 때 당시 군 당국에서 출동했던 사람들의 1980년 5월달 개인비행시간기록 원본을 제출용으로 수거해갔다. 103항공대 조종사와 506항공대 조종사가 검찰수사 당시 자신의 개인비행시간기록부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위원회는 다른 조종사들을 조사하면서 확인해 보았으나 대부분 망실했거나 전역할 때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개인 비행시간기록부를 보존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군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 때도 당시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397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박○○ 진술녹취서」(2017.10.31), 『조사기록철(헬기팀-24-7)』, 2467~2468쪽.

2) 비행 임무 중 무장 상태와 사격 가능성

가) AH-1J 코브라 헬기의 무장 상태와 사격 가능성

5월 22일 제31항공단장의 명령을 받고 AH-1J 2대에 20mm 발칸 탄약 500발씩 각각 무장하여 하남 기지를 출발한 103항공대 헬기들은 당일 14시 15분경 광주비행장에 도착하였다.³⁹⁸ 1호기는 정조종사에 103항공대장 이정부, 부조종사에 이연하, 2호기에는 정조종사에 차동준, 부조종사에 구지웅이 탑승하였으며, 무장사 김용주는 501항공대 500MD에 탑승하여 출동하였다.³⁹⁹ 출동에 앞서 제1항공여단장 송진원과 제31항공단장 방영제는 “광주에 폭동이 일어나 무기고도 탈취당하고 사격도 벌어지는 등 상황이 심각하니 무장 헬기를 인솔하여 광주로 출동하라”는 지시와 함께 “무력시위를 하여 위력을 과시”하라는 출동 지침을 받았다. 그리고 모든 지시는 전교사의 지시에 따르라는 명령을 하달했다.⁴⁰⁰ 그리고 출동하는 AH-1J 헬기는 20mm 발칸만을 운용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이에 따라 103항공대에서는 20mm 발칸포와 실탄 500발을 적재한 코브라 헬기 2대를 차출해서 광주로 내려보냈다.

검찰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선행조사에서 당시 출동한 103항공대의 조종사와 무장사들은 광주로 출동할 당시 20mm 발칸포와 탄약을 항공기에 적재한 채 내려간 사실에 대해서는 공히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헬기사격 여부와 관련해서는 20mm 발칸 사격의 피해가 엄청날 수 있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지상부대의 이동 시 공중 엄호 비행 임무를 수행하였으며,⁴⁰¹ 코브라 헬기가 투입된 것 자체만으로도 소요를 억제하는 위협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별도로 무장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정조종사로 출

398 제1항공여단, 『1항공여단 상황일지』(1980), 278쪽.

399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구○○ 진술조서」(1995.05.24.), 『5·18사건 수사기록』 24권, 31858~31859쪽;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1685 사자명예훼손, 「구○○ 증인신문조서」(2019.11.11.), 『공판기록』 3권, 1521쪽.

400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이○○ 진술조서」(1995.05.15.), 『5·18사건 수사기록』 21권, 29255쪽.

401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이○○ 진술서」(1989.02.10.), 『5·18사건 수사기록』 21권, 29393쪽.

동한 차○○은 비행 임무를 수행할 때 무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⁴⁰²하고 있으나 1995년 검찰 조사에서 103항공대장 이○○와 부조종사 구○○은 24일 송암동 오인교전 현장으로 무장 출동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았을 때 이들의 진술과 차○○의 진술이 배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H-1J 코브라 헬기의 무장 출동 사실은 「11공수여단 전투상보」에서도 ‘건십 2대 공중엄호’라는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AH-1J 코브라 헬기의 비행 중 무장 상태에 대해서는 당시 출동했던 103항공대의 무장사 김○○에게서도 확인이 된다. 김○○은 1989년 2월 육군항공 관계자들이 조비오 신부에 대한 집단고소장을 제출할 때 자필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바 있다.⁴⁰³ 당시 제출한 자필진술서에서 무장 상태와 사격 가능성 여부를 보여주는 기술 내용은 두 가지다. 그는 “코브라 2대에 20mm 발칸을 장전하고 출동했으며, ① 그중 1대는 건 드라이브(Gun-Drive) 고장으로 1대만 정상적으로 실탄을 장전하였으며, ② 작전 시부터 종료 시까지 재장전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진술서에 기재된 ‘건 드라이브 고장’의 의미를 확인하려고 하였다.

건 드라이브는 AH-1J 코브라 헬기에 장착된 20mm 발칸의 총열을 구동시키며, 상/하, 좌/우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모터 장치이면서, 사격과 연관이 깊은 부속이다. 또한, 건

402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차○○ 진술청취서」(2018.01.22), 『조사기록철(헬기팀-24-24)』, 8062~8121쪽. 차○○은 한 인터넷 방송에서 24일 오인교전 현장에서 복귀할 때 무전으로 광주전에 위협사격 지시가 들어왔으나 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무장과 사격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헬기에게 사격 지시가 내려왔고, 그 지시에 따라 해당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것 자체가 조종사 차○○의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장군의 초대석, 5·18 민주화운동의 진정한 영웅, 대한민국 육군 헬기 조종사 — 백○○ 예비역 준장, 차○○ 예비역 중령(29)」, 『장군의 소리』(2019.06.13), <https://www.youtube.com/watch?v=-EjhcZ0Z0g>.

403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 진술서」(1989.2.10), 「5·18사건 수사기록」 21권, 29411쪽. 「자필 진술서」와 관련해서 김○○은 1989년 초에 제6항공단 본부에서 자신을 불러서 본부 운항실에서 서명만 한 기억밖에 없다고 했다. 진술서 또한 자신이 직접 쓴 기억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국과수 필적 감정 결과 본인의 필적과 유사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2023-M-16783호, 2023. 8. 31; 5·18조사위, 103항공대 무장사 「김○○ 1차 면담 진술조서(2023.08.06.)/2차 면담 진술서(2023.10.15.)」, 「자필 진술서」와 관련해서 505항공대 출동 조종사 이○○은 그 당시 육군본부에서 연락이 와서 간단하게 한 장으로 작성해서 육군본부에 제출했다고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진술했다. 「505항공대 조종사 이○○ 조사 결과 요약 및 진술록취서」(2017.09.25), 『조사기록철(헬기팀-24-1)』, 113~128쪽.

드라이브의 고장 빈도는 1대당 5년 평균 교환 횟수가 0.86회 정도이며, 거의 고장이 나지 않는 사격 계통 부품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원회는 이렇게 고장율이 낮은 건 드라이브의 고장과 사격 시의 기능 고장의 인과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무장사 김○○는 위원회 면담조사 당시 “건 드라이브가 고장나는 경우는 과부하가 걸릴 경우 부러지기에 자주 고장이 나면 안 된다”고 진술하였다.⁴⁰⁴ 즉, 김○○의 진술서에 기록되어 있는 ‘건 드라이브 고장’은 사격 시 발생한 과부하나 모종의 문제로 인해 고장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자필 진술서에 기재된 ‘건드라이브 고장’ 역시 AH-1J 사격의 정황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작전 시부터 종료 시까지 재장전은 하지 않았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무장사 김○○는 5월 27일 광주재진입작전 끝날 때까지 재장전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진술하였다. 면담조사 당시 위원회는 20사단 전투상보 보급 현황란에 기재된 ‘5.23 20mm 발칸 1,500발 항공대’라는 보급 내용과 연관해서 질의하였으나 본인이 재장전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5월 27일 최초 작전이 전개되기 전 장전한 이후 보급된 탄약을 재장전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표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대답하였다.⁴⁰⁵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5월 22일 출동한 103항공대의 AH-1J 코브라 헬기는 출동할 당시 20mm 발칸 탄약을 출동 헬기 2대에 각각 500발씩 적재를 하고 출동하였다. 그리고 103항공대의 조종사들의 진술로 볼 때, 5월 24일 송암동에서 11공수여단이 광주비행장으로 철수할 때 코브라 헬기는 무장한 채 공중엄호를 했으며, 보병학교 교도대대와 오인교전이 발생했을 때 공중 화력지원 요청을 받아 광주비행장에서 20mm 탄약을 장전해서 사격 가능한 상태로 현장에 출동하였다. 또한 5월 27일 광주재진입작전 당시 AH-1J 헬기에 장전 상태의 무장이 이루어졌으며, 사격 가능한 상태에서 도청 일대에

⁴⁰⁴ 5·18조사위, 103항공대 무장사 「김○○ 1차 진술조서」(2023.08.06.).

⁴⁰⁵ 제20보병사단, 「보급 지원 현황: 2. 탄약」, 『광주사태 관련 총정작전 상보』, 1258쪽.

서 작전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500MD 헬기의 무장 상태와 사격 가능성

502항공대는 당시에 수도경비사령부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었으며, 청와대 일원의 경계 임무를 맡고 있었다. 육군본부는 502항공대 500MD 6대를 작전 배속되어 있던 수경사령부로부터 5월 14일 13:00부로 배속 해제시켜 제1항공여단에 이양하였다.⁴⁰⁶ 그중 5대를 5월 21일 새벽 5시 10분경에 광주에 배치시켰다.⁴⁰⁷ 배치된 5대 중 4대에 M5 가스살포기를 장착시켰으며, 광주 현지에서 전남대학교, 금남로, 도청 일원에서 공중가스 살포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⁴⁰⁸ 5월 22일 광주 현지 상황에 따라 취해진 ‘500MD 무장화’ 조치에 따라 가스살포기가 장착된 502항공대의 헬기 3대가 하남 기지로 복귀하였으며, 23일 502항공대에서 2대가 추가로 가스살포기를 장착하고 내려왔다.⁴⁰⁹ 출동한 조종사는 7.62mm 기관총을 미장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각종 군 문서에서도 502항공대가 가스살포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았을 때 502항공대 소속 500MD가 사격을 광주에서 했다는 증거관계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505항공대는 당시 제3군사령부에 배속되어 운용되고 있었다. 5월 14일 육군본부에 의해 505 소속 비무장 500MD 헬기 5대가 506항공대에 증원되었으며, 506항공대 500MD

406 육군본부 작전교육참모부, 「장비 지원 및 HEL기 운용 전환 지시(작성전 제0-204호)」, 『소요사태 대비계획』 (1980.05.).

407 502항공대, 『502항공대 역사일지』, 46쪽; 제1항공여단, 『상황일지』, 276쪽.

408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고○○ 진술 청취서」(2017.09.25.), 『조사기록철(헬기팀-24-1)』, 134~135쪽; 5·18 조사위, 502항공대 조종사 「노○○ 참고인 진술조서」(2022.11.29);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1685 사자명예훼손, 「이○○ 증인신문조서」(2020.07.20.), 『공판기록』 14권, 6394~6401쪽; 5·18조사위, 조사4과-403(2022.04.19.) 「502항공대 조종사 대위 임○ 면담조사 결과 보고」(2022.03.30);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임○ 진술청취서」(2017.12.15.), 『조사기록철(헬기팀-24-18)』, 5867~5875쪽.

409 5·18조사위, 502항공대 조종사 「노○○ 참고인 진술조서」(2022.11.29);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1685 사자명예훼손, 「이○○ 증인신문조서」(2020.07.20.), 『공판기록』 14권, 6428~6430쪽;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임○ 진술청취서」(2017.12.15.), 『조사기록철(헬기팀-24-18)』, 5915쪽.

헬기 5대를 붙여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창원에 각각 배치하여 소요사태 진압작전에 운용하였다.⁴¹⁰ 이 중 2대가 5월 15일 광주비행장에 도착하여 31사단에 배속되었다. 505항공대 소속 헬기는 광주에서 31사단장 지휘기 임무를 부여받고 비무장 상태로 임무를 수행하였다.⁴¹¹

광주에 들어온 500MD 헬기 운용부대 중 헬기사격과 관련해서 의혹을 받는 부대는 501항공대와 506항공대이다. 501항공대에서는 500MD 5대가 광주에 출동하였다. 5월 22일 14시 55분경 103항공대장 이○○의 인솔 하에 비무장한 지휘기 1대와 7.62mm 2,000발식 각각 무장한 4대가 하남 기지를 출발하여 16시 35분경 송정리 공군비행장에 도착하였다. 501항공대는 22일 광주에 도착한 이후 비행 임무를 수행할 때 언제든지 사격이 가능한 상태로 작전에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조종사와 출동한 무장병에 대한 면담조사 과정에서 확인하였다.⁴¹² 출동의 목적은 무력시위를 하여 시위대에게 공포심을 심어줘 시위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비행 임무 중 사격가능한 상태였다는 사실은 출동한 무장병의 진술에서 나왔다. 그는 자신의 임무가 헬기들이 출동할 때 실탄을 장전하여 즉각 사격이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무장병과의 면담조사 과정에서 오발사고와 오장전 사고가 당시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⁴¹³ 오발사고와 오장전 사고는 출동 당시 500MD 헬기에 탄환이 총열에 장전이 되었으며, 그 상태로 비행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410 502항공대, 『역사일지』(1980);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이○○ 진술녹취서」(2017.09.25.), 『조사기록철(헬기팀-24-1)』, 117~128쪽.

411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이○○ 조사결과 요약 및 진술녹취서」(2017.09.25.), 『조사기록철(헬기팀-24-1)』, 113~128쪽.

412 5·18조사위, 501항공대 조종사 「문○○ 진술서」(2022.08.06.); 5·18조사위, 501항공대 조종사 「천○○ 진술서」(1차 면담 2022.06.30./2차 면담 2022.07.12.)

413 5·18조사위, 501항공대 무장병 「권○ 진술서」(2022.08.11). 오발 사고와 관련해서는 502항공대 조종사 노○○과 501항공대 출동 정비사 소○○의 진술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5·18조사위, 502항공대 조종사 「노○○ 참고인 진술조서」(2022.11.29); 5·18조사위, 501항공대 정비사 「소○○ 진술조서」(2023.06.30)).

조종사 천○○의 진술에 따르면, 5월 27일 최종진입작전을 앞두고 26일 오후에 103항공대장 이○○가 공격헬기(AH-1J, 500MD) 조종사들을 참석시킨 작전회의 석상에서 “지상작전부대의 요청에 대응하는 위협사격” 지시를 내렸고, 사격대상 지역도 광주천변을 지목하였다. 즉, 27일 광주재진입작전 시 모든 항공기에 무장 지시가 있었고, 즉각 사격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고 작전에 투입된 것이다.

당시 대구 달성군에 주둔하고 있었던 506항공대는 이 중 1개 헬기 중대, 500MD 3대를 ○○비행장에 상시 주둔시켜놓은 상태였다. 506항공대는 평시에 2군사령부에 배속되어 작전 지휘를 받았으며, 전교사의 요청과 2군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5월 15일부터 단계별로 500MD 6~7대를 각각 7.62mm 2,000발씩 무장하여 광주에 출동시켰다. 5월 21일 9시경 전교사의 ‘무장헬기 긴급 건의’에 따라 11시경에 대구 달성 506항공대 기지에서 500MD 2대가 무장한 상태에서 광주로 출동하였는데, 무장한 500MD로서는 최초의 전개다. 그리고 ○○파견중대에서 지원된 2대가 전주로 복귀했다가 무장한 채 다시 광주로 지원되었다.⁴¹⁴

506항공대장 김○○과 조종사 서○○은 광주로 출동할 당시 무장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나 실탄을 약실에 장전한 상태는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격 가능한 상태에서의 임무 수행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⁴¹⁵ 하지만 ○○파견중대에서 출동한 정비사 정○○과 무장사 배○○는 계속 탄박스를 신고, 사격할 수 있는 장전 상태로 임무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오발사고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대구 본대에서 출동한 무장사 최○○ 또한 조종사 지시에 따라 500MD에 7.62mm 기관총을 무장하였고, 비행 중 사

⁴¹⁴ 전투병과교육사령부, 『광주사태 시 전교사 작전일지』(1980), 253쪽; 전투병과교육사령부 『전투상보』(1980), 20쪽.

⁴¹⁵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 진술조서」(1995.05.24), 『5·18사건 수사기록』 21권, 29493쪽;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김○○ 진술청취서」(2017.12.29), 『조사기록철(헬기팀-24-23)』, 7755, 7731~7732쪽; 광주지방검찰청 2017형제21184호 사자명예훼손, 「서○○ 진술조서」(2017.09.21), 『증거기록』 4권, 2005쪽; 5·18조사위, 506항공대 조종사 「서○○ 진술조서」(2023.12.13). 이 두 조종사는 1995년 검찰 수사를 받았으며, 서○○은 1989년 2월 조비오 신부에 대한 육군항공관계자들의 집단고소에 첨부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다.

격이 가능한 상태로 조종사들이 임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했다.

무장과 사격 가능 상태에 대한 상황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는 국방부 특조위 조사에서 상부로부터의 위협사격 지시와 조종사들 간의 헬기 위협사격 방법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한 506항공대 작전과장 최○○의 진술이다. 최○○은 5월 22일 15시경 시위대 습격에 대한 첩보에 따라 해남대대 무기고로 무장을 한 채 출동한 바 있다고 진술했다.⁴¹⁶ 또한 국방부 특조위 조사와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법정에서 무장 상태와 비행 중 사격 가능한 상태에서의 임무 수행, 위협사격 지시, 위협사격 시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조종사들과 논의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한 바 있다.

사격 가능한 상태로 무장 출동한 또 하나의 사례는 5월 22일 10시경 31사단장 정웅의 지시에 따라 506항공대 헬기가 장흥교도소에 대한 폭도들의 습격을 막기 위해 무장 출동한 경우이다.⁴¹⁷ 조종사들은 제압하라는 명령에도 “폭도가 아닌 것 같다”는 보고를 하며 복귀하였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대인조사, 문헌조사 등의 조사내용으로 볼 때, 501항공대, 506항공대의 500MD 헬기들이 본대에서 광주로 출동할 당시 무장 상태였다는 점은 지휘관, 조종사 모두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새롭게 조사를 실시한 조종사, 무장사, 정비사로부터 위원회는 광주 현지에서 비행 임무 수행 중의 무장 상태는 조종간을 당겼을 때 바로 사격이 가능한 상태라는 내용의 진술을 확인하였다. 또한 비행 임무가 하달되었을 때, 항공기들은 작전상황에 따라 직접 현장의 시위군중을 향해 사격을 할 것을 지시받기도 하였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⁴¹⁶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최○○ 녹취서』(2017.12.26), 『조사기록철(헬기팀-24-21)』, 7413~7417쪽.

⁴¹⁷ 제31사단 작전보좌관 소령 임정복, 『광주사태 시 정웅(31사단장) 동정』, 1995년 서울중앙지검 자료, 1214쪽.

〈표 2-3-5〉 500MD 운용 항공대 광주 출동 현황 (501항공대, 506항공대)

구 분	501항공대	506항공대
광주 출동 현황	• 500MD 5대 (조종사 10, 정비사 1, 무장사 1)	• 500MD 6~7대 (조종사 13, 정비사 1, 무장사 2)
무장 상태	7.62mm 탄약 2,000발씩 무장	7.62mm 탄약 2,000발씩 무장
작전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발: 1980.5.22.14:55. ■ 광주비행장 도착: 16: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5. ○○파견중대 2대 출동 ■ 5.21 18:00 ○○중대에서 무장 후 재출동 ■ 5.21 10:00~11:00 대구 본대 1차 2대 출동 ■ 5.21 15:55~17:00 대구 본대 2차 2대 출동
주요 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22.16:35. 500MD 4대 광주비행장 도착 ■ 5.24.14:00-15:30. AH-1J/500MD(103/501) 11여단 철수 엄호 ■ 5.27.05:35-06:00, AH-1J 2대, 500MD 3대 위력기동 ■ 5.27.06:30-08:10. AH-1J 2대, 500MD 5대, UH-1H 4대 시가지 위력시위 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21.12:00-12:40, 500MD 1대 공중 초계 비행 ■ 5.21.17:00. 500MD 2대(7.62mm 2,000발 무장) 31사단 사령부 도착 ■ 5.21.19:00. ○○파견중대 500MD 2대 (7.62mm 2,000발 무장), 전주에서 무장 후 광주비행장 재전개 ■ 5.22.10:45, 500MD 2대 장흥교도소 출동, 11:30분 복귀 ■ 5.22.12:10-13:00, 500MD 1대, 31사단 정보참모 여천지역 항공정찰 ■ 5.22.15:00-16:10, 500MD 2대 해남대대 (우슬재) 무기 탈취 시민군에게 31사단장 사격 지시 출동, 복귀 중 1대는 구례대대 부식 공수 중 사고 ■ 5.24.10:00-16:00. 500MD 2대 광주시 외곽 항공정찰 ■ 5.26.10:55-12:00. 500MD 1대 장흥교도소 출동

〈표 2-3-6〉 500MD 운용 항공대 광주 출동 현황 (502항공대, 505항공대)

	502항공대	505항공대
광주 출동 현황	• 500MD 4~6대 (조종사 11, 수경사 화학병 탑승)	• 500MD 기본기 1대 (조종사 2)
무장 상태	지휘기 1대, M5 가스살포기 장착 4대	31사단 지휘용, 비무장
작전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21.06:25~5.22.13:30 500MD 5대 광주 전개 ■ 5.22.13:30~5.28.18:14 3대 복귀, 1대 잔류, 1대 추가 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5. 미상 시간 ∞ 5.30.17:00
주요 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21.06:25 살포기 5대 광주 도착 ■ 5.21.09:30-11:00 전남대 가스 살포 ■ 5.21.11:00-12:00 금남로 가스 살포 ■ 5.21.13:00-13:40 전남대 가스 살포 ■ 5.21.14:55 전남대 가스 살포 ■ 5.22.13:30 가스 살포기 3대 복귀 2대 잔류 ■ 5.23.11:55-13:24 가스 살포기 추가 출동 및 교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사단장 지휘용, 공중정찰

다) UH-1H 헬기의 무장 상태와 사격 가능성

제61항공단 예하의 UH-1H를 운용하는 202항공대, 203항공대는 평시부터 육군의 중앙 기동예비 임무를 부여받고 있었으며, 일부 항공기들은 육군의 주요 지휘관용으로 운용되었다. 육군본부는 이들 항공대가 광주에 출동하기 이전부터 즉각 출동태세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202항공대는 5월 19일 10시 50분경 선무방송을 위해 UH-1H 1대를 광주로 출동시켰으며, 주로 지휘관 수송, 보안요원 수송, 선무방송 등의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육군본부는 5월 21일 UH-1H를 광주에 지원하기로 하고, 2개 항공대를 203항공대장 백○○에게 통합 지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11시 15분에 202항공대 UH-1H 2대, 203항공대 8대를 광주로 내려보냈다.

1989년 조비오 신부에 대한 집단고소 당시 제출된 「자필 진술서」에 참여한 UH-1H 조

종사 김○○, 배○○, 김△△, 엄○○, 이○○ 또한 진술서에서 기관총을 장착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기술했다.⁴¹⁸ 그러나 202항공대의 출동 조종사 임○○, 무장사 박○○은 기관총 장착과 실탄 적재에 대해서 증언하였으며, 조종사 최○○는 광주에 지원된 UH-1H 헬기 좌우측에 M60D 기관총을 거치하고 나갔었다고 진술하였다.⁴¹⁹ 1996년 1월 검찰수사에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20사단 61연대 3대대장 김○○은 5월 21일 도청에 있는 공수여단 병력과 20사단 병력을 교대하기 위해서 UH-1H에 탑승하여 항공정찰을 할 때 기관총이 헬기에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을 하였다.⁴²⁰ 일부 조종사는 비행훈련 시에도 기관총을 장착한 상태로 비행하며, 광주 출동 당시에도 뒷자석에 실탄을 적재하고 내려왔다는 진술을 하였다. 이는 무장과 실탄 적재 사실을 부인하는 지휘관들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진술이다.

203항공대 정비장교 고○○는 백○○ 항공대장의 출동 준비 지시에 따라 5월 21일 헬기에 M60D 기관총과 탄통, 탄피받이를 장착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위원회 조사에서 진술하였다.⁴²¹ 203항공대장 백○○은 2018년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과 1995년 검찰 수사와 2017년 국방부 특조위 조사와는 모순되는 진술을 내놓았다.⁴²² 비무장 상태로 출동하였으며, 기관총 설치에 필요한 마운트, 자바라 등도 가져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과는 다르게 5분대기조와 같은 긴급대기로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5대는 완

418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김△△·배○○·엄○○·이○○ 진술서」(1989.02.10), 『5·18사건 수사기록』 21권, 29390, 29396, 29398, 29402, 29407쪽. 위 조종사들은 모두 광주에 출동한 UH-1H 헬기를 운용하는 202·203항공대 조종사들이다.

419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임○○ 진술청취서」(2017.09.27), 『조사기록철(헬기팀-24-1)』 307~309쪽;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박○○ 녹취서」(2017.09.28), 『조사기록철(헬기팀-24-2)』 357~359쪽;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최○○ 녹취서」(2017.11.01), 『조사기록철(헬기팀-24-8)』 2502~2511쪽.

420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 진술조서」(1996.01.15), 『5·18사건 수사기록』 107권, 108376쪽.

421 5·18조사위, 203항공대 조종사 「고○○ 진술조서」(2023.08.01).

422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백○○ 조사 결과 요약 보고 및 진술청취서」(2018.01.17), 『조사기록철(헬기팀-24-24)』 7960~8045쪽.;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1685 사자명예훼손, 「백○○ 증인신문조서」, 『공판기록』 5권, 2306~2307쪽, 2344쪽. 203항공대 조종사 최○○의 기관총 장착 사실에 대한 인정과 마찬가지로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백○○ 또한 화기의 장착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전무장을 하고 대기하였다고 진술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5월 14일부터 중앙기동예비대로 UH-1H 20대를 육군본부에서 작전 대기하도록 지시한 사실로 보았을 때 5분대기 형태의 긴급대기로 최소 헬기 5대가 완전무장 상태로 출동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02항공대 승무원 이○○은 M60D 기관총을 장착하고, 탄박스를 적재한 상태로 광주에 출동하였으며, 매일 5분 대기 개념으로 작전 대기 상태를 유지하였다고 한 점으로 볼 때도 앞선 백○○ 항공대장이 언급한 완전무장을 한 채 긴급대기 상태에 있는 UH-1H 헬기들이 광주로 출동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⁴²³

〈표 2-3-7〉 UH-1H 운용 항공대 광주 출동 현황

구분	202항공대	203항공대
광주 출동 현황	• UH-1H 4대 (조종사 10, 승무원 10)	• UH-1H 8~10대 (조종사 16~20, 승무원 16~20)
무장 상태	M60D 헬기당 2정 장착	M60D 헬기당 2정 장착
작전 기간	■ 방송 장비 장착 1대: 5.19 10:50 ■ UH-1H 2대 출동: 5.21 11:00 미상일 인원 공수 UH-1H 1대	■ UH-1H 8대 출동: 5.21 11:00
주요 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20. 선무방송 ■ 5.21. 통신장비 및 통신장교 공수 ■ 5.22. 무등산 중상자 비행장 후송 ■ 5.23. 사망자 및 환자후송 ■ 5.23. 전단 살포 ■ 계엄군 부식 추진 ■ 여단장급 항공정찰 지원 ■ 연행된 시민군 교도소 공수 ■ 육본 작전교육참모부장 김재명, 항공감 최갑석 등 16명 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21. 도청 일대 경찰비행 중 피격 ■ 5.22. 화물 공수, 전단 수송 ■ 5.23. 무등산 중계소 경계병력 공수 ■ 5.24. 7공수 비행장 이동 공수 ■ 5.24. 20사단 62연대 교도소 공수 ■ 5.24. 송암동 오인 교전 사상자 공수 ■ 5.26. 11공수여단 특공조 공수 ■ 5.26. 3공수여단 특공조 공수 ■ 5.27. 사직공원 환자 후송(3대) ■ 5.27. 위력시위 비행(4대) ■ 5.29. 7공수여단 무등산 공수

423 5·18조사위, 202항공대 승무원 「이○○ 진술요지서」(2023.3.14).

다. 헬기 사격 지시 및 명령

1) 문서에서 나타난 헬기사격 지시

가) 헬기 작전계획에 관한 계엄사령부의 지침 문서

계엄사령부(육군본부)는 전교사령부로 5월 22일 08:30에 접수된 「HEL기 작전계획 실시하라」라는 지침 문서⁴²⁴를 내려보냈으며, 이 지침과 함께 최갑석 항공감의 친필서신이 소준열 전교사령관과 손승열 61항공단장에게 전달되었다.⁴²⁵ 이 문서에는 “무력시위 사격을 하천과 임야에 할 것”, “시위대를 지상부대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사격 제압”할 것, “시위사격은 20mm 발칸, 실사격은 7.62mm”가 적합하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지침이 담겨 있다. 또한 “시가지 부대가 진입할 때 고층건물이나 진지 형식의 지점에서 사격을 가해 올 경우는 무장 폭도들에 대하여 핵심점을 사격 소탕하라”는 지침은 소요진압작전이 끝나는 27일까지 유효했으며, 이는 이 지침이 실제 적용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실제로 이 지침이 비행 임무 수행 중인 조종사에게 지시로서 전달된 것을 조종사의 진술로 확인된다. 501항공대 조종사 천○○은 5월 27일 위력시위 비행 중 지상부대 대대장으로부터 금남로 도로변 건물에서의 사격에 대한 대응 사격 요청을 무전으로 받은 바 있다.⁴²⁶ 또한 26일 광주재진입작전에 관한 임무를 지시받을 때 건물번호가 매겨진 지도를 받아 금남로 일대 지상부대 공중엄호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 또한 위 지침이 작전 기간 내 내 근거로서 적용된 것이다.

424 「HEL기 작전계획 실시하라」, 『전교사 총정작전계획』, 전투병과교육사령부, 22~23쪽.

425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조사결과보고서』, 2018, 52~53쪽.

426 5·18조사위, 501항공대 조종사 「천○○ 진술서」(2022.06.30.).

나) 육군본부에서 전달된 「헬기 사용에 관하여」 서한

1980년 5월 22일 09:00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메모는 육군본부 항공감 최갑석이 전 교사령관 소준열에게 보낸 친필서신이 소준열 전교사령관과 손승열 61항공단장에게도 전달되었다.⁴²⁷ 이 서한에 따르면, 소요진압작전에서 헬기 사격 지시는 계엄사령부가 주도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당시 출동한 항공대장들도 이 지침을 모두 숙지한 상태에서 대비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투병과교육사령부 전투발전부장 김순현의 헬기사격 지시가 우발적이란 취지로 사격 지시를 거절하였다는 103항공대장 이○○와 506항공대장 김○○의 진술은 당시 군의 분위기와 지휘체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실과 다른 진술일 가능성이 있다. 이 서한에 따라 제61항공단장 손승열은 제1항공여단장 송진원으로부터 육군항공부대를 총괄 지휘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전투병과교육사령부에서 주최하는 진압작전회의에 참가해서 육군항공의 지원 사항을 조언하고 작전에 투입된 헬기들에 대한 지휘통제를 수행하였다. 당시 광주에 출동하지 않은 502항공대장 신○○은 2017년 11월 광주지검의 조사에서 5·18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당시 최고지휘관의 지휘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 지휘관이 누구인지는 모른다는 진술을 하였다. 이 진술은 항공작전의 명령과 지시가 전체 계엄당국의 체계적인 작전 지휘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하게 한다.

다) 육군본부의 경고문

육군본부 작전교육참모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경고문」은 헬기의 경고방송을 통해 광주시민들에게 전달되었다. 경고문에 있는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는 자는 사격하지 않는다. 무장을 한 자나 사격을 하는 자는 사살한다. 계속 저항하는 자는 집중 사격

⁴²⁷ 항공감 최갑석이 전교사령관 소준열에게 보낸 서한 「HEL기 사용에 관하여」(1980.05.22. 09:00)(기무사 제공자료집 84-23권).

을 받을 것이다”의 내용과 함께 별도로 “방송 종료 즉시, 발칸 위협사격 실시로 양민 경고 분리 및 위압감과 공포감 효과 달성”이라는 참고사항은 20mm 발칸사격의 효과를 극대화하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발칸사격은 AH-1J 코브라 헬기가 가능하고, 당시 방송 장비는 UH-1H에 탑재시켜 운용한 기록이 존재하므로 이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UH-1H와 AH-1J가 함께 임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방송 장비를 탑재한 UH-1H가 경고 방송과 M60D 사격이 함께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을 고려해본다면, 발칸 사격뿐만 아니라 M60D 기관총 사격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2) 헬기사격에 관한 구두 지시 및 명령

가) 계엄사령부의 지시 및 명령

육군항공부대에 사격과 관련된 지시나 명령이 구두로 전달되는 사례는 조종사들의 증언을 통해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다. 5월 20일경부터 5월 26일 사이 육군참모차장 황영시는 전교사 부사령관 김기석에게 4회 정도 전화를 걸어 “미온적인 충청작전으로 광주사태를 수습하려 하지 말라. 해결이 안 되니 전차와 무장헬리콥터를 동원하여 강경일변도의 충청작전을 하라”고 힐책하면서, 전차는 기갑학교에 있는 것을 동원하고, 무장헬리콥터는 신군부 측에서 공급한 UH-1H 10대, 500MD 5대, AH-1J 2대 등을 투입하여 진압작전을 신속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김기석은 이러한 황영시의 지시가 전차의 발포와 무장헬리콥터의 기총소사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⁴²⁸

428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기석 진술조서」(1995.12.28.), 『5·18사건 수사기록』 7권, 104817~104818쪽;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황영시 진술조서」(1996.01.06.), 『5·18사건 수사기록』 103권, 106556~106568쪽;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소준열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1996.01.09.), 『5·18사건 수사기록』 105권, 107399쪽. 김기석은 황영시로부터 전화로 명령을 받은 내용을 메모로 작성하였고, 그 메모를 1996년 1월 6일 황영시와의 대질신문 때 검찰에 제출했다. 메모에는 “코브라→APC, 500MD→차량”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김기석 진술조서」, 106564쪽; 서울지방법원 선고 95고합1228 등, 『판결문』(1996.08.26.);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황영시 진술조서」(1996.01.06.), 『5·18사건 수사기록』 103권, 106560~106617쪽. 황영시, 이구호 및 김기석 대질 조사 부분 참조.

황영시, 김재명, 이상훈은 전교사령부 전투발전부장 김순현에게 5월 22일 무장헬기 코브라 2대를 광주에 내려보내니 광주 시내에 있는 조선대학교 뒤쪽의 절토지에 위협사격을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⁴²⁹ 5월 22일 14:15 AH-1J 코브라 헬기가 광주비행장에 도착하였으며, 김순현이 103항공대장 이○○에게 광주천과 조선대 뒤 절토지에 위협사격을 하라고 지시했으나 이러한 위협사격 지시에 대해 이○○는 부인했다.⁴³⁰ 하지만 전교사령관 소준열은 1994년 12월 서울지검 조사에서 헬기를 타고 지상으로 총격을 가한 사실을 묻는 질문에 “광주특위 출석을 앞두고 각종 자료를 검토해보고 관계자들에게 확인을 해본 결과 민가나 시민을 향해 기총사격을 한 적은 없고, 다만 조선대 뒷산에서 위협사격을 한 적은 있다”라고 하며, AH-1J 발칸 위협사격과 사격 대상 지역에 대해 언급했다.⁴³¹

위원회가 헬기사격과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물 확보를 위해 2022년 3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조선대학교 본관 주변 80년 당시 절토지 추정지역에서 탐색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땅속에 박혀 있는 20mm 연습탄두로 추정되는 물체가 수습되었으며, 국과수에 감정의뢰한 결과 20mm 연습탄두 탄두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위원회가 수습한 20mm 연습탄 탄두는 발칸 위협사격을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된다.

나) 헬기 조종사에게 하달된 사격 지시 및 명령

위원회는 조종사를 비롯한 항공부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종사들에게 사격에 관한 지시와 명령이 당시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주요 지휘관들이 특정 표적 지역을 언급하며 헬기사격 명령을 항공대 현장 지휘관과 조종사들에게 하달한 내용도 존재한다. 전교사 전발부장 김순현이 광주에 도착한 103항공대장 이○○에

429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순현 제1회 진술조서」(1995.05.29.), 『5·18사건 수사기록』 21권, 29722쪽

430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이○○ 진술조서」(1995.05.15), 『5·18사건 수사기록』 21권, 29262쪽;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순현 제1회 진술조서」(1995.05.29.), 『5·18사건 수사기록』 21권, 29722쪽

431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소준열 진술조서」(1994.12.13.), 『5·18사건 수사기록』 15권, 24326쪽.

게 광주천 및 조선대 뒷산에 대한 위협사격을 지시한 사실이 있었다. 그리고 506항공대장 김○○에게 “도청 옥상에 있는 대공화기 진지를 제압하라”며 구두로 지시를 하기도 했다.⁴³² 또한 전교사에서 500MD를 이용해서 교도소를 습격하는 폭도들을 공격하라는 지시도 있었다.⁴³³

501항공대 무장병 권○은 “광주교도소가 시민군에게 피탈될 위험이 있으니 무장(장전)을 하라는 무전이 왔었고, 500MD 1대를 출동 준비하면서 실탄을 장전하라고 지시받았으며, 급하게 무장(장전)하는 과정에서 실탄이 처음과 끝이 뒤집혀 오장전된 상태로 항공기를 띄워서 시민군을 향하여 사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⁴³⁴ 501항공대 조종사 이○○은 비행 임무 도중 무전으로 “광주공원 방향 사격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⁴³⁵ 이러한 지시는 당시 광주 일원에서 비행 임무를 수행한 헬기들 전부 또는 일부가 무장 상태였으며, 상황에 따라 즉각적인 사격이 가능한 상태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501항공대 조종사 문○○은 비행 중 코브라 헬기에게 무전으로 지시된 공중사격 지시와 관련된 교신 내용을 직접 청취하였다고 위원회에서 진술한 바 있다.⁴³⁶ 203항공대 조종사장○○은 27일 새벽에 위력시위 비행을 할 때 누군가 무전으로 “무등산 지점을 보고 사격 방향이 나오는지 타겟을 찾아보라”는 지시가 들어왔다고 했다.⁴³⁷

작전지휘권을 갖고 있는 제31사단장 정웅이 조종사에게 헬기사격을 지시한 구두 명령 또한 확인된다. 5월 21일 11시경 무장한 시위대가 해남대대 무기고를 습격하려고 한다며

432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 진술조서」, 『5·18사건 수사기록』 21권, 29496쪽.

433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이○○ 진술조서」(1995.05.15), 『5·18사건 수사기록』 21권, 29262쪽. 103항공대장 이정부는 출동한 조종사로부터 사격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434 5·18조사위, 501항공대 무장병 「권○ 진술조서」(2022.08.11.)

435 5·18조사위, 501항공대 조종사 「이○○ 진술조서」(2022.6.13.); 광주지방검찰청 2017형제21184호 사자명예훼손, 「수사보고(헬기조종사 이○○ 전화 통화녹음 보고)」(2017.09.15.), 『증거기록』 4권, 1922~1923쪽.

436 5·18조사위, 501항공대 조종사 「문○○ 진술요지서」(2022.08.06.).

437 5·18조사위, 203항공대 조종사 「장○○ 진술요지서」(2022.11.09.).

출동해서 사격을 하라는 지시를 조종사에게 내렸으며,⁴³⁸ 5월 22일 10시경에는 장흥교도소 습격에 대응하기 위해 500MD 조종사에게 “로켓포를 쏘서라도 때려라”라는 출동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다.⁴³⁹ 이와 관련된 조사에서 1988년 12월 28일 계엄과 주관으로 열린 31사단 관계관 간담회의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였으나 1980년 5월 26일 10시 55분에서 12시 사이에 500MD 1대가 장흥교도소로 출동한 운항기록 외 헬기 사격과 관련된 정황은 확보하지 못했다.

또한 5월 24일 송암동 오인교전 당시 제11공수여단장 최웅이 이정부 103항공대장에게 보병학교 교도대대 병력에 의한 사격을 시위대에 의한 사격으로 오인하고, 헬기에서 무차별 제압사격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상과 같이 작전에 투입되는 조종사들에게 전교사령부로부터 헬기사격을 지시하는 구두 명령이 여러 차례 하달되었다는 사실을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확인하였다. 이러한 계엄군 지휘관들의 사격 지시는 시위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살상까지 포함한 수준의 지시와 명령으로 이해된다.

다) 5. 27 광주재진입작전에 관한 사격 지시 및 명령

5월 27일 광주재진입작전을 앞두고 26일 계엄군의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진압작전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육군항공에서 제61항공단장 손승열과 103항공대장 이○○가 참석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이 회의 직후 조종사들에게 광주재진입작전 시행 시 헬기사격에 관한 지침과 명령이 구두로 있었음을 조사과정에서 확인했다.

공격헬기를 지휘통제하는 이○○는 26일 오후 AH-1J 헬기 및 500MD 헬기 조종사들

438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최○○ 녹취서』(2017.12.26), 『조사기록철(헬기팀-24-21)』, 7413~7417쪽.

439 『광주사태 시 정웅(31사단장) 동정』, 『광주사태 당시 31사단 참모 증언』, 1214쪽; 제144회 국회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제25차 청문회 속기록, 54쪽.

을 집합시켜서 발포명령이 떨어졌음을 알리고, 사격에 관한 지침을 조종사들에게 전달했다.⁴⁴⁰ 또한 이○○는 지상에서 작전을 펼치는 부대를 지원하기 위한 항공 화력 지원에 대한 지침과 사격 시 자신의 통제 하에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와 함께 조종사들에게 광주 시내 주요 건물에 부여된 고유번호가 있는 지도를 배부하였다.⁴⁴¹

이 외에도 5월 27일 다른 명령 또한 있었다. 도청 일원의 작전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여 무장한 500MD와 특전사 병력을 태운 UH-1H 헬기가 시동을 걸고 출동 대기하였다는 조종사, 승무원의 증언이 조사과정에서 나왔다. 광주재진입작전에 출동하지 않은 501항공대 조종사는 5월 27일 진압작전이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무장한 500MD를 출동시키기 위한 대기가 있었으나 작전이 성공해서 무장을 해제하고, 위력시위 비행에 나섰다고 증언했다.⁴⁴² 202항공대에서 출동한 승무원을 통해 5월 27일 202항공대 헬기 4대와 203항공대 헬기 8대에 총과 실탄으로 무장한 특전사 병력 7~8명씩을 탑승시켜 진압작전이 실패하면 출동하려고 대기시켰으며, 진압이 완료되어 대기 상태가 해제되었다는 사실 또한 있었음을 확인하였다.⁴⁴³

라. 헬기 사격 입증 증거 및 혐의점

1) 헬기사격 입증 증거

가) 7.62mm 및 20mm 탄약 불출 및 소모 반납

제31항공단 탄약관리하사로 근무한 최○○는 언론의 인터뷰와 위원회 조사, 그리고 사

440 5·18조사위, 502항공대 조종사 「노○○ 진술조서」(2022.11.29.);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임○ 진술 녹취서」, 『조사기록첩(헬기팀-24-18)』(2017.12.18.), 5914쪽.

441 5·18조사위, 501항공대 조종사 「천○○ 진술서」(2022.06.30.).

442 5·18조사위, 501항공대 조종사 「조○○ 진술서」(2023.04.05.).

443 5·18조사위, 202항공대 승무원 「신○○ 진술요지서」(2023.07.20.).

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의 1심 법정에서 1980년 5월 20일 또는 21일경 헬기 무장사들에게 20mm B/L탄과 보통탄, 7.62mm 탄약을 지급하였으며, 그중 20mm 보통탄과 7.62mm탄이 1/3 가량 소비된 상태로 회수되었다고 진술하였다.⁴⁴⁴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부는 탄약 관리하사의 증언을 헬기사격이 실재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결론내렸다.⁴⁴⁵ 이는 광주 현지에서 AH-1J 코브라 헬기와 500MD 헬기의 사격이 실제로 실행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음을 최○○의 증언이 보여주고 있다.⁴⁴⁶

탄약의 소모와 관련해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증거로 20사단 전투상보 보급문서에 기재된 “5.23 항공대, 20mm 탄약 1,500발” 내용을 들 수 있다. 이 문서에는 20mm 발칸탄 1,500발이 항공대에 보급되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보급문서에 기록된 탄약 보급 상황이 코브라 헬기에서 사격 후 발생한 탄약 소요 상황으로 인한 것인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서증적 증거나 육군항공 관계자들의 증언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하남 기지에서 보급된 1,000발의 20mm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탄약을 보급받았다는 사실은 출동할 때 보급받은 탄약의 소모에 따른 소요 제기로 해석될 수 있는 간접적인 정황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조선대학교 절토지 사격 정황

전교사령관 소준열은 1995년 검찰수사에서 1989년 광주특위에 출석하기 전에 당시 관계자들이 자료를 살펴보니 조선대학교 뒷산에 위협사격을 한 적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했다.⁴⁴⁷ 또한 전교사령부 전투발전부장 김순현은 육군참모차장 황영시와 작전교

⁴⁴⁴ “광주투입 헬기, 탄약 발사 후 돌아왔다”, KBS 뉴스, 2019년 5월 16일(<https://www.youtube.com/watch?v=srBGLYmk2w>).

⁴⁴⁵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1685 사자명예훼손, 「판결문」(2020.11.30.), 54~55쪽.

⁴⁴⁶ 최○○는 당시 복귀한 무장사로부터 광주에서 헬기사격이 실제로 있었다는 이야기를 식당에서 들은 바 있다고 조사관에게 말하기도 하였다.

⁴⁴⁷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소준열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1994.12.13.), 「5·18사건 수사기록」 15권, 24326쪽.

육참모부장 김재명, 차장 이상훈으로부터 코브라 2대를 동원하여 조선대학교 뒤쪽 절토지에 위협사격을 실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그리고 김순현은 5월 22일 103항공대장 이○○에게 AH-1J 헬기를 이용해서 광주천과 조선대학교 절토지에 위협사격을 지시했으며, 506항공대장 김○○에게는 광주천에 대한 사격을 506항공대 헬기들을 동원해서 실행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위원회는 2022년 3월 말에 헬기사격 피탄지로 추정되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헬기사격 시 발생하는 부산물인 탄피, 탄두, 링크 등을 찾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과정에서 1980년 당시 절토지였던 조선대학교 본관 인근 동산에서 20mm 연습탄 탄두로 추정되는 물건을 수습하였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위원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를 하였으며, 국과수는 20mm 구경 연습탄으로 감정 결과를 알려왔다.⁴⁴⁸ 해당 지역은 1980년 당시 절토지였으며(조사결과보고서 <그림 7> 참조), 소준열을 비롯한 위 사람들이 거론한 사격 지점에도 부합한다.

위원회는 조선대학교 절토지를 대상으로 한 AH-1J 코브라 헬기의 사격 일자를 추정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실과 증언을 검토하였다. 우선 광주에 출동한 103항공대의 조종사 구○○이 검찰수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개인비행시간기록부」이다. 구○○의 「비행시간 기록부」에는 22일 착륙 횟수 1회, 비행시간 1.5시간으로 기록되어 있고, 23일에는 착륙 횟수 2회, 비행시간은 1.9시간으로, 24일에는 착륙 횟수 3회, 비행시간 5.2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24일의 경우는 송암동에서 발생한 오인교전 당시의 비행으로 풀이된다. 23일의 경우 작전 문서상에는 비행을 한 이유와 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누락되기까지 했다. 따라서 AH-1J 코브라 헬기 사격이 실행되었다면 23일이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다른 한편으로 22일의 경우, 육군본부에서 「Hel기 작전계획 실시하라」는 지침이 하달

⁴⁴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접수번호: 2022-M-9601호, 2022. 6. 14.

되었고, 같은 날 9시에는 「헬기 사용에 관하여」라는 항공감의 서한이 소준열에게 전달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14시 15분경에 103항공대 소속 AH-1J 헬기가 광주비행장에 도착했으며, 같은 날 광주에 막 도착한 103항공대장 이○○에게 전교사 전발부장 김순현이 조선대학교 절토지 사격을 지시하였다. 따라서 22일에 조선대학교 절토지를 목표 지점으로 코브라 사격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으며, 발견된 20mm 연습탄두는 사격에 대한 증거이다.⁴⁴⁹

다) 군 문서상의 헬기사격 및 항공작전 은폐 정황

〈표 2-3-8〉 5·18민주화운동 기간 각급 부대 문서의 운항 기록 작성 실태 검토

문서명 (작성부대/부서)	운항기록 기재 상태	특이사항
육군본부 상황일지 (작전교육참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본→1항공여단 출동 지시 ■ 1항공여단 출동/도착 보고 내용 ※ 출동 후 임무 수행한 운항 기록 미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일지 일련번호 유지와 상황 근무자별 다른 필체로 기록 유지 ■ 소급 작성 흔적 없음
전교사 작전일지 (기무사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간 요청/출동 개념으로 정리 ■ 일일 항공작전 종합현황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운항기록 누락
전교사 정보일지 (전남합수단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간 요청/출동 개념으로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일빌딩 LMG 거치 첩보기재 ■ 작전부대 무장 헬기 지원 요청 사항 기재
전교사 광주소요사태 분석 (교훈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 총괄적 분석자료로 정리하여 육군 항공 부록에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적 임무별, 기종별로 분석, 실시간 운항기록 없음
광주사태 관련 전교사 전투 상보(전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군 항공 출동 관련 군사령부/전교사 조치사항으로 구분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헬기 요청/승인 기록 유지

449 소준열의 검찰 진술과 김순현의 사격 지시는 사격할 목표 지점인 장소가 구체적으로 지목되었으며, 해당 장소는 군사 훈련이나 사격장과는 무관한 학교 부지라는 점에서 발견된 20mm 연습탄 탄두의 헬기사격에 관한 증거적 가치가 있다.

문서명 (작성부대/부서)	운항기록 기재 상태	특이사항
광주소요사태 진행 상황 (기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5.21, 22, 27일 헬기 지원 상황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5.21 2군 무장헬기 1대 31사단 파견(유일하게 기록됨) 육본, 계엄사, 2군사, 전교사 상급부대 포함 작전에 참가한 계엄군, 보안부대, 경찰 측 상황 실시간 기재
1항공여단 상황일지 (작전처 상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부대 출동상황 위주 기록 광주 임무 수행 사항 일부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 필체로 일괄 소급 작성 흔적 존재함 광주 임무 수행에 관한 일부 운항기록 유지 5.27. 광주재진입작전 헬기 운용 내용 부재
1항공여단 부대역사 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5·18 광주민주화운동 헬기 출동상황은 총괄적으로 출동 대수, 수행 임무, 비행시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0.1.22.~5.28. 부대 활동 사항 누락
80항공병과사 (육군 항공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5·18 이전 제1항공여단 총정작전 대비태세 육본 지시 내용 부대 출동 및 주요 인사 광주 이동 사항 위주로 기록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후 종합하여 총괄적 임무 수행 내용 기재 5.27. 광주재진입작전 헬기 운용 내용 부재

5·18민주화운동 당시 작성된 군 문서들을 살펴보면 실시간 상황을 유지해야 하는 『전교사 상황일지』나 『제1항공여단 상황일지』의 경우 기존의 상황일지를 사후에 재정리하여 기록한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제1항공여단 상황일지』는 1인 필체로 사후에 재정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육군항공부대의 기록을 검토하면서 5월 27일 헬기들이 광주재진입작전에 투입된 내용이 항공부대의 상황일지를 비롯한 각종 기록에 누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육본 항공감실에서 작성한 『80항공병과사』, 제1항공여단의 『상황일지』, 『부대역사일지』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다른 일자와는 다르게 5월 27일 작전이 완료된 이후의 위력시위비행 또한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이렇게 당시 항공부대의 기록문서들이 부실하게 작성된 원인이 지난 2017년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에서 밝혀진 바대로 자

료의 은폐 및 왜곡에 관여한 조직의 활동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⁴⁵⁰ 1985년 6월 5일 안기부가 주관해서 설립한 <광주사태진상구명위원회(일명 80위원회)>, 19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해서 만들어진 <국회대책특별위원회(일명 511연구위원회)> 등의 왜곡을 위한 기구들이 당시의 작전명령, 상황일지, 부대역사일지, 계엄일지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 검토하였고, 이 과정에서 당시의 기록을 위·변조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사례가 존재한다.

전교사에서 발간한 『광주소요사태 분석(교훈집)』을 <511연구위원회>가 검토하면서 조치한 사항은 헬기사격에 대한 논쟁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려는 조치로 이해될 수 있다.

<표 2-3-9> 전교사 광주소요사태 분석(교훈집)의 은폐 및 왜곡 정황

문서 및 시기	문제점	문제 원인	조치	비고
충정작전 결과(전교사)	P6 단계별 투입 장비(P23) 500MD, AH-1J	AH-1J 강력한 공중화력 지원 무기	AH-1J→삭제(위력시위로 사용)	검토 처리
광주소요사태 분석(교훈집)	P61 항공임무: 무력시위 및 의명 화력지원	항공지원 임무가 화력지원 주목적으로 오해	의명 화력지원 → 삭제	
광주소요사태 분석(교훈집)	P130, P131 무장헬기 항공임무 문제점: 불확실한 표적에 공중사격 요청 무장헬기 사격 구비조건	강력한 공중화력 지원 근거가 됨	검토 후 수정 또는 삭제	

<표 2-3-8>의 자료와 조치사항은 AH-1J 헬기와 관련된 쟁점과 관련이 있다. 즉 ‘강력한 공중화력 지원’이라는 기술을 삭제한 조치는 1980년 당시 AH-1J 헬기에 의한 사격 관련 사실관계를 은폐하려는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세 문서 모두 화력과 연관되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은폐 및 조작을 시도하려는 흔적으로 파악된다. 만약 헬기사격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위의 표현들이 처음부터 기술되지 않았을 것이다.

450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156쪽~168쪽.

이와 같은 문서상의 은폐 및 조작 의혹 외에 조종사들이 작성하는 문서에도 관여한 의혹이 있다. 502항공대 출동 조종사 박○○은 1988년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를 앞두고 출동한 조종사들의 「개인비행시간기록부」에서 1980년 5월 기록을 모두 수거해갔다고 <국방부 특조위>에서 증언하였다.⁴⁵¹ 수거해간 이유와 목적은 현재 밝혀진 바가 없다. 하지만 「개인비행시간기록부」에서의 비행 횟수와 비행 임무, 비행시간을 다른 군 문서와 대조함으로써 헬기사격의 개연성이 있는 일자를 추적할 수 있는 조사로 나아가는 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다음으로 1989년 2월 10일 조비오 신부를 ‘집단고소’하기 위해 첨부 자료로 제출된 17명의 조종사, 무장사의 「자필 진술서」의 작성 경위에 육군본부가 관여한 정황이다. 103항공대의 무장사는 위원회 조사에서 당시 제61항공단 본부에서 호출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⁴⁵² 505항공대의 조종사는 국방부 특조위 조사에서 육군본부에서 연락이 와서 간단하게 수행했던 임무 중심으로 작성해서 육군본부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했다.⁴⁵³ 이러한 진술들은 1989년 당시 국회의 광주특위 청문회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인해 헬기사격이 쟁점으로 등장하자 이에 대해 육군본부를 포함한 군과 그 이상의 수준에서 개입했을 개연성이 있는 정황 증거이다.

451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박○○ 진술녹취서」(2017.10.31), 『조사기록철(헬기팀-24-7)』, 2467~2468쪽; 국가안전기획부, 「5·18 피고소인 측 피터슨 목사 검찰 증언 관련 반항」, 광주지방검찰청, 『증거기록』 11권, 6369~6371쪽.

452 5·18조사위, 103항공대 무장사 「김○○ 1차 진술조서」(2023.08.06.).

453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505항공대 조종사 이○○ 조사 결과 요약 및 진술녹취서」(2017.09.25.), 『조사기록철(헬기팀-24-1)』, 113~128쪽.

라) 전일빌딩 탄흔

① 5.27 전일빌딩 진압작전과 헬기사격

2017년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견된 탄흔으로 인해 전일빌딩의 10층이 헬기사격의 대상 장소로 지목되었다. 전일빌딩은 1980년 5월 27일 최종진압작전 당시 제11공수여단 61대대 특공조 4/33명이 진압을 맡은 장소이다. 2017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안전감정과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전일빌딩의 탄흔이 헬기사격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전일빌딩 일대에 대한 진압작전의 목적은 ‘시위대에게 감금된 내외신 기자’ 6~7명을 구출하는 것이었다.⁴⁵⁴ 또한 전일빌딩에 LMG가 거치되어 있다는 첩보⁴⁵⁵에 따라 설치된 LMG를 제거하고, 도청에 진입하는 3공수여단 병력을 지원하기 위한 작전 목표가 설정되었다. 광주재진입작전은 시민군이 장악하고 있는 도청, 전일빌딩, YMCA, 광주공원 일대, 광주관광호텔 등을 탈환하기 위해 26일 11시에 하달된 <충정작전 명령 제4호>에 따라 27일 01시경을 기해 실시되었다.⁴⁵⁶

계엄군은 광주재진입작전을 수립하면서 도청 탈환은 제3공수여단, 전일빌딩, 광주관광호텔, YMCA 일대 진압작전은 제11공수여단, 광주공원과 사직공원 일대는 제7공수여단이 맡았다. 이에 따라 제11공수여단 특공조 4/33명은 3개 지대로 나누어서 1지대는 전일빌딩, 2지대는 관광호텔, 3지대는 예비팀으로 나누어서 작전에 투입되었다.⁴⁵⁷ 1지대의

454 5·18조사위, 11공수여단 61대대 「백〇〇 진술조서」(2022.12.03.).

455 전투병과교육사령부, 「광주사태 시 전교사 정보일지」, 269쪽; 전투병과교육사령부, 「광주사태 시 전교사 작전일지」, 237쪽; 5·18조사위, 11공수여단 61대대 「정〇〇 진술조서」(2022.12.16.), 「고〇〇 진술조서」(2023.01.07.);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고〇〇 녹취서」(2017.10.11.), 『조사기록철(헬기팀-24-5)』, 1409쪽.

456 제20보병사단, 「충정작전 제4호」, 「충정전투상보」 별지 3 전교사 명령 사본(1980.05.26.).

457 위원회는 전일빌딩 진압과정에 대한 조사 중 관광호텔과 전일빌딩에 각각 들어간 병력 간에 오인교전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오인교전에 관한 사실은 국방부 특조위에서도 나온 바 있으며, 20사단 전투상보에도 “04:38 11공수여단 전일빌딩, 관광호텔 접적 교전 및 돌입”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고〇〇 진술녹취서」(2017.10.11.), 『조사기록철(헬기팀-24-5)』, 1368~1393쪽.

전일빌딩 진입 과정에서 전일빌딩 내에서의 교전이나 사격은 없었다. 다만 전일빌딩을 돌아 YWCA를 지나서 도청에서 교전 중인 3공수여단을 지원하기 위해 가던 중 YWCA에서 시민군으로부터 총격을 받아 11공수여단 특공조 일부는 시민군과 교전을 하였다.

문제의 10층에 대한 탄흔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 전일방송이 차지하고 있던 8, 9층 등지에 머무르고 있던 당직자와 같이 있던 시민들에 대해 10층 탄흔과 헬기사격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전일빌딩에 진입했던 제11공수여단 특공조 병력으로부터는 당시 전일빌딩 옥상에서 광주관광호텔에 진입한 계엄군과 오인 교전을 한 것 외에 사격을 하였다거나 시민군과 충돌이 있었다는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 또한 진입과정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하였거나 들은 바가 없다는 계엄군의 진술도 확인하였다.⁴⁵⁸ 계엄군이 전일방송이 위치한 8층에 올라간 시간은 당시 8층에 머무르고 있던 전일방송 청경 문〇〇과 전일방송 기술부 직원 오〇〇에 따르면, 대략 04시경 전후로 파악된다.⁴⁵⁹

전일빌딩 내에 머무르고 있던 전일방송 직원들은 8층 내부의 안쪽에 있었기 때문에 헬기사격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청경 문〇〇의 경우 26일 11시경 아니면 27일 새벽 1시경에 ‘두두두두’하는 소리를 들은 바는 있다고 하였다. 이 소리가 헬기와 관련된 것 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당시 8층에서 연행된 김〇〇 또한 전일빌딩에 머무르는 동안 간간이 총소리를 들은 바가 있으나 헬기소리였는지는 기억이 없다고 하였다.⁴⁶⁰

다만 헬기사격의 가능성을 유추해볼 수 있는 상황들은 당시 전일방송, 전남일보에서 재직하던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서 추정해볼 수 있다. 27일 상황이 모두 종료된 뒤 출근을 한 일부 직원들은 7층과 8층, 10층에서 탄흔과 탄두, 그리고 일그러진 납 파편들이 있

458 5·18조사위, 11공수여단 61대대 「백〇〇 진술조서」(2022.12.03.), 「정〇〇 진술조서」(2022.12.16.), 「고〇〇 진술조서」(2023.01.07.);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고〇〇 녹취서」(2017.10.11.), 『조사기록철(헬기팀-24-5)』, 58~61쪽.

459 5·18조사위, 「오〇〇 진술서」(2023.06.09.);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문〇〇 진술녹취서」(2017.12.11.), 『조사기록철(헬기팀-24-16)』, 5297~5299쪽.

460 5·18조사위, 「김〇〇 진술조서」(2022.09.30).

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특히 당시 전남일보에서 27일 직후에 찍은 사진에는 10층의 유리창이 파손되어 있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일부 전일방송 재직자는 10층에서 탄흔 자국과 탄파편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② 5.27 육군항공 작전

27일 새벽 전일빌딩에 대한 진압작전의 목적은 옥상에 설치된 대공화기 제압의 필요성에 있다. 이미 전날인 26일 오후에 광주비행장에서 대기 중인 공격헬기 조종사들에게 발포 명령이 하달되었으며, 27일 광주재진입작전 시의 사격 지침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 광주비행장에서 작전에 참가하는 부대의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작전회의가 열렸으며, 육군항공에서는 제61항공단장 손승열과 103항공대장 이○○가 참석하였다. 또한 금남로 일대에서 작전에 돌입한 지상부대에 대한 공중엄호 임무가 부여되었으며, 작전에 필요한 시가지 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작전 지도 또한 제공되었다.

506항공대 작전과장 최○○은 당시 전교사 연병장 항공대 지휘소에서 27일 새벽 항공기의 무선망으로 UH-1H 헬기에 의한 병력 수송 상황이 계속 전달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7일 작전에 투입된 501항공대 조종사는 비행 임무 중 특전사 병력들이 헬기에서 강하해서 작전에 투입되는 상황을 목격한 바를 위원회와의 면담조사에서 증언했다. 그리고 제3공수여단 특공조 병력이 01시 30분경 헬기를 이용해 조선대학교 뒷산에 집결해서 도청 점령 작전에 들어갔다는 진술 또한 나왔다. 이러한 사실 등으로 볼 때 27일 재진입 작전과 함께 UH-1H 헬기들이 작전에 들어가는 병력의 수송 등의 임무에 투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⁴⁶¹ 이 부분은 27일 당시 항공작전 관련 군 문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⁴⁶¹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최○○ 녹취서」(2017.12.26), 「조사기록철(헬기팀-24-21)」, 7425쪽; 5·18조사위, 501항공대 조종사 「천○○ 진술서」(2023. 4. 13.); 5·18조사위, 제3공수여단 11세대 「오○○ 면담조사 결과 보고」, 제3공수여단 11세대 「김○○ 진술요지서」(2023.10.05.), 조사2과-1742(2021.07.02), 「제3공수여단 장사병 전수조사 결과 통보」 참조. 제3공수여단의 증언은 5·18조사위, 11여단 본부대 통신하사 「김○○ 면담조사 결과보고」, 3공수여단 15세대 의무하사 「김○○ 면담조사 결과 보고」 조사2과-1742(2021.07.02) 「제3공수여단 장사병 전수

여러 항공부대 관계자들의 증언과 지상에서 작전을 수행한 공수여단 병력의 증언에서는 나타나고 있다.⁴⁶²

당시 항공부대 참모들이나 조종사들, 그리고 지휘관의 증언, 특공조로 들어간 특전사 병력들의 증언을 볼 때 작전 종료 이후 공중정찰이나 위력시위 비행 이전에 투입되었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501항공대에서 출동한 무장병 권○은 광주비행장에서 01시 또는 02시경 이륙하고, 05시경 착륙하는 헬기들을 목격하였다고 위원회에서 증언했다.

27일 광주재진입작전 당시 육군항공의 출동 조종사들은 헬기사격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그렇지만 일부 조종사들과 항공부대 관계자들의 증언에서는 작전 완료 이전에 도청 일대로 병력 공수, 시위대에 대한 저항 의지 제거 등의 목적을 위해 위력비행 수준 이상의 항공작전이 전개되었을 정황들과 개연성이 나타나고 있다.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감정

2016년 광주광역시의 의뢰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된 국과수의 법안전감정에서 국과수는 10층 탄흔의 생성 원인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며 감정을 시도하였다. 국과수는 전일빌딩 외벽에서 총 35개의 탄흔을 식별했으며, 내부 전일방송 공간에서는 총 142개의 탄흔을 식별하였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외벽과 내부 공간에서 발견된 탄흔의 형태는 원뿔형의 함몰 흔적을 가지고 있으며, 탄도 또한 수평 또는 하향 각도를 이루고 있어 헬기와 같은 비행체에서의 발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

조사 결과 통보』 참조. UH-1H가 최종진입작전과 동시에 작전에 투입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군의 작전문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203항공대장 백○○은 한 인터넷 방송에서 주위가 깜깜할 때 작전 개시 이전에 도청 일대로 비행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말했다. 『장군의 초대석, 5·18 민주화운동의 진정한 영웅, 대한민국 육군 헬기 조종사 — 백○○ 예비역 준장, 차○○ 예비역 중령 (29)』, 『장군의 소리』(2019.06.13.), <https://www.youtube.com/watch?v=-EjhczOZOg>.

462 군 문서 및 작전 내용에 대해서는 5·18조사위, 『직나-10,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헬기사격 사건』 조사 결과보고서 <표 20> 참조.

(고) 조비오 신부의 사자명예훼손 사건에 관한 광주지방법원의 1심 재판부는 전두환 측이 이의 제기하며 신청한 전일빌딩 탄흔에 대한 감정 촉탁을 국과수에 의뢰하였다. 국과수는 이전의 감정 결과와 마찬가지로 탄흔에서 나타나는 탄도를 통한 사격의 방향을 기둥, 바닥, 천장 등에 있는 탄흔에서 추정하여 나갔다. 창틀 턱 및 창틀 기둥, 탄흔이 집중되어 있는 기둥, 그리고 기둥과 매칭이 되는 바닥 테라조의 탄흔 등의 입사각에서 수평 이상의 높이에서 이루어진 하향 탄도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법원은 헬기에 의한 사격으로 형성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 측 변호인이 제시한 전일빌딩에 관한 여러 가지 주장들에 대해 당시 상황을 고려하며 다각도로 접근하였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국과수의 전일빌딩에 대한 탄흔 감정 결과를 분석하면서 전일빌딩 탄흔의 원인을 UH-1H 헬기에 장착된 M60D 기관총의 하향사격에 의하여 발생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결론 내렸다.

위원회 또한 두 국가기관의 전일빌딩 10층 탄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일빌딩 탄흔의 관입 각도, 함몰 깊이, 탄종, 생성 방향 등을 조사하기 위해 헬기모의실험사격을 실시했다. 위원회는 전일빌딩의 탄흔과 실험사격에서 생성된 탄흔에서 추출된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해 국과수에 의뢰했다. 국과수는 양자의 데이터값이 약 1.5~7.4배, 관입 깊이의 경우 약 5.6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차이는 사건 당시의 상황과 사격 실험의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국과수는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두 데이터 간의 상호 비교분석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두 탄흔 데이터 간의 편차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논단할 수 없다고 하였다. 즉, 다양한 변인들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사격에서 나타나는 결괏값과 전일빌딩 탄흔 데이터의 결괏값을 단순 비교해서 검토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이다.

탄흔 앞에 유리창을 비롯한 장애물로 인해 탄속이 저하되고, 탄흔의 크기와 관입 깊이가 작아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전일빌딩의 풍화, 침식, 마모, 철근 부식에 의

해 강도가 변할 수도 있으므로 표적지의 강도와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국과수의 의견도 제출되었다. 따라서 양자의 탄흔 데이터값의 편차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1980년 5월 당시 전일빌딩 구조물의 조건과 유리창과 같은 탄흔의 감속을 유발하는 조건을 거의 유사하게 재현하지 않는다면, 앞의 두 데이터 간의 단순 비교를 통한 조사는 현재 상태에서는 논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과수는 관입 형태상으로 볼 때 시험 대조군의 탄흔 데이터와 전일빌딩 탄흔 데이터 간의 형태가 유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전일빌딩의 탄흔만을 놓고 보았을 때 국과수는 탄흔의 크기와 탄흔 분포도, 사격 각도 등을 고려해서 UH-1H에 장착된 M60D 기관총에 의한 것이거나 탑승 병력에 의한 M16 소총 사격의 가능성을 높게 보았다. 위원회는 일반적인 헬기사격의 패턴에서 사탄 분포가 넓게 형성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7, 8층에서 탄흔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27일 전일빌딩 7층 이상의 위치에서 탄흔과 탄두 등을 보았다는 전일방송 직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7층과 8층에서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흔적을 탐색하였으며, 의심되는 흔적들이 7층과 8층에서 발견되었다.

전일빌딩 탄흔에 대한 국과수의 법안전감정과 위원회의 자체 조사 결과로 보았을 때 전일빌딩 10층의 탄흔뿐만 아니라 7, 8층의 의심흔 등의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흔적의 형상이 사격 시 나타나는 탄흔의 원뿔형 형상을 띠고 있으며,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이나 전일빌딩의 진압 당시의 상황, 진압작전 완료 직후 헬기사격으로 추정되는 흔적들을 목격한 전일방송 직원들의 증언에서 헬기사격이 전일빌딩을 대상으로 실행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특히, 10층의 탄흔 중 창틀의 탄흔과 기둥 탄흔과 일치한 바닥 탄흔에 대한 탄도를 측정한 국과수는 수평 기준 약 48도와 약 46도 하향 사격에 의한 탄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탄도는 전일빌딩 10층 이상의 높이에서 사격하였을 때 가능한 것으로 헬기와 같은 비행체에서의 발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 헬기사격 목격자

① 5월 21일 광주천 상공에서의 헬기사격 목격자

21일 헬기사격 목격자들은 목격 장소, 사격 헬기의 기종, 사격을 경험한 상황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목격자들의 증언을 비교 검토해보면, 대체로 21일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에 광주천 불로동다리 인근, 도청 일대를 중심으로 500MD 헬기에 의한 사격을 목격한 것으로 수렴된다. 목격자 조비오 신부, 피터슨 목사, 김○○, 이○○, 최○○, 정○○, 최△△, 신○의 목격 상황 또한 장소상으로 광주천을 중심으로 목격 장소가 분포되어 있다는 점, 목격 시간으로도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는 점, 목격한 사격 헬기가 500MD라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21일 목격자들의 진술의 유사성과 객관적 정황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실시한 기록조사에서는 5월 21일 506항공대의 500MD 헬기 2대가 무장한 채 11시경 광주 상공을 비행하였으며, 17시경부터는 506항공대에서 무장한 500MD 헬기 4대가 추가로 전개한 사실이 있다. 헬기사격을 목격한 시간대에 무장한 500MD가 비행한 사실 또한 확인되었다. 5월 21일 광주 상공에서 비행한 506항공대의 500MD는 사격이 가능한 상태의 무장 수준이었다. 203항공대의 조종사는 광주비행장에서 시위대에 대한 사격 지시가 있었는데 조종사가 거부하고 광주천에 사격을 했다는 이야기를 조종사들끼리 주고 받았다고 진술하였다.⁴⁶³ 그런 측면에서 목격자들이 목격한 21일 헬기사격은 군의 작전문서에 기재된 500MD의 임무 수행 사항과 비행 중 무장 상태, 광주천을 대상으로 한 사격과 관련된 조종사들의 대화, 항공대 지휘관 및 조종사들에게 내려진 사격 지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조비오 신부가 목격한 광주천 불로동다리 상공에서의 헬기사격이 실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 목격자들의 목격 사실과 이에 관한 증언은 5월 21일 오후경에 헬기에 의한 기총소사를 판단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할

⁴⁶³ 5·18조사위, 203항공대 조종사 「고○○ 진술조서」(2023.08.01).

수 있다.

② 5월 27일 도청 일원에서의 헬기사격 목격자

5월 27일 새벽 03시경부터 04시경을 전후로 헬기를 목격한 목격자는 다수 존재한다. 선행조사를 포함해서 위원회에서 검토한 목격자들도 10여 명에 이른다.⁴⁶⁴ 목격자들의 진술에서 나타난 헬기사격의 대상이 되는 장소는 전일빌딩, 전남도청 일대, 전대병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교사의 「작전일지」, 기무사의 「광주소요사태 진행 상황」 등의 작전문서에 기록된 27일 작전상황 중 헬기 운용과 관련해서 가장 빠른 시간은 전교사의 「광주사태 시 작전 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04:45 “지휘용 무장 헬기 전원 도착(요청 20사→항공대)” 기록이다. 04:51경에는 3여단으로부터 무장 헬기 지원 요청 기록이 있고, 05:17 이후에는 도청 일대 상공을 헬기들이 위력기동을 한 기록이 있다.

그러나 목격자들이 목격한 시각과 27일 작전에 투입된 조종사들과 진압병력으로 투입된 병력들에 대한 위원회를 포함한 여러 기관의 조사 내용으로 볼 때, 그리고 “밤새도록 UH-1H가 특전사 인원들을 도청을 점령하기 위해서 (사직) 공원으로 실어 날랐다”는 506항공대 작전과장 최○○의 진술 등으로 볼 때 2군사령부에서 작성한 조치사항에 나오는 도청 일대에 대한 점령 완료 이전에 헬기를 이용한 항공작전이 실행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로는 501항공대 무장병이 광주비행장에서 01:00 또는 02:00경에 헬기들이 이륙하고, 05:00경을 전후로 착륙한 사실을 목격했다는 진술이다.

앞서 506항공대 작전과장 최○○의 진술은 목격자 이△△이 적십자병원 인근에 헬기가

.....
⁴⁶⁴ 5월 27일 헬기사격 목격자에 대한 검토는 직나-10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헬기사격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 (표 22) 참조.

지상에 근접하여 병력들을 공수했다는 증언과 일정 부분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 위원회에서 면담조사를 실시한 유○○의 증언에서 나타나는 공수부대원의 이동 동선 역시 이△△의 증언과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⁴⁶⁵ 일부 목격자의 진술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목격자 진술을 종합해서 검토하면, 27일 03시부터 04시경에 도청 일대 상공으로 헬기가 전개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 과정에서 목격자들이 목격한 헬기사격 장면들이 일어났을 개연성또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③ 기타 헬기사격 목격자

조비오 신부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목격한 21일 광주천 상공의 헬기사격 상황과 27일 전일빌딩의 헬기사격 사건 외에 다른 장소에서 헬기사격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제기되었다. 5월 21일 나주시 산포면 비상활주로에서의 헬기사격을 목격한 목격자의 증언은 21일 나주 남평지서 무기고 피탈 상황과 유사하다. 목격자 김○○은 나주 남평지서에서 무기를 획득한 후 차량을 타고 시위대와 목포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산포면 비상활주로에 들어서다가 헬기사격을 경험하였다. 목격자가 헬기사격을 경험한 시각은 16시경이다. 이 무렵 광주에는 7.62mm 2,000발로 무장한 500MD 4대와 무장한 UH-1H 약 5대가 출동하여 임무 수행 중이었다. 김○○ 본인이 경험한 헬기사격이 실제로 일어났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⁴⁶⁶

다음으로 27일 전대병원에 가해진 헬기사격에 관한 목격자 증언이다.⁴⁶⁷ 헬기사격은

⁴⁶⁵ 5·18조사위, 「유○○ 진술요지서」(2023.09.11). 유○○는 군인들이 사직공원 방향에서 도청 쪽으로 이동해왔다고 했다.

⁴⁶⁶ 5·18조사위, 「김○○ 참고인 진술조서」(2022.04.15.); 5·18조사위, 「김○○ 녹취록」(2022.09.13.); 5·18조사위, 「남평 활주로 헬기사격 목격자 김○○ 면담조사 결과」. 그러나 김○○ 이외에 헬기사격을 당시 비상활주로에서 경험했다는 추가적인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또한 없었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관계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⁴⁶⁷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염○○ 녹취서」(2017.10.14.), 『조사기록철(헬기팀-24-4)』, 1195~1255쪽;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1685 사자명예훼손재판, 「조○○ 녹취서(요지)」(2019.07.08.) 889~912쪽; 5·18조사위, 「이○○ 참

04시경 계엄군이 광주 시내로 진입할 당시 도청 일대에서 선회 비행 중인 UH-1H에 의해서 전대병원 옥상으로 사격이 이루어졌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나왔다. 그러나 같이 배치되었던 사람들로부터 헬기사격에 관한 추가적인 진술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목격자가 헬기를 목격한 시간이 다른 목격자들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한 04시경을 전후로 헬기가 도청 일대 상공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위원회가 조사하면서 백운동에서 월산동 방향으로 헬기사격이 있었던 것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 또한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나왔다.⁴⁶⁸ 목격자 장○○이 목격한 21일 19시경부터는 20사단 61연대 병력이 광주-목포 간 도로 봉쇄를 위해 효천역 일대에 배치된 상황에서 해당 지역에서 사격이 실시된 이유가 기록에서도 나타나지 않으며, 목격자 외에 다른 목격자의 목격 증언도 존재하지 않아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마지막으로 송암동 오인교전 현장에서 AH-1J 코브라 헬기에 의한 사격에 관한 목격담이다. 5월 24일 광주비행장으로 이동하는 11공수여단과 보병학교 교도대대 간에 벌어진 오인 교전 당시 코브라 사격이 있었다는 증언이 최초로 제기되었다. 11공수여단 ○○대대 ○지역대 ○중대 소속 손○○은 위원회와의 1차 면담조사에서 5월 24일 주남마을에서 광주비행장으로 철수하던 당시 보병학교 교도대대의 오인사격을 받아 피하던 과정에서 상공에서 금당산을 향해 사격하는 코브라 헬기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했다. 손○○의 진술은 1995년 검찰에서 103항공대의 이○○, 구○○이 진술한 내용과는 배치되는 진술이다. 24일 송암동 오인교전 현장에 출동한 헬기에 사격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은 103항공대의 이○○, 구○○의 진술과 501항공대의 문○○의 진술 등에서 확인이 된다. 하지만 이○○와 구○○은 지시에도 불구하고 아군끼리의 교전 상황임을 확인하고 사격하지 않았다

.....

고인 진술조서(2022.07.22); 5·18조사위, 「이○○ 녹취록」(2022.09.14.).

⁴⁶⁸ 5·18조사위, 조사4과-574(2022.05.19.) 「장○○ 면담조사 결과 보고」(2022.04.11.).

고 검찰에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손○○은 이와는 배치된 진술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2차 면담조사에서는 자신이 본 것이 확실한 것 같지 않다며 1차 조사 때의 진술을 반복하였다.

2) 헬기사격 관련 혐의점

가) 500MD 헬기 사격 관련 혐의점

500MD 헬기의 헬기사격과 관련하여 사격을 실행한 항공대는 501항공대와 506항공대가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1일 광주에 들어온 506항공대와 22일 광주에 들어온 501항공대의 헬기들이 7.62mm M134 기관총으로 무장을 한 채 본대에서 광주로 출동하였으며, 위원회 조사에서 확인되었듯이, 비행 임무를 수행할 때 사격 가능한 상태였다. 1대가 출동한 505항공대의 500MD는 31사단에 배속되어 사단 지휘용 항공기로 사용되었으며, 5·18민주화운동 기간 내내 가스 살포 임무를 주로 수행하거나 인원 공수에 활용된 502항공대의 500MD는 군 기록과 해당 항공부대 조종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사격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방부 특조위와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는 광주에 출동한 헬기 조종사로부터 무장헬기의 출동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격이 가능하였거나 실재했을 가능성 차원에서의 혐의점을 정리하면, 먼저 ① 헬기가 처음 주둔지에서 무장 출동할 당시 사격이 전제되었는지의 여부를 들 수 있으며, 다음으로 ② 광주에서 임무 수행 당시의 무장 상태가 상황에 따라 즉응사격태세를 갖춘 상태였는지에 대한 혐의이다. 또한 ③ 사격을 실행하기 위한 지시와 명령의 유무 또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④ 광주에 출동한 육군항공 관계자들의 헬기사격 목격 사실이나 사격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은 사실 유무도 헬기사격에 관한 혐의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또한 ⑤ 헬기사격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증

거나 정황 증거가 무엇인지도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501항공대는 22일 전교사의 무장헬기 지원 요청에 따라 7.62mm 2,000발씩 장착하고 AH-1J 코브라 헬기 2대와 함께 5대가 지원되었다. 501항공대의 무장 출동과 관련해서는 제1항공여단 상황일지에 5월 20일 전교사에 500MD 무장헬기 3대를 요청한 기록이 있으며, 제31항공단 탄약관리하사의 증언을 통해 7.62mm M134 기관총에 탄약 2,000발이 불출되었으며, 출동 헬기에 적재되었다는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

506항공대는 5월 15일 비무장 상태의 500MD가 광주에 출동하였으며, 이후 21일 전교사령부의 무장헬기 긴급 건의에 따른 2군사령부의 승인 조치로 무장헬기 4대가 광주에 지원되었다. 7.62mm 기관총과 실탄 2,000발로 무장한 506항공대의 500MD 4대가 추가로 광주에 전개되었다. 무장한 500MD 헬기의 출동 목적은 제31항공단장 방영제의 검찰 진술에서 ‘무력시위’와 ‘위력과시’라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항공부대 지휘관의 진술과 지시는 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조종사들의 진술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광주 현지에서 소요진압작전에 투입될 때 위협 수준의 사격 가능성 또한 배제하지 않은 지시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격과 관련해서 의심되는 혐의는 500MD로 작전에 투입될 때의 헬기 무장 상태가 사격 가능한 상태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501항공대의 조종사들과 무장병, 506항공대의 정비사와 무장사, 그리고 조종사의 진술을 통해서 광주 현지에서 작전에 투입될 때 작전상황에 따라 즉각적인 사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로 비행 임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오발 사고와 오장전 사고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또한 506항공대가 시위대 습격에 대응하기 위해 제31사단 해남대대와 장흥교도소로 무장한 채 출동한 사실 또한 사격 가능 상태에서의 비행 임무 수행 사실을 뒷받침한다.

또한 조종사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달된 사격 명령 및 지시 또한 헬기사격이 가능한 상

태에서 실행까지 이어질 수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지휘관과 상부로부터 위협사격 지시가 실재했으며, 사격 대상 지역도 광주천, 조선대학교 뒷산, 전남도청 일대라는 특정 장소가 지목되기도 했다. 또한 501항공대 무장병의 진술에 따르면, 광주교도소를 방호하는 제3공수여단에게 사격 가능한 상태로 무장 출동하라는 지시 또한 있었다.

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한 조종사와 무장사 등 육군항공 관계자들 모두 사격에 대해서는 부인하였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사격 가능성을 짐작하게 하는 진술이 일부 조종사와 무장사에게서 나왔다. 광주비행장에 위치해있던 일부 조종사는 광주천변에 공격헬기가 위협사격을 하며 지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고 했으며, 상무대 연병장 항공대 지휘소에 위치해있던 506항공대 조종사는 상부로부터의 위협사격 지시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 조종사들끼리 논의한 바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조종사들의 진술은 헬기사격의 정황 증거로서 위협사격을 위한 헬기의 무장, 그리고 사격 가능한 상태에서의 비행 임무 수행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계엄사 부사령관 황영시, 육본 작전교육참모부장 김재명, 작전교육참모차장 이상훈이 전교사령부 참모에게 헬기를 동원한 무력 제압을 지시한 사실 또한 위협사격 수준 이상의 지시로 이해된다.

500MD 헬기의 사격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는 또 하나의 혐의로는 506항공대 조종사 서○○이 1995년 검찰 조사에서 제출한 「개인비행시간기록부」의 기록과 작전문서 기록의 차이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행시간기록부」의 기록이 작전문서에서 누락된 것이 헬기사격을 포함한 은폐해야 할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작전문서에서 누락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들게 만든다.

500MD 헬기의 사격과 관련해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목격자들 다수가 목격한 21일 헬기사격 사건이다. 21일 7.62mm 기관총과 실탄으로 무장하고 임무를 수행한 부대는 506항공대이다. 목격자들의 목격 증언은 헬기사격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이다. 사자명 예훼손 사건의 1심 재판부 역시 헬기의 위협사격 증거로서 목격자들의 증언을 다루었다.

다수의 목격자가 5월 21일 13시경부터 16시경 사이 광주천 인근 상공에서 광주천변과 사직공원을 향한 헬기사격을 목격하였다. 기무사에서 작성한 「광주소요사태 진행 상황」에서는 5월 21일 12시 40분경 500MD가 광주 상공에서 초계비행 중인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⁴⁶⁹ 목격자들이 목격한 시각과 군 기록에 기재된 시각이 대략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나) AH-1J 코브라 헬기 사격 관련 혐의점

제31항공단 탄약관리하사의 증언과 같이 ① 103항공대에서는 AH-1J 코브라 헬기 2대에 20mm 발칸 탄약 각 500발씩 무장한 채 광주에 출동하였다. 탄약관리하사 최○○는 광주에 출동한 인원의 부대 복귀 이후 탄약을 반납받을 때 보통탄이 1/3가량 소모된 채 반납되었다고 진술했다. 탄약 불출에 대한 사실관계는 103항공대장 이○○를 비롯해서 다른 조종사와 무장사에게서 확인이 되지만, 소모된 상태에서의 반납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② 20사단 전투상보 보급 현황에 기재된 “5.23. 항공대 20mm 탄약 1,500발 불출” 내용과 위원회에서 헬기사격 시 부산물로 발생하는 탄피, 탄두, 링크 등을 찾기 위한 탐색조사에서 수습한 20mm 연습탄 탄두 증거물로 인해 실제로 헬기사격의 개연성뿐만 아니라 사격에 따른 탄약의 소모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③ 20mm 연습탄 탄두가 발견된 조선대학교 당시 절토지는 전교사령관 소준열의 1995년 검찰에서의 진술에서 헬기사격 타겟으로 거론된 지역이라는 점과 지휘관의 사격 명령 대상 지역으로 광주천변과 함께 거론된 장소라는 점에서 코브라 사격이 실제로 실행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지침이 “시위 사격은 20mm 발칸이 적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Hel기 작전계획을 실시하라」이다.

AH-1J 코브라 헬기 사격과 관련된 의혹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로서 들 수 있는 것은 ④ 당시 출동했던 무장사가 1989년 2월 10일 조비오 신부에 대한 집단고소 참고자

⁴⁶⁹ 「광주소요사태 진행 상황」, 기무사 제공자료 119-24, 242쪽.

료로 제출한 자필 「진술서」이다. 이 진술서에는 사격과 관련이 깊은 ‘건 드라이브(Gun-Drive)’의 고장이 기재되어 있다. 위원회에서 현재 코브라 헬기를 운용하고 있는 항공부대에서 실지조사를 벌인 결과, 고장 빈도율이나 빈도수가 굉장히 낮은 부속이 ‘건 드라이브’이며, 사격 상황에서 고장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속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건 드라이브’의 고장을 20mm 발칸 사격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로 판단하였다.

다) UH-1H 헬기 사격 관련 혐의점

기존 검찰수사, 국방부 특조위 조사, 사자명예훼손 사건에서의 검찰수사에서 육군항공 관계자들은 UH-1H의 사격 사실을 부인하여 왔다. 사격 훈련 역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만난 일부 조종사와 승무원들은 본대에서 출동 당시 UH-1H에 M60D 기관총을 장착하고 출동했으며, 실탄도 적재한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기존의 선행조사에서 광주 출동 당시 기관총을 가지고 가지 않았으며, 마운트도 설치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항공부대의 지휘관과 및 조종사들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주장이다.

202항공대 승무원 이○○은 ① 광주 현지에서 5분대기조 형태로 완전무장을 한 채 작전 대기 상태를 유지하였다고 했다. 203항공대장 백○○은 기관총과 마운트조차 가지고 내려가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헬기사격을 부인해왔는데,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는 평상시에 5분대기조와 같은 긴급대기로 완전무장한 헬기 5대를 운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로 보았을 때, 최소 5대 이상의 UH-1H 헬기가 무장을 한 채 광주로 출동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UH-1H 헬기의 사격 가능성과 관련해서 ② 군의 작전지침과 지시 및 명령에서 나타난 사격 관련 정황들 또한 UH-1H 헬기 사격의 정황 증거로서 나타나고 있다. 계엄사령

부의 「헬기 작전계획을 실시하라」 지침에서는 “UH-1H로 지상부대 병력 긴급 공중기동 차단 추격”을 적시하고 있다. 21일 계엄군이 광주 시내에서 철수하고 외곽차단작전으로 전환한 이후 사격을 포함한 헬기의 항공작전 운용까지 고려된 것으로 추정된다.⁴⁷⁰

③ 비행 중 사격 가능한 상태에서 임무를 수행한 정황 또한 조종사의 증언에서 확인하였다. 203항공대 조종사 장○○의 진술에 따르면, 27일 광주재진입작전 시 위력시위 비행 중 무전으로 들어온 무등산 사격 타겟 확인 지시는 출동 당시에 무장을 한 상태로 광주로 전개했으며, 비행 임무 수행 당시에도 M60D 기관총을 장착하였고, 실탄까지 장전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UH-1H 헬기에서의 사격과 관련된 ④ 목격자들의 진술은 대부분 27일 광주재진입작전 당시에 집중되어 있다. 위원회는 27일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도청 일대에서 UH-1H의 헬기사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앞서 위원회에서 조사한 202항공대와 203항공대의 조종사, 승무원들을 통해서 광주에서 UH-1H 헬기의 사격 관련 혐의가 되는 무장 상태와 사격가능 상태에서의 비행 임무 수행을 확인하였다. 목격자들의 증언은 이러한 혐의가 헬기사격이 실제로 실행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또한 ⑤ 전일빌딩 10층에 있는 탄흔 역시 헬기사격 관련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서 볼 수 있다.

위원회는 전일빌딩 및 도청 일원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한 목격자들과 선행조사에서 다루었던 목격자들의 증언 자료들을 함께 검토하였다. 27일 진압작전이 모두 끝난 이후 ⑥ 전일방송 구내의 상황을 통해서 헬기사격을 추정해볼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는 증언이 나왔다. 전일방송 아나운서 최○○과 광고부 직원 심○○은 27일 진압작전 종료 이후 10층에 올라간 사람들이다. 이들은 10층 바닥에 패인 곳이 있었고, 총탄 흔적과 총탄 구

⁴⁷⁰ 5월 21일 김○○은 16시를 전후로 나주 산포면 비상활주로에서 헬기사격을 경험하였다고 증언했다. 5·18조사위, 「김○○ 참고인 진술조서」(2022.04.15.); 5·18조사위, 「김○○ 녹취록」(2022.09.13.); 5·18조사위, 「남평 활주로 헬기사격 목격자 김○○ 면담조사 결과」.

명이 나 있는 유리창을 목격했다고 했으며, 일그러진 납이 바닥에 굴러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7층과 8층에서 탄흔과 캐비닛 안에 박혀 있는 탄두를 보았다는 증언을 한 직원도 있었다.

헬기의 작전 투입과 관련해서는 ⑦ 광주비행장에 머물고 있던 501항공대 무장병으로부터 27일 새벽 1시 또는 2시경에 헬기들이 광주비행장을 이륙했으며, 5시경에 복귀하는 것을 보았다는 증언을 확인하였다. 이 증언에서 나온 시간과 목격자들이 헬기사격을 목격한 시간이 유사점을 보인다. 전일빌딩에 대한 진압작전은 LMG가 전일빌딩 옥상에 설치되어 있다는 첩보에 따라 3공수여단의 원활한 도청 진압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특공조를 투입하기 이전에 첩보에 의한 LMG 기관총 제거를 위한 목적으로 헬기를 투입하여 전일빌딩을 향해 제압사격을 실시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⑧ 국과수는 전일빌딩 10층 탄흔에 대한 법안전감정에서 탄흔의 위치, 수평에 가까운 하향 탄도, 기둥의 옆면에 스쳐 있는 탄흔과 바닥 탄흔과의 탄도 등을 분석한 결과, 전일빌딩과 비슷한 높이의 건물이 없었으며, 탄흔의 위치나 탄도 등으로 보았을 때 지상군에 의한 사격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10층과 동일 높이 이상의 높이에서 사격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UH-1H에 장착된 기관총이나 탑승 병력에 의한 사격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위원회에서 실시한 모의실험사격에서 확보된 탄흔 데이터와 전일빌딩 탄흔 데이터 간 국과수 실험분석비교에서도 두 탄흔 데이터 간의 형태상의 유사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보내왔다.

위원회에서는 27일 헬기사격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한 목격자들의 증언 자료와 대인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자료를 토대로 27일 전일빌딩뿐만 아니라 작전이 전개된 도청 일원에서 헬기사격이 일어났을 가능성 또한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3. 소결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출동한 모든 기종의 헬기에서 사격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위원회 조사에서 조종사, 무장사, 정비사 중 일부는 최초 본대에서 출동할 당시 무장을 하고 광주로 들어왔다는 진술을 하였다. 위원회는 출동하는 조종사들에게 “코브라는 20mm 발칸을, 500MD는 7.62mm 기관총을 운용하라”는 지침을 주었고, 동시에 광주 상황의 심각성을 주지시킨 것으로 보았을 때 현지의 상황에 따라 사격도 충분히 전제해두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광주로 투입된 이후 비행 임무를 수행할 때 무장 수준 또한 사격 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을 조종사, 무장사, 정비사, 그리고 승무원에 대한 대인조사에서 확인한 바 있다. 도심 외곽의 시위대 대응을 위해 헬기사격을 전제로 하는 출동 지시가 있었으며, 그에 따라 사격이 가능한 상태로 출동을 하였다는 조종사의 진술 또한 확인하였다. 5월 22일 이후 가스살포기를 장착한 502항공대의 500MD를 복귀시키고, 무장헬기로 재배치한 사실과 지속적인 지휘관들의 헬기사격 지시, 비행 중인 조종사들에게 전달된 사격 관련 지시 등은 광주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헬기들의 무장 수준이 바로 사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원회에서는 헬기사격이 실제로 일어났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증거는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첫째, 헬기사격과 관련된 지시와 명령이 과거 선행조사에서는 계엄사령부의 지휘관에서 전교사령부로, 전교사령부에서 항공대 지휘관에게로 전달된 사실까지 확인하였다. 하지만 항공대 지휘관과 일부 조종사들은 위력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가 우려되어 실제 사격까지는 하지 않았으며 헬기사격을 부인했다. 하지만 위원회에서는 비행 임무 중인 조종사들에게 사격 지시와 명령이 여러 번 있었다는 사실을 대인조사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둘째, 목격자들이 목격한 헬기사격의 일시와 장소가 일부 조종사들의 증언에서 언급되

는 장소와 일자에 부합하고 있다. 5월 21일 목격자들이 헬기사격을 목격한 장소와 조종사들⁴⁷¹이 광주비행장에서 들었다는 헬기사격의 대상 장소가 광주천변이며, 조종사가 이야기하는 헬기사격의 일자가 5월 23일 또는 24일 이전이라는 점에서 조비오 신부를 비롯한 목격자들이 목격한 헬기사격 사건 일자와 어느 정도 부합한다.

셋째, 헬기사격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서 조선대학교 절토지였던 장소에서 발견된 20mm 연습탄 탄두를 들 수 있다. 조선대학교 절토지에서 발견된 20mm 연습탄두는 선행조사에서 가능성만 확인된 AH-1J 코브라 헬기가 실제로 사격을 실행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103항공대 조종사가 1995년 검찰에 제출한 「개인비행시간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비행 기록에서도 송암동 오인교전이 있던 24일을 제외하고 23일 가장 많은 비행 기록이 있는 점으로 보아 23일 조선대학교 절토지에 사격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출동 당일인 22일 전교사 전발부장 김순현의 지시가 103항공대장 이○○에게 하달된 점으로 보았을 때 22일 사격 개연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넷째, AH-1J 코브라 사격 개연성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정황 증거로서 103항공대 무장사가 1989년 2월 10일 작성한 자필 진술서에 기재되어 있는 ‘20mm 건 드라이브(Gun-drive) 고장’이라는 내용과 20사단 전투상보 보급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5.23 20mm 발칸 탄약 항공대 보급’을 들 수 있다. 전투상보 보급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20mm 발칸 탄약의 항공대 보급과 연결되어 있는 정황 증거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전일빌딩 10층 탄흔은 국가기관의 선행조사에 헬기사격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었다. 위원회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군이 도청 일대에 본격적인 작전을 개시하기 이전에 육군항공의 헬기들이 임무에 투입된 몇몇 정황들 또한 확인이 된다. 우선

471 5·18조사위, 203항공대 조종사 「고○○ 진술조서」(2023.8.1); 5·18조사위, 203항공대 조종사 「노○○ 진술조서」(2023.06.15).

27일 새벽 3시 20분경부터 4시까지 헬기가 도청 일대에서 사격을 포함한 기동을 한 사실을 본 목격자들이 있다. 그리고 계엄군의 작전 이전에 위력시위 비행을 하였다든 203항공대장 백〇〇의 진술이 존재한다. 전교사 연병장 항공대 지휘소에서 새벽에 무전을 모니터링한 506항공대 작전과장은 27일 새벽에 헬기들이 계속 작전에 투입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위원회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헬기사격 사건’을 조사하면서 확인한 헬기사격 사건은 다음과 같다. 5월 21일 광주천 불로동다리 상공에서 506항공대 소속 500MD 헬기가 광주천과 광주공원 및 사직공원을 향해 위협사격 수준 이상의 사격 사실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조비오 신부를 비롯한 여러 사람의 목격자가 43년이 지난 상황에서 목격 시간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목격 장소와 장면에 대한 묘사가 일관되게 제시되고 있다. 5월 21일 13:00를 전후로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의 집단발포가 있었고,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매우 긴박한 상황 가운데 헬기사격이 실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5월 22일 광주로 출동한 AH-1J 코브라 헬기는 출동 당시 헬기당 500발씩 2대가 출동했으며, 탄약 불출 사실은 31항공단의 탄약관리하사로부터 확인이 되었다. 위원회가 실시한 탐색조사 과정에서 1980년 당시 조선대학교 절토지인 지역에서 발견된 20mm 탄두를 통해서 AH-1J 코브라 헬기에서의 사격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사격 개연성은 육군본부 참모들이 전교사 참모에게 내린 사격 명령을 통해서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5월 27일 광주재진입작전 당시 전남도청 일대 진압작전에 대한 항공부대의 작전 참가 과정에서 대공화기가 전일빌딩 옥상에 설치되었다는 첩보에 따른 전일빌딩에 대한 사격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전일빌딩 10층에서 확인된 탄흔은 탄흔의 위치, 수평에 가까운 하향사격으로 추정되는 탄흔들이 27일 전일빌딩에 헬

기사격이 가해졌음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목격 시각이 다소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27일 전일빌딩을 포함한 도청 일대에서 지상병력의 작전을 공중화력으로 지원하기 위한 헬기사격을 포함한 항공작전이 전개되었을 가능성을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증거들을 토대로 조사결과들을 종합해서 보면, 5·18민주화운동 기간 광주에 출동한 모든 기종의 헬기에게 사격을 지시하는 명령이 존재했으며, 그 명령은 살상을 포함한 위협사격 수준 이상의 지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광주에 출동한 3개 기종 모두에게서 헬기사격이 실행되었거나 사격의 개연성이 충분히 있음을 조사과정에서 확인하였다.

제4절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1. 조사 배경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사령부가 전투기를 동원해서 광주를 폭격할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른바 ‘광주폭격설’ 의혹은 5·18민주화운동 당시부터 일부에서 제기되었으나, 2017년에 5·18민주화운동 당시 수원의 제10전투비행단에서 조종사로 근무했던 김○○과 사천의 제3훈련비행단에서 학생 조종사로 근무한 김△△가 유사한 제보를 하면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2017년 9월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국방부의 5·18특별조사위원회는 6개월에 걸친 조사 활동을 통해서 여러 기록을 검토하고, 50여 명에 달하는 참고인 진술 등을 확보하여 2018년 2월 10일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했다.⁴⁷²

몇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이하 국방부 5·18특조위)〉의 보고서는 “10전투비행단에 있던 F-5 전투기나 제3훈련비행단에 있던 A-37 항공기에 MK-82 폭탄이 장착되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⁴⁷³ 그와 같은 폭탄 장착이 광주를 폭격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명확한 근거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⁴⁷⁴고 결론짓고, 앞으로 출범하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 권고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공군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사건을 규명하고자 2020년 10월 26일에 전원위원회에서 특별법 제3조 제7호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사

⁴⁷² 국방부 5·18민주화운동특별조사위원회(2018), 『조사결과보고서』.

⁴⁷³ 보고서는 이 결론에 대한 소수의견을 병기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⁴⁷⁴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앞의 책, 101쪽.

건」〈직나-11〉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그 뒤 2023년 12월 1일 제105차 전원위원회에서 ‘진상규명 불능’ 결정되었다.⁴⁷⁵

2. 조사 결과

가. 8가지 조사 쟁점

1) 광주폭격설

5·18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 당시에 광주에 거주하던 미국인들 사이에서 ‘광주폭격설’이 퍼져나가고 있었으며, 1980년 5월 22일 보안사령부의 「메모 보고」⁴⁷⁶에 일부 시민들이 계엄군이 광주를 폭격할 것이라는 소문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기록이 있음을 발견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가) 미국인들 사이의 폭격설

미국 정부가 한국 군부의 광주폭격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저지했다면 미국 정부는 두 가지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했을 것이다. 첫째, 광주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외교적·정책적·군사적 조치이고, 둘째, 한국 정부의 군사적 동향에 대한 미국의 이러한 개입에 대한 보고와 정책적 평가 조치다.

5·18조사위 조사에 의하면, 당시 광주에 거주하던 일부 미국인들 사이에서 광주 폭격에 관한 소식들이 돌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⁴⁷⁷ 미국 당국과 현지의 미국인들이 이러한 정

⁴⁷⁵ 위원 3인(이종현, 이동욱, 차기환)의 추가 의견에 대해서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사건”〈직나-11〉 「직권조사보고서」, 76쪽 참조.

⁴⁷⁶ 보안사령부(1980), 「광주시 소요 동정, 5. 22」.

⁴⁷⁷ 당시 선교사 부인으로 광주에 머물던 마샤 헌틀리(Martha Huntley)는 2017년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전두환이 광주폭격을 지시할 계획이라는 것은 광주에서는 흔히 들을 수 있는 소문이었습니다”라고 썼다.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2018), 「조사기록철(전투기팀-6)」, 2825쪽.

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첫째, 광주 거주 미국인의 상당수가 광주를 떠나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혔음에도 미국 당국은 자국민을 광주 이외의 지역으로 대피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⁴⁷⁸

당시에 광주에 거주하던 미국인 선교사가 작성해서 미국대사관에 보낸 서신 「5·18광주사태에 대한 간략한 회고」(Abbreviated Retrospect of the 5·18 Incident at Kwangju, Korea)를 보면 광주에 남아있던 선교사들은 미국 정부로부터 광주를 떠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우리는 이들을 두고 떠날 수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⁴⁷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광주 거주 미국인들을 다른 곳으로 대피시키려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평화봉사단원 데이비드 돌린저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서울의 평화봉사단 본부로부터 광주를 떠나라는 통보를 받기는 했으나, 자신들이 거부하자 만일에 대비해서 광주 미국문화원과 연락을 취하라는 정도의 소극적인 권고만을 받았다고 기록했다.⁴⁸⁰ 당시 미국 정부는 광주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이 광주를 떠나기를 원했으나 강권하지는 않았으며, 최종 결정은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긴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같은 맥락에서, 당시 미국 정부가 비전투원후송작전(NEO)을 공식적으로 시행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미국이 해외 지역에서 자국민을 군사작전 수준에서 대피시키기 위해서는 자국민이 처한 위협 상황에 대한 정책적·군사적 분석이 있어야 하고, 해당국의 대사관 보고와 국방부의 작전 담당 부서의 세부 실행계획이 존재해야 하는데 5·18조사위는 관련 기록을 발견하지 못했다.

셋째, 광주 폭격과 관련된 미국 측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다. 5·18조사위가 소장하거

478 1980년 5월 당시에 광주에는 공식적으로 36명의 미국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479 이 기록은 1980년 6월 6일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국무부로 송고되었다. 미국대사 글라이스틴은 이 기록을 국무부에 보내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본 보고서 중에서 가장 균형 잡힌 광주사태 기록이자 분석”이라고 평가했다.

480 돌린저, 앞의 책, 148쪽.

나 접근 가능한 해외 자료 10개 분야 8,548건을 분석해도 광주 폭격 관련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 송정리 미군기지의 데이브 힐은 광주 폭격을 암시하는 정보를 상부로부터 받았다고 말했으나, 5월 18일에서 5월 27일 사이에 서울의 미국대사관이 본국으로 타전한 154건의 전문 중에서 폭격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5·18조사위가 미국 국무부에 요청해서 추가로 받은 기밀문서 85건과 애틀랜타에 있는 지미 카터 도서관을 방문해서 확보한 146건의 기록철에서도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이제까지 공개된 국방정보국(DIA)과 중앙정보국(CIA) 문서에서도 관련 내용은 없었다.⁴⁸¹

또한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폭격 계획을 사전에 알고 저지한 게 사실이라면, 5·18 민주화운동 이후 한국 사회에 급격하게 확산한 반미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미국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이런 활동을 했다는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1989년에 미국 정부가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도 관련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고,⁴⁸² 위컴과 글라이스틴의 회고록에서도 폭격 계획 또는 그런 계획의 저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다른 한편, 5·18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이 진압된 직후 송정리 미군기지 관계자가 광주 거주 미국인들을 기지로 초청해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광주 폭격계획이 실제로 있었다는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있음을 확인했다. 5·18조사위는 미국 측에 당시 송정리 미군기지에 근무한 군인들의 명단과 신원을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송정리 미군기지 관계자가 언급했다는 광주폭격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조사가 있을 경우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481 5·18조사위가 지금까지 확인한 DIA 문서는 25건, CIA 문서는 256건이다.

482 United States Government Statement on the Event in Kwangju, ROK, in May 1980. 1989. 이 문서는 위컴 회고록 부록에 번역되어 있다.

나) 보안사령부 기록에 나타난 폭격설

광주시민 사이에 전파된 폭격설은 5·18민주화운동 초기에 계엄군의 폭력적 진압과 발포행위로 불안과 공포가 팽배하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등장한 ‘사건’(또는 장면)⁴⁸³을 계기로 생성된 소문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 폭격설은 실행 증후가 보이지 않으면서 시민과 시위대의 뇌리에서 점차 사라졌다. 보안사령부의 해당 기록도 폭격설을 신중하게 다루었다기보다는 도청 앞에 운집한 시민들의 불안심리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사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민 사이의 폭격설이 구체적인 근거에서 나온 것이 아님은 다음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이 폭격설이 가장 널리 회자되던 시점이 계엄사령부에서 광주 재진입작전 계획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이전인 5월 22일 무렵이라는 점이다.⁴⁸⁴ 계엄사령부에서 제1차 진압작전 계획이 논의되던 시점은 아무리 빨라도 5월 23일 08:50분 경이다. 계엄군의 진압작전 계획은 엄중한 보안 속에서 논의되었을 것인데, 5월 22일은 계획 수립 이전 시기로 광주시민들 사이에 그 계획이 전파되었을 가능성은 없다.

둘째, 당시에 생산·유통되던 수많은 주장·소문·유언비어와 비교할 때, 폭격설은 그 전파 수준이 미약했다는 점이다. 5·18조사위는 당시 시위와 대중집회를 주도했던 인물들을 상대로 탐문 조사를 했으나, 대부분 당시 시위나 대중집회 현장에서 폭격설이 회자되거나 심각하게 논의된 기억이 없다고 답변했다.

셋째, 광주에서 폭격설에 나돌기 직전인 5월 21일 야간에 광주 제1전투비행단의 전투기가 대규모로 이륙했다는 점이다. 제1전투비행단은 5월 21일 20:30~21:55 사이에 기

⁴⁸³ 앞으로 설명하게 되는 제1전투비행단의 전투기 대피 장면을 말한다.

⁴⁸⁴ 육군본부 일일역사보고: 5.23. 08:50 계엄사령관(이희성)은 2군사령관(진종채) 및 관계참모가 참석한 가운데 2군사(또는 전교사) 총정작전계획을 중심으로 소요진압작전회의를 개최하였다.〔소요진압과 그 교훈〕에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월 22일 08:27분에 개최된 계엄회의 결과를 보면 참모차장 황영시가 “광주 난동은 금일 조조 일망소탕(일망타진)코저 하였으나, 미군의 지원과 타이밍을 조정하기 위해 연기했다”는 발언이 있는데, 이 발언은 전투기 출격 등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지상군 동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검토한다.

지방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소속 전투기 34대를 다른 기지로 대피시켰다. 당시 제1전투비행단 「상황일지」를 보면 105대대의 F-5E/F 18대는 예천 기지로, 123대대의 F-5A 14대는 청주기지로 이동하는 등 총 34대의 전투기가 다른 기지로 이동했다.⁴⁸⁵

이러한 전후 사정을 고려해 볼 때, 5월 21일 야간에 제1전투비행단 소속 전투기 수십대가 갑작스럽게 다른 기지로 대피하는 장면을 시민들이 보게 되었고, 이 장면을 계엄군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전투기까지 동원한 것으로 오해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야간에 수십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전투기의 이륙은 엄청난 굉음을 일으켰으며, 이런 위압적인 장면을 지켜본 일부 시민들은 계엄 당국이 공군 전투기까지 동원하는 새로운 공격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⁴⁸⁶ 또한, 5월 21일 야간에는 시위대 차량이 제1전투비행단 기지 근처를 자주 왕래했기 때문에 시위대가 전투기의 대피 장면을 지켜보았을 개연성도 높다.

2) 진압작전 계획 수립과 전투기 출격 대기

여기서 규명되어야 할 의혹은 두 가지다. 5월 21일 이후 최소 3차례 있었던 광주 진압작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투기를 동원하는 폭격 계획이 ‘포함’되었는가 아니면 최소한 구상 단계에서 ‘검토’되었는가다. 현재까지의 조사 활동 결과, 5·18조사위는 계엄사령부 또는 군부를 실효적으로 통제할 내란집단이 진압 작전계획의 구상 또는 수립 단계에서 민간인 시위진압을 목적으로 공군 전투기 동원을 검토했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

485 제1전투비행단(1980) 「군사일지, 5.22」

486 대피하던 전투기가 광주 도심 상공을 가로지르며 비행하지는 않았으나, 이륙할 때 나오는 폭발에 가까운 굉음과 엔진의 섬광은 광주기지(송정리) 인근의 주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불길한 추측을 가능케 하는 장면이 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가) 진압작전 계획의 변경

계엄사령부가 초기에 구상한 진압작전은 대규모 ‘지상군’ 병력을 동원해서 주간에 일시에 진격하는 시가전 형태였다. 계엄사령부가 초기에 작성한 대규모 진압작전 계획의 윤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2군사령부의 지시로 전투병과교육사령부가 5월 23일 이전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교사 총정작전 계획」이 유일하다. 이 계획에 의하면 20사단, 31사단, 35사단, 3·7·11특전여단이 진압부대로 편성되어 있고, 전차 35대, APC 8대, 무장 헬기 7대 등의 화력이 동원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규모 지상군을 동원한 작전이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작전통제권을 가진 한미연합사령부가 우려를 표명하자 계엄사령부는 소수 정예부대를 동원해서 야간에 은밀하게 침투하는 ‘특공작전’으로 진압작전을 변경했다.⁴⁸⁷

5·18조사위 확인 결과, 이러한 계획 수립·변경 및 최종 실행 단계에서 육군의 헬기 지원 등 이른바 ‘공지협동작전’과 해군과 공군의 수송 지원도 당연히 포함되었으나,⁴⁸⁸ 무장한 공군 전투기의 동원이 검토된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비록 무장했으나 체계적인 군사교육을 받지 못한 민간인으로 편성된 비정규군을 제압하는 데에는 지상군 전력으로 충분하고, 시위대와 민간인이 혼재된 집단 중 시위대만 공중폭격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군사적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엄회의록에서 지휘부가 우려한 ‘엄청난’ 피해는 전차를 포함한 대규모 지상군의 투입에 따른 것이지 전투기 폭격을 전제한 것이 아니다.⁴⁸⁹

487 물론 이러한 작전 변경에 한미연합사령부의 우려만 작용한 것은 아니다. 당시 광주 상황에 대한 계엄사령부 고유의 전략적/전술적 판단도 작용했다. 이 작전을 밀고 가면 “영원히 지역감정이 응어리진다”와 같은 황영시의 발언이나 “광주에 자신이 직접 가서 설득해보겠다”고 제언한 전남 출신의 장성인 박춘식의 발언 등이 그런 상황을 시사한다.

488 작전교육참모부(1980), 「소요진압 공중지원방안 연구」.

489 단, 당시 한미연합사가 반대를 할 정도의 규모가 큰 공격계획이 작성되었다는 것은 공군의 지원을 고려했을 개연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게 한다. 그러나 현재 5·18조사위가 확보한 기록과 진술에 의하며 공군의 지원은 병력 수송, 물자 지원, 정찰비행 등에 국한되었으며 지상공격을 위한 공격비상대기나 대 비정규전 대기를 하

계엄사령부가 초기에 대규모 지상군 병력을 동원하여 광주로 재진입하려 한 정황은 당시 계엄회의록과 부대 이동 상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5월 22일 계엄회의록을 보면 황영시 부사령관이 “광주난동은 금일 일대소탕전(일망타진)코저 하였으나 미군의 지원과 타이밍을 조정하기 위해 연기했다”라는 기록이 보인다.⁴⁹⁰ 그리고 같은 날 계엄회의록에 합참의장 유병헌이 한미연합사령관 존 위컴과 회동했는데, 사태 진압부대로 1해병사단, 20·26·30사단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호의적이었다는 기록이 있다.⁴⁹¹ 요컨대 이미 광주에 파견된 3·7·11특전여단과 20사단 이외에 이른바 ‘충정부대’ 병력을 추가로 동원한 대규모 시가전을 계획했다는 뜻이다. 당시 군사일지를 보면 5월 22일에서 23일 사이에 26·30사단이 출동 대기 상태에 있었고, 해병1사단은 마산에서 목포로 이동할 계획이었다.⁴⁹²

나) 진압작전 계획에서 공군의 역할

이러한 ‘일대소탕전’ 계획에서 공군의 역할은 물자 및 병력 수송, 정찰(항공사진) 등의 지원 작전에 집중되었으며, 전투기 출격 대기 등과 같은 작전은 검토될 수준이 아니었다.⁴⁹³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

라는 내용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물론, 검토 단계에서 군사적 실행 가능성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고 이러한 확인 작업이 이 폭격 계획 수립으로 외전될 수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 추정 of 분야이지 확증의 근거는 되지 않는다.

⁴⁹⁰ 계엄사령부(1980), 「계엄회의록」, 23쪽.

⁴⁹¹ 계엄사령부(1980), 「계엄회의록」, 22~23쪽. 이 부대들은 전부 수도권에 위치한 충정부대다. 그러나 존 위컴이 대규모 지상군 동원에 호의적이었다는 기록은 소규모 특공부대를 투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는 위컴의 회고록 내용과 상충된다. 미군이 한국군의 진압작전 계획을 원칙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⁴⁹² 계엄사령부(1980), 「일일속보」.

⁴⁹³ 설령 전투기가 무장을 하고 출격대기를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작전수립 과정에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또는 광주진압작전으로 취약해진 대북경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면 5·18조사위가 규명하려는 의혹과는 무관한 사안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10전투비행단 출격대기를 다루는 부분에서 별도로 검토한다.

첫째, 이른바 ‘무장폭도’와 민간인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혼재된 상황에서 전투기를 이용한 공중폭격을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군사작전 교리와 전술적 효과 측면에서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는 점이다. 당시 상황이 다단계 군사 쿠데타의 연장이고 무장군인들이 민간인을 향해서 발포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수준이었지만,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진압작전 계획의 변경을 고려하는 시점에서 계엄사령부가 가공할 피해를 초래할 전투기의 공중폭격을 별도로 검토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둘째, 전투기 출격이 검토되었다면 육군과 공군 간 합동작전 실행을 위한 별도의 지휘부서 운영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런 조치를 실행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즉, 공군본부 예하 항공지원협조본부(ASOC)에서 운영하는 전술항공통제반(TACP)이 진압작전을 총괄하는 전투병과교육사령부에 설치된 정황이 보이지 않았다. 당시 계엄군이 사용한 작전요도에 4개소의 TACP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 요도에 기록된 TACP는 지상군이 운영하는 전술지휘본부(TACTICAL COMMAND POST)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⁴⁹⁴

셋째,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 통제하에 있는 한국공군이 광주 진압을 목적으로 전투기 동원을 요청했을 때, 미국 측이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계엄사령부가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미군과 협조를 위해서 작전을 연기했다는 계엄회의록 기록이 이 사실을 잘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공군구성군사령부의 지휘 편제상 한국공군이 훈련이 아닌 실제 작전 상황에서 전투기를 동원하기 위해서는 한미연합사령부의 미국 측 참모장이 겸직하는 공군구성군사령부 사령관(당시 미공군 중장 이반 로젠크란스)의 사전 승인 및

494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2018), 『사건기록 목록 9권』 4673쪽 이하 참조. 우리 5·18조사위의 진술조사에 응한 모든 공군 관계자들은 위 작전요도에서 사용된 TACP는 전술항공통제반이 아니라, 육군에서 운영하는 전방지휘소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5·18조사위 조사에 응한 당시 제1전투비행단 장교들은 만일 당시 계엄군이 전술항공통제반을 운영했다면 광주에 소재하는 제1전투비행단의 작전장교가 전방항공통제반(FAC: FORWARD AIR CONTROL) 요원으로 파견되어야 하는데 자신들은 그런 명령을 받은 바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한 사후 보고가 있어야 한다.⁴⁹⁵ 이런 상황에서 초기 진압작전 계획에 대해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는 한미연합사령부를 상대로 그 실질적 효과가 의심되는 전투기 동원을 협의하는 게 가능했는지 의문이다.

3) 제10전투비행단에서 전투기 출격대기

5·18조사위는 당시 제10전투비행단 소속 조종사의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술조사와 기록 검토 그리고 제10전투비행단에 대한 실지 조사를 병행했다. 5·18조사위는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10전투비행단의 전투기가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는 민간인을 공격하거나 민간인의 무장시위를 진압할 목적으로 출격대기 상태에 있었을 개연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제보자 진술의 변화

제보자 김○○은 2017년의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1차 진술에서 당시 공대지 폭탄인 MK-82를 장착한 전투기 비상대기는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 이례적이었다고 진술했다.⁴⁹⁶ 첫째, 비상대기의 목표가 북한이었다면(이른바 대북 상황) 비행대대 정보과에서 공격목표, 항법 계획 등이 담겨 밀봉된 백을 미리 반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 해안으로 접근하는 간첩선이나 무장공비 등을 저지할 목적이었다면(이른바 대간첩작전 상황) 정밀한 타격이 요구되는 로켓을 장착해야 하는데, 일반용 공대지 폭탄인 MK-82를 장착했다. 마지막으로 실무장 훈련을 가정할 수 있는데, 실무장 훈련은 최소

495 1973.3.16. 한국 공군참모총장과 주한 미공군 사령관이 서명한 “공군구성군사령부 편제와 참모 절차에 관한 한미 공군 간 협정서”에는 “요구 군사행동의 수행을 위한 모든 예, 배속 항공 및 방공 전력에 대한 작전통제”는 공군구성군사령관의 권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된 1978년 이후 주한 미7공군 사령관(공군 중장)은 공군구성군사령부의 사령관이면서 한미연합사령부의 미측 참모장이 겸직한다.

496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2018), 「사건기록 목록 2권」, 597쪽.

한 달 전에 계획되고 미리 연습탄으로 훈련을 한다는 점에서 당연히 훈련 상황도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는 비상대기의 목적을 직접 지시받은 바는 없으나, 그즈음에 광주에서 친구가 자신의 군인 아파트로 찾아와서 광주의 시위 상황을 전달해주었기 때문에 당시의 지시가 ‘광주사태’와 밀접하게 관련되었을 것으로 확신했으며, 동료 조종사들도 자신과 같은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단 자신을 포함하여 다른 조종사들은 당시 무장공비 등이 광주에 침투해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민간인 살상이 아니라 무장공비 등을 섬멸하기 위해 비상대기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국방부 5·18특조위의 1차 진술에서 김○○은 비상대기가 있던 날 오전 11시쯤 공군작전사령부 사령관 김상태가 비행단을 직접 방문하여 조종사들을 격려하고 돌아갔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진술은 비상대기가 공군지휘부에서 내려온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2017년 10월 18일의 2차 진술에서 김○○은 작전사령부 사령관을 직접 만났다는 이전 진술은 착오였으며, 101대대 대대장(김○○)으로부터 비행단을 다녀갔다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정정했다.

김○○은 2023년 1월 10일 5·18조사위 조사에 임하면서 이전의 JTBC 제보, 국방부 5·18특조위의 2차례에 걸친 진술 내용과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는 진술을 했다. 첫째, 이전 진술 조사에서 그는 공대지 폭탄을 무장하고 대기하라는 지시가 작전과에서 직접 내려왔다고 말했으나, 5·18조사위 조사에서는 작전과의 지시 여부가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정정했다. 둘째, 국방부 5·18특조위의 1차 진술에서 그는 동원 가능한 모든 전투기에 무장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으나, 5·18조사위 조사에서는 대대장의 지시로 2대의 F-5 전투기의 무장 상태를 점검했다고 진술했다.⁴⁹⁷ 셋째, 이전 조사에서 그는 당시

⁴⁹⁷ 이 부분이 무기대기태세 증강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공격대기의 항공기 무기대기태세는 2대가 공격무장(MK-82)을 장착하고 지상에서 출격대기를 하고 임무 조종사는 항공기의 무장장착을 확인한 후 비행대대에서 대기하였다고 기록과 진술이 있다.

조종사 대부분은 광주에 북한 특수부대들이 침투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목적지가 광주일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짐작했다고 진술했으나, 5·18조사위 조사에서는 당시에는 전투기 무장 상태를 점검만 했으며 무장 장착 이유를 추정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이전의 진술을 번복했다.

나) 참고인 진술의 불일치

5·18조사위는 김○○이 지목한 목격자인 당시 101대대 작전계장 이○○, 101대대의 선배 조종사 이△△, 101대대 대대장 김△△ 중 사망한 김△△를 제외하고, 이○○수와 이△△을 대상으로 진술 내용을 교차 확인했다.

5·18조사위 조사 결과, 이○○는 당시 편대장(전투기 조종사)이면서 작전계장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101대대에서 발생하는 모든 작전활동, 비상대기, 훈련 상황 등을 소상하게 알고 있었다. 상부에서 작전 지시가 오면 이○○를 거쳐서 편대로 전달되고, 작전장교가 작성하는 비상대기 일정은 이○○가 점검하고 상부에 보고한 이후 실행했다.

5·18조사위 진술 조사에서 이○○는 김○○이 목격한 이례적인 출격대기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5·18조사위 진술조사팀이 당시 상황을 김○○이 묘사한 것처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기억을 상기시키도록 노력하였으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나아가 이○○는 101비행대대는 공대공 무장뿐만 아니라 북한을 겨냥한 공격비상대기 상황이 발생하면 공대지 무장도 했기 때문에 공대지 폭탄 무장이 이례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제10전투비행단에서 전개된 각종 비상대기나 군사적 활동과 5·18민주화운동의 직접적 관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김○○이 또 다른 목격자로 지목한 이△△도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없었다. 5·18조사위 조사에서 이△△은 김○○이 자기 전투기의 무장 상태를 점검했다면, 자신도 자기 전투기의 무장 상태를 스스로 점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조종하는 전투기의 무

장 상태를 다른 조종사가 대신 점검하는 일은 상상할 수 없으며, 김○○의 진술처럼 비행기가 출격을 전제로 무장한 상태에 있었다면 자신도 분명히 점검했을 것인데, 이런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⁴⁹⁸ 5·18조사위 진술조사팀은 김○○의 진술 요지서와 녹취록 내용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이△△의 기억을 되살리려고 노력했으나 이△△은 김○○이 목격한 상황을 전혀 상기하지 못했다.

이△△은 당시 제10전투비행단에서 전투기가 평시에 공대지 폭탄인 MK-82를 무장하고 비상대기했던 기억은 없었다고 진술했다.⁴⁹⁹ 제10전투비행단에서는 평시에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한 4대의 전투기가 방공비상대기 상태에 있었는데, 간첩선이 출현해서 출격하는 경우에는 정밀한 타격이 요구되는 로켓을 장착한다고 진술했다.⁵⁰⁰ 이△△은 공군작전사령관의 방문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으며, 제10전투비행단이 충정부대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다.⁵⁰¹ 결론적으로 5·18조사위는 진술자가 스스로 지목한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자 진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다) 비상경계태세 증가와 출격대기⁵⁰²

5·18조사위는 광주 상황이 악화하면서 공군의 전투준비 태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⁴⁹⁸ 5·18조사위(2023), 「이△△ 진술요지서 및 녹취록」(2023.02.09.).

⁴⁹⁹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은 이○○와 약간 다른 내용이어서 나중에 전화로 확인했는데,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MK-82를 장착하고 대기할 수는 있으나, 평시에 상시로 그런 상태로 대기하는 경우는 없다는 뜻이라고 부언했다.

⁵⁰⁰ 구서작전은 대비정규전의 일환으로 간첩선을 격침시키기 위한 공군 전투기의 공대함 폭격작전으로 무장한 간첩선을 정밀 공격하기 위해 로켓(LAU-3)과 기관포를 장착하고 임무를 수행한다. (공대지 폭탄인 MK-82는 미장착함).

⁵⁰¹ 이△△은 2023년 4월 4일 5·18진상조사위와 통화에서 “충정”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며, 무슨 뜻인지도 모른다고 답변했다.

⁵⁰² 공군을 포함한 각군의 전투준비태세는 ‘방어준비태세’(DEFCON), ‘비상경계태세’(총무), 그리고 ‘대비정규전 작전경계태세’(진도개)로 구분된다. 그리고 공군 예규에 의해 각 부대별로 ‘경계태세’가 별도로 발령된다. 앞의 둘은 전면전 또는 국지전 상황을 전제한 것이며, 진도개는 무장공비나 간첩 등 비정규 병력의 침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태세 수준에 따른 병력 및 작전 상황은 현재까지 기밀이므로 여기서는 상술하지 않는다.

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기록을 검토했다. 당시 공군 전투비행단 전투기 비상대기는 정규전을 대비한 '방공비상대기', '공격비상대기', '응징보복비상대기', 무장공비나 간첩선의 침투 등 비정규 병력의 침투에 대비한 '대 비정규전 비상대기'를 운영했다.⁵⁰³ 방공비상대기는 공중으로 침투하는 적기에 대비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3분 이내 출격 상태이고, 공격비상대기는 지상으로 침투하는 병력에 대비하는 것으로 15분 대기가 일반적이다. 당시 제10전투비행단에서 방공비상대기는 4대의 항공기와 조종사가 별도의 비상대기실(Alert)에서 24시간 대기했고, 공격비상대기는 비행대대별로 2대씩 운영했다. 방공비상대기 전투기는 당연히 공대공 미사일과 로켓을 장착했고, 공격비상대기 전투기는 공대지 로켓과 MK-82와 같은 일반용 폭탄을 장착했다.

1980년 5월 20일을 기점으로 계엄사령부의 경계태세 증가에 따라 공군의 경계태세도 자동으로 상향되었다. 광주에 소재한 제1전투비행단은 광주지역에 진도개 둘이 발령된 직후인 5월 20일 21시 55분에 '경계태세' 2급을 발령했고, 진도개 하나가 발령된 직후인 5월 21일 8시 35분에는 경계태세 1급을 발령했다.⁵⁰⁴ 무장시위대의 침투 위협에 대해 제1전투비행단은 5월 21일 20시 30분 이후에 보유 전투기 중 34대를 타 기지로 이동하는 긴급조치를 취했다. 따라서 전국에 진도개 둘이 발령된 이후에는 제10전투비행단에도 전력 운영과 전투기 비상대기 태세의 상향 조정을 예상할 수 있으며, 김△△이 목격한 전투기 출격대기도 이런 상향 조정의 징후일 수 있다.⁵⁰⁵

1980년 당시 공군의 비상대기 전력 현황에 따르면⁵⁰⁶ 평시에는 적의 영공 침공에 대비한 방공비상대기를 운영했다. 경계태세 수준이 증가하면서 비상대기 전력이 순차적으로

503 공군본부(1983), 「공군사」 7집; 공군작전사령부(1980), 「군사일지」; 공군본부(1982), 「공군 일반 현황」

504 제1전투비행단(1980), 「군사일지」

505 여기서 제1전투비행단이 발령한 '경계태세'는 기지방어 계획의 일환이며, 전투기 비상대기를 자동으로 포함하는 개념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506 공군본부(1983), 「공군현황」 242쪽.

증가하고, 경계재강화태세 단계에서 적진에 침투하여 목표물을 타격하는 ‘공격비상대기’ 항공기에 무장장착이 시행되었다.

이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면 전국에 진도개 돌이 발령되기 전에는 평시경계태세로 분류되어 제10전투비행단에서는 방공비상대기만 운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5월 21일 오후 4시에 발령된 진도개 돌이 제10전투비행단의 경계태세 증가와 연결되어 ‘공격비상대기’ 또는 ‘대 비정규전 비상대기’를 운영했는지다. 김○○도 자신의 비상대기 날짜를 5월 21일 또는 22일로 기억하고 있으므로 그가 목격한 비상대기는 다른 조건이 없었다면 진도개 돌 발령과 연계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5·18조사위는 ‘진도개 돌’ 발령에 따라서 제10전투비행단이 조치한 특별한 지시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제10전투비행단의 군사일지에도 전국에 ‘진도개 돌’이 발령된 5월 21일 16시 이후에 비행단에서 경계태세나 전투기 비상대기를 변경해서 운영했다는 기록을 발견할 수 없었다. 상급 부대인 공군작전사령부 군사일지에는 5월 16일부터 5월 28일까지의 기록이 누락되었고, 공군참모총장의 동정일지와 회의록 등에도 관련 내용이 없어서 ‘진도개 돌’ 단계에서 어떤 지시가 상부에서 하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⁵⁰⁷ 또한 제10전투비행단 소속 작전장교로부터도 이와 관련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경계태세 증가에 따른 제10전투비행단의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차선책은 ‘진도개 돌’ 단계에서 요구되는 각 군의 조치사항이 담긴 대통령훈령 「대비정규전지침」과 5·18 당시 공군본부가 각급 부대에 하달한 「전투지휘비」의 내용을 비교·대조해서 김○○이 말하는 ‘이례적’ 출격대기가 실재했는가를 추론하는 것이다.

5·18조사위의 확인 결과, 「대비정규전지침」(대통령훈령 28호, 1981)의 ‘진도개 돌’ 발령 시 조치사항에서 공군의 전투기가 무장하고 출격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지

507 이러한 기록 누락은 사후에 의도적으로 삭제된 것일 수도 있다.

않으나, ‘진도개 하나’ 단계에서는 항공기 출동태세 강화가 포함되어 있었다.⁵⁰⁸ 이것은 평시에도 비행단별로 일정 수준의 전투기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진도개 둘 상황에서는 특별하게 무장대기 태세를 증가시킬 필요가 없다는 전술적 고려로 보인다. 당시에 진도개 하나는 광주와 전남 일원에 국한되었고, 전국에는 진도개 둘이 발령되었음을 참작하면, 최소한 군사교범과 작전지침의 수준에서 제10전투비행단이 전투기 비상대기를 증가시킬 상황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진도개 둘 발령과 함께 공군본부가 각급 부대에 하달한 「전투지휘비」에도 전투기의 증가와 무장대기 태세를 격상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이 전투지휘비는 광주 시위와 관련해서 공군본부가 예하 부대에 공식적으로 하달한 작전명령서인데,⁵⁰⁹ 전국에 ‘진도개 둘’이 발령된 이후부터 5월 25일까지 총 8회에 걸쳐서 발령되었다. 8호까지 발령된 「전투지휘비」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표 2-4-1〉 전투지휘비 발령 내용

전투지휘비	발령일자 (추정) ⁵¹⁰	제목	주요 내용
1호	5.21 야간	진도개 “둘” 발령	■ 공군작전계획 1007 및 자매 계획 1007에 의한 관련 조치
2호	5.21 야간	실제 데프콘 강화	■ 실제 데프콘 강화
3호	5.21 야간	경계태세 강화 재강조 지시	■ 자위권 발동 ■ 항공기 대피 계획 수립
4호	5.22 주간	전투지휘소 운영지침	■ 광주 일원의 소요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공군본부 전투지휘소 운영 ■ 각급 부대장은 대비정규전 및 정규전 임전태세에 만전

508 「대비정규전지침」(대통령 훈령 28호, 1981.1.1.). 현재 3급비밀로 인용이 제한된다.

509 「전투지휘비」는 5·18민주화운동 기간 중 공군본부 참모총장의 지시를 예하 부대에 임시로 하달한 작전 지시로 기존에 운영되는 작전계획과 별도로 운영된 것이다.

510 「전투지휘비」에 발령날짜가 명시되지 않아서 내용으로 추정한 것이다.

전투지휘비	발령일자 (추정) ⁵¹⁰	제목	주요 내용
5호	5.22 야간	특별 정기 공수지원 지시	■ 5.23일부터 서울-광주 간 특별 정기 공수업 무 실시
6호	5.22 야간	작전임무 수행시 강조 사항 하달	■ 5전비, 36전대 1시간 이내 출동 태세 유지 ■ 광주기지 입출항시 광주시내 상공 통과하고 5 천 피트 이상 유지
7호	5.23 주간	부대근무 지침	■ 기지경비 강화 ■ 외출/외박/휴가 지휘관 재량으로 제한 실시
8호	5.23 주간	자위권 발동	■ 자위권 발동 방법

8호까지 발령된 「전투지휘비」는 대부분 ‘폭도’의 공격에 대비한 ‘기지방어’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 공격비상대기나 대비정규전 비상대기 등 전투기 출격과 관련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전투지휘비 1호의 진도개 돌 발령에 대응한 「공군작전계획 1007」은 지상으로 침투하는 적으로부터 부대를 방어하는 작전계획으로 확인되었다. 「전투지휘비 4호」에 “대비정규전 및 정규전 임전 태세에 만전”이라는 지시 내용이 눈에 띄지만, 이 지시가 전투기 비상대기를 증가시키거나 전투기를 이용한 근접항공지원작전(CAS)⁵¹¹이나 후방차단작전(INTERDICTION) 등 지상군과 공지합동작전을 의미하는지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5·18조사위는 이 지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전투비행단 소속 작전과 장교들을 대상으로 진술 조사를 진행했으나, 진술인들은 한결같이 이 「전투지휘비」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당시 제15전투비행단에서 작전계획장교를 지낸 육○○(당시 중령)과 현○○(당시 대위)는 이 「전투지휘비」의 내용은 기지방어를 담당하고 있는 지상병력의 작전에 관한 것이며, 영공방어 작전과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했다.⁵¹²

⁵¹¹ 근접항공지원작전(Close Air Support)은 아군 지상부대와 인접한 적(표적)에 대해 공중의 항공기가 폭격 등 공격을 지원하는 전투 개념이다.

⁵¹² 5·18조사위, 「육○○ 진술요지서 및 녹취록」(2023.06.22.); 5·18조사위, 현○○ 진술요지서 및 녹취록 (2023.06.23.).

반면, 5월 21일 16시에 발령된 진도개 둘에 따라 계엄사령부가 작전 분야 주요 조치사항으로 첫째 공중 초계 임무 강화, 둘째 공중감시 강화 및 공중침투에 대비한 거부 조치 등을 지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⁵¹³ 제10전투비행단장은 ‘진도개 둘’ 발령 이후 작전 분야 주요 조치 사항으로 5월 22일 10시부터 15시경까지 F-5E 전투기에 대한 무장 장착 임무를 비행단 자체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상부에서 지시된 진도개 둘 발령에 따른 주요 조치 사항을 시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⁵¹⁴ 그러나, 제10전투비행단의 작전 분야 주요 조치 사항에 대한 기록이 전무하여 구체적인 실행 내용은 확인이 불가능했다.

4) 충청작전과 전투기 출격대기

가) 충청작전과 공군 전투비행단

5·18조사위는 수도권에 소재한 제10전투비행단이 1980년에 ‘충정부대’에 속하거나 최소한 관련 임무를 수행했음을 짐작케 하는 기록을 발견했다.⁵¹⁵ 제10전투비행단이 실제로 충청작전 임무를 맡았다면, 김○○이 목격한 F-5 전투기 무장대기는 충청작전의 하나로 수행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

5·18조사위가 확보한 1979년의 중앙정보부 보고서 「충정부대 방문결과 및 부대동향」에 의하면 중앙정보부 2국 부국장(준장 이윤희)이 매달 정기적으로 충정부대를 방문해서 충청훈련 상황, 부대장 동정 등을 점검했는데, 주력 충정부대인 수도경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제20사단, 제26사단, 제30사단 등과 함께 김포의 해병 2사단, 수원의 제10전투비행단과 성남의 제15전투비행단도 동향 파악 부대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이

513 서울중앙지검, 「김재명 진술조서(1995.04.06.), 27844쪽.

514 제10전투비행단장은 공군작전사령관 등 상급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인 지휘권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훈련을 실시할 권한이 있다.

515 중앙정보부(1979), 「충정부대 방문결과 및 부대동향」.

두 비행단이 명목상 또는 실질적으로 충정부대이거나 최소한 충정부대의 작전활동과 연계된 임무를 부여받았을 개연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3·7·11특전여단을 비롯한 충정부대가 광주에서 수행한 상무충정작전과 관련하여 제10전투비행단과 제15전투비행단에 관련 임무가 자동적으로 부여되거나 별도의 특별 지시가 하달되었을 수도 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에 광주에 투입된 육군의 충정부대처럼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충정작전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추정한다면,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그 임무를 예상할 수 있다. 첫째는 수도권에서 학생 또는 민간인의 시위가 격화되고 ‘폭동’화하면서 비행단이 처하게 되는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임무다. 원래 충정훈련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소요와 폭동진압이 목적임을 고려하면, 수도권인 수원에 소재한 제10전투비행단은 5·18 당시에 광주의 제1전투비행단이 발령한 통상적인 경계태세보다 더 체계적이고 공세적인 형태의 기지방어 훈련을 충정훈련 형태로 실시했을 것이다. 둘째는 민간인 시위가 무장 폭동이나 비정규전 형태로 비화했을 때 지상군과 합동작전을 원활하게 실행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의 제10전투비행단과 제15전투비행단을 충정부대로 편입시켜 대비정규전의 임무를 부여했을 가능성이다. 후자의 가능성을 가정하면 김○○이 목격한 출격대기는 충정 임무의 하나로 볼수 있어 광주의 시위진압과 연계될 수 있다.

5·18조사위는 제10전투비행단과 제15전투비행단 소속 지휘관, 작전장교, 조종사 등을 대상으로 충정작전 임무와 관련된 진술조사를 진행했으나,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⁵¹⁶ 진술인들은 한결같이 충정작전의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으며, 자신들이 속한 비행단이 충정작전과 관련된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 제15전투비행단의 작전과에서 근무했던 육○○과 현○○는 자신의 전투비행단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보부의 동향 보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수도권의 시위가 폭동으로 확대되어 비행단이 위협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기지방어작전의 하나로 충정작전 임무를

516 5·18조사위는 제15전투비행단 4인, 제10전투비행단 2인을 대상으로 충정작전과 관련된 진술조사를 실행했다.

부여받았을 수 있다고 진술했다.⁵¹⁷

5·18조사위는 충청작전 관련 기록 분석을 통해 제10전투비행단과 제15전투비행단과 충청작전이 어떻게 연계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1979년에서 1980년 초에 걸쳐서 육군과 공군이 합동으로 충청 임무와 관련된 작전회의를 열거나 합동훈련을 실시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앞에서 인용한 중앙정보부 보고서에 의하면 1979년에 네 차례에 걸쳐서 수도권비사령부 주최로 충청 CPX가 실시되었으나, 제10전투비행단 또는 제15전투비행단 지휘관은 참석자 명단에 없었다.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실시된 1980년 3월 6일의 충청훈련 점검 회의에 공군작전사령부나 제15전투비행단과 제10전투비행단 관계자 등 공군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또한, 육군본부가 충청훈련과 관련하여 예하 부대에 내려보낸 지시 문서에도 공군의 협조 등이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요약하자면, 당시 군부가 수립한 충청 상황과 관련된 ‘비상계획’에 공군의 역할과 임무가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나) 폭동진압 교범과 전투기 출격

육군의 충청훈련은 1974년의 「야전교범19-15(폭동진압)」을 기본교범으로 삼았다.⁵¹⁸ 따라서 광주에서의 충청작전 실행 과정에서 공군의 임무를 추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육군본부의 야전교범이 공군의 지원을 어떻게 규정했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육군의 「야전교범 19-15(폭동진압)」은 미국의 야전교범 「FM 19-15 Civil Disturbances」를 참고해서 작성되었는데, 5·18민주화운동 직후인 1981년에 수정되어 「육군야교31-15 폭동진압작전」으로, 1985년에 다시 수정되어 「육군야교35-5 소요진압작전」으로 발전하였다.

517 5·18조사위, 「육〇〇 진술요지서와 녹취록」(2023.06.22.); 5·18조사위, 「현〇〇 진술요지서와 녹취록」(2023.06.23.).

518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2018), 앞의 책, 130쪽 이하.

1981년의 수정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충청작전의 교훈이 반영된 것이고, 1985년 교범은 전술교리의 기준교범인 『작전요무령(육군야교 100-5)』에 폭동진압작전이 포함되지 않아서 수정한 것이다.⁵¹⁹

이 교범들은 공통으로 민간인의 집단행동이 초기의 비무장 시위 단계에서 기동화·무장화 단계를 거쳐서 도시계릴라로 발전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각 단계별로 공권력과 군사력의 동원에 의한 진압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소요진압작전’(1985) 교범의 민간인 소요사태 발전과정을 보면 1단계: 동기 조성, 2단계: 주동자 형성, 3단계: 선동, 4단계: 시위, 5단계: 소요, 6단계: 기동화/무장화 소요, 7단계: 도시계릴라화 등 7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여기에 대응한 군사작전의 개요 및 공권력 동원은 아래와 같다.

〈표 2-4-2〉 소요진압작전 단계별 작전 개요

단계	작전 개요	작전 책임
1단계	시위 근원 제거	관계기관/경찰
2단계	확산 방지 및 초동 진압	경찰
3단계	차단 및 봉쇄작전	군부대
4단계	타격 및 강습	군부대
5단계	특공작전	군부대
6단계	복원	군/관/민

출처: 육군본부, 1985, 『소요진압작전』, 32쪽.

1985년의 소요진압작전 교범의 이러한 단계별 작전 개요는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이 수행한 충청작전에 대한 평가와 교훈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시민들이 무장한 이후 계엄군들이 외곽으로 퇴각하기 시작한 5월 21일 이후의 상황은 3단계에서 4단계의 타격 및 강습 단계로 발전하는 단계이며, 5월 27일의 상무충정작전은 5단계 특공작전에 조

519 이 교범은 현재까지 기밀로 분류되어 열람과 인용이 제한되어 있다.

응한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소요진압작전’ 교범에서 민간인이 무장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시민’이 아닌 ‘비정규군’(게릴라), 즉 ‘적’으로 인식되고, 작전교범과 교전수칙상 화기 사용의 제한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위권 등을 명분으로 한 발포는 자동 승인되고, 무장헬기의 동원 등 공지협동작전과 공군/해군 등의 화력지원도 전개된다. 한국군의 소요진압작전 교범은 공군과 해군의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으나, 모태 교범인 미군의 『FM 31-15 OPERATION AGAINST IRREGULAR FORCES』의 부록에 근접항공지원작전(CAS)과 전장 차단(INTERDICTION)과 같은 공군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서,⁵²⁰ 이 부분을 참조하여 5·18민주화운동 당시 충청작전 계획을 수립했을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당시 계엄사령부 또는 내란집단이 광주 시민의 무장시위와 집단행동을 교범에서 규정하는 게릴라로 평가했는지, 나아가 이 시위대를 지상군이 아닌 전투기를 동원해서 섬멸해야 할 정도로 강력한 전투력을 지닌 무장집단으로 평가했는지다. 당시에 작성된 군 관련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당시 계엄사령부는 무장시위대가 게릴라로 발전할 가능성을 우려했음은 분명하다. 실제 그런 우려는 무장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선량한 시민들과 분리해서 일망타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거나, 5월 27일 재진입작전 직후 군병력을 동원하여 무등산을 중심으로 ‘잔도’ 섬멸작전을 실행한 것 등에서 직간접으로 나타난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당시에 공군참모총장이 지시한 전투지휘비 4호에는 “각급 부대장은 대비정규전 및 정규전 임전태세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도 발견된다.

그러나 계엄사령부가 최정예 엘리트 병력인 3개 특전여단과 제20사단, 제30사단, 전투병과교육사령부 등으로 구성된 계엄군의 화력이 공군전투기 지원을 요청할 정도로 무장시

520 FM 31-15의 SECTION IV의 44.

위대의 전력에 비해 열세에 있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⁵²¹ 또한 당시의 광주 시위 상황에서 무장시위대와 일반 시민 간 공간적 분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무장 전투기가 출격하여 폭격할 수 있는 전술적 여건을 형성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5월 22일 이후부터 무장시위대가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고, 5월 23일에는 항쟁지도부를 결성하는 등 시위가 더 조직화되고 있었음에도 김○○의 진술대로 F-5 전투기 무장대기가 당일 오전 10시에 시작되었다가 오후 3시경에 바로 해제된 사실을 감안하면 전투기 출격대기의 목적이 충정작전의 일환으로 광주의 시위진압과 연계되었을 가능성은 한 층 더 낮아진다. 광주의 시위 격화로 무장대기할 이유가 더 분명해졌음에도 그 반대로 해 제했기 때문이다.

5) 제3훈련비행단에서 A-37 항공기 출격 대기

제3훈련비행단에서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은 5·18민주화운동 당시에 제3훈련비행단에서 학생조종사로 근무한 김□□(당시 소위)의 증언에서 비롯되었다. 김□□는 2017년의 국방부 5·18특조위와 5·18조사위 진술 조사에서 5·18민주화운동 기간에 주기장의 A-37 항공기에 폭탄이 장착된 장면을 목격했으며, 이러한 출격 대기는 광주의 시위 진압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했다.⁵²²

여기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훈련기’로 사용하는 A-37 항공기가 실제로 무장하여 출격이 가능한 무장 체계를 갖추었는가다 둘째, 제3훈련비행단이 무장한 항공기가 출격할 수 있는 군사적 인프라를 구비했는가다. 마지막으로, 제3훈련비행단의 A-37 항공기가 무장 체계와 군사적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다면 김□□가 목격한 것은 과연 무엇

⁵²¹ 무장시위대와 계엄군 간의 화력 비교에 대해서는 5·18조사위의 용역 연구인 『무장시위대의 형성과 활동에 대한 연구』(2002) 참조.

⁵²²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2018), 『사건기록목록 1권』, 395쪽 이하. 5·18조사위(2022), 김도호 진술요지서 및 녹취록, 2022.11.24.

인가다.

5·18조사위는 위의 세 쟁점을 중심으로 조사 활동을 전개했으며, 최종적으로 제3훈련비행단에서 A-37 항공기가 실제 출격을 목적으로 무장하고 대기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한다. 5·18조사위의 판단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무장 가능 여부

5·18민주화운동 당시 제3훈련비행단은 213대대에서 총 23대의 A-37 항공기를 중등과정 훈련기로 운영했다.⁵²³ 이 항공기는 원래 공대지 공격기로 개발되었으며, 월남전 등에서 지상군 작전을 지원하는 근접항공지원(CAS) 임무를 주로 담당했다. 또한 A-37 항공기의 무장 장착은 MK-82 등과 같은 일반폭탄(General Purpose Bombs)뿐만 아니라 로켓 등의 장착도 가능했다. 우리나라는 1976년에 브라질에서 이 항공기를 도입하였는데, 도입 당시의 사진을 보면 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파이런(pylon)이 날개 아래쪽에 장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사진 참조)⁵²⁴.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A-37 항공기가 에어쇼 등에서 스모크 챔버(연막가스 분사장치)를 달고 비행한 적이 있다는 진술도 있어서 시위진압을 위해서 최루탄 살포 등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항공기는 1976년 우리나라 도입 당시부터 중등비행 훈련을 염두에 두고 활용되었으며, 최소한 1980년 5월 27일 이전에는 무장하고 비행을 하거나 관련된 훈련을 시행한 적이 없었다.⁵²⁵ A-37 항공기 전술화 계획의 실무자였던 이○○(당시 대위로 교관 조종사)은 5·18조사위의 진술조사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A-37 항공기는 폭탄 투하

⁵²³ 제3훈련비행단(1980), 「부대사」.

⁵²⁴ 파이런(Pylon) : 항공기 외부에 미사일, 폭탄, 연료탱크 등 장착물을 달기 위한 구조물.

⁵²⁵ 5·18조사위는 제3훈련비행단 군사일지, 군사일지, 군사편찬 자료 등의 관련 문헌에서 A-37이 최소한 1980년 이전까지 실무장 훈련을 했다는 기록을 발견하지 못했다.

버튼인 런처와 관련 회로가 제거된 상태로 운영되었다고 증언했다.⁵²⁶ 제보자인 김□□의 동료 학생조종사인 장○○도 5·18조사위 조사에서 A-37 항공기가 무장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출격해서 폭격을 할 수 있는 기체 여건을 갖추지는 못했다고 진술했다.⁵²⁷ 당시 제3훈련비행단 작전과장 김◇◇도 특별조사위원회 진술조사에서 “A-37 조종석의 무장발사 스위치가 있는데 무용지물이었다”라고 증언했다.⁵²⁸

여러 기록과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제3훈련비행단의 A-37 항공기가 무장하고 실제 작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은 1981년 1월 이후로 추정된다. A-37 항공기의 공격 능력이 방치된 것을 아쉽게 여긴 공군지휘부는 1980년 5월 제10전투비행단 소속의 이○○ 대위와 박○○ 대위 등을 제3훈련비행단으로 전속시켜 A-37 항공기의 무장투하 및 기총사격 능력 시뮬레이션 등을 포함하는 ‘A-37 전력화 훈련’을 실시했다. 이○○은 5·18조사위의 진술조사에서 자신이 제3훈련비행단의 A-37 전력화 계획에 참여한 시기를 1980년 5월 하순으로 증언했고,⁵²⁹ 5·18조사위도 병적기록표를 통해서 이○○이 제3훈련비행단으로 전출한 날짜가 1980년 5월 26일임을 확인했다. 이○○은 또한 자신이 A-37 전술 교범을 만든 시기를 1980년 6월 이후로 기억했다.

나) 인적 여건

제3훈련비행단의 A-37 항공기가 공대지 폭격이 가능한 무장체계를 갖췄다고 하더라도 출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훈련된 조종사와 출격을 지원하는 병력 등 인적 여건을 갖추고 있었는가도 검토해야 한다. 당시 제3훈련비행단은 중등과정 학생조종사를 대상으로 비행 훈련을 전담했으며 무장 장착 출격 훈련 등과 같은 고등과정 훈련은 교과과정에

⁵²⁶ 5·18조사위(2022), 「이○○ 진술요지서와 녹취록」(2022.10.26).

⁵²⁷ 5·18조사위(2022), 「장○○ 진술요지서와 녹취록」(2022.11.30).

⁵²⁸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2018), 「사건기록목록」 2권, 964쪽 이하.

⁵²⁹ 5·18조사위(2022), 「이○○ 진술요지서와 녹취록」(2022.10.26).

배정되지 않았다. 제3훈련비행단에서 무장 장착 훈련이 없었다는 사실은 1980년 작사규정 65-9(무장장착훈련), 65-10(무장장착경연대회) 등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부대별로 무장사들로 구성된 무장장착조를 편성하여 월 1회 이상 무장장착 훈련을 하고, 분기 1회 무장장착경연대회를 열어 우수부대를 표창하게 된다. 그런데 이 규정 제7조에는 F-4, F-5, F-86 항공기만 무장장착 훈련 및 평가 대상 기종으로 기록되어 있고, A-37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당시 제3훈련비행단 군사일지와 군사편찬자료 등의 기록에는 무장장착조 편성, 무장장착 훈련 및 무장사 자격 유지, 무장장착경연대회 참가 등의 내용이 없었다.⁵³⁰ 즉, 항공기에 폭탄과 기관포 등의 무장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무장장착조가 편성되어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한데, 제3훈련비행단은 이런 실무장 훈련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3훈련비행단에 무장한 A-37 항공기를 조종해서 실제 출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종사가 배치되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학생조종사 훈련을 담당하는 교관 조종사들은 전투비행단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입하였기에 폭탄 투하 등의 임무에 투입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출격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조종사라 할지라도 사전에 훈련하지 않았던 항공기에 실무장을 하고 출격하여 폭격이나 기총소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당시 제3훈련비행단 교관 조종사의 대부분이 실무장한 A-37 항공기로 작전 임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⁵³¹

530 전투비행단의 무장대대는 화력제어정비중대, 무장정비중대, 통신정비중대, 탄약정비중대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전투기가 무장을 하고 출격해서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탄약 관리에서 무장장착, 그리고 출격 이후 비행 과정을 통제하는 지원인력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제3훈련비행단에서 실무장을 운영했다면 당연히 유사조직이 운영되었을 것이다. 5·18조사위는 당시 제3훈련비행단의 무장대대 세부편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입수하지 못했다.

531 조종사들이 기종을 전환하여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회 이상의 훈련 비행이 필요하다는 게 예비역 전투기 조종사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당시 우리나라 공군에는 A-37로 작전을 수행한 조종사가 전혀 없었다.

다) 폭탄 보유 여부

국방부 5·18특조위가 확인한 것처럼 당시 제3훈련비행단 내에는 다수의 탄약고가 존재했다. 1974년에는 ‘무장탄약정비반’이, 1975년에는 ‘탄약정비중대’가 신설되어 탄약 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제3훈련비행단이 보유한 항공탄약은 1975년 한미양해각서로 체결된 ‘목장계획’⁵³²에 따라 미공군이 일본, 태국, 필리핀에서 보유하던 항공탄약을 단계별로 이동하여 한국 공군기지 내 매그넘(미공군) 탄약고에 분산하여 보관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군이 고유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탄약이 아니다.⁵³³ 당시 ‘동맹국 전쟁 예비물자’(WRSA: War Reserve Stock for Allies), 즉, 미군이 보관하고 있는 탄약 사용과 관련된 여타의 협약이나 양해각서에도 미군 보유 탄약을 한국군이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당시 제3훈련비행단 무장대대장이었던 김○○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진술에서 “3훈련비행단에 500파운드 폭탄은 없었으며, 미국의 WRSA 탄약이 매그넘 탄약고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이 탄약은 한국군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증언했다.⁵³⁴

라) 김○○ 제보

김○○는 5·18조사위 조사에서 자신은 A-37 항공기에 폭탄이 장착된 것을 분명히 목격했으며, 이 사실을 자신의 동료인 장○○과 이○○도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은 5·18조사위 조사에서 김○○가 본 것을 자신도 직접 목격했는지 또는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되었는지를 확신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⁵³⁵ 이○○도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

532 비행단의 비축탄약고를 통상 “목장”이라고 부른다.

533 공군구성군사령부(1983), 「사령부 역사」.

534 5·18조사위는 이 증언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김○○과 연락을 취했으나 병환 중으로 추가 진술 확보가 불가능했다.

535 5·18조사위(2022), 「장○○ 진술요지서와 녹취록」(2022.11.30.).

사에서 김도호의 증언을 명료하게 지지하지 못했다.⁵³⁶ 김○○도 5·18조사위 조사에서 자신은 당시 A-37 항공기의 무장대기가 광주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들은 적이 없으나,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광주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추론 수준의 주장으로 일관했다. 여기에 추가하여 김○○는 자신이 방송에 제보하게 된 본래 취지는 A-37 항공기가 무장했다는 사실보다는 전투기의 무장대기는 공군의 자발적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군부 실세의 압력에 의한 것임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⁵³⁷

김○○는 5·18조사위 조사에서 자신이 본 것이 공대지용 폭탄이라는 것을 주변의 무장사와 병사들을 통해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했으나, 5·18조사위는 김○○의 증언을 교차 확인해 줄 무장사와 병사를 찾을 수 없었다. 당시 제3훈련비행단에 근무했던 무장사들과 교관 조종사들은 한결같이 A-37 항공기에 공대지 폭탄을 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⁵³⁸

5·18조사위는 김○○가 허위 증언할 이유가 없다면 김○○가 폭탄이라고 본 A-37 항공기 밑에 “주렁주렁 달려 있었던”⁵³⁹ 물체는 실무장 폭탄으로 혼동될 수 있는 다른 물체라고 판단한다. 예를 들면, 항공기 공개 행사 때 외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장착한 터미 폭탄(Dummy Bomb, 가짜 폭탄)이나 광주와 인근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간인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장착한 가스 발사 장비(스모크 챔버) 등이 그것이다. 제3훈련비행단 훈련기가 5·18 기간에 광주 지역을 이른바 ‘빼끼 비행’했다는 증언도 있고,⁵⁴⁰ 광주의 시위

536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2018), 「사건기록목록 3권」, 1305쪽 이하.

537 김○○는 5·18조사위에 제공한 자신의 회고록 초고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나의 증언내용의 핵심은 장착을 할 수 있다 없다는 문제보다는 당시에 폭도라고 명명이 되었던 그들을 향해 공군이 상부의 지시대로 폭격을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문제였다. ‘전시도 아닌 상태에서, 비무장 민간인을, 폭도라는 이유로 상부의 폭격지시가 있었더라도 우리 공군은 폭격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런 내용의 방송 증언을 하고 싶었고, 실제로 그렇게 증언을 했다.’

538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2018), 「사건기록목록」 3권, 1462쪽 이하.

539 김○○ 제공, 회고록 초안 (5·18조사위 「사건기록목록」 2022.11.24).

540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2018), 앞의 책, 117쪽.

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3훈련비행단 소속, 장갑차를 제공한 사실⁵⁴¹ 등이 있는 것으로 보면 상부의 지시로 제3훈련비행단의 A-37 훈련비행기가 시위진압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기했을 개연성도 존재한다.

6) 공군참모총장의 비상대기 지시

2017년의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는 당시 공군참모총장의 전투기 비상대기 지시에 대해서 “광주를 폭격하려는 목적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선박을 이용하여 해상으로 도주하려는 시위대를 소탕하려는 작전 지시이거나 적어도 광주 진압작전과 밀접한 연관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았다.⁵⁴² 5·18조사위는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의 결론이 대체로 타당하다고 평가한다.

여러 정황 증거를 기초로 판단할 때, 윤자중의 이 비상대기 지시는 광주 시위 상황과 관련되어 다음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윤자중 공군참모총장이 신군부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시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공군참모총장이 이런 지시를 내린 시점은 계엄군이 외곽으로 철수하면서 전국에 걸쳐서 ‘진도개 돌’이 발령되고 국방부 장관실에서 신군부를 포함한 육해공군 지휘부가 대책 회의를 개최하기 직전이다. 이 대책 회의에 참석을 통보받은 공군참모총장은 시민의 무장 등 광주의 시위 격화와 관련하여 공군만의 고유의 대책을 미리 심사숙고했을 것이고,⁵⁴³ 공군 차원의 대책으로 공군본부 예하 모든 부대에 전투 준비 태세 강화와 광주에 주둔하고 있는 제1전투비행단에 특별한 비상조치를 주문했을

⁵⁴¹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2018), 앞의 책, 116쪽.

⁵⁴²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2018), 앞의 책, 135쪽.

⁵⁴³ 기록에 의하면 윤자중은 5월 21일 11시 정호영 특전사령관이 이희성 계엄사령관, 국방장관 및 3군 총장에게 ‘광주상황’을 보고하면서 대책을 논의할 때 참석했고, 오후 2시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국방장관에게 보고할 때 배석했다. 따라서 5.21 오전 이후 급박하게 전개된 광주의 시위 상황과 이에 대한 계엄사령부 또는 내란집단의 대응전략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개연성이 매우 높다. 전자의 지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진도개 돌’ 발령 직후 1호부터 8호까지 하달된 「전투지휘비」이고, 후자는 계엄군의 야간 작전을 후방에서 지원하기 위한 비상대기 지시로 추정된다.⁵⁴⁴ 이런 조치를 취한 참모총장은 공군의 선제적인 조치사항을 국방부 대책 회의에서 보고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둘째, 조명탄 투하 장치를 장착한 C-123 수송기와 복좌 F-5 전투기의 대기 등 대간첩선 격침을 위한 구서대기 작전을 광주 소재 제1전투비행단에만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구서대기 작전 지시는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대북정보 또는 상부 지시에 의해 시행되거나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무월광 시기⁵⁴⁵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치이다. 서해안과 남해안에 대한 구서대기를 위해서는 수원 소재 제10전투비행단과 군산 소재 제111전투비행대대(미공군부대 내 주둔)에도 유사한 지시가 하달될 것이다. 그런데도 공군 참모총장이 수원 소재 제10전투비행단과 군산 소재 제111전투비행대대에는 지시하지 않고 광주 소재 제1전투비행단에만 구서대기를 지시한 것은 통상과는 다른 특별한 목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상기한 제1전투비행단 소속 전직 작전 분야 조종사들의 진술처럼 대간첩작전을 강조하려는 취지라면 전국적으로 비상대기를 지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광주지역에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것은 이 지시가 광주와 그 인근 지역에서 전개된 일련의 사태와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⁵⁴⁶

셋째, 광주의 시위 상황이 악화되면서 주변의 도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면서 계엄사령부가 무장시위대를 제압하거나 위협하기 위해 공군에 조명장치가 부착된 C-123 수송기와 복좌 F-5 전투기를 요청함에 따라 대기했을 가능성도 있다. 5·18조사위가 확인

⁵⁴⁴ 육군본부의 교범인 ‘소요진압작전’(1985.12.30. 개정)은 ‘야간소요진압작전에 조명탄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해군의 ‘해안경비 태세강화(작상전 제470호)’에서는 시위대의 해상탈주 방지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⁵⁴⁵ 무월광 시기는 그믐달 시기 이전부터 초승달 시기 이후까지 달이 뜨지 않는 시기로 군 작전에서 북한의 침투가 가능한 시기로 판단하여 대비태세를 강화하게 된다.

⁵⁴⁶ 윤자중은 1995년 검찰 조사에서 5·18 당시에 북한의 특이동향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서울지방검찰청, 「윤자중 피의자신문조서」(1995.12.20.), 102501쪽.

한 관련 기록에는 계엄사령부의 「광주사태에 따른 사후조치사항」(1980)에 “주모자 및 폭도 도주로 추적 정보 입수, 즉각 소탕 태세 유지 (공중기동타격)”이라는 기록이 있다. 또한, 제1전투비행단의 공중작전과장인 명영남은 “공작과장으로 근무 시 제1비행단장의 지시에 따라 전교사령관(소준열)에게 공군의 대기 작전에 대하여 대면보고한 사실이 있는데, 5·18 민주화운동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일이었다”라고⁵⁴⁷ 진술한 바가 있다.

넷째, 광주에 대한 계엄군의 진압작전이 예상됨에 따라 일부 무장시위대가 해상으로 도주를 시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엄당국의 요청에 따라 공군과 해군이 합동으로 구서작전 시행을 준비했을 가능성도 있다. 당시 계엄사령부의 「계엄상황일지(1980)」에는 1980년 5월 22일 상황에 대해서 “소수의 폭도가 선박을 이용하여 목포항으로 도강한다는 정보에 따라 해군 309편대가 긴급 출항, 항만에 경비 중”이라는 기록이 있다. 이는 일부 무장시위대가 선박을 이용하여 해상으로 도주할 것을 예상하고 해군과 공군이 합동작전으로 불법적으로 출항하는 선박을 나포하거나 격침시키기 위한 작전의 일환일 수 있다.

다섯째, 당시 무장시위대가 북한과 해상 접촉할 가능성을 우려한 계엄당국이 차단작전 시행을 공군에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보안사령부가 작성한 「사태수습 시 고려사항」(1980)에는 ‘광주사태 포로 등의 탈주 방지대책 긴급요’라는 제목 하에 “광주 및 인접사태 지역에 대한 진압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탈출구를 찾는 폭도들이 해안으로 탈출, 북괴에 잠입·동조하거나 서울지역 등 타지에 잠입했던 불순분자나 주동분자들이 서울 등 타도시로 개별 탈출·재집결하여 제2의 광주사태를 야기할 것이 우려된다는 상황판단 하에 해군과 해경 합동 해상봉쇄작전으로 해상 탈주를 방지하도록 지시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547 국방부5·18특별조사위원회(2018), 「사건기록목록」, 4577쪽. 진술 당시 공군의 대기 작전의 세부 내용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

7) 에어 스트라이크

이 의혹은 당시 제20사단 61연대에서 중대장으로 근무한 박○○(당시 대위)가 2017년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처음 제기한 것이다.

5·18조사위는 박○○가 목격한 작전회의의 정체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관련 정보가 극히 제한되어서 불가능했다. 박○○는 자신이 목격했다는 작전회의가 어떤 성격의 회의였는지 상술하지 못했으며, 자신의 진술을 확인해줄 수 있는 참고인을 지목하지 못했다. 5·18조사위는 당시 전투병과교육사령부에서 열린 작전회의 목록과 회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록도 찾을 수 없었다. 박○○의 신분이 대위인 것을 고려하면 자신이 목격했다는 작전회의는 고위급이 참석하는 비밀회의가 아닌 현장 지휘관이나 초급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작전브리핑 정도로 예상되는데, 수시로 열린 이런 회의 내용을 기록한 자료가 남아있을 가능성도 커 보이지 않았다.

5·18조사위는 계엄사령부, 2군사령부, 전투병과교육사령부, 특전사령부, 제31사단 등의 전투상보, 작전일지 등에서 에어 스트라이크(또는 공중폭격)이라는 용어들이 등장하는지 살펴봤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당시 20사단 작전참모를 지낸 함덕선과 2군사령부 작전참모였던 김준봉은 국방부 5·18특조위 조사에서 공군의 공격적 지원 형태로 에어 스트라이크를 논의한 바 없다고 진술했다.

5·18조사위는 진술조사에 응한 당시 공군 조종사와 작전장교 전원에게 에어 스트라이크라는 용어에 관해서 질문했는데, 항공기에서 지상에 있는 목표물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공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라고 답변했다. 반면, 당시 제7공수여단 35대대 대대장을 지낸 김○○은 5·18조사위 진술조사에서 공중타격이 자주 요구되는 특전사 작전에서는 에어 스트라이크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라고 답변했다.⁵⁴⁸

5·18조사위는 박○○가 특별히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고, 에어 스트라이크 지점 중 한

548 5·18조사위, 「김○○ 진술조서 및 녹취록」(2023.03.13).

곳이 자신의 외가 주변이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등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진술했으므로 박〇〇가 목격한 작전회의에서 에어 스트라이크가 언급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당시 지상군이 전투기 등 공군의 화력을 요청하였다거나 공군과 합동작전을 전개했다고 단정하기에는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남는다. 특히, 무장한 전투기와 같은 공군 화력이 지원되기 위해서는 공군의 작전사령부나 제1전투비행단의 협조로 지상군이 전술항공통제반(TACP)을 구성해야 하는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당시 전투교육사령부가 전술항공통제반을 운영한 기록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더 그렇다.

8) 대공포판 보급 의혹

5·18진상조사위는 군사작전 중에 항공기에서 지상의 아군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대공포판(對空布板, SIGNAL PANEL)⁵⁴⁹이 5월 25일에 진압작전 참가 부대에 대량으로 보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5·18진상조사위는 대공포판이 대량으로 지급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당시 전투병과교육사령부 군수처, 51군지원단, 20사단 군수참모 등 병참 및 군수물자 담당 참고인을 대상으로 진술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진술인이 대공포판의 보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대공포판의 지급 경위에 대해서도 명료하게 진술하지 못했다. 당시 전투병과교육사령부에서 작전계획장교로 근무한 노〇〇(계급 중령)은 518진상조사위 진술조사에서 대공포판의 용도가 공군의 지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공포판의 추가 지급을 전투기 공중폭격 계획과 연결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진술했다.⁵⁵⁰

549 앞의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에 의하면 대공포판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었다. “지상부대 또는 함정과 비행 중인 우군항공기 간에 신호용으로 사용되는 포판. 대공포판 부호(PANEL CODE)는 대공포판을 시각신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정한 기호.”

550 5·18조사위, 「노〇〇 진술요지서 및 녹취록」(2023.04.15.).

5·18조사위는 당시 공군의 여러 전투비행단 소속 조종사 및 작전 분야 장교들에게 대공포탄의 용도를 질문했으나 역시 명료하게 답변하지 못했다. 518진상조사위 조사팀이 진술인들에게 대공포탄의 실물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생소하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대공포탄이 항공기에서 지상의 아군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면 공군 조종사들이 대공포탄을 육안으로 정확히 식별하고 그 용도를 먼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은 계엄군에게 보급된 대공포탄의 실제 용도와 관련해서 여러 의문점을 자아낸다.

제15전투비행단에서 조종사 겸 작전장교로 근무한 육○○과 류○○은 518진상조사위 진술조사에서 높은 고도에서 빠른 속도로 작전을 수행하는 전투기에서 대공포탄으로 지상의 아군을 식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전투기에 의한 폭격 작전에서 지상에 있는 아군의 식별은 TACP의 전방관측장교(FAC)의 무전 지시나 별도의 전자 신호에 의존한다고 답변했다.⁵⁵¹ 대공포탄에 의한 피아 식별은 저고도에서 저속으로 운행하는 헬기나 수송용 또는 구조용 항공기 정도에서 가능하다는 게 518진상조사위 진술조사에 응한 공군 관계자의 일치된 견해였다. 또한 대공포탄은 주로 월남전에서 헬기에 아군의 위치를 알리기 위한 신호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월남전 참전장교의 증언도 있다.⁵⁵²

이상의 진술조사를 토대로 판단해볼 때, 당시 계엄군에게 지급된 대공포탄의 용도는 공군과의 합동작전을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는 진압작전에 참여한 각급 지상군 부대 간 피아 식별을 원활하게 하거나 헬기의 공중공격으로부터 지상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특히 5월 24일 10시 호남고속도로 톨게이트 근처에서 기갑학교와 31사단 병력 간 그리고 같은 날 14시에 송암동에서 제11특전여단과 전교사 보병학교 교도대 병력 간

551 5·18조사위(2023), 「육△△ 진술요지서 및 녹취록」(2023.06.22); 「류△△ 진술요지서 및 녹취록」(2023.06.21).

552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E&nNewsNumb=202201100047> 기사 내용에 글쓴이가 베트남과 접전시 부상병을 구하기 위해서 스모그를 터트리려고 하자 “안 돼. 스모그는 안 돼. 박격포가 날라와. 포탄을 퍼. 포탄을!”이라고 중대장(당시 장세동 대위)이 지시했다는 내용이 있다.

오인 교전으로 많은 군인이 희생되었다. 이로 인해 계엄사령부는 아군 간 상호 식별을 위한 장비 보급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5월 25일에 대공포관이 일시에 추가 지급된 주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오인 교전을 직접 목격한 공수부대원도 5·18조사위 진술조사에서 비슷한 맥락의 진술을 했다. 제11특전여단 본부 통신지원대 소속이었던 문○○(당시 하사)은 우리 5·18조사위 조사에서 당시의 오인 교전은 아군식별 장비인 대공포관이 제때 지급되지 못해서 생긴 불상사라고 지적했다.⁵⁵³ 또한, ‘광주사태’ 당시의 각종 진압작전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한 육군본부의 보고서 「광주사태분석(작전교육 위주)」은 상기 두 건의 오인 교전은 대공포관 미사용으로 부대 간 피아 식별 노력이 부족한 이유가 컸다고 분석하였으며, 대공포관이 5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보급했다고 기록했다.⁵⁵⁴

나. 공군의 군사적 지원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과는 별개로, 당시 공군은 지상군의 광주 진압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군사적 조치를 취했다. 5·18조사위가 당시 군기록에서 확인한 공군의 군사적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수 지원

1980년 5월 21일부터 5월 29일까지 공군은 수송기와 헬기(C-123, C-54, VC-54, UH-1B, HS-748)를 이용하여 총 인원 2,657명, 화물 424,300LBS, 의약품 및 전단지 18톤을 수송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⁵⁵⁵ 그 세부 내용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
⁵⁵³ 5·18조사위, 「문태정 녹취록」(2021.3.25.)

⁵⁵⁴ 육군본부(1980), 「광주사태 분석(작전교육 위주)」 이 보고서는 1980년 7월 작전교육참모부가 작성했다.

⁵⁵⁵ 공군 역사기록관리단 제공, 「5·18 광주소요사태 상황전파자료」, 1091-1098쪽.

특히, 1980년 5월 당시 공군 수송기의 공수 지원 관련하여 C-123 수송기는 전월 85시간 대비 182시간을, C-54 수송기는 전월 35시간 대비 78시간을 특별공수에 이용하는 등 적극적인 공수지원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된다.⁵⁵⁶ 김해에 주둔하던 제5전투비행단 소속 수송기들을 성남 주둔 제15전투비행단으로 이동하고 35전대장(준장 이부식)의 지휘 아래 수송기 조종사들이 공중수송 관련 수송기별 인원 배분, 물품 중량 배분 등의 특별공수 임무를 지원하였다.⁵⁵⁷

〈표 2-4-3〉 공군의 공수 지원

일자	임무지역	전력	지원내용	요청부대
5.21	성남-광주	2/C-123	장교 46명(선무공작), 최루탄 940Kg	육본 작전처
		12/C-123, 6/C-54	화물 5,600LBS(짚차 7대 포함), 장교 48명, 병사 1,643명	
5.22	대구-광주	3/C-123	화물 224,000LBS, 장교 65명, 보안사 요원 23명	육본 상황실(육본 작전과장)
	청주-광주	2/C-123, 3/C-54		
	서울-광주	1/C-54		
5.23	광주-전주	1/UH-1B	보안사 요원 15명	육본 작전처
	서울-광주	1/C-54, 2/C-123	화물 115,500LBS, 기자단 24명	
	김해-광주	7/C-123		
	서울-광주	1/C-54	통신장비	
5.24	김해-광주	3/C-54, 1/C-123	화물 27,000LBS, 기자단 34명	육본 작전처
5.25	서울-광주	3/VC-54, 1/C-123, /HS-748	미기재(대통령 광주 방문)	
	김해-광주	2/C-123		
	서울-광주	LOG AIR	공군참모총장 하사품(사과, 음료)	
5.26	서울-광주	3/C-123, 2/C-54	문공부 전단지 100만장(6.5톤), 육군 의약품 13,500LBS, 대통령 담화문 5.5톤	보안부대

⁵⁵⁶ 국방부 5·18민주화운동특별조사위원회, 전투기출격대기조사 참고자료(2018.2월), 3954쪽

⁵⁵⁷ 국방부 5·18민주화운동특별조사위원회, 전투기출격대기조사 참고자료(2018.2월), 6277쪽

일자	임무지역	전력	지원내용	요청부대
5.27	서울-광주	1/C-123, 1/C-54	식량/피복 7,000LBS, 마대/피복 12,500LBS	
	군산-광주	1/C-123	무장병력 30명 교대, 영현 1구	
	김해-광주	-	통신기재 2,800LBS	
	미기재	1/C-123	국방부 기자단 27명, 보안사요원 18명	
	미기재	1/C-54	의약품 외 6톤	
	미기재	LOG AIR	문공부 전단 50만부	
	서울-광주-서울	1/VC-118	부총리 외 차관급 10명	
5.28	광주-서울	LOG AIR	병력 28명, 영현 1구	
	용산-광주-용산	1/UH-1H	보안사 참모장, 공군보안부대장 외 6명	
	서울-광주	1/VC-118	부총리 일행 20명	
1/C-54		전단 50만부		
5.29	용산-광주	1/UH-1H	문교장관 및 병무청장 일행	
	광주-서울	1/C-54	환자 25명, 군의관, 간호원 7명	
종합		36 / C-123 22 / C-54 3 / UH-1B/H 2 / HS-748 2 / VC-118	인원 : 2,612명 화물 : 424,300LBS 의약품/전단지 : 18톤	

• 5월 23일부터 서울(성남 소재 공군 제15전투비행단)~광주(공군 제1전투비행단) 간 특별정기공수 수송기 운항을 일일 2회(09:00, 13:30) 실시하였으나, 세부 내역은 확인 불가함.

2) 항공사진 지원

공군은 1980년 5월 24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지역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계엄군에 제공한 정황이 『소요진압과 그 교훈』⁵⁵⁸, 『공본 참모회의록(1980. 1.~1980. 6.)』⁵⁵⁹, 『일일

⁵⁵⁸ 육군본부, 『소요진압과 그 교훈』, 332쪽 : “1980. 5. 25. 육군본부에서 공군에 의뢰하여 광주 일원에 대한 항공사진을 촬영 후 현지 부대에 지원케 하였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

⁵⁵⁹ 공군본부, 『공본 참모회의록(1980년 1월 ~ 1980년 6월)』, 1400쪽 : 정보참모의 업무보고 내용 중 '광주지역 및

역사보고』⁵⁶⁰, 서울지검 수사기록⁵⁶¹ 등 관련 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력시위 비행 지원

공군 참모총장이 하달한 「전투지휘비 제6호」에는 공군 제5전술공수비행단과 제36전대가 공군 제1전투비행단 이착륙시에 광주 시가지 상공을 통과하라는 지시가 언급되어 있다. 통상 공군 항공기는 비행사고 방지를 위해 시가지를 우회하여 이착륙을 실시하는데, 전투지휘비에 광주 시가지 상공을 통과하라는 지시는 공군의 위력시위 비행을 보여줌으로써 광주 시내에서 활동하는 시민군과 민간인에게 공중폭격과 같은 공포를 주기 위한 행동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투기를 개조한 정찰기를 이용한 항공사진은 목표 지역내 적의 동향 파악이나 시설물 확인 또는 폭격 후 전과 확인 등을 촬영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고도로 비행하게 된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항공사진을 촬영한 정찰기(RF-5A/B)는 광주 시내를 정밀 촬영하기 위해서는 2,000피트(약600미터)로 비행하였기 때문에 지상의 시민군과 민간인들은 공중폭격을 시도하는 위협한 장면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

또한, 육군에서 작성한 「소요진압과 그 교훈」 보고서에는 ‘계엄사령부는 작전 실시간에 공군기의 무력시위 지원을 위해 제1비행단장과 전투교육사령관간에 협조지원 체제를 조

.....
 목표지역 항공사진 촬영지원’이 기재되어 있음.

560 육군기록정보관리단 제공, 『일일역사보고』 4~6권, 925쪽 : 1980. 5. 26. 08:23 회의내용 중 ‘교훈의 하나로써 사건 발생시(최초)부터 항공사진을 계속 촬영분석 하여야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음에도 사건 8일 후에야 촬영함은 부당함.’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기재되어 있다; 2018. 1. 3.자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보고(각종 계엄회의 개최 결과 정리).

561 서울지검 피의자신문조서(이희성), 106710쪽. 이희성이 ‘1980. 5. 26. 14:00경 정호용(5·18 당시 특전사령관)이 나를 찾아와 편의복 및 가발과 충격용 수류탄, 항공사진을 구하러 광주에서 올라왔는데 편의복과 가발은 전투한 보안사령관의 지원을 받아 획득했으니 육본에서 충격용 수류탄과 항공사진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래서 항공사진은 정보참모부장에게, 충격용 수류탄은 병기감에게 각 지원해 주라고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치'하라고 기록되어 있으며,⁵⁶² 「계엄사령부 작전조치사항」에는 '광주지역 충정작전 시행 시 위력과시를 위한 공군 전투 비행기의 광주상공 비행을 전교사령관이 필요시 제1비행단장과 협조 지원 가능토록 조치'라고 기재되어 있다.⁵⁶³

4) 군수지원

제1전투비행단은 광주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한 계엄군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군수 지원을 실행하였다. 1980년 5월 22일부터 28일까지 비행단에 주둔한 육군 제20사단 60연대 및 3개 특전여단 소속 장병들에게 급식과 숙영을 지원하였고, 주둔지 주변에 대한 방역 활동 및 병원 진료 등도 실시하였으며, 각종 복지시설을 이용토록 하였다.⁵⁶⁴ 여기에 특전사령부 CP가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 구성됨에 따라 부단장실은 특전사령관실로, 행정관실장실은 제3공수여단장실로, 주임상사실은 제11공수여단장실로, 군수전대 품질관리실은 제7공수여단장실로 이용되었다.⁵⁶⁵

3. 소결

이상 전투기 출격 대기 관련 8개 쟁점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5·18 조사위는 아래와 같은 개연성을 확인하였으나, 의혹의 사실 여부를 최종적으로 입증해줄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① 한국인들 사이의 '폭격설'은 근거가 희박한 소문이지만, 광주에 거주했던 미국인들 사이의 폭격설은 변경되지 않는 기억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억과 관련된 원천

⁵⁶² 육군본부(1980), 『소요진압과 그 교훈』.

⁵⁶³ 육군 군사연구소, 『계엄사령부 작전조치사항』 936쪽 : 제2군 작상전 제525호에 기록.

⁵⁶⁴ 1980.5.22. 육군 제20사단 60연대 및 91포대 병력에 숙영시설과 침구류 9개 품목 1,555개, 생활필수품 및 육군 부족품목 방탄복 외 4종을 지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⁵⁶⁵ 제1전비단사 제1집(1946~1986), 1980년 2/4분기 제1비 군사편찬자료, 공군일지(1980년) 등에 기록.

정보 제공자로 지목되는 미군 관계자들의 증언과 미국 측 정보기관(DIA/CIA)의 기밀문서 등의 공개가 요청된다.

② 당시 계엄군 또는 내란집단이 진압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순전히 민간인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전투기를 동원하려는 시도 또는 그런 발상을 했을 가능성은 현존하는 기록과 증언에 비추어 희박하다.

③ 공군지휘부가 제1전투비행단에 무장한 전투기와 야간작전용 수송기를 추가로 비상대기시킨 사실은 확인되지만, 5·18조사위는 그 목적이 민간인의 시위를 직접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④ 제10전투비행단에 2대의 전투기를 비상대기시킨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광주에서 무장시위가 더 격화되는 시점에서 비상대기가 곧바로 해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추가 증거가 없는 한, 이 비상대기의 목적이 민간인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⑤ 제3훈련비행단의 설치목적과 해당 비행단의 군사적 인프라 여건에 비추어 제3훈련비행단의 훈련기인 A-37 항공기가 광주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무장하고 대기했을 가능성은 없다.

⑥ 전투기 출격과 관련하여 추가 의혹으로 제기된 에어 스트라이크 언급은 전투기 출격대기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대공포탄 지급은 전투기 출격대기와 관련이 없다.

제3장

민간인 희생과 피해



제1절 민간인 사망

1. 조사 배경

5·18민주화운동 당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5·18조사위 조사 결과에 의하면 1980년 5월 18일에서 5월 27일 사이에 광주와 그 인근 지역(전라북도 포함)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민간인은 166명이다. 그러나 사망이 확실하지만, 현재까지 그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행방불명자가 73명에 달하며, 5·18민주화운동 당시에 입은 부상이 직·간접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도 113명¹⁾에 이른다.

5월 20일 계엄군의 광주역 집단발포와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또 계엄군의 외곽 봉쇄 작전 기간 중에도 비무장 민간인들이 다수 희생되었다. 이 중에는 계엄군의 조준사격으로 희생당한 사례도 있고, 확인 사살, 임의처형 당한 경우도 있다. 계엄군의 총격과 구타에 의한 희생자 중에는 항거 능력이 없는 장애인, 아동과 미성년자, 여성, 노인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처럼 결코 계엄군의 자위권 행사의 결과로 볼 수 없는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5·18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여러 의혹과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당시 사망자 166명의 사인, 사망 경위,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의 맥락을 공식적으로 조사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5·18민주화운동 기간 중 발생한 민간인 사망사건에 대한 5·18조사위의 조사는 아래 4개의 하위 과제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 보상기준

첫째, 5·18민주화운동 기간에 희생된 민간인 사망자의 규모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당시 166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가가 민간인 사망자 규모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서 독립된 보고서로 발표한 적이 없다.

둘째, 현재까지 확인된 모든 사망자의 개별적인 사망 경위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망 경위는 개별사망자와 관련된 사건, 사망을 초래한 물리적 수단, 사망 후 시신 처리 과정 등을 포함한다.

셋째, 민간인 사망사건을 날짜별, 장소별, 사건별로 유형화해서 민간인 사망사건이 계엄군의 작전 활동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넷째, 민간인 사망과 관련하여 공식 기록과 관행적 주장에서 발견되는 많은 오류를 정정하여 민간인 희생과 관련된 의혹과 오해를 불식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안)는 2023년 12월 15일 제109차 전원위원회에서 ‘진상규명’ 의견으로 상정되어 전원합의로 원안의결되었다.²

2. 조사 결과

가. 민간인 사망 규모와 사망 경위

1) 사망자 규모

5·18민주화운동 기간 민간인 사망자에 대한 정부의 집계 및 공식발표는 시기와 기간에 따라 상이하거나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 이 보고서에 대해서 이종현, 이동욱, 차기환위원은 추가의견을 제출하였다. 위원의 추가의견에 대해서는 별책에 수록된 해당사건 진상규명조사결과보고서 해당 쪽 참조.

〈표 3-1-1〉 정부·기관 발표 민간인 사망자 수

시기	기관	사망자 수	출처
1980. 5. 31.	계엄사령부	144명	조선일보(1980.6.1.)
1980. 6. 5.	계엄사령부	148명	동아일보(1980.6.5.)
1980. 7. 22.	이희성 계엄사령관	162명	외신기자모임보도(1980.7.23.)
1985. 6. 7.	윤성민 국방부장관	164명	국회국방위보고
1988. 7. 5.	오자복 국방부장관	163명	국회대정부질문
1995. 7. 18.	5·18관련 사건수사 결과	166명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 검찰부

위 〈표 3-1-1〉의 정부·기관의 발표를 보면, 민간인 사망자의 숫자가 상이한데, 이는 군인 또는 경찰 신분 사망자, 5·18민주화운동과 무관한 민간인 사망자 등을 각 발표 시기마다 포함하거나 제외했기 때문이다.

5·18조사위는 각 정부·기관발표를 토대로 1988년 7월 5일 정부가 발표한 민간인 사망자 163명 중 5·18과 관련이 없는 박귀주를 제외한 162명에, 1988년 추가신고 기간에 확인된 1명(임동규), 1990년 ‘5·18보상법’제정 이후 희생자로 추가 인정받은 3명(박문규, 양희영, 이세중) 등 4명을 포함하여 총 166명을 5·18민주화운동 기간 민간인 사망자로 특정하였다.

2) 사망자별 사망 경위

5·18조사위는 군 기록, 검시 기록, 병원 등의 기록, 수사기록, 공공기록, 광주시 보상신청 관련 기록 등 사망자 관련 기록의 존재 여부 및 소재, 생산 이력을 추적하여 사망 기록의 변천 과정을 조사하고, 민간인 사망자 166명에 대해 개별 사망 경위, 주요 사인, 사망 일시 및 장소, 관련 작전부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5·18조사위는 사망자별 사망 경위와 관련하여, 5월 19일부터 총상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점, 계엄군이 ‘확인사살, 임의처형’까지 자행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1980

년 검찰의 광주사태 변사체 검시보고서(이하 「검시보고」)의 카빈 사망자 26명의 사인을 재확인하여 1명 외에 25명을 M16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판단(추정 포함)하였고, 「검시보고」상 사망장소가 불상으로 구분된 47명 중 43명의 사망 장소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전체 사망자 166명 중 7명은 목격자 진술 등 참고할 기록이 부재하고, 43년이 경과한 시간적 한계 등으로 사망장소 또는 사망일자 등 사망 경위를 확인하지 못했다.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3-1-2〉 5·18민주화운동 기간 사망자 166명 개요

순	1995년 검찰수사 보고 ³				5·18조사위 조사 결과					구분
	이름	피해 또는 사망		사인	이름	나이	사망 (선행사인 발생)		주요사인	
		일자	장소				일자	장소(추정포함)		
1	이세중	'80년	검시 대상 아님, 추후 인정자		이세중	20	5.18.	진북대학교 내	둔력에 의한 손상	진라북도
2	김경철	5.19.	국군광주통합병원	타박사	김경철	23	5.19.	제일은행 앞	둔력에 의한 손상	5.19. 광주시내
3	김인부	5.19.	구 진남양조장 공터	타박사	김인부	34	5.19.	구 진남양조장 공터	총상	
4	김경환	5.20.	전대병원 로타리	타박사	김경환	19	5.20.	전대병원 로타리	총상	
5	박기현	5.20.	대인동 시민관 부근	타박사	박기현	14	5.20.	대인동 동문다리	둔력에 의한 손상	
6	정지영	5.23.	국군광주통합병원	타박사	정지영	30	5.20.	전남도청 일대	총상	
7	홍성규	5.21.	불상	타박사	홍성규	32	5.20.	광주 시내	둔력에 의한 손상	
8	김만두	5.20.	광주역(추정)	총상 (카빈)	김만두	44	5.20.	광주역 일대	총상	
9	김재수	5.21.	불상	총상 (M16)	김재수	25	5.20.	광주역 일대	총상	5.20. 광주시내 (광주역 등)
10	김재화	5.20.	신역 광장 앞	총상 (카빈)	김재화	25	5.20.	광주역 광장	총상	
11	박세근	5.21.	불상	총상 (M16)	박세근	35	5.20.	광주역 일대	총상	
12	불상44	5.21.	불상	총상 (카빈)	신동남	29	5.20.	광주역 일대	총상	
13	이부일	5.20.	전대병원	총상 (M16)	이부일	27	5.20.	광주역 일대	총상(다발성)	

3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44116, 「수사보고(광주형정 관련 사망자 통계 등 첨부)」, 서울지검 「5·18사건 수사기록」 제22권, 30456~30479쪽.

순	1995년 검찰수사 보고 ³				5·18조사위 조사 결과				구분	
	이름	피해 또는 사망		사인	이름	나이	사망 (선행사인 발생)			주요사인
		일자	장소				일자	장소(추정포함)		
14	허 봉	5.21.	도청 앞	자상	허 봉	23	5.20.	광주역 일대	둔력에 의한 손상 5.20. 광주시내 (광주역 등)	
15	김광석	5.21.	금남로	총상 (M16)	김광석	25	5.21.	도청 앞 금남로 상	총상(다발성)	
16	불상117	5.21.	불상	총상 (M16)	김기운	17	5.21.	진남도청 일대	총상	
17	김복만	5.21.	불상	총상 (M16)	김복만	27	5.21.	진남도청 일대	총상(다발성)	
18	김상구	5.21.	진대병원	총상 (M16)	김상구	21	5.21.	노동청 인근	총상	
19	김영철	5.21.	제일은행 앞	총상 (M16)	김영철	23	5.21.	제일은행 앞	총상	
20	김완봉	5.21.	도청 앞	총상 (M16)	김완봉	13	5.21.	진남도청 일대	총상	
21	김용표	5.21.	광주여고 앞	총상 (M16)	김용표	22	5.21.	향군회관 사거리	총상	
22	불상122	5.21.	불상	총상(카빈)	김재영	17	5.21.	진남도청 일대	총상	
23	불상114	5.24.- 5.25.	불상	총상 (M16)	김준동	16	5.21.	진남도청 일대	총상	
24	불상119	5.21.	불상	총상 (카빈)	김중식	41	5.21.	진남도청 일대	총상	
25	나안주	5.21.	불상	총상 (M16)	나안주	27	5.21.	진남도청 일대	총상(다발성) 5.21. 진남도청 일대	

순	1995년 검찰수사 보고 ³				5·18조사위 조사 결과				구분	
	이름	피해 또는 사망		사인	이름	나이	사망 (선행사인 발생)			주요사인
		일자	장소				일자	장소(추정포함)		
26	나홍수	5.21.	전대병원	총상 (카빈)	나홍수	33	5.21.	전남도청 일대	총상	
27	민청진	5.21.	전대병원	총상 (카빈)	민청진	18	5.21.	전남도청 일대	총상	
28	박인배	5.21.	한일은행 부근	총상 (M16)	박인배	17	5.21.	한일은행 인근	총상	
29	안병태	5.21.	대인동 중앙예식장 부근	총상 (M16)	안병태	23	5.21.	광주은행 사거리	총상(다발성)	
30	윤재식	5.21.	불상	총상 (M16)	윤재식	30	5.21.	전남도청 일대	총상	
31	윤형근	5.21.	전대병원	총상 (카빈)	윤형근	21	5.21.	전남도청 일대	총상	
32	이경호	5.21.	불상	총상 (카빈)	이경호	19	5.21.	전남도청 일대	총상	
33	이재술	5.21.	불상	총상 (기타)	이재술	41	5.21.	전일빌딩 앞	총상	
34	임균수	5.21.	도청 인근 Y다실 앞	총상 (M16)	임균수	20	5.21.	금남로1가 Y다실앞	총상	
35	장하일	5.21.	불상	총상 (M16)	장하일	38	5.21.	금남로1가	총상	
36	전영진	5.21.	기독교병원	총상 (M16)	전영진	18	5.21.	노동청 인근	총상	
37	정찬용	5.21.	기독교병원	총상 (M16)	정찬용	28	5.21.	전남도청 일대	총상	

5.21.
전남도청 일대

순	1995년 검찰수사 보고 ³				5·18조사위 조사 결과					구분
	이름	피해 또는 사망		사인	이름	나이	사망 (선행사인 발생)		주요사인	
		일자	장소				일자	장소(추정포함)		
38	정학근	5.21.	불상	총상 (카빈)	정학근	29	5.21.	전남도청 일대	총상	
39	조대훈	5.21.	도청 앞	총상 (M16)	조대훈	33	5.21.	전남도청 일대	총상	
40	조사천	5.21.	광주기독병원	총상 (카빈)	조사천	33	5.21.	진일빌딩 앞	총상	
41	채이병	5.21.	전대병원	총상 (M16)	채이병	25	5.21.	전남도청 일대	총상	
42	최승희	5.21.	전대병원	총상 (카빈)	최승희	19	5.21.	전남도청 일대	총상	
43	한영길	5.23.	불상	총상 (기타)	한영길	29	5.21.	전남도청 일대	총상	5.21.
44	김신호:	'80년 검시 대상 아님, 추후 인정자		총상 (M16)	김신호	44	5.21.	무등맨션 7층	총상	전남도청 일대
45	심동선	5.21.	진주다실 옥상	총상 (M16)	심동선	30	5.21.	진주다실 옥상	총상	
46	윤성호	5.21.	무등극장 앞	총상 (카빈)	윤성호	29	5.21.	충장로1가 광주전 회사	총상	
47	이성자	5.21.	동구청 앞	총상 (카빈)	이성자	14	5.21.	홍안과 앞	총상	
48	조남신	5.21.	무등극장 부근	총상 (M16)	조남신	52	5.21.	충장로1가 광주전 회사	총상	
49	진정태:	'80년 검시 대상 아님, 추후 인정자		총상 (M16)	진정태	25	5.21.	대의동 자택 2층	총상	
50	황호정	5.21.	자택	총상 (M16)	황호정	62	5.21.	도심빌딩 5층	총상	

순	1995년 검찰수사 보고 ³				5·18조사위 조사 결과				구분	
	이름	피해 또는 사망		사인	이름	나이	사망 (선행사인 발생)			주요사인
		일자	장소				일자	장소(추정포함)		
51	기남용	5.21.	도청 앞	타박사	기남용	22	5.21.	진남도청 일대	둔력에 의한 손상	5.21. 진남도청 일대
52	박민환	5.21.	불상	총상 (M16)	박민환	24	5.21.	진남도청 일대	둔력에 의한 손상	
53	박창권	5.21.	도청 앞	총상 (M16)	박창권	14	5.21.	가톨릭센터 인근	둔력에 의한 손상	
54	양인섭	5.21.	불상	타박사	양인섭	33	5.21.	진남도청 일대	둔력에 의한 손상	
55	홍인표	5.21.	광천주조장 앞	타박사	홍인표	19	5.21.	광천주조장 앞	둔력에 의한 손상	5.21. 전남대 인근
56	안두환	5.21.	전대 정문 앞	타박사	안두환	44	5.21.	전남대학교 앞	둔력에 의한 손상	
57	이성귀	5.24.	불상	총상 (카빈)	이성귀	16	5.21.	전남대학교 정문	총상	
58	장방환	5.21.	광주교도소 부근	타박사	장방환	58	5.21.	전남대학교 앞	둔력에 의한 손상	
59	최미애	5.21.	중흥동 주거지앞(전대앞)	총상 (M16)	최미애	23	5.21.	평화시장 입구	총상	5.22. 국군광주통합병원 일대 (광주~충정간)
60	김영선	5.22.	내방동 자택 앞	총상 (M16)	김영선	25	5.22.	내방동 자택 앞 골목	총상	
61	김재평	5.22.	국군광주통합병원 앞	총상 (M16)	김재평	29	5.22.	내방동 친척집 2층	총상	
62	양희남	5.22.	국군광주통합병원 앞	총상 (카빈)	양희남	30	5.22.	화정동 수미다실 앞	총상	
63	이매실	5.22.	쌍춘동 자택 안방	총상 (M16)	이매실	68	5.22.	쌍춘동 자택 안방	총상(다발성)	총상
64	임정식	5.22.	내방동	총상 (카빈)	임정식	18	5.22.	내방동 인촌약방 뒤	총상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순	1995년 검찰수사 보고 ³				5·18조사위 조사 결과				구분	
	이름	피해 또는 사망		사인	이름	나이	사망 (선행사인 발생)			주요사인
		일자	장소				일자	장소(추정포함)		
65	조규영	5.22.	내방동 한성아파트 뒤	총상 (기타)	조규영	38	5.22.	한성아파트 옆 담	총상	5.22. 국군광주통합병 원 일대 (광주~송정간)
66	함광수	5.22.	내방동 자택 옥상	총상 (M16)	함광수	16	5.22.	내방동 자택 옥상	총상	
67	고규석	5.21.	광주교도소 부근	총상 (카빈)	고규석	39	5.21.	호남고속도로 상	총상	
68	김인태	5.20.	광주교도소 부근	타박사	김인태	47	5.21.	광주교도소 인근	둔력에 의한 손상	5.21.~5.23. 광주교도소 인근 (광주~담양간)
69	민병열	5.21.	광주교도소 부근	자상	민병열	31	5.21.	교도소 내 창고	둔력에 의한 손상	
70	임은택	5.21.	광주교도소 부근	총상 (카빈)	임은택	35	5.21.	호남고속도로 상	총상(다발성)	
71	김병연	5.22.	교도소 부근 두암동 보리밭	총상 (기타)	김병연	18	5.22.	동일실고 인근 밭	총상	
72	노경운	5.22.	불상	총상 (카빈)	노경운	19	5.22.	광주교도소 인근	총상(다발성)	
73	서만오	5.22.	문화동사무소 부근	총상 (카빈)	서만오	24	5.22.	문화동사무소 앞	총상	
74	서종덕	5.22.	광주교도소 앞 노상	총상 (M16)	서종덕	17	5.22.	광주교도소 인근	총상	
75	이명진	5.22.	광주교도소 앞 노상	총상 (M16)	이명진	36	5.22.	광주교도소 인근	총상	
76	이용충	5.22.	광주교도소 앞 노상	총상 (M16)	이용충	26	5.22.	광주교도소 인근	총상(다발성)	
77	최열락	5.22.	불상	총상 (M16)	최열락	26	5.22.	광주교도소 인근	총상(다발성)	

순	1995년 검찰수사 보고 ³				5·18조사위 조사 결과				구분	
	이름	피해 또는 사망		사인	이름	나이	사망 (선행사인 발생)			주요사인
		일자	장소				일자	장소(추정포함)		
78	안병섭	5.23.	광주교도소 부근	총상 (M16)	안병섭	22	5.23.	광주교도소 인근	총상	5.21.~5.23. 광주교도소 인근 (광주~담양간) 5.21.~5.23. 학동, 지원동 주남마을 등 (광주~화순간)
79	김부열	5.27.	지원동 뒷산	총상 (M16)	김부열	17	5.21.	부영산 상봉	총상	
80	김호중	5.22.	진대병원	총상 (기타)	김호중	25	5.21.	남광주버스정류장	총상(다발성)	
81	박금희	5.21.	수미다실 앞	총상 (M16)	박금희	16	5.21.	지원동 1번버스 중점	총상	
82	진정호	5.21.	불상	총상 (M16)	진정호	55	5.21.	승의중학교 인근	총상	
83	고영자	5.23.	지원동	총상 (M16)	고영자	22	5.23.	소태동 채석장 앞	총상(다발성)	
84	불상4	5.23.	지원동	총상 (M16)	김남석	19	5.23.	소태동 채석장 앞	총상(다발성)	
85	김윤수	5.23.	지원동	총상 (M16)	김윤수	27	5.23.	소태동 채석장 앞	총상(다발성)	
86	불상53	5.22.	불상	총상 (M16)	김재형	18	5.23.	소태동 채석장 앞	총상(다발성)	
87	김 정	5.21.	불상	총상 (M16)	김 정	20	5.23.	소태동 채석장 앞	총상(다발성)	
88	김춘례	5.23.	지원동	총상 (M16)	김춘례	18	5.23.	소태동 채석장 앞	총상(다발성)	
89	김현규	5.22.	검시조서상 '지원 동?'으로 표시	총상 (M16)	김현규	19	5.23.	소태동 채석장 앞	총상(다발성)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순	1995년 검찰수사 보고 ³				5·18조사위 조사 결과					구분
	이름	피해 또는 사망		사인	이름	나이	사망 (선행사인 발생)		주요사인	
		일자	장소				일자	장소(추정포함)		
90	박현숙	5.23.	지원동	총상 (M16)	박현숙	16	5.23.	소태동 채석장 앞	총상(다발성)	5.21.~5.23. 학동, 지원동 주남마을 등 (광주~화순간)
91	백대환	5.23.	지원동	총상 (M16)	백대환	18	5.23.	소태동 채석장 앞	총상(다발성)	
92	손우레	5.22.	불상	총상 (M16), 자상	손우레	19	5.23.	소태동 채석장 앞	총상(다발성)	
93	황호걸	5.23.	지원동	총상 (M16)	황호걸	19	5.23.	소태동 채석장 앞	총상(다발성)	
94	장재철	5.23.	지원동 소재 벽돌공장 부근	총상 (M16)	장재철	22	5.23.	소태동 벽돌공장 앞	총상(다발성)	
95	불상164	5.21.-5.22.	불상	총상 (M16)	양민석	19	5.23.	주남마을 뒷산	총상(다발성)	
96	불상163	5.21.-5.22.	불상	총상 (M16)	채수길	21	5.23.	주남마을 뒷산	총상(다발성)	
97	박병현	5.23.	효덕동 노대부락 앞 산	총상(기타)	박병현	23	5.23.	노대부리지 인근	총상	
98	신종철	5.23.	지원동 용산이발관 앞	총상 (M16)	신종철	43	5.23.	지원동 용산이발관	총상	
99	김상태	5.23.	금호고등학교 앞	총상 (M16)	김상태	30	5.23.	금호고등학교 앞	총상	
100	오정순	5.23.	운암동 자택 화장실	총상 (M16)	오정순	52	5.23.	운암동 자택	총상	
101	조행권	5.27.	불상	총상 (M16)	조행권	37	5.23.	대창주유소 앞	총상(다발성)	

순	1995년 검찰수사 보고 ³				5·18조사위 조사 결과				구분	
	이름	피해 또는 사망		사인	이름	나이	사망 (선행사인 발생)			주요사인
		일자	장소				일자	장소(추정포함)		
102	강정배	5.24.	운암동 소재 광주변전소 앞	총상(M16)	강정배	28	5.24.	광주변전소 정문	총상	5.23.~5.24. 광주변전소 인근 (광주~장성간)
103	강복원	5.21.	송암동 남선연탄 앞	총상(M16)	강복원	20	5.21.	남선연탄 앞	총상	
104	박인천	5.21.	도청	총상(카빈)	박인천	26	5.21.	남선연탄 앞	총상	
105	문민규	5.21.	불상	총상(카빈)	양창근	15	5.21.	남선연탄 앞	총상	
106	양희영: '80년 검시 대상 아님, 추후 인정자				양희영	18	5.21.	송암동 인근	미상	
107	임종인	5.22.	불상	총상(M16)	임종인	21	5.21.	남선연탄 앞	총상	5.21.~5.24. 송암동 효덕동 등 (광주~나주간)
108	박재영	5.22.	효친 인성고 앞	총상(M16)	박재영	25	5.22.	한두재	총상	
109	왕태경	5.22.	대단위 연탄공장 앞	총상(M16)	왕태경	26	5.22.	남선연탄 앞	총상	
110	권근립	5.24.	송하동 자택 앞	총상(M16)	권근립	25	5.24.	송암동 묘법사 앞	총상(다발성)	
111	김승후	5.24.	송하동 자택 앞	총상(M16)	김승후	18	5.24.	송암동 묘법사 앞	총상(다발성)	
112	불상8	5.24.	태평동 또는 효덕동	타박사	김종철	18	5.24.	효덕동	자상	
113	김평용	5.24.	불상	총상(기타)	김평용	16	5.24.	효덕초등학교 앞	총상(다발성)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순		1995년 검찰수사 보고 ³				5·18조사위 조사 결과				구분			
		이름		피해 또는 사망		사인	이름	나이	사망 (선행사인 발생)			주요사인	
				일자	장소				일자				장소(추정포함)
128	불상11	5.22.	목포시 상락동	차량사	불상11	23	5.22.	목포시 상락동	차량사	차량사			
129	임동규	'80년	검시 대상 아님, 추후 인정자	차량사	임동규	51	5.22.	나주 오일장 인근	차량사	차량사	5.21.~5.23. 차량사 등		
130	황성술	5.22.	광산군 동곡면 하산교 밑	차량사	황성술	18	5.22.	하산교 밑 평동천	차량사	차량사			
131	김홍기	5.23.	불상	차량사	김홍기	61	5.23.	풍향동~대인동	차량사	차량사			
132	박문규	'80년	검시 대상 아님, 추후 인정자	인정자	박문규	18	5.23.	영암 도포 성산리	둔력에 의한 손상	둔력에 의한 손상			
133	김정선	5.20.	불상	타박사	김정선	21	5.21.	미상	미상	둔력에 의한 손상			
134	김함옥	5.21.	불상	총상(M16)	김함옥	16	5.21.	미상	미상	총상			
135	불상112	5.21.	불상	총상(M16)	불상112	40	5.21.	미상	미상	총상(다발성)	5.21.~5.23. 장소미상		
136	정민구	5.22.	불상	총상(M16)	정민구	25	5.21.	미상	미상	총상			
137	전재서	5.23.	국군광주통합병원	타박사	전재서	26	5.22.	미상	미상	총상			
138	박종길	5.23.	국군광주통합병원	총상(가빈)	박종길	23	5.23.	미상	미상	총상(다발성)			
139	김귀환	5.23.	해남 우슬치 고개	총상(M16)	김귀환	19	5.23.	해남 우슬치 고개	총상	총상	5.23. 해남		
140	박영천	5.23.	해남 학동리	총상(M16)	박영천	27	5.23.	해남 상등리 도로	총상(다발성)	총상(다발성)			
141	김동수	5.27.	도청 앞	총상(M16)	김동수	21	5.27.	회의실 2층 무대 뒤	총상	총상	5.27. 전남도청 내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순	1995년 검찰수사 보고 ³				5·18조사위 조사 결과				구분	
	이름	피해 또는 사망		사인	이름	나이	사망 (선행사인 발생)			주요사인
		일자	장소				일자	장소(추정포함)		
142	문용동	5.27.	도청 구내	총상 (M16)	문용동	26	5.27.	전남도청 후관동 인근	총상(다발성)	5.27. 진남도청 내
143	문재학	5.27.	도청 앞	총상 (M16)	문재학	15	5.27.	전남도청 본관 2층	총상(다발성)	
144	민병대	5.27.	도청 앞	총상 (M16)	민병대	20	5.27.	진남도청 구내	총상	
145	박병규	5.27.	불상	총상 (M16)	박병규	19	5.27.	도경민원실~후관동	총상(다발성)	
146	박성용	5.27.	도청 앞	총상 (M16)	박성용	17	5.27.	진남도청 구내	총상(다발성)	
147	박진홍	5.27.	불상	총상 (M16)	박진홍	21	5.27.	도경민원실 외부 계단	총상	
148	서호빈	5.27.	불상	총상 (M16)	서호빈	19	5.27.	전남도청 후관동 인근	총상(다발성)	
149	안종필	5.27.	도청 앞	총상 (M16)	안종필	15	5.27.	전남도청 본관 2층	총상(다발성)	
150	유동운	5.27.	도청 앞	총상 (M16)	유동운	19	5.27.	진남도청 구내	총상	
151	윤개원	5.27.	도청 앞	자상	윤상원	28	5.27.	회의실 2층 강당	총상	
152	이강수	5.27.	도청 앞	총상 (M16)	이강수	19	5.27.	진남도청 구내	총상	
153	이정연	5.27.	도청 구내	총상(기타)	이정연	20	5.27.	도경민원실 외부 계단	총상(다발성)	
154	홍순권	5.27.	불상	총상 (M16)	홍순권	19	5.27.	도경민원실 외부 계단	총상(다발성)	

순	1995년 검찰수사 보고 ³				5·18조사위 조사 결과				구분		
	이름	피해 또는 사망		사인	이름	나이	사망 (선행사인 발생)		주요사인		
		일자	장소				일자	장소(추정포함)			
155	불상123	5.24.	불상	총상 (M16)	권호영	16	5.27.	시외버스공용터미널 인근	총상(다발성)		
156	김성근	5.27.	무진중학교 우체통 골목	총상 (M16)	김성근	23	5.27.	무진중학교 인근	총상(다발성)		
157	김종연	5.27.	도청 앞	총상 (M16)	김종연	18	5.27.	YMCA 앞	총상(다발성)		5.27. 전남도청 인근
158	박용준	5.27.	YWCA	총상 (M16), 자상	박용준	23	5.27.	YWCA 회관	총상		
159	염행열	5.27.	불상	총상 (M16)	염행열	16	5.27.	대의동파출소 인근	총상		
160	유영선	5.27.	YWCA	총상 (M16)	유영선	27	5.27.	YWCA 회관	총상		
161	양동신	5.27.	광주고등학교 건물 옥상	총상 (M16)	양동신	44	5.27.	광주고등학교	총상		
162	오세현	5.27.	동명동 유한양행 부근	총상 (M16)	오세현	24	5.27.	동명동 유한양행	총상		5.27. 계림동 일대
163	이금재	5.27.	전남여고 앞	총상(카빈)	이금재	28	5.27.	전남여고 뒤편	총상		
164	조일기	5.26.	불상	타박사	조일기	31	5.27.	광주고등학교 앞	총상		5.27. 전남대 인근
165	김명숙	5.27.	전대정문 앞	총상 (M16)	김명숙	14	5.27.	전남대학교 앞	총상		
166	불상91	5.27.	효덕동 뒷산	총상(기타)	불상91	4	미상	미상	총상		일시장소 미상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나. 민간인 사망 실태

1) 개요

가) 날짜별·장소별 분포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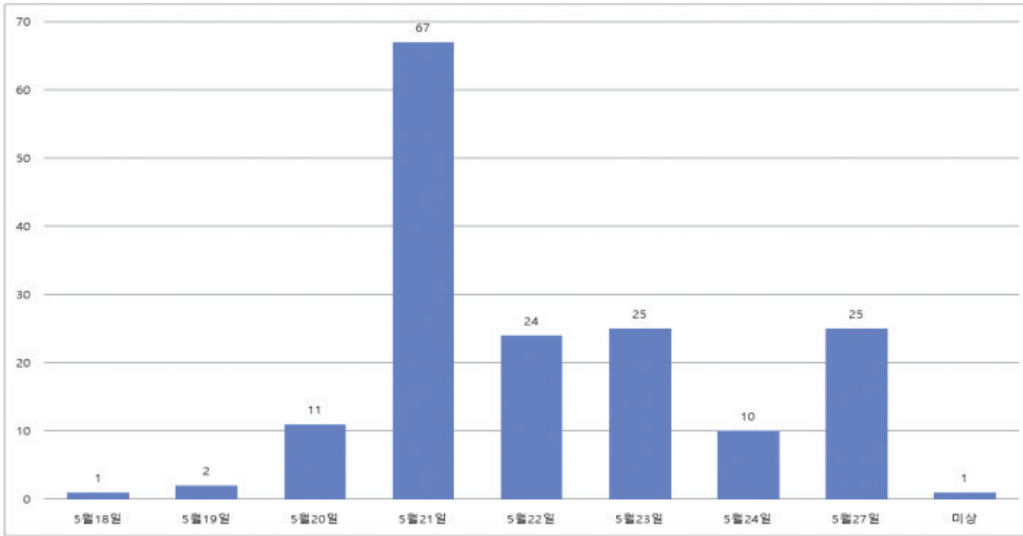
5·18민주화운동 시작 첫날인 5월 18일 1명이 사망하고, 5월 19일에 2명이 사망했다. 도청 앞 집단발포가 있었던 5월 21일 67명이 사망해 전체 사망자의 40.4%를 차지했다. 상무충정작전이 실시된 5월 27일에 25명(15.1%), 외곽봉쇄작전이 본격화된 5월 22일 24명(14.5%), 5월 23일 25명(15.1%), 광주역 등에서 발포가 있었던 5월 20일 11명(6.6%), 5월 24일 10명(6%), 날짜 미상 1명(0.6%)이 사망했다.

전남도청과 금남로 일대에서 가장 많은 62명(37.4%)이 희생되었다. 광주-화순간 외곽도로봉쇄 작전 등으로 무차별 총격과 부상자에 대한 임의처형이 벌어졌던 지원동(주남마을)에서 21명(12.7%), 계엄군 간 오인교전 끝에 임의처형 등이 발생한 송암·효덕에서 20명(12.1%), 광주-담양 간 외곽봉쇄지역인 광주교도소와 기타 광주 시내에서 각 12명(7.2%)이 희생되었고, 광주역 인근과 국군광주통합병원 인근에서 각 7명(4.2%), 해남·목포 등 전남지역 6명(3.6%), 전남대학교 인근 5명(3%), 광주변전소 4명(2.4%), 시외버스공용터미널 2명(1.2%), 전라북도 1명(0.6%), 그리고 사망 일자 또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7명(4.2%)이 희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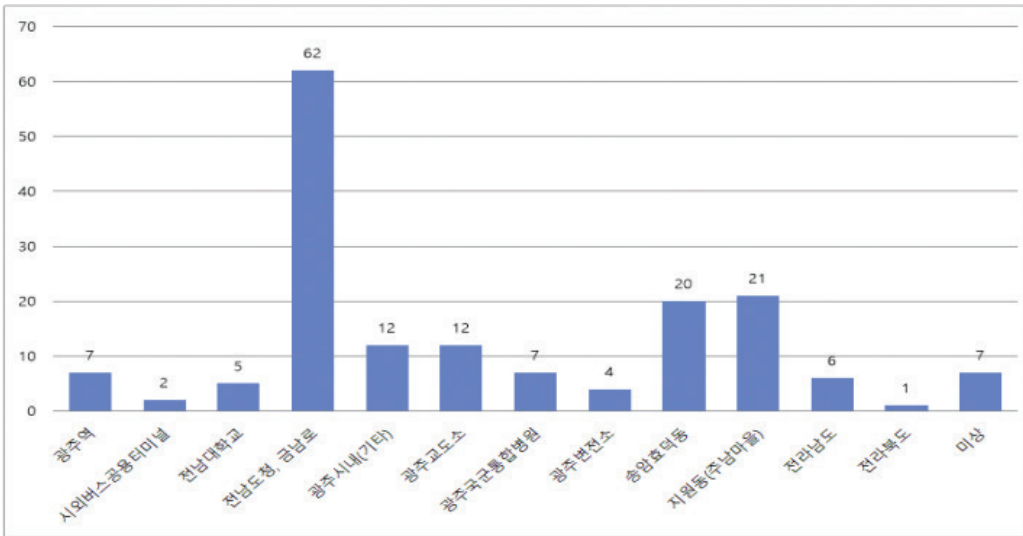
4 5·18조사위가 정의하는 “사망 날짜”는 사망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즉 ‘선행사인’이 발생한 날짜를 가리킨다. 예컨대 윤성호는 5월 21일 오후에 두부 총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다가 5. 27.에 사망하였으므로 실제 사망일은 5월 27일이다. 그러나 선행사인 발생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5월 21일 사망자’로 구분한다. 실제 사망일을 기준으로 5월 27일 사망자로 분류하게 되면 ‘광주재진입’중 사망자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3-1-3〉 사망(선행사인) 날짜·장소별 사망자 분포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7.	미상	총계
광주 시내	광주역			7							7
	시외버스공용터미널					1			1		2
	전남대학교				4				1		5
광주 시내	전남도청, 금남로		1	2	41				18		62
	그 외		1	2	1	2	1		5		12
	계		2	11	46	3	1		25		88
광주 외곽	광주교도소				4	7	1				12
	국군광주통합병원					7					7
	광주변전소						3	1			4
	송암효덕동				7	4		9			20
	지원동(주남마을)				5		16				21
	계				16	18	20	10			64
전라남도					1	2	3				6
전라북도		1									1
미상					4	1	1			1	7
총계		1	2	11	67	24	25	10	25	1	166



〈그림 3-1-1〉 사망(선행사인) 날짜별 사망자 분포



〈그림 3-1-2〉 사망(선행사인) 장소별 사망자 분포

나) 성별·연령별·직업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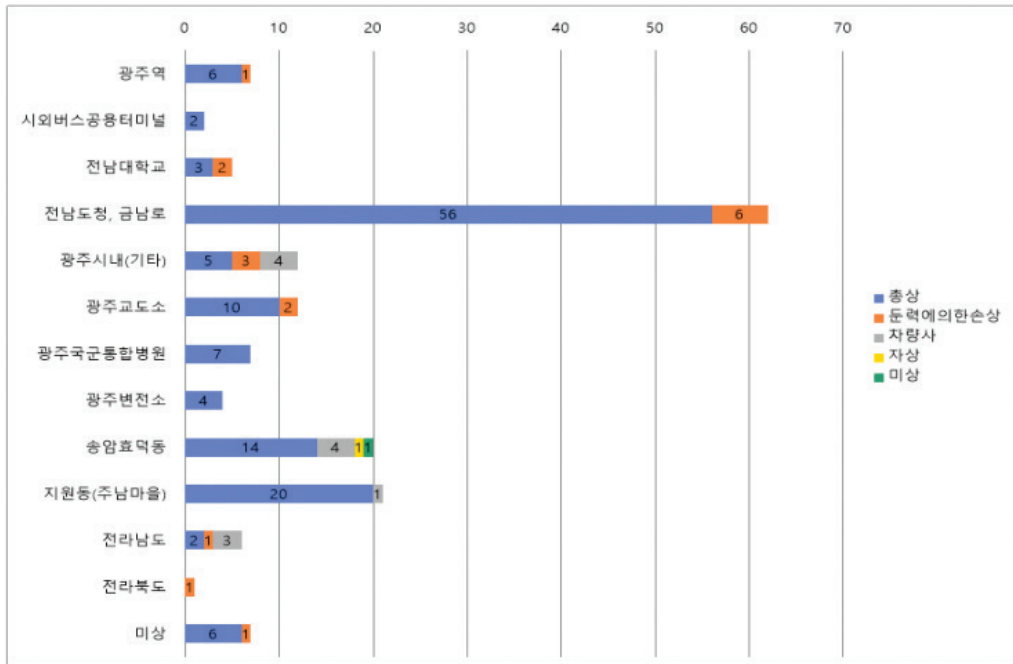
5·18민주화운동 사망자를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이 154명(92.8%)이고 여성은 12명(7.2%)이다. 연령대를 보면(만 나이 기준⁵⁾ 10대 미만이 1명(0.6%), 10대가 58명(34.9%), 20대가 64명(38.6%), 30대 21명(12.7%), 40대 11명(6.6%)으로 10대와 20대가 전체의 73.5%를 차지했다. 50대 이상도 11명(6.6%)에 달했다. 직업별로는 생산노무직이 44명(26.5%), 학생 42명(25.3%), 자영업 17명(10.3%), 운수업 15명(9.0%), 서비스업과 회사원이 각 13명(7.8%), 농수축산 6명(3.6%), 무직 5명(3.0%), 미상 4명(2.4%), 주부 3명(1.8%), 공무원과 기타 각 2명(1.2%) 순이다.

〈표 3-1-4〉 사망자 성별·연령대별·직업별 분포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남	학생		30	9					39
	농축수산업				2	2			4
	생산노무직		14	17	7	3		1	42
	서비스직		3	7	3				13
	운전기사/운수업		2	11	1	1			15
	자영업자		1	4	6	2	2	2	17
	회사원			9	2		2		13
	공무원					1	1		2
	기타			2					2
	무직		2	1					3
	미상	1		2		1			4
	계	1	52	62	21	10	5	3	154

5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1980년 5월 18일 기준 만 나이로 계산하였다.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여	학생		3						3
	농축수산업					1		1	2
	생산노무직		1	1					2
	주부			1			2		3
	무직		2						2
	계		6	2		1	2	1	12
총계		1 ⁶	58	64	21	11	7	4	166



〈그림 3-1-3〉 사망자 장소별 사인별 분포

6 4세(추정) 남아로 효덕동 인성고 앞산에서 수습돼 1980. 6. 7. 검사가 이뤄졌다. 사망 경위와 관련, 5. 24. 송암동 오인 교전 관련설, 5월 27일 전남도청 진압 작전 관련설 등이 있으나 본 보고서에는 날짜 미상으로 하였다.

다) 사인별 사망자 분포⁷⁾

전체 사망자를 사인별로 살펴보면, 총상에 의한 사망이 135명으로 전체 81.3%에 해당한다. 이외 둔력에 의한 사망 17명(10.2%), 차량에 의한 사망 12명(7.2%), 자상 1명(0.6%), 미상 1명(0.6%)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5〉 전체 사망자 사인별 분포

	총상	둔력에 의한 손상	차량사	자상	미상	합계
사망자	135 (81.3)	17 (10.2)	12 (7.2)	1 (0.6)	1 (0.6)	166 (100)

사인별로 사망 일자를 분류하면, 총상의 경우, 5월 21일이 51명으로 가장 많았고, 5월 27일 24명, 5월 23일 23명, 5월 22일 18명, 5월 24일 9명, 5월 20일 8명, 5월 19일 1명, 미상 1명 순이다.

둔력에 의한 사망은 계엄군의 진압봉이나 군화발 등에 의한 구타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또는 바닥에 넘어져 그 충격으로 인한 사망 등을 말한다. 둔력에 의한 사망으로 분류된 17명 가운데 15명이 계엄군의 폭행 등에 의해 사망했다. 총 17명 중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가 있었던 5월 21일에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5월 20일 3명, 5월 19일, 5월 23일, 5월 27일 각 1명이고 5·18민주화운동 기간 첫날인 5월 18일에도 1명이 사망했다. 사망자는 5월 18일 이세중, 5월 19일 김경철, 5월 20일 박기현, 허봉, 홍성규, 5월 21일 민병열, 박민환, 박창권, 홍인표, 기남용, 양인섭, 김인태, 안두환, 장방환, 김정선, 5월 23일 박문규, 5월 27일 조일기 등이다. 5월 21일 김정선과 5월 23일 박문규는 계엄군에 의한 사망 여부가 불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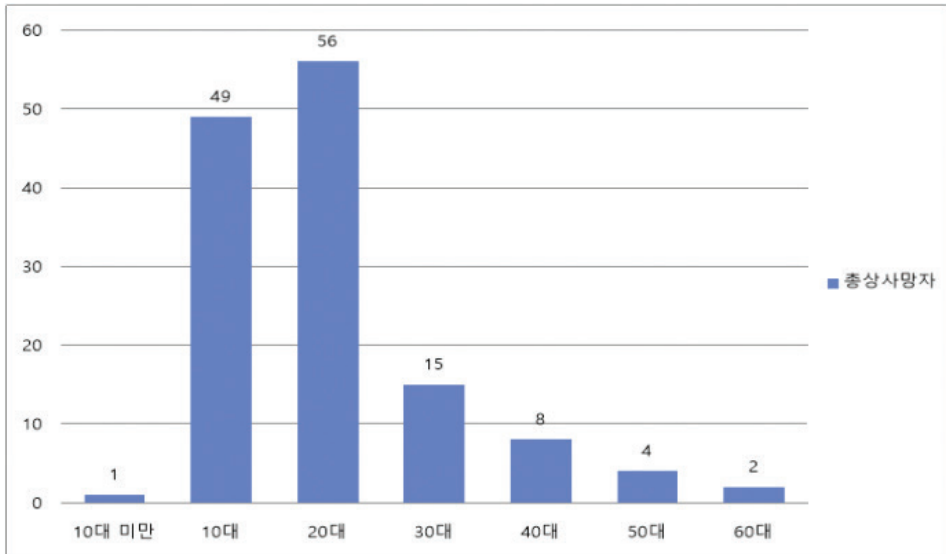
7) 사인 가운데 총상과 둔력에 의한 사망, 자상 등 복합사인인 경우 총상으로 분류했고, 나머지는 개별 사인별로 분류했다.

차량사는 모두 12명인데 크게 시위 차량에 탑승했다가 추락 등에 의해 사망한 경우와 시위 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경우로 분류된다. 차량사의 경우 5월 21일 계엄군의 집단발포를 전후해 광주 시외 지역으로 차량시위가 확산하면서 발생하는데 5월 21일부터 23일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 이종연(17세·남), 김형관(20세·남), 안병복(19세·남), 황성술(18세·남)과 김영두(16세·남), 목포 상락동 신원미상자(23세 추정·남)은 시위대 차량에 타고 있다 사고로 사망했으며, 김명철(65세·남), 임수춘(37세·남), 김동진(47세·남), 김오순(57·여), 임동규(51세·남), 김흥기(61세·남)는 차량에 치여 사망하였다. 대검 등에 의한 자상으로 분류된 희생자는 김종철(18세, 남)이다.

한편 전체 사망자의 사인별 분류에서 차량사로 분류되는 12명의 희생자와, ‘법의학 전문가 자문단’이 카빈총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한 김광복 등은 계엄군의 직접 가해로 인한 사망사례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총상 사망자 분포

전체 총상 사망자 135명을 연령대로 구분해보면, 10대 이하가 50명(37.0%), 20대 56명(41.5%), 30대 15명(11.1%), 40대 8명(5.9%)이고, 50대 이상은 6명(4.4%)이다.



〈그림 3-1-4〉 총상 사망자 연령대별 분포

사망자의 연령과 피격부위별 통계를 종합해보면, 당시 계엄군이 미성년자와 여성, 노인들에게도 총격을 가했던 사실이 확인된다.

총상을 피격 상태로 보면, 전체 135명 가운데 단발(1발) 사망자가 88명(65.2%)에 달한다. 2발 이상의 다발성 총상 사망자는 47명(34.8%)이다. 〈표 3-1-10〉을 보면, 5월 21일 도청 일대 총상 사망자(36명)의 88.9%(32명), 5월 27일 광주재진입작전 때 총상 사망자(24명)의 54.2%(13명)가 단 1발의 총탄에 희생되었다.

〈표 3-1-6〉 날짜별 총상 사망자 분포

	5. 19	5. 20.	5. 21.	5. 22.	5. 23.	5. 24.	5. 27.	미상	합계
사망자 수	1	8	51	18	23	9	24	1	135
(%)	(0.7)	(5.9)	(37.8)	(13.3)	(17.0)	(6.7)	(17.8)	(0.7)	(100)

〈표 3-1-7〉 성별 총상 사망자 분포

(단위: 명)

	전체	남	여
사망자	166	154	12
총상 사망자	135	124	11

피격 부위를 보면, 전체 단발 총상 사망자 88명 중 84명(95.5%)이 머리와 얼굴, 흉부(가슴)·복부 등 상체 부위를 피격당했다. 자위권 발동 시 수칙인 하반신 사격 지침이 준수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다발성 총상의 경우 총상 부위가 1곳에서 5곳까지 나타났는데 김춘례는 복부, 등, 엉덩이, 오른 넓적다리 뒷부위에 총 7발의 다발성 총상을 입었다.

〈표 3-1-8〉 전체 총상 사망자(단발) 총상 부위

(단위: 명)

상체					하체		계
머리	목	가슴	복부	등	엉덩이	대퇴부	
29	7	23	7	18	2	2	88

〈표 3-1-9〉 도청 앞 총상 사망자 36명 사인별 분포

(단위: 명)

단발 (32)					다발	계
머리	목	가슴	복부	등		
10	2	12	1	7	4	36

〈표 3-1-10〉 단발·다발 사망자 일자별 장소별 구분

(단위: 명)

구분	단발 사망자	다발 사망자	계
5. 19. - 5. 20.	8	1	9
5. 21. 도청 일대	32	4	36
외곽도로 봉쇄작전	28	29	57

구분	단발 사망자	다발 사망자	계
5. 27 광주재진입	13	11	24
기타	7	2	9
계	88	47	135

2) 사망 사건의 전개과정

5·18민주화운동 기간 중 민간인 사망자 발생 시기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된다.

첫째는 5월 18일에서 5월 20일까지의 계엄군의 초기 강경 진압 단계다. 이 기간은 시민들이 아직 무장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시위진압은 진압봉 등에 의한 강경 진압을 거쳐 총기 사용까지 이루어졌던 단계이다. 5월 18일에서 5월 20일까지 총 14명의 민간인이 계엄군의 총격을 포함한 폭력 행위로 희생되었다.

둘째는 5월 21일로 전남도청 일대와 전남대 앞, 지원동 등 광주 전역에서 (집단) 발포가 일어난 시기이다. 이날 5·18민주화운동 기간 중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셋째는 계엄군이 외곽으로 철수하여 외곽봉쇄작전을 전개하던 5월 21일에서 5월 26일 사이의 기간이다.

넷째는, 5월 27일 광주재진입작전 단계이다.

가) 5월 18일~20일

(1) 5월 18일

이세중은 5·18민주화운동 기간 발생한 첫 사망자이다. 비상계엄 전국 확대조치에 따라 5월 18일 제7공수여단 31대대가 전북대학교를 점령했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날 새벽 교내 학생회관에 머물던 이세중은 3층에서 4층 옥상에 이르는 계단에서 2명의 계엄군에

게 진압봉과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구타당했다.⁸

이세종은 이날 01시 40분에서 01시 50분경 사이 학생회관 바깥 바닥에 추락하였으며 숨진 채 발견됐다. 주요사인은 두개골 골절에 의한 두개강내출혈, 간장 파열에 의한 후복강내 출혈 등이다. 부검의는 “주요사인 이외에도 상당한 타박상이 존재했는데, 이것은 옥상에서의 추락이라는 한 가지 이유로 나타날 수 없는 흔적이 분명하다”라고 진술하였다.⁹

〈표 3-1-11〉 5월 18일 사망자

구분	이름	나이	피해일	피해지	사인
1	이세종	20	5. 18.	전북대학교	둔력에 의한 손상

(2) 5월 19일

광주지역에서 두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 명은 계엄군의 구타에 의해 사망했고, 또 한 명은 최초 총상 사망자이다.

청각장애인 김경철은 5월 19일 자신이 일하던 광주 충장파출소 옆 2층 ‘코코양화점’에서 밖으로 나왔다가 10시 30분에서 11시 사이 금남로 3가 가톨릭센터 건너편 제일은행 인근 도로상에서 제11공수여단 62대대에 붙잡혀 진압봉과 군홧발로 머리와 온몸을 구타당했다. 광주경찰서로 연행된 김경철은 폭행으로 인한 뇌출혈로 인근 적십자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김경철은 이날 밤 계엄 당국에 의해 국군광주통합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김경철의 사망과 관련, 계엄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보도」라는 보도처 보도자료(5월 21일 17:40 작성이라고 기재됨)에 “시민 1명(김행렬, 29세, 농아) 사망”이라고 기재되었

8 5·18조사위, 「참고인 이○○ 서면진술서」(2023.10.19.).

9 5·18조사위, 「참고인 이○○ 진술조서」(2023.07.21), 전북대학교병원, 「이세종 시체검안서」(1980.05.19.).

고,¹⁰ 또 당시 국군광주통합병원장 수첩에 ‘농아 김경철 시체 적십자에서 인수 냉동보관 2일간, 5월 19일 밤(저녁)’ ‘윤홍정 중장께 보고’라고 기재된 점¹¹ 등을 감안하면, 대외적인 통제가 수월한 국군광주통합병원으로 시신을 이송한 뒤 한동안 보도통제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김안부는 5월 19일 오후 광주공원 근처에서 시위를 구경하다 사망했고, 시신은 다음 날 오전 7시경 인근 (구) 전남양조장 공터에서 발견되었다. 그동안 김안부의 사인은 둔력에 의한 사망(타박사)으로 알려져 있었다. 검찰 「검시 보고」와 국립5·18민주묘지 홈페이지에도 ‘타박사’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5·18조사위 조사 결과 김안부는 5·18민주화운동 기간 중 최초의 총상 사망자로 확인되었다.

김안부의 사인과 관련, 「시체검안서」와 군 검찰의 「검시 참여 결과보고」는 총상이라고 기록을 남겼다. 군 검찰의 「검시 참여 결과보고」는 당초 ‘5. 21. 두부맹관상’으로 기재했다가 사망일을 ‘5.19’로, 사인을 ‘타박사’로 수정했다. 5·18조사위는 전남대학교 부속병원 (이하 ‘전남대병원’)에서 작성된 시체검안서에는 우전두부맹관총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5월 28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검시 보고」와 군 검찰의 「검시 참여 결과보고」에는 이 기록이 누락된 점을 확인하였다. 또 5·18조사위는 김안부의 총상 여부에 대해 ‘법의학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통해 직접 사인이 전두부 맹관총상¹²임을 확인했다. 5월 19일에서 20일 사이에 광주공원 일대에 계엄군이 배치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을 고려하면 김안부는 5월 19일 04시 이후 이 지역을 점령하고 진압 임무를 수행한 제11특전여

10 보도자료가 실제 배포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11 광주시 의사회, 「국군광주통합병원장 진료기록」(2018.3), 『5·18의료활동』제2집. “김연균 병원장은 5월 19일 윤홍정장군의 전화를 받고 적십자병원에서 김경철의 시신을 통합병원으로 싣고 왔는데 머리가 쑥 꺼지고 온 몸에 맞은 자국이 있고(…)놀라 그대로 기록하고 바로 사령관에게 ‘이거는 폭행치사입니다’라고 보고했다.”

12 법의학 전문가 자문단, 「자문의견서」(2023.09.07.). “다른 검안서들의 기록을 고려하면 사망 원인은 머리총창(gunshot wound to head)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입구의 크기만으로 총기의 종류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1cm로 기록되어 있어도 M16에 의한 총창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단 61대대 3지역대의 시위진압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¹³

〈표 3-1-12〉 5월 19일 사망자

구분	이름	나이	피해일	피해지	사인
1	김경철	23	5. 19.	제일은행 앞	둔력에 의한 손상
2	김안부	34	5. 19.	구) 전남양조장	총상

(3) 5월 20일

(가) 광주역 집단발포 사망자

① 개요

5월 20일 오전 7시경 제3공수여단 병력(장교 255명/사병 1,137명)이 광주역에 도착했다. 이날 제31사단장은 제3공수여단의 도착과 동시에 예비로 운용했던 제7공수여단 33대대를 제11공수여단에 배속하여 제11공수여단이 광주 동부지역을 담당하고, 제3공수여단 병력은 광주 서북부지역을 담당하도록 변경하였다.¹⁴

5월 20일 18시경 택시, 버스 등 차량 200여 대가 무등경기장에서 전남도청과 금남로, 가톨릭센터 일대에 집결했다가 광주역, 시외버스공용터미널 쪽으로 분산, 이동했다. 이날 밤 제3공수여단과 시위군중은 광주역 일원에서 서로 격렬한 시위 및 진압작전 활동을 벌였다. 이 와중에 여단 작전참모 김종헌 대령과 10여 명의 부대원이 M60기관총, M16 소총 사격을 가했으며, 15대대장 박종규 중령도 권총 사격을 가했다.¹⁵ 5·18조사위 조사

13 5·18조사위는 5. 19. 22:00경, 광주 서구 서동 전남양조장 공터에서 김안부 씨가 맹관총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총상 사망자 최초 발생 시기는 그동안 알려졌던 것보다 24시간 이전임을 확인하였다. 다만 당시 계엄군의 진압 작전 과정에서의 자세한 발포 상황과 경위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14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 『5·18 관련 사건 수사결과』(1995.07.18.), 『5·18사건 수사기록』1권, 78쪽.

15 5·18조사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2023.12.24.),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 제144116, 『박종규 진술조사』(1994.12.14.), 『5·18사건 수사기록』, 24338쪽.

에 의하면, 이날 집단발포 때 광주역 앞에서 사망한 민간인은 7명에 이른다.

② 사망자

20일 밤 광주역 집단발포로 숨진 사람은 김재화(남, 25세), 김만두(남, 44세), 이복일(남, 27세), 김재수(남, 25세), 신동남(남, 29세), 허봉(남, 23세), 박세근(남, 35세) 등 7명이다. 사망자의 평균 나이는 30세이며 전부 남성이다. 20대가 5명이고 30대 1명, 40대가 1명이다.

③ 사망 경위

5월 20일 밤 1만여 명의 시위대가 광주역에 집결, 계엄군과 격렬하게 대치하자 제3 공수여단장 최세창은 실탄을 지급하도록 지시했다.¹⁶ 제3공수여단 12·15대대는 23시경 시위대를 향해 M16 총격을 가했다. 김만두와 김재수는 광주역 인근에서 총상을 입고, 시외 버스공용터미널 인근 안정남외과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했다. 김재화는 총에 맞고 손수레에 실려 서방사거리 인근 노광철의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했다. 이복일은 광주역 앞에서 트럭에 탑승한 채 계엄군의 바리케이드로 돌진했다가 계엄군의 총격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역 인근 여인숙에 거주 중이던 신동남은 5월 20일경 집을 나간 이후 5월 21일 오전 총상을 입은 채 적십자병원에 이송되었다가 다음 날 사망하였다.

신동남은 지난 41년간 사망자나 행방불명자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2021년 5·18조사위가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된 무명열사 유해의 유전자를 행방불명자 가족의 유전자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묘지번호 4-90번에 안장된 무명열사의 신원이 신동남으로 확인되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박종규 진술조서 2회』(1995.06.20.), 『5·18사건 수사기록』, 26377-26388쪽.

16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제3공수특전여단 정보참모 윤○○ 진술조서』(1995.02.17.), 『5·18 수사기록』, 24338~26338쪽.

었다.¹⁷

〈표 3-1-13〉 5월 20일 광주역 사망자

순번	성명	나이	피해지(추정포함)	사인
1	김재화	25	광주역 일원	총상
2	김만두	44	광주역 일원	총상
3	김재수	25	광주역 일원	총상
4	이복일	27	광주역 일원	총상
5	신동남	29	광주역 일원	총상
6	허 봉	23	광주역 일원	둔력에 의한 손상
7	박세근	35	광주역 일원	총상

(나) 광주역(집단발포) 이외 지역 총상 사망자

5월 20일에 사망한 김경환은 김안부와 마찬가지로 사망 원인 중 ‘총상’이 누락되었다. 김경환은 5월 20일 전남대병원 로터리에서 사망한 채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졌다. 검찰의 「검시 보고」와 군 「검시 결과」 모두 김경환의 사망 시기를 ‘5월 23일(추정)’로 기재하였다. 사인도 자상 및 ‘타박사’로 분류하여 총상에 관한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다. 국립 5·18민주묘지 홈페이지에도 김경환은 ‘5. 20. 오후(…) 계엄군에게 붙잡혀 진압봉에 머리를 맞고 대검에 찢려 그 자리에서 사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¹⁸ 그런데 검찰의 「검시 보고」에 첨부된 「시체검안서」에는 ‘후두부의 타박상, 좌견갑부 멍관총상, 배부의 자상’ 등이 기재되어 있어, 「검시 보고」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총상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군 「검시 결과」는 사망 경위 확인 후 사망 일자를 5월 23일에서 5월 20일로 변경했으나 사인에 있어서는 ‘타박사’만이 기록되어 있다.

17 5·18조사위, 「5·18민주화운동 관련 행방불명자 고 신동남의 신원 및 소재확인 조사결과보고서」(2021.06.14.)

18 「사망자 김경환」, 국립5·18민주묘지, 2023. 10. 19. 검색, <https://mpva.go.kr/518/index.do>.

정지영은 5월 20일 19시 이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나 사망 장소와 사망 시각은 확인되지 않았다. 치안본부 「헬기 피해상황보고」(1980.05.22.)에 따르면 정지영의 시신은 5월 21일 11시 30분경 경찰 헬기를 이용하여 전남도청 앞에서 국군광주통합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시체검안서는 사인을 ‘우 귀 뒤의 멍관총상(사입구 직경1.2cm)?’으로 기재하고 있다.

검찰의 「검시 보고」는 정지영이 ‘5월 20일 19시 가족 친목계 참석차 출타’하고, 사인 부위에 ‘우 귀 뒤의 멍관총상? 두부 열창’으로 기재하면서도 최종 사인을 ‘타박사’로 분류하고 사망 일자도 ‘5월 23일’로 기재했다. 군 검찰의 「검시 참여 결과보고」는 검찰 검시 기록과 달리 정지영이 ‘5월 21일 11시 30분 도착, 경찰 헬기로 시체로 도착’이라며 정지영의 시신이 5월 21일 국군광주통합병원에 도착한 사실을 기재했다. 그러나 사인은 ‘타박사’로 분류했다. 검시 기록 모두 정지영의 사인에서 총상을 배제하고 있다.

‘법의학 전문가 자문단’은 정지영의 사인과 관련, “머리총창의 가능성이 높지만 분류는 미상으로 한다”라고 밝혔다.¹⁹ 결국, 정지영은 5월 20일 19시 이후 총격 및 진압봉 등 복합적인 수단에 의해 피해를 입고, 전남도청 일대 장소 불상의 지역에 방치되었다가 사망했고, 5월 21일 11시 30분경 국군광주통합병원으로 시신이 이송된 것으로 판단된다.

19 5·18조사위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검시에 참여했던 의사와 법의학자, 총기 전문가 등이 참여한 ‘법의학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1차(2023. 8. 29~30), 2차(2023. 11. 30~12.1) 회의를 통해 5·18 당시 민간인 사망자 166명에 대한 검시 결과를 분석했다. 정지영 사인에 대해 ‘법의학 전문가 자문단’은 “안면부에 표피 박탈과 같은 둔력 손상이 있으면서 멍관총상 여부를 확인할 만한 사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망 원인은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다) 둔력(구타 등)에 의한 사망자

5월 20일 계엄군의 구타로 14살 중학생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중학교 3학년생인 박기현은 5월 20일 19시경 자전거를 타고 책을 사러 간다며 집을 나서 인근 계림오거리 쪽으로 갔다가 동문다리 근처에서 시위진압 중이던 계엄군에게 붙잡혀 진압봉 등으로 심하게 구타당했다. 그 뒤 시민들에 의해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박기현의 「시체검안서」에 따르면, 사망 원인은 둔력에 의한 두부(머리) 손상(뇌타박상)이며 머리 외에도 신체 여러 곳에서 둔력에 의한 손상 흔적이 발견되었다.

〈표 3-1-14〉 5월 20일 광주역 이외 사망자(광주 일원)

구분	이름	나이	피해일	피해지	사인
1	정지영	30	5. 20.	전남도청 일대	총상
2	김경환	19	5. 20.	전남대병원 로터리	총상
3	박기현	14	5. 20.	동문 다리	둔력에 의한 사망
4	홍성규	32	5. 20.	광주 시내	둔력에 의한 사망

나) 5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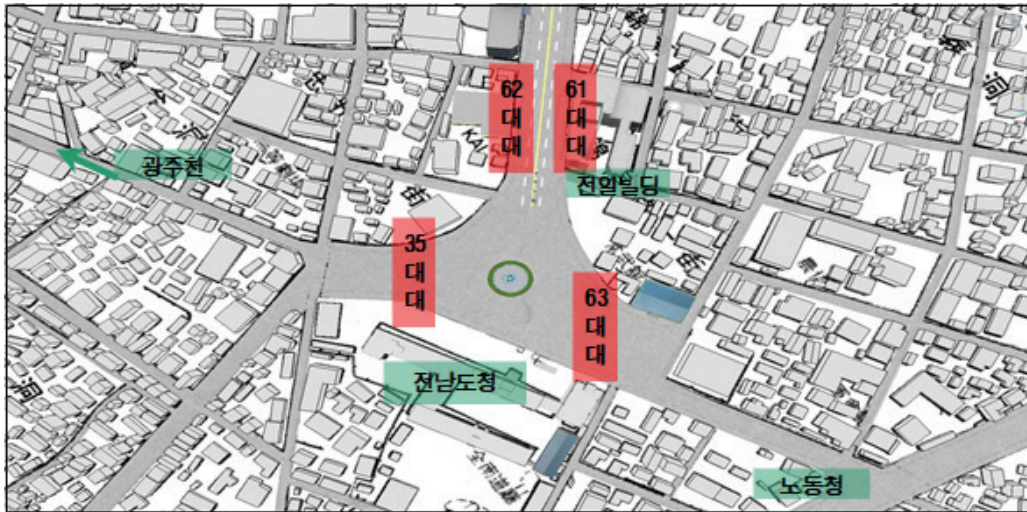
5월 21일 하루에 67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이 중에서 41명은 전남도청 일대에서, 나머지는 광주 여러 지역과 시외로 나가는 국도와 지방도 근처에서 희생되었다.

(1) 전남도청 일대 집단발포 사망자

(가) 개요

제11공수여단 61·62·63대대와 제7공수여단 35대대 등 4개 대대는 전날인 5월 20일 야간부터 전남도청을 사수하기 위해 시위대의 차량 공격을 저지하고 있었다. 5월 21일 전남도청 앞 금남로 전면에 제11공수여단 61·62대대를 배치하고, 노동청 방면에는 63대

대를, 광주천 방면에는 제7공수여단 35대대를 배치했다. 5월 21일 아침 전남도청을 중심으로 배치된 각 공수부대의 현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 3-1-5>와 같다.



<그림 3-1-5> 5. 21. 10:00경 전남도청 주변 공수부대 배치 현황

이날 도청 앞 집단 발포 때 도청 일대에서 41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이는 5월 21일 희생자 67명의 61.2%를 차지한다. 사인 발생 장소는 크게 ①금남로 인근 ②대로변 안쪽 골목(건물 내) ③노동청 인근 등 세 곳으로 구분된다. 장소 특징이 가능한 사망자 30명 중 19명은 도청 앞 금남로 일대에서 사망하였고 7명은 자택이나 건물 옥상 등 대로변 안쪽 골목에서 총상을 입었다. 3명은 ‘노동청 인근’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반면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도청 일대 사망자는 11명이다.²⁰ 이들의 사망 경위를 목격한 사람이나 관련 구술증언은 존재하지 않으나, 병원(응급실) 이송 기록 등 당시 정황을 감안할 때 도청 앞 집단 발포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

20 1980. 5. 21. 도청 앞 집단 발포 당시 ‘전남대학교’ 일대에서도 제3공수여단에 의한 발포가 있었기 때문에 동 11명의 사망자 중 전남대학교 앞 총상 사망자가 포함됐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표 3-1-15〉 도청 일대 사망자 사인 발생 장소별 분포

(단위: 명)

	금남로 인 근	대로변 안쪽 (건물 내 포함)	노동청 인근	기타 ²¹	특정 불가	계
사망자	19	7	3	1	11	41

(나) 사망자

41명 사망자의 사망 당시 평균 연령은 만 26.6세다. 최고령자는 62세 황호정으로 ‘도심빌딩’ 5층 자택 창가에서 도청 쪽에서 날아온 총탄을 맞고 같은 날 18시경 사망했다. 가장 어린 사망자는 무등중학교 3학년이었던 13세 김완봉으로 목에 총을 맞고 사망했다. 사망자 중 9명이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로 전체의 22%에 해당하며 사망자 중 유일한 여성인 이성자 또한 만 14세 미성년자였다. 희생자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생산·노무직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이 9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자영업자 5명, 운전기사·운수업 종사자 4명, 회사원 4명, 서비스직 종사자 3명, 무직이 2명이다.

〈표 3-1-16〉 도청 일대 사망자 성별·연령별·직업별 분포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남	학생	5	4					9
	생산노무직	5	5	3	1			14
	서비스직	1	1	1				3
	운전기사/운수업		3		1			4
	자영업자		1	2	1		1	5
	회사원		2	1		1		4
	무직		1					1
여	무직	1						1
총계		12	17	7	3	1	1	41

21 광천주조장 (사망자: 홍인표, 사망 장소: 광산동 113번지)

(다) 병원 이송 분포

당시 병원 기록 및 관련 수사기록에 따르면, 41명 희생자 중 35명이 병원에 이송됐다. 이 중 대부분이 DOA(Dead On Arrival) 즉 병원 도착 당시 사망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민청진, 장하일, 최승희, 한영길, 윤성호 등 5명은 병원에 이송되어 입원 치료를 받다가 5월 21일 이후 다른 날 사망하였다. 이송된 병원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된 사망자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표 3-1-17〉 전남도청 일대 집단발포 사망자 중 5. 21. 이후(입원 치료 중) 사망자

	민청진	장하일	최승희	한영길	윤성호
최초 이송병원	영남신경외과	전남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남대병원	김명환외과
병원 도착시각	5. 21. 13:55	5. 21. 14:30	5. 21. 13:15	5. 21. 13:45	5. 21. 16:00경
사망일시	5. 22.. 18:15 (전남대병원 입원 중)	5. 23.	5. 22. 03:50	5.22.	5. 27. 02:55 (전남대병원 입원 중)

〈표 3-1-18〉 전남도청 일대 사망자 이송병원별 사망자 분포

(단위: 명)

	병원 이송				자택	기록미상	계
	전남대병원	기독교병원	적십자병원	개인병원			
사망자	14	10	9	2	2	4	41

(라) 사망 경위- 단발총상자 숫자 및 부위 확인

5월 21일 전남도청 일대 희생자 41명 중 36명(87.8%)이 총상 사망자이며 나머지 5명은 둔력에 의한 사망(구타 등)이다. 총상 사망자의 피격 부위를 살펴보면, 두부·흉부·복부 등 상체 부위를 피격당한 단발 총상 사망자가 32명으로 전체 총상 사망자의 88.9%에 달해 약 10명 중 9명이 상체 부위에 1발의 총탄을 맞고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6〉 5월 21일 도청앞 금남로 총상 사망자

(마) 저격수의 조준사격²²

1995년의 검찰수사 발표에서는 계엄군의 발포와 관련, 전남도청과 인근 건물 옥상에 올라간 병력(‘저격수’)에 의한 연속 발포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나, 사망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못했다.²³

5·18조사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도청 앞 사망자 중 최소 7명은 전남도청 인근 건물 옥상에 배치된 저격수의 조준사격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즈음, 전남도청과 수협전남도지부, 전일빌딩 등지의 옥상에서 ‘저격수’가 시위대를 향해 조준사격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당시 저격수 임무는 주로 화기 하사관이 담당하였는데, 화기 하사관은 각 지대(장교 1/사병 10)별로 1명씩 배치되었다.²⁴ 전남

22 5·18조사위, 「5·18 당시 최초 발포 및 집단 발포 책임자 및 경위」(2023.12.26).

23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 「5·18 관련 사건 수사결과」(1995.07.18.), 「5·18사건 수사기록」 1권, 98쪽.

24 5·18조사위, 「참고인 이○○ 진술조서」(2023.08.12).

도청 앞 조준사격과 관련된 공수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19〉 조준사격 관련 장병의 진술 요지

구분	진술 요지
이○○(2023. 8. 12.) -제11공수여단 63대대 8지역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대 화기화사관으로, 1개 지대에 1명씩 두는 저격수 활동을 하였다. 분기별로 따로 훈련을 받는다. 출동할 때 전혀 사격을 예상하지 못해 조준경도 가져가지 않았다. 5월 21일 낮 APC에 계엄군이 압사 당시 들어오는 버스 운전자를 향해 사격했다.
남○○(2023. 8. 9.) -제7공수여단 35대대 11지역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대 화기 하사관으로 저격병 활동을 하였는데, 당시 최신 장비인 트라이락스(조준경)장비를 운용하였다. 500~700m까지 저격이 가능하다. 5월 21일 도청으로 피신한 뒤 대대장이 '지역대나 중대 구분없이 소총 저격수들 나와라' 해서 10여 명이 도청 옥상에 올라갔다. 버스 위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 등 2~3명이 저격당한 것을 목격했다.
조○○(2022. 8. 25.) -제11공수여단 63대대 8지역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갑차가 분수대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주변에서 총성이 났고 '저격수 나와!' 하는 현장 간부의 지시가 있었고, 자신도 순간 도둑가로 나와서 전방 금남로 상의 시민과 고층 건물들을 향해서 조준사격을 하였다.
한○○(2021. 4. 23.) -제11공수여단 62대대 4 지역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일보 빌딩에 올라가 망원경 보고서 장갑차 위에 있는 청년의 목을 본인이 조준사격 하였다. 지대별로 저격수가 1명씩 있었다.

조준사격과 관련, 제11공수여단 61대대장 안부웅은 검찰 진술에서 “당시 상황이 긴박해 도청 건물 인근 옥상에 병력을 올려보낸 것은 사실이나, 경계병 임무와 차량돌진자나 극렬주의자 및 옥상에서 사격하는 시위대에 사격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²⁵

그러나 그의 주장과 달리, 상당수 희생자가 시위와는 무관하게 고층 건물 내 자신의 집이나 금남로 이면도로 등지에서 계엄군의 총격에 사망했다.

김선호(44세·남)는 전남도청 인근 무등맨션 거주자였는데, 5월 21일 16시 30분경 집 밖 사정을 살피기 위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다가 7층 동편 비상계단에서 계엄군의 총격

25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안부웅 진술조서 3회』(1995.07.04.), 『5·18 수사기록』 17권, 26634쪽

을 받아 사망했다.²⁶ 피격 장소의 높이와 당일 전남도청·전일빌딩·수협 전남도지부 건물 옥상 등에 저격병이 배치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조준사격 이외에는 피격 경위를 달리 설명할 수 없다. 조남신(52세·남)은 5월 21일 15시경 전남도청 인근 무등극장 건너편 사무실 1층에서 밖을 내다보다 수협 전남도지부 또는 전일빌딩 옥상에 배치된 저격수에 의해 피격된 것으로 판단된다. 조남신과 함께 있던 윤성호는 유탄을 맞고 넘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성자(14세·여)는 전남도청 앞 총격 사망자 중 유일한 여성으로, 5월 21일 13시에서 16시 30분 사이 구 동구청 이면도로인 흥안과 앞에서 계엄군의 조준사격으로 사망했다. 황호정(62세·남)은 5월 21일 17시에서 18시 사이 도청 인근 건물 5층 자택에서 밖을 내다보는 친척 아이를 떼어내려고 창가에 접근했다가, 진정태(25세·남), 심동선(30세·남)도 각각 자택 2층 베란다 및 다방 옥상에서 계엄군의 조준사격으로 추정되는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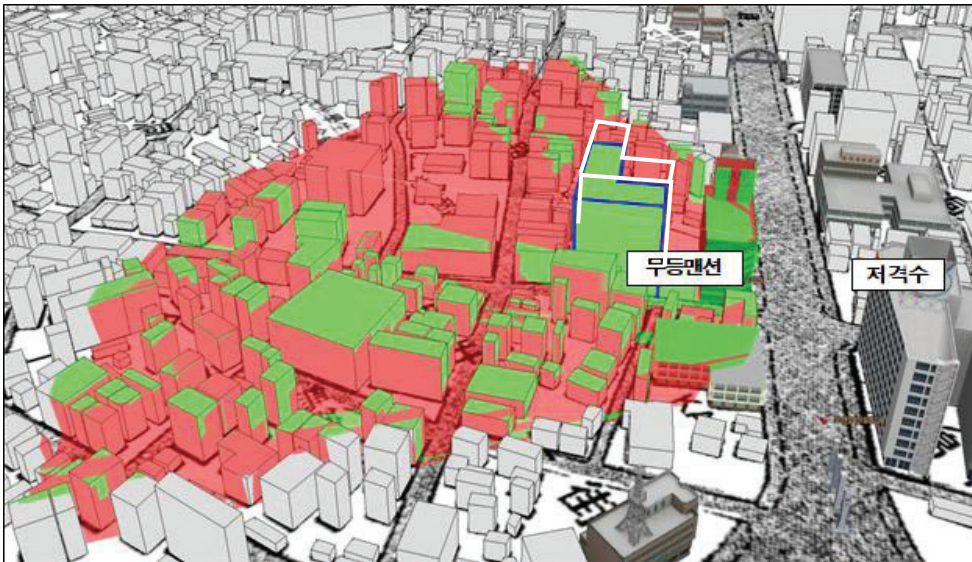
26 5·18조사위, 「참고인 이○○ 진술조서」(2023.12.19.), 제11공수여단 62대대 6지역대 저격수 이○○은 “중대장 명령으로 수협 건물 옥상에 올라갔더니 시위대로부터 총알이 날아왔고, 약 500m 떨어진 반대편 아파트에서 총을 쏘며 계단을 내려오는 시위대 1명을 저희 쪽에서 저격해서 죽였다”라고 진술했다.

〈그림 3-1-7〉 고층 건물에서의 조준사격에 의한 사망자(7명)
(전일빌딩/수협도지부 기준 가시권)

○ 광주전화사 윤성호·조남신



○ 무등맨션 김선호



제1장

제2장

제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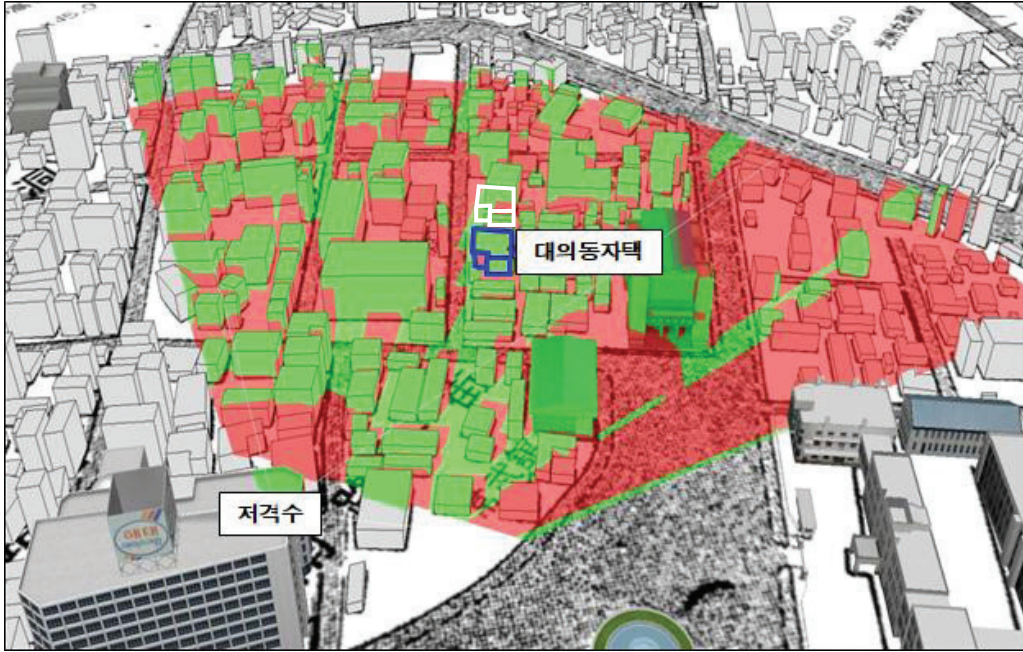
제4장

제5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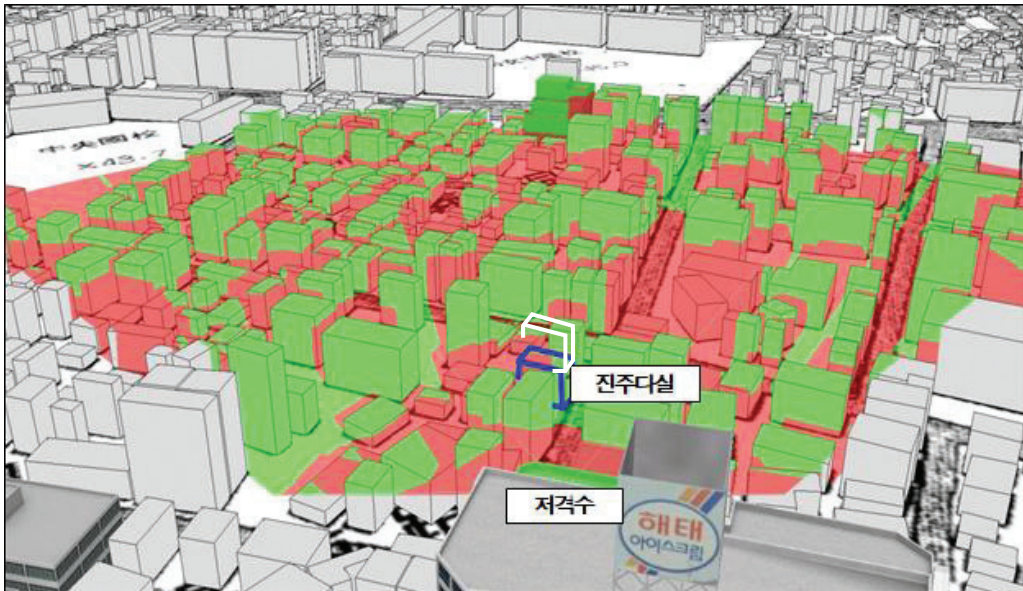
제6장

제7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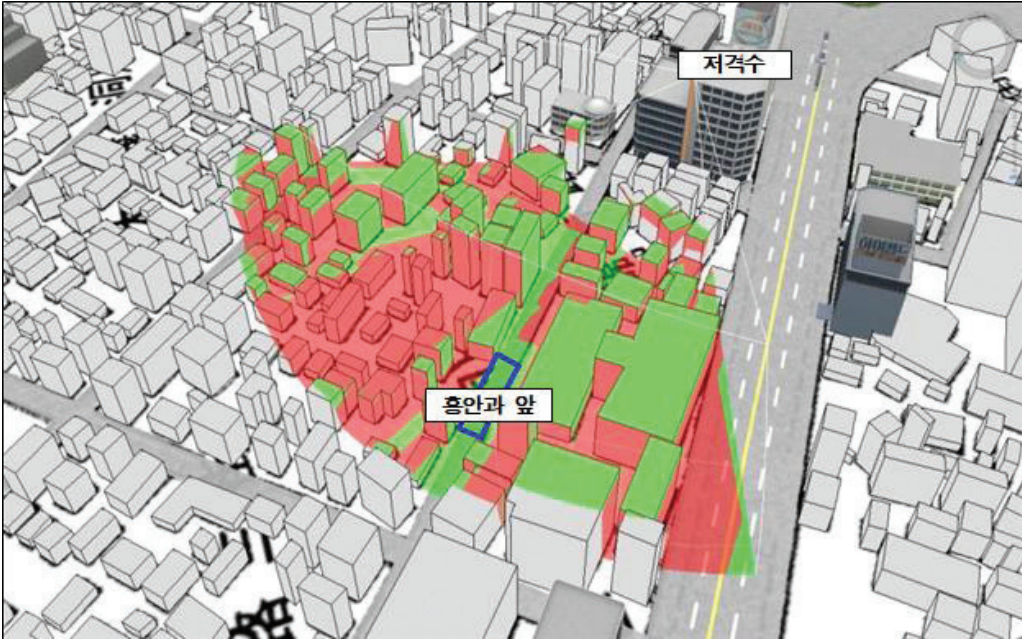
○ 대의동 자택 진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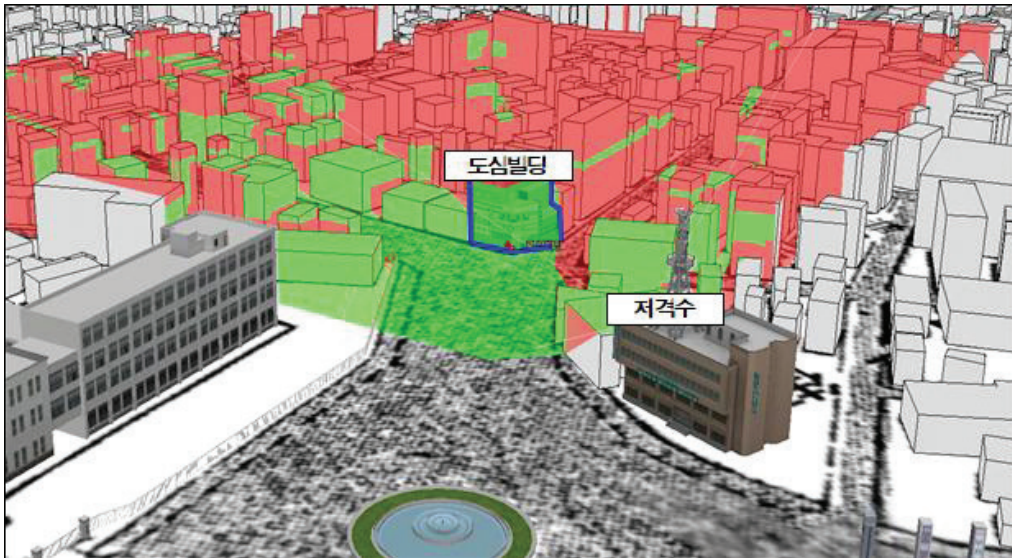
○ 진주다실 심동선



○ 흥안과 앞 이성자



○ 도심빌딩 황호정 (수협도지부 옥상 기준 가시권)



(2) 전남도청 일대 이외 지역 사망자

(가) 전남대 인근 등 사망

5월 21일 전남대에서는 오전 9시부터 정문과 후문에서 제3공수여단과 시위대가 대치하면서 제3공수여단의 발포와 연행, 구타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

① 개요

5월 21일 광주 시내에서 사망한 희생자 중 전남도청 일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사망한 희생자는 5명으로 집계된다. 5명 중 4명이 전남대학교 일대에서 사망하였고 나머지 1명은 월산동에서 사망하였다.

〈표 3-1-20〉 광주 시내(도청 외) 사망자 사인 발생 장소별 분포 인원 (단위: 명)

	전남대학교	월산동
사망자	4	1

〈표 3-1-21〉 5월 21일 전남대학교 및 기타 지역 사망자 현황

구분	이름	나이	피해일	피해지	사인
1	장방환	58	5. 21.	전남대 인근	둔력에 의한 손상
2	안두환	44	5. 21.	전남대 인근	둔력에 의한 손상
3	최미애	23	5. 21.	전남대 인근	총상
4	이성귀	16	5. 21.	전남대 인근	총상
5	김명철	65	5. 21.	월산동	차량사

② 사망자

희생자 5명의 사망 당시 평균 연령은 41.2세다. 최고령자는 65세 김명철로 월산동 외

광도로를 걷던 중 뒤에 오던 시위 차량에 치여 사망하였다. 최연소 사망자는 광주상고 2학년이었던 이성귀(16세)로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서 제3공수여단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제3공수여단은 당일 이성귀의 시신을 전남대학교 이학부 건물 뒷산에 암매장하고 광주교도소로 철수하였다. 전남대에서 광주교도소로 이송된 장방환, 안두환은 이송 중 사망하였다. 최미애는 당시 임신 8개월 임신부였으며 전남대학교 인근 평화시장 입구에서 남편을 기다리다가 제3공수여단이 쏜 M16 총탄에 머리를 맞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③ 사망 경위

희생자 5명 중 2명은 총상, 2명은 둔력에 의한 손상, 1명은 차량에 의한 사망이다.

④ 사망 경위 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망자

5월 21일 사망자 중 4명은 아직 신원이나 장소 등 사망 경위가 밝혀지지 않았다. 대부분 시위가 가장 격렬했던 5월 20일에서 21일 사이 광주역과 금남로 차량시위, 금남로 발포 전후 상황에서 계엄군의 총격 또는 구타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5월 21일 신원 및 장소 미상 사망자 연령은 10대 1명, 20대 2명, 40대(추정) 1명이다.

김정선(방위병)은 소속부대의 사망 확인 조서에서 5월 21일을 사망 일자로 특정하고, 사망 확인 조서에서 '1980-05-21. (추정) 무단이탈 중 장소 불상 사망하여 변사 처리'한 기록 등이 있으나 자세한 사망 경위는 확인할 수 없다.

40세 추정의 남자는 5월 21일 장소 불상지에서 M16 총상에 의해 배흉부 관통 총창(0.5×1), 우하퇴부 관통 총창(0.5×1)으로 사망하였다. 검시 당시 '상의 빨간 잠바, 하의 군복'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신원은 파악하지 못했다.

〈표 3-1-22〉 5월 21일(추정) 사망 경위 및 신원 미상 희생자 현황

구분	이름	나이	피해일	피해지	사인
1	김정선	21	5. 21.	미상	둔력에 의한 손상
2	김함옥	16	5. 21.	미상	총상
3	정민구	25	5. 21.	미상	총상
4	불 상	40(추정)	5. 21.	미상	총상

다) 외곽봉쇄 작전 기간 사망자²⁷

계엄군은 항쟁의 확산을 막기 위한 광주 외곽봉쇄작전을 전개했다. 5월 21일에 ①광주 나주 간 1번 국도 봉쇄를 위해 송암동에 제20사단 61연대 2대대, ②전남 화순 간 15번 국도 봉쇄를 위해 지원동에 제7·11공수여단, ③전남 담양 간 도로 봉쇄를 위해 광주교도소에 제3공수여단, ④전남 장성 간 도로봉쇄를 위해 광주 요금소 등에 제20사단 61연대와 제31사단 11경비대대, ⑤광주 송정 간 22번 국도 봉쇄를 위해 농성동에 제20사단 62연대 2대대를 각각 배치했다. 이때 시위 확산 또는 무기 획득을 위해 도로를 지나던 차량과 그 탑승자들, 혼란 상황을 피하고자 고향으로 떠나는 주민, 군 주둔지 거주민 등 다수의 민간인이 집단으로 희생되었다.²⁸

라) 5월 27일 광주재진입작전

5·18조사위 조사에 의하면 5월 27일의 광주재진입작전 과정에서 계엄군의 총격 등으로 사망한 민간인은 총 25명이다.

27 외곽봉쇄기간 민간인 학살 내용은 〈직가의 4-3〉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에서 상술하고 있다.

28 국회광주민중화운동조사특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상황소개(청문회 증언 및 제출자료 중심)」, 101쪽.

(1) 광주재진입작전

“광주재진입작전”은 크게 다섯 축으로 전개되었다. 장교 14명과 사병 66명으로 편성된 제3공수여단 11대대 1지역대는 도청으로,²⁹ 장교 3명과 33명으로 편성된 제11공수여단 61대대 2지역대 4중대는 전일빌딩³⁰으로 진입했다. 또한 YWCA와 관광호텔은 20명의 장교와 181명의 사병으로 편성된 제7공수여단 33대대 8, 9지역대가 광주공원 일대를 점령하고,³¹ 제20사단 62연대 2대대는 광주교도소를 거쳐서 시내로 진입³²했다. 제31사단 96연대는 전남대학교 근처를 장악했다.³³

〈표 3-1-23〉 광주재진입작전 개요

지역	도청	전일빌딩, 관광호텔, YWCA	계림동
작전 부대	제3공수여단 11대대 1지역대 (12/66명)	제11공수여단 61대대 2지역대 4중대 (3/33명)	보병제20사단 62연대 2대대 6·8중대
지역	월산동(광주공원)	전남대학교 지역	전남여고 부근
작전 부대	제7공수여단 33대대 8·9지역대 (20/181명)	보병 제31사단 96연대 2대대	보병제20사단 62연대 2대대 6·8중대 또는 61연대 1대대

이 작전 과정에서 아래의 〈그림 3-1-8〉에서 보는 것처럼 최소 6~7개 지역에서 계엄군의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작전 과정에서 몇몇 민간인은 계엄군과 무장시위대 간에 교전상황에서 사망하기도 했으나, 몇몇 민간인은 이러한 교전과 무관한 상태에

29 제3공수여단, 『전투상보』(1980), 서울지검 102-039, 46093-46094쪽.

30 제11공수여단, 『전투상보』(1980), 서울지검 102-039, 46131-46132쪽.

31 제7공수여단, 『전투상보』(1980), 서울지검 102-039, 46114-4611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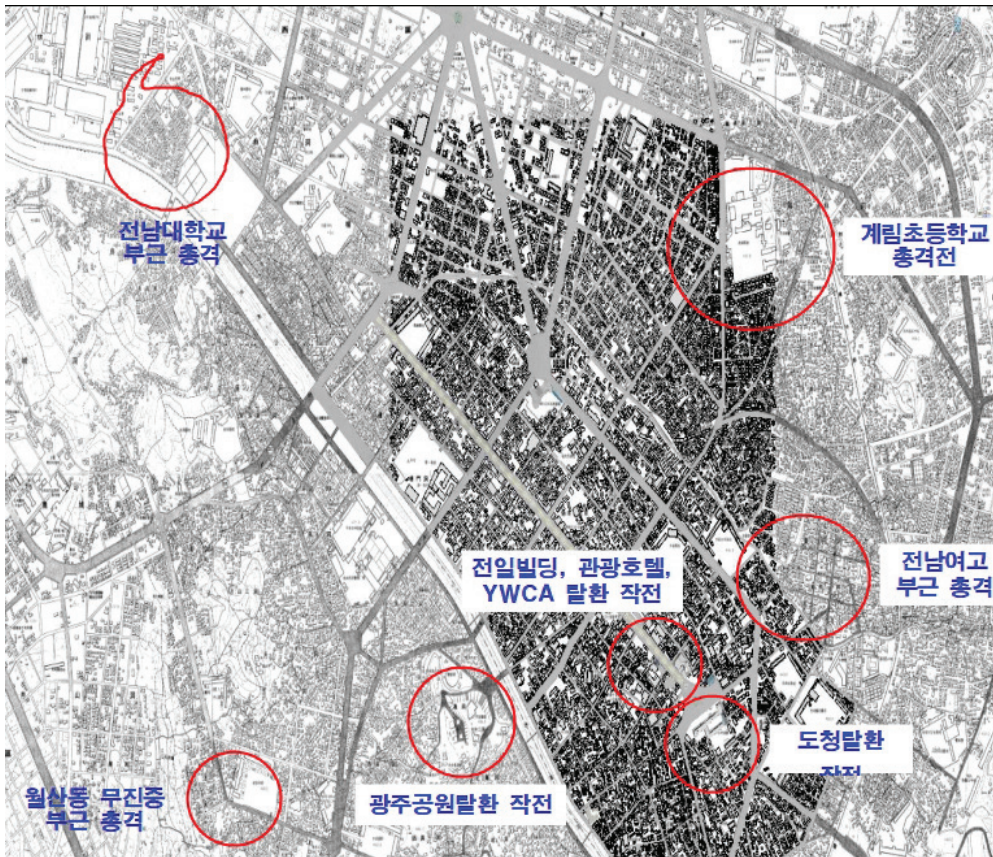
32 제20보병사단, 『광주사태 총정작전 상보』(1980), 서울지검 102-039, 45932-45933쪽.

33 제31항토보병사단, 『전투상보』(1980), 서울지검 102-039, 45862쪽.

육군본부, 『총정작전요도』(1980), 『광주사태(상황, 경과, 결과)』, 서울지검 102-039, 46540쪽, 「5.27 투입부대」, 기무사 제공자료 201-46, 408쪽.

서 계엄군의 총격 등으로 사망했다. 도청 구내, 도청 인근, 월산동, 광주공원, 광주고등학교 근처에서는 무장시위대와 계엄군 간 교전 또는 대치상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지만, 전남여고와 전남대학교 근처에서 무장시위대와 계엄군 간 총격이 있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사망자 발견 지점, 시신 수습 장소, 목격자들의 증언, 기타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인한 결과, 25명 사망자 중 도청 구내에서 14명, 도청 밖 인근 지역에서 5명, 그리고 도청 정문에서 최소 500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6명이 희생되었다.



〈그림 3-1-8〉 광주재진입 개요

〈표 3-1-24〉 사망 장소별 사망자 수

구분	합계	도청 내	도청 인근	계림동 등	월산동	전남대 근처
사망자 수	25	14	5	4	1	1

(2) 도청 내

제3공수여단 11대대 1지역대(1, 2, 3, 4중대), 3지역대 11중대, 대대본부 특공 중대로 편성된 병력은 1980년 5월 26일 18시경 헬기를 이용 제1전투비행단을 출발하여 주남마을에 도착해서 대기했다가 01시 40분경 조선대 뒷산으로 이동했다. 이후 03시에 목표지역으로 이동했는데, 조선대학교(종합운동장) →조대부중 →조대여고 →도내기시장 →전남기계공고 →노동청 →도청 후문이 대략적인 이동 동선이다.

부대별 도청 진입 순서를 보면, 3중대 →2중대 →1중대 →특공중대 →4중대 →11중대 순이다. 3중대와 11중대는 도청 별관 쪽으로, 4중대와 특공중대는 도청 본관과 회의실 쪽으로, 1중대와 2중대는 도청 후문 쪽에서 경찰국 본국 쪽으로 진격했다.³⁴

이 작전 과정에서 도청 구내에 머물고 있던 14명이 계엄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시신 발견 장소, 시체검안서 등의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14명의 사망 장소는 아래 표와 같다. 도청 회의실(김동수, 윤개원(상원)) 2명, 후관동(문용동, 서호빈, 박병규) 3명, 경찰국 본관(문재학, 안중필) 2명, 경찰 민원실(이정연, 홍순권, 박진홍) 3명 등이다. 이강수, 유동운, 민병대, 박성용은 정확한 사망위치가 확인되지 않았다.

34 제3공수여단, 「전투상보」(1980), 서울지검 102-039, 46093-46095쪽.

〈표 3-1-25〉 전남도청 내 장소별 사망자명단

구분	계	도청		경찰국		미상
		회의실	후관동	본관	민원실	
사망자 수	14	2	3	2	3	4
사망자		김동수 윤개원 (윤상원)	문용동 서호빈 박병규	문재학 안종필	이정연 홍순권 박진홍	유동운 이강수 민병대 박성용

사망자는 전부 이른바 “최후의 항전”을 위해 마지막 날까지 도청 안에 머물렀던 시민군이다. 개별 사망자의 사망 당시 장면을 목격한 참고인 증언이 매우 제한적이고 희생자의 사망 당시 상태를 기록한 공적 기록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5·18조사위는 이 14명의 사망자들이 사망 직전에 계엄군과 실제로 교전을 했는지, 비무장 상태의 항거 불능 상태였는지, 아니면 투항 의사를 밝혔는지를 특정할 수 없었다.

검시기록상 14명 사망자 사인은 모두 총상이며, 이 중 단발성(1발)총상자는 윤상원 등 6명, 다발성(2발 이상) 총상자는 문용동 등 8명으로 나타났다.³⁵ 사망자 총창의 흔적이 1개라는 것은 당시 계엄군과 무장시위대 간의 교전이 상상처럼 격렬하게 전개된 것이 아니라 최정에 병력의 압도적 화력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반증한다.

윤상원(윤개원)은 5월 27일 04시에서 06시 사이, 계엄군의 도청 진입 과정에서 복부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절명한 것으로 판단된다.³⁶ 이후 계엄군의 진입 과정에서 사용된 섬광탄(스턴탄)에 의해 불이 옮겨붙으면서 시신이 손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자상에 의한 탈장이 있었으나 이는 직접적 사인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35 다발성 총상이란 2발 이상의 총창의 흔적을 말하며, 이는 5·18조사위 주관 법의학 전문가 자문단 회의 결과(2023. 9. 7. / 12. 4.)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36 1980. 5. 27. 당시 사망자와 함께 있다 당시의 총격상황과 총격 이후 이동과정 등을 목격한 이○○의 진술(총격 장소 전남도청 2층 회의실 무대 후면 좌측 계단실 창문틀), 군 검찰 김이수의 수첩에 ‘총상이 아닌듯 하나 뒤에서 앞으로 사출구’가 있다는 기록 등

판단할 수 있는데, 이는 첫째 사망 이후 시체의 이동 과정, 둘째 선행사인이었던 총상(관통)에 의한 상처의 크기, 셋째 사후 손상 등을 고려한 결과이다.³⁷

(3) 전남도청 인근

이 지역은 제11공수여단 61대대 2지역대 4중대 병력이 담당했다. 이 병력은 27일 01시 50분경 조선대학교 뒷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03시 30분경 도청으로 우회해서 전일빌딩, 관광호텔, YWCA 회관을 점령했다.³⁸ 이 작전 과정에서 5명의 민간인이 계엄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YWCA 회관 안에서 2명, YMCA 회관 정문 앞에서 1명, 그리고 YWCA 회관 근처와 시외버스공용터미널 근처에서 1명이다.

〈표 3-1-26〉 전남도청 인근 지역 장소별 사망자명단

구분	계	YWCA 회관	YMCA 회관	대의동 (대의동파출소)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사망자 수	5	2	1	1	1
사망자		박용준 유영선	김종연	염행열	권호영

5명의 희생자 중 YWCA 회관 내 희생자 2명(박용준, 유영선)과 YMCA 회관 정문 앞 희생자 1명(김종연)은 무장시위대의 일원으로 계엄군과 대치 상태 또는 교전 중에 계엄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다. 시외버스공용터미널내 희생자 권호영은 5월 26일 19시경 비상 출동차 짚차를 타고 도청 정문을 나갔는데³⁹ 다음 날 계엄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5·18조사위 조사 결과 권호영은 기동타격대의 일원으로 대원들과 함께 5월 27

37 법의학 전문가 자문단, 「자문의견서」(2023.12.04.), "시체검안서에 총창에 대한 기록이 없었지만, 당시 윤상원을 직접 검안하지는 않았지만, 검시 과정에 참여한 문형배 선생님이 직접 눈으로 목격된 사실을 증언하였다. 의학 적 근거로 충분히 받아들일수 있다고 판단하여 총창사망으로 재분류한다."

38 제11공수여단, 「전투상보」(1980), 서울지검 102-039, 46131-46133쪽.

39 5·18조사위, 「참고인 백○○ 진술조서」(2023.05.09.).

일 새벽 시외버스공용터미널 부근 여인숙의 옥상에 있다가 제20사단 62연대 병력에 의해 총격을 당하여 사망했다. 그동안 권호영은 행방불명자로 분류되었으나 2002년 유전자 검사 결과에 의해 사망자로 전환되었다.

사망자 5인의 직접 사인은 전부 M16에 의한 총창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YMCA 회관 정문 앞에서 숨진 김종연의 사망 장소를 추정하는 데에 있어, 외신기자 패트릭 쇼벨이 촬영한 사진을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김종연이 YMCA회관 정문 앞에서 다량의 피를 흘리며 앉아 있는 모습과 도와달라는 몸짓을 하는 듯한 사진, 그리고 쓰러져 누워있는 김종연 앞을 전차가 지나가고 있는 사진 등이 그것이다. <그림 3-1-9> 김종연은 5월 26일 늦은 밤부터 YMCA 정문 앞에서 보초를 서고 있다가 5월 27일 03시에서 04시 사이부터 전일 빌딩 등 주요 건물을 확보하기 위해 작전을 수행하던 제11공수여단의 총격으로 상체(우흉부/우견갑부)에 총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김종연은 도청 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분류되어 왔다.



<그림 3-1-9> 패트릭 쇼벨이 촬영한 5. 27. YMCA 앞 김종연 사망 전 모습

(4) 계림동 인근

5월 27일 02시 30분경 보병 제20사단 62연대 2대대 6·8중대는 광주교도소를 출발하여 작전통제선 1선(PL#1)을 통과한 이후 03시 20분경에 계림초등학교와 광주고등학교

인근에 도착하였다.⁴⁰ 이 과정에서 지역방어 임무를 수행하던 15~30여 명의 무장 시위대(기동타격대)와 계엄군 사이에 교전이 벌어졌다. 이때 열세에 몰린 다수의 무장 시위대가 무기를 버리고 주택가로 숨어들었는데, 계엄군들이 이 일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4명의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광주고등학교 구내에서 2명, 전남여고 뒤 동계천 부근과 인근 지역에서 2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표 3-1-27〉 계림동 인근 사망자 명단

구분	계	광주고등학교 구내	전남여고 뒤 동계 천변	유한양행 전남영업소
사망자 수	4	2	1	1
사망자		양동선 조일기	이금재	오세현

4명의 사망자 중 최소 3명은 무장시위대 활동과 무관한 민간인이다. 광주고등학교 수위 양동선은 숙직 근무 중에 교내에서 사망했다. 당시의 검시 기록, 시체검안서 등의 증거와 시신을 수습한 공무원(광주시청 사회과 직원 조성갑)의 증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양동선은 계엄군에게 항거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계엄군의 총격이 원인이 되어 사망했다.

조일기의 시신은 양동선과 함께 광주고등학교 교내에서 발견되었다. 구술 등 관련 기록을 종합해보면, 조일기는 5월 27일 이른 아침에 교도소를 출발하여 도청 쪽으로 진입 하던 제20사단 61연대 2대대 6·8중대에 체포된 후 광주고등학교 구내로 연행되어 집단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사망했다.⁴¹ 조일기의 시신에서 총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안면부 등을 비롯한 전신에 다발성 타박상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5·18조사위의 조사 결과, 이금재와 오세현은 일터로 나가다가 희생되었다. 한약방 중

40 제20보병사단, 「광주사태 총정작전 상보」(1980), 서울지검 102-039, 45932-45933쪽.

41 5·18조사위, 「참고인 범○○ 진술조서」(2023.06.09.), 5·18조사위,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3.06.14.).

업원이었던 이금재는 5월 27일 07시 시에서 07시 30분 사이 한약방으로 출근하던 중 동구 전남여자고등학교 뒤편 동계천변 근처에서 수색 작전을 전개하던 제20사단 62연대 2대대 병력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⁴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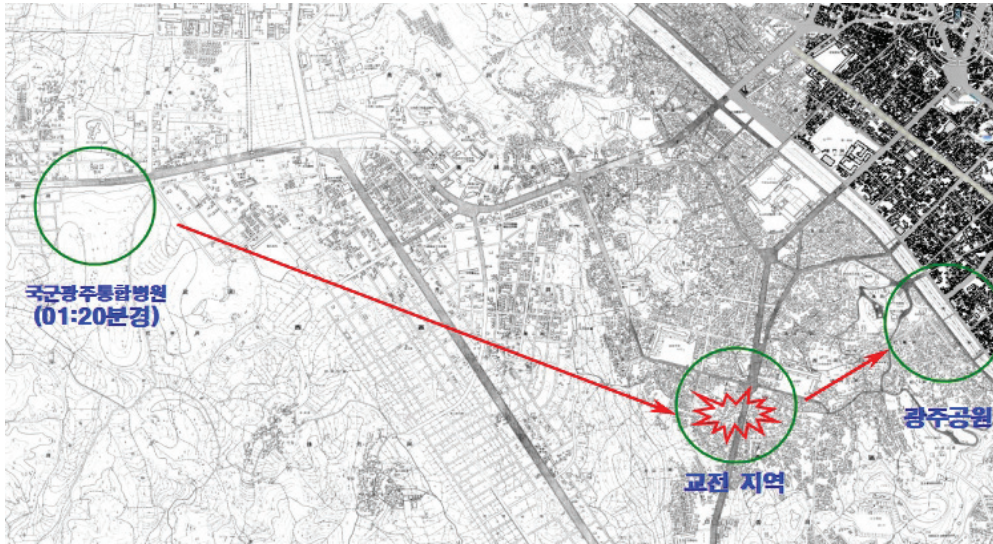
유한양행 직원이었던 오세현은 회사 동료 이흥주와 함께 5월 26일 18시부터 유한양행 전남영업소에서 숙직 근무 중이었다. 그는 5월 27일 05시 30분경 계엄군들이 영업소 숙직실의 창문을 부수는 등 침입을 시도하자 위협을 느끼고 이웃 민가로 피신하다가 계엄군에게 노출되어 총격으로 사망하였다.

(5) 월산동 무진중학교 근처

제7공수여단 33대대 8지역대 침병지대는 5월 27일 01시경 제1전투비행단을 출발하여 국군광주통합병원에 도착하였고, 이후 월산동을 거쳐서 점령지역인 광주공원으로 이동하였다.⁴³ 이 과정에서 월산동 주택가에서 지역방위 활동을 하던 10여 명의 무장시위대와 교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1명(김성근)이 계엄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기록 등을 검토하면, 김성근의 사망 시간은 01시 30분에서 03시 10분 사이로 추정된다.

42 육군본부, 『충정작전요도』(1980), 『광주사태(상황, 경과, 결과)』, 서울지검 102-039, 46540쪽.

43 제7공수여단, 『전투상보』(1980), 서울지검 102-039, 46114-46115쪽.



〈그림 3-1-10〉 월산동 무진중학교 일대 작전 개요

희생자 가족 증언과 정황증거를 토대로, 5·18조사위는 김성근이 무장시위대의 일원으로 활동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6) 전남대학교 근처

광주재진입작전이 마무리된 이후인 5월 27일 밤에도 계엄군의 총격에 의한 사망자가 1명 발생했다. 여중생 김명숙은 5월 27일 저녁 전남대학교 정문 근처에 있는 집에서 잠시 외출했다가 집 근처에서 20시경 계엄군의 총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좌측 골반(치골 부분)에 총창을 입고 국군광주통합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1시 40분경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⁴⁴

5·18조사위 판단에 의하면 김명숙은 광주 재진입작전 이후에도 일정 기간 전개되었던

44 5·18조사위, 접수번호 조사과-633(2022. 7. 18),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예비군 동원훈련 시행 여부 확인 회신」

계엄군의 ‘소탕 작전’ 최초 희생자다. 당시 기록과 진술 등을 종합하면, 전남대학교 지역에서 소탕·수색작전을 전개하던 제31사단 96연대 2대대 병사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제31사단 96연대 2대대 병력(장교 56, 사병 693)은 5월 27일 04시경 광주 서구 지역 평정(일신방직 일대 점령)을 위한 작전을 완료하고 전남대 일대에서 진지를 편성하고 ‘소탕 및 수색작전’을 실행한 것으로 판단된다.⁴⁵

〈표 3-1-28〉 광주재진입작전 사망자

구분	성명	나이	피해일	피해지	사인
1	유동운	19	5. 27.	도청 구내	총상
2	김동수	21	5. 27.	도청 구내	총상
3	이정연	20	5. 27.	도청 구내	총상
4	이강수	19	5. 27.	도청 구내	총상
5	박성용	17	5. 27.	도청 구내	총상
6	문재학	15	5. 27.	도청 구내	총상
7	안종필	15	5. 27.	도청 구내	총상
8	민병대	20	5. 27.	도청 구내	총상
9	홍순권	19	5. 27.	도청 구내	총상
10	박진홍	21	5. 27.	도청 구내	총상
11	박병규	19	5. 27.	도청 구내	총상
12	윤개원	28	5. 27.	도청 구내	총상
13	문용동	26	5. 27.	도청 구내	총상
14	서호빈	19	5. 27.	도청 구내	총상
15	박용준	23	5. 27.	YWCA	총상
16	유영선	27	5. 27.	YWCA	총상

45 「5. 27. 투입부대」 기무사 제공자료 201-46, 408쪽. 출동병력 현황은 자료별 일부 상이하나 서울중앙지검 광주사태 상황일지와 광주사태 관련 각종 통계 자료에서 위 현황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대는 군 검찰 김이수가 작성한 ‘검시수첩’에 5월 27일 96연대 2대대의 기록이 있는 바 이를 기초로 특정하였다.

구분	성명	나이	피해일	피해지	사인
17	오세현	24	5. 27.	동명동 유한양행	총상
18	김종연	18	5. 27.	YMCA 앞	총상
19	이금재	28	5. 27.	전남여고 뒤편	총상
20	염행열	16	5. 27.	대의동파출소 인근	총상
21	권호영	16	5. 27.	시외버스공용터미널	총상
22	양동선	44	5. 27.	광주고 내	총상
23	조일기	31	5. 27.	광주고 내	둔력에 의한 손상
24	김성근	23	5. 27.	무진중 인근	총상
25	김명숙	14	5. 27.	전남대정문앞	총상

3) 민간인 살해의 반인도성

가) 미성년자,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망 실태

5·18조사위 조사결과 계엄군의 폭력적 진압 작전 중 미성년자, 여성, 노인 등 저항 능력이 없거나 시위와 무관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사망자 중에는 14세 이하 미성년자가 9명, 50대 이상이 11명, 여성이 12명이었다.

중학교 3학년생 박기현(14세, 남)은 5월 20일 19시경 자전거를 타고 책방에 나갔다가 동구 전남여고 뒤편에서 계엄군에게 구타당해 사망했다. 검시 기록상 ‘뇌타박상, 두부 배흉부 전흉부 우완상부 다발성 타박상’인데 김경철과 유사하게 온몸을 진압봉 등으로 두들겨 맞아 사망한 것이다.

중학교 1학년생 방광범(12세, 남)은 5월 24일 13시 50분경 효덕동 원제마을 저수지에서 떡을 감고 귀가하다 송암동 오인 교전 후 계엄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고, 효덕초교 4학년 전재수(11세, 남)는 효덕초등학교 놀이터 근처에서 역시 계엄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임신 8개월이었던 최미애(23세, 여)는 5월 21일 13시 50분경 북구 전남대 정문 인근 자신의 집 앞에서 남편을 기다리다 계엄군이 쏜 총에 이마를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다.

김경철(23세·남)은 “3살 때부터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장애인”이었다.⁴⁶ 모친은 김경철이 입 모양으로도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 김경철은 5월 19일 오전 11시경 금남로 3가 도로상에서 계엄군에게 진압봉과 군홧발로 마구 구타당해 그날 오후 사망했다. 목격자에 의하면 김경철은 구타하는 계엄군에게 손짓하며 무언가 계속 말하려 하였는데, 이 때문에 구타가 더 심해졌다고 한다. 검시 기록상 김경철 사인은 ‘후두부 찰과상 및 열상, 좌안상검부 열상, 우측상지전박부 타박상, 좌견갑부관절부 타박상, 전경골부 둔부 및 대퇴부 타박상’이다. 온몸이 으깨질 정도로 두들겨 맞은 것이다.

송정교(50세·남)는 5월 24일 15시경 광주에 있는 가족들을 남편 집으로 피신시키려던 중 송암동 효덕초등학교 인근에서 계엄군이 총을 쏘자 딸을 숨기려다 복부 등에 총을 맞아 사망했다.

나) 거주지 인근 민간인 사망

자택이나 사업장 인근에서 시위와 무관하게 희생된 사망자도 여럿이다. 5월 21일 교도소 인근에서 희생된 담양 주민 고규석과 임은택이 무장시위대의 활동과 관련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5월 22일 국군광주통합병원 근처에서 희생된 희생자 전원은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행인이었다. 이매실(68세·여)은 5월 22일 서구 쌍촌동 자택에서 국군광주통합병원 확보 작전을 벌이던 계엄군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했고, 김재평(29세·남)도 이날 완도 거주 중 부인의 출산으로 서구 쌍촌동 친척집에 왔다가 목욕을 마치고 나오던 중 계엄군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김상태(30세·남)는 5월 23일 15시경 본인이 운영하던 가게에 라면을 들여놓기 위해

46 5·18조사위, 「유가족 임○○ 진술조서」(2023.04.27).

자전거를 타고 대리점에 다녀오다가 금호고등학교 정문 근처에서 계엄군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강정배(28세·남)는 5월 24일 23시경 광주변전소 골목길에서 낮선 행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계엄군과 마주치자 당황해서 도망가다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서구 입암동에 사는 박연옥(49세·여)은 같은 날 12시경 중학교 1학년생인 아들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송암동 아들 집을 찾아가다 총소리가 들리자 하수구로 피신하였는데 하수구 안까지 가한 계엄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한약방 직원인 이금재(28세·남)는 광주재진입이 벌어진 5월 27일 07시경 한약방으로 출근하던 중 동구 전남여자고등학교 뒤 동계 천변에서 계엄군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다) 확인사살, 임의처형 등

5·18민주화운동 기간 계엄군에 의해 자행된 일부 잔학행위는 검사와 군 검찰관이 작성한 검시조서에 생생히 기록되어 있다. 1985년 광주지검은 이 검시조서를 국회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⁴⁷ 이는 신군부의 입장에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검시조서조차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참혹한 상태의 시신이 많았다는 방증이다.

5월 23일 09시 30분경 광주-화순간 소태동 마이크로버스에 집중 총격을 가한 이후 버스에 올라간 제11공수여단 62대대가 생존자 확인을 위해 두 차례 버스 안을 수색하면서 확인사살을 했다는 다수의 진술이 존재한다. 목격 주민들은 '버스에 올라간 군인이 총을 드르륵 쏘는 소리를 들었으며, 그때 쏘지만 앉았어도 탑승자들은 살아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등의 진술을 했다.⁴⁸ 마이크로버스에 사격명령을 내렸던 62대대 5지역대장

47 1985년 6월 광주지검은 '광주사태 번사체 검시 보고서 요지'를 대검찰청에 보고하면서 '5·18사망자 검시 결과 검토 의견'을 내고 "잔인한 상흔이 많아서 검시조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했다. (서울지방검찰청, 1996)

48 5·18조사위, 「참고인 유○○ 진술조서」(2022.12.14), 7~8쪽, 5·18조사위, 「참고인 박○○ 진술조서」(2023.04.20.), 4쪽.

박동주 대령은 대원들이 차에 올라 총을 쏘았다는 보고를 받았고,⁴⁹ 5월 24일 제11공수여단과 교체되어 주남마을에 배치된 제20사단 61연대 1대대 이○○ 일병은 버스 안에 많은 탄피가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⁵⁰ 그러나 피격 버스의 유일한 생존자인 홍○○의 면담 자료에서는 본인이 버스에서 내려갈 때까지 확인사살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술은 없었다.⁵¹

확인사살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는 5월 23일 버스에서 내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김재형과 김정, 김현규 등으로 이들은 머리와 가슴, 배에 총상을 입었는데, 5월 24일 버스에서 내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7명이 대부분 전신에 다발성 총상을 입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5월 24일 14시경 송암동에서 계엄군 간 오인교전이 끝난 뒤 대대적인 수색 과정에서 계엄군에게 붙잡힌 권근립, 김승후, 임병철이 현장에서 임의처형 당했다. 권근립(25세·남)은 포항제철소 직원으로 송하동 묘법사에 살고 있었다. 그는 묘법사와 한 건물 내에 있는 집 안에 있었는데, 5월 24일 15시 30분경 계엄군에 의해 구타를 당하며 끌려 나와 총을 맞고, 또 손가락 부분이 잘린 채 사망했다. 권근립의 집에 세 들어 살던 임병철(23세, 남), 김승후(18세, 남)도 집안에서 끌려나와 가혹행위를 당하고 인근 수로에서 등 뒤에 수발의 총탄을 맞고 사망했다. 권근립의 모친 김금순은 제11공수여단의 무차별 총격이 끝난 뒤 아들을 찾아다니다가 묘법사 앞 도랑에서 아들 권근립과 마을 청년 등 2명이 죽어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⁵²⁵³

49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참고인 박○○ 진술조서」(1995.05.29.), 『5·18사건 수사기록』 21권, 29668쪽.

50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참고인 이○○ 면담보고」, (2007.05.25.), 과거사위 104-211, 455쪽

51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참고인 홍○○ 진술조서」(1995.12.27.)
5·18조사위, 「참고인 홍○○ 진술녹취」(2021.04.30.)

52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참고인 김○○ 진술조서」(1996.01.02), 『5·18사건 수사기록』 111권, 109965-109970쪽.

53 5·18조사위, 「참고인 오○○ 진술조서」(2023.02.03.), 제11공수여단 61대대 2지역대 6중대 16지대장 오○○은 “이날 송암동에서 장갑차가 피격당하자 중대를 이끌고 금당산 쪽으로 수색을 시작했는데 오른쪽에 3채 정도 있는 민가에 청년 3명이 있었다. 총을 들고 있지않아 내가 ‘나오지마’하고 남선연탄쪽 수색을 계속한 뒤 돌아오는 길

양민석(19세, 남), 채수길(21세·남)은 5월 23일 9시 30분경 동구 채석장 입구 마이크로버스 피격 사건 때 부상을 입고 계엄군에 의해 12시경 경운기(손수레)에 실려 여단 본부로 이송되었다가, 얼마 뒤 여단 헬기장 숲에서 모두 사살되었다. 사살 당시 이 사건은 군 상부에 보고되지 않았으며, 유해는 6월 2일 주민의 신고로 발굴되었는데 2002년에야 유전자 검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사인 오류 정정 및 사망장소 추가 확인

1) 사인 오류 정정

5·18민주화운동 기간 중 민간인 사망자의 사인은 발표 시기와 기관에 따라 다르다.

1982년 육군본부가 발간한 『계엄사』는 민간인 사망자 162명의 사인을 M1, 카빈 117명, 타박사 18명, 수류탄 파편상 12명, 자상 11명 등으로 분류했다.⁵⁴ 1985년 국방부는 민간인 사망자 166명을 총상(M16 29명, 카빈 37명, 기타(총상)67명, 타박사 15명, 차량사 8명, 자상 8명 등으로 분류했다. 1988년 광주지방검찰청 「광주사태 변사체 검시보고서 요지」는 민간인 사망자 165명 중 총상 사망자 133명을 M16 총상 98명, 카빈 총상 28명, 기타 총상 7명으로 분류했다. 5·18민주화운동 직후 1980년 검찰의 검시현황에 따르면, 민간인 사망자 165명 가운데 M16 사인이 96명, 카빈 26명, 기타(총상)9명, 자상 4명, 타박사 18명 등이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사망자에 대한 검시는 부검 체계의 한계, 시체의 부패 진행 등의 사유로 정확한 사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총상의 경우 사입구와 사출구의 크기는 피격 거리, 직격탄인지 유탄인지의 여부, 피격 부위 및 각도 등 여러 사정에 따라

.....
에 보니 청년 3명이 죽어있었다.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현장에서 총을 쓴 것 같았다. 그게 더 가슴아프다"라고 진술했다.

54 육군본부, 『계엄사』(1982), 140쪽.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입구와 사출구의 직경 만으로 가해 총기의 종류를 판단한다는 것은 정확한 의미의 부검이라고 보기 어렵다.⁵⁵ 당시 전두환 신군부는 사인이 카빈이면 광주 시민에 의한 총격으로, 사인이 M16이면 계엄군의 총격으로 간주해 논란이 됐다.⁵⁶

검안 당시 판단기준은, 검안의가 사입구와 사출구의 크기를 재어 ① 사입구에 비해 사출구의 크기가 큰 경우와, 사입구만 확인되는 경우, 사입·사출구가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으나 손상부위가 큰 시체는 M16으로 구분하고, ② 그렇지 않은 시체들은 카빈, ③ 둘 다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는 기타로 분류하였다.⁵⁷ 또 M16 사망자의 경우 앞쪽에서 맞으면 군에 대항하다가 맞은 것으로 하여 ‘폭도’로, 반대의 경우에는 ‘비폭도’로 분류되었다.⁵⁸

5·18조사위는 사망원인에 따른 사망자 현황이 서로 다른 가운데 신군부의 주장처럼 카빈 총상은 계엄군과 무관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검찰과 군 검시조서를 분석했다. 1988년 검찰은 「광주사태 변사체 검시보고서 요지」에서 카빈 사망자를 28명으로 발표했으나 이는 일부 비대상자를 포함한 오류가 있는 통계로서, 5·18조사위는 1980년 검시기

55 1980년 5·18 당시 검시에 참여했던 검시의사 및 검시 검찰, 국방부 법의학자, 총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는 “총창에서 사용 총기의 구분은 단순히 사입구의 크기만으로 한정할 수는 없으며, 사망 상황, 발사거리, 사입구의 크기와 모양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과거 폭도 및 비폭도로 구분할 때의 판단기준이 법의학적으로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 향후 재분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자문했다. 또 사입구로 M16이나 카빈총을 분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과거 폭도 및 비폭도의 판단기준은 법의학적으로 전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총기 분류는 (새로)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2023.09.07. / 12.04.)

56 서울지방검찰청, 「사망자 심사 소위원회 경과보고」(1980.06.20), 기무사, 「사망자 심사보고」, 1980. 폭도-비폭도의 구분은 보상금 지급 기준이 되었다.

57 검찰 검시기록상 총상에 의한 사인은 M16과 카빈 외에 기타(총상)으로도 분류되었다. 기타(총상)으로 분류된 총기의 종류도 현재로서는 파악이 어렵다. 다만 5·18민주화운동 기간 계엄군이 M60 기관총을 사격을 하였거나 배치한 사실을 확인한 검찰 수사결과와 5·18조사위가 확보한 계엄군의 진술, 그리고 M60 기관총 실탄과 카빈 실탄의 제원(7.62mm)이 같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카빈(M16 포함)사망자 중 M60 기관총에 의한 사망자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58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참고인 문○○ 진술조서」(1995.06.21), 5·18조사위, 「참고인 문○○ 진술조서」(2022.01.28). 당시 검안의사 문○○는 “총상의 종류까지 판단해달라는 검찰측의 요구에 정확한 판정이 불가능하다고 거절하였으나, 최대한 판단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위 기준으로 분류했다. 당시 안기부는 최대한 폭도의 수를 늘리려 하였고, 저와 민간측은 비폭도의 수를 늘리려 애를 썼다.”고 말했다.

록상 카빈 사망자를 26명으로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사인을 살펴보았다.

사망 원인이 카빈으로 분류된 최승희는 5월 21일 총상을 입고 13시 15분 전남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이때는 계엄군과 무장시위대와의 교전이 시작되기 이전의 시각이다. 비슷한 시각 총상을 입고 ‘14:00 기독교병원 사망’이라고 기재된 조사천도 사인이 카빈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조사천의 경우 유품 속 총알 파편에 대한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 연구소 감식 결과 M16 총알 탄피로 확인됐다.⁵⁹

이성귀는 5월 21일 09시에서 13시 50분 사이 전남대 정문 앞에서 총격을 받고 사망한 뒤 계엄군에 의해 전남대 이학부 건물 뒷산에 암매장되었다가 다음 날 학교 직원들에게 발견되어 도청으로 옮겨졌다. 군 검찰관 김이수는 사망자 검시내용을 기록한 수첩에 ‘두부손상에 의한 뇌손상 M16’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군 참여결과보고는 이성귀의 사인을 처음에는 ‘카빈-폭도’에서 ‘비폭도로 추정’으로 정정했고, 최종 사인은 ‘기타 총상’에서 ‘카빈’으로 정정하였다. 5월 20일 자정을 전후 광주역 인근에서 사망한 김재화는 처음에는 M16 사망으로 분류됐는데 검시기록상 ‘신역광장 총상 5. 21. 00:00 노광철 의원 사망’으로 기재돼있고, 군 참여결과보고에는 ‘근접사로 인한 M16’으로 기재돼있다. 당시 시위대의 무장 시기 등을 감안하면, 김재화는 M16 사인으로 판단되나 검찰은 최초 M16사인을 카빈으로 정정했다.

검시조서는 물론 군 작전기록에서도 계엄군에 의한 피격 사실이 확인된 사례도 카빈으로 분류되었다.

5월 20일 광주역 일대에서 계엄군의 시위진압과정에서 발포로 사망한 김재화·김만두도 카빈 사인으로 분류되었다.⁶⁰ 5월 21일 광주교도소 인근 호남고속도로상에서 계엄군의 총격에 의해 피격된 것으로 판단되는 고규석, 임은택 등의 사인을 카빈에 의한 총상으로

59 5·18조사위, 접수번호 조사2과-1750(2023.11.13), 「감정결과 통보(국과-1530-총기폭발물과-23-52)」.

60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 「5·18 관련 사건 수사결과」(1995.07.18.), 「5·18사건 수사기록」 1권.

분류하였다.⁶¹

5·18조사위는 카빈 사망으로 분류된 희생자의 사망 시간, 사망 장소 등을 종합하여 사망 경위를 재구성하였고, 그 결과 사망자 26명의 사인을 아래 <표 3-1-29>와 같이 판단하였다. 5·18조사위는 사망 당시의 상황과 목격자 진술, 시체검안서 등을 종합하여 김만두, 김재화 등 24명과 국방부 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의 사망자 관련 금속유품 총알 파편 감식결과 M16 총탄으로 확인된 조사건을 포함한 모두 25명의 사인을 M16으로 확인·판단(추정 포함)하였다. 다만 5·18조사위는 김광복의 사인을 카빈으로 판단하였다.⁶²

<표 3-1-29> 1980년 광주지검 검시조서상 카빈 사망자(26명)

순	사망자 (조서상)	5·18조사위 조사 결과		'80 광주지검 변사체 검시보고 ⁶³	'80 군검찰 검시 참여결과보고 ⁶⁴	5·18조사위 판단
		사망(선행사인) 일시	사망(선행사인) 장소			
1	고규석	5. 21. 19:30경	광주교도소 부 근 고속도로상	총상(car)	총상(car) “사입구 극히 작음 0.5cm 사출구”	M16
2	김광복 (유진관)	5. 22. 22:00경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총상(car) “5.22 22:00경 공 용터미널에서 피격”	총상(car) “공용터미널 시민의 총”	카빈
3	김만두	5. 20. 21:00 이후 ⁶⁵	광주역 일대	총상(M16 → car) 변경 기록	총상(M16 → car) 변경 기록 “0.5x0.5 명관”	M16

61 제3공수여단 전투상보(광주교도소 작전내역)에 5월 21일 광주교도소 인근에서 제3공수여단에 의한 두사람의 피격사실을 기재하고 있다. 「군 검시참여 결과보고」에는 ‘광주로 수급왔다가 담양 자택으로 귀가중 총격으로 사망’이 기재되었다.

62 전남대병원 응급환자기록지(5월 22일)에 ‘공용터미널에서 오후 10시경에 시민의 총에 의해 피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3 사인과 더불어 총상(총기)에 관한 기록이나 병원이송/사망일시에 관한 기록이 있을 경우 함께 옮겨 적음.

64 사인과 더불어 총상(총기)에 관한 기록이나 병원이송/사망일시에 관한 기록이 있을 경우 함께 옮겨 적음.

65 광주역 총상 사망자 상해일시: 발표된 보고서상 광주역 일대 발표 시간 확인 후 반영

순	사망자 (조서상)	5·18조사위 조사 결과		'80 광주지검 변사체 검시보고 ⁶³	'80 군검찰 검시 참여결과보고 ⁶⁴	5·18조사위 판단
		사망(선행사인) 일시	사망(선행사인) 장소			
4	김재영 (불상 122)	5. 21. 13:00 이후	전남도청 일대	총상(car) “하배북부관통총창 0.5x0.5, 1x1”	총상(car) “하배북부관통 총창 0.5x0.5, 1x1”	M16
5	김재화	5. 20. 21:00 이후	광주역 일대	총상(M16 → car) 변경 기록 “신역광장에서 총상 5.21. 00:00 노광철 의원에서 사망”	총상(M16 → car) 변경 기록 “근접사로인한 M16”	M16
6	김중식 (불상 119)	5. 21. 13:00 이후	전남도청 일대	총상(car)	총상(M16, car) 2곳 모두 동그라미	M16
7	나홍수	5. 21. 13:00 ~17:15경	전남도청 일대	총상(car) “5.21 17:15 전대병원 DoA”	총상(car) “21 17:15 전대병원 죽어서 도착”	M16
8	노경운	5. 22. 18:00 ~21:15경	광주교도소 일대	총상(기타 → car) 변경 기록 “5. 22. 21:15 적 십자병원 도착 전 사 망”	총상(car)	M16
9	민청진	5. 21. 13:00 ~13:55경	전남도청 일대	총상(car) “5.21. 13:55 병원도착”	총상(미상) “검찰은 카아빈 이나 확실하지 않아 미상으로 분류”	M16
10	박인천	5. 21. 21:00경	남선연탄 앞	총상(car)	총상(car) “대퇴부관통총창 0.5x0.5, 1x1”	M16
11	박종길	5. 23. 08:40 이전 ⁶⁶	미상	총상(car)	총상(car) “좌흉부상(1/3) 직경 6mm의 맹관총상”	M16

66 1980. 5. 26. 07:00 국군광주통합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

순	사망자 (조서상)	5·18조사위 조사 결과		'80 광주지검 변사체 검사보고 ⁶³	'80 군검찰 검사 참여결과보고 ⁶⁴	5·18조사위 판단
		사망(선행사인) 일시	사망(선행사인) 장소			
12	서만오	5. 22. 10:00경	광주교도소 부근	총상(car)	총상(미상 → car) 변경 기록 “의사 car 추정”	M16
13	신동남 (불상044)	5. 20. 21:00 이후	광주역 일대	총상(기타 → car) 변경 기록	총상(car) “칼빈 5.21 사망”	M16
14	양창근 (문민규)	5. 21. 21:00경	남선연탄 앞	총상(car) “경부 관통총 창 0.5x0.5, 0.5x0.5”	총상(car) “경부 관통총 창 0.5x0.5, 0.5x0.5”	M16
15	윤성호	5. 21. 15:30 ~16:50경	무등극장 건너 편 광주전화사	총상(car) “21 16:50경 무등극장 앞 사무실에서 총상”	총상(미상 → car) 변경 기록 “5.21. 16:50 경 무등극장 부 근에서 유탄”	M16
16	윤형근	5. 21. 13:00 ~15:30경	전남도청 일대	총상(car)	자상→총상 (car) 변경 기록	M16
17	이경호	5. 21. 13:00 ~16:40경	전남도청 일대	총상(car)	총상(car) “0.5x0.5, 1.8x2.5 사입, 사출구 작음”	M16
18	이금재	5. 27. 07:00 ~07:30경	전남여고 뒤	총상(car) “맹관총상 0.5x0.5”	총상(car) “27 07:00경 약 국으로 출근 중”	M16
19	이성귀	5. 21. 09:00 ~14:00경	전남대 정문 앞	총상(기타 → car) 변경 기록	총상(미상 → car) 변경 기록 “car 폭도→비 폭도 추정”	M16
20	이성자	5. 21. 13:00 ~16:30경	홍안과 앞	총상(car) “5.21. 14:00경 동구청 앞에서 총상”	총상(M16 → car) 변경 기록 타박사(둔기)에 도 표시	M16

순	사망자 (조서상)	5·18조사위 조사 결과		'80 광주지검 변사체 검시보고 ⁶³	'80 군검찰 검시 참여결과보고 ⁶⁴	5·18조사위 판단
		사망(선행사인) 일시	사망(선행사인) 장소			
21	임은택	5. 21. 19:30경	광주교도소 부근 고속도로상	총상(car)	총상(car)	M16
22	임정식	5. 22. 16:50 ~17:50경	내방동 인촌약 방 뒤 골목 공터	총상(car) “유족주장-군인총에 피격”	총상(car)	M16
23	정학근	5. 21. 13:00 이후	전남도청 일대	총상(car) “우흥부 맹관총상 0.5x0.5”	총상(미상 → car) 변경 기록	M16
24	조사천	5. 21. 13:00 ~14:00경	전남도청 일대	총상(기타 →car) 변경 기록	총상(car) “5.21 14:00 기독병원 사망”	M16 (확인감정)
25	최승희	5. 21. 13:00경	전남도청 일대	총상(car) “21 13:15 전대병 원 응급실 도착”	총상(car) “전대 5.21. 13:10 입원시간”	M16
26	양희남	5. 22. 19:00경	화정동 수미다실 앞	총상(car) “방위병 손광식을 구 하러다가 피격(유족 주장; 군인 총에 피격)”	총상(car) car에 동그라미표 시, M16에 () 표시 “오인사살”	M16

2) 사망 장소 추가 확인

5·18민주화운동 당시에는 시신 수습, 이송과정, 장례 등에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사망자의 사망 경위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의 검시 현황에 따르면 사망자 중 47명의 사망 장소, 즉 최초 피해장소(선행사인)가 ‘불상’으로 기재됐다.⁶⁷ 전체 사망자의 30%에 달하는 사망자의 사망 장소를 특정하지 못한 것이다. 5·18조사위는 기록물 분석과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던 계엄군, 목격자 등 참고인의 진술 청취, 5·18 민주화운동 기간 일자별 계엄군 활동 및 시위 상황 조사 등을 통하여 이 중 43명의 선행

⁶⁷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수사보고(광주항쟁 관련 사상자 통계 등 첨부)」, 서울지검 『5·18사건 수사기록』 제22권, 30456~30479쪽.

사인 발생 장소와 사망 장소를 <표 3-1-30>과 같이 특정하였다.

<표 3-1-30> 1995년 검찰 수사보고상 장소 불상 사망자 장소 규명 현황

일 자	사망자 / 사인	사망 장소 (검시기록)	사망일	사망 장소
5. 20. (1명)	김정선 (남, 22세) / 둔력에 의한 사망	불상	5. 21.	미상
5. 21. (24명)	박민환 (남, 26세) / 총상(M16)	불상	5. 21.	도청 일대
	홍성규 (남, 33세) / 둔력에 의한 사망	불상	5. 20.	광주 시내
	윤재식 (남, 31세) / 총상(M16)	불상	5. 21.	도청 일대
	불상44 (무명4-90) / 총상(CAR) ↳ 신동남 (남, 30세)	불상	5. 20.	광주역 일대
	이재술(남, 41세) / 총상(기타)	불상	5. 21.	전일빌딩 앞
5. 21. (24명)	김정(남, 22세) / 총상(M16)	불상	5. 23.	마이크로버스
	안병복(남, 22세) / 차량사	불상	5. 21.	포충사 인근(추정)
	불상107 (무명4-96) ←문민규 / 총상(CAR) ↳ 양창근 (남, 16세)	불상	5. 21.	남선연탄 앞
	김함옥(남, 18세) / 총상(M16)	불상	5. 21.	미상
	불상112 (무명4-92)(남, 40세가량) / 총상(M16)	불상	5. 21.	미상
	박세근(남, 35세) / 총상(M16)	불상	5. 20.	광주역 일대
	불상117 김기운(남, 17세) / 총상(M16)	불상	5. 21.	도청 일대
	이경호(남, 20세) / 총상(CAR)	불상	5. 21.	도청 일대
불상119 김중식(남, 41세) / 총상(CAR)	불상	5. 21.	도청 일대	
5. 21. (24명)	정학근(남, 26세) / 총상(CAR)	불상	5. 21.	도청 일대
	불상122 (무명4-93) / 총상(CAR) ↳ 김재영 (남, 18세)	불상	5. 21.	도청 일대
	장하일(남, 38세) / 총상(M16)	불상	5. 21.	도청 일대
	양인섭(남, 33세) / 둔력에 의한 사망	불상	5. 21.	도청 일대
	김복만(남, 28세) / 총상(M16)	불상	5. 21.	도청 일대
	김재수(남, 25세) / 총상(M16)	불상	5. 21.	광주역 일대
5. 21. (24명)	전정호(남, 55세) / 총상(M16)	불상	5. 21.	학동 승의중 인근
	김형관(남, 22세) / 총상(M16)	불상	5. 21.	포충사 인근
	나중기(남, 27세) / 총상(M16)	불상	5. 21.	도청 일대
	김명철(남, 65세) / 둔력에 의한 사망	불상	5. 21.	월산동 외곽도로

일 자	사망자 / 사인	사망 장소 (검시기록)	사망일	사망 장소
5. 22. (7명)	정민구(남, 25세) / 총상(M16)	불상	5. 22.	미상
	노경운(남, 19세) / 총상(CAR)	불상	5. 22.	교도소 부근
	김현규(남, 19세) / 총상(M16)	지원동?	5. 23.	마이크로버스
	불상53 김재형(남, 18세) / 총상(M16)	불상	5. 23.	마이크로버스
	손옥례(여, 19세) / 총상(M16), 자상	불상	5. 23.	마이크로버스
	임종인(남, 21세) / M16)	불상	5. 21.	남선연탄 앞
	최열락(남, 27세) / M16)	불상	5. 22.	광주교도소 인근
5. 23. (2명)	김홍기(남, 61세) / 차량사	불상	5. 23.	풍향동~대인동
	한영길(남, 30세) / 총상(기타)	불상	5. 21.	도청 일대
5. 24. (3명)	이성귀(남, 16세) / 총상(CAR)	불상	5. 21.	전남대 정문 앞
	김평용(남, 18세) / 총상(기타)	불상	5. 24.	효덕초 앞
	불상123 권호영(남, 16세) / 총상(M16)	불상	5. 27.	시외버스공용터미널 인근
5. 26. (1명)	조일기(남, 32세) / 둔력에 의한 사망	불상	5. 27.	광주고등학교
5. 27. (6명)	조행권(남, 38세) / 총상(M16)	불상	5. 23.	동운동 대창주유소
	염행열(남, 16세) / 총상(M16)	불상	5. 27.	대의동파출소 근처
	홍순권(남, 19세) / 총상(M16)	불상	5. 27.	전남도청 내
	박진홍(남, 21세) / 총상(M16)	불상	5. 27.	전남도청 내
	서호빈(남, 19세) / 총상(M16)	불상	5. 27.	전남도청 내
	박병규(남, 20세) / 총상(M16)	불상	5. 27.	전남도청 내
사망 일시 미확정 (3명)	불상114 김준동(남, 16세) / 총상(M16)	불상	5. 21.	도청 일대
	불상163 채수길(남, 20세) / 총상(M16)	불상	5. 23.	주남마을 뒷산
	불상164 양민석(남, 19세) / 총상(M16)	불상	5. 23.	주남마을 뒷산

3. 소결

이 조사는 5·18민주화운동 기간 중 희생된 민간인 사망자의 규모와 사망 원인, 사망 경위를 규명하고, 사망 사건과 관련된 오류, 의혹, 쟁점 등을 해소하고자 했다. 먼저 민간인 사망자에 대한 그동안의 정부·기관 발표 내용의 오류를 정정하고 민간인 사망자 숫자를 확인하였다.

5·18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 기간 중 사망한 민간인이 166명임을 확인했다. 이는 5·18조사위가 각 정부·기관발표를 토대로 사망자 관련 기록의 존재 여부 및 소재, 생산 이력을 추적하여 사망 기록의 변천 과정을 조사하고, 사망자별 시신 수습과정, 사망 일자, 장소, 경위 등을 확인한 결과이다.

5·18조사위가 확인한 사망자의 숫자는 현재까지 166명이지만 이후 행방불명자의 소재 및 5·18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 확인과 암매장된 피해자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변동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망자의 사망 경위 확인을 토대로 5·18조사위는 사망 사건을 사망 날짜·사망 장소·성별·나이별·사인별 등 계엄군의 작전활동에 따라 유형화하여 분석했다.

사망자 166명 중 135명(81.3%)이 총상으로 사망하였고, 17명이 구타 등 둔력에 의한 사망으로, 12명이 차량에 의한 사망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망자의 73.5%가 10대와 20대였다.

미성년자, 여성, 노인 등 저항 능력이 없거나 시위와 무관한 다수의 민간인이 계엄군의 폭력적 진압과정에서 사망했음을 확인했다. 집 안에 있다가, 건물 옥상에서 시위를 구경하다가, 학교 수위로 근무하다가, 회사에서 숙직하다가, 저수지에서 먹을 감다가, 사업소로 출근하다가 계엄군의 총격으로 희생된 사례도 확인했다. 사망자 중에는 14세 이하 미성년자가 8명, 50대 이상이 11명, 여성이 12명이었다.

5·18조사위 조사 결과, 최초 총상 사망자 발생일이 지금까지 알려진 5월 20일 광주역 집단발포 보다 최소 24시간 이전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동안 둔력에 의한 사망으로 알려진 김안부는 5월 19일 22시 이후 총상으로 사망한 채 자신의 집 근처에서 발견되었고, 김경환 역시 둔력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 5월 20일 밤 도청 인근(전남대병원 로터리)에서 총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18조사위는 이제까지 사망 장소를 특정하지 못했던 47명에 대해 당시 검시 기록, 계엄군 작전 활동 및 시위 상황 기록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계엄군/목격자 등 참고인 진

술을 확보하여 이 중 43명의 선행사인 발생 장소를 특정하였고, 검시기록상 사망장소가 잘못 기재된 21명의 사망장소를 바로잡았다. 아울러 계엄군에 의한 저격수 운영 및 조준 사격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체포한 무장시위대 또는 시위와 무관한 시민을 임의처형(현장사살)한 사실 등을 새롭게 규명하였다.

당시 광주지방검찰청 검시기록상 사인이 카빈 총창에 의한 사망으로 기재된 26명의 사망 경위를 조사한 결과, 전남도청 앞 사망자 상당수가 계엄군과 무장시위대와의 교전이 시작되기 이전에 총격을 받아 사망했는데도 카빈에 의한 사망으로 처리되었음을 확인하고, 조사전, 최승희 등 25명의 사인은 카빈이 아니라 M16의 총격에 의한 것으로 확인·판단하였다. 이밖에 검시기록에 사인이 잘못 기재된 15명의 사인을 정정하였다.

5·18조사위는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시 사망자 중 최소 7명은 인근 전일빌딩, 수협 전남도지부 등 고층건물에 배치된 계엄군의 조준사격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 5·18조사위는 윤성호·조남신, 김선호, 이성자 등 7명의 사망자에 대해 5·18조사위가 개발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조준사격임을 증명했다.

민간인 사망자 166명 중 현재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된 사망자는 164명인데 이 중 6명은 2001~2002년 광주광역시의 유골 감정사업을 통해 신원이 확인되었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무명열사' 상태로 안장된 5명 중 신동남, 김재영, 양창근⁶⁸ 등 3명은 5·18조사위의 유전자 대조 결과 신원이 확인되었다.

68 5·18조사위는 무명열사(묘지번호 4-96)에 대한 사망기록 조사와 유전자 검사 등의 과정을 거쳐 동 유해가 희생자 '양창근'임을 확인하였고, '양창근' 이름으로 오인 매장된 유해(묘지번호 1-38)는 행방불명자 '김광복'임을 확인하였다. 이 조사과정은 「행방불명자 규모 및 소재 확인」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제2절 민간인 상해

1. 조사 배경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이 행사한 폭력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 현재까지 166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해자에 대한 통계는 과거 계엄사와 정부 측의 축소된 발표가 있었을 뿐이다. 1990년부터 법률에 근거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실시된 이후 신체적 부상을 포함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인원과 정도 등에 대해서는 보상과 관련한 통계가 존재하나, 국가기관이 총체적이고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없다.

정부는 1990년 8월 6일 5·18보상법을 제정하여 5·18보상심의위원회가 설립되어 지금까지 7차에 걸쳐 보상 조치를 시행하였고, 2022년 12월 27일 법률을 개정하여 현재 8차 보상이 진행 중이다.⁶⁹ 보상은 경제적 보상의 성격을 가지며 ‘사망’, ‘상이 후 사망’, ‘행방 불명’, ‘상이’, ‘연행구금상이’, ‘연행구금’, ‘기타’ 등의 유형으로 분류되었고, 지금까지 모두 5,807명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어 보상 결정을 받았다.

이러한 보상 조치를 통해 당시 민간인 피해의 규모가 대략 확인되었으나, ‘5·18민주화운동 당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국가 보고서는 지금까지 전무하였다. 과거 1988년 국회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한 청문회와 1995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증언과 조사가 있긴 했으나, 신군부 수뇌부에 대한 사법적 책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기에 구체적인 피해

69 「5·18보상법」은 2022. 12. 27. 개정되어 2023. 11. 이후 제8차 보상이 시행 중이다. 개정된 법률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등으로 확대되었다.

상황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조사만 이루어졌다. 또한 2007년 국방부과거사위원회에서도 「12·12, 5·17, 5·18사건 조사결과보고서」를 발간하였으나, 제한된 인력과 짧은 조사 기간으로 민간인 상해의 규모와 내용을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5·18조사위는 5·18진상규명법 제3조에서 정한 진상규명의 범위에 근거하여 2020년 7월 20일 제15차 전원위원회에서 조사개시 의결하였다. 그리고 2023년 12월 11일 제108차 전원위원회에서 전원일치로 ‘진상규명’ 의결하였다.⁷⁰

2. 조사 결과

가. 상해 일반 현황

1) 기초자료

5·18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의 상해 피해 상황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는 1990년부터 2015년까지 7차에 걸쳐 진행된 5·18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 결정 자료이다. 5·18보상심의위원회는 피해 신청을 개별적으로 접수해서 국가가 지정한 심사 위원들이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실제 피해 여부와 피해 보상 수준을 결정했기 때문에, 5·18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피해 현황과 관련된 공식적인 기록이다.

〈표 3-2-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유형별 보상 현황

구분	총 계		1차('90)		2차('93)		3차('98)		4차('00)		5차('04)		6차('06)		7차('15)	
	신청	보상	신청	보상	신청	보상	신청	보상	신청	보상	신청	보상	신청	보상	신청	보상
총계	9,227	5,807	2,693	2,219	2,788	1,832	837	464	868	473	527	109	1,008	426	506	284
사망	223	155 (161)	190	154	15	0 (6)	10	-	3	-	-	-	4	1	1	-

70 이 보고서에 대해서 이종현, 이동욱, 차기환 위원은 추가의견을 제출하였다. 위원들의 추가의견에 대해서는 별책에 수록된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조사결과보고서 해당 쪽 참조.

구분	총 계		1차('90)		2차('93)		3차('98)		4차('00)		5차('04)		6차('06)		7차('15)	
	신청	보상	신청	보상	신청	보상	신청	보상	신청	보상	신청	보상	신청	보상	신청	보상
상이후 사망	140	113(1)	73	72	10	10	11	11	1	-	22	6	17	11	6	3(1)
행불	448	84 (78)	148	38	117	9 (3)	54	17	44	7	42	5	36	5	7	3
상이		2,504		1,893		215		95		35		37		186		43
연행·구금· 상이	5,928	1,217 (79)	2,217		1,473	534	483	298	574	203	328	21	600	89(47)	253	72(32)
연행· 구금	2,146	1,610	-	-	1,173	1,064	279	43	246	228	135	40	74	72	239	163
기타	65	62	65	62	-	-	-	-	-	-	-	-	-	-	-	-
재분류	277	62	-	-	-	-	-	-	-	-	-	-	277	62	-	-

* 상이 후 사망() : 상이 후 사망자 신청자 중 상이만 인정
 * 연행·구금, 상이() : 연행·구금, 상이 신청자 중 연행·구금만 인정

이 자료는 피해자가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보상 당국이 피해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여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상이 여부와 정도를 확인한 결과를 담고 있다. 피해자 진술을 기초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피해 사실의 과장 내지 왜곡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나, 법률에 의거한 5·18보상심의위원회가 복수의 심사위원을 정하고 사실관계 확인과 인우보증인 진술, 현장 조사와 의료적 검사 등을 병행하여 최종 판단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그 신뢰도가 충분히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5·18조사위가 광주시로부터 제공받은 5·18보상심의위원회 보상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분류한 유형별 보상 현황은 위 <표 3-2-1>과 같다.⁷¹ 총 5,807명의 관련자 중 2,504명이 '상이자'로, 113명이 '상이 후 사망자'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았다. 아직까지 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도 존재하며, 현재 8차 보상이 진행 중인 관계로 이 수치가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상해 피해자를 전부 포함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8차 보상 신청이 주로 정신적 피해 등과 같은 상해 후유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

71 광주광역시 민주선양과 제공(2020.04.17.)

면, 계엄군의 직접적 폭력에 의한 신체적 피해 현황은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보상자료에는 상해자의 인적 사항과 상해 일자와 장소, 상해 부위와 원인, 상해에 따른 후유증 및 향후 예상 치료 내용 등 신체적 상해와 관련된 기본 정보와 함께 상해자의 연령, 직업, 상해 경위 내지 시위 가담 여부 등 사회인구학적 정보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5·18조사위는 상해자에 해당하는 2,617명의 개별 정보를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일정 기준으로 분류하여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생한 민간인 상해의 전체적인 규모와 함께 전개과정을 조망하는 기초자료를 전산화하였다.⁷² 분류한 기준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분류 : 성별, 나이, 직업, 학력, 주소지 등
- 상이 관련 분류 : 상이 일시·장소, 상이 경위, 상이 원인, 장애등급 등
- 상이 후 사망자 : 위 상이 관련 분류 내용 외 사망 일자, 사망 경위, 사망 원인, 상이 후 생존 기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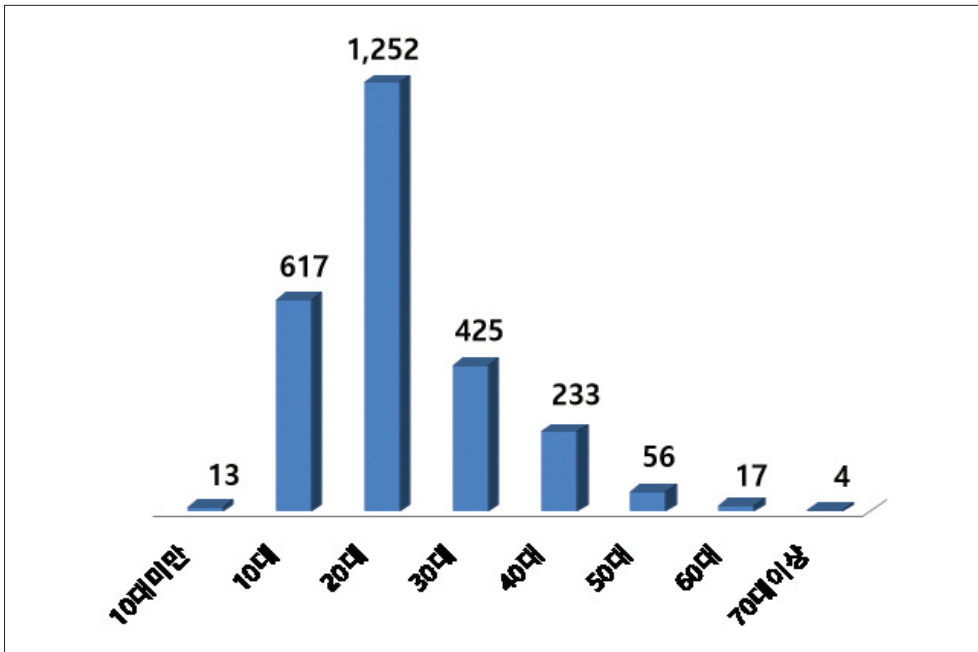
5·18조사위는 5·18보상심의위원회의 기록물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도 일부 병행하였다. 예컨대 상이 일자와 관련하여 피해 당사자가 ‘5월 18일에 총상을 입었다’면서 ‘그날은 석가탄신일이었고, 도청 앞에서 계엄군에 맞서 시위를 하다가 총상’을 입었다고 하면 ‘5월 18일 총상’이 아니라 ‘5월 21일 총상’ 등으로 정정한 경우이다. 당초 5·18보상심의위원회는 피해자들의 보상 신청 내용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작성된 「사상자 명부」나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진료기록’ 등의 문헌자료에서 확인되고 ‘인우보증인’ 등의 증언이 존재하면 보상 결정을 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부상 내용이 5·18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 여부에 우선적인 목적을 두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 결과 피해자가 상

72 연행·구금상이 피해자 1,138명에 대한 정보도 데이터베이스화하였으나, 이와 관련해서는 5·18조사위 별도의 직권조사 사건(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연행·구금·조사 과정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에서 다루기로 한다.

해를 입게 된 세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부차적이었던 관계로, 일시와 장소 등 세부 사항에서는 다소 오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사회인구학적 통계와 10일 간의 기간 중 발생한 상해의 규모와 내용, 상해 피해자 발생 추이, 상해 신체 부위의 분포 등 일련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는 유용하고 객관적인 자료이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5·18조사위가 5·18보상심의위원회의 기록을 분석하여 정량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연령대별 분포

전체 상해자와 상해 후 사망자 2,617명을 연령대별로 분류해 보면 아래 <그림 3-2-1>과 같이 20대의 상해자 비율이 47.8%로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시위가 대학생 등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청년층 상해자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음은 당연한 결과이다. 계엄군들은 대학생 차림의 청년들을 집중적으로 진압하였으며, 시내에서 시위가 격렬하였던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시위 지역의 주택이나 상가 등을 수색하여 젊은이를 체포·연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시위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구타·폭행당하는 사례가 급증하였다.



〈그림 3-2-1〉 연령대별 상해 피해자 수

20대 다음으로 미성년자인 10대의 상해자 비율이 높다는 점이 주목된다. 전체에서 23.6%로 20대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고, 대체로 정치의식이 높고 사회 참여에 관심이 많은 30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대 피해자의 정신적 후유증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5·18조사위는 광주시의 보상자료에서 상해자의 정신질환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5·18 당시의 상해 등이 직·간접의 원인이 되어 임상적으로 정신과 치료 및 상담을 받았던 상해자 45명 중 37%에 해당하는 17명이 19살 이하의 미성년자이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정신질환을 앓다가 사망한 38명의 상이 후 사망자 중에서 미성년자가 12명으로 30%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국가폭력이 미성년자에게 미친 정신적 피해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했음을 드러내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3) 성별 장애 정도

5·18민주화운동 당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대다수는 남성이다. 여성 상해 피해자(상이 후 사망자 포함)는 172명으로 전체 상해 피해자 2,617명의 7% 남짓을 차지한다. 5·18 당시 초반의 시위와 후반의 무장항쟁을 남성이 주도하였고, 계엄군의 강경진압 대상이 대부분 남성인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3-2-2〉 5·18상해자 장애등급별 성별 분류표

등급	남	비중	여	비중	계(명)
장해1급	36	1.5%	8	4.9%	44
장해2급	12	0.5%	3	1.8%	15
장해3급	23	1.0%	2	1.2%	25
장해4급	14	0.6%	2	1.2%	16
장해5급	40	1.7%	3	1.8%	43
장해6급	16	0.7%	4	2.4%	20
장해7급	67	2.9%	6	3.7%	73
장해8급	64	2.7%	4	2.4%	68
장해9급	113	4.8%	7	4.3%	120
장해10급	109	4.7%	7	4.3%	116
장해11급	77	3.3%	7	4.3%	84
장해12급	393	16.8%	44	26.8%	437
장해13급	88	3.8%	3	1.8%	91
장해14급	1,038	44.4%	39	23.8%	1,077
기타1급	186	8.0%	20	12.2%	206
기타2급	60	2.6%	5	3.0%	65
계(명)	2,336	100%	164	100%	2,500 ⁷³

그러나, 상해 피해의 심각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5·18조사

73 남자 상이자 중 장애등급 표시가 누락된 4명을 제외한 숫자임.

위는 상해 피해자를 성별, 장애등급별로 분류해보았다. 장애등급은 보상심의 과정에서 책정되는 신청인의 장애등급이다. 위 <표 3-2-2>를 보면, 상해 정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장애등급 8급 이상의 중증 피해자 비율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즉, 남성 상해자 2,336명 중에서 장애등급 8급 이상의 중증 장애자는 208명으로 전체 상해자의 11.6%를 차지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상해자 164명 중에서 32명으로 19.4%를 차지하고 있다. 계엄군의 강경진압과 집단폭력의 희생자로서 여성이 겪은 신체적 피해의 정도가 남성보다 더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

4) 직업별 분포

<표 3-2-3> 상해자들의 직업별 분류 현황

당 시 직 업	명	비중
전문직(의사, 변호사, 언론인, 교수, 정치인 등)	33	1.3%
교사(유치원, 초·중·고 교사)	0	0.0%
공무원 및 군인, 경찰 등	75	3.1%
회사원	208	8.5%
기업가 및 사업가	34	1.4%
자영업자	63	2.6%
서비스직 종사자(식당, 주점, 판매, 종업원 등)	515	21.0%
생산직, 노무직	333	13.6%
운전기사 및 운수업	269	11.0%
농·축·수산업 및 임업종사자	98	4.0%
주부	17	0.7%
학생(재수생 포함)	607	24.7%
무직	171	7.0%
기타(종교, 예술, 문화, 방위병 등)	33	1.3%
계	2,456 ⁷⁴	100%

74 직업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만 통계에 반영하였기에 2,504명과 차이가 발생함.

위의 <표 3-2-3>은 피해자들의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직업을 분류한 것이다. 재수생 및 수험생을 포함한 학생 계층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으로 서비스직 종사자(식당·주점·판매·종업원), 생산직·노무직 종사자들, 운전기사 및 운수업 종사자와 회사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계엄군들의 폭력이 당시 시위를 주도했던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위와 무관한 민간인에게 무차별적으로 확산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5) 장소별 발생 분포

상해자들의 장소별 발생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 장소별로 상해자를 파악한 다음, 이를 5·18 사적지로 대별하여 인근지역까지 포함하여 통계 수치를 산출하였다. 아래 <표 3-2-4>에서 보는 것처럼 금남로 일대에서 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그다음으로 시외버스공용터미널과 전남대학교 등의 순이다. 상무대 일대도 피해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곳은 수많은 민간인이 끌려와서 가혹행위를 당한 군부대 영창이 있는 곳이다. 505보안대에서 조사 중에 가혹행위와 고문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도 68건에 달하고 있다. 이를 지도에 표기하면 아래 <그림 3-2-2>와 같다.

5월 20일 제3공수여단의 집단발포가 있었던 광주역 광장에서도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다. 발포 당일인 5월 20일에만 16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전날인 5월 19일에는 22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시외버스공용터미널 피해자는 제7공수여단이 투입된 후 첫날인 5월 18일과 제11공수여단이 추가 투입된 5월 19일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보였다.

전남대 근처에서의 피해자는 5월 21일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전남대는 5월 20일부터 제3공수여단이 주둔하던 지역으로 전남대 근처에서 연행된 103명의 시민들이 가혹행위를 많이 당한 지역이다. 연행자들을 광주교도소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최소 3명의 사망자를

포함하여 다수의 상해자가 발생했으며, 사망자에 대한 가·압매장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전남도청 근처에서의 상해는 대부분 5월 27일에 집중되어 있는데, 계엄군들이 광주 재진입 작전을 펼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결과이다.

광주 외곽 지역에서도 상해자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이는 민주화운동이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계엄군이 광주시 외곽 봉쇄 작전을 전개하면서 5대 관문을 차단하는 동안 다수의 상해자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표 3-2-4〉 장소별 상해자 발생 분포

사적지 번호	사적지명	상해 피해자 수 (명)	현위치	인근지역
1	전남대학교 정문	126	전남대학교 정문	신안동/용봉동
2	광주역광장	83	광주역 앞	고속터미널/대한통운/중흥동
3	구 시외버스공용터미널 일대	197	롯데백화점 광주점	대인동/시외버스공용터미널/ 광주소방서/대인시장
4	금남로	378	아시아문화전당	금남로1가~5가/수창초등학교/ 가톨릭센터
5	도청과 5·18민주광장	34	아시아문화전당	도청일대/광산동/노동청
5-1	도청	92	아시아문화전당	도청내
5-2	5·18 민주광장	86	아시아문화전당	도청분수대 주변
5-3	상무관	4	아시아문화전당	
5-4	광주YMCA	7	광주청소년 유희환 경감시단	
6	광주YWCA 오테	76	전일빌딩 뒤	무등고시학원/광주경찰서/대 의동
7	광주MBC 오테	20	김재규경찰학원	궁동
8	녹두서점 오테	31	불교서원	장동로타리/동문다리/전남여 고/청산학원
9	전남대학교병원	31	전남대학교병원	학동/남광구역
10	광주기독병원	26	광주기독병원	양림동/방림동/사직공원
11	구 광주적십자병원	8	광주시 동구 불로동 174	

사적지 번호	사적지명	상해 피해자 수 (명)	현위치	인근지역
12	조선대학교	60	조선대학교	법원/동명동/서석동/지산동/ 산수동/금곡동(산장)
13	배고픈다리 일대	18	홍림교	지원동/학운동/소태동
14	주남마을 인근 민간인학살지	5	주남	
15	광·목 간 민간인학살지	55	광주 동구 월남동	백운동/진월동/송암동/주월 동/대동고/백운철길
16	농성광장 격전지	50	농성광장	월산동/농성동/서부경찰서/ 돌고개
17	상무대 옛터	184	상무지구	운천동
18	무등경기장 정문	26	무등경기장	동운동/운암동/임동/서강전 문대/고속도로IC
19	양동시장	32	광주 양동시장	
20	광주공원광장	39	광주공원	
21	5·18 최초발포지	46	남도장례식장	광주교/계림파출소/계림동
22	광주교도소	55	스카이골프클럽 뒤	문화동/우산동/서방사거리/ 말바우/두암동
23	국군광주통합병원	32	화정근린공원	갯등/국군광주통합병원/내방 동/화정동
24	5·18 구묘역	0	망월공원묘지	
25	남동성당	2	천주교 남동성당	
26	505보안부대	68	상무대로 956번길	쌍촌동
27	들불야학 옛터	5	광천시민아파트	광천동/천주교/시민아파트/ 광천공단사거리
28	전일빌딩	24	전일빌딩 245	
29	고 홍남순변호사 가옥	7	전남여고 앞 공동 중앙교회	전남여고 건너편/중앙초교
30	충장로	127	충장로	수기동/충장로1가~5가/ 호남동/황금동
31	광주일고	44	광주제일고등학교	
32	31사단	19	광주 고선국밥 맞 은편	오치동/매곡동

사적지 번호	사적지명	상해 피해자 수 (명)	현위치	인근지역
33	유동삼거리	55	유동사거리	유동
34	송정	25	송정동	송정리/영광동
35	전남	168		나주/담양/목포/무안/보성/ 장성/순천/영광등
36	기타지역	65		그 외 지역
계	36개소	2,410 ⁷⁵		

75 상해 장소가 식별 가능한 상해지만 통계하였기에, 전체 상해자 2,504명과는 차이가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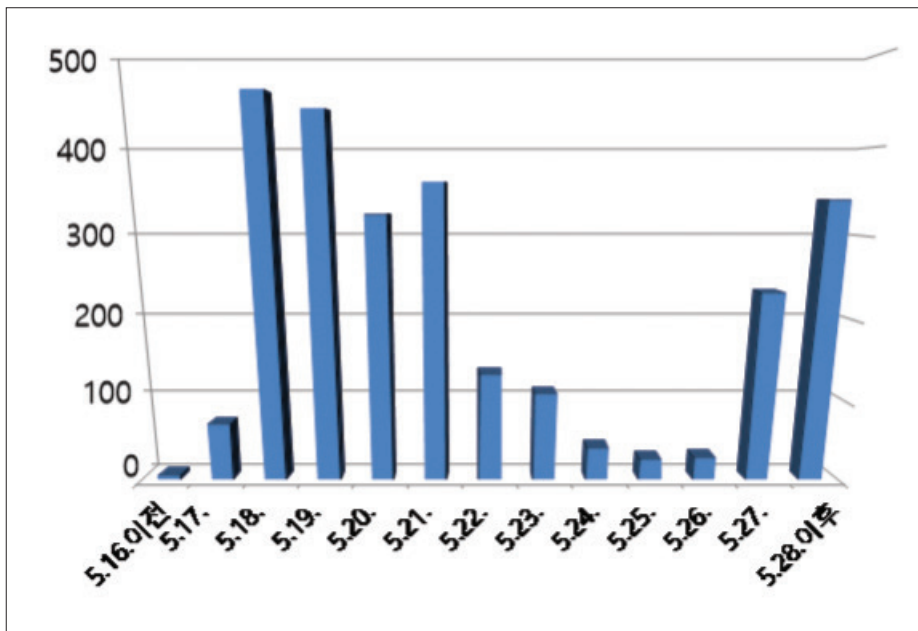


〈그림 3-2-2〉 1980년 광주 시내 상해자 발생 분포 지도

- ※ 광주 시내 지도에 표기하지 못한 5.18 사적지
- 10. 광주기독병원 13. 배고픈다리 일대 14. 주남마을 인근 민간인 학살지 15. 광복 간 민간인 학살지 16. 농성광장 객진지 17. 상무대 옛터 18. 무등정기장 정문
 - 22. 광주교도소 23. 국군광주통합병원 24. 5.18구묘역 26. 505보안부대 27. 들불야학 옛터 32. 31사단 34. 송정35. 전남 3 36. 기타지역

6) 날짜별 발생 현황

상해자 발생은 5·18민주화운동 초기에 집중되어 있다. 아래 <그림 3-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상해자의 18%가 첫날인 5월 18일에 발생하였고, 5월 19일에는 17%, 그리고 5월 20일에 13% 정도로 전체 상해 사건의 절반가량이 5월 21일 전남도청 앞 계엄군의 발포 전에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남도청 앞 발포가 있던 5월 21일에 상해를 당한 사람은 14%에 달하는데 그 이후 수가 줄어들다가 5월 27일 계엄군의 광주 재진입 작전 실행 이후 다시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림 3-2-3> 날짜별 상해 피해자 발생 현황

계엄군 투입 초기인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상해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사실은 계엄군의 진압작전이 ‘바둑판식 분할점령, 끝까지 추적·체포하라’는 작전명령에 따라 초반부터 폭력 수준이 강력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5월 21일 이후 계엄군이 외곽으로 퇴각하면

서 시민과 계엄군 간 물리적인 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이후 피해자 발생 수치는 급감하였지만, 사망자는 급증하였다.

계엄군이 민간인을 향해 행사한 총기 등에 의한 폭력의 ‘강도’는 후반부로 갈수록 더 강해졌다. 이러한 경향은 피해자 중 중증 피해자가 날이 갈수록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면 알 수 있다.

〈표 3-2-5〉 5. 18.~21. 장해8등급 이상 피해자 발생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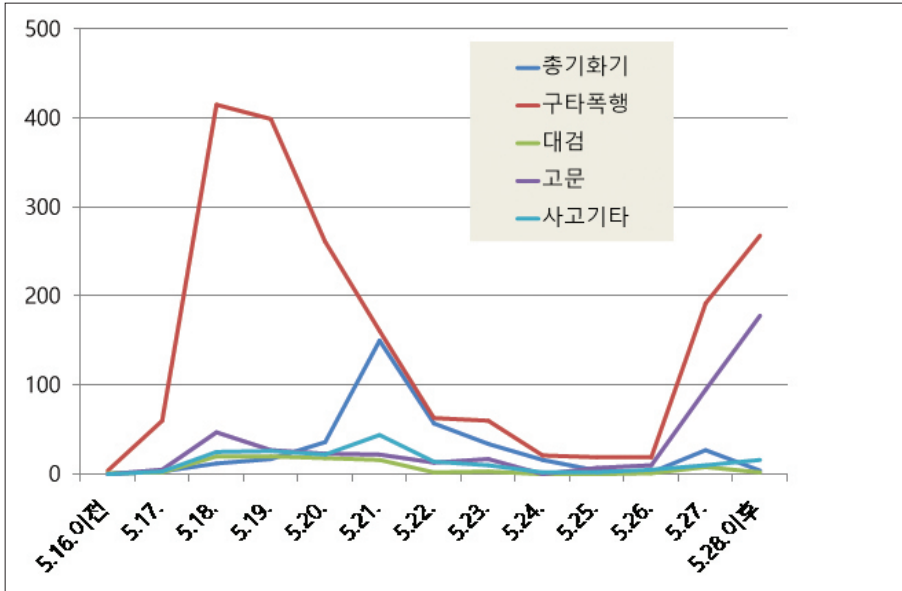
구분	5. 18.	5. 19.	5. 20.	5. 21.
장해8등급 이상 피해자 수	37	35	45	78
일자별 피해자 수	442	431	308	346

위 〈표 3-2-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5월 18일부터 5월 21일까지 발생한 전체 피해자 중에서 장해정도 8급 이상의 피해자들의 수를 보면, 전체 피해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중증 피해자는 점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계엄군의 진압작전이 보다 더 치명적인 피해를 가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5월 21일 집단발포로 귀결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5월 22일에서 5월 26일까지의 피해 피해자는 주로 광주 이외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시위대와 외곽 봉쇄를 담당하던 계엄군 사이의 충돌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주로 광주에서 나주 방면으로 향하는 1번 국도상의 효천역과 송암동 인근지역, 광주와 화순 경계 지역, 국군광주통합병원 근처, 담양 방면으로 향하는 광주교도소 인근지역 등에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5월 27일은 계엄군의 광주 재진입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가 대부분이다. 5월 28일 이후에도 다수의 피해자가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상당수가 민주화운동 과정 및 그 전 후에 연행 및 구금된 민간인들이 상무대와 경찰서, 국군보안부대, 교도소 등에 수용된 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구타, 고문 등의 가혹행위에 따른 것이다.



〈그림 3-2-4〉 날짜별·상해 원인별 발생 현황

5·18조사위는 상해자들의 상해 원인을 구타·폭행, 총기·화기, 대검, 고문·가혹행위, 사고·기타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이를 일자별로 분석해 보았다. 위 〈그림 3-2-4〉에서 알 수 있듯이 민간인 상해에 영향을 준 직접적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진압봉과 소지한 소총의 개머리판 등 개인장비 수단을 동원한 물리력 행사에 의한 것이 가장 많았다.

총기 및 화기류에 의한 총상자는 총 인정자 2,617명 중 337명으로 1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군의 총격이 5월 19일 이후부터 있었기 때문에 총상자는 대부분 5월 20일에서 21일 사이에 많이 발생하였다.

이를 좀 더 세분화해 보면,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의 집단발포가 있었던 5월 21일에 150건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5월 22일이다. 5월 22일과 24일 사이의 총상은 주로 광

주 외곽을 경비하던 계엄군의 발포에 의한 것이다. 광주 재진입작전 당일인 5월 27일은 전남도청 인근에서만 27명이 총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되었다.⁷⁶

보상자료에 의하면 대검에 의한 상해는 총 93건이다. 여기서 대검 피해는 의료기록 상에 ‘자상’이라 기록되어 있거나 피해자의 진술 및 신고 등에 의존한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로 대검에 의한 상해인지에 대해서는 엄밀한 법의학적, 임상적 검증을 거친 것은 아니다. 과거 국회 청문회나 1995~1997년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당시 계엄군 측은 대검 사용을 강력히 부인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로 다루겠다.

나. 주요 쟁점별 민간인 상해

1) 여성 및 노약자에 대한 반인륜적 폭행

계엄군의 강경진압 행위로 여성, 노인, 어린이 등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전체 2,504명의 상해자 중 여성과 60세 이상의 노인,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13세 이하의 어린이의 수를 정리하면 아래 <표 3-2-6>과 같다. 모두 208명으로 전체 상해자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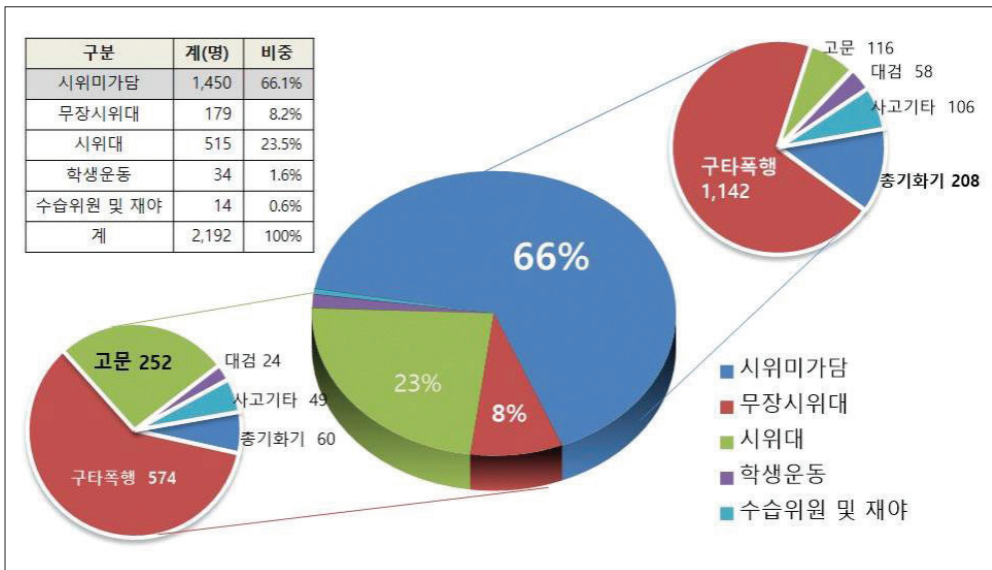
<표 3-2-6> 여성, 노인, 13세 이하의 상해자 수

구분	여성	60세 이상	13세 이하	계
인원(명)	165	11	32	208

76 보상자료에 의하면 5. 19. 이전에도 총상 피해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5·18조사위의 전수조사 결과 실제로는 5. 20. 이후의 총상 피해인데, 오기 또는 착각에 의한 오류로 판단된다.

2) 시위와 무관한 민간인 상해

계엄군들은 시위와 무관한 민간인들에게도 대해서도 폭력을 행사하였다. 전체 2,504명의 상해자 중 보상신청 당시 부상 경위를 피해자 본인 진술에 기초하여 시위 참여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2,192명을 대상으로 시위 가담 여부를 분석했는데, 아래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림 3-2-5〉 시위 참여 여부별 부상 원인

피해자의 시위 가담 여부는 보상자료에 기고된 피해자의 진술과 인우보증인 등에 의존한 것이다. 따라서 다소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시위 가담 여부가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데 특별한 변수가 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보상신청을 한 피해자들이 실제로 시위에 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을 할 개연성은 적다고 하겠다.

위 <그림 3-2-5>에서 주목할 점은 시위와 무관하게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전체의 과반수를 훨씬 넘는 66%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계엄군이 행사한 폭력이 상당히 많은 부분 익명의 대중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방증하는 지표이다.

3) 안면부와 머리 등 치명적 부위 피해와 복합상해자

상해자들의 신체 상해 부위는 당시에 계엄군이 행사한 폭력의 성격을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이다. 아래 <표 3-2-7>을 보면 계엄군의 폭력에 의한 상해 부위의 70% 이상이 상체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고 그 후유증이 매우 큰 두부, 안면부, 경부에 부상을 입은 경우가 2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3-2-7> 상해자들의 원인별 상해 부위 분석표

상해부위		상해원인				계(건수)	비중
		총기 화기	구타 폭행	대검	고문		
상체	눈, 코, 입, 귀	40	436	22	108	606	10.4%
	두부, 안면부, 경부	102	1,078	50	210	1,440	24.8%
	흉부, 복부, 장기	99	307	22	94	522	9.0%
	체간(척추, 등)	45	749	21	223	1,038	17.9%
	팔, 손가락	82	354	25	76	537	9.2%
하체	다리, 발가락(둔부)	143	650	42	182	1,017	17.5%
기타	신경, 정신계통	29	331	8	115	483	8.3%
	기타	3	140	-	26	169	2.9%
계(건수)		543	4,045	190	1,034	5,81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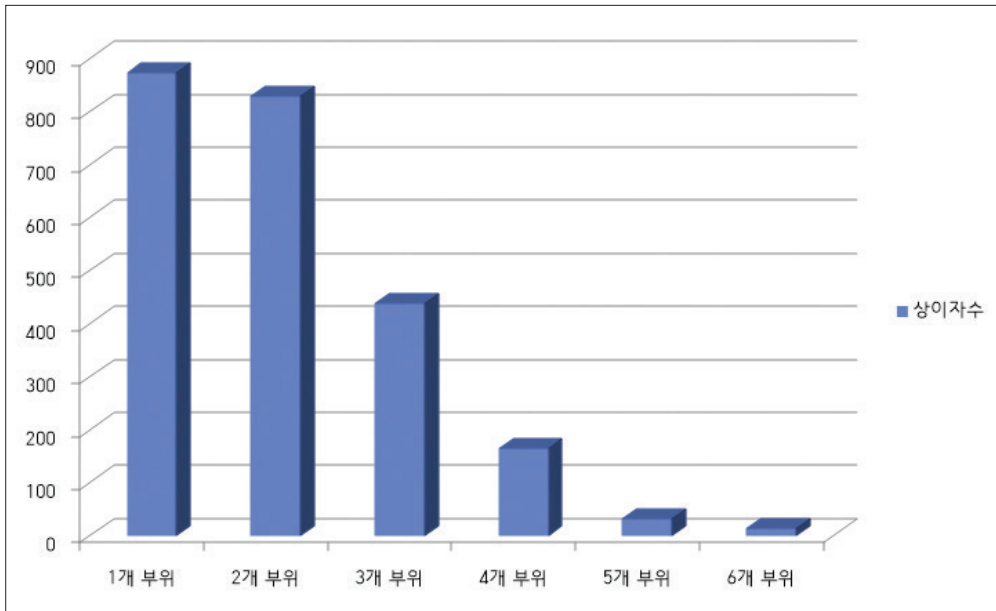
당시 계엄군이 채택한 시위진압 교본에 의하면 시위진압에 물리력의 행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가능한 생명에 위해가 적은 하체를 겨냥하여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시위진압 현장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하였다.

총상자의 경우, 상체 총상이 67%를 상회하고 있다. 여기서 상체는 안면부, 두부, 흉복부, 척추 등의 체간 부위를 포함한다. 특히 두부, 안면부, 경부 등에 총상을 입은 사례도 102건으로서 전체 총상 543건의 19%에 달하고 있다. 당시의 발포 행위는 자위권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발포 시에도 상대방의 하체를 겨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는 당시 계엄사령부의 발표와는 다른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진압봉 등을 사용한 구타의 경우에도 상처 부위가 가장 많은 곳이 두부 및 안면부, 경부이다. 구타 사례 총 4,045건 중 약 26%가 두부와 안면부에 집중되어 있다. 두부에 입은 상처는 나중에 외인성 정신질환으로 발전하거나 뇌와 신경계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겨 중증 장애로 발전하였다.

많은 피해자들이 한 군데 이상의 복합부상을 당했다. 위 <표 3-2-7>을 보면 상해자는 2,504명인데, 보고된 상해 원인과 복합상해 부위가 5,812건이다. 이는 상당수의 상해자들이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상해를 입었음을 의미하고, 산술적으로 상해자 1인당 약 2.3곳의 신체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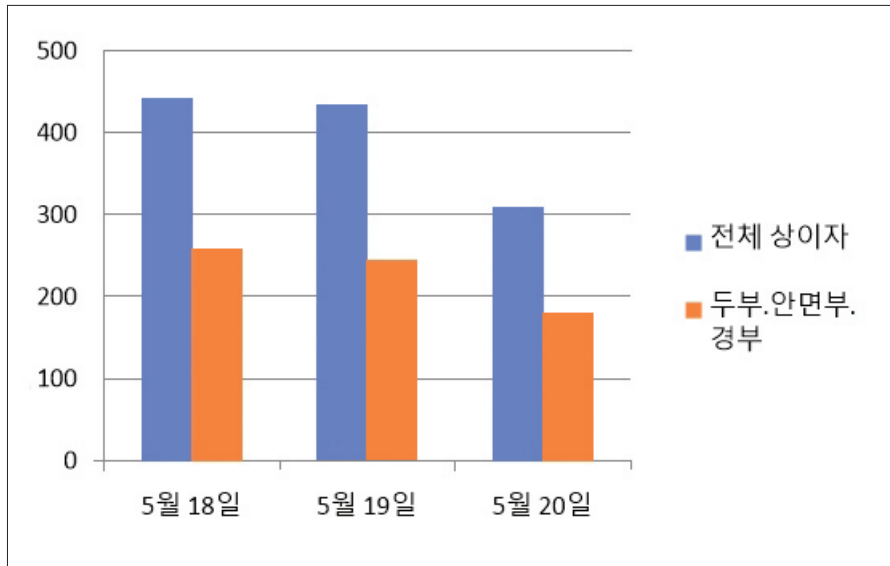
아래 <그림 3-2-6>은 상해자별 복합부상 정도를 분석한 내용이다. 상해자 2,504명 중 2개 부위 이상에 상해를 입은 사례는 무려 1,468명으로 전체의 60%에 달하고 있다. 그중에서 4개 부위 이상의 신체에 상해를 입은 사람도 210명에 달하고 있다.



〈그림 3-2-6〉 상해자의 복합부상 현황

기존의 민간 구술기록 및 상해자 치료기록 등을 보면 총상을 당하거나 진압봉에 맞아 쓰러진 상태에서 군화 등으로 2차 가해를 당하거나 자상을 입은 상태에서 추가로 폭행을 당하거나 집단폭행에 의한 부상 사례도 다수 보인다.

아래 〈그림 3-2-7〉과 〈표 3-2-8〉은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계엄군이 광주 시내에서 진압작전을 전개하는 동안 발생한 전체 상해자 수와 그 중 ‘두부(머리)·경부(목)·안면부(얼굴)’ 부위에 상해를 입은 상해자 수, 그중에서 장해등급 9급 이상의 상해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초기 3일간의 계엄군 진압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상해자 수는 모두 1,185명이고 그중에서 목 부위 이상의 상해자는 683명으로 5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7〉 5. 18.~20. 두부·안면부·경부 상해자 현황

〈표 3-2-8〉 5. 18.~20. 전체 상해자 및 두부·경부·안면부 상해자와 장해9급 이상 상해자 현황

일자	전 체 상해자	두부·안면부 경부 상해자		장해9급 이상 상해자		
		인원	비율 (%)	전 체	두부·안면부·경부	비율(%)
5. 18.	442	259	59	43	33	77
5. 19.	434	244	56	56	38	68
5. 20.	309	180	58	60	43	72
계(명)	1,185	683	58	159	114	72

즉, 상해자 절반 이상이 두부와 안면부, 경부에 부상을 입은 것이다. 또한 이들은 앞의 〈그림 3-2-6〉 상해자의 복합부상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신체 2곳 이상에서 복합부상 피해를 입었다. 이상의 객관적인 통계와 대인조사결과를 종합하면, 당시 계엄군은 체포자를 저항불능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과잉진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총상자 피해 사례

계엄군이 5·18민주화운동 진압 작전 중 민간인을 향해 최초로 총격을 가한 곳은 1980년 5월 19일 16시경 광주시 계림동 소재 광주고교 인근이다. 이튿날인 5월 20일 야간 광주역에서 제3공수여단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를 하였으며, 5월 21일 제11공수여단과 제7공수여단 35대대 등 계엄군이 전남도청 인근에서의 집단발포하여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5월 21일부터 광주시 외곽봉쇄작전을 전개하는 동안과 5월 27일 광주 재진입 작전 과정에서 무고한 총상자들이 발생하였다.

가) 5월 19일 최초 총상자 발생

당시 조대부고 3학년이 재학 중이던 김영찬은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져 오전수업 후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가던 중 계림극장 인근에서 시위대 대열에 합류했다. 시위대는 당시 광주고교 인근 동원예식장 앞에 계엄군의 장갑차가 있다며 대인시장 골목에서부터 무리를 지어 장갑차에 투척할 용도로 벚단에 불을 붙여 이동 중이었다. 시위대 중 일부 청년들이 장갑차의 바닥에 짚단을 던져 불을 지르려 할 때 장갑차의 해치가 열리면서 총구가 나왔고 상공을 향해 공포가 발사되었다. 이어서 도로 건너편에서 친구들이 김영찬을 부르며 건너오라고 다급하게 외쳤고, 김영찬이 도로를 건너던 중에 장갑차에 탑승하고 있던 계엄군의 사격으로 김영찬은 총상을 입고 7차례의 수술을 통해 생존할 수 있었다.

나) 5월 20일 추가 총상자 확인

5월 20일 야간 제3공수여단의 작전지역인 광주역 인근에서 민간인 총상자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1995년 검찰은 수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 5. 20. 밤 광주역 일대에서의 시위진압 과정에서 김재화(남, 25세), 김만두(남, 44세), 김재수(남, 25세), 이복일(남, 28세)이 총상을 입고 사망하였으며, 최○○(남, 39세), 김○○(남, 16세), 나순돈(남, 20세), 강○○(남, 20세), 정○○(남, 24세)과 성명불상자(25세~30세) 1명이 총상을 입었음.⁷⁷

위 총상자 최○○ 등 6명에 대해 5·18조사위에서 확인한 바, 나순돈은 5월 20일 광주역 인근이 아니라 5월 21일 19시경 광주기독병원의 헌혈자 수송차량(24인용 미니버스)에 탑승하여 이동 중 광주시 동구 소태동 인근에서 화순 방향으로 철수하던 계엄군 차량 제대의 충격을 받고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⁷⁸ 그리고 강○○의 총상 장소는 금남로 일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성명불상자(25세~30세)’ 1명은 윤○○(1955년생, 남)로 확인되었다. 윤○○의 광주기독병원 진료기록부에는 ‘5. 20. 총상 환자’로 기록되어 있고, 보상신청자료 신고 내용에 ‘1980. 5. 20. 오후 9시 15경 신역 앞 중흥동 원예협동조합 정문 도로상에서 구호를 외치다가 왼발 무릎 부위에 총상을 입고 시외버스공용터미널 부근 원정수 외과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고 귀가, 자택에서 치료, 5. 30. 광주기독병원 입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5·18조사위는 검찰 수사 결과 외 추가 총상자가 3명 더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3-2-9>과 같다.

<표 3-2-9> 5·18조사위 조사 결과 추가 확인된 5. 20. 광주역 인근 총상자

구분	성명	생년, 성	직업	상 이 내 용
1	유○○	1954년생, 남	자영업자(공업사 운영)	왼쪽 어깨 총상
2	한○○	1963년생, 남	고등학생	왼쪽 다리 하부 총상
3	여○○	1961년생, 남	가구공장 종업원	우측 어깨, 왼 손등 총상

77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 『5·18 관련 사건 수사결과』(1995. 7. 18.), 『5·18사건 수사기록』 1권, 89~90쪽.

78 5·18조사위, 조사1과-1020(2022.11.24.), 『피해자 나○○ 진술청취 결과 보고』(2022. 11. 15.). 5·18조사위는 총상자의 성명 또한 검찰에서 기록한 나순돈이 아니라 ‘나○○’임을 확인하였다.

다) 5월 21일 총상자의 사례 및 분석

〈표 3-2-10〉 5. 21. 장해 등급별 총상자 현황

장해등급	인원
장해1급	5
장해2급	3
장해3급	2
장해4급	2
장해5급	13
장해6급	3
장해7급	15
장해8급	8
장해9급	13
장해10급	7
장해11급	5
장해12급	28
장해13급	3
장해14급	60
기타1급	6
기타2급	2
계	175

앞서 살펴보았듯이 5월 21일 발생한 총상자는 175명이다. 장해등급별 분포를 보면 〈표 3-2-10〉과 같다.

이 장해등급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은 피해자들이 상해를 당한 1980년 이후 최소 10년이 경과한 다음에 보상신청을 통해 등급판정을 받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1차적인 의료조치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증상의 호전이 있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대다수의 상해자들이 등급판정에 상당한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5월 21일 총상자 중 장해8급 이상의 상해자는 51명이다. 당일 전체 총상자의 35%에 달하는 수치다. 또한 과거 국회 청문회 등에서 시위진압 현장에 있었던 계엄군 간부들은 시민들의 하체를 조준사격했다고 하였으나, 상해자의 상당수가 가슴과 복부, 심지어 두 부에까지 총상을 당하는 치명적인 상해를 입고 불구의 몸이 되어 본인과 가족 등에게까지 그 피해가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총상자 중에는 마약 성분이 함유된 진통제를 투여할 정도로 상태가 심한 상해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건 발생 후 상당 기간 총탄 파편이 체내에 잔존하였음에도 뒤늦게 발견한 경우가 있는데 사례를 들면 아래와 같다.

(1) 5월 21일 전남도청 인근 총상자 사례 ① 이광영(1953년생, 남, 승려)

5월 21일 전남도청 인근 지역에서 계엄군의 총격은 13시를 전후한 시각 한 차례의 집단사격으로 그치지 않았다. 당시 상해를 당한 시민들을 위해 환자를 후송하고 의약품을 병원에 운반하는 등 자발적으로 '적십자'활동을 하던 봉사원들에게도 계엄군의 총격이 있었다.

당시 전남 나주의 다보사라는 사찰에서 수행 중이던 이광영은 5. 21.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광주시 무등산 내에 위치한 증심사의 바쁜 일정을 도와주기 위해 5. 14.경 광주에 왔다. 이후 광주시에 투입된 계엄군의 무자비한 시위진압 장면을 목격하고는 시내 곳곳에서 발생한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후송하고 의약품과 헌혈액 등을 병원으로 운반하는 등 적십자 활동을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⁷⁹

- (부상자들) 병원에 데리고 가니까 그 의사들이 정신이 없어요. 의사들 가운데는 피가 흥건

79 이광영, 제13대 국회 제145회,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제13대 국회회의록 제29호』(1989.02.23.), 16쪽. 이광영 일행에 대한 총격은 철수하는 계엄군의 차량 제대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히 젖어있고 우리에게 오히려 핀잔을 주더라고요. 당신들은 환자들만 데려오면 어떡하느냐. 지금 우리 병원에는 이미 응급약품이 다 떨어졌고 산소까지 다 떨어졌다 말입니다. 당신들이 자꾸 갖다주려면 사후대책을 만들어주고 해라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제가 보면서 참 처절한 모습을 목격하고 아! 내가 여기에서 일은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우리 같은 대원들과 거기에서 몇 사람 규합해가지고 적십자대원을 만듭니다. '민간인 적십자대'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의사 가운데로 갈아입고 차에는 적십자기를 꽂고 태극기도 꽂고 응급약품과 들 것과 다른 장비를 병원으로부터 협조를 받아가지고 장치를 하고 그로부터 병원에서 여러 가지 적어주더라고요. 산소「탱크」를 좀 갖다주십시오. 응급약품은 무엇무엇 무엇을 좀 갖다주십시오. 피가 부족합니다. 피를 좀 갖다주십시오. 이러한 것들을 의사들이 적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차량이 적십자 활동을 그때부터 합니다.

5월 21일 이광영은 5~6명의 동료들과 함께 한쪽 팔에는 적십자 완장을 차고 흰 가운을 입고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였다. 18시가 지나 광주기독병원에서 휴식을 취하던 이광영은 재차 부상자들을 후송하기 위해 짚차를 타고 동료들과 함께 적십자병원으로 향했다. 광주천변 도로를 지날 때 주변에 있던 아주머니들이 몰려와 자신들의 차를 막아 세웠다. 바로 앞 '구 시청 사거리'에서 총을 맞은 청년들 5~6명이 있다며 구조를 요청한 것이다. 계엄군이 주변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차별적인 사격을 했으므로 누구도 접근할 엄두를 못 내는 상황에서 구조를 감행하였고, 순간 총격을 당했다며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⁸⁰

- 그래가지고 나가서 차를 돌리고 우리는 환자를 끌고 옵니다. 세명 씩 나뉘어가지고 저는 환자 앞을 들고 뒤의 두 사람은 다리를 하나씩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선임자였기 때문에 앞에 딱 올라타서 환자를 끌어올리는 순간에 '뺑' 소리를 들으면서 엄청난 통증을

80 이광영, 위 국회 회의록, 19쪽.

느꼈습니다. 내 척추에 총을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측 다리를 미처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총을 맞았습니다. 그레가지고 의자 밑으로 고꾸라졌어요. 이 총을 맞은 사람 보니까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고 통증을 진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척추 중추신경을 맞아가지고 엄청난 통증을 느끼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 그러자마자 갑자기 총소리가 다다다다닥 하고 연사로 계속 납니다. 그러면서 환자들을 버리고 적십자 대원들은 차를 타고 막 출발을 하는데 그 도망가는 차에다 대고 계속 공복듯이 쏘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행히 의자 밑으로 고꾸라져가지고 더 이상은 총은 안 맞았습니다마는 뒤에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세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림 3-2-8〉 5. 21. 이광영 일행이 총격을 당할 당시 위치도

이광영은 광주기독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고 살 수 있었으나, ‘하반신 마비’ 상태가 되었고, ‘육창’과 ‘통증’, ‘대소변 배출 이상’ 등의 후유증상이 수반되어 계속 투약이 필요했다.

특히 아래 〈그림〉의 향후 치료 소견서에서 볼 수 있듯이 ‘볼타렌 주사로 도저히 제통이 되지 않을 경우 환자의 필요에 따라서 마약성 진통제의 주사를 맞아야 할 경우가 있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3.질 병	국제질병분류번호
<input type="checkbox"/> 임상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최종	총상 드르 인한 척추손상(L3-4) 드르 인한 허반신 마비
4.발 병 일	1980년 5월 21일
5.향 의 의	주 요 의 견
6.비 고	상기인은 1980년 5월 21일 총상 드르 인한 척추손상으로 허반신 마비 상태이며 이로 인한 목함, 흉증, 대변변 1배출 이상 등으로 계속 투약 중으로 함 것으로 기록됨.

〈그림 3-2-9〉 이광영의 진료기록부에 표기된 상해 내용

상기인은 1980년 5월경 총상에 의한 척추손상으로 인하여 허반신 마비는 물론이고 수술 등에 의한 근본 치료가 되지 않는 한 척추손상의 후유증의 하나로써 통증이 유발되며 그에 대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해야 함 것으로 사료됩니다.

2 Voltaren injection
 (6000원 (1회) × 2회 × 365일 = 4,380,000원)

3 볼타렌 주사로서 도저히 제통이 되지 않을 경우 환자의 필요에 따라서 마약성 진통제의 주사를 맞아야 할 경우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필요에 따라서 주 2회 정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병.의원 단위에서만 주사할수 있음.
 Demerol 50mg I.M.

1000원 (1회) × 2 (1주) × 52주 = 104,000원 (매년) ×

〈그림 3-2-10〉 이광영의 향후 치료 소견서에 기재된 내용

당시 총상자들 중 이러한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한 총상자들의 인원과 투약 횟수 등은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으나, 총상자들 중 오랜 기간 약물로 진통을 참아오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도 있었다. 2021년 11월 23일에 자살한 이광영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광영은 유서에 “나의 가족에게, 어머니께 죄송하고, 가족에게 미안하고, 친구와 사회에 미안하다. 5·18에 원한도 없으려니와 작은 서운함들은 다 묻고 가니 마음이 홀가분하다. 나의 이 각오는 오래전부터 생각해 온 바, 오로지 통증에 시달리다 결국은 내가 지고 떠나감이다. 아버지께 가고 싶다”고 남겼다.

(2) 5월 21일 전남도청 인근 총상자 사례 ② 박○○(1968년생, 남, 학생)

위 이광영이 총상을 당하면서 구출한 사람 중 한 명이 박○○이다. 총상 당일인 5월 21일부터 156일간 광주기독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하반신 불구의 몸이 되었다. 조선대병원에서 1990년 9월 15일에 발급한 진단서에는 박○○의 병명이 아래 [그림]과 같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2. 환자의성명	박○○	성별	남	여	생년월일	1968년 5월 1일	연령	만 22세
3. 병명	<input type="checkbox"/> 임상적 <input type="checkbox"/> 최종	① 발목 정중부 비후성 반흔 및 발목상 반흔 (총 길이 23cm) ② 무릎 하복부 다발성 함몰성 반흔 및 비후성 반흔 (국제질병분류번호) ③ 좌측 상근 전상부 함몰성 반흔 및 발목상 반흔 (총 길이 23cm) ④ 좌측 상근 전상부 함몰성 반흔 및 발목상 반흔 (총 길이 23cm) ⑤ 좌측 상근 전상부 함몰성 반흔 및 발목상 반흔 (총 길이 26.5cm) ⑥ 무릎 상복부 및 대퇴 중상부 함몰성 반흔 및 발목상 반흔 (총 길이 49cm) ⑦ 무릎 상복부 및 대퇴 중상부 함몰성 반흔 및 발목상 반흔 (총 길이 49cm) ⑧ 무릎 상복부 및 대퇴 중상부 함몰성 반흔 (8cm x 3cm)						
4. 발병일						1980년 5월 18일 양주 민주화운동 당시		
5. 치료의견						상기 병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인하여 1차 수술로 무릎 상복부 함몰성 반흔 (8cm x 3cm)에 대한 교정수술로 반흔 근 절단수술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상기 병명부위의 반흔 (총 길이 192.5cm)에 대한 반흔 절제수술 및 2-차 절제수술은 약 9회에 걸쳐 분할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 상기 수술의 합병증 및 후유증이 병발하는 재 수술 및 추가 수술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 본 진단서는 상해사건에 관련된 것임.		
6. 비고						※ 첨부: 흉부 치료비 청구서 2매. 반흔에 대한 사진 4매.		

〈그림 3-2-11〉 박○○의 진단서 사본(1990. 9. 15. 조선대병원 발급)

이를 그대로 옮겨보면 아래와 같다.

- ① 복부 정중부 비후성 반흔 및 봉합 반흔(총 길이 27cm)
- ② 우측 하복부, 다발성 함몰성 반흔 및 비후성 반흔(총 길이 23cm)
- ③ 좌측 장골 전상부 함몰성 반흔 및 봉합 반흔(총 길이 21cm)
- ④ 배부 하부 요추부위 비후성 반흔 및 봉합 반흔(총 길이 32cm)
- ⑤ 좌측 배부 하부 비후성 반흔 및 봉합 반흔(총 길이 26.5cm)
- ⑥ 우측 둔부상부 및 대퇴 외측부 함몰성·비후성 반흔 및 봉합 반흔(총 길이 47cm)
- ⑦ 우측 둔부 중앙부 및 대퇴 중앙부 비후성 반흔 및 봉합반흔(총 길이 12cm)
- ⑧ 우측 좌골 욱창 및 함몰 변형(8cm×3cm)
- ⑨ 우측 대퇴전부 및 대퇴 외측부 함몰성 반흔(총 길이 4cm)



〈그림 3-2-12〉 박○○의 수술 후 상처 사진 일부

2) 마약성 진통제

내복약으로 제동이 되지 않은 경우 때로 필요한 것입니다.

Demerol 50mg I.M.:

1,000원 (1회) X 2 (1주) X 52주 = 104,000원

〈그림 3-2-13〉 전남대병원에서 발급한 박○○의 향후 치료비 내용 사본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위 전남대병원에서 발급한 박○○의 향후 치료비 내용을 보면, 이광영과 마찬가지로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3) 5월 21일 전남도청 인근 총상자 사례 ③ 이○○(1963년생, 남,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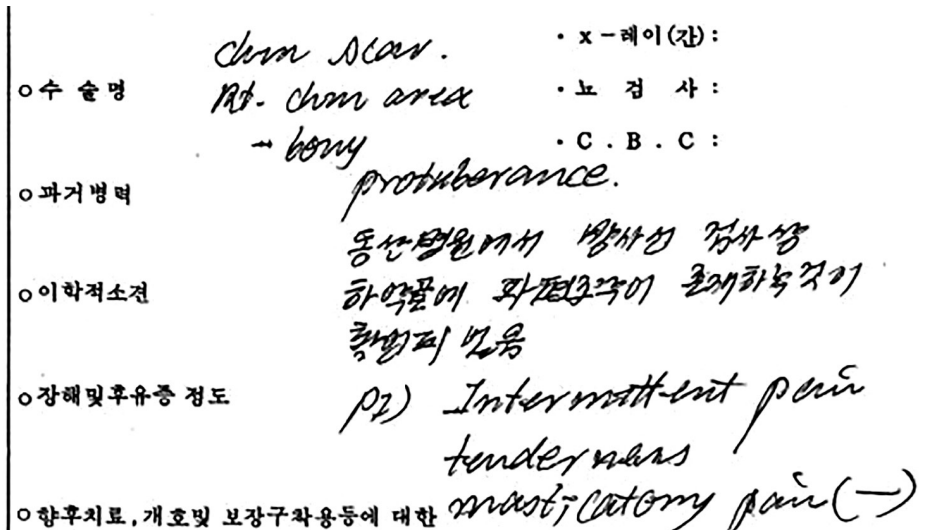
당시 전남기계공고에 재학 중이던 이○○는 5월 21일 금남로3가에 위치한 광주은행 앞 시위 대열에 합류하여 시민들의 연설을 듣던 중 총성과 함께 오른쪽 턱부위에 총상을 입었다. 자신이 총상을 당하기 전 이미 계엄군의 사격이 시작된 상태였다고 5·18조사위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 그때 그 계엄군이 아마 저기 도청 정문 쪽에서 총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전일빌딩에서도 저격수가 있다고 배치돼 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좀 들렸었어요.⁸¹
- 근데 인자 총소리가 나더라도 인자'그 계엄군이 저희 인자 시민들한테 그렇게 직접적으로 발포를 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때는. 뭐 그럴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직접 뭐 조준사격이나 아니면 이런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가령 뭐 그 게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쏜다라고 했을 때는 감히 그 자리에는 있을 수가 없는 어떤 거

81 5·18조사위, 「참고인 이○○ 진술녹취록」(2022.06.15.), 7쪽.

리쥬.⁸²

- 연좌농성을 하면서 갑자기 어떤 충성음과 함께 제 턱을 뭐가 강하게 때린 저기 느낌을 받았어요, 느낌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아픔을 전혀 통증을 못 느꼈습니다. 못 느꼈고, 제가 그때 당시에 5월 달이라 또 손에 이 수건을 하나 감고 다녔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턱을 뭐가 강력하게 타격한 느낌이 들어서 딱 만져보니까 약간 여가 파열이 폭 들어간 상황으로 피가 막 굉장히 나고 있어서 제가 저기 수건으로 이렇게 지혈을 해서 하면서 한국은행 그 입구 입구 건물 밑으로 이제 피신을 했습니다. 피신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그 주변 분들이 저를 저기 부축을 해가지고 여 금남로 총장로 쪽으로 아마 금남로, 제 기억으로는 그게 저 광주 그 관광호텔 아마 뒤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영도외과가, 그 이영도외과로 저를 부축해서 데리고 갔습니다.⁸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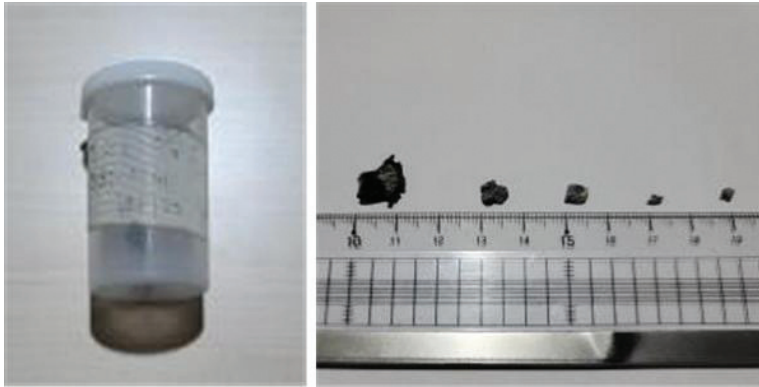
〈그림 3-2-14〉 이○○의 5·18보상심의위 진료기록부 사본 일부.
(‘하악골에 파편 조각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음’이라 기록되어 있다.)

이○○는 2005년 조선대병원에서 체내에 잔존하던 총탄의 파편들을 제거하는 수술을

82 5·18조사위, 「참고인 이○○ 진술녹취록」(2022.06.15.), 12쪽

83 5·18조사위, 「참고인 이○○ 진술녹취록」(2022.06.15.), 3~4쪽

받았고, 파편은 아래 사진(왼쪽)과 같이 보관하고 있다가 5·18조사위 조사과정에서 제출했다. 파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자와 함께 촬영한 사진은 아래와 같고, 큰 파편은 육안으로 봤을 때 1cm가 넘었다.



〈그림 3-2-15〉 이○○의 체내에 잔존하던 총탄의 파편들(오른쪽)(큰 파편은 1cm가 넘는다.)

라) 5월 27일 상무충정작전 중 총상자 사례

5월 27일 01시를 전후로 하여 전개된 계엄군의 상무충정작전(광주재진입작전)으로 인한 총상자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⁸⁴

(1) 5월 27일 총상자 사례 ① 김○○(1961년생, 여, 학생)

김○○는 당시 전남대 심리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5월 26일 동생과 함께 전남도청 앞의 켈기대회에 참여하면서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고, 금남로에 위치한 YMCA와 YWCA를 오가며 시위를 돕는 활동을 하다가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의 총탄에 총상을 입었다며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⁸⁵

84 상무충정작전의 경과 및 내용, 방식 등에 대해서는 5·18조사위 별도의 직권사건에서 다룬다.

85 『김○○ 5·18보상심의회기록』, 61쪽.

5월 26일 가두시위를 끝낸 19시 30분경 100여 명의 시민과 함께 YMCA로 들어갔다. 22시경 YWCA로 건너가 곧바로 취침에 들어갔다. 5월 27일 03시경 건물 밖에서 들려오는 어떤 여자의 목소리에 잠이 깨었다. 계엄군이 들어오고 있으니 광주 시민이며, 도청 광장으로 모이라는 소리였다.

- 04시 30분경 큰 폭음에 잠이 깨어 옆 건물로 잠시 몸을 피했다가 다시 YWCA로 건너와 솔에 밥을 얹히고 몇 분이 경과했을까. 유탄인지 총탄인지 분간할 수가 없는 탄알이 주방 유리창을 뚫고 맞은편 벽에 꽂혔다. 땅바닥에 몸을 깔고 피하였지만 06시 30분경 등에 유탄이 박히며 코와 입으로 피가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계엄군 한 사람의 인도로 YWCA를 나와 국군광주통합병원에 도착했다. PT실에서 수술을 받고 병실로 옮겨져 7월 2일 광산경찰서로 옮겨지기까지 그곳 국군광주통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7월 3일 석방이 되었고, 한 달여 동안 조선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상처 부위의 재봉합수술 및 기타 치료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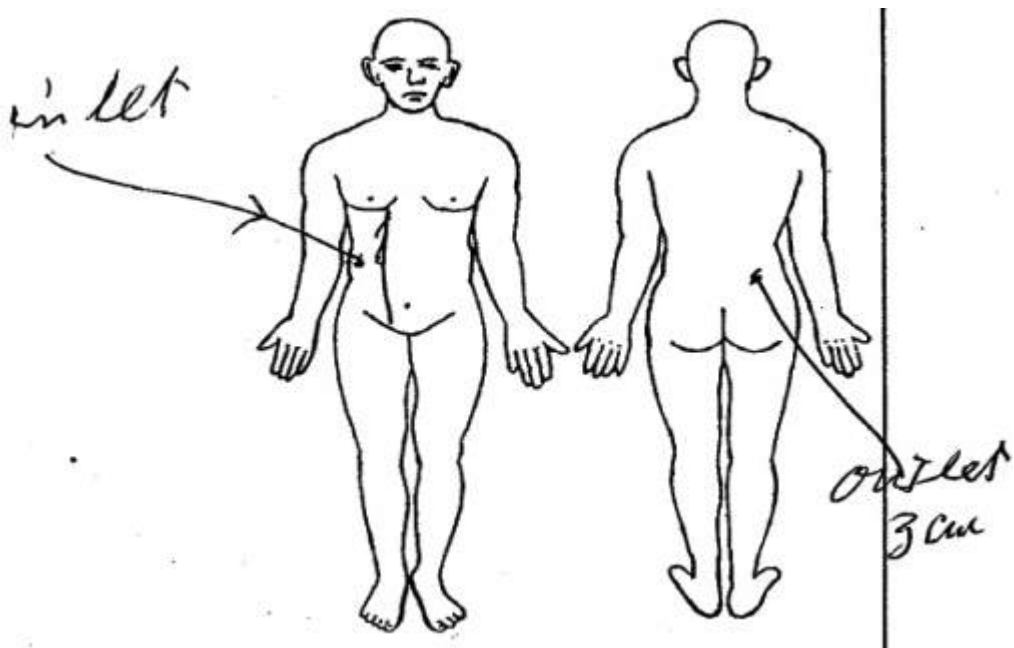
김○○는 1988년 ‘부상자 추가신고’ 당시 ‘내 등에는 납이 들어 있다. 너무 깊이 박혀 있어 꺼낼 수가 없다’며 후유증상을 기록했다.

(2) 5월 27일 총상자 사례 ② 노○○(1947년생, 남, 경찰)

노○○는 당시 경찰이었다.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해 광주시 소재 자가에서 대기 중 5월 27일 07시 15분경 광주시 계림동에 거주하는 형 노□□의 집에 식료품을 구하러 가던 중 계림로터리 부근에서 계엄군의 총격으로 ‘요부관통총상’, ‘우장골골절’, ‘대장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광주기독병원에서 3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2. 환자의성명	노	성별	남:여	생년 월일	1947년 4
3. 병명	복부 종양으로 인한 대장암 및 유방 암종 골전격 모두 광동양양				
<input type="checkbox"/> 임상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최종					

〈그림 3-2-16〉 노○○에 대한 광주기독병원 진단서(1980. 6. 4.)



〈그림 3-2-17〉 노○○의 진료기록부에 표기된 총상 위치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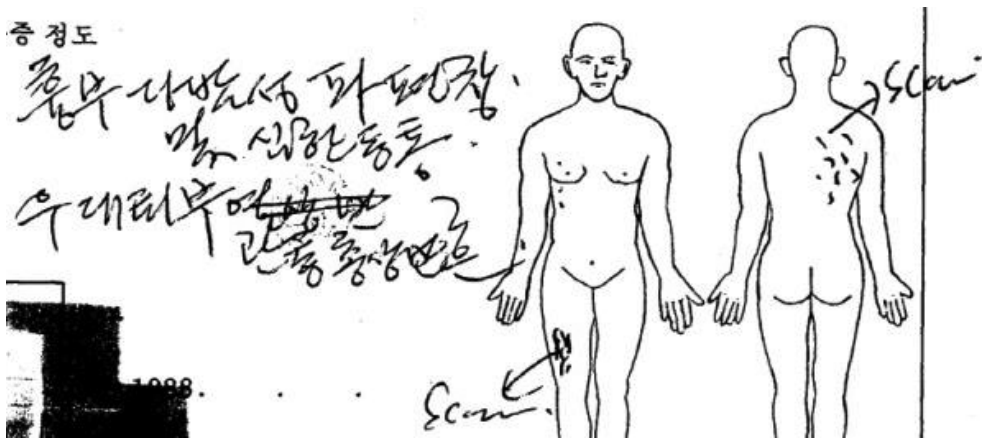
제5장

제6장

제7장

(3) 5월 27일 총상자 사례 ③ 정○○(1964년생, 남, 학생)

정○○은 사건 당시 17세의 학생였다. 아버지 정△△이 1988년 부상자 신고 당시 진술한 내용을 보면 5월 19일 친구와 같이 집을 나간 후 소식이 없다가 6월 3일경 국군광주통합병원에 입원해있다는 전화를 받고 가족들은 입원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정○○의 상해 내용을 정△△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그림 3-2-18〉 정○○의 5·18보상심의회위원회 진료기록부

- 5월 19일 친구와 같이 친구 집에 출타하였음. 그 후 소식이 없어 근심하던 차 1980년 6월 3일 전화내용에 의하면 도청 상무관에서 대학생 부상자 간호를 하다 진압 당일(5월 27일) 진압군에 의하여 3개 부위의 관통상과 6개 부위의 파편상을 입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있다 하여 국군광주통합병원에 들러 수차에 걸쳐 면회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에 면회를 못 하고 있던 중, 1980년 9월 10일경 1차로 귀가하였을 당시는 적십자병원에서 치료 중이라 말하고 있었으며, 당시 상태는 흉부 및 늑골, 대퇴부 3부위는 붕대를 대고 있었으며, 다리를 절고 있으며, 특히 대퇴부는 황농이 배이고 있는 입원치료 상태였음.

정○○의 주요 상해 내용은 ‘흉부 다발성 파편창’과 ‘우대퇴부 관통총상’ 등이다.

(4) 5월 27일 총상자 사례 ④ 박○○(1963년생, 남, 공원)

박○○는 5월 26일 전남도청에 남아 기동타격대원으로 활동하였다. 6조에 편성된 박○○는 전남도청 - 금남로 - 양동초등학교 - 월산동 - 광주천변 등지를 순찰 다녔고, 계엄군의 상무충정작전이 있던 5월 27일 새벽 전남도청 내에 있다가 계엄군의 총격으로 '좌경부 파편창'을 입고 국군광주통합병원에 입원했다. 박○○는 1988년 부상자 추가신고시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⁸⁶

- 1980년 5월 27일 03시 30분경 도청 옆에서 부상을 당하여 5월 27일 오전에 국군광주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하여 1차로 목에 있는 파편 일부를 빼내고 1980년 7월 3일 상무대로 옮겼으나, 다시 악화되어 1980년 7월 14일 재입원 2차로 파편을 제거한 후 다시 1980년 9월 21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나머지 파편은 제거하지 못하고 10월 29일경 광주교도소로 후송되었습니다.

1988년 6월 부상자 추가신고 당시 박○○는 '파편이 남아 있으며, 통증'이 있고, '때로는 혈압이 올라감'이라고 당시 상태를 기록했다. 1988년 8월 전남대병원의 검사 소견에는 박○○의 병명이 '만성중이염(좌측)'이라 기록되어 있고, 의사 소견에는 '측두골×선상 좌측 유양봉소의 병변과 이학적 검사상 좌측 고막의 천공 및 이루를 인지할 수 있음.'이라 기록되어 있다.⁸⁷ 1990년 보상심의 당시 '중증도의 청력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5) 도검류에 의한 상해

과거 1989년 국회 청문회나 1995년 검찰 수사 등에서 조사를 받았던 계엄군들은 시위 진압 현장에서 대검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한사코 부정하였다. 그럼에도 검찰은 당시 시위진압 현장에서 대검이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이 수

86 『박○○ 5·18보상심의위원회 기록』, 321쪽

87 『박○○ 5·18보상심의위원회 기록』, 321쪽

사 결과를 기록했다.

- 착검 상태에서 트럭을 타고 위력시위를 하던 중 시위대로부터 투석 공격을 당하자 일부 부대원이 착검 상태에서 하차하여 시위대를 추적, 체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과정에서 대검 부분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 실제로 하○○, 최○○, 김○○, 이○○, 최○○ 등이 당시 자상을 입었고, 사망자 손옥례, 권근립, 윤개원, 김평용, 박종길, 민병렬, 허봉, 김경환 등의 시체에서 자상이 발견된 점을 종합하면,
- 지휘관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수부대원들에 의하여 시위진압 현장에서 대검이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과거 검찰에서 계엄군의 대검 사용 인정의 근거로 상해자들의 자상을 제시하였으나, 위 하○○ 등 5명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조사 내용은 없었다. 이에 5·18조사위는 본 사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현장에 투입되었던 계엄군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았다.

가) 사례 - 최○○(1962년생, 여, 학생)

최○○는 당시 광주시 동구 학동에 거주하는 학생이었다. 5월 20일 오후 남광주시장 인근의 언니 집에서 공부하고 학동 집으로 향하는 길에 시위대를 추격하는 계엄군에 덩달아 쫓겨 전대병원 방향으로 뛰어가다 막다른 골목길에 이르러 공수부대원 5명으로부터 폭행과 성추행을 당하면서 대검으로 찔렸다고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 마음이 급해서 도망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어깨랑 발이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이는 못 도망가고 다 인자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 어두컴컴하니까. 그리고 골목으로 들어갔죠. 그 당시 골목이 전남대학교 응급실하고 맞은편 대우병원 있었습니다. 그쪽 골목으로 들어갔어요.⁸⁸

.....

88 5·18조사위, 「참고인 최○○ 진술녹취록」(2022.03.15.), 2쪽

- 막다른 골목길에 서서 있는 사람이 아저씨가 한 분이 계셨어요. 그 당시 그 아저씨는 마흔 살 초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인자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래서 (공수부대원) 5명에서 들어와가지고 아저씨가 나아 번갈아 가면서 막 때리더라고요. 근데 그 무서운 상황에 맞는지조차도 몰라요. 어디가 아프단 소리도 ‘아! 아!’ 해 싸면은 소리 지른다고 막 때리고, 꼬챙이 잡고 나는 이제 여자니까 머리고챙이 잡고 그 아저씨 머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곤봉으로 막 내리친 것을 봤어요, 제가. 제 눈으로 아저씨 머리를 막 몇 대를 막 때리더라고요, 총으로.⁸⁹
- 아저씨 먼저 딱 쓰러지더라는 그분들(공수부대원)이 이제 나를 공격을 하면서 나가대요, 5명에서. 나갔다가 다시 5명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거는 일종의 성추행 할라고 온 거예요 인자, 결론은 저한테. 지금인게 성추행이라는 말이 나오지. 난 아직까지 내뱉어본 적이 없어요. 작년 그 작년부터 인자 내가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나도 성추행당했는데, 왜냐면 5명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제 어깨를 양쪽으로 딱 잡더라고, 두 분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이.⁹⁰

당시 계엄군들은 막다른 골목길에서 최○○와 성명미상의 남성 1명을 폭행한 후 재차 최○○를 벽 쪽에 밀쳐 놓고 성추행을 한 후 양쪽 어깨 부위를 대검으로 찌르고는 “발로 차고 밀고” 가버렸다고 증언했다.⁹¹

최○○는 당시 인근에 숨어 있던 학생들의 도움으로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져 입원해 있는 동안 같이 폭행당했던 아저씨를 만났던 일화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 같은 병원에서 만났어요. “워매 나 아저씨 죽어분 줄 알았더니 살았다고.” 나도 이랬지. 그렇게 수술을 몇 번 해야 된대, 이 머리 때문에. 머리를 얼마나 맞았는가. (나중에 그 아저씨를) 만나볼라고 했는데 정신이상자가 돼 버렸어요. 수술을 몇 번 해버렸는가.⁹²

89 5·18조사위, 「참고인 최○○ 진술녹취록」(2022.03.15.), 3쪽

90 5·18조사위, 「참고인 최○○ 진술녹취록」(2022.03.15.), 3쪽

91 5·18조사위, 「참고인 최○○ 진술녹취록」(2022.03.15.), 17쪽

92 5·18조사위, 「참고인 최○○ 진술녹취록」(2022.03.15.), 18쪽

최○○는 5·18조사위 조사에서 그날 입었던 상처 때문에 아직도 치마를 못 입는다며 오른 다리 정강이에 남아 있는 상처를 보여주었고, 오른쪽 어깨 부위에 남아 있는 자상흔을 보여주었는데 촬영 사진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3-2-19〉 최○○이 5·18조사위 조사에서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에 아직 남아 있는 상처 자국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으로서 부끄러워 치마를 입지 못했다고 한다.



〈그림 3-2-20〉 최○○가 5. 20. 계엄군에게 대검으로 찔린 오른쪽 어깨 부위에 남아 있는 상처 자국을 제시했다.

1980년 5월 20일 22시 20분 최○○를 치료했던 전남대병원의 응급환자기록지에는 ‘어깨와 견갑골 부위 깊은 자상’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최○○는 같은 병원에서 6월 17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⁹³

성명 최○○ 1980년 5월 20일 응급환자기록지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산동 1가 11-11 전남대병원 642호 성별 남 연령 19 직업
 Relative or friend 약 2등 7/1 주소
 Place of accident 시간
 How did accident occur
 보증인 성명 장가 오성 주소
 V-S: B-P // T P P R R
 C.C. Deep lacer wound on shoulder & scapular reg.
 Duration:

〈그림 3-2-21〉 최○○에 대한 1980. 5. 20. 전남대병원 의무기록 일부

그러나 병원에서는 치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지하실에 불려가 입원한 환자에게까지 데모에 참여했음을 강요하는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 첫째는 난 하고 싶은 얘기는 병원에 있을 때, 전두환이가 시켰는가 누가 시켰는가 데모한 사람 고를라고 저기를 조서를 받잡아요. 세상에 아파 있는 환자를 지하실로 데리고 내려 오라는 거. 난 그거이 제일 못마땅하고, 그분들한테 진짜 큰 보상을 제대로 한번 그 배상을 한번 받고 싶어요. 세상에 아파 있는 사람 그때는 병이었어요. 다 링게루 병이요. 4개월 달고 다녔어요. 제가. 나쁜 피 빨라고, 주사 맞을라고, 주사약을 2개나 뒀을 뿐더러, 그놈 뺏지 또 한 놈 아무튼 4병을 갖고 내가 지하실로 가가지고 데모했냐 안 했냐. 지하실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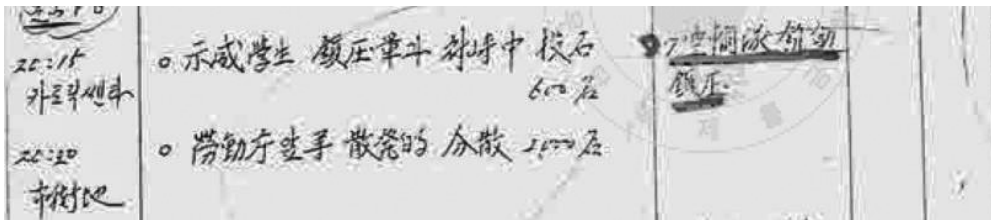
93 『5·18광주민중화운동자료총서 23권』, 671~672쪽.

명씩 들어오라 해가지고 세상 그런 사람들이 어디가 있냐고요. 나는 지금도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로.⁹⁴

- 더더구나 나는 여자로 저긴데 자기네들이 유리한 대로만 대답을 하기를 바래. 그렇게 반강요죠, 그거는. “데모를 했냐 안 했냐.” 내가 데모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뭐 연장을 하나 들어봤어요. 뭐 뭇을 들어봐. 그런 저기가 있었고, 아픈 환자를 데리고 가가지고 난 그게 제일 못마땅했고.⁹⁵

나) 대검 사용 관련 군 기록 및 계엄군의 증언 내용

전교사의 『상황일지(기간:5. 14. ~ 5. 27.)』를 보면, 5월 18일 20시 15분 가톨릭센터 부근에서 ‘시위학생 진압군과 대치 중 투석’, ‘7공수여단 착검 진압’이라고 아래 [그림]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림 3-2-22〉 전교사 상황일지 사본

이에 대해 당시 제7공수여단 35대대장 김일옥은 과거 검찰 수사에서 “5. 18. 19:00경부터 22:00경까지 저의 대대는 조선대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톨릭센터에 출동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7공수여단 전투상보에도 이같이 기재되어 있는데 전교사 작전상황일지가 왜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5·18조사위는 당시 현장에 투입되었던 제7공수여단 소속 공수부대원들에 대한 조사에

94 5·18조사위, 「참고인 최○○ 진술녹취록」(2022.03.15.), 24쪽

95 5·18조사위, 「참고인 최○○ 진술녹취록」(2022.03.15.), 24쪽

서 같은 부대원이 시위진압 과정에서 대검을 이용하여 도주하는 민간인을 가해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한 대원의 진술을 들을 수 있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 중사라고 같은 지역대에 있었는데 어느 주택가 골목길로 몇 명이서 시위대를 쫓아가는 상황이었었는데 남자 1명이 담벼락을 넘어서 가는 것을 유○○이 대검을 손에 들고선 그 남자가 담벼락을 막 넘어서려고 하는데 한쪽 다리가 벽에 걸쳐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 뒤쪽 허벅지에다가 손에 든 대검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듯이 찌르니까 그 남자가 담을 넘지 못하고 도로 길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랬더니 유○○이가 그 남자의 옷에다가 대검을 쓱쓱 닦으면서 머리채를 확 낚아채서는 트럭 있는 쪽으로 연행해가는 장면도 제가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다.⁹⁶

또한 당시 광주시 동구청의 민원실에서 근무하던 정○○은 5·18조사위 조사에서 5월 19일경 동구청 내에서 목격한 내용이라며,

- 제가 광주시 동구청의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을 때였는데, 오후에 갑자기 학생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고, 그 바로 뒤에 군인들 3~4명이 사무실에 들이닥쳐 왔습니다. 그러더니 젊은 청년으로 보이는 남자 1명의 목살을 잡고 끌고 나가려는 순간 청년의 누나 처럼 보이는 여자 1명이 “내 동생은 민원인이예요”하면서 군인들을 말리려고 했는데, 군인 중 한 명이 대검을 손에 쥐고선 팔을 위로 치켜올렸다가 그 아가씨를 바로 내리 찌르려는 자세를 취하면서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랬더니 아가씨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서 있었고, 그 때 분위기가 하도 험악하고 무서워서 민원실에 있던 저희 공무원들도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었습니다.⁹⁷

라고 진술했다.

당시 제3공수여단 12대대 특공중대의 정보작전 하사관이었던 김○○은 5·18조사위 조

96 5·18조사위, 「참고인 유○○ 진술조서」(2023.02.22.), 7~8쪽

97 5·18조사위, 「참고인 정○○ 진술조서」(2020.09.16.), 3쪽

사에서 자신이 직접 대검을 사용하여 민간인을 가해한 사실이 있음을 고백하였다. 김○○이 속한 부대는 5월 20일 20시부터 21시경에 광주역 앞에서 진압작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연행해온 시민들을 포박하는 등의 일을 하던 김○○은 대원들이 시민들을 심하게 구타·폭행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를 중지시킬 목적으로 휴대하고 있던 대검을 M16소총에 착검한 상태에서 노상에 의식을 잃고 엎어져 있는 성명미상 남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겨냥하여 폭 짚었다며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 그렇게 구타, 폭행을 할 거면 차라리 죽여 버려라. 그 정도 용기 없으면은 더 이상 손대지 말아라. 이런 의사의 표현으로 현장에서 착검을 해가지고 엎어져 있는 사람을 그렇게 한번 짚었어. 일부러 살이 좀 많은 부위를. (...중략...) 칼을 빼고 나니까 피가 엄청 이렇게 과다출혈이라고 하나. 그래서 ‘아, 이 분은 과다출혈로 인해서 잘못될 수 있겠다’. 생명이 지장이, 내가 짚었을 때 그 생각을 한 거예요.⁹⁸

위의 사례와 5·18보상심의위원회의 기록 내용, 군 기록과 현장에 있던 부대원의 진술 내용을 살펴봤을 때 당시 시위진압 현장에서 계엄군이 대검을 사용하여 민간인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3. 소결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민간인을 상대로 자행한 폭력 행위는 1980년 5월 17일 밤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와 함께 제7공수여단 2개 대대가 광주의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를 점령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어 제11공수여단, 제3공수여단, 그리고 보병20사단 등이 순차적으로 투입되었으며, 광주로 진입한 계엄군들은 ‘대간첩작전’에 준하는 무기와 탄약을 휴대하고 ‘비상계엄 해제’와 ‘전두환 퇴진’등을 주장하는 학생과 시민들을 향하여 조직

98 5·18조사위, 「참고인 김○○ 진술녹취록」(2022.07.13.), 28쪽

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

계엄군이 민간인에게 가한 폭력은 초기부터 광범위하고 강력했다. 5월 18일부터 27일까지의 기간 중 계엄군의 작전 전개 첫날인 5월 18일에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5·18조사위가 피해자 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한 5·18보상심의위원회의 피해 인정자 2,617명 중 18%에 달하는 462명이 5월 18일에 피해를 입었고, 5월 19일에는 441명(17%), 5월 20일에는 324명(12%)이 발생했다. 전체 피해자의 50%에 달하는 1,227명이 초기 3일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날짜가 경과하면서 피해자 수는 조금씩 감소하였으나, 계엄군 폭력의 강도는 더 심해졌다. 5월 18일 피해자 중 장해9등급 이상의 중증 피해자는 10% 남짓이었으나, 이 비율은 점점 증가하여 5월 20일에는 20%, 5월 21일에는 전체 피해자의 31%가 중증 피해를 입었다.

제11공수 여단이 투입된 5월 19일 계엄군의 구타·폭행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총상자까지 발생하였다. 제3공수여단이 투입된 5월 20일에는 총상자가 늘어났으며, 급기야 5월 21일 13시를 전후한 시각 전남도청과 전남대학교 인근 지역에서 계엄군의 발포로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였다.

계엄군의 폭력은 여성과 노인, 어린이 등에게도 이루어졌다. 5·18조사위 조사결과 진압작전 현장을 지휘하던 일부 간부들이 ‘여성들의 옷을 벗기게 할 것’과 ‘죽지 않을 정도’로 폭행해도 된다는 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진압을 유발한 지휘를 하였다고 현장에 투입되었던 계엄군들의 증언이 잇따랐다.

5·18조사위 조사 결과, 계엄군들은 시위 가담 여부와 관계없이 ‘젊은 청년’ 중심으로 구타·폭행하고 연행하는 방식으로 진압작전을 전개하여 전체 피해자 중 66%가 시위와 무관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해 피해자의 상당수가 머리와 안면부 등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발생한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를 살펴본 결과 피해자 1,185명 중 57%에 달하는 683명이 두부와 안면부, 목 부위 근처에서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피해는 이후 신경정신성 질환 등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했다.

계엄군이 휴대하고 있던 대검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 사례도 확인되었다. 5·18조사위 조사에 응한 당시 계엄군들은 스스로 대검으로 저항 불가 상태의 민간인을 가해하였음을 고백하였고, 동료 대원이 민간인을 상대로 대검으로 가해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했다.

5·18조사위 조사 결과 전체 피해자 2,617명 중 13%에 달하는 337명이 총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총상 피해는 대부분 5월 20일 광주역 근처, 5월 21일 전남도청 및 금남로 지역, 그리고 5월 21일 이후 광주시 외곽봉쇄작전 지역에서 발생했다.

5월 20일 야간에는 제3공수여단의 작전지역인 광주역 인근에서 계엄군의 총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했다. 5·18조사위는 1995년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4건의 총상자 외에 3건의 총상 피해가 더 있음을 확인했다.

5월 21일 전남도청 일원에서 계엄군의 집단발포로 최소 35명이 사망하고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5·18조사위 조사결과 5월 21일 당일에만 피해자 364명 중 절반에 가까운 162명이 총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장에 투입된 몇몇 계엄군들은 5·18조사위 조사에서 시민들을 향해 ‘조준사격’을 실행했다고 고백하거나 조준사격 장면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계엄군은 광주의 민주화운동이 지방 소도시 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5월 21일 철수 직후부터 주요 외곽도로를 중심으로 ‘외곽봉쇄작전’을 전개했다.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외곽봉쇄작전 기간 중 발생한 피해자 중 약 30% 가량이 총상자로 확인되었다. 저수지에서 물놀이를 하던 어린 아이에서부터 모내기를 하던 농부, 외지에서 온 관광객 등 계엄군이 숙영하고 이동하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5·18조사위는 많은 상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현재까지도 신체적, 정신적, 나아가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확인했다. 상해 후유증으로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하고 있는 사례도 많았으며, 정신질환이나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으로 발전하여 현재까지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5·18조사위는 또한 5·18민주화운동 당시에 입은 상해가 피해자의 기대수명과 삶의 질 수준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5·18보상심의위원회가 정한‘상이 후 사망자’113명의 상해 후 생존기간은 7년에 불과했으며, 17%에 달하는 19명이 상해 후 1년 안에, 과반수에 달하는 55명의 피해자들이 상해 피해 후 4년 안에 사망했다. 여기에는 정신질환 20명과 자살자 15명이 포함되어 있다.

민간인 상해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본 직권사건의 진상규명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다. 무엇보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피해 당사자인 민간인 상해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까지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함께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세대를 이어서 전이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제3절 행방불명

1. 조사 배경

5·18민주화운동 관련 행방불명자(이하 ‘5·18행불자’)⁹⁹의 규모 및 소재 확인에 대한 조사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의 규모, 특히 사망자의 숫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민간인 암매장 의혹은 5·18민주화운동 당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행방불명자 중 가매장, 또는 암매장되었다가 광주시청 직원에 의해 사후에 수습되어 신원이 확인된 사례도 다수 있다.

5·18보상심의위원회는 1차~7차 보상을 통해 행방불명 보상신청자 242명 중 84명을 관련 피해자로 인정하였으며, 5·18조사위 조사결과 인정자 중 8명과 불인정자 1명이 실제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편 5·18행불자는 당시 살해되어 가(암)매장되었거나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 없이 국내 입양이나 해외입양, 또는 심신미약과 정신질환 등으로 해당 시설에 수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이에 5·18민주화운동의 진압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행방불명자 규모를 파악하고, 나아가 사망자 숫자 등 총체적 피해 규모를 밝힐 필요가 커졌다. 그동안 5·18행불자는 사법기관이나 정부 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조사된 선례가 없다. 1995년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행방불명자와 암매장의 소재 확인에 대해 광주 시민사회와 5·18유관단체, 행방불명자가족들의 거센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 사안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선행된 5·18행불자 관련 기록과 조사는 5·18보상심의위원회 신청자 중에서 행방불

99 5·18민주화운동 관련 행방불명자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된 피해보상 신청의 유형 중 ‘행방불명자’의 피해를 말하며, 본 보고서에서는 ‘5·18행불자’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명자들에 대한 관련성 확인을 위해 신고자와 인우보증인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전부이다. 이에 5·18조사위는 5·18 기간 동안 발생한 행방불명자의 규모와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특별법 제3조 제6호에 근거하여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의 확인」〈직마-4〉로 2020년 5월 11일 제10차 전원위원회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2023년 12월 8일 제107차 전원위원회에서 전원일치로 ‘진상규명’ 결정하였다.

2. 조사 결과

가. 선행조사의 결과

1) 5·18보상심의위원회

5·18보상심의위원회는 관련성 심사를 하기 위한 실사 과정이 있었고, 이 실사는 당시 이해당사자들(신청인, 인우보증인, 참고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행정직과 경찰직 공무원들이 피해보상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의 확인, 인우보증인들의 보증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대인 조사의 성격이었다. 실사는 원칙적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조서 뒤에 조사자의 판단과 의견을 첨부하여 관련 여부 심사분과위원회로 제출되는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5·18보상심의위원회의 행방불명과 관련한 관련성 심사기준을 보면, 2004년에 시행된 제5차 보상심사에서는 5·18행불자로 신청한 자 중 기 소송으로 기각된 자와 행정심판 청구하여 각하된 자의 재신청에 대해 행방불명자의 민원 구제 차원에서 관련 여부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다. 2006년에 시행된 제6차 보상심사에서는 행방불명자에 대해 “인우보증인, 참고인, 인증서 등을 통해 행방불명된 증거가 일부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폭넓게 참고하여 심사한다”고 결정하였다.

〈표 3-3-1〉 5·18보상심의회위원회 행방불명자 심사 현황

보상차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계
각 차수별 보상신청 (중복 포함)	148	117	54	44	42	36	7	448
차수별 신규보상 신청자 수 (중복 제외)	148	59	12	9	8	5	1	242
5·18관련성 인정자	38	9	17	7	5	5	3	84
5·18관련성 불인정자	110	50	-5 ¹⁰⁰	2	3	0	-2	158

2) 광주광역시의 ‘5·18행방불명자 소재찾기 사업’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한 ‘5·18행방불명자 소재찾기 사업’에서 5·18 구 묘지에 있던 신원불상의 11기 유해 중 6기의 유해가 유전자 검사에 의해 신원¹⁰¹이 확인되었다. 신원 확인된 6명의 행방불명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로 전환되어 통계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국립5·18민주묘지는 위 6명 외에 78명의 인정된 행방불명자들에 대해 별도의 묘역(행방불명자 묘역) 공간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5·18조사위에서는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되어 있던 5위의 신원불상 유해 중에서 행방불명자의 신원과 일치하는 3위의 신원을 확인하였고, 행방불명자와 사망자로 분류되어 있던 유해가 뒤바뀌어 매장된 1건의 사실을 확인하여 유해의 소재와 신원을 바로 잡았다.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와 국립5·18민주묘지에 통보하여 관련 시설 및 내용을 정비하도록 권고하였다.

100 보상신청을 했다가 기각판정을 받은 후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후 재심으로 인정받은 사례에 해당한다.

101 6기의 유해는 모두 5·18행방 불명자이며, 김기운, 김민석, 김준동, 권호영, 양민석, 채수길이다. 이들 모두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로 공식 집계되고 있다.

3) 민간단체의 조사

5·18민주화운동 이후 피해자 단체 중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투쟁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5·18유족회, 5·18청년동지회 등이 진상규명 투쟁과 함께 행방불명자와 암매장 등에 관한 제보접수를 병행하였다. 이후 5·18유족회에서 활동하던 행방불명자 가족들이 1988년 8월 ‘5·18민중항쟁행방불명자가족회’를 창립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5·18민중항쟁행방불명자가족회는 홍보를 통하여 행방불명자에 대한 제보를 지속적으로 접수하는 한편, 암매장 제보 현장을 확인하고 유해가 발견되면 행방불명자의 유품, 옷 등과 비교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5·18조사위는 민간인 사망자의 암매장과 유기 등에 대한 사실관계, 암매장된 민간인 사망자가 5·18행불자 중에 있는지 등을 조사하는 한편, 5·18행불자들의 행방불명 경위와 5·18민주화운동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인하여, 행방불명자 가족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하였다.

나. 국립5·18민주묘지의 신원미상 희생자 3위 확인

5·18조사위는 출범 이후 ‘행방불명자 규모 및 소재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직권조사 과제로 결정하면서, 가장 우선적인 세부 조사과제로 ‘국립5·18민주묘지의 신원불명 5위에 대한 신원확인’을 결정하였다. 2020년 11월 19일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된 신원불명 5기의 봉분을 개장하고 유전자 확보에 필요한 골편을 채취하여 기존의 유전자 검사 기법인 STR검사 방법과 새로운 유전자 검사기법인 SNP¹⁰²검사 방법을 동시에 적용하여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신원불명 5기 중에서 3기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102 SNP 유전자 검사기법 : 단일염기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 SNP 기반 신원 확인용 마이크로어레이 제품인 AccuID 검사법을 도입하였으며, 미량의 DNA로도 손상된 유해 DNA 및 4촌 이내 유가족과의 신원확인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다.

기의 신원불명 유해는 행방불명 인정자 김재영, 불인정자 신동남, 사망자 양창근으로 확인되었다.

5·18조사위는 5·18행불 인정자 김재영의 신원과 소재를 확인하였다. 김재영은 당시 시내에서 구두닦이를 하면서 소년직업재활원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5월 21일 시내에서 계엄군의 집단발포 당시 총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아였지만 광주에 살고 있던 숙부가 김재영의 사망 소식을 듣고 병원 등을 찾아다녔으나 찾지 못한 채 행방불명자가 되었고, 5·18조사위가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5위의 무명열사 유전자 검사 및 행방불명자 가족들의 추가 채혈에 의한 유전자 데이터 확보를 통해 김재영의 소재와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5·18조사위는 5·18행불 불인정자 신동남의 소재와 신원을 확인하였다. 광주 주요 병원에서 작성한 사망자 명단 및 진료기록 확인을 통해 5·18행불자 신동남(1993년, 1997년도 보상신청 기각)과 비슷한 이름이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 행불자와 동일인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적십자병원 사망자 명단 21번에 ‘심봉남’으로 기재된 사망자 정보에 대한 추적과 사망의 경위, 보상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5·18행불자로 신청하였다가 기각된 ‘신동남’과 일치할 것으로 추정하고, 그 가족을 찾아 채혈을 실시한 후 유전자 검사에 의해 묘지번호 4-90번의 신원불상 무명열사가 5·18행불자 중 불인정된 ‘신동남’임을 규명하였다.

5·18조사위 조사 결과 신원불명의 유해가 사망자로 분류되어 국립5·18민주묘지의 다른 위치에 매장되어 있었던 양창근으로 확인됨에 따라, 양창근의 이름으로 매장되어 있는 유해의 유전자 검사를 추가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망자 ‘양창근’의 이름으로 매장되어 있던 유해는 5·18행불자로 인정된 ‘김광복’임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국립5·18민주묘지의 신원불상 유해 3기의 신원과 가족이 잘못 인계받아 매장하면서 시체가 뒤바뀐 채 매장된 사망자의 신원과 소재를 바로잡았다.

또한 2023년 12월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2기의 유해 중 50대 추정 유해는 위양창근과 김광복의 사례처럼 사망자의 시체를 잘못 인계받아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유전자 검사를 위해 해당 사망자 유가족을 설득하였으나 가족의 반대로 대조할 유전자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사망자 김○○은 전남합수단의 검시 당시에는 신원불상으로 분류되었으나 1980년 6월 22일 광주경찰서로부터 통보를 받고 ‘신원 미확인자 현지 확인’¹⁰³에 의해 가족이 시신을 확인하고 인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5·18조사위는 5월 27일 상무관에서 검시한 불상 119번이 사망자 김○○으로 확인되는 과정이 명확하지 않고, 유가족의 1995년 검찰조사의 진술과 1980년 작성된 「광주사태 검시보고」의 기재 내용이 상위한 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망경위 및 시신의 이동 경로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50세 추정의 사망자일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이에 사망자 김○○ 유가족의 혈액을 채취하여 유전자 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5·18조사위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유가족 모두가 반대하여 더 이상의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50세 추정의 신원불상 사망자의 신원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4세가량의 어린아이로 추정되는 유해에 대해 5·18조사위는 「광주사태 검시참여 결과보고」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이 사망자의 사망 경위와 시신의 이동 및 매장 경위 등을 조사하였다. 사망자 검시 참여결과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기재 내용을 진술한 해당 경찰관이 이미 사망하였고, 그 외 일체의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검시서의 기재 내용 중에 1,000원짜리 지폐 관련 기록과 경찰관이 당시 진술한 내용, 광주시청 직원 조성갑이 주민의 신고를 받고 시신을 발굴, 수습했던 과정의 진술 내용, 사망 원인이 카빈총상으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유해는 5·18민주화운동 기간에 발생한 일가족 살해 사건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 사건 피해자 가

103 「신원미확인자 현지확인 확인서」(1980.06.22.)

족을 확인하여 혈액채취 및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유가족들 역시 유전자 검사를 거부함에 따라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5·18조사위는 만4세 추정 신원불상 사망자는 그 신원 및 사망 경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일가족 살해사건의 피해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5·18행불자 ‘신동남’의 소재와 사망 확인

1) 신동남의 행방불명 피해보상신청과 심사 경과 확인

신동남은 주 생활지는 서울이었으나, 1980년 3월경 취업차 광주에 내려왔다. 광주역 부근의 문화여인숙에서 이민복, 김병주와 함께 기거하고 있었다. 신동남의 사망 경위와 행방불명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민복이었으나, 이민복¹⁰⁴은 광주를 떠나 서울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무대로 끌려가 3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다가 풀려난 후 곧장 서울로 올라가 자신의 5·18 관련 사실조차 숨기고 생활하였기 때문에 신동남의 인우보증을 할 수 없었다. 5·18조사위는 신동남의 행방불명 피해보상신청에 대하여 광주적십자병원의 진료비 청구서¹⁰⁵의 심봉(복)남의 치료기록, 「광주 5·18사태일지」¹⁰⁶의 5월 23일 금요일의 사망자 현황 기록¹⁰⁷ 등을 확인한 후 보상신청의 기각 과정을 교차 검증하였다. 당시 5·18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보상신청서에 기재된 행방불명의 경위, 이와 관련된 인우보증과 참고인 조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기각결정을 했던 것으로

104 이민복은 1980. 5. 27. 중흥동에서 계엄군에게 체포된 후 약 3개월 동안 상무대 영창에서 극심한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이로 인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다.

105 광주적십자병원 진료비청구서, 적십자병원(작성 년도), 붙임자료 2 참조; 이 자료에 신동남의 이름이 신봉남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당시 병원에 실려 들어온 환자 본인에게 이름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물어서 기재했다는 것이 당시 병원 근무자들의 설명이었다. 따라서 이름이 신봉남으로 기재된 것은 들어서 적는 과정에서 잘못 기재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06 광주지방검찰청, 「광주 5·18사태일지」(1980.05.)

107 “적십자병원 21명, 5. 22. 밤에 학생들에게 인계”라고 기록되어 있다.

판단되었다. 이에 5·18조사위는 5·18행불자 신동남의 보상신청 당시의 인우보증인 진술¹⁰⁸을 분석하는 한편, 인우보증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시 광주역 부근의 문화여인숙에 함께 기거하고 있었던 참고인 이민복의 진술¹⁰⁹조사를 다시 실시한 결과 진술내용과 적십자병원 자료의 기재 내용 등이 부합하고, 특히 참고인 이민복의 형님이 살고 있던 월산동 주소지가 적십자병원의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의 주소지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 5·18행불자 신동남의 사망 경위와 시체의 이동 경위 확인

5·18조사위는 행방불명자 신동남의 사망 경위를 광주사태 변사체 검시결과¹¹⁰의 내용¹¹¹, 적십자병원 진료비청구서¹¹² 및 진료비 일일명세서¹¹³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신동남은 1980년 5월 20일경 이민복, 김병주 등과 함께 기거하던 여인숙을 나왔다가 불상의 장소에서 총상을 당하여 적십자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으며, 사망 후 시신이 이동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민복은 1980년 5월 21일 새벽 전화(적십자병원 간호사가 이민선에게 전화, 이민선은 이민복에게 전화)¹¹⁴를 받고 함께 있던 김병주와 함께 적십자병원으로 갔고, 적십자병원 1

108 5·18민주화운동 당시 작성된 적십자병원 사망자 명단에 신동남의 연락처가 '8-6375'로 기록되어 있다. 5·18조사위가 전화번호의 당시 주소지를 확인한 결과 인우보증인 이민선(이민복의 누나)의 자가로 확인되었으며, 이민선이 적십자병원의 간호사로부터 받은 전화에서 "동생 이민복에게 전화하여 적십자병원으로 가서 확인하라"고 했다는 진술을 하였다.

109 5·18조사위, 「참고인 이민복 면담조사」(2021.06.09.)

110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사태 변사체 검시결과」(1980.05.)

111 상이 부위 및 사인은 "복부관통상 및 장파열"으로 기록되어 있고, 사체검안서에는 "좌측 복부 및 중상복부에 사입구로 인정되는 총상과 정중선을 따라 20cm의 수술흔이 인정되고, 하복부는 장관이 유출되어 외부로 나와 있음"으로 기록되어 있다.

112 진단명"간파열"로 기록되어 있다.

113 1980. 5. 20.부터 5. 22.까지 처치 및 투입한 약물 등의 기록.

114 광주광역시 5·18보상심의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이 된 가장 결정적 이유가 심사를 위한 사전조사에서 당시 문화여인숙의 주인을 찾아 조사한 결과 "자신은 그때 적십자병원으로부터 전화받은 사실이 없다"는 진술이었다. 이

층 복도에서 수술 후 복부에 붕대가 감겨져 있고, 손발이 침대에 묶여 있는 신동남을 확인하였다. 현장에 있던 의사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민복의 진술¹¹⁵에 따르면,

“시위에 참가한 후 이날 오후에 다시 적십자병원을 갔고, 현관에서 복도로 옮겨진 신동남과 30여 분 같이 있다가 나왔다. 병원에서 나와 시위에 참여했다가 오후에 병원을 찾아가 보니 신동남은 이미 사망하여 영안실로 옮겨져 다른 사망자들의 시체들과 함께 눕혀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신동남의 사망을 확인한 후 분노하여 더 적극적으로 시위에 참여하였다. 이틀 후 병원에 갔을 때 영안실에 있던 모든 시체들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고, 도청과 상무관 등을 뒤졌으나 신동남을 찾지 못한 채 본인은 계속 시민군으로 활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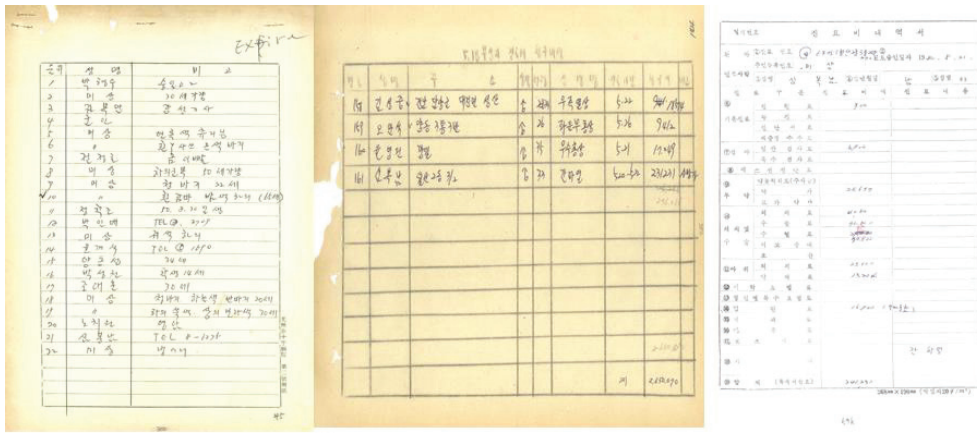
이민복의 진술은 당시 적십자병원의 중환자실 간호사 박미애의 진술¹¹⁶과 일치하였다. 이민복이 이튿날 다시 영안실을 찾았을 때 시신이 없어진 것은 1980년 5월 22일 시민수습대책위원회 시체처리반이 시내 병원의 사망자들을 모두 도청으로 옮겨와 신원을 확인한 후 상무관에 안치하는 과정에서 신동남의 시신도 함께 적십자병원에서 도청으로 옮겨졌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하였다.¹¹⁷

내용에 대해 5·18조사위가 조사한 결과 적십자병원에서는 여인숙으로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참고인 이민복 형남인 이민선(월산동 소재)에게 전화를 했었고, 월산동에 살고 있던 이민선은 이 전화를 받고 신동남과 함께 기거하고 있던 동생 이민복에게 전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여인숙 주인은 적십자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이 전화는 참고인 이민복이 받고 곧바로 적십자병원으로 간 사실을 확인하였다.

115 5·18조사위, 「참고인 이민복 증언 영상기록 및 녹취록」(2021.06.09. 적십자병원) 행불자와 여인숙에서 함께 기거하면서 생활하였고, 적십자병원에 가장 먼저 가서 신동남의 부상 상태와 사망 경위를 알게 된 사람이다.

116 5·18조사위, 「박미애(1980. 5. 당시 적십자병원 응급실 간호사) 진술녹취록」(2021.06.08.)

117 광주광역시, 「광주 5·18 사태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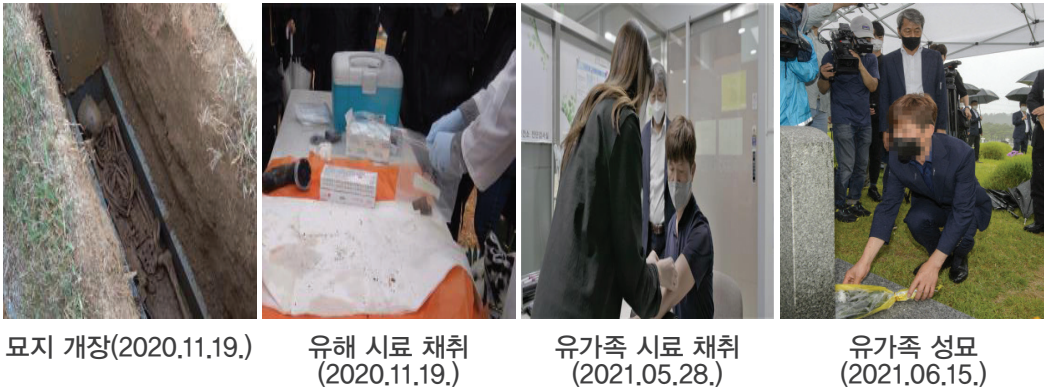


〈그림 3-3-1〉 적십자병원 사망자 명단 및 적십자병원 진료비청구서

3) 신동남의 매장 경위의 확인

5·18조사위는 신동남이 국립5·18민주묘지 묘지번호 4-90번 신원미상의 사망자로 매장된 경위를 조사하였다. 「광주사태 변사체 검시보고」의 신원미상 사망자는 5·18민주화 운동 당시 구속된 이금영의 어머니에 의해 1980년 5월 24일경 ‘이금영’의 이름으로 상무관에 안치된 후 1980년 5월 30일 망월시립공원묘지 제3묘원에 이금영의 이름으로 매장(당시 묘지번호 47번)되었다. 그러나 1980년 6월 21일경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이금영이 상무대 영창에 연행되어 구금된 채 생존해 있음이 확인되었고, 위 사망자는 신원미상으로 처리되었다.¹¹⁸ 2001~2002년 실시된 광주광역시의 ‘행방불명자 소재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신원미상 11기의 유해와 유가족에 대한 유전자 검사 과정에서도 위 신원미상의 사망자는 유전자가 일치하는 가족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었으며, 국립5·18민주묘지에 ‘무명열사’(신원미상, 묘지번호 4-90번)로 안장되었음을 확인하였다.

118 광주지방검찰청, 「광주사태 변사체 검시보고」, 1980. 일련번호 44번에 첨부된 이금영 어머니 진술조서



〈그림 3-3-2〉

4) 기록의 유사성과 진술 내용 분석 결과에 근거한 유전자 검사와 대조

2001년 광주광역시의 행방불명자 소재찾기 사업에서 유전자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묘지번호 4-90번의 유해에서는 유전자를 검출하였으나 적십자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신동남의 유전자 대조군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묘지번호 4-90번의 신원미상 유골이 신동남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신동남의 제적등본을 분석한 결과 신동남의 이복동생이 있음을 확인하고 형제들에게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채혈을 요청하였다. 신동남의 이복동생 신동수¹¹⁹의 혈액을 확보하여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였고, 묘지번호 4-90번의 유해(신동남) 유전자와 대조하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전자 분석 결과에서 Y-STR 23개의 유전자 좌위 중에서 21개가 일치하였다. 그동안 5·18관련 피해자들의 유전자 분석 및 신원미상의 사망자 신원확인을 계속 담당해 온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의 검수를 받았으며,¹²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등에서도 일치된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치의 결과이다.

119 5·18조사위, 「진술 영상녹화」(2021. 5. 28. 11:45 화성시보건소에서 채혈 후)

120 5·18민주화운동 희생자故신동남 유해 DNA 신원확인 보고서 - (주)디엔에이링크.

마지막 단계인 유전자 검사는 부계에 의한 친족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Y-STR 유전자 검사 이외에 이복형제 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SNP 유전자 검사¹²¹를 추가 실시하였다. SNP 결과는 99.99996%의 확률로 분석되었다. Y-STR의 2개 좌위 돌연변이에 대한 불일치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복형제 관계임이 SNP조사방법에 의해 확인됨으로써 최종적으로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신원미상의 유해는 신동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5·18행불자 ‘김광복’의 소재 및 신원 확인

김광복의 행방불명피해보상신청서에 따르면, “1980. 5. 21. 11:00경 전남대 후문 근처의 집에서 시위를 구경한다고 나간 후 시위대 트럭을 타고 전남대 안으로 들어간 후 행방 불명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¹²² 5·18보상심의위원회는 1980년 6월 당시 동사무소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5·18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우보증인 문희¹²³의 진술에 근거하여 김광복을 5·18민주화운동 관련 행방불명자로 인정하였다.

5·18조사위는 출범 이후 전남대와 광주교도소 일원에서 작전에 참가한 계엄군을 대상으로 방문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전남대학교 내 민간인 사망자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이성귀(광주상고 2년) 외에 어린 학생으로 보이는 사망자가 더 있었다는 복수의 진술과 증언을 확보하였다. 이를 토대로 5·18행불자 중 나이, 외모 등을 분류하여 이에 부합하는 대상을 선정·조사하였으며, 5·18관련 행불자 중에서 김광복의 행방불명 피해 내용과 가장 근접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121 묘지번호 4-90의 유전자와 이복동생인 신동수의 유전자가 같은 아버지, 즉 부자관계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두 사람의 이복형제관계를 확인하는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부자관계부터 이복형제관계까지 확인하는 것이다.

122 광주광역시, 「김광복 행방불명피해보상신청서(1990.10)

123 문희씨는 행불자 김광복이 트럭을 타고 전남대로 들어가는 것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이며, 김광복 일가족이 세들어 살던 당시 주인집 딸이었다. 김광복의 행불자 보상신청서에 인우보증을 하였다.

5·18행불자 김광복은 최초 ‘유진관’이라는 이름으로 1980년 5월 27일 상무관에서 검시¹²⁴되었고, 검시 직후 ‘양창근’이라는 이름으로 국립5·18민주묘지(묘지번호 1-38번)에 안장된 사실이 5·18조사위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5·18조사위는 김광복의 행방불명 경위, 소재 그리고 신원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¹²⁵.

마. 5·18행불자 ‘김재영’의 소재 및 신원 확인

1) 김재영의 사망 경위 및 행방불명 신고 경위

김재영은 1980년 5월 21일 도청 앞 집단발포 당시 현장에서 계엄군의 총격으로 사망하였으나 이후 시체를 확인하지 못하고 행방불명¹²⁶된 것으로 신고되었다. 5·18보상심의위원회는 김재영의 화순군 고향 소재 참고인 조사, 1980. 5. 21.경 김재영이 시위에 참여한 사실을 목격했다는 인우보증인 등의 진술¹²⁷을 바탕으로 5·18행방불명자로 인정하였다.

5·18조사위는 5·18 당시 무등극장, 동구청 등에 구두담이들이 있었고, 이들이 당시 적극적으로 시위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무관 시체의 수습 및 관리 등의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¹²⁸ 행방불명 피해보상 신청자들의 직업을 확인하여 구두담이로 기재된 김재영¹²⁹을 특정한 후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행적과 가족관계를 조사하였다.

124 위 같은 자료, 「광주사태 변사체 검시보고」 신원미상 115번 검시서.

125 사망자 양창근과 행방불명자 김광복의 유해가 바뀌어 매장된 경위와 조사 결과는 뒤에서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126 광주광역시 5·18보상심의위원회, 「김재영 피해보상 신청서」(1990.10.)

127 1980. 5. 21. 이후 행방불명자 김재영의 숙부가 김재영의 사망 소식을 전화로 전해 듣고 광주 시내 일원의 병원과 상무관, 도청 등을 돌아다녔으나 찾지 못하였다는 증언과 진술이 뒷받침되어 관련 행방불명자로 인정될 수 있었다.

128 5·18조사위, 「참고인 김순호 진술녹취록」(2021.10.06.)

129 김재영은 5·18보상심의위원회 피해보상신청서에 ‘고아’로 기재되어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한 행방불명자 가족 채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신원확인엔 필요한 가족의 유전자 데이터가 없었고, 2001년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한 유전자 검사에 의한 무명열사 신원확인 과정에서도 일치된 유전자 데이터가 없었다.

2) 가족관계부 확인에 의한 여동생 확인 및 유전자 검사

5·18조사위는 행방불명 피해보상 신청서 기재 내용, 김재영의 제적부를 통하여 김재영의 여동생(경기도 남양주 거주)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유전자 검사기관¹³⁰에 묘지번호 4-93번의 유해에서 검출된 유전자와 김재영 여동생¹³¹ 등과의 유전자 대조 및 확인을 의뢰하였다. 전남대 법의학교실은 STR 검사(A-STR, mt-STR), (주)디엔이링크는 SNP 검사를 하여 각각 남매 관계임을 확인하였다. 5·18조사위는 직접 조사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소재와 신원확인 및 김재영의 5·18관련성을 입증하였다.

바. 5·18사망자 ‘양창근’의 오인 매장 경위 확인

국립5·18민주묘지의 묘지번호 1-38번의 사망자는 최초 ‘유진관’의 이름으로 매장¹³²되었다. 이를 양창근의 가족이 시체 확인절차를 위하여 개장하였고, 이후 양창근으로 매장된 후 2021년 5·18행불자 김광복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국립5·18민주묘지의 묘지번호 4-96번의 유해(검시번호 107)는 처음 매장될 당시 ‘문민규’의 이름으로 매장되었으나, 문민규의 생존 사실이 확인되면서 신원불상으로 안장되었으며, 2021년 5·18사망자 양창근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5·18조사위는 5·18당시 사망자 양창근¹³³과 5·18관련 행불자

130 전남대 법의학교실, (주)디엔이링크

131 김재영 여동생의 구강상피세포와 여동생 아들(김재영의 조카)의 혈액을 2022. 3. 15. 제공받았다.

132 신원과 유가족이 확인되지 않은 시체들 중 ‘산수동 유진관’이라고 관 위에 매직으로 쓰여져 있었던 시체는 진압이 끝날 때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1980. 5. 28. 사망자 검시 과정에서 관 위에 매직으로 써진 ‘유진관’의 이름으로 검시되었다. 유가족에게 연락하기 위해서는 신원확인 과정이 필요하였으므로, 경찰서에서 ‘유진관’의 이름을 주민등록대장에서 확인하였으나 사망자의 연령대에 해당하는 이름이 없었다. 이후 경찰서에서는 행방불명자 신고명단 중에 나이가 비슷한 양창근 가족에게 연락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양창근의 가족들은 경찰서의 연락을 받고 이미 망월동 제3묘역에 매장된 시체를 다시 개장해서 확인해야 했다. 가족들은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양창근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경찰에서 제시한 옷가지 등의 유류품을 보고 아버지가 “내 아들이 맞다.”고 한 것이다. 양창근 부모의 확인으로 유진관은 양창근의 이름으로 정정되어 5·18 구묘지에 매장되었고, 5·18관련 사망자로 국립5·18민주묘지 1-38번의 묘지에 안장되었다.

133 양창근의 부는 집에 돌아오지 않는 사망자 양창근을 5. 21. 찾아다녔고, 병원과 상무관 등에서도 행방을 알 수 없어 1980. 6. 초경 동사무소에 행방불명 신고를 접수하였다.

김광복이 가족들의 부정확한 시신 확인 등으로 인하여 유해가 바뀌어 매장되었음을 규명¹³⁴하였다.

5·18조사위는 5·18관련 사망자 양창근의 유해가 묘지번호 4-96 신원불상 묘지에 안장되었을 가능성을 유가족에게 설명하고, 사망자 양창근의 형 양중근의 혈액을 확보하여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양창근 유가족의 유전자와 무명열사 4-96번 묘지의 유해 유전자가 일치하였다. 5·18조사위는 사망자 양창근이 무명열사 4-96번 묘지에 안장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과거 양창근의 묘지로 명명되어 있던 묘지번호 1-38의 유가족¹³⁵에게 봉분을 개장하여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고,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묘지번호 1-38번(양창근 이름으로 매장된 유해)의 유해 유전자와 행방불명자 김광복의 유가족 유전자가 일치하였다. 이에 따라 5·18조사위는 사망자 양창근은 묘지번호 4-96에, 행방불명자 김광복은 묘지번호 1-38에 유해가 바뀌어 매장되었음을 최종 확인하였다.

또한 5·18조사위는 추가조사 과정에서 묘지번호 4-96번의 신원불상 유해는 처음 매장될 당시 ‘문민규¹³⁶’라는 이름으로 검시 및 매장되었다가 2002년도에 국립5·18민주묘지에 신원불상(망월동 3묘역에 매장된 유해)으로 변경 안장된 것을 확인하였다. 5·18조

134 5·18조사위는 관련 기록과 자료, 영상과 사진, 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분석한 결과 첫째, 적십자병원 사망자 명단에 부기되어 있는 “송일고 2”와 적십자병원 영안실 사진에 있는 송일고 상의 체육복 및 교련복 바지를 입고 있는 사망자를 확인하였고, 둘째, 이 사망자가 입관되어 있던 관의 번호를 확인하였으며, 셋째, 5·18관련 사망자 유품 목록을 확인하여, 묘지번호 4-96번의 신원불상 유해가 묘지번호 1-38번에 안장된 양창근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135 사망자 양창근의 유족인 형 양중근이 동의하여 2022. 3. 7. 묘지번호 1-38번 사망자 양창근 이름의 봉분을 개장하여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골편을 채취하였다. 유전자 검사는 전남대 법의학교실, ㈜디엔에이링크에서 실시하였다.

136 문민규의 부는 광주의 시끄러운 소식을 듣고 아들 문민규를 찾기 위해 광주로 올라왔다. 아버지는 먼저 문민규의 자취방을 찾아가 보았으나 아들이 없자 혹시 사망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도청과 병원 등을 찾아다녔고, 도청 후정에 있는 신원 미확인 사망자 중에 관 하나를 지목하여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였고, 도청 후정에서 가족들로부터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의 시체를 수습하던 수습위원들에 의해 입관되어 상무관에 안치되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고향에 돌아와 보니 아들 문민규는 집에 와 있었다. 문민규는 사망한 것이 아니라 광주에서 고향으로 가기 위해 광주에서 자취하고 있던 집을 나선 후 3일 정도 지나서야 고향에 도착하였다.

사위는 현재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된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2001~2002년 광주광역시는 ‘5·18행방불명자 소재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5·18 구 묘지 무명열사 11기의 유골 감식과 유전자 검사를 추진하여 6명의 5·18행불자 소재 및 신원을 확인하였고, 그들의 사망 경위와 매장 경위 등을 조사하였다. 2002년 유전자 검사에 의해 신원이 확인된 결과(6명)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진압종료 직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의해 시작된 검사와 신원확인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조사 결과는 아래의 <표 3-3-2>과 같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표 3-3-2〉 2002년도 유전자 검사에 의해 신원이 확인된 6명의 행방불명자 사망 경위 조사

구분	사망자 (생년월일)	검시서 주요 내용		신원확인과정	
		사망일시	사망장소		사망원인
1	권호영 (1963.11.17.) *행방(인정자) 1990.12.06.	1980.05.24.	장소불상	총상(M16) - 좌상복부 맹관총창 - 슬관절 관통총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0. 5. 28. 상무관 '3-10 미상'으로 검시 • 가족에 의해 최귀열로 신원확인(1980. 6. 21.) • 최귀열 생존 확인(1980. 6. 26.) 후 '성명불상(123)' 전환 • 2002. 11. 30. 유전자 검사를 통해 행방 인정자 '권호영'으로 신원 확인됨.
<p>[5·18조사위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 27. 재진입작전에 참여한 20사단 장·사병들 중 시외버스공용터미널 일원의 진입작전에 참가한 계엄군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외버스공용터미널 부근의 여인숙 옥상에 있는 시민군 1명을 오전 6시경 저격하여 사망케 하였고, 그 시체가 옥상에서 아래로 떨어져서 근처 공사장에 있던 육조에 시체를 넣고 시외버스공용터미널로 옮겼다는 복수의 진술 확보 ○ 위 진술 내용을 교차 확인하기 위해 당시 사진 현장(시외버스공용터미널 부근 여인숙)에 함께 있었던 기동타격대 5조원들에 대한 진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인숙에서 체포된 후 시외버스공용터미널로 잡혀가 머리를 바닥에 박고 무릎 꿇고 앉아있는데 조금 후 육조에 시체를 넣어서 내 옆'¹³⁷에 두었다는 참고인 진술 확인 ○ 5. 27. 광주시청 직원 조성감이 시외버스공용터미널에서 육조에 들어있는 시체를 상무관으로 옮겨왔다는 진술이 있었고, 검시가 이루어진 상무관 당시의 사진을 분석한 결과 시체를 옮겨 온 육조가 상무관 검시 현장에 있었음을 통해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였으며¹³⁸, 당시 권호영이 도청에서 5. 26. 밤 나가는 것을 목격¹³⁹했다는 진술 등 교차 검증으로 확인 ○ 행방자 권호영의 사망일시는 1980. 5. 27. 사망 장소는 시외버스공용터미널 인근 여인숙 옥상, 가해부대 및 발포자는 제20사단 광주재진입작전에 참여한 조○○ 상병으로 최종 확인하였음. 					

137 김기광, 기동타격대 5조 조장, 진술조사서

138 관련 사진 첨부

139 백종원(5·18민주화운동 상이자)의 증언『5·18민중항쟁 시료전집』 1988.

구분	시망자 (생년월일)	검시서 주요 내용			신원확인과정
		시망일시	시망장소	시망원인	
2	김기운 (1962.06.22.) *행불(인정자) 1990.12.06.	1980.05.21.	장소불상	총상(M16) - 두부 맹관총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0. 5. 28. 상무관 '3-17 미상'으로 검시 • 가족에 의해 김정태로 신원확인 • 김정태 생존 확인(1980. 7. 1.) 후 '성명불상(117)' 전환 • 2002. 11. 30. 유전자 검사를 통해 행불 인자 '김기운'으로 신원확인
3	김남석 (1961.04.08.) *행불(인정자) 1990.12.06.	1980.05.23.	지원동 장소불상	총상(M16) - 두부 등 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0. 5. 29. 전대병원 '전병-6'으로 검시 • 가족에 의해 '유현호'로 신원확인(1980. 6. 21.) • 유현호 생존 확인(1980. 6. 26.) 후 '성명불상(4)' 전환 • 2002. 5. 18. 유전자 검사를 통해 행불인정자 '김남석'으로 신원확인
4	김준동 (1963.06.03.) *행불(인정자) 1990.12.06.	불상	장소불상	총상(M16) - 두부 관통총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0. 5. 28. 상무관 '불상 114'로 검시 후 6. 23. '염동유'로 신원확인 • 염동유 생존 확인(1980. 7. 4.) 후 '성명불상(114)' 전환 • 2002. 5. 18. 유전자 검사를 통해 행불인정자 '김준동'으로 신원확인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구분	시망자 (생년월일)	검시서 주요 내용			신원확인과정
		시망일시	시망장소	시망원인	
4	김준동 (1963.06.03.) *행불(인정자) 1990.12.06.	[5.18조사위 조사] ○ 5. 21. 도청 앞 집단발포 현장에 있었던 제11공수여단 계엄군들에 대한 진수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장갑차 위의 청년을 전일빌딩 옥상에서 저격하여 사망케 하였다는 가해 당사자 ¹⁴⁰ 의 인정진술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교차 검증하기 위한 추가조사를 실시하였음. ○ 5. 21. 당시 동구청 건물(금남로 1가) 2층의 조선일보 광고지사 사무실에서 촬영된 장갑차 위 청년 사망자 모습이 촬영된 사진, 적십자병원 영안실 사진 및 영상에 의한 확인 및 전일빌딩 옥상에 배치되었던 저격병 ¹⁴¹ 의 관련 증언 등을 종합하여 김준동의 사망 경위 및 장소와 일시를 추정하였음. ○ 5. 21. 집단발포 당시 장갑차 위에서 계엄군의 저격을 받아 사망하였고, 시체는 유동삼거리에서 시민들에 의해 지프로 옮겨져 적십자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었던 것으로 추정	시망일시	시망장소	시망원인
5	양민석 (1960.09.01.) *행불(인정자) 1990.12.06.	1980.05.21. ~22.	지원동 주남마을 뒷산 발굴	총상(M16) - 두부 관통총창 - 흉부, 복부 관통 총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시청 직원이 주남마을 뒷산에서 발굴 (1980. 6. 3.) •'성명불상(164)'으로 망월동 매장 •2002. 11. 30. 유전자 검사를 통해 행불인 정자 '양민석'으로 신원확인
		[5.18조사위 조사] ○ 5. 23. 미니버스 총격에 의한 집단학살사건의 피해자로 확인되었고, 현장에서 사살한 후 가매장한 당사자가 1985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계엄군 정원각 중사로 특정되었으나 현장에서 자신이 직접 사살하였고 매장했다는 위 한상천 일병의 인정진술,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채수길의 외사촌 형제인 김효겸 일병의 진술 등으로 양민석과 채수길은 5. 23. 미니버스 안에서 중상을 입고 제11공수여단 주둔지까지 리어카에 실려 옮겨진 후 현장에서 사살되어 가(암)매장된 것으로 확인하였음.			

140 한상천 제11공수여단 일병의 진술 영상체증 자료

141 위 140번과 같음

구분	시망자 (생년월일)	검시서 주요 내용			신원확인과정
		사망일시	사망장소	사망원인	
6	채수길 (1959.03.10.) *행불(인정자) 1990.12.06.	1980.05.21. ~22.	지원동 주남마을 뒷산 발굴	총상(M16) - 좌상악부, 흉부 관통 - 좌둔부 맹관총창	· 광주시청 각원이 주남마을 뒷산에서 발굴 (1980. 6. 3.) · '성명불상(163)'으로 망월동 매장 · 2002. 5. 18. 유전자 검사를 통해 행불인 정자 '채수길' 신원확인
[5.18조사위 조사] ○ 위 양민석과 동일함.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표 3-3-3〉 1980년 검시 당시 신원불상(14명) 및 잘못된 이름(2명)으로 검시된 사망자

구분	검시 번호	시체 번호	현묘지 번호	1980년 신원확인(변경) 된 사망자		1980년 이후 신원확인 된 사망자			비고
				신원확인 관련 내용	결과	신원확인일	결과	근거	
1	불상 4	진병-06	4-87	유현호로 확인(1980. 6. 21.) *유현호 생존 확인 1980. 6. 26.	불상4 → 유현호 → 불상4	2002.05.18.	김남석	유전자 검사	-
2	불상 8	진병-09	2-32	가족에 의해 김종철로 확인 (1980. 7. 9.)	불상8 → 김종철				1980년 가족 인수
3	불상 11	미상 (NO 416)	-	목포에서 차량사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은 존재하나 시체 수습과 검 시, 매장 등에 관한 일체의 기록 이 없는 상태임.	-	-	-	-	시체 수습 확인되지 않 음.
4	불상 44	1-18	4-90 (무명 1)	이금영으로 확인 *이금영 생존 확인 1980. 6. 26.	불상44 → 이금영 → 불상44	2021년	신동남	유전자 검사	5·18조사위 조사 결과
5	불상 53	4-21	1-05	시설 원장에 의해 김재형으로 확 인 (1980. 5. 28.)	불상53 → 김재형				1980년 가족 인수
6	불상 91	- (미상-8)	4-97 (무명 5)	-	-	-	-	-	남, 약 4세
7	불상 112	3-23	4-92 (무명 2)	-	-	-	-	-	남, 45세가량
8	불상 114	3-20	4-89	염동유로 확인(1980. 6. 23.) *염동유 생존 확인 1980. 7. 4.	불상114 → 염동유 → 불상114	2002.05.18.	김준동	유전자 검사	-

구분	검시 번호	시체 번호	현·묘지 번호	1980년 신원확인(변경) 된 사망자		1980년 이후 신원확인 된 사망자			비고
				신원확인 관련 내용	결과	신원확인일	결과	근거	
9	불상 117	3-17	4-95	김정태로 확인(1980. 6.) *김정태 생존, 1980. 7. 1.	불상117 → 김정태 → 불상117	2002.11.30.	김기운	유전자 검사	-
10	불상 119	3-14	1-07	가족에 의해 김중식으로 확인 (1980. 6. 25.)	불상119 → 김중식				1980년 가족 인수
11	불상 122	3-12	4-93 (무명 3)	-	-	2022년	김재영	유전자 검사	5·18조사위 조사 결과
12	불상 123	3-10	4-94	최귀열로 확인(1980. 6. 21.) *최귀열 생존, '80.6.26.	불상123 → 최귀열 → 불상123	2002.11.30.	권호영	유전자 검사	-
13	불상 163	진병-14	4-88	-	-	2002.05.18.	채수길	유전자 검사	-
14	불상 164	진병-15	4-91	-	-	2002.11.30.	양민석	유전자 검사	-
15	문민 규	3-24	4-96 (무명 4)	문민규 생존 *장례 후 집에 가보니 생존	문민규 → 신원불상	2022년	양창근	유전자 검사	5·18조사위 조사 결과
16	유진 관	3-21	1-38	양창근으로 확인 *양창근 가족 시신 인수	유진관 → 양창근	2022년	김광복	유전자 검사	5·18조사위 조사 결과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사. 5·18행불자 242명의 전수조사

1)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없는 55건의 사례 확인

5·18조사위는 행방불명 피해보상신청자 242명 중 이미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군에 의해 사망하여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되어있는 9명¹⁴²을 제외한 전수를 대상으로 공부상 기록¹⁴³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족들과 전화면담 등으로 교차 검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아래의 <그림 3-3-3>, <표 3-3-4, 5, 6, 7, 8, 9, 10>과 같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없는 55건¹⁴⁴의 사례를 밝혀냈다. 세부 조사내용은 5·18민주화운동 전후 관련 없는 질병 등으로 사망, 통신 조회에 의한 생존 확인, 5·18 이후 수용시설 입소, 교도소 수형, 전과 기록 및 병역 관련 기록 등이 확인되어 생존이 확인된 사례 등이다.

<표 3-3-4> 5·18행불자 중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례 55건의 분류(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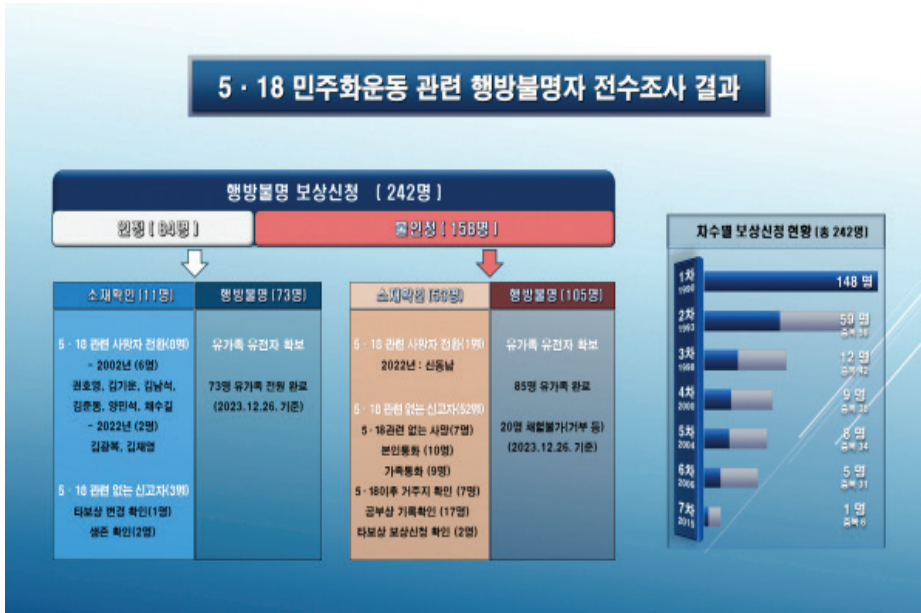
	구분	인정	불인정	계
5·18 관련 없는 사망 확인	5·18 관련 없는 사망 확인	0	7	7
생존확인 (5·18 이후 사망한 사례 포함)	본인통화로 생존 확인	0	10	10
	가족통화로 생존 및 소재확인	0	9	9
	5·18 이후 거주지 등록으로 생존 및 소재확인	2 ¹⁴⁵	7	9
	기타 공부상 기록에 의해 생존 및 소재확인	0	17	17
	다른 피해유형(상이, 구금 등)으로 보상 신청하여 소재 확인	1	2	3
계	-	3	52	55

142 인정자 8명, 불인정자 1명

143 행정, 통신, 전과, 병역, 수형, 의료보험, 병원 진료기록 등

144 인정자 3명, 불인정자 52명

145 이 대상을 아래의 표에 포함하여 기술하지 않은 이유는 개인정보의 공개 문제 및 관련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이 해당자들에 대해서는 5.18피해보상업무를 담당한 광주광역시에 통보하는 것으로 가림하고자 한다.



〈그림 3-3-3〉 5·18민주화운동 관련 행방불명자 전수조사 결과

〈표 3-3-5〉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성 없는 사망 기록의 확인 사례 (불인정 7명)

번호	이름	나이/성별	소재 확인 내역	소재확인 입증자료 출처
1	김양복	26/남	1991. 3. 13 사망신고 (1991. 2. 20. 10:00경 자택에서 간경화로 사망, 호주가 신고)	보상서류 1792/0084~0085 (사망신고서)
2	김용범	24/남	1987. 8. 13. 사망신고 (1976. 9. 17. 자택, 사망)	보상서류 1773/0421~0422 (사망신고서)
3	김지준	51/남	1981. 8. 26. 행여 사망 (통 담당 직원 확인)	보상서류 3547/0058~0059 (개인별 주민등록표)
4	김청일	40/남	1992. 10. 9. 사망신고 (1992. 9. 9. 사망원인:장염)	보상서류 1784/0224~0225 (사망신고서)
5	김학순	30/남	1983. 1. 19. 사망신고 (1982. 12. 20 사망원인:병사-익사)	보상서류 1781/0432~0437 (사망신고서)
6	박복례	54/여	1991년 사망확인서 사망원인(대장암)	보상서류 1777/0160 (사망확인서)
7	한영진	41/남	1971. 10. 5. 사망신고 (1969. 9. 16. 23:00 사망)	보상서류 2097/0083 (제적등본)

〈표 3-3-6〉 본인 통화(본인 명의 전화번호 확인 포함)로 생존 확인 (불인정 10명)

번호	이름	나이/성별	소재 확인 내역	소재확인 입증자료 출처
1	김귀복	21/남	서울 중랑구 동이로 92길 (010-39*2-42*1) 번호 사용 중	보상서류 3056/0005(취하원) 통신 조회:본인 명의 전화번호 존재
2	조태주	20/남	경기 광주시 파발로137번길 (010-76*6-36*7) 번호 사용 중	2022. 1. 7. (주민등록표 등.초본 확인) 통신 조회:본인 명의 전화번호 존재
3	박귀순	20/여	전북 정읍시 남산6길 (010-92*9-92*7) 번호 사용 중	본인 통화 통신 조회:본인 명의 전화번호 존재
4	박인자	19/여	세종 연서면 월하리 (010-85*0-78*4) 번호 사용 중	조카 박병을 통화 (조치원요양원에 있음) 1980. 9. 24. 주민등록증 발급기록 있음 보상서류 2086/279 통신 조회:본인 명의 전화번호 존재
5	박후정	17/여	서울 관악구 난곡로26길 (010-31*2-22*1) 번호 사용 중	통신 조회:본인 명의 전화번호 존재
6	장연이	15/여	경북 경산시 진량읍 선화 (010-83*0-68*4) 번호 사용 중	본인 직접 통화
7	정병철	28/남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010-63*3-52*1) 번호 사용 중	통신 조회:본인 명의 전화번호 존재
8	조영운	10/남	경북 구미시 원평동 (010-67*4-07*0) 번호 사용 중	본인 직접 통화
9	한화숙	18/여	전남 무안군 일로읍 시장길 (010-22*6-82*2) 번호 사용 중	오빠 한명섭 통화(한화숙은 생존해 있다고 확인) 통신 조회:본인 명의 전화번호 존재
10	최금규 (최진우)	18/남	경기 광주시 오포읍 새말길 (010-40*9-34*6) 번호 사용 중	보상서류 2090/0245(병적기록표) 최진우로 개명 통신 조회:본인 명의 전화번호 존재

〈표 3-3-7〉 가족통화로 생존 및 소재 확인 (불인정 9명)

번호	이름	나이/성별	소재 확인 내역	소재확인 입증자료 출처
1	송미경	20/여	가족전화 면담 생존 확인	1994. 4. 23. 주민등록증 발급 및 주소지 전출신고 (취하서) 보상서류 1782/313

번호	이름	나이/성별	소재 확인 내역	소재확인 입증자료 출처
2	노석영	28/남	가족전화 면담 생존 확인	가족통화 시-부산의 요양병원에 생존해 있다는 연락받음. 1980. 10. 18. 주민등록증 재발급/ 1984. 1. 30. 주민등록증 갱신발급기록 있음/ 보상서류 1177/762
3	박희창	46/남	가족전 면담 생존 확 인	딸 박현주와 통화 시 부친이 살아있다는 내용은 화성시청 에서 연락받음 1980. 12.~1981. 10. 5.까지 4회에 걸쳐 인감증명 발 급 사실 확인됨 부인 송민호의 증언(남편의 가출 시기는 1981년 가을이 며, 거짓신고 했다고 진술) 보상서류 2093/0304
4	여봉선	44/여	가족전화 면담 생존 확 인	조카 여철훈과 통화-고모 여봉선을 만났음
5	이영자	26/여	가족전화 면담 생존 확 인	천안 요양원에 생존함/가족 이영돈과 직접 통화
6	임소복	44/여	가족전화 면담 생존 확 인	아들 선봉린으로부터 사망했다고 통화함 1980. 5. 20. 이후 10일 후에 귀가했다는 상이신청 내 용과 상이 보상 신청한 보상서류 존재 보상서류 2019/0066
7	박남선	40/남	가족전화 면담 생존 확 인	조카 박용민과 통화-조카가 직접 장례를 치르고 사망신 고 했음
8	정수용	27/남	가족전화 면담 생존 확 인	누나 정인순과의 통화-서울 후암동 골목에서 정수용을 찾았으나 얼마 되지 않아 사망했다는 내용
9	황호준	25/남	가족전화 면담 생존 확 인	동생 황순애와 통화-황호준이 생존해 있음을 전함

〈표 3-3-8〉 5·18이후 거주지 등록으로 생존 및 소재 확인 (불인정 7명)

번호	이름	나이/성별	소재 확인 내역	소재확인 입증자료 출처
1	강대설	36/남	성일정신요양원 수용자 연명부 (입소 기간: 1980. 1. 8.~1980. 10. 9.)	보상서류 1769/0144~0145 (성일정신요양원 수용자연명부)

번호	이름	나이/성별	소재 확인 내역	소재확인 입증자료 출처
2	고광평	41/남	인천 북구 일신동 126번지 거주 확인	보상서류 1797/0001 (5.18 추가신고 취하서)
3	김성봉	24/남	충북 괴산군 증평읍 증평리 1040-24 거주 확인	보상서류 2082/0307 (시인서)
4	차창운	27/남	경기 안산시 고잔동 252번지 13/7	보상서류 1784/0530 (성동경찰서 수사보고 서/1993.08.24)
5	최재창	46/남	1980. 4. 30. 입소, 1982. 11. 23 퇴소 사실 있음	보상서류 1830/0008 (시인서)
6	김재열	28/남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신양리 510번 지 거주(2004. 7. 2 당시)	보상서류 3054/00005 (취하원)
7	남혜연	25/남	행불자 주민 조회-거주 확인	보상서류 2084/0212~0214 (모녀상봉 장소 및 사진)

〈표 3-3-9〉 기타 공부상 기록에 의해 생존 및 소재 확인 (불인정 17명)

번호	이름	나이/성별	소재 확인 내역	소재확인 입증자료 출처
1	김영주	49/남	1981년 범죄기록 확인	보상서류 1790/0010 (범죄경력조회결과서)
2	박정훈	17/남	1983년 병원 입원기록 확인	보상서류 2086/0081~0082, 0124(입원증명서, 정정(말소)신고서)
3	서용석	19/남	1982년 범죄기록 확인	보상서류 1772/0005, 0015 (취하서, 범죄경력조회결과서)
4	이상경	20/남	1984년 범죄기록 확인	보상서류 1177/0849 (경찰청:범죄경력조회 결과 회서)
5	정한석	61/남	1981년 범죄기록 확인	보상서류 1178/0743 (원주교도소 확인서)
6	조한열	34/남	1982년 범죄기록 확인	보상서류 2089/0010 (범죄경력조회)
7	김태수	40/남	1980.9.26. 범죄경력조회 결과	보상서류 2096/0115 (용산경찰서 기록)
8	박노수	28/남	1982년 인감신고(우무인 날인)	보상서류 2397/0010~0011 (개인별 주민등록표)
9	박동현	46/남	1983년 주민등록증 재발급기록	보상서류 1180/234~251 (개인별 주민등록표)

번호	이름	나이/성별	소재 확인 내역	소재확인 입증자료 출처
10	왕중식	34/남	1983년 주민등록증 재발급기록 (3회)	보상서류 1180/0065~0070 (개인별주 민등록표)
11	김정웅	38/남	주민등록 재등록	보상서류 4158/0029,0030 (주민등록표 말소자초본)
12	김정일	42/남	주민등록 재등록 (1980. 8. 26.)	보상서류 1778/237 (개인별 주민등록표)
13	설상용	34/남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 갱신날짜 기록(1982. 4. 12.)	보상서류 1180/0583 (주민등록증 사진)
14	오훈명	20/남	주민등록 재등록	보상서류 2094/244,245,270 (개인별 주민등록표 뒷면/ 추적경위서)
15	나광성	13/남	허위신청-1983년 졸업증명기록 확인	보상서류 2084/309 (시인서 확인서)
16	정순석	52/남	허위신청-1980. 10. 수사기록 있음	보상서류 1787/233~242 (수사기록)
17	정정기	15/남	1982. 11. 22. 무등중학교 자퇴확인서	보상서류 3807/0016~0020 (무등중학교 자퇴확인서)

〈표 3-3-10〉 행방불명 피해신청자 중 생존 확인한 대표적 사례 (불인정 17명)

구분	면담일자	행불자	생년월일	가족 면담자	관계	생존 여부	5.18 관련 여부 확인
1	2022.08.11.	이영자	1955.05.30.	이성돈	조카	생존	관련 없음
	[5·18조사위 조사내용] - 행방불명자 피해신청자 이영자는 현재 천안에 소재한 요양병원에 생존해 있음						
2	2022.08.11.	노석영	1953.02.09.	노동윤	조카	생존	관련 없음
	[5·18조사위 조사내용] - 울산에 소재한 정신병원에 살아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3년 전 울산의 병원이 없어지면서 부산으로 옮겨 간 이후 다시 소식이 끊긴 상태라고 함 5·18조사위 부산 정신병원 추가 확인하였으나 결과 없음.						
3	2022.08.11.	박남선	1941.08.26.	박용민	조카	생존 후 사망	관련 없음
	[5·18조사위 조사내용] - 본인이 장손이라 집안의 대소사를 처리하는데 작은아버지 박남선은 4~5년 전에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직접 본인이 사망신고를 했다고 함						

구분	면담일자	행방자	생년월일	가족 면담자	관계	생존 여부	5.18 관련 여부 확인
4	2022.08.12.	박인자	1962.10.07.	박병을	동생	생존	관련 없음
	[5·18조사위 조사내용] 현재 조치원에 소재한 요양원에 생존해 있음						
5	2022.08.17.	송미경	1961.07.25.	송지원	조카	생존	관련 없음
	[5·18조사위 조사내용] - 1994. 4. 23. 주민등록증 발급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생존 여부를 확인한 결과 생존 사실이 가족인 조카에 의해 확인되었음. - 보상신청의 취하서를 접수했는지 여부를 광주광역시에 추가 확인한 결과 생존 사실 확인 후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6	2022.08.18.	한화숙	1963.08.11.	한명섭	오빠	생존	관련 없음
	[5·18조사위 조사내용] 행방불명 피해신청자 한화숙은 생존해 있다고 함.						
7	2022.08.20.	조용운	1971.10.18.	조은미	누나	생존	관련 없음
	[5·18조사위 조사내용] 행방불명 피해신청자 본인 직접 면담에 의한 생존 확인						
8	2022.08.20.	임소복	1937.03.20	선봉린	아들	생존 후 사망	관련 없음
	[5·18조사위 조사내용] 행방불명 피해신청자 임소복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없이 사망하였음						
9	2022.08.29.	박희창	1935.02.08.	박현주	딸	생존	관련 없음
	[5·18조사위 조사내용]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려서 행방불명 신고를 하기는 했으나 화성시에서 생존해 있음을 행방불명 피해신청자 박희창 자신이 생존해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생존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함.						
10	2022.09.25.	정수용	1954.01.10.	정인순	누나	생존 후 사망	관련 없음
	[5·18조사위 조사내용] 2014년 서울 후암동에서 행방불명 피해신청자를 찾았으나 당시 정신질환과 건강상태가 매우 안 좋았고 그 후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행방불명 피해신청자 정수용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상이 후 사망자와 형제관계임을 감안하여 5·18 당시 부상이나 연행과정의 피해 때문에 정신이상 발생하였는지 등에 대해 추가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가족이 원치 않았음. 조사 결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당시 정신질환 등의 건강상태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조사가 필요함.						
11	2022.09.25.	황호준	1956.06.20.	황순애	여동생	생존	관련 없음
	[5·18조사위 조사내용] 서울 사당동에 생존해 있음						

구분	면담일자	행불자	생년월일	가족 면담자	관계	생존 여부	5.18 관련 여부 확인
12	2022.09.29.	여봉선	1937.03.02.	여철훈	조카	생존	관련 없음
	<p>[5·18조사위 조사내용]</p> <p>행방불명 피해신고는 행방불명자 여봉선의 오빠인 여복동이 하였으나 그 이후 여러 차례 고모인 여봉선을 만난 사실이 있기 때문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함 행불자의 조카 면담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카는 5·18민주화운동 이후 여러 차례 명절 때 고모인 행불자를 직접 보았고, 최초 신청인이었던 아버지로부터 고모인 행불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면담조사일로부터 10여년 전에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였음.</p>						
13	2022.12.05.	이한용	1959.09.25	이진곤	숙부	확인안됨	관련 없음
	<p>[5·18조사위 조사내용]</p> <p>행방불명 피해신청자는 신안에서 배를 타고 나간 후 돌아오지 않고 있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p>						
14	2023.05.23.	박귀순	1961.04.21.	박귀순	본인	생존	관련 없음
	<p>[5·18조사위 조사내용]</p> <p>생존 확인되어 보상신청을 취하하였음</p>						
15	2023.05.23.	박후정	1964.09.10.	박후정	본인	생존	관련 없음
	<p>[5·18조사위 조사내용]</p> <p>- 행방불명 피해신청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메시지 남겼고, 통화 후 최종 확인</p>						
16	2023.05.23.	장연이	1966.06.06.	장연이	본인	생존	관련 없음
	<p>[5·18조사위 조사내용]</p> <p>행방불명 피해신청자 장연이 본인과 통화하여 생존 확인 본인은 5·18 당시 다른 피해 사실을 주장하고 있어, 광주광역시 보상 진행 과정 설명 후 피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안내</p>						
17	2023.05.23.	정병철	1953.04.23.	정병철	본인	생존	관련 없음
	<p>[5·18조사위 조사내용]</p> <p>통신 조회 결과 행불인 명의의 전화가 개통된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통화를 시도하여 행불자 본인과 통화하였고, 생존해 있음을 확인하였음.</p>						

아. 5·18행불자 중 10세 이하의 어린이 조사

5·18조사위는 아래 <표 3-3-11>과 같이 5·18행불자 178명 중 10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별도로 분류하여 그 소재를 확인하였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당시 외신 사진기자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확인하였으며, 5월 27일 도청재진입작전 종료 후 제20사단 병사들이 사람들을 연행하는 사진 속에서 어린아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사진 속 어린아이들을 조사한 결과 이창현과 조용운 등을 특정하였고, 본인을 포함하여 가족들의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는 아래 <표 3-3-11>과 같다.

5·18조사위는 10세 이하 어린이들의 행방불명은 사망 이후 가(암)매장되었을 가능성보다 국내·외 입양기관이나 시설, 심신미약자 수용시설 등에 위탁되어 가족과 헤어졌을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조사하였으나, 현재까지 기관과 시설 등에서 아래의 5·18행불자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3-3-11> 행방불명 보상신청자 중 당시 미성년자

번호	이름	나이	보상 인정 여부	채혈 유무	참고내용
1	박광진	5	인정	채혈	임소례와 그의 아들 김병균, 김병대 등 3명은 당시 경기도에서 거주하다가 1980. 5. 일자 미상에 사망한 김금숙(임소례의 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무안에 사는 딸 김금희의 집으로 내려와 장례를 마친 후 임소례, 김병균, 김병대와 김금희의 아들 박광진 등 4명이 경기도로 가기 위하여 1980. 5. 20. 무안역에서 오전 10시 30분발 여수행 완행열차를 타고 떠난 후 4명 모두 행방불명
2	박규현	6	인정	채혈	박규현은 당시 6세로 1980. 5. 19. 오전 11시경 집을 나가 구 광주고속 뒤 놀이터에서 아이들, 시위대, 진압군인 등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가운데 진압군이 시위대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행방불명
3	백근옥	5	인정	채혈	1980. 5. 23. 오후 2시 10분경 백근옥과 함께 화정동 소재 중앙병원 뒷골목을 가던 중 총소리에 놀라 앉아있는데 계엄군이 와서 구타하여 엎드려 있다가 약 30분이 지난 후 가라고 하여 일어나 보니 행불인이 없었으나 겁이 나서 찾을 겨를도 없이 귀가하였고 그 이후 행불인은 소식이 없음
4	윤명희	9	인정	채혈	윤명희는 광주 화정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 광주 서구 화정동 750-21번지 지성순(윤명희 부와 이부남매)의 집에서 학교를 다녔고, 5·18로 인하여 학교가 휴교를 하자 1980. 5. 20. 화순에 사는 아버지에게 간다고 집을 나간 후 소식이 없음

번호	이름	나이	보상 인정 여부	채혈 유무	참고내용
5	이상렬	9	인정	채혈	이상렬은 아버지 이대우와 1980. 5. 20. 오후 4시경 산수오거리에 있던 중 군인들에게 붙들려 마구 구타를 당해 정신을 잃고 깨어보니 아들이 없어지고 현재까지 소식이 없으며 병역관계로 1990년 직권말소 처리하였음
6	이창현	7	인정	채혈	이창현은 양동국교 1년생으로 1980. 5. 19. 집을 나간 후 소식이 없음
7	조용운	9	불인정	미채혈	당시 국민학교 3학년생으로 1980. 5. 20 13:00경 도청 앞 분수대에서 시민과 군인이 싸운다고 구경나간 후 1988. 6. 17 현재까지 귀가하지 않고 있으며 가출 당시 신장 125cm, 체중 35kg, 머리는 스포츠형 상의는 파란 셔츠, 하위는 검정 바지, 흰 운동화를 신고 있었음. <참고> 부산 소년의집 기계공고 2학년 재학 중(재원증명 및 사진 촬영) 조용운은 1980. 5. 18. 이전 가출하여 전남 도내를 돌아다니다 5.18에 광주에 와서 도청 앞 차량에서 취침 중 계엄군에게 검거되어 군부대에 연행된 일주일 후 관공서를 통해 부 조주호에게 인계되었으나 다시 가출 서울로 와서 경찰서를 거쳐 서울시에 인계되어 소년의집에 수용되었음을 확인
8	김정의	0	불인정	미채혈	생후 4개월 여아 행복인의 모 김경숙은 음력 4월 초파일 장남 김정선이 전주 방면 고아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4개월 된 여아 김정의를 업고 장남을 찾기 위해 광주에 도착, 전주행 버스를 타기 위해 백운동 시외버스 승강장에 하차 진압군에 의하여 군 트럭에 실려서 어디론가 데려가진 후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고 부친이 신청 <참고> 1983. 1. 28. 목포 용해동에서 영암 삼호면으로 전출된 이후 1983. 10. 13 무단전출 직권말소 됨
9	김준성	8	불인정	미채혈	행불로 신고된 김준성은 농아자로 1980. 5. 19.경 거주지에서 광주 학동 농아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광주에 왔다가 그날이 토요일이어서 입학을 시키지 못하고 그 다음날 시내 구경을 나왔다가 아들의 손을 놓쳐 행불되었다고 신고함 <김준성> 1996. 12. 보상 취소됨

번호	이름	나이	보상 인정 여부	채혈 유무	참고내용
10	김용주	7	불인정	채혈	행불인 김영수와 그의 아들 김용주(당시 7세)는 임동 소재 노동복지회관에서 기거하였는바 1980. 5. 20 김영수가 아들 김용주를 데리고 외출한 후 현재까지 행불 <참고> 행불인 김영수와 그의 아들 김용주는 주민등록상 1979. 10. 24 북구 임동 97-33(노동복지회관의 지번임)에서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됨

1) 5·18행불자 이창현 군의 행방불명 경위와 소재 확인 조사

5·18조사위는 5·18행불자 이창현 군이 국립5·18민주묘지에 무명열사로 안장되어 있는 4세 아이의 유해로 추정하였으나, 5·18조사위가 실시한 유전자 검사결과에서는 행불자 이창현 군의 가족 유전자와 일치하지 않았다.

5·18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프랑스 사진작가가 촬영한 도청 앞 수습대책 위원들 사이에 있는 사진 속 어린아이를 특정하여, 가족들에게 확인한 결과 사진 속 어린이는 이창현 군이었다. 또한 가족들이 보관하고 있는 사진과 대조한 결과 이창현 군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5·18조사위는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입양기관에 있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광주 지역 입양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한국아동권리보장원에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였으나,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다. 나아가 5·18조사위는 당시 전교사 헌병대와 합동수사본부 등에도 시위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린이들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이창현 군으로 특정할 만한 관련 진술이나 증언은 확인할 수 없었다.

2) 조용운 군의 행방불명 경위와 입양시설 입소의 경위 확인

5·18행불자 중 10세 이하의 어린이로 분류된 조용운 군은 행방불명자로 신고되었으나, 부산에 생존해 있음이 확인되면서 기각되었다. 조용운 군 역시 5월 27일 시민들이 연

행되는 장면을 촬영된 사진 속 인물로 추정된다.

본인의 진술에 의하면, 조용운 군은 5월 27일 새벽 도청 앞에 있다가 대형버스 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군인들이 와서 자기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붙잡아 버스에 태워 상무대로 연행되었다고 한다. 조용운 군은 상무대(내무반으로 추정)에서 이틀 정도 있다가 군인 지프에 태워져 이동하던 중에 도망을 쳤고, 곧바로 무작정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탔다고 한다. 서울터미널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인근 경찰서로 인계되었고, 경찰은 당시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던 ‘소년의 집’으로 보냈다. 그 이후 소년의 집에서 국민학교를 마치고 다시 부산으로 거처를 옮겨 중·고등학교를 다녔다고 한다.

5·18조사위는 조용운 군의 행적을 조사한 결과 본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용운 군은 당시 보호자 확인이나 거주지 확인 절차 없이 곧바로 위탁시설에 보내졌다고 주장하였다. 5·18조사위는 이와 같은 추가 사례를 확인하기 위하여 10세 미만에 대한 조사를 집중하였으나, 이 이외의 사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자. 5·18행불자 행방불명 현장지도 구축

1) 일자별 분석¹⁴⁶ 결과

일자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5월 18일(38명)은 가족들이 광주에 함께 기거하지 않는 행방불명자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행방불명자가 광주에 간 것은 확인되었으나, 광주에서의 행적이나 목격자 등의 인우보증인, 참고인 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1980년 5

146 이 분류는 최초 보상신청서에 기재된 행방불명의 경위와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내용을 종합한 후,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전화 및 방문 면담 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행방불명의 경위 조사 결과를 추가하여 분석한 것이다. 5·18조사위가 행방불명 인정자의 일시 및 장소를 특정하여 피해현장지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행방불명자 피해현장지도는 5·18조사위가 계엄군의 작전상황 재구성과 민간인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시각화하기 위해 구축한 “공간정보플랫폼”으로 재현하였다. 피해현장지도 구축은 5·18관련 행불자 중에서 5·18보상심의회위원회가 관련자로 인정한 81명(다른 유형의 보상신청 사례 1명과 생존이 확인된 2명은 제외)을 대상으로 하였다.

월 18일을 상징적인 날짜로 지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5·18행불자는 5월 20일(47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5월 20일은 시위대와 계엄군 간 가장 치열한 공방전이 시내 전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되었고, 계엄군이 제3·7·11공수여단과 제31사단, 전투병과교육사령부 병력 등 가장 많은 인원을 투입하여 진압작전을 전개한 날이다. 또한 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시위대를 연행 또는 후송한 인원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상무대와 각 경찰서가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연행자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부대별 작전상황일지의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계엄군의 상황일지에서도 5월 18일과 5월 19일은 시위 현장에서의 체포인원을 기록하고 있으나, 5월 20일은 각 경찰서에 인계된 체포자에 관한 일체의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당시 가족과 함께 광주에 기거하고 있던 행방불명자들이 5월 20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도 상가 수색 과정, 시위 현장 등에서 마지막으로 가족과 지인 등에게 목격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5·18행불자의 일자별 구분에서 5월 20일 다음으로 많은 숫자가 확인되는 5월 21일(39명)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 번째는 5월 21일 집단발포에 의해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병원에서는 우선 소생 가능성이 있는 중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의료역량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이미 사망한 시체들의 관리가 소홀하였기 때문이다. 각 병원 영안실에 안치된 사망자들의 사진이나 영상, 병원 등에서 작성한 사망자 명단에 나타난 사망자 인적 사항과 사망 경위 등의 기록은 이와 같은 혼잡한 상황을 충분히 짐작케 한다. 또한 집단발포 이후 계엄군이 광주 외곽 차단으로 작전을 전환하면서 시내 일원에서 외곽으로 이동하였고, 이튿날 시내 일원의 병원에 안치되어 있던 사망한 시체들을 모두 도청으로 옮기기 위하여 가족들의 확인 후 상무관으로 이동하여 안치시키면서, 가족들에게 잘못 인도되거나 광주에 살지 않은 가족들이 미처 시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들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시체를 병원에 그대로 둔 채 신원을 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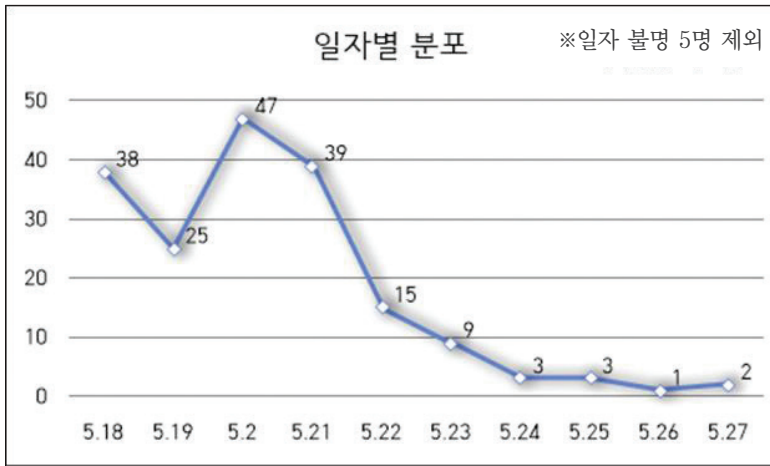
인하거나 가족을 비롯한 연고자를 찾는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시체가 바뀌어 매장되거나 시체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채 매장되는 상황은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이유는 5월 21일 집단발포 이후 시위대가 광주 외곽으로 이동하여 경찰서 등에서 무기를 빼앗아 다시 광주로 들어오는 5월 21일, 야간에서 5월 22일 새벽 사이에 광주 외곽도로를 차단하고 있던 계엄군과의 교전이 발생한 상황과 관련이 있다. 이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사망자의 시체처리 경위가 불분명하다. 또한 계엄군의 발포가 본격화되자 많은 광주 시민들이 피란하게 되었고, 이들이 광주나들목에서 계엄군의 총격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5월 21일은 계엄군의 집단발포에 의한 사상자 숫자의 압도적 증가, 광주 시내 병원의 진료 및 시체 관리의 혼란, 무기탈취 후 광주 진입 중에 시위대 사상자 발생, 피란 중이던 시민들이 외곽지역에서 발생한 시위대와 계엄군 사이의 교전 중 입은 피해 등 가장 많은 행방불명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3-3-12〉 행방불명자 일자별 분포

날짜	일자별 분포											기타 ¹⁴⁷	계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불명			소계
인원	38	25	47	39	15	9	3	3	1	2	5	187	55	242
백분율 (%)	16%	10%	19%	16%	6%	4%	1%	1%	0%	1%	2%	77%	23%	100%

147 기타로 분류된 대상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없는 행방불명자로 확인된 55명이다.



〈그림 3-3-4〉 행방불명자 일자별 분포

2) 장소별 분석결과

5·18조사위는 5·18행불자의 장소별 구분 또한 위에서 분석한 일자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5월 18일은 주로 시내 중심가에 집중되었고, 5월 21일과 5월 22일은 시내와 광주나들목에 해당하는 지역, 그리고 광주와 인접한 시·군 지역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도청을 중심으로 시내에서는 집단발포가 있었고, 시 외곽에서는 무장한 시위대와 계엄군 간의 교전이 있었으며, 피란 중이던 시민들이 가장 많았다는 점이 행방불명 신청 장소와 일자의 상관성을 설명해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광주역, 전남대, 유동삼거리 일원은 5월 20일 날짜와 대부분 겹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¹⁴⁸

148 5·18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없는 행방불명자로 확인한 55명을 포함하여 정리한 것은 위원회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대상 모두가 행방불명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 행방불명자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를 특정하기 위함이었다.

〈표 3-3-13〉 행방불명자 장소별 현황 분석

번호	행방불명 장소별 구분	인원	계엄군 작전 주요 상황
1	계림동, 대인동, 장동 일대	18	제7공수여단과 제11공수여단에 의해 5. 19.~20. 진압작전이 전개된 곳이며, 특히 5. 19. 시위 상황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된 지역임 해산하는 시위대를 추적하고 상가와 주택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체포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피해자들을 트럭에 실어 상무대, 각 경찰서 등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이를 다수의 시민들이 목격하면서 공동체 일원들의 집단적 공포와 분노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었음.
2	전남 광산군 일대 (송정역 포함)	10	영광, 나주 등에서 광주로 들어오는 송정교 등의 주요 다리와 길목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사상자 발생하였음.
3	광주↔시의 이동 중	19	광주 외곽 봉쇄 작전 과정의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이 있었고, 특히 5. 22.~24. 집중적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지역임 광주에서 시외로 드나들 수 있는 5곳의 모든 나들목에 계엄군이 배치되어 있었음 광주-담양 도로와 교도소(제3공수여단), 광주-나주(제20사단, 전교사 보병학교교도대대), 광주-송정, 국군광주통합병원(제20사단), 광주-장성(61훈련단 11경비대, 기갑학교), 광주-화순(제7공수여단, 제11공수여단)
4	광주공원, 사직공원 일대	6	5. 19.~20. 제7공수여단과 제11공수여단에 의한 시위진압 작전이 전개되었던 지역임. 이곳에서는 주로 나이 든 사람들이 행방불명된 사례가 많았으며, 공원이 갖고 있는 장소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5	광주역, 전남대, 중흥동 신안동 일대	15	5. 20. 차량 시위에 참가한 후 금남로에서 해산된 차량 시위대와 계엄군이 가장 치열하게 밀리고 밀리는 대치상황이 있었으며 최초 집단발포가 이루어진 현장임. 제3공수여단에 의한 상가와 주택가 수색과정에서 시위와 무관한 사람들이 차고지와 사무실 등지에서 체포, 연행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6	금남로 일대	12	5. 18. 제7공수여단, 5. 19.~20. 제11공수여단, 5. 20. 제3공수여단이 각 지역을 바둑판식으로 분할하여 진압작전 전개 전남도청 일원과 구별한 이유는 도청 일원의 상황은 5. 21.과 5. 27.에 집중되어 있고, 그 외의 기간은 금남로 1가에서 임동삼거리까지 광범위하게 작전이 전개되었고, 체포자들을 트럭에 싣고 가는 상황을 가장 많은 시민들이 목격한 현장임.

번호	행방불명 장소별 구분	인원	계엄군 작전 주요 상황
7	남평, 나주, 무안, 목포 일대	24	5. 21. 제20사단, 전교사, 61훈련단 11경비대와 제31사단에 의해 광주 진출입을 차단하는 작전이 전개된 지역임. 광주와 목포를 연결하는 국도 1번 도로에 해당하는 전남지역 시·군이 시위대의 무기습득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위대가 시위 확산 및 무기습득을 위해 광주 진출과 진입을 시도하였고, 제20사단과 제31사단이 담당한 차단작전 지역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8	도청 일대	27	5. 21. 집단발포, 5. 27. 상무총정작전 과정에서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음. 5. 21. 집단발포 상황에서 발생한 사망자들의 경우 대부분 시민들에 의해 광주 주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5. 27. 사망자의 경우 전남도청에서 수습되어 검사가 이루어졌음 이 지역에서 행방불명 숫자가 많은 이유는 행방불명자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장소가 이곳이며, 특히 시위에 적극 참여했다가 행방불명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으므로 인우보증인들의 증언에서 가장 많이 지목된 현장임.
9	충장로 일대	7	금남로, 전남도청 일원과 동일한 작전의 범위에 해당함
10	두암동, 풍향동, 서방시장일대	9	5. 18. 제7공수여단의 광주교육대 일원의 수색작전, 5. 22. 21. 제3공수여단에 의한 수색작전 등이 전개되었던 곳임. 광주-담양과 순천 고속도로와 국도, 광주교도소로 연결되는 지역이며, 제3공수여단에 의한 수색작전이 5. 22. ~ 24. 매일 있었음.
11	백운동 방림동 일대	11	계엄군의 진압작전이 집중되었던 곳은 아니나 이곳에서 가까운 곳에 냥마주이 집단촌 등이 있었고,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년들이 주로 기거했던 곳임. 이 지역은 계엄군의 작전에 의한 상황보다는 행방불명자들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장소로 많이 지목된 지역임.
12	산수동, 자산동, 동명동, 서석동(조선대 포함) 일대	9	차량 시위대가 광주 동남권을 순회할 때 가장 많이 경유하는 지역이면서 동시에 제7공수여단과 제11공수여단이 주둔했던 조선대와 인접해 있는 지역임 제7공수여단과 제11공수여단이 5. 18.~20. 시위진압 및 상가 수색 등의 작전이 전개된 지역임
13	시외지역(전남권)	5	해남, 영암, 화순 등지이며, 해남에서는 제31사단 예하 해남대대의 우슬재와 북평삼거리 등의 차단 작전 과정에서 교전상황이 있었음 영암과 무안 등에서는 제31사단 93연대가 목포로 진입하는 도로를 차단하는 과정에서 총격에 의한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번호	행방불명 장소별 구분	인원	계엄군 작전 주요 상황
14	월산동, 농성동, 광천동 일대	7	5. 18. 제7공수여단, 5. 19. 제7공수여단과 제11공수여단에 의한 시위진압작전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특히 상가 수색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수색과정에서 구타를 당한 후 체포된 많은 시위대가 금남로 대로변에 무릎을 꿇린 채 기합을 받다가 트럭에 실려 이송되는 모습이 많은 시민들에게 목격됨
15	임동, 유동, 양동 일대	11	
16	학동, 지원동, 소태동 일대	14	광주의 서남권 나들목으로 화순, 고흥, 장흥 등으로 나가는 길목이었으며, 제7공수여단과 제11공수여단이 광주외곽봉쇄작전을 위해 주둔했던 주남마을과 인접해 있음
17	화정동 국군광주통합병원 일대	5	5. 22. 제20사단에 의한 국군광주통합병원 확보작전과 송정리 일원의 소탕작전 등이 있었음.
18	기타(광주시내)	20	광주시내에 있었던 것으로만 확인될 뿐 구체적인 광주에서의 행적과 행방불명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19	장소불명	13	행방불명의 경위와 장소 등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된 것으로 신고된 대상
계		242	

3) 5·18행불 불인정자 광주 거주 형태 및 가족관계 분석결과

5·18행불 불인정자 158명 중 106명(5·18과 관련 없는 신고자 52명 제외)의 광주 주거 형태와 연고를 확인·분석하였다. 전체의 47%가 개인이 한시적으로 광주를 방문하였다가 행방불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5·18조사위가 소재 및 신원을 확인한 5·18행불 인정자 김재영은 고아였으며, 불인정자 신동남은 단독으로 광주역 인근의 여인숙에 기거하며 노동일을 하다 총상으로 사망하였으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채 매장되었다. 매장된 이러한 경우에서와 같이 한시적 광주 방문 또는 단독 기거에서 확인된다. 아래는 행방불명자들의 광주 연고를 내용별로 분류한 것이다.

〈표 3-3-14〉 행방불명자 불인정자의 광주 연고 분류

구분	주거 ¹⁴⁹	기거	방문	무연고	기타	계
구분 내용	광주가 주거지인 경우	주거지는 아니나, 일정 기간 거주 경우	일시적 광주방문	연고 없이 광주방문	광주방문 불분명	-
혼자	10	9	48	4	5	76
가족 동거	12	2	1	0	0	15
지인의 집	0	6	1	0	0	7
형제의 집	3	5	0	0	0	8
계	25	22	50	4	5	106
백분율(%)	24%	21%	47%	4%	5%	100%

4) 5·18관련 행불자 중 인정된 73명의 개인별 5·18관련성

5·18조사위는 5·18행불자로 인정된 84명 중 73명(5·18관련 사망 8, 생존 및 타보상 3 제외)의 개인별 5·18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5·18민주화운동 기간에 시민군 등으로 적극 참여한 사실이 목격되었거나 부모가 행불자를 찾기 위해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병원 등을 찾아다니며 시체라도 찾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된 행불자는 총 16명(아래 〈표 3-3-15〉 참조)으로 조사되었다.¹⁵⁰ 행방불명 피해보상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분석하여, 시위에 적극 참여한 사실이 인우보증인 진술 등으로 확인된 사례를 선별하여 조사 대상을 특정하고, 인우보증인과 가족들의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1980년 당시 전남도청, 광주시청 등의 기관에 행방불명 사실을 신고하였고, 5·18유족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재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를 5·18행

149 住居는 “거주하다”는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살고 있다.起居는 “기거하다”는 일정한 곳에서 먹고 자고 하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다. 형제의 집과 지인의 집으로 나눈 이유는 주거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150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시내 곳곳에서 목격되었으나 5·18민주화운동이 끝난 후에도 그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다.

불자 인정 사유로 참작하였고, 과학적인 유전자 검사로 소재 및 신원이 최종 확인된 경우 5·18 관련 사망자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2002년 6명의 5·18행불 인정자의 소재 및 신원이 확인된 것과 같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위 및 수습위원 등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16명의 다른 행불자들의 경우도 우선적으로 그 유해의 소재 확인을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3-3-15〉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위 및 수습위원 등의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행방 불명 인정자(16명)

번호	행방 불명자	최종 목격 일시 및 장소	목격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참여 정황
1	김병균	- 5. 20. 19:30 - 도청 앞 시위 현장	- 행불자는 인우보증인들이 5. 20. 시내 일원의 시위 현장에서 유리창이 깨진 차량에 타고 시위를 하는 모습을 목격하였음.
2	김인수	- 5. 26. 17:00 - 광주경찰서 앞 주점	- 인우보증인들이 5. 21.과 5. 26. 칼빈총을 메고 시민군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목격하였음.
3	김창수	- 5. 21. - 나주 산포 비상활주로	- 영광에서 함께 시위대 버스를 타고 광주로 향하다가 나주까지 동행했던 인우보증인들에 의해 나주 산포의 비상활주로에서 자신들은 다시 영광으로 돌아갔고, 행불인은 다른 시위대 차량을 타고 광주로 향했다고 함.
4	김희수	- 5. 20. - 광주 양동시장	- 시위대와 함께 탑승한 차량을 타고 나주 집에 와서 헬멧과 옷을 챙겨간 사실이 있고, 5. 20.경 양동시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자신이 시위대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는 인우보증인들의 증언이 있었고, 보상신청에서 기각되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서증 성립인정' 판결을 받아 재심에서 인정되었음.
5	박형철	- 5. 21, 23, 24. - 광주 시내 일원(도청 앞)	- 5. 21. 광주 유동삼거리, 5. 23. 전남도청 앞 남도예술회관, 5. 24. 광주 방림다리 등에서 무기를 휴대하고 시위대로 활동하는 모습을 여러 인우보증인들이 목격하였음.
6	신양균	- 5. 21. 오전 - 광주 양동의 자가	- 행불자는 5·18 (사망자 민병렬과 한집에서 기거하였고, 민병렬과 함께 5. 20.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차고지가 위치해 있던 광주역 부근으로 나간 후 행방불명되었으며, 사망자 민병렬은 전남대 이학부에 구금되어 있다가 광주교도소로 이송된 후 사망하여 광주교도소 부근에 가매장되었다가 시청직원에게 의해 수습되었음이 5·18조사위 조사에서 확인되었음.

번호	행방 불명자	최종 목격 일시 및 장소	목격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참여 정황
7	신종실	- 5. 19.~20. - 광주공원	- 당시 광주 서동에 위치해 있던 직업재활원(BBS) 소속 동료들 다수가 광주공원 등에서 행불자가 총을 메고 시민군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목격하였음. 다만, 보상신청서에 기재된 인우보증 내용에 5. 19.과 5. 20.로 일자를 특정한 것은 기억의 착오였음을 김영오 ¹⁵¹ 등이 5·18조사위 참고인 조사에서 정정하였음
8	안운재	- 5. 22. 14:00 - 광주 월산동 로터리	- 5. 21.~22. 인우보증인들이 광주 월산동 우진아파트 부근에서 행불인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시위대 차량에 함께 타고 시위를 하는 모습을 목격하였음.
9	양태열	- 5. 24. 10:00 - 광주서부경찰서 앞 도로	- 행불인은 5. 22. 광주MBC 앞 도로에서, 5. 24. 광주서부경찰서 앞 도로에서 칼빈총을 메고 시위대가 탑승한 차량에 타고 있는 모습을 인우보증인들이 목격하였음.
10	양희태	- 5. 20. 오후 2~3시 - 도청 앞	- 5. 20.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2~3시까지 행불인과 인우보증인 노남주를 포함한 친구들 4~5명이 도청 앞에서 같이 시위 구경을 하였음.
11	유재성	- 5. 20. 17:00 - 금남로 한일은행 앞	- 행불자가 한일은행 사거리에서 시위하는 모습을 보고 인우보증인 등이 집에 들어가라고 권유했음에도 시위에 계속 참여한 것으로 증언하고 있음.
12	윤성환	- 5. 20. - 금남로	- 당시 구두담이었던 행불자는 5. 20.경부터 적극적으로 시위에 참여하는 것을 목격한 직장동료, 그 이후에 행불자가 기거했던 집주인이 5·18 이후 다른 구두담이 아이들과 함께 돌아오지 않았다고 함.
13	이기환	- 5. 21. - 산수동과 법원 일대	- 당행불자가 5. 21. 집에 최루탄을 싸들고 들어왔다가 나간 것에 대한 어머니의 진술, 법원 등지에서 무기를 휴대하고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인우보증인 등 다수가 목격하였음.
14	이상복	- 5. 22. - 전남도청 앞	- 당행불자가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에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도청 앞 등에서 인우보증인이 목격하였음.
15	이창현	- 5. 27. 새벽 - 상무대 영창으로 추정	- 당행불자 이창현은 5. 27. 도청 일원의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들을 태운 버스에 함께 태워진 모습이 사진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사진을 가족이 행불자 이창현이라고 확인하였음. 또한 가족으로부터 제공받은 다른 사진과 비교한 결과 같은 인물로 추정하였음.

151 김영오의 증언, 『5·18민중항쟁 사료전집』(1988.)

번호	행방 불명자	최종 목격 일시 및 장소	목격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참여 정황
16	임옥환	- 5. 21. 새벽 - 조선대 뒷산	- 당광주 소재 불광사에서 함께 하숙을 하였고, 조선대 뒷산을 넘어 고향으로 가기 위해 행불자와 함께 가다가 총소리를 듣고 자신은 피했는데 친구인 행불자는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인우보증인의 증언이 있고, 5·18조사위가 인우보증인을 만나 증언 내용을 다시 확인하였음. 또한 당시 3공수여단 소속 계엄군이 전남대 후문에서 임옥환을 체포했다가 잘 알고 있는 고향 후배여서 풀어준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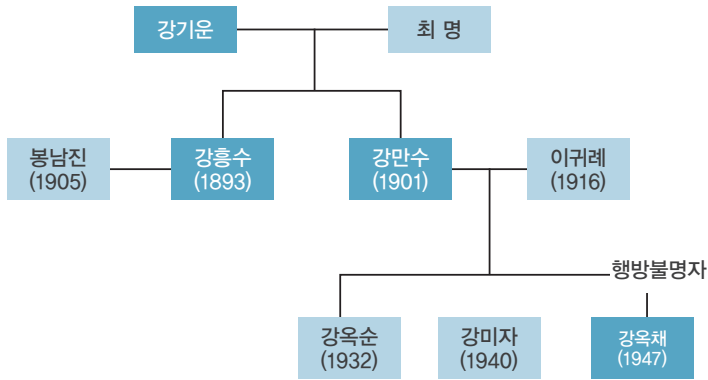
5·18조사위는 5·18행불자 중 인정자 73명(사망 전환 8, 생존 및 타 보상 3 제외)의 5·18 관련성을 개별 조사하였다. 대상자 73명 중 기록 및 인우보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57명¹⁵²에 대한 조사결과는 직권사건 조사결과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 이 대상자들은 유전자 데이터를 별도로 관리하는 한편, 가(암)매장 제보 현장에서 무연고 유해가 발굴될 경우 이들의 유가족 유전자와 우선적으로 대조하여 결과를 확인하였으나, 일치된 사례는 없었다.

152 제외된 16명은 가족이 모두 사망하였거나 조사를 거부한 사례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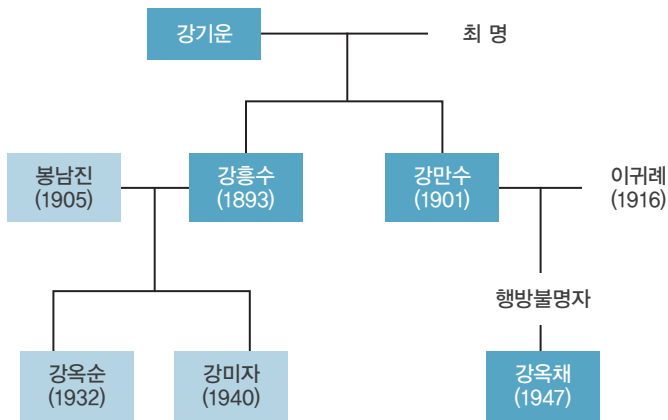
차. 행방불명자 가족 채혈 및 유전자 검사

1) 행방불명자 가족관계부 분석(예시)¹⁵³

[행불자 “강옥채” 가계도]



〈그림 3-3-5〉 행불자 강옥채 제적등본상 가족관계도



〈그림 3-3-6〉 행불자 강옥채 1993년 진술서상 가족관계도

153 가족관계부 확인 대상자들 중 가족관계가 복잡한 대표적 사례이며, 개인정보의 민감한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어 가족이 게재에 동의한 경우이다. 그 외 대상자들도 분석하였으나 본 보고서에 모두 담지 않았다.

※ 강옥순의 호적변동

제적등본에 의하면 행불자 강옥채(47년생, 남)와 신청인 강옥순(32년생, 여)이 호주 강만수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나, 진술서에 의하면 신청인 강옥순은 강홍수의 자녀이며, 행불자 강옥채와 사촌으로 확인되었음.

* 혈연관계에 따라 유전자 검사의 방법과 해석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가계도 분석 필요

2) 유전자 검사를 위한 채혈 현황(2023년 12월 20일 기준)

행방불명 피해 신청자 242명 중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가 확보된 인원은 190명(인정 83명, 불인정 107명)이다.

〈표 3-3-16〉

구분	행방불명 피해 신청자 242명			
	행불 인정(84명) ¹⁵⁴		행불 불인정(158명)	
	시료 확보	시료 미확보	시료 확보	시료 미확보 ¹⁵⁵
인원(명)	83	1	107	51

유전자 시료가 확보된 행방불명자 190명에 대한 유가족 유전자 시료는 총 389개이며, 이 가운데 인정자 시료는 191개(행방불명자 1명당 평균 2.3개), 불인정자 시료는 198개(행방불명자 1명당 평균 1.9개)이다.

〈표 3-3-17〉

구분	계	행불 인정	행불 불인정
시료 확보 행불자(명)	190	83	107

154 인정자 중 미채혈 1명은 타보상 변경으로 채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임.

155 5·18민주화운동 관련 없거나 생존이 확인된 대상이 포함되어 있으며, 5·18조사위에서 관련 없는 것으로 확인하기 이전에 광주광역시에서 채혈한 대상의 일부는 채혈 대상 수에 산입되어 있음.

구분	계	행불 인정	행불 불인정
유가족 시료 수(개)	389	191	198
행불자 1명 당 시료 수(개)	2.1	2.3	1.9

연도별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 현황은 아래의 <표 3-3-18>와 같다. 2001년 행불자 총 95명의 유가족 221명이 유전자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채혈 등)에 동참한 이래로 2018년까지 행불자 총 154명의 유가족 유전자 시료 327개가 채취되었다. 이후 5·18조사위는 그동안 유전자 정보가 확보되지 않았던 83명의 행불자와 이전에 확보되었지만 추가 시료가 필요한 19명의 행불자를 각각 특정하여, 총 121개의 유가족 유전자 시료를 추가로 확보하였다.

<표 3-3-18>

연도별(년)	대상 행불자(명)			확보 시료수(개)	시료확보 기관
	연도별 총계	신규 확보	추가 확보		
2001	95	95	0	221	광주광역시
2002	15	13	2	37	광주광역시
2004	11	11	0	20	광주광역시
2009	8	8	0	13	광주광역시
2018	27	27	0	36	광주광역시
2020	28	27	1	33	5·18조사위
2021	13	11	2	18	5·18조사위
2022	40	39	1	45	5·18조사위
2023	21	6	15	25	5·18조사위
계	258	237	21	448	

5·18조사위는 행방불명 피해신청자 242명 이외에도 보상신청은 하지 않았으나 그 무

렵 실종되어 가족이 확인 요청한 47명(기타 채혈자)의 유가족 유전자 시료 59개를 확보하였다. 5·18조사위 조사를 통해 행불자 242명 중 5·18관련 사망자로 확인된 9명과 5·18과 관련 없는 신청자 55명을 제외한, 행불자 178명의 유가족 시료 331개의 유전자 정보를 확보하여 이후 발굴, 수습되는 유해와 교차 대조 가능한 DB를 구축하였다.

〈표 3-3-19〉

구분	계	행방불명 피해 신청자					기타 채혈자 ¹⁵⁶
		소계	행불(인정)	행불(불인정)	행불(5·18사망자)	행불-제외	
인원(명)	289	242	73	105	9	55	47
시료 수(개)	448	389	164	167	23	35	59

3. 소결

5·18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학살·가(압)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¹⁵⁷하는 조사를 진행하였다.

5·18조사위는 「5·18진상규명법」 제3조 제6호의 직권조사과제인 ‘5·18민주화운동 관련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의 조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고, 일부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사건번호를 분리하여 전원위원회에서 의결¹⁵⁸하였다.

첫째, 5·18민주화운동 관련 행방불명자로 신고된 피해자 중 인정자 2명과 불인정자 1명 등 3명의 시신이 국립5·18민주묘지에 신원미상(무명열사)으로 안장되어 있는 사실을

¹⁵⁶ 기타 채혈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행방불명자로 보상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가족이 그 무렵에 실종되었으므로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의해 광주광역시에서 채혈한 유전자 데이터를 5·18조사위로 이관한 것임.

¹⁵⁷ 「5·18진상규명법」 제1조(목적)

¹⁵⁸ 2022. 6. 14. 전원위원회 의결, 사건번호 직마-4-1, 2로 사건번호 분리 및 부여하여 의결

확인하였다.

둘째, 사망자의 시체를 잘못 인수하여 행방불명자와 시체가 바뀌어 매장된 사례 1건을 확인한 후 그 신원과 소재를 바로잡았다.

셋째, 행방불명자로 신고된 242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없는 사례 55명을 확인하였다.

넷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행방불명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사대상 178명을 조사하였으며,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표적인 사례¹⁵⁹를 특정하여 행방불명의 경위와 5·18민주화운동 진압작전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였고, 동시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가(암)매장 제보 현장에서 발굴된 유해의 유전자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현재의 시점까지 5·18행불자와 가(암)매장 제보 현장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이 일치된 사례는 없다. 또한 민간인 사망자의 해양 투기설과 화장장 소각설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였으나,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국군광주통합병원 소각장과 보일러실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조사가 종료된 시점까지 5·18민주화운동 관련 공식적인 사망자의 숫자에는 영향이 없다.

5·18조사위는 지난 43년여 동안 신원, 사망 및 매장 경위 등을 확인하지 못한 국립 5·18민주묘지의 무명열사 5위 중 3위의 신원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시체가 바뀌어 매장된 사례 1건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로 추정되는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최종 확인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추적할 수 없었던 공부상 기록을 추적하고 각종 조회 등을 통하여 55명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없는 대상으로 규명하였다. 5·18조

159 위의 표로 정리한 16명의 5·18민주화운동 기간 중 시위 참여 등의 행적이 목격된 사례 참조

사위는 2002년 유전자 검사로 신원이 확인된 5·18행불자 6명의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 경위와 원인 등을 병원 진료기록과 관련 사진 및 영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가해자의 저격 당시 상황에 대한 본인의 인정진술과 계엄군 작전 상황을 재구성하여 사망의 경위를 최종 확인하였다.

5·18조사위는 5·18 관련 행불자의 소재와 규모를 조사하면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가(암)매장 사건과 연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민간인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지문채취와 사진촬영 등이 있었다는 다수의 증언과 진술을 확보하였다. 특히 전교사 행정병¹⁶⁰으로 근무하면서 5·18민주화운동 기간 중 상황일지를 작성했던 신만균 당시 일병은 상관의 지시로 많은 분량의 관련 사진 등을 불태웠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추가 진술이 확인되거나 505보안대와 합동수사본부 관련 기록 등에서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 당시 합동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담당했던 허장환 등의 진술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허장환의 진술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 및 관련 참고인 진술 조사¹⁶¹ 및 군 기관 및 해당 부대, 그리고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와 기록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관련 기록과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

160 5·18조사위, 「참고인 신만균 진술조서」(2023.09.)

161 5·18조사위, 「참고인 김용장 진술조서」(2023.04.)



제4절 암매장

1. 조사 배경

5·18민주화운동 관련 민간인 사망자의 가(암)매장 의혹은 5·18민주화운동 당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의혹은 당시 계엄군의 진압과정에서 구타 등에 의해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을 군용 트럭에 싣고 연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던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암매장했을 것이란 추측을 낳게 하였고, 실제 5·18민주화운동의 진압작전이 종료된 이후에 광주 외곽지역에 가매장되었거나 암매장되어 있었던 민간인 사망자들의 시신들이 발굴·수습되면서 사실로 확인되었다. 지난 43년 동안 광주광역시와 5·18민주화운동 유관 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암매장 관련 제보 현장을 확인하는 등의 조사 활동을 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광주광역시와 5·18기념재단이 관리해 오던 53개소의 제보 현장 및 제보 내용을 5·18조사위로 이관하였다. 이에 암매장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와 제보 현장에 대한 지표조사와 유해의 발굴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5·18조사위는 「5·18진상규명법」 제3조 제6호의 법정조사과제인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 암매장과 시신의 유기 및 그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직라-9〉에 대해 2020년 9월 28일 제18차 전원위원회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하였다.

5·18조사위의 직권조사 사건인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확인」〈직마-4〉와 함께 「암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조사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피해자의 규모를 최종적으로 특정하는 문제와 사망자 숫자를 축소해 왔다는 의혹, 5·18행불자들의 소재 확인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제이다. 또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서 진압작전에 참가했던 계엄군들의 진술과 군 관련 기록 등에서 확인된 사망자 숫자 중 일부에 차이가 있어 수습되지 않았거나 실종된 시신의 행방에 대해서도 사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사망자의 시체를 수습하거나 가매장, 또는 암매장을 실행하였거나 목격한 계엄군들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민간인 사망자들의 시체를 매장하기 전에 사진 촬영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광주지방검찰청이 주관한 광주사태 변사체 검시 당시에도 유가족 등이 확인하지 않은 시체에 대해서는 지문채취 등 신원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관련 자료 일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이 자료가 관리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더불어 이런 기록과 자료들이 특정 기관 또는 관련자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폐기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 암매장과 시신의 유기 및 그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직라-9〉에 대한 조사는 2023년 12월 24일 제115차 전원위원회에 진상규명 불능으로 상정되어 전원일치로 ‘진상규명불능’으로 수정의결되었다.

2. 조사 결과

가. 선행조사의 결과

1) 용어¹⁶² 정리

‘암매장’의 사전적 의미는 ‘시체를 남몰래 땅에 묻다.’이다. 암매장은 가매장과 구별되는 것으로, 암매장은 불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후 그 시체를 은닉하여 그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반해 ‘가매장’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통상 전투 지역에서 실

162 아래의 용어 해석에도 불구하고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들이 민간인 사망자들의 시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암매장과 가매장의 형태가 혼재되어 있어 이 사건의 직권조사 개시 결정 당시 전원위원회 의견(이종협 상임위원 등)에 따라 용어를 ‘가(암)매장’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시되는 시체매장 방법의 하나로 시체 후송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시로 시체를 매장하는 것'이다. 다만, 5·18조사위는 조사개시 결정 당시 전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암)매장」으로 통일시켜 사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조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할 당시의 전원위원회(2023년 12월 26일 제160차)에서는 조사가 마무리된 보고서에는 가매장과 암매장, 시신의 방치 등을 구분해서 정리할 것을 요구하여 이를 최종결과보고서에 반영하였다. 가매장 역시 임시로 매장했다면 그 매장 사실을 행정기관 등에 알려서 사후에 수습될 수 있는 조치를 했어야 하는 데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면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암매장은 '형법' 제161조의 '시체 등의 유기 등'과 연결지어 그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시체 등의 유기죄'는 '사체·유골·유발 또는 관(棺) 내에 장치한 물건을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161조)'이다. 유기는 사회풍속상 매장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지 않고 시체 등을 버리는 행위이다. 따라서 시체를 땅속에 묻은 경우에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매장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렇게나 묻은 경우 유기가 된다. 또한, 유기는 시체 등의 위치 자체를 옮겨버리는 적극적인 작위(作爲)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나, 법령·계약·관습상의 매장 의무를 지는 자가 시체를 매장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거나 또는 그 장소를 떠나는 소극적인 부작위(不作爲)로도 유기할 수 있다. 따라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암매장 사건은 민간인 시체의 유기행위가 함께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포함하여 조사했다.

암매장은 '강제실종'과도 연결된다. 강제실종은 유엔의 핵심 인권규약으로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2010년 12월 국제적으로 발효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 6월 21일 제28회 국무회의에서 비준을 의결한 후 후속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강제실종 방지협약)」에 의해 구체화 되었다. 이 협약에서 강제실종은 “실종자의 생사 또는 소재지를 은폐하여 실종자를 법의 보호 밖에 놓이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암매장 사건을 유엔

협약에 의한 ‘강제실종’과 연결하는 것은 5·18민주화운동의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들의 수를 축소하여 진실을 은폐하려는 신군부의 의도적이고 다각적인 시도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광주지방검찰청에 보고된 가매장된 시체의 대부분은 5·18민주화운동이 진압된 후 사후에 수습된 기록이 있으나, 4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18과 관련하여 사망한 후 행방불명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들의 유해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 1980년 5월 ~ 1980년 6월 암매장 유해의 발굴 및 수습 경과

5·18민주화운동 진압작전이 종료된 5월 27일 이후 광주지방검찰청과 전교사 등이 광주시청으로 보낸 공문, 전화 등에 의해 가매장된 시체를 수습하여 검시하라는 통보를 받고 당시 광주시청 사회과 직원 조성갑 등이 광주교도소 일원에서부터 민간인 사망자 시체를 수습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6월 3일까지 시민들의 제보와 연락을 받고 위 조성갑 등이 수습한 시체의 총 숫자는 41구로 확인되었다. 광주시에서 작성한 민간인 사망자 시체 수습 관련 기록에는 41구이나 실제 조성갑이 수습한 시체는 모두 36구이며, 일부는 광주시청의 다른 직원이나 동사무소 직원 등이 수습한 후 상무관,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으로 이송하여 검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래의 <표 3-4-1>은 광주시에서 가매장되어 있거나 방치되어 있던 시체를 수습한 일시, 장소, 시체의 신원 등을 작성하여 5·18조사위에 제출한 자료이다. 이 자료에서 보듯이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계엄군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41구의 민간인 사망자 시체는 노상이나 건물에 방치되어 있었거나 가매장한 후 나무막대기를 꽂아 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아래의 표에서 채수길, 양민석은 매장한 당사자가 영상녹화 조사에서는 “두 청년이 부상의 정도가 심하여 사촌 간인 김○○ 하사가 지켜보는 데서 사살하여 암매장하였다”¹⁶³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163 5·18조사위, 「한○○ 진술 영상채증 및 속기록」(2021.02.17.), (2021.04.23.) 2차례 조사

진술인은 이후 진술조서 작성 등을 위한 추가조사나 출석요구 등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진술과 현장에 있었던 김○○의 진술, 그리고 주민의 신고로 시체가 수습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례는 암매장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광주교도소 앞 야산에서 가족과 조성갑 등이 1980년 5월 29일 수습한 최열락, 서만오의 경우도 1995년 검찰의 진술조사에서 제3공수여단 편○○ 대위, 신○○ 소령 등이 사살된 민간인 2명을 광주교도소 앞 야산에 가매장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광주교도소 안에서 수습된 다른 민간인 시체들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전문 등과 달리 이와 관련된 기록이 일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역시 암매장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주남마을 뒷산에서 조성갑이 수습한 김부열의 경우도 어떤 기록도 확인되지 않았다. 조성갑이 당시 주민의 제보를 받고 현장에 가서 수습해 왔다는 진술에 비추어 이 역시 암매장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1980년 5월 27일부터 6월 7일 사이에 시청 직원 조성갑이나 가족 등에 의해 시체가 수습된 41건 중 위의 최소 세 사례는 암매장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가매장, 또는 방치했던 것으로 분류하였다.

〈표 3-4-1〉 5·18민주화운동 종료 후 광주시청 조성갑 등에 의해 수습된 희생자

구분	일자 ¹⁶⁴	장소	인원	인적 사항(성명)	비고
인수	5. 27	광주교도소	1	미상, 남, 25세	
인수	5. 27	광주고	2	양동선(광주고 수위)	사망자 조일기로 판단됨
				미상, 남, 30대	
인수	5. 27	YWCA	1	박용준	
인수	5. 27	전남여고 옆	1	이금재(1951)	
인수	5. 29	시외버스공용터미널 육조	1	남, 20대,	행방불명자에서 2002년 유전자 검사로 신원이 확인된 권호영으로 판단됨

164 수습 일자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진술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되었다.

구분	일자 ¹⁶⁴	장소	인원	인적 사항(성명)	비고
매장, 발굴	5. 29	광주교도소 도랑	8	안두환(1935)	타박사
				장방환	타박사
				임은택	총상
				고규석	총상
				민병렬	자상
				서종덕	총상
				이명진	총상
				이용충	총상
매장, 발굴 (압매장)	5. 29	광주교도소 앞산	2	최열락	총상
				미상 1명	사망자 서만으로 확인됨
신고, 인수	5. 29	지원동 도로 옆 고랑	7	미상 7명	미니버스 사망자 중 일 부로 확인됨
인수	5. 29	상무대 백일사격장 * 총 14구가 가매장 되어 있었으며 11구는 조성갑이 수습하였고, 3구는 가족이 인수하 였음.	11	1. 김재평	관구 의무실
				2. 조규영	관구 의무실
				3. 함광수	관구 의무실
				4. 임정식	국군광주통합병원
				5. 박종길	국군광주통합병원
				6. 양희남	국군광주통합병원
				7. 김평용	국군광주통합병원
				8. 송정교	국군광주통합병원
				9. 전재서	국군광주통합병원
				10. 김경철(형렬)	국군광주통합병원
				11. 정지영	국군광주통합병원
				12. 박재영	가족 인수
				13. 임종인	가족 인수
				14. 왕태경	가족 인수
신고, 발굴 (압매장)	6. 3	주남마을 뒷산	2	채수길(1959)	2002년 유전자 검사로 신원 확 인
				양민석(1960)	
신고, 발굴	미상	인성고 앞산	1	전재수(남, 1969)	법최면 조사 시 본인이 수습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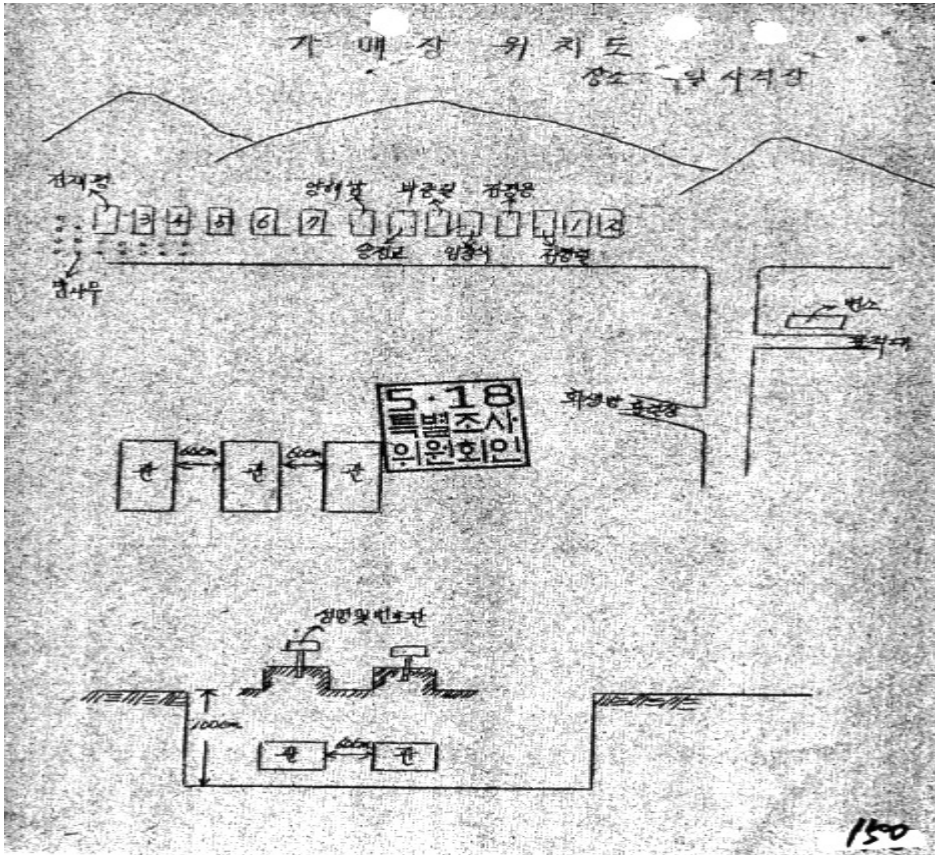
구분	일자 ¹⁶⁴	장소	인원	인적 사항(성명)	비고
신고, 발굴	미상	효덕동 논	1	남, 20대 추정	위와 같음
신고, 발굴	미상	천일버스 종점	1	김상태,	
신고, 발굴	미상	일곡부락 산	1	미상(남, 40대, 정신이상)	사망자 강정배로 판단됨
신고, 발굴	미상	주남마을 뒷산 (5. 24, 부영산)	1	김부열(조대부중, 3년)	6.7(검시)
합계			41 (36)		

※ 5·18조사위가 육군본부 과학수사대 법최면 조사관에게 의뢰하여 조성갑의 법최면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41구가 아니라 36구라고 증언하였음.

특히, 유해가 가장 많이 발굴된 백일사격장에는 5·18 당시 상무대 내에 시체를 안치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이 없어 건설공병단에서 전교사 총혼담 부근에 나무 상판을 깔고 그 위에 군용천막 2동을 설치하여 임시 안치소를 만들어 군인 및 민간인 시체를 각각 구분하여 안치하였다. 또한 당시 비상시국으로 민간인 시체를 최기 지방관서(광주시청)에 인계하지 못하고 부패 등의 우려가 있어 광주지검 검사, 기자, 군의관, 보건소장 등이 입회한 가운데 시체 검안(검시) 후 공병단에서 제작한 관에 옷과 신발이 신겨진 상태로 입관하여 백일사격장으로 옮긴 후 가매장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매장시에는 건설공병단에서 미리 포크레인으로 파 놓은 곳에 관을 놓고 봉분을 만든 후 준비해 간 꽃말(1·2·3·4 형식의 일련번호)로 표식을 해 두었으며, 이후 광주시 보건사회국에서 가매장된 시체를 발굴해 간 것으로 확인되었다.¹⁶⁵¹⁶⁶

165 5·18조사위, 『손○○ 진술조서』(2023.04.06.), 2~10쪽

166 광주광역시 5·18지원협력관실, 『5·18사태』, 국가기록원(104-227) 147~151쪽



〈그림 3-4-1〉 육군6033부대 민간인 시체 처리 결과 '백일사격장 가매장 위치도'

3) 광주광역시 '행방불명소재찾기사업'에 의한 암매장 발굴

5·18민주화운동 관련 암매장 제보는 5·18민주화운동 직후부터 일반인들이 목격했거나 들었던 내용을 관계기관과 5·18단체에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988년 국회 청문회를 계기로 암매장 제보에 대한 관리와 현장 조사 등이 시작되었다. 특히 당시 평화민주당은 광주시 서구 지구당에 신고소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현지조사팀을 구성하여 제보 내용에 대한 현장 조사를 5·18피해자단체와 함께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영산 유골 1기, 황룡강 강둑 9기 등의 유해를 발굴하였다. 광주광역시는 2001

년~2002년 전남대 법의학교실에 의뢰하여 5·18 구 묘지에 매장되어 있던 신원미상의 5·18사망자 11명의 유전자 검사 및 신원확인 사업을 시행하면서, 평화민주당에서 발굴한 유해에 대한 유전자 검사도 병행하였다. 2002년 유전자 검사는 STR방법을 적용하였고, 당시에는 유전자 좌위 13개¹⁶⁷를 추출하여 5·18행불자 가족의 혈액에서 검출한 유전자와 비교하였으며, 5·18 구 묘지의 신원미상 유해 11기 중 6기의 신원을 확인하였다. 평화민주당에서 발굴한 유해와 5·18행불자 가족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10기의 유해는 광주시립묘원에 매장하였다.

광주광역시는 1997년 8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5·18행불자 소재찾기 신고기간’을 정하고 지역 언론사를 통해 홍보하여 47건(총신고 건수 57건, 중복건수 10건)을 접수하였다. 이 가운데 광주 KBS가 「공개수배 25시」(1999년 5월 19일)를 방영한 이후 44건이 접수되기도 하였다.

【주요 경과】

- ① 5·18행방불명자 소재 찾기 사실조사위원회 구성 2000. 11. 29. 11명으로 구성(위원장 - 행정부시장)
- ② 주요 업무 : 5·18 구 묘지 신원미상 사망자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 유해의 유전자와 대조하기 위한 행불자 가족 채혈 및 유전자 검사, 암매장 제보지 발굴 및 감정
- ③ 2001. 2. 1.~2001. 12. 11. : 행방불명자 유가족 채혈 실시(540명 대상, 220명 채혈)
- ④ 2001. 10. 22.~10. 31. : 5·18 구 묘지 11기 발굴 및 유전자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 11기의 유전자 검사 과정에 부영산 유골 1기와 주남마을 2기 포함
- ⑤ 2001. 12. 5.~2009. 3. 18. : 암매장 제보지 현장조사 및 유해발굴(총 9개소)
※ 조사 대상 - 47개소 중 25개소(22개소는 신고 부실로 조사 불가)
조사 결과 - 발굴 관리 대상 5, 조사 불가 19, 정밀조사 1.
발굴 대상 - 광산구 소촌동, 황룡강 제방, 삼도동, 국군광주통합병원 옆, 상록회관 옆길, 문화예술회관 관리동 뒤편, 북구 장등동 야산, 북구 효령동 산145-2(9개소)

167 5·18조사위는 암매장 제보 현장에서 발굴된 유해와 5·18행불자 가족의 혈액에서 유전자 검출은 STR방법과 보다 많은 유전자 좌위를 검출할 수 있고, 4촌 이상의 혈연관계 및 이복 등의 혈연관계에 대해서도 유전자 분석 및 대조가 가능한 SNP방법 두가지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STR방법도 2002년의 13개 좌위의 검체수를 23개 검체수로 확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5·18유족회와 행방불명자가족회 등은 암매장 제보 내용을 수집·관리해왔고, 단체 회원들 중심으로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5·18과 관련된 직접적 결과와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5·18기념재단이 설립된 이후에는 5·18피해자 단체들이 관리해 오던 제보 내용을 이관받아 제보자 면담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해 왔다. 5·18조사위는 이것들을 이관받아 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5·18기념재단의 용역계약 및 과업지시 내용에 반영하였다.

4) 2002년~2009년 광주광역시의 암매장 제보 현장 발굴

〈표 3-4-2〉 암매장 제보 현장 발굴 일지(광주광역시 제공)

구분	발굴일시	장소	결과	유전자 검사결과	비고
1	2002. 6. 26.	광산구 소촌동(금호패밀리 뒷산 공동묘지)	- 유골 1기 - 유품 7점	일치 가족 없음	-광주시립영락공원 안장 - 2004.6.30.
2	2002. 10. 28.	광산구 삼도동	- 유골 9기	일치 가족 없음	
3	2003. 4. 12. ~ 4. 14.	국군광주통합병원 담장 밑	특이 사항 없음		
4	2003. 4. 15. ~ 4. 22.	황룡강 제방	- 동물뼈 조각 2점	동물뼈로 판정	
5	2003. 5. 16.	상록회관 옆 도로	- 인골로 추정되는 뼈조각 20여 점	동물뼈로 판정	
6	2006. 2. 24. ~ 2. 27.	문화예술회관 관리동 뒤편 도로변 화단	특이 사항 발견 못함		
7	2006. 3. 13.	북구 장등동 야산	특이 사항 발견 못함		
8	2006. 1. 18. 2007. 12. 30.	남구 주월동 호반아파트 공사현장	- 유골 137 - 취토 155기	관련성 없음	김제 평화원 보존
9	2009. 3. 17. ~ 3. 18.	북구 효령동 산 145-2	- 유골 3기 - 과자봉지	관련성 없음	

광산구 소촌동 금호패밀리 뒷산 공동묘지 내 유해 발굴과 유전자 검사를 담당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은 유해의 발굴 당시 “상의는 벗었으나 하의는 팬티와 트레이닝복, 청바지 순으로 착용, ‘정광고’가 양각된 바클이 달린 요대가 허리에서 얼굴 위치까지 걸쳐 놓였음. 티셔츠와 교련복과 스웨터가 출토되었지만 발치에 놓여 있는 상태”로 확인하였다고 보고서에 기술하고 있다. 이 유해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행방불명자 가족과 일치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고, 유해는 2004년 6월 30일 광주시립 영락공원에 안장되었다. 당시 정광고등학교 마크가 양각된 바클이 함께 발견되었으나, 해당 학교의 제적부 등 추가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일치하는 행방불명자 가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종결 처리한 것이다.

위 <표 3-4-2>에서 2번, 8번, 9번의 광산구 삼도동에서 발굴된 9기의 유해, 남구 주월동 공사현장 137기의 유해, 북구 효령동 3기의 유해에 대해서는 발굴 당시의 상세한 기록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2번 광산구 삼도동의 유해 9기에 대해서만 유전자 검사가 이루어졌으나 일치하는 행방불명자 가족이 없어 광주시립 영락공원에 안장한 후 종결되었다. 그 외 8번과 9번의 유해에 대해 유전자 검사가 실시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광주광역시의 암매장 제보 현장 발굴 선행조사에서는 첫째, 제보자 면담과 현장 조사 등의 선행조사 내용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없었고, ‘관련성 없음’ 판정 기준이 유전자 검사로 행방불명자 가족과 일치하지 않는 것 외에 추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둘째, 남구 주월동 공사 현장에서 발굴된 유해 137기와 북구 효령동 야산에서 발굴된 유해 3기의 경우 ‘관련성 없음’ 판정의 명확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

5) 53개소 암매장 제보 현장 중 25개소에 대한 조사

광주광역시와 5·18기념재단이 자체 관리해 오던 암매장 제보 내용 중 53건이 5·18조

사위 출범 이후 5·18조사위로 이관되었다. 5·18조사위는 이 제보 내용에 대해 자체적으로 선행조사를 했던 5·18기념재단에 용역을 의뢰하여 제보 내용의 타당성 조사 및 제보 현장의 지형지물의 변화 상태를 조사하였다. 즉 53개소 중에서 내용이 중복된 것과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현장들을 제외하고 선행조사 대상을 25개소로 정하여 용역수행자인 5·18기념재단과 5·18조사위가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유해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최종 판단한 3개소¹⁶⁸에 대해 지표조사 및 유해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광주교도소 건너편 야산(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에서 2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무연고 유해 1구를 발굴, 수습하여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였다. 아래의 <표 3-4-3>은 5·18조사위가 이관받은 53건 중 25개소에 대한 선행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3-4-3> 5·18조사위가 이관받은 53개소 제보 현장의 조사결과

연번	제보내용 (현장)	제보자	구분	선행조사 결과(5·18기념재단)	5·18조사위 판단
1	상무대 총훈탑	심○○	전문 (傳聞)	현장 확인하였으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당시 전교사 소속 사병 복수의 증언을 확보하였으나 시체의 처리 과정에 대한 추가조사는 불가능하였음
2	지원동 버스 종점	이○○	목격	지형지물의 변화로 확인 불가	동구청 직원들에 의해 5. 28. 수습된 시신들과 동일 한 내용으로 판단
3	상무대 독도법 교장 방향의 계곡	엄○○	매장	광주광역시에서 발굴한 현장 과 동일 추정	영락공원에 임시 매장된 해당 유해의 유전자 검사 실시하였 으나 5·18행불자 가족들의 유 전자와 일치하는 사례 없었음
4	주남마을 건너편 용산동 저수지 옆	허○○	전문	지형지물의 변화로 확인 불가	제보자의 증언 외에 추가 내용 확인할 수 없었음

168 3개소는 화순 너릿재 터널 부근(지원동 선교부락), 광주교도소 공동묘지 터, 광주교도소 건너편 야산 등이다.

연번	제보내용 (현장)	제보자	구분	선행조사 결과(5·18기념재단)	5·18조사위 판단
5	주남마을 뒤 저수지	심○○	기타	5.18 이후 이곳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하는 내용으로 같은 내용의 다른 증언과 제보가 있었음	위와 같음
6	망월동 금단마을 등	문○○	목격	광주시청에서 현장 조사 후 타당성 없는 것으로 종결	타당성 없는 것으로 판단
7	광주교도소 면회 앞 공터	장○○	전문	조성갑 등에 의해 수습된 사례와 동일한 사건으로 판단	용역결과 반영
8	광양읍 덕례리 공동묘지	이○○	목격	제보 현장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었음	제보자 증언 외에 추가된 내용 확인할 수 없었음
9	어등산 피탄지	김○○	실행	면담조사 결과 신빙성 결여	제보자 면담 및 당시 전교사 관계자 현장동행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
10	송암동 분노장	천○○	전언	제보 현장이 도로 확장 등에 의해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음	제보자, 1988년 국회청문회 당시 증언 외에 추가자료 및 진술 확인되지 않음
11	파주 용미리 공동묘지	김○○	목격	현장조사 실시하였으나 정확한 증거 확인하지 못하였음	용역결과 반영
12	광주비행장 대공초소 앞	김○○	목격	현장에 근무한 방위병 탐문조사 시도하였으나 결과 확인하지 못함	용역결과 반영
13	증심사 입구 현대아파트 공사장	김○○	전언	이미 아파트가 들어선 상황으로 지형이 완전히 바뀐 상태	당시 아파트건설사 관계자를 조사하였으나 토목공사 담당자 확인되지 않음
14	녹동부락 입구	기○○	목격	추가제보자와 현장동행조사 후 발굴조사 실시	용역수행기관과 현장발굴 공동 진행
15	상무대 포병학교	정○○	목격	시체를 실은 트럭이 기갑학교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제보이며 오인교전 군 사망자 수송차로 확인	위 1번의 제보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
16	광주교도소 뒷산	김○○	전언	제주양씨 문중선산 일원 발굴조사 실시	용역수행기관과 현장발굴 공동 진행
17	해남 백야리 군부대 인근	강○○	실행	해남군부대 일원과 예비군 훈련장 발굴조사 실시	용역수행기관과 현장발굴 공동 진행

연번	제보내용 (현장)	제보자	구분	선행조사 결과(5·18기념재단)	5·18조사위 판단
18	광주교도소 인근	신○○	실행	광주교도소 발굴 지점 동일	5·18조사위로 이관 (현장 발굴)
19	운림동 현대 아파트	서○○	목격	공사장 현장에서 유골 수습	유골을 수습했다는 건설사 직원 신원확인 불가능하였음
20	광주교도소	정○○	전언	광주교도소 발굴 지점 동일	용역결과 반영
21	국군광주통 합병원 소각장	허○○	기타	신빙성 약하다고 판단하여 종결	현장조사 및 현장 참고인 조사결과 가능성 없다고 판단 하여 조사결과보고서에 기재
22	전주 승화원 소각	고○○	전언	확인 불가	현장조사 및 현장 참고인 조사 결과 가능성 없다고 판단하여 조사결과보고서에 기재
23	전라북도 익산시	김○○	전언	탐문조사 결과 신빙성 없다고 판단	용역결과 반영
24	광주천변 제방	김○○	목격	현장동행조사 실시 후 현장의 지형변화가 확인됨에 따라 토 목공사 업체 및 관련 기관에 확인하였으나 공사 당시 무연 고 유해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	용역수행기관과 5·18조사위 가 공동으로 제보자와 현장동 행 조사 후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
25	두암동 꽃피 움질 뒤편 묘지	정○○	전언	5·18조사위와 공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시 전대 후문 의 개발과정에서 김해김씨 문 중선산의 방치된 유해를 이장 한 것으로 확인하였음	5·18조사위와 공동조사 후 타 당성 없는 것으로 판단

나. 계엄군 면담조사에 의한 암매장 지역 특정

5·18조사위는 암매장의 조사를 위해 민간인 집단학살 현장에 주둔하였던 제11공수여단과 제3공수여단, 제20사단, 61훈련단 11경비대대, 제31사단 해남대대 방위병, 그리고 전교사 수송부 병사 등 당시 계엄군 연인원 1,800여명의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조사 과정에서 암매장, 또는 가매장을 지시, 실행, 목격했다는 총 78명의 진술은 제3공수여단이 5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11공수여단 5명, 제20사단 3명, 61훈련단 11경비대 8명, 해남대대 방위병과 의무병 등 4명이었다.

제3공수여단의 경우 암매장을 직접 지시한 당시 윤○○ 정보참모와 김○○ 본부대장이였고, 실행한 당시 부사관들은 최○○, 홍○○ 등 9명이었다. 매장 현장을 목격한 병사 13명, 매장 사실을 전해 들은 부사관과 병사는 35명이었다. 제11공수여단의 경우 5월 23일 주남마을 미니버스 사건에서 사망한 민간인 시체를 사건 현장 바로 옆 보리밭에 매장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병사가 우○○, 김○○ 등 3명이었고, 채수길, 양민석을 현장에서 사살한 후 직접 매장하였다는 병사가 한○○, 김○○ 등 2명이었다. 61훈련단 11경비대대 방위병의 경우 직접 매장한 방위병 정○○, 최○○, 김○○ 등 3명이었고, 매장하고 돌아온 방위병들에게 들었다는 최○○ 등 5명이었다. 해남대대는 직접 매장을 실행한 방위병 천○○, 매장된 시체의 신원을 확인했다는 의무병 등 4명이었다.

제3공수여단이 전남대에서 민간인 사망자 시체를 암매장하였다는 진술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전남대 안에서 권총에 맞아 사망한 후 이학부 건물 뒤편 야산에 암매장¹⁶⁹되었다가 계엄군이 광주교도소로 이동해 간 후 시민들에게 수습되어 전남도청으로 옮겨진 이성귀 고등학생의 사건¹⁷⁰이다. 둘째, 당시 제3공수여단 최○○ 정보보좌관의 전남대 본부 뒤편 야산(지금은 도서관이 신축되어 있으며, 이 건물은 ‘홍도’라고 불리고 있음)에 7구를 매장하였다는 진술이다. 셋째, 당시 제3공수여단 대위였던 박○○의 전남대 정문 위쪽 야산에 민간인 시체를 매장했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5·18조사위는 이성귀 사망 및 암매장 사건은 그 사실관계가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사망 경위 및 시체의 이동 경위와 매장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하여 사망자 조사 과제로 이관

169 이성귀는 전남대이학부 건물 뒷산에 매장되었으며, 매장 당시 비닐에 싸서 매장하였다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5·18조사위가 수집하여 분석한 사진과 영상자료 중에 이성귀로 추정되는 사망자 시신이 비닐에 싸인 채 전남도청으로 이송되는 장면 내용이 일치하였고, 이성귀를 매장한 후 관련 사실을 기록하거나 행정기관 등에 통보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 매장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윤○○ 정보참모, 김○○ 본부대장 등이 1995 검찰 진술 내용 자체를 부인함에 따라 이 경우는 암매장으로 분류하였다.

170 이 사건 관련하여 사망자 이성귀는 3공수여단 본부대장이 쓴 권총에 맞아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조사를 하였으나 이 사실은 진술한 윤○○ 통신병 외에 달리 추가 증인이나 관련 사실을 입증할 만한 추가 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본부대장 본인의 부인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하였다. 최○○ 정보보좌관이 대학 본부 뒤편 야산에 매장했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도서관을 건축했던 건설회사와 전남대 행정실을 통해 무연고 유해가 있었는지를 조사하였다. 전남대 행정실에서는 당시 무연고 유해가 발견된 5구의 사진을 5·18조사위에 제출하였다. 발견된 유해 5구의 사진과 발굴 당시의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정보참모 보좌관의 매장 진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래의 사진은 전남대 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유해의 사진¹⁷¹들이다.

또한, 제3공수여단의 암매장, 또는 가매장 관련 진술 내용은 전남대에서 광주교도소로 이동하면서 함께 이송해 간 연행자들이 광주교도소에 도착했을 때 밀폐된 트럭 안에서 최루탄 등에 의해 질식사한 민간인들을 그날 밤에 암매장하였다는 진술이 가장 많았다. 김○○ 본부대장과 홍○○ 영선반장은 차출된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11~12구를 가마니에 싸서 매장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진술조사는 각각 개별적으로 조사를 한 후 이들이 함께 매장을 지시, 실행한 당사자라 판단하고 두 사람을 함께 대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추가 진술은 본인이 직접 가마니에 싸고 리어카로 옮겼다는 유○○¹⁷², 리어카로 옮기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다는 김○○¹⁷³의 진술 등이었다. 따라서 광주교도소 도착 시 질식사에 의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체들을 암매장한 사실은 같은 내용에 대한 최소 9명 이상의 복수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광주교도소 인근 국도와 고속도로에서 계엄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민간인 시체들을 교도소 안으로 옮겨와 가매장¹⁷⁴한 사실은 김○○, 유○○ 등 5명이었다. 그리고 최○○ 정보보좌관이 진술한 12명을 교도소 뒤편 공동묘지 부근에 직접 매장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171 5·18조사위, 「전남대학교 분묘 조사 결과보고」(2021.07.22), 조사2과





172 5·18조사위, 「참고인 유종경 진술조서」(2023.11.15.)

173 5·18조사위, 「참고인 김종원 진술조서」(2022.05.18.)

174 가매장으로 분류한 것은 1980. 5. 28.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법무부에 보고한 전연통신문에 가매장된 민간인 시체 8구에 대한 조고 및 광주시에 이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만한 추가 진술, 관련 기록 등은 확인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없었다. 함께 매장했을 다른 병사들의 이름을 기억해 내기 위해 육군 과학수사센터 법과학수사대의 협조를 받아 진술자를 범죄면조사¹⁷⁵를 추가 실시하였으나 이 과정에서도 함께 매장에 참여한 병사들의 이름이나 계급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표 3-4-4〉

<p>1호 분묘 - 유골의 보존 상태가 좋으며 석관묘 형태의 매장 방식임.</p>	
<p>2호 분묘 - 유골의 형태가 불량하나 안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음. - 관 주변에 다량의 석회를 도포하였음이 확인됨</p>	
<p>3호 분묘 - 석관 내부에 목관을 사용한 형태로 보이며 유골의 보존 상태가 양호함.</p>	
<p>4호 분묘 - 석관에 안장된 형태로 보이며 안장 상황이 확인됨.</p>	

175 5·18조사위, 「최명용 범죄면조사결과보고서」(2022.05.04.)

5호 분묘

- 유골의 훼손이 가장 심하나 안장 상황이 확인됨.



사진 및 보고서의 분석 결과 이 5구의 유해는 입관된 상태로 매장된 사실이 확인되고, 석회 등이 함께 발견됨에 따라 정상적으로 매장된 유해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박○○ 대위의 전남대 정문 위 야산 매장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및 추가진술 등의 조사를 하였으나 박○○ 대위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나 진술을 추가 확보할 수 없었다.

제11공수여단의 경우 주남마을 미니버스 사건 관련 사망자들과 미니버스 안에서 총격을 받아 중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중상자 2명을 주둔지로 데려갔다가 현장에서 사살한 후 매장한 사실에 대한 진술로 국한되었다. 5월 23일 11시경 매복하고 있던 계엄군에 의해 집중사격을 받아 버스 안에 있던 민간인이 최소 11명이 사망하였고, 이 시체들을 도로 옆 보리밭에 매장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제11공수여단 병사들은 모두 3명이었는데 이곳을 지나면서 도로 옆 하천가에 거적으로 덮여 있는 시체들을 목격했다는 동네 주민 등의 참고인 진술과는 차이가 있었다. 실제 보리밭에 매장을 실행한 당사자를 확인하기 위해 제11공수여단 장·사병들을 면담 조사하였으나 3명의 목격 내용을 뒷받침할 추가 진술은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5·18조사위는 미니버스 안에서 사망한 민간인들은 11명이며, 이 사망자들의 시신은 거적에 덮인 채 도로 옆 도랑에 방치되어 있다가 5월 27일 4구, 5월 28일 7구를 동구청 직원들이 수습한 것으로 최종 판단하였다. 다만, 보리밭에 매장했다는 3명의 계엄군 진술, 미니버스 안에서 17명이 사망했다는 기록과 현장에서 총격 받아 부상을 입고 유일하게 생존한 홍○○, 버스 위에 올라가 사망자 숫자를 확인했다는 제11공수여단 최○○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망자의 숫자는 17명일 가능성

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미니버스에서 충격받아 중상을 입은 채수길, 양민석은 제11공수여단 본부대가 주둔하고 있던 곳으로 이송되었으나, 현장 지휘관의 지시로 사살한 후 암매장했다고 진술한 한○○, 김○○ 등의 진술로 사살 및 암매장 경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이 두 사망자의 시신은 6월 2일 임○○ 등 주민의 신고로 조성갑에 의해 발굴되었으나 당시에는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고 신원미상으로 망월동 제3묘원에 매장되었다. 2002년 광주광역시가 실시한 행방불명자 소재찾기 사업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에 의해 신원이 확인되어 사망자로 분류되었다.

제20사단의 암매장 관련 진술 3명의 내용은 매장된 민간인 시체를 수습하여 어디론가 실어갔다는 것이었다. 5월 24일 제3공수여단과 임무를 교대하면서 광주교도소에 주둔했던 제20사단 영내에 있었던 병사¹⁷⁶들의 진술은 자신들이 광주교도소에 도착한 날 야간에 매장되어 있던 민간인 사망자 시체들을 목격했고, 다음 날 아침 광주교도소 옆 고속도로에서 트럭에 싣고 어디론가 갔다고 전해들었다고 한다. 이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제31사단과 전교사 수송부 병사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곳에서 시체를 옮겼다는 관련자의 추가 진술은 확인할 수 없었다.

제31사단 61훈련단 11병참선경비대대의 암매장 관련 진술 내용은 5·18민주화운동이 진압된 직후에 제31사단 근처에서 수습되어 조선대병원과 전남대병원에서 검사가 이루어진 사망자들의 시신¹⁷⁷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제31사단 해남대대 방위병들의 진술 내용은 사망자 박영천의 시체 실종 사건과 중복되거나 사망자 김귀현의 가매장 후 검사가 이루어진 정황과 중복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5·18조사위는 강○○ 당시 제2사단 휴가병의 진술과 천○○ 당시 방위병의 진술, 해남대대 의무병의 진술내용이 상이함에 따라 강○○ 제2사단 휴가병과 천○○ 방위병을 각각 현장 동행조사를 실시하여 자신들이

176 5·18조사위, 「참고인 이○○ 진술조서」(2023.11.29.), 「참고인 조○○ 진술조서」(2023.10.25.)

177 사망자 김상태, 강정배로 추정된다.

매장하였거나 매장된 시체의 신원을 확인하였던 현장을 특정하게 하고, 특정된 현장에 대해 유해발굴 조사를 실시하였다. 2명이 지목한 장소를 조사한 결과 3구의 무연고 유해가 발굴되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였으나, 5·18행불자 가족 유전자와 일치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계엄군 장·사병 방문 면담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3공수여단은 전남대와 광주교도소 일원에서, 제11공수여단은 주남마을 일원에서, 제31사단 해남대대는 해남군부대 일원에서, 61훈련단 11병참선경비대대는 광주변전소와 제31사단 일원에서 가매장과 암매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진술과 증언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제3공수여단이 전남대와 광주교도소에서 민간인 사망자 시체를 가장 많이 가매장 내지 암매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광주교도소의 경우 지시와 실행을 한 계엄군들이 조사관들과 함께 현장에 모여 집담회 형식의 조사를 병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 광주교도소에서는 특정한 장소와 매장 숫자 등의 중복을 감안해도 최소 25구의 민간인 시체를 매장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실제 5월 27일 이후 광주교도소 일원에서 발굴, 수습된 가(암)매장 민간인 시체는 총 11구였다. 아래의 <그림 3-4-2>는 진술 및 현장 동행조사에서 지목한 장소별 가매장, 또는 암매장한 숫자를 당시 항공사진 위에 표시한 것이다.

제1장

제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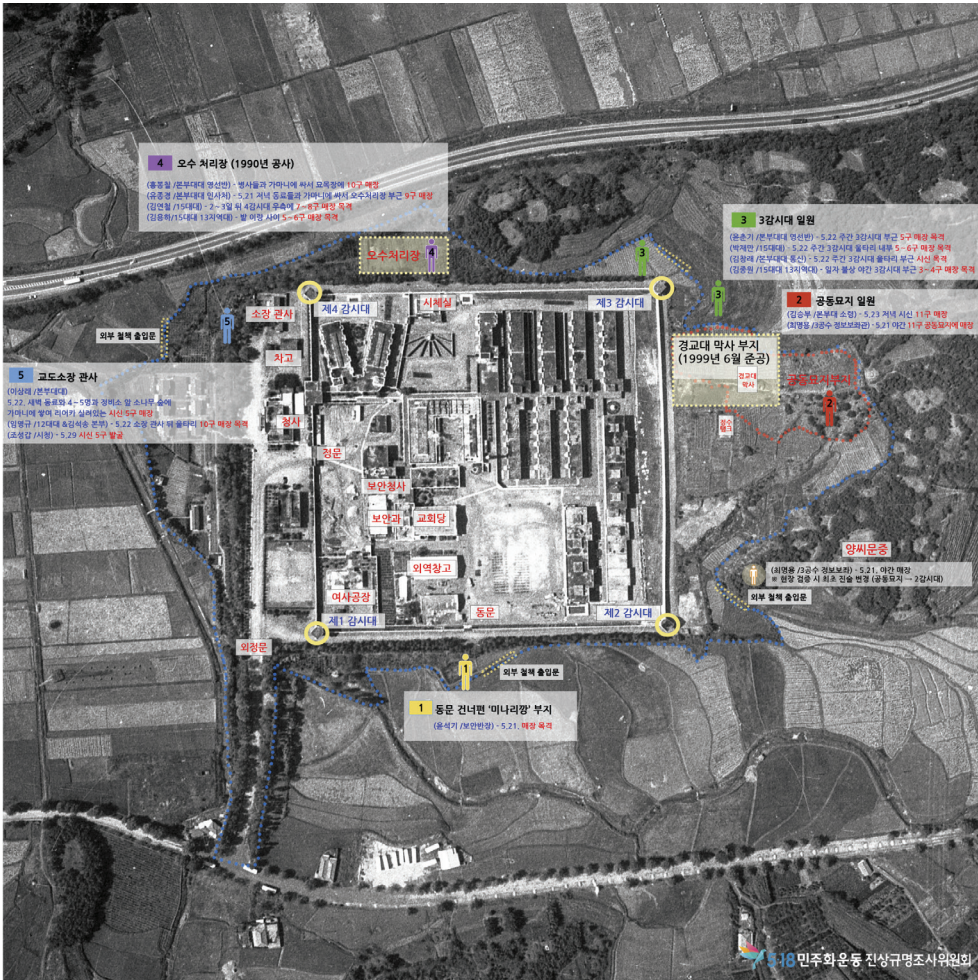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그림 3-4-2〉 계엄군 〈옛 광주교도소 가(암)매장〉 장소 및 숫자

다. 광주교도소 일원의 가(압)매장 제보현장 지표조사

〈표 3-4-5〉

관련 근거	장소	조사 내용
유○○, 김○○ 등 관련 진술 제3공수여단 같은 진술 5명 - 최소 9명 전남대에서 이송 과정에 질식사한 시체 내림 - 가마니로 시체를 말아서 고 속도로 인접 장소에 매장	- 광주교도소 오수처리장 부근 - 광주교도소장 관사 근처	- 진술자 개별 현장동행조사에 의한 매장 장소 특정 - 진술자 3명 현장동행 집담회 및 장소 특정을 위한 교차 확 인 및 토론 - 2021. 4. 10. 지표조사 및 발 굴 실시
이○○ 등의 관련 진술 - 5. 22. 관사 뒤쪽에 4구 매장	- 광주교도소장 관사 뒤편	- 조성갑에 의해 수습된 시체와 동일한 장소로 추정 - 2021. 3. 10. 지표조사
김○○, 박○○ 등 관련 진술 제3공수여단 같은 진술 8명 - 광주교도소 3~4 감시대 부 근에 5구 정도 매장	- 오수처리장 추정	- 위 사안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 - 2021. 3. 10. 지표조사
최명용 등 관련진술 제3공수여단 같은 진술 3명 - 광주교도소 뒤 공동묘지에 12구 정도 매장	- 광주교도소 뒤 공동묘지	- 솔로몬로파크 공사현장과 동일 한 장소 - 솔로몬로파크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유해 262기의 유전자 검사 실시 - 2021. 6. 23. 솔로몬로파크 공사현장 이외의 장소에 대한 지표조사 실시 - 2022. 10. 24. 광주교도소 바로 위쪽 제주양씨문중 야산 지표조사
김○○ 등의 진술 제3공수여단 같은 진술 2명 - 저격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시체 7~8구를 4감시대 부 근에 매장	- 광주교도소장 관사 위치와 동 일(광주교도소 4감시대)	- 위 조성갑이 수습한 장소와 동 일 사안으로 판단
김○○, 홍○○ 등의 진술 제3공수여단 같은 진술 3명	- 광주교도소 동문, 또는 오수 처리장	- 김○○의 최초 지목 장소는 동 문 쪽이었으나 홍○○ 영선만 장과 대질조사 시 오수처리장 으로 추정 - 2022. 11. 5. 광주교도소 동문 근처 주차장 부지 등 지 표조사

5·18조사위는 당시 광주에 투입되어 진압작전에 참가한 제3공수여단 장·사병 다수가 광주교도소 일원에 민간인 사망자 시체를 암매장했다는 진술을 하였고, 광주교도소 일원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¹⁷⁸ 정황 등에 기초하여 이곳에 대한 집중 조사를 진행하였다. 각 현장별 지표조사 및 발굴은 총 11회 실시하였고, 그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광주교도소 오수처리장 부근(3~4감시대 사이)

현장은 제3공수여단 소속 장·사병들 중에 가(암)매장에 관한 지시, 실행, 목격, 전언 등의 관련 진술이 가장 집중되었던 장소였으며, 5·18조사위는 2021년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이 장소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5·18조사위는 지표조사를 실시하기 전 광주교도소 측으로부터 1993년도에 시작된 광주교도소 오수처리장 신축공사 관련 설계도 등 일체의 기록을 제공받아 검토하였고, 건설 감리 및 토목공사업체에 대한 탐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수처리장 공사 과정에서는 무연고 유해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표조사는 표층을 덮은 시멘트 콘크리트를 제거한 후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시작하였다. 표층을 걷어냄과 동시에 건축폐기물이 매장되어 있었다. 생토질이 확인되는 표층으로부터 7m까지 장비를 동원하여 걷어내는 지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7m에 이르는 모든 지층이 건축폐기물과 생활 쓰레기로 매립되어 있어 매장의 흔적을 비롯한 지질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대해 광주교도소 측에 건축폐기물 매립과정을 확인하였으나 관련 기록이나 매립 사실 등에 대해 알고 있는 관계자는 물론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다.

178 이 사건은 5·18조사위의 직권사건 사건번호 직가의 4-3,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민간인집단학살 사건」의 조사 결과 보고서에 상술하였다.

따라서 광주교도소 오수처리장 일원은 매장의 흔적과 지질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어 계엄군들의 진술과 증언에도 불구하고 유해의 발굴은 물론, 매장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아래는 5·18조사위의 지표조사 과정을 촬영한 사진들이다.

2) 광주교도소장 관사 부근



〈그림 3-4-3〉

지목된 이 가(암)매장 제보 현장은 위 ①번 다음으로 많은 계엄군들이 지목한 장소이며, 1980년 5월 27일 광주시청 조성갑이 광주지방검찰청의 전화통지문을 받고 현장에서 유해 5구를 수습해 간 장소와 동일한 곳으로 판단된다.

이 장소에 대해서는 조성갑이 수습한 5구와 계엄군들의 진술에서 매장한 숫자가 달라 지표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위 ①번에 이어 같은 기간에 지표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현장 역시 건축폐기물과 1990년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시기의 광주교도소 내 생활 쓰레기가 함께 매립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장소에서도 매장의 흔적과 지질의 변화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림 3-4-4〉

3) 광주교도소 본관 화단과 교도소 주차장 일원

이 현장은 이○○ 당시 취사병의 진술 등에 의해 지목된 장소이며, 이곳 역시 앞의 장소들처럼 일반쓰레기로 매립되어 있는 상태였다. 더구나 이곳에서는 전기, 통신 등의 케이블 매립 공사가 이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질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5·18조사위는 이 장소의 공사 상황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광주교도소 공사 관련 기록 및 자료에는 관련 내용이 없었다.

4) 광주교도소 동문 앞 주차장과 하천 일원



〈그림 3-4-5〉

이 장소는 최초 김○○ 본부대장이 지목한 장소였으나 이후 홍○○ 당시 제3공수여단 영선반장과 대질조사 과정에서 장소를 변경하였다. 5·18조사위는 이 장소에 대한 제3공수여단 보안요원의 증언이 있어 2021년 6월 23일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장소도 생활쓰레기와 건축폐기물들로 매립되어 있었고, 지표면으로부터 7m 이상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장소 역시 매장의 흔적을 비롯한 가(암)매장 관련 정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림 3-4-6〉



〈그림 3-4-7〉

5) 광주교도소 2-3감시대 사이

이 현장은 광주교도소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쓰레기 적치장으로 사용하다가 테니스장을 조성했던 곳으로 제3공수여단 사병들이 지목했던 곳이었다. 이 현장은 2020년 2월 5·18기념재단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대상 지역은 그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으로 한정하여 실시하였다.

5·18조사위는 2022년 10월 24일 지표조사 결과 1980년 당시 지표면으로부터 약 2m 정도의 성토가 있었음을 확인하여, 현장의 성토를 먼저 분석한 후 본격적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5·18조사위는 성토를 제거한 후 원래의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3~5m를 굴착하여 조사하였으나 교도소경비대원들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침낭, 매트리스 등의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었고, 하수관거 등의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현장에서도 암매장된 유해나 유류품 확인은 물론, 암매장 등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지질과 지형이 변형되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6) 광주교도소 2감시대 뒤편 나대지

이 현장은 광주교도소에서 정확한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돼지 등을 키웠던 축사로 사용하다가 쓰레기 적치장을 테니스장으로 조성하면서 이곳을 쓰레기 적치장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이 현장은 제3공수여단의 증언과 진술에서 확인되거나 지목된 장소는 아니었으나, 위 테니스장 발굴조사를 하면서 포크레인 장비 한 대를 더 투입하여 동시에 지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현장 역시 생활쓰레기와 건축폐기물 등이 적치되어 있었고, 원래의 지표면을 확인한 결과 매장을 위한 굴토 등의 지질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현장에서도 5·18 관련 암매장 등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림 3-4-8〉

7) 광주교도소 동문 맞은편 주차장 부지



〈그림 3-4-9〉

이 현장은 제3공수여단 보안대 요원이 1980년 5월 22일 오전 중 현장에서 매장 흔적을 확인했다는 진술과 함께 현장 동행조사를 통해 지목한 장소였다. 당시 이곳에 미나리 땅이 있었고, 그곳에 가(암)매장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제3공수여단 사병들 복수의 증언이 있었던 현장이다. 5·18조사위는 제3공수여단 13대대 병력이 이 일대에 참호를 파고 경계근무를 했던 곳으로, 참호 부근에 매장했다는 진술에 기초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2022년 10월 27일 지표조사를 실시한 이 현장은 1990년대 초 동문으로 드나드는 트럭 등의 차량 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교도소 주벽의 순찰로를 넓히면서 주차장으로 조성한 곳이다. 5·18조사위는 주차장을 조성할 당시 두께 4m 정도로 생활쓰레기를 매립하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적치물을 제거한 후 생토가 확인되는 지점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조사 3일째에 보안요원이 지목한 장소로 추정되는 현장에서 1400×700mm 크기의 직사각형 흔적이 확인되었고, 이 현장에서 용처 불명의 철제유류품과 우표 크기 정도의 천 조각이 발견되어 해당 장소에 대해 경계라인을 설치하여 보존하면서 다른 지역의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5·18조사위는 타설된 콘크리트와 매립된 연탄재와 생활쓰레기 등의 적치물을 제거한 후 생토를 확인한 결과, 빨색의 토질이 확인되었으나 대상 면적 전체에서 매장 등의 흔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

발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직사각형의 흔적에 대해서는 매장물이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고, 암매장과 연결될 만한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암매장과 관련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현장을 원형대로 복구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현장 역시 암매장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8) 광주교도소 뒤편 제주양씨 문중 선영



〈그림 3-4-10〉

이 현장은 제3공수여단 최○○ 정보보좌관이 현장 동행조사 당시 처음 지목한 곳이며, 광주교도소 바로 뒤편에 자리 잡고 있어 암매장 추정지로 지목된 장소였다.

2022년 10월 24일 실시한 지표조사는 현장 봉분의 형태로 보이는 대상지 16개소를 특정한 후, 이 장소를 먼저 발굴하여 정상적인 매장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외의 발굴대상지 전체 면적을 발굴하여 비정상적으로 매장된 유해가 있는지 확인하는 2단계로 조사하였다.

먼저 발굴대상지 내 16개의 봉분을 확인한 결과 16개소 모두 매장 흔적은 있으나 대부분 토괴(土塊)되어 있었고, 5개소에서 유해를 확인하였다. 유해가 확인된 5개의 봉분에서는 석관과 목관의 흔적이 함께 확인되었고, 토양에 석회질 등 매장 시 사용하는 토질이 함께 발견되었다. 현장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 분석 회의를 실시한 결과 정상적인 매장에 해당하며, 다른 유류품이나 옷가지 등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5·18과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하였다.

5·18조사위는 이어 발굴 대상 지역의 봉분과 봉분 사이 면적 전체에 대한 2단계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봉분으로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매장 후 유해를 수습한 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지질의 변화 등도 정밀하게 조사하였으나, 생토가 드러나는 지점까지 토질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대상지는 5·18 당시 사망자의 시체를 암매장한 장소가 아니었음을 최종 확인하고, 발굴한 16개의 봉분은

제주양씨 문중 관계자의 입회하에 유해가 발견된 5개소를 재매장하였고, 현장을 원상복구 한 후 조사를 종료하였다.

9) 광주교도소 정문 맞은편 야산(북구 각화동 산31-10)



〈그림 3-4-11〉

이 현장은 5·18조사위가 계엄군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제3공수여단 병력이 참호를 구축하고 광주교도소 외곽 경계를 하던 곳이며, 당시 경계병력을 지휘했던 지역 대장 신○○, 중대장 박○○, 류○○ 등 3명의 계엄군이 민간인 사망자 시체를 암매장했다고 지목한 장소였다.

1980년 5월 당시에는 광주교도소를 내려다볼 수 있는 야트막한 야산이었으나 그 이후 개간하여 농작물을 경작해 온 밭이었으며, 이 현장은 2022년 11월 5일 시작하여 약 2,014㎡의 면적 전체를 발굴조사하였다.

5·18조사위는 발굴조사의 보안 및 외부인의 차단을 위해 현장 외부에 가림막을 설치한 후, 이 현장의 면적이 넓고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조사 기간을 길게 잡고 7일간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발굴조사에 착수하기 전 지역주민과 농작물 경작자들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18 이후에 그런 소문이 있었다는 내용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5·18조사위는 농작물 경작자들에 대한 농작물 훼손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 주상복합 건물 공사 시공사와 협의 등을 거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지작업을 선행한 후 발굴조사에 착수하였다.

발굴조사 5일 차 13시 30분경 지표에서 약 1.5m 깊이에서 매장 흔적이 확인되어 발굴 장비를 정지시킨 후 수작업으로 정밀 발굴에 착수하여 유해 1구를 발굴하였다. 발굴된 유해의 매장 위치와 형태를 그대로 보존한 후 다음 날 충북대 박선주 교수에게 육안감식을 의뢰하여 20대 여성, 매장은 40년 전후로 추정된다는 현장 감정 결과를 확인한 후,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대퇴부 골편을 채취하고 유해를 수습하여 곡성 청계원에 유전자 검사 결과 및 신원확인 시까지 임시안치하였다. 현장에서 발굴, 수습된 유해의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본 보고서가 작성되는 이 시점까지 5·18행불자 가족들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림 3-4-12〉



〈그림 3-4-13〉

라. 제31사단 해남대대 인근 유해발굴

제31사단 예하 해남대대는 해남지역으로 들어오는 외부의 시위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남 우슬재와 북평삼거리 등에서 차단작전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일부

가 도로를 차단하고 있는 계엄군(당시 해남지역의 경우 대부분 방위병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됨)의 발포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들은 주로 광주에서 출발하여 나주, 영암 등을 거쳐 해남과 완도 등으로 향했던 시위대들이었고, 이 중에서 본 보고서가 작성될 현재의 시점까지 김귀환과 박영천 등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제31사단에 복무 중이었던 방위병 천○○ 등과 의무병 등의 진술에 따르면, 사망자는 두 사람이 아니라 최소 3명에서 최대 6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 중에서 시체의 이동 및 검사와 매장 과정이 모두 확인된 경우는 사망자 김귀환이며, 박영천은 검사는 이루어졌으나 가족이 제대로 인수하지 못해 시신이 실종된 상태이며, 그 외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들의 유해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물론 추정 사망자들은 검시 과정에서 관을 열었던 강○○ 당시 제2사단 소속 휴가병의 진술, 대대 영내에서 외부로 옮겨서 매장하였다는 천○○ 방위병 등의 진술만 있을 뿐 관련 기록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5·18조사위가 해남 군부대 일원에서 암매장 제보 현장의 유해발굴 조사를 총 2차례 실시한 결과, 모두 5기¹⁷⁹의 무연고 유해를 발굴하였고, 유해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였으나 본 보고서가 작성되는 현재의 시점까지 행방불명자 가족들의 유전자와 일치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림 3-4-14〉

179 1차 발굴하였던 2기의 유해는 이후 추가조사 과정에서 해남대대가 일반인의 봉분을 관리해 왔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5·18조사위가 발굴한 암매장 제보 현장의 무연고 유해의 통계에서는 제외하였다.



〈그림 3-4-15〉

마. 영암군 학산면 공설묘지 유해발굴

영암군 학산면 공설묘지는 윤영관(제보 현장 도로공사 업체 관계자)의 제보로 현장조사 및 제보자 현장 동행조사를 통해 장소를 특정한 후 유해의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5·18조사위가 총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유해발굴 조사에서 6구의 무연고 유해를 발굴하였으나, 이 유해 중 3구만 유전자 채취가 가능하였고, 나머지 유해는 부패의 정도가 심하여 유전자 채취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5·18조사위는 제보자 윤영관이 1995년에 영암군 학산면 소재 공설묘지 인근에 조성 중인 유원지 개발과정에서 도로부지를 조성하다가 무연고 유해를 발견하였고, 발견 당시 유해의 두개골에 총구멍으로 의심되는 것이 있었고, 청바지 등이 함께 확인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유해는 5·18 당시 민간인 사망자가 암매장된 것으로 생각하여 바로 옆에 위치한 공설묘지에 작은 봉분을 만들어 안장시켰다는 진술을 토대로 발굴조사에 착수하였다. 제보자 윤영관이 지목한 장소 2곳에서 2기와 3기의 무연고 유해가 발굴되었다. 유해가 발굴되자 충북대 문화인류학 박선주 교수에게 현장감식을 의뢰한 결과 두개골에 총구멍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였으나 5·18행불자 가족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림 3-4-16〉

바. 화순 너릿재 터널 인근 지표조사

이 현장은 제보자 김○○씨가 1981년 추석 무렵 산마를 채취하다가 잿빛 옷과 농구화 등과 함께 육탈이 안 된 시체를 발견하였고, 시체를 흙으로 다시 덮고 난 후 주변을 살펴보니 9~11개의 비슷한 형태의 매장 흔적을 확인하였다는 제보에 따라 5·18기념재단과 공동으로 2022년 12월 23일 발굴조사를 실시한 곳이다.

발굴조사에 착수하기 전 인근 주민들의 탐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내용이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제보자와 현장 동행조사 시 기억이 비교적 뚜렷하다는 점에서 제보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발굴조사 대상에 포함하게 되었다.

2017년 11월 14일 5·18기념재단이 이 현장 인근 주차장을 발굴조사 한 바 있으나 동일한 장소가 아님을 확인한 후 발굴조사에 착수하였고, 약 107㎡의 면적을 지표조사하였으나 암매장 흔적과 기타 유류품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 제31사단 영내 및 유격장 지표조사

제31사단 영내에 있었던 61훈련단 11병참선경비대대는 1980년 5월 23일 전교사의 작전 지시로 광주변전소 확보작전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동운동 주민들과 야간에 변전소를 지나가는 민간인을 사살하였고, 사살된 김상태, 강정배 등을 가매장¹⁸⁰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180 김상태, 강정배의 시신은 31사단에 의해 발굴되어 정상적으로 검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가매

5·18조사위는 당시 11병참선경비대대 소속 방위병들이 이 작전에 투입되었고, 이들 중에 사살된 민간인 시체를 자신이 직접 매장하였거나 사망한 시체를 수습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5·18조사위는 진술인과 현장 동행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을 특정한 후 제31사단의 협조를 받아 2023년 12월 18일부터 4일간 현장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곳에서도 1985년에 매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량의 쓰레기와 서류 등이 적치되어 있어 매장 이후에 현장의 지형이 바뀌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31사단 유격장은 당시 제31사단 수송부 병사, 헌병대 소속 병사들의 4명의 일치된 진술을 토대로, 제31사단에 들어온 민간인 시체 최소 8구를 삼각산 유격장으로 옮겼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대해 민간인 시체를 트럭에 싣고 유격장으로 옮겼다고 제보했던 이○○ 당시 수송부 부사관을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세 차례 출석요구 및 자택방문 조사를 시도했음에도 끝내 거부하여 제보 내용에 대한 진술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제31사단 헌병대 소속 최○○ 일병은 부사관의 지시로 5월 25일경 트럭에 싣려 영내로 들어온 시체를 직접 확인하였고, 현장에 있던 대위가 삼각산으로 보내라고 지시하여 유격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유격장의 매장흔을 조사하여 매장흔이 확인된 장소를 특정한 후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유격장에서도 매장흔이 확인된 장소에서는 아래의 사진과 같이 기왓장 등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이한 점은 유격장의 다른 곳에서는 쓰레기 등이 매립되지 않았는데, 유해가 매장되었을 것으로 추정한 장소에서만 아래의 사진과 같이 기왓장 등의 매립물이 확인되었다. 당시 매장 문화에서는 석관을 대신하여 기왓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장 전문가에게 이런 유형일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 현장 사진으로 보이는 이런 경우는 석관을 대신한 매장용 기왓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자문 의견을 확인하였다. 31사단 영내 가(암)매장

.....
 장으로 분류하였다.

제보 현장과 유격장 제보 현장 역시 지표조사 결과 지표면으로부터 4m 정도를 조사하였으나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어 이후 지형이 변화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가(암)매장 흔적이거나 유류품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림 3-4-17〉

위 사진은 당시 11병참선경비대대 소속 방위병이었고, 소대장의 지시로 4명의 동료 방위병들과 함께 직접 1구의 시체를 매장한 정〇〇가 현장에서 장소를 확인·지목하고 있는 현장 동행조사의 모습이다. 아래의 사진은 제31사단 영내 지표조사 당시 현장을 촬영한 채증 사진기록과 유격장 지표조사 현장을 촬영한 채증 사진기록들이다.



〈그림 3-4-18〉



〈그림 3-4-19〉

아. 민간인 시체 소각설 조사

1) 국군광주통합병원 보일러실 민간인 시체 소각설의 사실 여부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지역 보안부대에 근무했던 허장환¹⁸¹과 미(美) 육군정보보안 사령부(INSCOM) 제501군사정보여단(MIS) 524대대 광주파견대에 근무했던 김용장¹⁸²은 “민간인 사망자 시체를 국군광주통합병원 보일러실에서 비밀리에 소각했다”며 민간인 사망자의 시체 소각설을 주장¹⁸³하면서 특별기자회견 등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허장환은 2019년 5월 13일 김용장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은 계획된 시나리오였다’라고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공수부대에서 가매장한 위치를 좌표로 표시해서 보안사에 면밀하게 보고했고, 보안사에서도 간첩이 있는지 가려내기 위해 시체를 전부 발굴하여 지문채취 후에 통합병원에서 화장하였다. 통합병원에는 굴뚝이 하나 있는데 사이즈나 높이가 통합병원 보일러로 쓸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한다. 5월 하순이면 주민들이 장독을 다 열어놓는 시기인데 끄으림[그을음]이 내려와 장독 뚜껑을 못 열었다”고 하면서 국군광주통합병원 보일러실에서의 시체 소각설을 제기하였다. 또한 함께 기자회견을 한 김용장 역시 “5·18 당시 소각한 시신의 숫자는 통합병원 보일러에 사용한 연료가 병커시유¹⁸⁴였기에 시체 2구를 넣고 소각하면 하루에 20구씩 10일이면 200구 정도를 소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증거는 없다. 그렇게만 계산을 해도 숫자가 터무니없이

181 허장환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지역 505보안부대 대공과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였고, 전남지역 합동수사단 특명반에서 특명반장으로 활동하였다고 주장하였다.

182 김용장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제1전투비행단내에 주둔하고 있었던 미(美) 501정보여단 광주파견대에서 통역(정보)요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운용하는 정보원들로부터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했다고 주장하였다.

183 허장환은 2018. 6. 4. 5·18기념재단과의 인터뷰 시 “광주통합병원에는 화장시설이 있었고, 통합병원에서 죽은 시신은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다”며 시체 소각설을 주장하였고, 2019. 5. 13.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용장 등과 함께 특별기자회견 시에도 “가매장한 시신들을 재발굴하여 일부는 광주통합병원에서 소각을 했고, 통합병원에는 굴뚝이 하나 있는데 사이즈나 높이가 보일러로 쓸 수 있는 용량이 초과되고, 보일러실을 개조하여 화장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주장하였다.

184 점착성이 강하고 탄수분이 많은 중유의 하나로 주로 대형 내연 기관이나 보일러 따위의 연료로 쓴다.

적어 어디론가 다른 지역으로 수송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국군광주통합병원에서의 시체 소각설을 주장하였다.



기자회견 하는 허장환 전 보안사 특명부장
(서울=연합뉴스 김연철 기자 = 허장환 전 보안사 특명부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은 계획된 시나리오였다 특별기자회견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2019.5.13 ykjoal@yna.co.kr

5·18 증언 문답...“광주통합병원서 희생자시신 200구 소각 추측”



〈그림 3-4-20〉

5·18조사위는 위 두 사람이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국군광주통합병원 보일러실에서 보일러 담당으로 근무했던 김○○, 당시 보일러실과 목공소와 세탁소 등의 시설을 관리했던 손○○ 등을 조사하는 한편, 이들과 국군광주통합병원 보일러실 등의 현장 동행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김○○은 조사관으로부터“당시 광주통합병원 보일러실에서 시체를 소각했다는 증언들이 있는데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보일러를 이용한 시체 소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일러 버너가 손바닥 정도인데 그곳에 어떻게 시체를 넣고 소각을 할 수 있겠느냐. 시체를 넣는다고 해도 그곳에 병커시유를 넣고 태우면 5톤짜리 보일러에 압력이 가해져 폭발할 텐데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과 3자대면을 해서 내가 잘못 본 것이면 내 눈을 빼고 그 사람들이 잘못 본 것이면 그 사람들 눈을 빼자”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보일러실 옆 소각장에서 시체를 소각했다는 주장에 대해“보일러실 주변에는 화재 위

힘으로 소각장이 있을 수 없었고 보일러실과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쓰레기소각장이 있었지만, 5·18 이전부터 주민들 민원 때문에 쓰레기를 소각하지 않고 묶어서 쌓아놓으면 청소차가 들어와 가져갔으며, 보일러실에도 시체를 쌓아둘 만한 공간은 없었다”고 진술¹⁸⁵하였다.

또한 손○○은 국군광주통합병원 보일러실에서 민간인 시체를 소각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보일러의 버너가 손바닥 정도의 크기인데 그곳에 어떻게 시체를 넣고 소각할 수 있겠느냐.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하면서 국군광주통합병원에서의 시체 소각설을 부정하였다.¹⁸⁶ 이 외에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505보안대 대공과에 근무했던 김○○, 같은 부대원 박○○ 등도 그곳에서 시체를 소각했다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제기했던 김용장은 면담조사에서 병원 소각장에서 시체를 소각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느냐는 질문에 5·18조사위 조사관이 현장 사진을 보여주면서 현장 관리자가 3자대면을 원한다고 하자, “나는 정보원의 첩보를 추가 확인 없이 상부에 그대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 사람 말이 맞을 것이다”¹⁸⁷라고 진술하면서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사실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취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허장환과 김용장, 그리고 1988년 국회 청문회 당시 지역주민 일부에 의해 제기된 국군광주통합병원 보일러실 민간인 사망자 시체 소각설은 그 근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주장을 제기한 당사자 역시 사실을 입증하거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185 5·18조사위, 「참고인 김○○ 진술요지서(5·18민주화운동 당시 국군광주통합병원 보일러실 담당 직원)」(2023.01.16.)

186 5·18조사위, 「참고인 손○○ 진술조서(5·18민주화운동 당시 국군광주통합병원 시설관리 책임자)」(2023.05.11.)

187 5·18조사위, 「참고인 김용장 진술조서(미국 501보안요원)」(2023.05.17.)

2) 전주승화원 시체 소각설과 광주 일곡화장장 시체 소각설

전주승화원 화장장 소각설을 조사한 결과 5·18민주화운동 당시 진압작전에 투입되었다가 사망한 계엄군 시체 2구를 소각한 사실이 와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전주승화원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모두 사망하여 조사할 수 없었으나, 인터넷 신문기자 고○○가 2018년 1월 3일자 ‘민플러스’에 “당시 보안사 등이 광주지역에서 군에 의해 살해된 민간인을 전북 전주에 있는 화장장인 승화원에서 비밀리에 화장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이는 당시 보안사 차량을 운전했던 한 남성이 주변에 당시 시신을 차량에 싣고 전주까지 운반해 화장장에서 소각했는데 정말 끔찍했다고 언급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고 게재하였다.



〈그림 3-4-21〉 5·18 당시 행불자 소각 관련 보도자료

이와 관련하여 5·18조사위는 1981년부터 전주승화원에서 기능직으로 재직한 참고인 변○○ 면담 조사, 그리고 인터넷 기사를 게재한 고○○ 기자 전화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참고인 변○○은 당시 전주승화원의 운영체계 등을 언급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전혀 들어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¹⁸⁸, 고○○ 기자 역시 두세 사람을 거쳐 전해 들은 이야기였고, 이 사실을 추적하려고 했으나 더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친구의 누나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게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5·18조사위는 국방부에서 발행한 「제20-24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자료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5월 24일 광주톨게이트에서 발생한 계엄군 간 오인교전으로 사망한 제31사단 소속 최필양 이병과 강용래 상병의 시체가 전주승화원에서 화장된 기록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전주승화원 시체 소각설은 위 두 병사의 화장 사실이 와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시립 일곡화장장 소각설과 관련해서는 1980년 5월 28일 상무관에서 검시를 마친 민간인 사망자 시체 3구가 가족의 동의 및 입회하에 화장되었고, 5·18민주화운동 당시인 5월 24일 광주톨게이트 계엄군 오인교전으로 사망한 제31사단 소속 계엄군 1명의 시체를 화장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주장 역시 3명의 민간인 사망자와 1명의 계엄군 화장 사실이 와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88 5·18조사위, 「참고인 변○○ 진술조서(1981년 이후 전주승화원 시설관리자)」(2022.05.19.)

자. 암매장 제보 현장 유해의 유전자 검사

1) 2020년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전자검사 보고서 요약

[검사시료 : 유해시료 5건]

〈표 3-4-6〉

검체번호	국립5·18민주묘지 희생자	비고
5·18조사위 시료번호 518HR-20-001	무명열사 묘지번호 4-90	망월동 묘지번호 A47
5·18조사위 시료번호 518HR-20-002	무명열사 묘지번호 4-92	망월동 묘지번호 A101
5·18조사위 시료번호 518HR-20-003	무명열사 묘지번호 4-93	망월동 묘지번호 A105
5·18조사위 시료번호 518HR-20-004	무명열사 묘지번호 4-96	망월동 묘지번호 A112
5·18조사위 시료번호 518HR-20-005	무명열사 묘지번호 4-97	망월동 묘지번호 A123

유해시료 5건 중 3건(시료번호 518HR-20-001, 518HR-20-002, 518HR-20-004)에서 A-STR, Y-STR, mt-DNA¹⁸⁹의 모든 유전자형이 검출되었고, 2건(시료번호 518HR-20-003, 518HR-20-005)의 유해시료에서는 일부분의 유전자형만 검출되었다. SNP¹⁹⁰에서는 모든 유해시료에서 190개 이상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

A-STR은 24개의 마커¹⁹¹를 분석하였으며 518HR-20-001, 518HR-20-002, 518HR-20-004의 시료에서는 24개 마커 모두 검출되었고, 518HR-20-003의 시료에서는 18개, 518HR-20-005의 시료에서는 8개 마커가 각각 검출되었다. Y-STR은 23개의 마커를 분석하였으며, 518HR-20-001, 518HR-20-002, 518HR-20-004의 시

189 STR(Short Tandem Repeat, 짧은 연쇄 반복 염기서열 검사) A-STR(상염색체 STR: Autosoma-Short Tandem Repeat) : 부모와 자녀의 상염색체 STR의 유전자형을 분석하여 동일한 대립 유전자형을 공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가족관계 확인 가능 Y-STR(Y염색체 STR: Y-chromosome Short Tandem Repeat) : 남성에서 유전되는 Y염색체를 이용하여 동일부계나 부자관계 확인 mtDNA(미토콘드리아 DNA: mitochondria-Deoxyribonucleic acid) : 세포핵 외부 세포질에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하여 동일모계나 모자관계를 확인

190 SNP(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단일 염기 다형성 검사)

191 마커(marker, 유전자 좌위, 유전자 위치)

료에서는 23개 마커 모두 검출되었고, 518HR-20-003의 시료에서는 11개, 518HR-20-005의 시료에서는 3개 마커가 각각 검출되었다. 미토콘드리아 변이부위인 HV1, HV2 및 HV3를 검사하였으며, mt-DNA 검사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4-7〉

검체번호		분석 가능 마커 수	분석되지 않은 마커 수	총 마커 수
518HR-20-001(A47)	1	233	74	307
	2	228	79	
518HR-20-002(A101)	1	227	80	
	2	221	86	
518HR-20-003(A105)	1	227	80	
	2	220	87	
518HR-20-004(A112)	1	233	74	
	2	218	89	
518HR-20-005(A123)	1	190	117	
	2	205	102	

유해시료 5건과 기분석 후 보관 중인 유가족 DNA(260여 명)의 비교분석 결과, 매칭되는 결과는 없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3-4-8〉

실험방법	비교분석 결과
A-STR 검사	• 전체 유가족을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 유전관계가 인정되는 가족 없음(행방불명자의 형제나 자매 및 남매가 1인인 경우에는 mtDNA, Y-STR 등으로 배제함)
Y-STR 검사	• Y-STR에 의한 부계 유전관계가 인정되는 가족 없음(1~3차 유가족 Y-STR과 A-STR 유전자형을 비교하여 가족관계 배제됨)
mtDNA 검사	• mtDNA에 의한 모계 유전관계가 인정되는 가족 없음(1개의 염기가 다른 경우에는 돌연변이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Y-STR 및 A-STR 유전자형과 비교하였으며 가족관계가 배제됨)

2) 2021년 5·18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 유가족’ 유전자검사 보고서 요약

[검사시료 : 유가족시료 총 377건(시료번호 518FRS-01-001 ~ 518FRS-21-017)]

〈표 3-4-9〉

	검체번호	수량	비고
1	518FRS-01-001 ~ 518FRS-01-220	220건	2001년 유전자 검사결과는 유전자 좌위가 13~15개로, 2021년 당시의 유전자 좌위 21개와는 차이가 있어 재검사 실시
2	518FRS-02-001 ~ 518FRS-02-038	38건	
3	518FRS-04-001 ~ 518FRS-04-020	20건	
4	518FRS-09-001 ~ 518FRS-09-013	13건	
5	518FRS-18-001 ~ 518FRS-18-036	36건	
6	518FRS-20-001 ~ 518FRS-20-033	33건	
7	518FRS-21-001 ~ 518FRS-21-017	17건	
	합	377건	

A-STR은 Profiler Plus kit를 사용해 2001년 검사에서는 13개 마커, 2002년 검사에서는 15개 마커, PowerPlex Fusion System을 사용해 2020년 검사에서는 22개 마커, VeriFiler™ Plus PCR amplification kit을 이용하여 2021년에는 25개 마커로 증폭하였다.

Y-STR은 Silver Nitrate을 사용해 2001년 3개 마커, 2002년 16개 마커, PowerPlex Y23 System을 사용해 2020년 22개 마커, Yfiler Plus를 사용해 2021년에는 25개의 마커로 증폭하였다.

SNP검사는 AccuID V2 chip을 사용하여 303개 마커를 대상으로 유해시료와 유가족시

료의 유전자 검사를 각각 2회씩 반복·비교하였다. 검사한 303개의 마커 중, 유가족시료 377건의 평균 마커가 180~268개 검출되었다.

유가족 시료 377건의 SNP검사 결과를 2020년 5·18민주묘지에 묻혀있던 신원 미확인 유해 5구의 검사 결과와 비교하였으며, 유해·유가족 간의 부자관계, 형제·자매관계 또는 이복형제·자매관계로 매칭되는 유의미한 가족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

Y-STR검사에서 23개의 마커 중, 21개의 마커는 동일한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2개의 마커는 불일치하였다. 불일치한 마커 2개는 대립유전자 차이가 1반복이라는 사실에서 돌연변이일 가능성¹⁹²이 높았지만, 명확한 동일부계(同一父系) 여부의 판단은 유보하였다. 5·18조사위 시료번호 518HR-20-001(국립 5·18묘지 무명열사 4-90)은 평균 230개의 마커가 검출되었고 유가족시료 518FRS-21-005(행불불인정자 신동남의 이복동생 신동수)는 평균 238개의 마커가 검출되었다. 검출된 마커 중 시료번호 518HR-20-001과 518FRS-21-005는 평균 186개 마커의 대립유전자를 서로 공유하였다. 이로부터 산출된 해당 유해-유가족의 이복형제의 평균 친족관계 지수값은 $4.71E+06$ 이었고, 이로부터 산출된 이복형제 확률값은 99.99996%이므로, 518HR-20-001과 518FRS-21-005는 이복형제 관계임을 확인하였다.

.....
¹⁹² 돌연변이는 1964년에 Kornberg et al.에서 제안했던 DNA slippage, polymerase slippage 또는 slipped strand mispairing의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Genomics Proteomics Bioinformatic. 2007. 5(1):7-14)

3) 2022년 암매장 제보 현장 ‘무연고 유해 및 유가족’ 유전자검사 보고서 요약
 [검사시료 : 유해시료 299건, 유가족 시료 42건]

〈표 3-4-10〉

	유해 시료		수량
	지역	검체번호	
1	문흥동	518HR-20-006	1건
2	영암 1차	518HR-21-001	1건
3	해남	518HR-21-002 ~ 518HR-21-003	2건
4	영암 2차	518HR-21-004 ~ 518HR-21-010	5건
5	영락공원	518HR-21-011 ~ 518HR-21-022	11건
6	국립5·18민주묘지	518HR-22-001 ~ 518HR-22-002	2건
7	전남 광주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 로파크 공사현장) 무연고합장분묘 터 측면	518HR-22-003	1건
8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합장묘	518HR-22-004 ~ 518HR-22-265	262건
9	광주 북구 각화동 산31-10일대	518HR-22-266	1건
10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합장묘 추가시료	518HR-22-006-1, 518HR-22-011-1 518HR-22-046-1, 518HR-22-062-1 518HR-22-082-1, 518HR-22-124-1 518HR-22-036-1, 518HR-22-147-1 518HR-22-179-1, 518HR-22-194-1 518HR-22-212-1, 518HR-22-264-1 518HR-22-265-1	13건
합			299건

〈표 3-4-11〉

	유가족 시료	
	검체번호	수량
1	518FRS-21-018	1건
2	518FRS-22-001 ~ 518FRS-22-041	41건
합		42건

A-STR 분석에서 총 351건 중 341건¹⁹³에 대한 A-STR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Y-STR 검사에서는 모든 마커에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경우가 1건 있었고, 3인의 유전자형에서 변이 유전자좌(Variant allele)¹⁹⁴들을 확인하였다.

유해시료 간 비교 프로토콜 품질관리 결과, 518HR-22-023과 518HR-22-026 유해가 동일한 SNP 유전자형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518HR-22-010과 518HR-22-011이 동일유해로 A-STR 분석 결과 마커가 22개 일치, Y-STR 검사 결과 마커가 20개 일치, mt-DNA도 일치하여 동일한 프로필을 가진다. 518HR-22-010과 518HR-22-011은 같은 사람으로, 좌측대퇴골을 고려했을 때 한 개의 넙다리뼈(femur)에서 두 개의 유해시료로 구분된 것으로 판단된다.

5·18조사위 시료번호 518HR-20-004(국립 5·18묘지 무명열사 4-96)의 유해시료와 유가족시료 518FRS-21-018(양중근)의 유전자검사 결과, A-STR 검사에서 형제관계에서 서로 다른 상염색체 유전자형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시료번호 518HR-20-004와 518FRS-21-018의 가족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며, Y-STR 검사 결과 시료번호 518HR-20-004와 518FRS-21-018의 부계 유전관계가 일치하였다. 시료번호 518HR-20-004와 518FRS-21-018의 모계 유전관계가 일치하였다. 따라서 시료번호 518HR-20-004와 518FRS-21-018의 유전자검사 결과, 제시된 가계도와 모순되지 않고, Y-STR 유전자형 및 미토콘드리아 DNA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것이 확인되므로, 시료번호 518HR-20-004와 518FRS-21-018은 유가족 양중근의 형제인 사망자 양창근의 유해로 확인되었다.

5·18조사위 시료번호 518HR-22-002(국립 5·18묘지 1-38)의 유해시료와 유가족시료 518FRS-02-001/518FRS-02-002/518FRS-01-007(김사익/김광일/윤길
.....)

193 5·18조사위의 유해시료는 4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토양에 오랜 기간 묻혀있어 유해시료의 상태가 미생물, 토양, 온도 및 습도, 동·식물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고도 부패가 진행되어 유전자 검출이 매우 힘들다.

194 https://strbase.nist.gov/var_tab.htm

란)의 유전자검사 결과 A-STR 검사에서는 시료번호 518HR-22-002와 518FRS-02-001/518FRS-02-002/ 518FRS-01-007은 가족관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Y-STR 검사 결과 대립유전자 차이가 1반복 이하라는 사실에서 미세변이일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어, 시료번호 518HR-22-002와 518FRS-02-001/518FRS-02-002/518FRS-01-007은 부계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제시된 가계도와 모순되지 않고, A-STR 유전자형에서 가족관계가 배제되지 않으며, Y-STR 유전자형이 일치하므로 유해시료 518HR-22-002는 행불자 김광복의 유해로 확인되었다.

5·18조사위 시료번호 518HR-20-003(국립 5·18묘지 무명열사 4-93)과 유가족시료 518FRS-22-002/518FRS-22-003(유가족 김○○, 권○○)의 유전자검사 결과 A-STR 검사에서는 핵 DNA의 상염색체에 존재하여 부모로부터 하나씩의 대립유전자를 받는다. 형제관계 및 삼촌-조카 관계에서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 유전자형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유해와 유가족의 가족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며, mt-DNA 검사결과 염기서열의 HV(Hypervariable region)에서 동일한 염기서열 변이를 공유하는 것을 확인하여, 시료번호 518HR-20-003과 518FRS-22-002/518FRS-22-003의 모계 유전관계가 일치하였다. 518HR-20-003과 518FRS-22-002/518FRS-22-003(김○○/권○○)의 유전자검사 결과, 제시된 가계도와 모순되지 않고, 미토콘드리아 DNA 유전자형이 일치하므로 유해시료 518HR-20-003은 사망자 김재영의 유해로 확인되었다.

4) 2023년 5·18행방불명자 ‘무연고 유해 및 유가족’ 유전자 검사보고서 요약
[검사시료 : 유해시료 298건, 유가족 시료 30건]

〈표 3-4-12〉

	유가족 시료	수량
1	518FRS-22-042~518FRS-22-045	4건
2	518FRS-23-001~518FRS-23-026	26건
합		30건

〈표 3-4-13〉

	유해 시료		수량
	지역	5·18일련번호	
1	광주교도소 수집 유해시료	518HR-23-030~518HR-23-282	253건
2	미성년 유해 시료	518HR-23-001~518HR-23-029, 518HR-23-283~518HR-23-289	36
3	신원 미확인 유해 시료	518HR-23-290~518HR-23-298	9건
	합		298건

A-STR 분석 대상 중 모든 마커에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경우가 4건 있었다.
Y-STR 분석 대상 중 모든 마커에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경우가 47건 있었다.

2022년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수집된 유해시료 왼쪽 넓다리뼈 262건에 대해 2023년 같은 부지에서 수집된 오른쪽 넓다리뼈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였다. A-STR 및 Y-STR 분석 결과 88건을 동일개체로 고려할 수 있으며, mt-DNA와 SNP 분석 결과 17건을 동일개체로 고려할 수 있다.

유해시료와 유가족시료의 2020년, 2021년, 2022년 유전자검사 결과를 AccuIDTM Console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유해-유가족 간의 부자관계, 형제·자매관계 또는 이복형제·자매관계로 매칭되는 유의미한 가족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

3. 소결

가. 암매장 제보 현장의 유해발굴 및 수습 조사 결과

5·18조사위 조사결과, 최초 매장지에서 다수의 시체가 수습된 후 제3의 장소로 옮겨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교도소를 비롯한 계엄군이 일정 기간 주둔하면서 작전을 전개했던 지역에서는 민간인 집단학살사건과 함께 일부 민간인 사망자들의 시체를 암매장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5월 27일 진압작전이 종료된 직후부터 6월 7일경까지 광주시청 직원 조성갑 등에 의해 노상에 방치되었거나 가매장 또는 암매장되었던 민간인 시체들이 대부분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 수습되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반면 당시 계엄군은 진압작전이 종료된 이후 6월 초에 매장에 참여했던 계엄군을 현장에 보내 시신매장 장소를 공무원에게 안내하는 등의 일부 사후조치가 있었고, 일부 계엄군은 8계단 좌표 등으로 매장 장소를 보고했다는 진술, 광주지방검찰청이 법무부에 보낸 전문 내용 등에서 가매장 후 사후 수습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던 사실도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조사위의 조사결과 43년이 경과한 지금 암매장을 지시, 실행, 목격하였다는 다수의 계엄군 진술에서 암매장된 민간인 사망자 시신의 숫자와 진압종료 직후에 수습된 시신의 숫자와 차이가 있고, 행방불명으로 인정된 73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암매장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5·18조사위가 암매장 관련 직접 실행한 계엄군들과 현장 동행조사에서 매장한 장소를 특정하였고, 지목한 장소의 지표조사 및 유해발굴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대부분의 장소에서 유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발굴 당시 현장에 매장

하였다는 계엄군 당사자들의 입회하에 진행하였으나 매장흔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형지물과 지층이 변화되어 있었다. 현장을 지목했던 계엄군들조차 의아해할 정도였다. 이에 5·18조사위는 지난 4년 동안의 조사와 발굴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유해가 확인되지 않은 것은 이미 다른 장소로 옮겨졌거나 또 다른 유기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3공수여단이 전남대학교에서 교도소로 이동할 당시 밀폐한 트럭 적재함에 싣고 이송하는 과정에서 광주교도소에 도착했을 때 일부 민간인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들을 직접 내리고 뒤이어 이 시신들의 얼굴을 사진병이 사진촬영하였다는 목격자 김○○ 등 3명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진촬영과 지문채취 관련 기록 및 증거를 추적하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광주505보안대 관계자들의 진술조사, 안보지원사령부의 자료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관련 진술과 기록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제20사단 병사들은 광주교도소에서 제3공수여단과 교체 투입된 이후 현장에서 가매장되어 있던 시체를 수습한 적이 있고, 이튿날 아침 트럭에 싣고 어디론가 갔다는 등의 진술, 그리고 당시 민간인 사망자의 시체에 대해서는 경찰행정력이 미치지 못할 경우 가까운 군부대의 헌병대에서 가매장을 한 후 보고하라는 등의 작전지시¹⁹⁵가 상황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점, “암매장이나 암매장 위치 등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하라. 아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면서 여러 차례 조사하였고¹⁹⁶, 제3공수여단장, 사병들의 복수의 진술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고 있는 점, 민간인 시체를 가매장하기 전에 사진으로 얼굴 등을 촬영하였다는 진술 등을 감안하면, 가매장된 일부 민간인 시체들이 재수습 과정을 거쳐 어디론가 옮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유해 수습 등에 필요한 지속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종합보고서의 권고사항에 포함하고자 한다.

195 「31사단 작전 상황일지」 1980. 5. 18. ~ 5. 28., 『5·18민주화운동 관련 군 자료집 3권』 260쪽, “민간인 시체 처리 지시. 가. 최초 경찰서에 인계를 원칙으로 한다. 나. 경찰 행정이 마비 시 헌병대에서 신원 확인(지문채취, 사진 촬영, 유품 수집, 시체특징 발굴)후 가매장 보고서 작성보고”

196 5·18조사위, 「김신옥(11공수여단 일병) 진술조사」(2023.11.30. 완도읍 건설현장소장 사무실)

나. 유전자 검사 결과

5·18조사위가 본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 현재의 시점까지 민·군의 암매장 제보 현장에서 발굴된 총 19기의 유해, 광주교도소 솔로몬로파크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무연고 유해 261기의 유해에서 채취한 유전자와 5·18민주화운동 관련 행방불명자 가족들의 혈액에서 채취한 유전자가 일치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2년 10월경 광주교도소 솔로몬로파크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유해 262기 중 1기가 행방불명자 염경선의 염색체 서열이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SNP방법에 의한 확인결과가 기존의 유전자 검사기법인 STR 조사를 통해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이러한 유전자 검사결과를 충분한 교차 확인 및 검증 없이 서둘러 언론에 공개했던 점은 오점으로 지적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5·18조사위의 조사에서 비록 일치된 사례는 없지만, 그동안 5·18민주화운동 관련 행방불명자들의 가족 448명의 유전자 정보가 축적되었고, 이에 더해 5·18조사위가 암매장 제보 현장에서 발굴한 유해의 유전자 정보를 수시로 비교·대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따라서 국가는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이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행방불명자의 소재와 암매장 제보 현장의 유해 신원을 확인하는 지속적인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18조사위는 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암)매장 사건에 대한 조사는 ‘진상규명불능’으로 결정하되, 이 결정은 종국적인 것이 아니라 그동안 5·18조사위가 조사한 모든 과정과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항구적인 추가 연구 및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한다. 그 근거로는 이미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계엄군에 의한 민간인 사망과 그 민간인 사망자 일부의 시체가 가(암)매장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군 기록이나 현장 계엄군들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민간인 집단학살사건이 발생했던 현장에서 실종된 시체가 불특정 장소에 매장되어 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행방불명 인정자 중 75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5·18조사위는 이상의 조사 결과에 대해 비록 진상규명불능의 결정을 하더라도 이 조사과제는 국가 차원의 조사과제임을 조치 및 권고에 명시하고자 한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